발 간 등 록 번 호

자동차관계 법령

2015.8.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목 차

자동차관리법

1. 자동차관리법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4.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5.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6. 자동차등록규칙
7. 자동차등록령
8.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9.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1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15.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1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1. 자동차관리법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4.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5.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6. 자동차등록규칙
7. 자동차등록령
8.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9.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1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15.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1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5.7.29] [법률 제13089호, 2015.1.2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4, 2012.12.18, 2013.3.23, 2014.1.7>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형식"이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4의2. "내압용기"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고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11.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표준정비시간"이란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가 정하여 공개하고 사용하는 정비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1.5.24,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개정 2011.5.24,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4조(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자동차관리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으로 규정한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4조의2(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 관련 기술발전 전망과 자동차 안전 및 관리 정책의 추진방향
2.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연구개발·기반조성 및 국제조화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안전도 향상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관리제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동차 안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4]

제2장 자동차의 등록 <개정 2009.2.6>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2009.2.6]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① 시·도지사는 등록원부를 비치(備置)·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② 시·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등록원부 및 그 기재 사항의 멸실(滅失)·훼손이나 그 밖의 부정한 유출 등을 방지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⑥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기재사항, 서식 및 기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1.6>

[전문개정 2009.2.6]

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2.18, 2013.3.23>

④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8조의2(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고지의무) ①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②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4.1.7>

[본조신설 2012.12.18]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5.1.28>

1.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대번호(車臺番號)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이들 표기가 제30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또는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규검사증명서에 적힌 것과 다른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5.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1.5.24>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12.5.23, 2013.3.23>

⑧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11.5.24, 2012.5.23>

⑨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봉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신설 2015.1.6>

[전문개정 2009.2.6]

제11조(변경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및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2조의2(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신청)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은 해당 자동차의 이전등록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5.24]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한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기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자동차소유자가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1.5.24>

⑨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⑩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2014.3.18>

[전문개정 2009.2.6]

제14조(압류등록)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3.3.23>

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제15조 삭제 <1999.4.15>

제16조(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시·도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7조 삭제 <1999.4.15>

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① 자동차사용자는 해당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을 갖춰 두는 경우와 피견인자동차(被牽引自動車)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9조(등록번호판의 발급 등)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凸形)을 관리하는 경우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출(流出)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2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을 도난 당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5.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자산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등록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9.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색상 등 제식(制式)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되게 제작·발급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22조(차대번호 등의 표기) ① 자동차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자동차나 원동기를 제작·조립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23조(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자동차에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그 표기 방법 및 체계 등이 제22조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다른 자동차와 유사한 경우
3.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지워져 있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라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들어간 비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5.24, 2013.3.23>

④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른 인정 및 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24조 삭제 <1999.4.15>

제2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
2.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 또는 해소
3. 대기오염 방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 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①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목적으로 운행구간을 정하여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5.24, 2013.3.23>

③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제2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5.24>

④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28조(이의신청) ① 시·도지사가 수행한 자동차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정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 <개정 2009.2.6>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保護裝具)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29조의2(안전기준 관련 연구·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로 지정된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② 삭제 <2011.5.24>

[본조신설 2009.2.6]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중 생산 규모, 안전검사시설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인증능력 요건 중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1.5.24, 2013.3.23>

④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諸元)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30조의2(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③ 부품제작자등이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부품의 제원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부품에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부품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확인한 결과 등록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사항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⑤ 자동차제작자등이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에 장착된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4.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 부품자기인증 또는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을 한 경우
2. 제30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
3.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

3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경우

3의3. 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자동차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6. 부품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경우

7. 대체부품의 인증 내용과 다른 대체부품을 판매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30조의4(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2.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3.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4. 정부,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거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제30조의5(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 등) ① 대체부품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한다.

② 대체부품 중 인증대상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품목 외의 부품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게 할 수 있다.

④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경우 대체부품의 제조사 등은 이를 대체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체부품 성능·품질의 인증기준·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7]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1.5.24, 2013.3.23, 2015.1.6>

1.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
2.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려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1.5.24,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제1항 단서에 따른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5.24, 2013.3.23, 2015.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1.5.24, 2013.3.23>

⑤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과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5.24,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1.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2.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 기한, 보상금의 지급 청구 절차,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32조(부품등의 국가간 상호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이 국가간 상호인증 등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한 후 이를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한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가 국가간 상호인증협약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인증할 때의 성능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성능시험을 한 경우에는 그 평가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⑤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가간 상호인증협약에서 그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6]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5.1.6>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한 무상수리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3.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교육과 고장진단기·정비매뉴얼 등 정비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 이 경우 기술지도·교육의 대상 및 방법, 정비 장비·자료의 종류 및 제공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 이 경우 공개 대상 등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제1호의 무상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2항에 따라 무상수리를 대행하는 자가 무상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2.6]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1조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함의 시정에 필요한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1.5.24, 2013.3.23>

③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3.7.16>

1. 수출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결함 시정 내용
2. 수입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과 동종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외국에서의 제작 결함 시정 내용
3. 자동차 소유자에게 고지하여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

[전문개정 2009.2.6]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도가 높은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안전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제1항의 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를 위한 시설, 장비 및 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33조의3(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판매한 신규제작자동차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규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18]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7]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및 장비개발

2.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의 도입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제 도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7]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7>

1.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신설 2009.12.29>

제35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제1항의 자동차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12.29]

제35조의3(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이하 "운행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저속전기자동차는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점검·검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및 운행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12.29]

제35조의4(운행구역의 고시 등) ① 운행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관련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운행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한다. <개정 2013.3.23>

1. 운행구역의 위치 및 도로 구간

2. 안전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가 운행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지정권자는 운전자가 운행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 표지판
2. 그 밖에 안전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지정권자가 운행구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해제일부터 9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운행구역의 고시 및 공람 등에 필요한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12.29]

제3장의3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신설 2011.5.24>

제35조의5(내압용기의 안전기준) ① 내압용기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내압용기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24]

제35조의6(내압용기의 검사) ① 내압용기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이하 "내압용기제조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압용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압용기에 대하여는 내압용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검사에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破棄)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아야 할 내압용기로서 내압용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내압용기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내압용기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3.3.23>
⑦ 내압용기검사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24]

제35조의7(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내압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하려면 자동차자기인증을 하기 전에 내압용기와 그 연결에 필요한 가스설비에 대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장착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이하 "내압용기장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내압용기를 자동차에 장착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을 함으로써 내압용기장착검사를 갈음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내압용기장착검사를 실시하여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내압용기장착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내압용기장착검사의 기준과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24]

제35조의8(내압용기의 재검사) ①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34조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내압용기 장착에 대한 튜닝을 마친 후 또는 제35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압용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내압용기재검사"라 한다)를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로 내압용기재검사를 갈음한다. <개정 2013.3.23, 2014.1.7>

1. 내압용기 정기검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실시하는 검사
2. 내압용기 수시검사: 손상의 발생,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의 훼손,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내압용기재검사에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내압용기재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아야 할 자동차로서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재검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⑥ 내압용기재검사의 기준과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24]

제35조의9(내압용기의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제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압용기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경우
2.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제조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24]

제35조의10(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내압용기를 수집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내압용기 내 가스유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내압용기제조자등에게 회수·교환·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압용기에서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폭발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결함이 발견되어 긴급하게 내압용기에 대한 회수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내압용기제조자등에게 회수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내압용기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내압용기 안에 있는 고압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이 자동차 소유권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의 수집방법, 회수등의 절차 및 방법, 자동차의 사용 정지·제한의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24]

제35조의11(내압용기의 자료 제공 등) ①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내압용기를 판매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압용기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내압용기제조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9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35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필요한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

료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내압용기제조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한 내압용기의 제작 결함 시정 사례와 소유자에게 알려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24]

제35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내압용기의 등록, 안전관리, 검사, 재검사, 보험가입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4조, 제40조, 제42조 및 제43조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제73조
3.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및 제50조

[본조신설 2011.5.24]

제4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개정 2009.2.6>

제36조(자동차의 정비)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18]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1.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2.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
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으며,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함께 명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 영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38조 삭제 <1999.4.15>

제39조 삭제 <1999.4.15>

제40조(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①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이하 "기계·기구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계·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 기구, 검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41조 삭제 <1999.4.15>

제42조 삭제 <1999.4.15>

제5장 자동차의 검사 <개정 2009.2.6>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기준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2012.12.18,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하여 합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7>

1. 신규검사: 신규검사증명서의 발급
2. 정기검사·튜닝검사 또는 임시검사: 검사한 사실을 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록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⑤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검사 장면 및 결과를 제69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이하 "특정경유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관능검사,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② 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③ 종합검사 업무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제3항·제4항·제6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2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4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하여 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②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5.24,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44조의2(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종합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② 종합검사대행자의 시설, 장비, 인력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서는 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정기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술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④ 지정정비사업자에 관하여는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2호를 준용한다.

⑤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그 사업장에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⑥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정기검사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자동차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지정정비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기검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지정정비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종합검사(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②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관하여는 제4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호·제15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5.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6. 제43조제2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7. 제43조제3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3조제6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9.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10. 제45조제2항이나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11. 제45조제3항이나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12. 제45조제7항(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14.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16.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17.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1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 이하 제46조에서 같다)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2.6]

제46조(기술인력의 직무 등) ①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는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를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4. 제43조제2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5. 제43조제3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3조제6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7.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8. 제45조제3항이나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①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미터를 검정할 수 있는 전문검정기관(이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관하여는 제40조 및 제45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제4항에서 준용되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5.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정용기계·기구로 검사를 한 경우 및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정용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정을 한 경우
6.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6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개정 2009.2.6>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양수한 소유자가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 이륜자동차는 주요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구조 및 장치의 범위와 그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51조 삭제 <2002.8.26>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7항,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등록"은 "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4.1.7>

[전문개정 2009.2.6]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개정 2009.2.6>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5.24, 2012.5.23, 2013.3.23>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9조제13호 또는 제84조제2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7]

제5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된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5조(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는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정사업의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56조(사업의 개선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업장의 이전
2.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3. 수수료 또는 요금의 조정
4.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2.6]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위임·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5.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② 자동차정비업자는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7>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12.30>

1.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서 그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 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2.6]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5.1.6>

1.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3. 제6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성능·상태의 점검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2015.1.6>

③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1.5.24, 2013.3.23>

④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5.24, 2012.5.23, 2013.3.23, 2014.1.7>

1. 삭제 <2015.1.6>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新部品), 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3.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4.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할 것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해서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 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할 것
6.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
8. 거짓으로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아니할 것

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5.24, 2013.3.23>

⑥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11.5.24>

⑦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1.5.24, 2013.3.23>

⑧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기록·관리 및 보존하는 내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하여야 한다.<신설 2012.12.18,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58조의2(모범사업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6>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④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알선이 완성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장 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 기간

[전문개정 2009.2.6]

제59조(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①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2.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3.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13.3.23>

1.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자동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것
2. 자동차매매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것
3. 자동차를 매매하는 직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4. 그 밖에 자동차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2.6]

제60조(자동차경매장의 개설·운영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제67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은 매매용 자동차의 적정한 가격 형성, 합리적인 수급 조절,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발전 및 매매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등의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③ 경매장을 개설·운영하는 자(이하 "개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매 대상 자동차의 등록 사항과 안전 및 성능 상태 등을 점검·검사하고 그 결과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고지할 것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경매 대상 자동차에 대한 점검·검사의 기준 및 검사 결과의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⑤ 이 법에 따른 경매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경매장 또는 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1조 삭제 <1999.4.15>

제62조(경매 거래의 참가) 경매 참가인은 경락(競落)을 받은 자동차의 경락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자에게 보증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63조(경락 자동차의 인수 거부 등) ① 개설자는 경락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기간 내에 경락받은 자동차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경락인의 부담으로 자동차를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인수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경락받은 자동차를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경락인에게 인수를 독촉한 후에도 경락인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경매에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경매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제1항에 따른 경락인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4조(점검·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①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점검·정비책임자(이하 "정비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정비책임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자는 그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정비책임자로 다시 선임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자격·직무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65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차에 드는 비용이 폐차하는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3.12.30>

[전문개정 2009.2.6]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3.12.30, 2014.1.7, 2015.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5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4.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신고 없이 양도·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6.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8. 제58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5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의 업무를 시작한 경우
10.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11.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12. 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경우
 다.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경우
 라.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마.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장비 및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같은 조 제1항의 성능·상태의 점검을 받은 경우
 바.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사. 제59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삭제 <2012.12.18>
 나.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를 자동차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사용한 경우
 다.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다만,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의 응급조치와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에서의 점검 및 정비 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
 마.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튜닝 작업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바. 거짓으로 제58조제1항에 따른 성능·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사. 제58조제4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정비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폐차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다. 제58조제5항에 따라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라.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마.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된 자동차의 폐차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5.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67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등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17>

④ 조합등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5.24, 2013.3.23>

1. 삭제 <2011.5.24>
2. 삭제 <2011.5.24>
3. 삭제 <2011.5.24>
4.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 지도
5.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6. 소속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업무

⑤ 조합등의 정관 또는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3.23>

⑥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8조(연합회) ① 조합등은 그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②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1.5.24, 2013.3.23>

1.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3. 요금 및 수수료 체계의 조사·연구
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5. 조합등의 업무수행 관리·감독
6.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

③ 제1항의 연합회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개정 2011.5.24>

[전문개정 2009.2.6]

제7장의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신설 2011.5.24>

제68조의2(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① 국내(國內)의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내압용기안전기준의 국제기준과의 조화(이하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라 한다)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기준을 조사·분석하고, 관련 정보 및 기술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내압용기안전기준 관련 기업·기관·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24]

제68조의3(국제조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이하 "국제조화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제조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현황 및 여건
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
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추진·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조화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

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24]

제68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24]

제68조의5(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개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보급
2.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와 관련된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의 제정·개정
3.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국제 협력 및 교류
4.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
3. 성능시험대행자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본조신설 2011.5.24]

제68조의6(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 등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또는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여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및 장치의 수출입에 대하여 국가 간 상호인증협약 또는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24]

제68조의7(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기계, 전기, 전자 등 자동차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자동차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자동차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24]

제68조의8(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5.24]

제8장 보칙 <개정 2009.2.6>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으면 자동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용도를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전산 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의 및 승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제70조(자동차관리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한 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자동차자기인증·부품자기인증·점검·정비·검사·폐차·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말한다) 및 봉인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대한민국 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3.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4.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 국민(내국인은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자동차 중 국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중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우리나라는 제외한다)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5. 「관세법」에 따라 다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되는 자동차
6.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7.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8. 수출용으로 제작·조립한 자동차

[전문개정 2009.2.6]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

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제72조(보고·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자동차사용자
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3. 제2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자
4. 자동차제작자등
5. 부품제작자등

5의2. 내압용기제조자등

6. 기계·기구제작자등
7. 자동차검사대행자
8. 종합검사대행자
9. 지정정비사업자
10.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11.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12. 자동차관리사업자

②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의 시설·장비·자동차·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동차·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한 출입·검사가 합동으로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검사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을 기재한 검사 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해야 하거나 사전에 검사 계획이 알려지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지 아니할 수 있으며, 검사 후 즉시 사후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게 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확인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경우
2.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
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단속을 한 경우에는 즉시 단속을 받은 자에게 단속 내용을 적은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단속을 할 때 필요하면 제67조에 따른 조합등과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단속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처분이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와 관련된 종합검사대행자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자동차,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용기 매출액의 1천분의 1(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1.5.24, 2013.3.23>

1.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
2.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
3. 제3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3.23, 2013.8.6>

[전문개정 2009.2.6]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제21조, 제45조의3제1항 및 제47조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2. 제30조제5항 또는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
4. 제31조제3항 본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에 대한 시정명령
5.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5의2.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제조·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제35조의9제1항제2호 중 제35조의10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5의3. 제35조의10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회수등의 명령

6. 제54조제2항 및 제66조에 따른 등록취소
7. 제7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전문개정 2009.2.6]

제7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또는 종합검사의 신청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제32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의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 제77조제6항에 따른 자기인증의 면제 및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제77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 튜닝에 관한 승인, 제77조제9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4.1.7>

1. 제7조제4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는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제19조 및 제49조에 따라 등록번호판 또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을 받는 자
5.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7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 제27조에 따라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자
7.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의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자
8. 제30조의4(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기인증의 면제를 신청하는 자
9. 제3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을 받는 자
1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신청하는 자

10의2.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신청하는 자

10의3. 제35조의7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장착검사를 신청하는 자

10의4. 제35조의8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재검사를 신청하는 자

11. 제40조에 따라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자
12. 제43조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자동차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신청하는 자
13. 제47조에 따라 택시미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14.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하는 자
15.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는 자
16. 제60조제1항에 따라 경매장 개설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7. 제69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전문개정 2009.2.6]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제2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제23조제1항 단서(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인정에 관한 업무
2.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을 것을 명하는 것에 관한 업무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제30조의4(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인증의 면제에 관한 업무
2. 제40조제1항(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계·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업무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에 관한 권한, 제59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조합등 또는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⑧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1.5.24, 2013.3.23>

1.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에 관한 업무
2.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파기에 관한 업무
3.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09.2.6]

제7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4>

1. 제2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 등의 대행업무
2.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인증능력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업무
3. 제32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업무

3의2. 제35조의6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업무

3의3. 제35조의7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업무

3의4. 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업무

4. 제44조와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업무와 종합검사대행업무
5.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업무
6.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업무
7.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검정대행업무
8. 제7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전문개정 2009.2.6]

제77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정부는 자동차에 자기인증 표시를 하도록 한 제30조제4항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마다 자기인증 표시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자동차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57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마다 금지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5.24]

제9장 벌칙 <개정 2009.2.6>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09.2.6]

제78조의2(벌칙)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검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2.12.18, 2013.3.23, 2013.12.30>

1. 제20조·제44조·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의 발급, 자동차검사 또는 택시미터의 검정을 한 자
2.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제작·판매자등(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제2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 또는 제30조의2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자
7. 제3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사용한 자
8. 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한 자
9.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한 자
12. 제47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한 자 또는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하거나 이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한 자
1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14. 제57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 알선을 한 자
15.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경매장을 개설·운영한 자
16. 제7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2014.7.1] 제79조

[시행일:2015.12.19] 제79조제2호, 제79조제3호, 제79조제4호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2.12.18, 2013.12.30>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
3. 제32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또는 택시미터검정을 한 자와 이들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확인·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자
4.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
5. 제5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

5의2.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6.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자 또는 압류·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한 자

7의2.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

8.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9.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2.6]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2.12.18, 2013.12.30, 2014.1.7>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1의3. 제10조제6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한 자

6. 제2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0. 제30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 시설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1.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3.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4.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제작자명·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5. 제30조의2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부품의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6.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및 대체부품의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7.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8.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20의2. 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0의3. 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0의4.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20의5.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0의6. 제35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21.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자
22. 제37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
23.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4. 제46조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5. 제47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7.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7의2.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을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 자
28.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6]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2015.1.6>

1. 삭제 <2011.5.24>
1의2. 제10조제9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64조제2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2.6]

제8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8조, 제78조의2 및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제84조(과태료) ①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5.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12.29, 2011.5.24, 2012.5.23, 2012.12.18, 2013.12.30, 2014.1.7>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2. 제10조제1항 단서(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8. 제18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지 아니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을 갖춰 두는 경우와 피견인자동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9. 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11.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12.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3.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3의2.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3의3.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

14. 제30조의3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조사·보고·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15. 제31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15의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자
16. 제45조제8항(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18.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9.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20.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21.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1의2. 제5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22. 제5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동차정비업자
23.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4.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5.24, 2012.5.23, 2012.12.18>

1.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자
3.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3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2.12.18>
5.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8조제3항 또는 제58조제8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8.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1.5.24,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2013.6.19] 제84조제3항제7호의2(제8조제3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시행일:2013.9.1] 제84조제3항제7호의2(제58조제8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10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신설 2001.4.7>

제85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79조제13호(자동차정비업자가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범위를 경미하게 위반하여 점검·정비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제81조제2호·제8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개정 2014.1.7>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2. 도난자동차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을 한 자동차정비업자
3.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사람
4.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86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시·군 또는 구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뜻한다.

④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전속적(專屬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86조(통고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벌금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87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86조에 따라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

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납부 기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 ① 제87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1. 제8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7조제1항에 따른 납부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제87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전문개정 2009.2.6]

부칙 <제5104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택시미터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지정을 받은 검정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지정의 기준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제1항의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택시미터의 경우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고 기타 처분등은 이를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14항중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5항"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으로 한다.

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12조·제41조제1항제2호 또는 제44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2조·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5303호,1997.3.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의2"로 한다.

③생략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5453호,1997.1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729호,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968호,1999.4.1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호, 제30조제3항·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 및 제80조제2호의 개정규정중 자동차 완성검사폐지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70호,2001.4.7>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생략

<39>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0>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730호,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기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원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제작자등은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을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미리 안전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100호,2004.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3조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3>생략

<94>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5>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471호,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254호,2007.1.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58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8369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3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8404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18>부터 <30>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8658호,2007.10.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9> 까지 생략

<600>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7조제3항, 제21조제2항제5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30조제2항 전단,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후단, 제31조제2항·제3항 전단·후단·제4항,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40조제1항 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44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제4항제5호, 제69조제2항·제3항 전단·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4조제1항·제2항·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7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제79조제1호 및 제8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제8호 단서, 제3조제1항·제2항,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3항 단서·제4항, 제10조제1항 본문·단서, 제12조제2항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제5항 후단, 제14조,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후단·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4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제3항·제4항,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제1항, 제34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36조제2항·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4항,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제49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 전단, 제55조제1항, 제56조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4호·제3항제5호·제4항·제6항, 제58조의2제1항·제3항,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제60조제1항 단서·제2항·제4항, 제62조제2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제2항 본문·단서,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5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및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0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979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제24조의5제1항제12호"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980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066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부품 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품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체시정비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함사실을 공개하는 것으로서 이 법 시행 후에 그 결함을 시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품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부품자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부품의 제작등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0조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후 자동차부품에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종합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간은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따로 받을 수 있으나, 2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각각 따로 받는 경우에도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교통안전공단과 운행차 정밀검사 지정사업자는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9105호,2008.6.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09호,2008.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제4항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36호의 규정"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9449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제74조제1항 단서 및 제78조의2의 개정규정과 제37조제1항제3호, 제45조의3, 제46조제1항·제2항, 제55조제5항, 제72조제1항·제2항, 제75조제1호, 제76조, 제77조제2항·제3항, 제77조의2, 제80조, 제81조, 제84조제1항·제2항 및 부칙 제6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 중 자동차종합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매자동차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적용특례 및 경과조치) ①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의 시행일부터 2년간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의 어느 하나를 받지 아니하면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사업자(「대기환경보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정밀검사 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서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년간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각각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폐차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7호 중 "자동차폐차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제43조제1항제2호"를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법률 제9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⑦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867호,2009.12.29>

이 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38>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721호,2011.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압용기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기간에 최초의 내압용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 법 시행일
2.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4조(이륜자동차의 신고범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이륜자동차 중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해당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5조제8항 중 "같은 조 제3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항"을 "같은 조 제4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5항·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1190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자단체의 설립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하는 사업자단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449호,2012.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88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제33조의3, 제57조제1항제5호, 제80조제5호 및 제84조제3항제7호의2(제8조제3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제8항 및 제84조제3항제7호의2(제58조제8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6조, 제43조제2항, 제66조제1항제13호가목, 제73조제1항제2호, 제81조제21호 및 제8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3 및 제7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제작증 정보의 기록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의 경우부터 시행한다.

제4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의 매도 등을 하거나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1>까지 생략

<622>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같은 조 제8호 단서, 같은 조 제10호, 제3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7조제4항·제5항, 제8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2조제2항 단서, 제1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1조의2제2항, 제32조제3항,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2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5조의2, 제35조의3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5조의

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의5제2항, 제35조의6제2항·제3항·제6항·제7항, 제35조의7제2항·제3항, 제35조의8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항·제6항, 제35조의10제6항, 제35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제2항·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제6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7조제1항·제2항·제6항, 제4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0조제2항, 제5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55조제1항, 제56조제4호,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5항·제7항, 제58조의2제1항·제3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62조,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6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제67조제1항·제5항, 제68조제1항, 제68조의7제1항제3호, 제69조제1항·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및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3항, 제21조제1항제9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9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의2제3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의2, 제35조의4제2항, 제35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제6항, 제3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의10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35조의11제3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45조의2제1항,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제5항 후단,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5호,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68조의2제1항·제2항, 제6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8조의4제1항, 제6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68조의6, 제6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8조의8제1항·제2항, 제6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호 및 제8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법률 제11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7항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3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의3제1항·제3항·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8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8조제8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2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29호,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58>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146호,2013.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17호,2014.1.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72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말소등록 차량의 신규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986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0조, 제31조, 제32조의2,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58조의3 및 제82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69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5조의3, 제46조, 제58조제1항제4호, 제58조의4, 제7장의3(제68조의9부터 제68조의13까지), 제79조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82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장면의 촬영 및 결과의 기록·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 장면의 촬영 및 결과의 기록·보관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소 또는 정지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은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089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으로 한다.

제35조의1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 및 제73조 ⑨ 및 ⑩ 생략

제12조 생략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5.1] [대통령령 제26224호, 2015.5.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10.2.5, 2011.11.25>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3.17>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제4조(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법 제4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비용을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4.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25]

제5조(자동차운행제한)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행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9.3.27>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7.29, 2001.3.17>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2. 당해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
3. 방치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치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폐차할 수 있다.<개정 1999.7.29>

1.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등록된 자동차로 본다)
2.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자동차
3. 구조·장치의 대부분이 분해·파손되어 정비·수리가 곤란한 자동차
4. 매각비용의 과다등으로 인하여 특히 폐차할 필요가 있는 자동차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동차를 제4항에 따라 폐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한 시·도지사에게 해당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2009.3.27, 2011.11.25>

⑥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⑦ 삭제 <1999.7.29>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7.29, 2001.6.29, 2002.12.31,

2006.5.30, 2008.9.25, 2009.3.27, 2010.2.5, 2013.3.23, 2015.5.1>

1. 법 제8조 및 제13조제8항·제10항에 따른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2.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점검·정비하거나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표기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4.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5. 삭제 <2002.12.31>
6. 삭제 <2002.12.31>
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8.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사업장·하치장 또는 전시장에 자동차를 보관·전시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9.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한 자동차를 환수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10.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11. 다음 각 목의 자가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나.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
 다. 자동차 연구개발 목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자
 라. 해외자동차업체나 국내에서 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부품개발 등의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마.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12. 「도로교통법」 제99조 및 제104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1998.12.31, 2001.6.29, 2002.12.31, 2010.2.5, 2015.5.1>

1. 제1항제1호·제3호·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일 이내
1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20일 이내
2. 제1항제4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 40일 이내
3. 삭제 <2002.12.31>

4.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 2년(제1항제11호마목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기간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정치·외교·문화·예술 및 체육 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2.5, 2013.3.23>

④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2.5>

[제목개정 2010.2.5]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길이·너비 및 높이
2. 최저지상고
3. 총중량
4. 중량분포
5. 최대안전경사각도
6. 최소회전반경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8. 차체 및 차대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 창유리
12. 소음방지장치
13.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4.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15. 경음기 및 경보장치
16. 방향지시등 기타 지시장치

17. 후사경·창닦이기 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8. 속도계·주행거리계 기타 계기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제8조의2(자동차부품)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브레이크호스
2. 좌석안전띠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
4. 후부반사기
5. 후부안전판

[본조신설 2011.11.25]

제9조(내압용기검사의 생략) 법 제3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압용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의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한다. <개정 2013.3.23>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조하는 내압용기
 가.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내압용기
 나.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제작자·내압용기제조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제조하는 내압용기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제조하는 내압용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수리하는 내압용기
 가. 내압용기제조자가 용기밸브 또는 용기안전장치의 부품을 교체하는 내압용기
 나. 자동차정비업자(내압용기 내의 잔류가스를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자만 해당한다)가 용기밸브 또는 용기안전장치를 교체·수리하는 내압용기(액화석유가스용 내압용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수입하는 내압용기
 가.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
 나.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에서 내압용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받은 내압용기
 다. 내압용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
 라.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

[본조신설 2011.11.25]

제9조의2(내압용기재검사 비용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8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35조의8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이하 "내압용기재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인력에 드는 비용
2. 내압용기재검사와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전산 관련 시설에 드는 비용
3.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내압용기재검사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내압용기재검사 비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사업추진계획서
2. 소요비용 산정내역
3. 자금집행계획
4. 그 밖에 내압용기재검사의 비용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25]

제9조의3(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① 법 제35조의10제2항에서 "가스유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내압용기 내의 가스유출
2. 용기밸브 및 용기안전장치의 중대한 손상

② 법 제35조의10제3항에서 "폭발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내압용기의 폭발로 인한 내압용기의 파손사고
2. 내압용기의 압력으로 인한 내압용기의 파열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함의 유형 및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25]

제9조의4(손실보상) ① 법 제35조의10제5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손실을 입은 자(자동차 소유권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와의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또는 내압용기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자문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 자문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25]

제10조(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관리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받은 이륜자동차별로 이륜자동차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15.4.29>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대장 및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신설 2015.4.29>

1. 이륜자동차대장: 해당 이륜자동차대장을 폐쇄한 날부터 10년
2.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신고를 받은 날부터 3년(사용신고의 경우 5년)

[제목개정 2015.4.29]

제11조(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2.5, 2011.11.25>

1.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소변경
2.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변경 또는 증·개축(등록기준에 미달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3.6.17>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②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17>

제13조(사업의 개선명령)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2007.12.31>

③ 삭제 <1999.7.29>

④ 삭제 <1999.7.29>

제13조의2(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①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 2천만원 이상
2.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 이상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매매업을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보증"이라 한다)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자동차매매업자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때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매매업자는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매수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수인과 자동차매매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에 한한다)·화해조서 또는 법원의 확정된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 또는 공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⑥ 자동차매매업자는 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27]

제13조의3(국제조화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8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국제조화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비용을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국제조화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국제조화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4.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국제조화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11.25]

제13조의4(전담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68조의4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

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3조의5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2. 사업추진계획서
3. 자금집행계획서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전담기관의 사업 및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고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25]

제13조의5(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및 업무범위) ①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전담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상설 조직을 갖출 것
2. 전담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기술 인력을 갖출 것
3. 전담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4.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3.23>

1.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선진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업무
2.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조사·분석 업무
3.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대한 기술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업무
4.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전문가 양성 업무
5. 그 밖에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25]

제13조의6(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8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시범사업의 목표, 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자동차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신청으로 시범사업의 대상 또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범사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3. 시범사업의 대상 및 지역에 관한 설명자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범사업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범사업기본계획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실시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자동차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범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및 방법,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1.25]

제14조(전산자료의 이용)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중 자동차소유자의 인적사항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전산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원부를 그 공부의 형태대로 복제하거나 전산자료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1. 자료이용의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1. 제2항 각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그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를 승인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⑦전산자료중 승인신청당시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당해 통계자료를 보유한 기관에서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직접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2(주행거리 변경 사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5, 2011.11.25>

1.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침수·낙뢰 등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주행거리계와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연료계 또는 속도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
 나.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본조신설 2007.7.19]

제1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성능시험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에 관한 사무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직무 정지 및 해임에 관한 사무
3. 법 제76조제12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제15조(과징금의 부과·징수) ①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9, 2002.12.31, 2007.12.31,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2008.2.29, 2013.3.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7.29, 2008.2.29, 2013.3.23>

④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2.12.31>

⑤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74조제1항의 경우에는 1천만원(종합검사대행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법 제74조제2항의 경우에는 자동차,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용기 매출액의 1천분의 1(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9.7.29, 2002.12.31, 2008.2.29, 2009.3.27, 2011.11.25, 2013.3.23>

⑥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6조 삭제 <1997.12.31>

제17조(권한의 위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12.20, 1997.12.31, 1998.12.31, 1999.7.29, 2002.12.31, 2008.2.29, 2009.3.27, 2010.2.5, 2011.11.25, 2013.3.23>

1.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에 관한 업무(자동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검사업무는 제외한다)

1의2. 삭제 <1999.7.29>

2.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3.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4.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4의2.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4의3.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명령
6.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
7. 법 제4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을 위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한한다)의 지정과 이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8.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의 이용승인(2이상의 시·도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의2. 법 제75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9.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84조제2항제9호·제10호 및 제3항제5호·제7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처분 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제외한다)
10.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신설 2009.3.27, 2013.3.23>

③시·도지사는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7.29, 2009.3.27, 2010.2.5, 2011.11.25>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신청의 처리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발급(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처리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처리

7. 법 제13조 (동조제8항 및 제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
8.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의 처리
9. 법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
10.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록의 처리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12. 삭제 <1999.7.29>
1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15. 삭제 <1999.7.29>
16. 삭제 <1999.7.29>
1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
18.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19. 삭제 <1999.7.29>
20. 삭제 <1999.7.29>
21. 삭제 <1999.7.29>
22. 삭제 <1999.7.29>
23. 삭제 <1999.7.29>
24. 삭제 <2011.11.25>
25. 삭제 <1999.7.29>
26. 삭제 <1999.7.29>
27. 삭제 <1999.7.29>
28. 삭제 <1999.7.29>
29. 삭제 <1999.7.29>
30. 삭제 <1999.7.29>
31. 삭제 <1999.7.29>
32. 삭제 <1999.7.29>
33.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4.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법 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5.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72조제1항·제2항 및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명령·처분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9.3.27, 2013.3.23>

제18조(권한의 재위임) ①시·도지사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내용 및 수임기관의 기구·인원·업무처리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권한을 재위임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재위임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업무의 처리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9.7.29>

제19조(권한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 단서(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조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를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1997.12.20, 2002.12.31, 2008.2.29, 2010.2.5, 2013.3.23>

② 삭제 <2002.12.31>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6항에 따라 법 제30조의4(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의 면제에 관한 업무 및 법 제40조제1항(법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신설 1999.7.29, 2002.12.31, 2008.2.29, 2008.9.25, 2010.2.5, 2013.3.23>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에 따라 법 제34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신설 2002.12.31, 2008.9.25, 2010.2.5>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에 따라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의 신고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개정 1997.12.20, 1999.7.29, 2002.12.31, 2010.2.5>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7항에 따라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개정 1999.7.29, 2002.12.31, 2010.2.5>

⑦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업자단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20, 1999.7.29, 2002.12.31, 2010.2.5>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신설 2008.9.25, 2013.3.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신설 2011.11.25, 2013.3.23>

1.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파기에 관한 업무
3. 법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에 관한 업무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전문개정 2008.9.25]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①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범칙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1.6.30]

제22조(통고처분의 절차)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범칙금액·위반내용·적용법조·납부장소·납부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기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1.6.30]

부칙 <제15166호,1996.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차령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은 이 영에 의하여 기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제2호 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7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8제11호가목을 삭제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2제1항 내지 제5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③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로 한다.

④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단서중 "자동차관리법 제7조"를 "자동차관리법 제8조"로,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자동차관리법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동조 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를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⑤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별표 1의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업자의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계속검사수수료"를 각각 "자동차정기검사수수료"로, "계속검사시마다"를 각각 "정기검사시마다"로 한다.

별표 1의 자동차정비업자의 대상란중 "자동차정비업자(자가자동차 정비업자를 포함한다)"를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부분정비업자를 제외한다)"로,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연합회"를 각각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을 "자동차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544호,1997.12.20>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66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6498호,1999.7.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2호중 (1)란, (4)란, (5)란 및 (6)란의 개정규정과 별표 2 제3호란, 제21호의2란, 제23호의2란, 제23호의3란 및 제29호의2란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152호,2001.3.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치자동차의 폐차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방치자동차의 폐차 등의 통지를 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③(차령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은 이 영에 의하여 기산된 것으로 본다.

④(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260호,2001.6.29>(도로교통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9호"를 "제9호 및 제12호"로 한다.

12.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②생략

부칙 <제17286호,2001.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1 제2호(1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874호,200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9493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2호중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를 "제99조 및 제104조"로 하고, "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을 "제63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으로 한다.

⑩생략

부칙 <제19947호,2007.3.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을 시행하기 전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178호,2007.7.19>

이 영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06호,2007.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1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 제3항 및 제5항 전단, 제17조제1항전단ㆍ제9호 및 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1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3항ㆍ제6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87>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1035호,2008.9.25>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9> 까지 생략

<16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위반내용란 제18호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란 제21호 및 같은 란 제3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376호,2009.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보험 가입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22021호,2010.2.5>

이 영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83호,2010.3.23>

이 영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19호,2011.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11호마목,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호나목,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3제3항, 제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의3제5호,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의5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1호, 제8조의2제3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조제3항ㆍ제6항, 제22조제3항 및 별표 1 Ⅱ. 제18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620호,2013.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나목(법 제58조제8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 Ⅱ 제1호 및 별표 2 제2호처목(종전의 어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부분정비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자동차부분정비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등록한 자로 본다.

부칙 <제25449호,2014.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19호,2015.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24호,2015.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4.7.7>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관련)

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등에 대한 부과기준(법 제74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	근 거 법 령	과 징 금 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1. 시설·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2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10호 법 제47조제5항제4호	50	100	100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6호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 법 제47조제5항제2호	150	200	200
3. 등록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8호	100		

Ⅱ.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부과기준(법 제74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	근 거 법 령	과 징 금 액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1. 삭제 <2013.6.17>				
2.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를 자동차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나목		50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폐차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4호나목			100

4.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4호	50	100	50
5.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4호	150	300	150
6. 법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6호	50	100	50
7.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7호	200	300	200
8.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가. 사업장의 전부 나. 사업장의 일부	법 제66조제1항제7호	 150 50	 300 100	 150 50
9,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7호	100	200	100
10. 법 제57조제1항제4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7호	50	100	50
10의2. 법 제5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 제7호	200	150	150
11.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작업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마목		200	
12.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4호다목			100
13. 법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4호라목			300

14. 법 제58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8호	20	30	
15.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2호사목	20		
16.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정비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아목		30	
17.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자목		50	
18.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50	100	50
19. 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된 자동차의 폐차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4호마목			20

Ⅲ.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부과기준(법 제74조제2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액
1. 법 제30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제1호	해당 자동차,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용기 매출액의 1천분의 1(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법 제30조의2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제2호	
3. 법 제3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를 판매한 경우	법 제74조제2항제3호	

비고: 매출액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 판매 개수(대수)에 자동차,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용기 각각의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별표 2] <개정 2014.7.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되,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부과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 등록신청대행 의무자가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한 경우 2) 등록신청대행기간이 지난 경우 가) 10일 이내인 때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법 제84조제2항 제1호·제5호	 50 5 1
나. 법 제8조제3항 또는 법 제58조제8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3항 제7호의2	10
다. 법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 제1호의2	100
라.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 제2호	50
마.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 제3호	10
바.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4조제2항 제4호	30
사. 법 제10조제5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82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4조제3항 제1호	30
아.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때 2) 신청기간만료일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법 제84조제3항 제2호	 2 1
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하	법 제84조제3항	

지 않은 경우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까지 나)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2)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	5 1 20
차. 법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2)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법 제84조제2항제6호	5 1
카. 법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가)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나) 신청기간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2) 그 밖의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7호	5 1 10
타. 법 제18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두고 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을 갖춰 두는 경우와 피견인자동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자동차의 경우 2) 이륜자동차의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8호	5 2
파. 법 제22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9호	100

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0호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50
2)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예방 또는 해소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3)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5
거.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1호	
1) 기간을 경과한 경우		
가) 10일 이내인 경우		5
나)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1
2) 목적을 위반한 경우		50
3)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0
너.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2호	
1)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3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1
더.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13호	
1) 제8조제2항제7호의 전기·전자장치 중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제8조제2항제18호 중 운행기록계		100
2) 제8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2항제7호(연료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제외한다)		30
3) 제8조제2항제11호·제19호		5
4)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2호(차축은 제		3

외한다), 제3호, 제6호,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8호(주행거리계, 운행기록계는 제외한다)		
러. 법 제30조의3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3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조사·보고·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 제14호	100
머. 법 제31조의2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 제15호	100
버.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법 제33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3항 제3호	50
서. 법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 제15호의2	10
어. 법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1) 내압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등 부속장치는 제외한다) 2) 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등 부속장치	법 제84조제2항 제13호의2	 100 30
저. 법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4조제1항	500
처. 삭제 <2013.6.17>		
커.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	법 제84조제3항 제5호·제6호	2

내인 경우 2)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 시마다		1
터. 법 제45조제8항(법 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 제16호	10
퍼.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1) 제작·수리 또는 수입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2) 사용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가) 검정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나) 검정을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초과 시마다	법 제84조제2항 제17호	100 30 1
허.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 제18호	50
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경우 2)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초과, 180일 이내인 경우 3)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80일을 초과한 경우	법 제84조제3항 제2호	2 6 10
노.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84조제3항 제2호	20
도. 법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3항 제7호	30
로.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1) 연료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2) 그 밖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법 제34조의 구조·장치 변경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법 제84조제2항 제19호	20 3

모.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0호	100
보.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양도·양수 또는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1호	 100 10
소. 법 제5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1호의2	30
오. 자동차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2호	30
조. 법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1) 법인인 경우 2) 법인이 아닌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3호	 70 35
초. 법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4호	30
코.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8호	20

비고

1. 위 표 차목, 카목1) 및 퍼목2)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은 각각 50만원으로, 아목 및 커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은 각각 30만원으로 한다.
2. 위반행위가 가목2) 및 거목1)에 함께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거목1) 및 너목에 함께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목1)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별표 3] <개정 2013.6.17>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1조제1항관련)

(단위 : 만원)

1. 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 위반행위

범 칙 행 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가. 소형자동차정비업	법 제53조제1항 및 제79조제3호	
(1) 대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300
(2) 중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200
나. 자동차전문정비업		
(1) 판금·용접 및 도장행위를 수반하는 점검·정비		300
(2) (1)외의 점검·정비		150

주 : 작업범위의 위반내용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로 인한 경우에는 범칙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함

2. 자동차무단방치행위

(단위 : 만원)

범 칙 행 위	해당법조문	범 칙 금 액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	
			경형·소형	중형·대형
가.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법 제26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제8호	20	20	30
나. 자진처리 명령 불응한 경우		100	100	150

3. 이전등록신청 위반행위 (단위: 만원)

범 칙 행 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및 제81조제2호	10
나.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 시 마다		1

주: 나목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범칙금의 한도금액은 50만원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5.7.7] [국토교통부령 제00214호, 2015.7.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7.7>

[전문개정 2011.12.15]

제2장 자동차등록번호판

제1절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봉인등

제3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앞쪽과 뒷쪽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앞쪽에는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7.7>

1.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판의 좌우가 대칭이 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량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의 앞쪽과 뒷쪽에서 볼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이나 장치등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3. 뒷쪽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는 차체의 뒷쪽 끝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체의 뒷쪽 끝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로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동차의 앞쪽에 부착하는 등록번호판의 접합부분은 볼트로만 체결할 것

[전문개정 2004.12.6]

[제목개정 2015.7.7]

제4조(봉인의 위치등) ①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이하 "봉인"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뒷면에 붙인 등록번호판 왼쪽의 접합부분에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0.2.18>

③봉인의 구조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제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2에서 같다}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13.6.17>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착·봉인하고 그 날짜를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2010.2.18, 2013.6.17>

③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1.2, 2006.6.9, 2010.2.18, 2013.6.17>

1. 삭제 <2006.6.9>
2. 삭제 <2003.1.2>
3.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동차등록증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에 따라 다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봉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6.17>

⑤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06.6.9, 2010.2.18, 2011.4.11>

1.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인 경우에 한하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⑥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수불·발급 및 봉인시행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6.9, 2010.2.18>

제5조의2(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① 법 제10조제7항 전단에서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부장치를 말한다.

1. 자동차의 외부에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일 것
2. 영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없는 자전거 등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구"라 한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보조 장치일 것
3.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외부장치에 고정되어 있을 것
4. 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②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 및 제1항에 따른 외부장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외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동일한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 및 봉인하여야 한다.

④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시·도지사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외부장치를 판매 또는 폐기하는 경우
2. 법 제11조에 따라 변경등록(등록번호의 변경에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4.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6.17]

제6조(등록번호판의 규격 등) ①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 및 색상은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비사업용 및 외교용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는 관할관청을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9.16, 2010.2.18>

③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색상 그 밖의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2013.3.23>

[전문개정 2004.12.6]

제2절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등 <개정 2010.2.18>

제7조(지정신청 등)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 사업계획서
2.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등을 고려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3.1.2, 2010.2.18>

1. 사업장의 평면도와 시설의 명세서
2. 사업장의 용지 및 사무실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업무개시일 및 사업구역을 정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2.18>

[제목개정 2010.2.18]

제8조(시설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2.18>

제9조 삭제 <1999.2.19>

제1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전문개정 1999.2.19]

[제목개정 2010.2.18]

제1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및 그 종사원은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별표 4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을 달아야 한다. <개정 2010.2.18>

[전문개정 1999.2.19]

[제목개정 2010.2.18]

제12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①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등록번호판발급 및 봉인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②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을 받는 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2.18>

[전문개정 1999.2.19]

[제목개정 2010.2.18]

제13조(사업구역의 조정)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외에 해당 사업구역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 표기등

제14조(차대번호등의 표기)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표기방식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표기한 때에는 이 규칙에 적합하게 표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6.9, 2008.3.14, 2009.4.8, 2013.3.23>

1. 제15조제3항에 따라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자는 배정 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를 포함하여 그가 제작·조립하는 자동차의 특성 및 제작일련번호가 나타나도록 표기할 것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자 및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지정표기시행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공통 차대번호표기부호(이하 "국가공통부호"라 한다)를 포함하여 자동차의 특성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자등록번호, 제작일련번호가 나타나도록 표기할 것
3. 원동기의 경우에는 그 형식이 나타나도록 표기할 것
4.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은 순차적으로 연결된 숫자 또는 알파벳으로 표기하되, 누구든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기하고 쉽게 지우거나 고칠 수 없게 할 것. 다만, 지정표기시행자가 이륜자동차에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차대 또는 차체에 명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다.

②자동차 또는 원동기의 제작·조립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표기시행자"라 한다)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는 때에는 표기위치를 자동차취급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세부내용 및 표기방법 등 표기시행(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14, 2013.3.23>

[전문개정 2003.1.2]

제15조(표기부호의 배정) ①표기시행자는 그가 사용할 표기부호를 배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04.11.29, 2005.9.16, 2006.6.9, 2008.3.14, 2011.12.15, 2013.3.23>

1. 삭제 <2006.6.9>
2. 연간 2천500대 이상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조립한 실적(신규 제작·조립자의 경우에는 연간 제작·조립계획대수를 말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검사시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표기시행계획서(표기의 배열·위치·각인관리요령·표기시행장소 및 방법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06.6.9, 2010.2.18, 2011.4.11,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지정표기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4.8,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차대번호의 표기부호를 배정받은 표기시행자가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거나 기타 표기를 계속하게 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표기부호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6.6.9, 2008.3.14, 2013.3.23>

제16조(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지정표기시행자로 지정하여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9.16, 2008.3.14, 2013.3.23>

제17조(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①표기시행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에 17자리로 된 표기내용 설명서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5.26>

②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8.5.26>

제18조(표기를 지우는 행위등) ①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4.12.6, 2014.12.31>

1. 다음 각목의 사유로 인하여 표기부분의 식별이 곤란하거나, 표기부분의 정비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다만,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에는 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자동차의 파손 또는 부식
 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행하는 튜닝
2. 표기시행자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잘못 표기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3. 법 제2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4.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등에 의하여 공매된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손상되어 있는 경우

②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등인정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교통안전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를 지우게 하거나 표기를 받게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할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등명령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소유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지정표기시행자는 차대번호의 재표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해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차대번호를 차대 또는 차체의 적정한 위치에 임시로 표기할 수 있다.<개정 2004.12.6>

제19조(표기시행결과의 관리) ①표기시행자 또는 지정표기시행자는 별책 1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대장을 비치하고 표기시행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표기시행자 또는 지정표기시행자가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별책 1의 내용이 포함된 표기시행 결과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6.9>

②지정표기시행자는 표기시행자가 제출한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와 다르게 표기하거나 법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표기시행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제20조(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 ①표기시행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②표기시행자는 표기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③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시행자변경사항통보를 받은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시행폐지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2006.6.9, 2008.3.14, 2013.3.23>

제21조(표기비용)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표기시행자로부터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표기시행자가 정하는 표기비용을 지정표기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9.2.19>

제4장 자동차처리명령등 <개정 1999.12.31>

제22조 삭제 <1999.12.31>

제23조 삭제 <1999.12.31>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처리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2013.9.6>

제25조(방치자동차의 매각) ①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방치자동차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5.7.7>

1. 매각하고자 하는 방치자동차의 예정가격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이상 유찰된 경우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방치자동차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예정일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2015.7.7>

1. 매각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 매각장소 및 매각일시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치자동차를 매각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2015.7.7>

1. 매각한 자동차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

제26조(임시운행허가신청등)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시험·연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8, 2010.2.18, 2015.7.7>

②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운행허가증과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2.18, 2015.7.7>

③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자동차를 운행하려는 때에는 임시운행허가증을 자동차의 앞면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제3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에 붙여야 한다.<개정 2015.7.7>

④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재질·규격·색깔 및 표기방법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14, 2013.3.23>

제27조(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 보기 어렵게 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7>

②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처분중이 아님을 확인한 후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2.18, 2015.7.7>

제28조(운행정지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사용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으려는 때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5.26, 1998.8.20, 1999.12.31, 2005.9.16, 2009.4.8, 2010.2.18, 2013.12.12, 2015.7.7>

1.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1의2.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받아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3.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이 회수되거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4. 압류로 인하여 운행정지중인 자동차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

②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임시운행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등록증 또는 압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개정 2015.7.7>

③시·도지사는 자동차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을 하기 위하여 보관중인 자동차등록증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자동차사용자는 임시운행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5.7.7>

제29조(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①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등록 신청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2010.11.25>

1.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임시운행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삭제 <2010.11.25>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반납받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10.2.18, 2010.11.25>

제30조(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시·도지사는 별책 2의 임시운행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의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6.9>

제6장 자동차의 자기인증등 <개정 2003.1.2>

제1절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제작자등 등록 등 <개정 2003.1.2>

제31조(자기인증 기준)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2010.2.18>

[본조신설 2003.1.2]

제32조(제작자등의 등록신청) ①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5.9.16, 2006.6.9, 2008.3.14, 2009.4.8, 2010.2.18, 2013.3.23>

1. 삭제 <2006.6.9>
2.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조립실적)
3.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수입자만 해당한다)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최근 3년 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
4.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의 확보 내역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안전검사 시설 확보 내역
6.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하는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등의 서류(수입자에 한한다)
7. 제49조의2에 따른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06.6.9, 2010.2.18, 2011.4.11, 2013.3.23>

③법 제3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명, 대표자 성명 또는 법인주소의 변경이나 외국최초 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계약기간의 변경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1.29, 2006.6.9, 2008.3.14, 2009.4.8, 2013.3.23>

[전문개정 2003.1.2]

[제목개정 2010.2.18]

제33조(등록증 발급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 능력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제작자등록번호의 변경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4.8, 2013.3.23>

③ 제작자등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8호서식의 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4.8, 2013.3.23>

[전문개정 2003.1.2]

[제목개정 2009.4.8]

제34조(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서 "생산 규모, 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인증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9.16, 2006.6.9, 2008.3.14, 2009.4.8, 2010.2.18, 2013.3.23>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자일 것
2. 연간 제작·조립대수(신규 제작·조립자인 경우에는 연간 제작·조립계획대수를 말한다)가 2천 500대 이상이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조립하는 자일 것
3.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차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안전기준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 자일 것
 가. 승용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97조 내지 제104조, 제110조
 나. 승합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7조, 제103조, 제110조
 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6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10조
 라. 피견인자동차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6조

[전문개정 2003.1.2]

제2절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개정 2003.1.2>

제35조(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①법 제30조제3항에서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4.8, 2010.2.18, 2013.3.23>

1. 제원측정
2. 중량분포
3. 주행장치의 안전성
4. 그 밖의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사항

②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 하는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이하 "기술검토"라 한다) 및 당해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4.8, 2011.12.15>

[전문개정 2003.1.2]

제36조(기술검토 신청 등) ①제35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3. 차대번호 표기내용 또는 표기시행계획(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자기인증표시의 내용 및 부착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의 개발목적·기술적 특징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는 자동차의 경우 당해 화물자동차 제작자등이 제시한 축별 설계허용하중 범위 이내에서 조립 가능성 여부
2. 차대번호표기 및 자기인증표시 방법의 적정성
3.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39조제1항에 따라 변경통보한 제원과 동일한 변속기·타이어·림의 형식 또는 모델연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0.2.18>

[본조신설 2003.1.2]

제37조(안전검사) ①제36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1.12.15>

1. 별지 제21호서식의 기술검토서 사본
2. 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4.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자동차에 한한다)
5.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기술검토서의 내용, 자동차제원표 등을 확인하는 등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제작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안전검사시설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6.6.9, 2010.2.18, 2011.12.15>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기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하여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삭제 <2011.12.15>

[전문개정 2003.1.2]

제37조의2(안전검사의 직접 실시) ①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안전검사 직접실시 신청서에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검사시설의 적합여부 및 인력·장비 등의 구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사실시 가능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받은 제작자등이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15]

제38조(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 ①제35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다만,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제작자등(피견인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제34조제3호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12.15>

②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기의 시설에서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추고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제작자등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안전검사시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5>

1. 안전검사시설 확보 내역
2. 안전검사시설 사양서
3. 안전검사시설 정도확인서

③성능시험대행자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안전검사시설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2.18, 2011.12.15>

[전문개정 2006.6.9]

제39조(제원의 통보) ①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의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제원의 허용차 범위이내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9.16>

1.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으로부터 제원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그 제원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제작자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제원관리번호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결과를 월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2013.3.2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통보 및 제원표 작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14, 2013.3.23>

[전문개정 2003.1.2]

제39조의2(자기인증의 표시) ①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별표 5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2013.3.23>

1. 인증표시의 부착방법은 리벳 또는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일 것
2. 자기인증표시는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한 위치에 부착할 것
 가. 운전자석 측면의 문경첩장치가 부착되는 패널부
 나. 운전자석 측면의 문걸쇠고리의 패널부
 다. 나목의 패널부와 만나는 운전자석 측면의 문의 모서리부
 라. 계기패널의 좌측 부분
 마. 운전자석 측면 문의 안쪽부분의 패널
 바.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전면 좌측부
 사. 차체 구조상 가목 내지 바목에 규정된 위치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부착할 것
3. 인증표시문자(숫자와 차명등은 제외한다)는 한글을 사용하고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4. 인증표시 내용의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될 것

[본조신설 2003.1.2]

제40조(자기인증적합조사 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30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이하 "자기인증적합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자동차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4.8,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3.14, 2013.3.23>

1.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정보 수집·분석 결과
2. 이미 시행한 자기인증적합조사 등의 결과
3. 자동차 판매대수 또는 판매 동향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연간계획중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및 내용 등을 제작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08.3.14, 2013.3.23>

[전문개정 2003.1.2]

제40조의2(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 ①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조사 일정·방법·인력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4.8, 2013.3.23>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 필요한 자동차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자기인증적합조사중 제작자등이 당해 조사 대상 자동차가 자기인증의 기준에 부적합을 스스로 인정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3.14, 2013.3.23>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자료의 요청, 결과보고 및 적정성 검토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6.6.9, 2008.3.14, 2013.3.23>

[본조신설 2003.1.2]

제40조의3(자기인증의 면제 신청) ①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2, 2009.4.8>

② 삭제 <2010.2.18>

③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자기인증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자기인증면제확인서를, 자기인증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각각 신청인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3.11.22, 2008.3.14, 2009.4.8, 2010.2.18>

④ 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자기인증면제확인서를 통지한 경우에는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그 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신설 2010.2.18>

[본조신설 2003.1.2]

제6장의2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신설 2011.12.15, 2014.10.31>

제40조의4(부품자기인증)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그 자동차부품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부품안전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15]

제40조의5(부품제작자등의 등록) ①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 계획에 관한 서류
2.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의 확보내역(시험시설 사용계약서를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
3. 부품자기인증과 관련된 기술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법인 명칭 및 주소의 변경
2. 대표자 성명의 변경
3.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의 변경(해당시설 사용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1.12.15]

제40조의6(등록증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신청내용이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5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이 변경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부품제작자등록번호 변경없이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2.15]

제40조의7(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① 부품제작자등은 부품자기인증을 위하여 별표 4의3에 따른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시설에 대한 사용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15]

제40조의8(자동차부품 제원의 통보) ①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부품을 판매하기 10일전까지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자동차부품등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자동차부품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부품의 제원표
2. 자동차부품의 외관도
3. 그 밖에 자동차부품의 기능설명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원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한 성능시험대행자는 부품제작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자동차부품 제원관리번호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원의 통보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15]

제40조의9(부품자기인증의 표시) ①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부품(포장재를 포함한다)에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표시할 것
2. 부품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3.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표시할 것
4. 인증표시의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되게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의 표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15]

제40조의10(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품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법 제30조의3제1항 각 호(제3호의3 및 제7호는 제외한다)에의 해당 여부를 조사(이하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자동차부품의 조사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31>

② 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를 위한 연간계획의 내용 및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정·방법·인력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의 조사방법, 자료제출, 결과보고, 부품제작자등의 시정조치 계획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2.15]

제40조의11(대체부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이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제3호의3 또는 제7호에의 해당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 수립, 조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0.31]

제40조의12(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① 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의 기준(이하 "대체부품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이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2. 재료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이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0.31]

제40조의13(대체부품 인증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를 제40조의1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이하 "대체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체부품인증기관은 제40조의12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고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체부품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대체부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부품인증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0.31]

제40조의14(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① 법 제30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부품 관련 기관·단체 또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 대체부품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대체부품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대체부품인증대상 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평가항목·평가기준 및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0.31]

제40조의15(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40조의1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0.31]

제40조의16(대체부품 인증의 표시) ① 법 제30조의5제4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대체부품에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표시할 것
2. 대체부품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3. 인증표시는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의 표시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0.31]

제7장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 <신설 2003.1.2>

제1절 제작결함의 시정 등 <신설 2003.1.2>

제41조(제작결함의 시정)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 또는 제14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자동차부품만 해당한다)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9, 2008.3.14, 2009.4.8, 2011.12.15, 2013.3.23, 2014.10.6>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1년 6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장소 및 담당부서
4.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 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6. 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 시정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장소 및 연락처 등의 안내
7.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작결함을 시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기간내에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지체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공고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신설 2011.12.15, 2013.3.23>

④제1항의 통지 및 공고절차·양식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14, 2011.12.15, 2013.3.23>

[전문개정 2003.1.2]

제41조의2(시정조치의 면제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
2.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받으려는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그 결함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시정조치 면제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면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의 적합여부,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필요한 확인을 지시하거나 제45조에 따른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면제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시정조치 면제검토 결과서를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2.15]

제41조의3(제작결함의 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제작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9, 2008.3.14, 2011.12.15, 2013.3.23>

1.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결함정보 수집·분석 결과 제작결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제작결함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거나 소비자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2조에 따른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여 제작결함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조사대상·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4.12.6, 2011.12.15>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6.6.9>

④제3항에 따른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단계별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6.6.9, 2008.3.14, 2013.3.23>

[본조신설 2003.1.2]

제41조의4(제작결함조사의 시행)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작결함 조사를 하게 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조사일정·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6.9, 2011.12.15>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

제42조(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①성능시험대행자는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15, 2013.3.23>

1.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명칭 및 제작연도
2. 제작결함 내용
3. 제작결함이 자동차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작결함조사 중 제작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계획을 보고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제작결함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3.14, 2011.12.15, 2013.3.23>

[전문개정 2003.1.2]

제43조(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①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시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공고 5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4.8, 2011.12.15, 2013.3.23, 2014.10.6>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명칭, 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장치와 결함원인
3.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및 판매수
4.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계획의 내용
5.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공고문
6. 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보상계획
 가.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장소 및 연락처
 나.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및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②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 조치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다시 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08.3.14, 2011.12.15, 2013.3.23>

③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시정조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2011.12.15, 2013.3.23>

[전문개정 2003.1.2]

제44조(제작결함정보수집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정보(이하 "결함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기 위하여 결함정보전산망을 설치·운영하거나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09.4.8,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결함정보수집용 전용전화·결함정보전산망 및 소비자 불만 신고서 등의 방법으로 결함정보 및 자기인증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분석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2009.4.8,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결함정보 수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도지사, 성능시험대행자,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

비사업자,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연합회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연합회,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 대하여 제작결함의 내용 및 원인 등을 포함한 제작결함의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3.14, 2011.12.15, 2013.3.23, 2014.10.6>

④결함정보의 수집·관리·분석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14, 2013.3.23>

[전문개정 2003.1.2]

제45조(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관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3.14, 2009.4.8, 2011.12.15, 2013.3.23>

1. 법 제30조의3에 따른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작결함시정명령 및 제작결함조사에 관한 사항
3.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평가에 관한 사항
5. 제41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면제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14, 2013.3.23>

[전문개정 2003.1.2]

제45조의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상을 할 때의 보상금액은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운영(계약을 통하여 정비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 시정에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15>

② 법 제3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결함사실을 공개한 날은 제41조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09.4.8]

제45조의3(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비용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작결함의 시정조치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작자등은 필요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결함을 자체 시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15>

1. 제134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한다)
3.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및 입금통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보상을 청

구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2.15>

③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한 자가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상청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거부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혀 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5>

④ 그 밖에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4.8]

제2절 성능시험 <개정 2003.1.2>

제46조(성능시험의 구분)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15, 2013.3.23>

1. 국가간 상호인증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위한 시험(이하 "상호인증시험"이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위한 시험(이하 "부품인증시험"이라 한다)
3.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위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하 "안전시험"이라 한다)

[전문개정 2003.1.2]

제47조(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성능시험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상호인증시험의 경우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9.16, 2008.3.14, 2013.3.23>

[전문개정 2003.1.2]

제48조(성능시험의 신청 등) ①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15,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그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을 신청한 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시험대상 부품 또는 장치와 설계도면,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2013.3.23>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상호인증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1부는 작성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부품 또는 장치의 평가결과가 국가간상호인

증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④성능시험대행자는 부품인증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부품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부품인증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⑤성능시험대행자는 안전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1부는 작성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⑥ 삭제 <2009.4.8>

[전문개정 2003.1.2]

제49조(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개정 2004.12.6, 2008.3.14, 2009.4.8, 2010.2.18, 2013.3.23>

1. 상호인증시험의 경우에는 국가간상호인증협약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2. 부품인증시험의 경우에는 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품인증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3. 안전시험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충돌구동장비·고속촬영기·인체모형교정장비 및 고정벽 등의 충돌시험시설
 나. 충격하중측정장비·충격속도측정장비 및 머리충격부위측정장비 등의 충격 및 충돌모의시험시설
 다. 조도계·색도계 및 영상막 등의 등화장치시험시설
 라. 3차원측정기·3차원마네킨·영상막 및 구면계 등의 운전자시계범위시험시설
 마. 제동력측정기·답력계·조향각측정기 및 차대동력계 등의 동력 및 제동관련시험시설
 바. 엔진동력계·대기압력계 및 매연측정기 등의 원동기출력시험시설
 사. 항온실·연속기록계·온도센서·안개발생기 및 공기압력계 등의 시계확보장치시험시설
 아. 연속기록계·온도센서 및 차대동력계 등의 가속제어장치복귀능력시험시설
 자. 전자파 무반사실, 전계강도 측정장비, 차대동력계, 공중선마스트 등의 전자파장해방지장치 시험시설
 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안전시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4.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5. 법 제29조의2에 따른 안전기준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하 "성능시험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제원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14, 2013.3.23>

③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11.29, 2005.9.16, 2006.8.7, 2008.3.14, 2009.4.8, 2010.2.18, 2011.4.11, 2013.3.23>

1. 삭제 <2006.8.7>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인력 현황
3. 성능시험대행자운영에 관한 규정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대행자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2013.3.23>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의 성능시험에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2013.3.23>

[전문개정 2003.1.2]

제49조의2(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 ① 제작자등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를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해당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3.23, 2014.10.6>

[본조신설 2010.2.18]

제49조의3(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의 무상수리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장치: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4만킬로미터 이내일 것

② 제작자등은 법 제3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부품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작자등은 법 제3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 자료를 해당 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해당 가격 자료가 표시된 인쇄물로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4.1.16>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에 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른 부품의 공급 기간 이상 동안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야 하고, 분기별로 해당 자료를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제작자등에게 이행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작자등이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1.1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이행명령을 하기 전 무상수리 대상여부 등 제작자등과 자동차 소유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성능시험대행자 또는 학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3.3.23, 2014.1.16>

[본조신설 2010.2.18]

제49조의4(기술지도·교육의 대상 및 방법) ① 법 제3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지도·교육 대상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교육
2. CD, DVD 등 영상녹화물의 제공을 통한 시청각 교육
3. 교재 및 참고자료의 제공을 통한 서면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7.7]

제49조의5(정비 장비·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① 법 제3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장비 및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 고장진단기(고장진단기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2. 자료: 정비매뉴얼(전기회로도, 부품분해조립도, 진단가이드, 전자부품카달로그 및 차체정비매뉴얼 등을 포함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쇄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7.7]

제3절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및 유지 <개정 2003.1.2, 2011.12.15>

제50조(자료의 제공) ①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부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6.6.9, 2011.12.15>

1.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취급설명서
2.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안내문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1.12.15, 2013.3.23>

[본조신설 2003.1.2]

제51조(자료의 기록유지 등)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당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날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9, 2011.12.15, 2013.3.23, 2014.1.16>

1. 수출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결함 시정과 관련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나. 외국의 결정에 의한 시정조치 관련자료

1의2. 수입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과 동종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외국에서의 제작 결함 시정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정조치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나. 외국의 결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된 사항과 관련된 자료

2. 자동차 소유자에게 고지하여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수리내용과 관련한 자료 및 그 안내문
3. 제작자등이 실시한 자체 유·무상 점검·정비 또는 품질개선에 관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이루어진 기술 통보문(정비통신문, 기술통신문 등)
 나. 제작자등과 정비업소 사이에 정기적으로 주고 받은 기술정보 자료
4. 자기인증적합조사 또는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면
 나. 사양 및 설계변경 관련자료
 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기능이상으로 제기된 소비자 불만사항
 라. 자동차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유·무상 점검·정비 및 교환 내역
5. 안전기준의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안전시험 결과 및 제원통보 등 자기인증 관련자료
6.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구매자 연락처

[본조신설 2003.1.2]

제52조(자료의 제출) 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제51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따른 자료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2.15, 2013.3.23, 2014.1.16>

[본조신설 2003.1.2]

제4절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개정 2003.1.2>

제53조(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제작자등으로부터 안전도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제작자등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안전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3.14, 2013.3.23>

③자동차의 안전도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14, 2013.3.23>

[본조신설 2003.1.2]

제54조(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 ①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도 평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한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는 평가방법·일정 및 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안전도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인터넷·언론매체 및 홍보용 책자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2013.3.23>

[본조신설 2003.1.2]

제8장 자동차의 튜닝 등 <개정 2014.12.31>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법 제34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조·장치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장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6.6.9, 2007.7.20, 2008.3.14, 2010.2.18, 2013.3.23, 2014.12.31>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영 제8조제2항제1호·제2호(차축에 한한다)·제4호·제5호·제7호(연료장치에 한한다) 내지 제10호·제12호 내지 제14호·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튜닝은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12.31, 2003.1.2, 2006.6.9, 2014.2.28, 2014.8.18, 2014.12.31>

1.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튜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나. 동일한 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 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다.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안에서 해당 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3.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4.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튜닝승인을 하는 때에 적용되는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0.2.18, 2013.3.23, 2014.12.3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튜닝을 승인할 수 있다.<신설 2010.2.18, 2013.3.23,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제55조의2(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이하 "튜닝부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부품인증을 하기 위하여 튜닝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이하 "튜닝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튜닝부품인증의 대상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품목 외의 부품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튜닝부품인증기관의 튜닝부품인증업무 수행과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의 성능·품질상태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경우 튜닝부품의 제조사 등은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사실을 튜닝용 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튜닝부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제56조(튜닝의 승인신청 등) ①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튜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2014.12.31>

1.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튜닝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4. 삭제 <2014.2.28>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튜닝내용이 제55조에 따른 튜닝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튜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2014.12.31>

③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 승인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튜닝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1.2, 2014.12.31>

④제3항에 따라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튜닝작업 완료증명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3.1.2, 2010.2.18,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제57조(해체금지대상 자동차장치) ①법 제35조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라 함은 영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8.3.14, 2013.3.23>

②법 제35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4.12.6, 2005.9.16, 2008.3.14, 2013.3.23>

제8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 <신설 2010.3.29>

제57조의2(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법 제35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고속도 및 차량중량 이하의 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이하 "저속전기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3.29]

제57조의3(운행구역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운행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행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해당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운행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29]

제57조의4(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① 법 제35조의3제2항단서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를 하려는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행조건을 정하여 별지 제34호의5서식의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2. 법 제37조와 법 제38조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3.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4. 그 밖에 저속전기자동차의 매매, 폐차 등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발급 받은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3.29]

제57조의5(주민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는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사전에 관련내용을 주민에게 공람시키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운행구역 관련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9]

제57조의6(운행구역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운행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법 제35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권자가 지정한 운행구역이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운행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을 나타내는 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는 별표 5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3.29]

제8장의3 내압용기의 안전관리 <신설 2011.12.15>

제57조의7(내압용기안전기준)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1.12.15]

제57조의8(내압용기검사) ① 법 제3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 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단계검사: 최초로 제조·수입되거나 그 형식이 변경된 내압용기에 대하여 별표 5의3의 기준에 따라 물리적·기술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생산단계검사: 제1호에 따른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와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에 대하여 별표 5의3의 기준에 따라 물리적·기술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6서식의 내압용기검사신청서에 해당 내압용기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2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순서대로 해당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장소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의 절차·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15]

제57조의9(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①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내압용기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원래의 형태로 가공할 수 없도록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 할 것
2. 내압용기검사 장소에서 파기하되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의 입회하에 파기할 것
3. 내압용기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내압용기제조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직접 파기하도록 할 것

② 법 제35조의6제3항에 따라 합격한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및 표시 방법은 별표 5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11.12.15]

제57조의10(내압용기검사의 생략) ① 법 제35조의6제6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가 전부 생략되는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별지 제34호의7서식의 내압용기검사 생략신청서에 검사의 생략에 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내압용기가 영 제9조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의 생략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확인 및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영 제9조 단서에 따라 제조된 내압용기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단계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생략의 절차, 방법 및 결과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15]

제57조의11(내압용기장착검사) ① 법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이하 "내압용기장착검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검사: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 및 자동차에 대하여 별표 5의5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로 확인하는 검사
2. 안전검사: 제1호에 따른 내압용기 및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 및 자동차에 대하여 별표 5의5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물리적·기술적으로 확인하는 검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8서식의 내압용기 기술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내압용기 연료장치의 개요에 관한 도면
2. 내압용기의 장착에 관한 도면
3. 내압용기 검사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내압용기 및 그 가스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자료로서 국토교통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기술검사의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해당 검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34호의9서식의 내압용기 기술검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압용기 기술검사 결과서는 동일한 형식의 내압용기 및 자동차에 대한 최초의 기술검사에 대해서만 교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술검사에 합격한 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4호의10서식의 내압용기 안전검사신청서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11서식의 내압용기장착검사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4호의12서식의 내압용기 장착검사필증을 내압용기 주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15]

제57조의12(내압용기장착검사 기준) 법 제35조의7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은 별표 5의5와 같다.

[본조신설 2011.12.15]

제57조의13(내압용기재검사) ①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이하 "내압용기재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13서식의 내압용기재검사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내압용기 수시검사의 경우에는 그 수시검사 사유에 관한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별표 5의7의 내압용기재검사기준에 따라 해당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압축천연가스(다른 연료와 겸용 또는 혼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압력에 대한 특수한 형태의 검사를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실시한 검사대행자는 별지 제34호의14서식의 내압용기 재검사결과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검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그 결과를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 재검사의 절차·방법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15]

제57조의14(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법 제35조의8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4년, 그 밖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내압용기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법 제35조의7에 따른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은 경우: 신규등록한 날
2. 법 제35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내압용기 정기검사의 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나. 가목 외의 기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
3. 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수시검사를 받은 날
4.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

② 법 제35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그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등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개정 2013.3.23>

1. 내압용기를 교체한 경우
2. 자동차 소유자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자동차의 전복(顚覆), 화재, 추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1.12.15]

제57조의15(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① 법 제35조의8제2항에 따라 불합격한 내압용기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10, 2013.3.23>

1.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정비업자로 하여금 해당 내압용기를 탈착하도록 조치하게 할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또는 내압용기제조자등으로 하여금 파기하게 할 것
3.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입회하에 파기할 것
4. 원래의 형태로 가공할 수 없도록 절단 등의 방법으로 파기할 것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또는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내압용기의 탈착 또는 파기 이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발급하고, 그 발급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10>

1.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별지 제34호의15서식의 내압용기 교체증명서
2.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또는 내압용기제조자등: 별지 제34호의16서식의 내압용기 파기증명서

③ 법 제35조의8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의 각인 및 표시방법은 별표 5의6과 같다.

[본조신설 2011.12.15]

제57조의16(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10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를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내용·일정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내압용기 회수·교환 및 환불·공표(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를 명하는 경우에는 내압용기제조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제품명, 제조일련번호 및 내용적(內容積)
2.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3.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4. 내압용기 결함의 내용
5. 회수등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내압용기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함사실에 대한 공표의 경우에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발행되는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의 게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3.23>

1. 회수등의 대상 및 내용
2. 회수등을 위한 절차 및 방법
3. 회수등에 따른 보상조치
4. 그 밖에 제작결함의 효율적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정·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압용기제조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개정 2013.3.23>

⑤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분기별로 제3항에 따른 회수등에 대한 이행계획의 운영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수등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15]

제57조의17(내압용기의 자료제공 등) ① 내압용기제조자등은 법 제35조의11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내압용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내압용기의 제원에 관한 사항
2. 내압용기 사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내압용기에 안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5조의11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내압용기제조자등이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 및 보존기간, 국토교통부장관에의 보고자료 대상 및 보고기간에 관하여는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12.15]

제9장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등

제1절 점검 및 정비

제58조 삭제 <1999.12.31>

제59조 삭제 <2013.12.12>

제59조의2 삭제 <2013.12.12>

제60조 삭제 <2013.12.12>

제61조 삭제 <2013.12.12>

제62조(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튜닝작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2, 2014.12.31>

제2절 점검 및 정비명령등

제63조(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서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자동차검사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1998.5.26, 1999.12.31>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는 법 제53조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이하 "정비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장 안에서 시행한다.<개정 2013.12.12>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점검·정비한 정비업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점검·정비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작성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서를 첨부한다)하고,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며, 1부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점검·정비결과를 기록·보관한 때에는 점검·정비기록부를 보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12.12>

[제목개정 1998.5.26]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0]

제64조(운행정지명령)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해당 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우측 상단에 별표 10의 자동차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7.20, 2010.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자동차운행정지표지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정비 및 원상복구명령의 이행 또는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떼어내지 못한다.

제6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성명·주소, 자동차의 종류·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별지 제39호서식의 영치증을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판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0]

제3절 삭제 <1999.12.31>

제65조 삭제 <1999.12.31>

제66조 삭제 <1999.12.31>

제67조 삭제 <1999.12.31>

제10장 기계·기구의 관리

제1절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제68조(정밀도검사의 대상·기준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

1. 제동시험기
2. 전조등시험기
3. 사이드슬립측정기
4. 속도계시험기
5. 택시미터주행검사기
6. 가스누출감지기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당해기계·기구를 설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밀도검사(이하 "최초정밀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계·기구에는 그 형식 ·제작번호 및 제작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정밀도검사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1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마다 정밀도검사(이하 "정기정밀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8.5.26>

④최초정밀도검사 또는 정기정밀도검사를 받은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자가 당해기계·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된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한 정밀도검사(이하 "구조변경정밀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그 설치위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최초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의 기준및 방법은 별표 12에 의한다.

제69조(정밀도검사의 신청등) ①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별지 제42호서식의 기계·기구(최초·정기·구조변경)정밀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이 정비연합회와 협의하여 검사예정일을 정하여 이를 통보한 경우에는 검사예정일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밀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가 이미 정밀도검사를 받은 기계·기구와 구조장치가 동일한 제원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8.5.26, 1999.12.31>

1. 주요제원에 관한 서류(최초정밀도검사 및 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주요구조 및 장치에 관한 도면(최초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사용방법 및 교정에 관한 설명서(최초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된 내용(구조변경정밀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예정일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③제68조제3항 단서의 규정(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정밀도검사기간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의 사용자는 당해기계·기구의 검사예정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기계·기구정밀도검사기간조정신청서에 그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밀도검사기간의 조정을 한 때에는 당해기계·기구의 사용자 및 교통안전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1999.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신청을 받은 교통안전공단은 제6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는 지체없이 통지하고, 시·도지사에게는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기계·기구의 사용자는 교통안전공단이 최초정밀도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발급한 별표 13의 기계·기구정밀도검사합격표를 해당 기계·기구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03.1.2, 2010.2.18>

⑤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기구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2절 삭제 <1999.12.31>

제70조 삭제 <1999.12.31>

제71조 삭제 <1999.12.31>

제72조 삭제 <1999.12.31>

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대행자의 지정등

제1절 자동차의 검사

제73조(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는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시설·장비·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자동차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며, 검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에 의한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1. 섬지역(제주도 및 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
2.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자동차검사시설(이하 "자동차검사소"라 한다)로부터 멀리 떨어지거나 자동차검사소가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4조(검사의 유효기간) ①법 제43조제1항제2호에서 "일정 기간"이라 함은 별표 15의2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1998.5.26, 2010.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은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일부터 기산하고,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9.12.31>

③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기간중에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검사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④검사의 유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튜닝 등으로 규모별 세부기준이 변경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규등록한 때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2003.1.2, 2014.12.31>

제75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3.1.2, 2007.7.20>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대상자동차·유예기간 및 대상지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검사를 유예할 것
3.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자동차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7.20>

③ 자동차소유자가 검사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는 연장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개정 2013.12.12>

1.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76조(신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신규검사신청서에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제원표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그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자기인증된 자동차와 같은 제원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제원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2, 2010.2.18>

제77조(정기검사의 신청) ①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5.26, 2003.1.2, 2005.9.16, 2013.12.12>

1. 자동차등록증
2. 보험등의 가입증명서

②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3.1.2, 2009.3.30>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시·도지사는 등록된 자동차 중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0>

1.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2. 정기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방법
3.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 및 근거 법규

[본조신설 1999.12.31]

제78조(튜닝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2014.12.31>

1. 자동차등록증
2. 제5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튜닝승인서
3.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튜닝 전·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
4. 튜닝 전·후의 자동차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6.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튜닝작업 완료증명서(제56조제4항 단서에 따라 튜닝작업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4.12.31]

제79조(임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자동차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당해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2>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명령서

제80조(검사의 실시등) ①제76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법 제43조제2항 및 법 제4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검사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에 기록하고 이를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5.26, 2010.2.18>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합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8.5.26, 1999.2.19, 1999.12.31, 2001.4.19, 2003.1.2,

2005.9.16, 2010.2.18, 2010.6.30, 2011.12.15, 2013.12.12, 2014.12.31 >

1. 동일성 확인
 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상이(자형등의 위조·변조 및 훼손을 포함한다)
 나. 등록번호판의 상이·훼손 또는 망실 및 봉인훼손
 다.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장치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2. 주행장치
 가.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나.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다. 휠 및 타이어의 돌출
3. 조향장치의 변형·용접·느슨함 또는 누유
4.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5. 연료장치중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
6. 전기·전자장치중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7. 차체 및 차대
 가.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심한 손상·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에 관한 불량을 포함한다)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
8.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9. 물품적재장치중 위험물·유해화학물·산업폐기물·쓰레기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의 부식·변형
10. 창유리의 규격품미사용 또는 심한 균열
11.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12. 등화장치
 가.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나.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13. 계기장치중 운행기록계·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14.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의 구조·장치
15. 좌석안전띠가 없는 경우나 좌석안전띠의 심한 손상

③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판정한 자동차중 부적합판정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에 그 사유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적합판정(시정권고사항을 포함한다)을 한 자동차

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2003.1.2, 2010.2.18, 2014.12.31>

1. 신규검사 :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검사증명서의 발급
2. 정기검사 :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유효기간 기재
3. 튜닝검사: 자동차등록증에 튜닝사항 및 튜닝작업 정비업체 기재,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튜닝검사증명서 발급
4. 임시검사 :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적합여부를 기재
5. 시정권고사항이 있는 자동차 : 별지 제49호서식의 시정권고통지서의 발급

④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3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2.18, 2011.12.15>

⑤ 삭제 <2005.2.5>

제80조의2(자동차기능종합진단 등) ① 제77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 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를 작성하여 1부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를 제80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0조제3항의 검사부적합통지서의 발급은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의 발급으로 갈음한다.

②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정기검사항목과 중요부품에 대한 진단결과를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표 또는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에 갈음하여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2.18]

제80조의3(검사장면의 영상관리) ①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고 촬영된 검사장면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촬영된 검사장면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18>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는 때에는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가 촬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3.15]

제81조(재검사)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내에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와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2010.2.18, 2014.12.31>

1. 신규검사·튜닝검사 및 임시검사 :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이내
2. 정기검사 :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 만료후 10일이내. 다만, 검사기간 경과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기간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8.5.26, 2010.2.18>

제2절 자동차검사대행자

제82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동차검사소에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05.9.16, 2010.2.18, 2010.6.30>

제83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 ①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삭제 <2001.4.19>
2.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를 포함한다)
3. 사업계획서
4. 검사업무규정(시설·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54호서식의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제84조(자동차검사소의 배치) 자동차검사소의 배치기준은 자동차검사소의 지역적인 분포의 균형, 검사수요와 별표 17의 자동차검사시설별 연간검사능력대수를 고려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정한다. <개정 2001.4.19>

[전문개정 1999.2.19]

제85조 삭제 <1999.2.19>

제3절 지정정비사업자

제86조(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①법 제45조제1항에서 "자동차정비업자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라 함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자(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제외한다)로서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3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을 확보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8.5.26, 2005.9.16, 2010.2.18, 2010.6.30>
②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는 별표 18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8.5.26>

제87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①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1. 삭제 <1999.12.31>
2.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규정(시설·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4.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서류의 검토 및 현지확인을 한 후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2.18>
③ 삭제 <1999.2.19>
④ 삭제 <1999.2.19>

제88조(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폐업 신고 등) 법 제45조제8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지정정비사업자 휴업·폐업신고서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첨부하여(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18]

제89조 삭제 <1999.2.19>

제4절 기술인력의 직무등

제90조(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등)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구분·자격 및 직무는 별표 20과 같다.

②제1항의 기술인력은 그가 소속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외의 자에게 동시에 소속할 수 없으며, 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정비업무(교정 및 조정작업을 제외한다)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 및 조정작업은 무상으로 한다.<신설 1999.12.31>

제91조(기술인력의 확보보고등) ①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선임하는 기술인력의 해당자격증 사본을 첨부(선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② 삭제 <1999.2.19>

③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책임자 또는 검사주무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9.12.31>

제92조(기술인력의 교육) ①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한 때에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정비연합회가 실시하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2.19>

②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2011.12.15, 2013.3.23>

③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2.19, 2010.2.18>

④제1항에 따라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과목·시간 및 내용 등 교육기준은 별표 19와 같다.<신설 2006.3.15>

제93조(기술인력의 해임명령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임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기술인력을 해임하여야 한다.<개정 1999.2.19>

제12장 택시미터의 검정등

제1절 택시미터의 검정

제94조(택시미터의 구조등) ①자동차에 부착되어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여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의 구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②택시미터의 검정범위는 거리를 측정하는 측정장치(변속기에 부착되어 속도를 측정하는 부분을 말한다)에서부터 기본·주행·할증요금을 표시하는 요금장치(이하 이 조에서 "요금장치"라 한다)까지로 한다.<신설 2001.4.19>

③누구든지 택시미터의 장치중 요금장치를 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택시요금체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내에 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4.19>

제95조(검정의 신청등) ①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59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검정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사용검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 대신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01.4.19, 2005.9.16, 2008.3.14, 2008.11.6, 2011.12.15, 2013.3.23>

1. 제작검정 : 택시미터를 제작 또는 수입한 때에 실시하는 검정
2. 수리검정 : 택시미터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실시하는 검정
 가. 자동차에 택시미터를 부착하는 행위
 나. 제9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내에 요금장치를 개조하는 행위
 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봉인이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거나 검정봉인을 파손하고 수리하는 행위
 라. 요금장치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행위
 마.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리행위
3. 사용검정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검정
 가. 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정기검사시 실시하는 검정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시 실시하는 검정

② 삭제 <1998.5.26>

③시·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은 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검정에 필요한 자료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택시미터의 검정기준 및 방법, 검정봉인 기타 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개정 2008.3.14, 2013.3.23>

제2절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

제96조(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지정정비사업자지정서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수리 및 사용검정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수리 및 사용검정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2.19, 1999.12.31, 2004.11.29, 2005.9.16, 2006.8.7, 2008.3.14, 2010.2.18, 2011.4.11, 2013.3.23>

1. 사업계획서
2. 삭제 <2006.8.7>
3. 검정요원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정설비의 명세서 및 그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5. 삭제 <1999.2.19>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정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61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8.5.26, 2008.3.14, 2010.2.18, 2013.3.23>

1. 별표 18의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을 갖춘 경우(신청인이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2. 별표 21의 택시미터검정설비 및 검정요원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제97조 삭제 <1999.2.19>

제98조(검정기관의 폐지신고)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그 지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월이전에 별지 제62호서식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정비사업자로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10일이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3.1.2, 2004.11.29, 2008.3.14, 2013.3.23>

제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1절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등

제98조의2(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1.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륜자동차 중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자동차
2. 그 밖에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으로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이륜자동차

[본조신설 2011.12.15]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로써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2015.6.4>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2의2.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 (수입한 이륜자동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고 별책 4의 이륜자동차대장을 작성·관리한 후 별지 제64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2007.12.13, 2010.2.18>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는 때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는 "이륜자동차번호"로, "말소등록"은 "사용폐지신고"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본다.<개정 1999.12.31, 2005.9.16>

④ 제2항의 이륜자동차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7.12.13>

제100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등)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번호판과 봉인에는 당해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재질·규격·문자배열 및 도색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다만, 제10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시·도 외의 지역으로 변경신고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3.1.2, 2008.3.14, 2013.3.23, 2014.10.31>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필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해당 이륜자동차가 신고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에 붙이고 왼쪽의 접착부분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는 자에게 이륜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2010.2.18>

③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 내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다시 부착·봉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본다.<개정 1999.12.31., 2003.1.2.>

④이륜자동차번호판을 멸실,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내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3.1.2, 2015.6.4>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3.1.2, 2010.2.18, 2015.6.4>

1. 이륜자동차대장의 변경기재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 및 발급
3.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 및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

⑥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다시 부착하고 봉인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9.12.31>

제101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 중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4.11.29, 2010.2.18, 2014.2.28>

1.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이내
 나.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
 다.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라.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②제1항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3.1.2, 2004.11.29, 2005.9.16, 2010.2.18, 2011.4.11, 2015.6.4>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로 대체할 수 있다)
2.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이륜자동차번호판(제1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 표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2015.6.4>

1. 이륜자동차대장의 변경기재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 및 발급
3. 변경전 이륜자동차번호판의 회수 및 새로운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제1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 표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삭제 <2010.2.18>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륜자동차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를 한 때에는 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3.1.2, 2005.9.16, 2010.2.18, 2014.10.31>

제101조의2(양도인의 소유권이전 변경신고) ① 법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양도인이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1조제2항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변경신고를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최고기간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소유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인의 서류제출을 소유권 이전신고로 보아 제10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신고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소유권 이전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양수인에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의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교체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6.4>

[본조신설 2010.2.18]

제102조(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①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되어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4.11.29, 2010.2.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대장을 대조·확인한 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이륜자동차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2010.2.18, 2012.7.12>

③ 신청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의 장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및 위조·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4.10.31>

[제목개정 2010.2.18]

제103조(사용폐지신고등) ①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6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3.1.2, 2004.11.29, 2005.9.16, 2010.2.18, 2011.4.11, 2015.6.4>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한다)
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이륜자동차대장에 그 사유와 신고연월일을 기재하고 사용폐지신고한 이륜자동차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 당시의 이륜자동차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2010.2.18, 2012.7.12>

④ 신청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발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02조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14.10.31>

제104조(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9조제1항에 규정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1.2]

제2절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등 <개정 2003.1.2>

제105조(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 ①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 및 법 제52조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의 제원을 이륜자동차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70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이륜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의 규정에 의한 제원의 허용차 범위이내의 변경은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9.16, 2010.2.18>

1.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표
2. 이륜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제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3.1.2]

제106조(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①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에 관하여는 제3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이륜자동차 조향축 부근 잘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
2. 제1호의 위치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와 협의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것

[본조신설 2003.1.2]

제106조의2(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등) ①자기인증능력의 기준에 미달하는 이륜자동차 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하는 당해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도 확인 및 제원측정을 위하여 별지 제72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1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제원표 및 외관도
2.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실측확인을 하여 해당 이륜자동차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2.18>

[본조신설 2003.1.2]

제106조의3(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제33조, 제34조(제3호를 제외한다), 제40조 내지 제48조 및 제50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1.2]

제3절 이륜자동차의 튜닝 등 <개정 2014.12.31>

제107조(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이륜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조·장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4.12.31>

1. 길이·너비·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
2.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및 경음기

②제5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4.12.31]

제108조(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①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4.12.31>

1.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튜닝 전·후의 이륜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②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이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에 튜닝 후의 이륜자동차를 제시할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2014.12.31>

③교통안전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튜닝 후의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1.2, 2010.2.18, 2014.12.31>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튜닝된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그 튜닝사실을 기재하고, 튜닝후의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과 같도록 하거나 튜닝 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과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3.1.2,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제109조(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의 정비를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비명령서에 의하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정비를 명한 사실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정지를 명한 사실(운행정지명령을 한 경우에 한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비를 완료하고 정비명령서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함께 이륜자동차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정비내용을 확인하고, 당해이륜자동차가 정비명령에 따라 정비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제110조(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이륜자동차운행정지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②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서를 찢거나 더럽혀서는 아니되며, 정비를 완료한 때에는 운행정지명령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제14장 자동차관리사업

제1절 통칙

제111조(등록신청등)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1.4.19, 2003.1.2, 2004.11.29, 2005.9.16, 2006.8.7, 2010.2.18, 2011.4.11>

1. 삭제 <2003.1.2>
2.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4.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자동차매매업을 제외한다)
5. 삭제 <2006.8.7>
6.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개정 2011.12.15>

1.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3항의 각 호의 서류를 그 확보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1.12.15>

1.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자동차매매업인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자동차정비업만 해당한다)
5.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기간은 12월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2011.12.15>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붙인 조건의 이행을 위한 경우
2.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인가·허가·심의등이 지연되는 경우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2011.12.15>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별책 5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2010.2.18, 2011.12.15>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4. 사업장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
5. 기계·기구명세(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한한다)

⑦ 제5항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7.12.13, 2011.12.15>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11.23]

제112조(변경등록)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후 15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과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등의 신고를 한 대표자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31, 2010.2.18>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②제111조(제3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변경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2.31, 2011.12.15>

제113조(양도·양수 등의 신고) ①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2003.1.2>
4.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고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2010.2.18>

③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휴업 또는 폐업예정일전까지 별지 제81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휴업·폐업신고서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첨부(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19, 1999.12.31, 2001.4.19, 2003.1.2, 2010.2.18>

제114조 삭제 <1999.2.19>

제115조(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①법 제56조제4호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1. 종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서류 또는 장부의 작성내용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집단화에 관한 사항
4. 매매자동차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자동차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5. 영업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삭제 <1999.12.31>

제116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전송 의무) ①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4.12.31>

1. 자동차매매업: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차명
 나. 자동차 등록번호
 다.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라. 연식
 마. 검사 유효기간
 바. 최초등록일
 사. 원동기 형식
 아. 변속기 종류
 자. 차대번호
 차. 보증유형
 카. 동일성확인(차대번호표기)
 타. 불법튜닝
 파. 사고·침수유무
 하. 자기진단사항
 거. 배출가스
 너. 주요장치 및 자동차의 상태
 더. 외판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러.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머.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2. 자동차정비업: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점검·정비명세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등록번호
 나. 주행거리
 다. 점검·정비의뢰일자
 라. 사업자등록번호
 마. 정비업등록번호
 바. 업체명(대표자)
 사. 주소(전화번호)

아. 점검·정비완료일자
자. 출고일자
차. 정비책임자
카. 별표 21의3에 따른 작업내용 구분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제1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발급번호
나. 발급연월일
다. 등록번호
라. 차종
마. 차명·형식
바. 연식·주행거리
사. 소유자 주소·성명
아. 폐차처리 요구자 주소·성명
자. 삭제 <2015.7.7>
차. 삭제 <2015.7.7>

②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의 사항을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1.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이전등록 이전
2.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발급 후 72시간 이내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이전

③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1항의 사항을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동차등록령」 제6조의2에 따른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등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연합회를 통하여 전송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6]

제117조(검사 및 단속 주기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기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6>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검사
2.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등록자동차관리사업행위 단속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등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단속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인원수, 자격기준, 소요기간등 협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단속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를 받는 등 단속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2014.1.16>

[전문개정 1998.5.26]

[제목개정 2014.1.16]

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지정증 및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2.18, 2013.9.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2.18>

⑤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3.9.6>

[본조신설 2003.1.2]

제2절 자동차매매업

제118조 삭제 <1999.12.31>

제119조 삭제 <1999.12.31>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①매매업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고자동차의 점검일은 별지 제82호서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전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01.4.19, 2005.2.5, 2008.3.14, 2010.2.18, 2011.12.15, 2013.3.23, 2013.9.6>

1. 삭제 <2005.2.5>
2. 영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3. 삭제 <2013.9.6>
4.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상태의 점검을 하는 자(이하 "성능·상태점검자"라 한다)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등은 별표 22와 같다.<개정 2005.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에는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매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여야 한다.<개정 2005.2.5>

④ 법 제58조제3항에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1.12.15, 2013.3.23>

1.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에 관한 정보
3.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4. 중고자동차 제시신고번호
5. 자동차 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
6.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

제121조(매매자동차의 관리) ① 삭제 <1999.12.31>

②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는 별지 제83호서식, 매도신고는 별지 제84호서식, 반환신고는 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제시·매도 또는 반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하여야 하며, 매매업자는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3.1.2, 2010.2.18>

③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잘 보이는 곳에 별표 23의 상품용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01.4.19, 2010.2.18>

④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을 보관하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별책 6의 중고자동차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자동차 앞면 등록번호판을 보관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번호판보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1.4.19, 2010.2.18>

⑤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을 작성한 때에는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장을 작성한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대장 사본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2010.2.18>

⑥매매업자는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별책 7의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9.2.19, 2010.2.18>

제122조(매매알선수수료등)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및 관리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3.1.2>

1. 매매알선수수료 : 매매알선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3. 관리비용 : 매매용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매매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의 금액은 이를 받을 수 없다.

제123조(매매사원증의 관리등) ①매매업자는 매매사원을 채용한 때에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별표 24의 자동차매매사원증(이하 "매매사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 영업기간중 이를 달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9, 2010.2.18, 2012.11.23>

② 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12.11.23>

1. 폐업하거나 매매사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체없이 매매사원증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반납
2. 휴업하거나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매매사원증을 그 기간 동안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보관

③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매사원증을 발급하거나 반납받은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게 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명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3>

④ 삭제 <2012.11.23>

제3절 자동차경매장

제124조(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①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07.6.7, 2010.2.18>

② 경매장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경매에 출품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경매장영업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0.2.18>

③ 제2항에 따른 경매장영업소의 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포함한다)으로 한다.<신설 2010.2.18>

제125조 삭제 <1999.12.31>

제126조(경매장개설승인) ①경매장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6호서식의 경매장개설·운영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1.4.19, 2003.1.2, 2004.11.29, 2005.9.16, 2006.8.7, 2010.2.18, 2011.4.11>

1. 경매장시설과 소요자금 및 인력의 확보계획서
2. 삭제 <1999.12.31>

3. 경매장(경매장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장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4. 경매장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5. 삭제 <2006.8.7>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매장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2007.6.7>

1. 경매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의 일람표와 배치도
3. 해당 인력의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및 취업승낙서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장시설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이를 갖추고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 한 때에는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경매장개설·운영을 승인하고 별지 제87호서식의 경매장개설·운영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2010.2.18>

④ 삭제 <1999.12.31>

⑤제11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경매장개설·운영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정비요원"은 "경매장시설 및 인력"으로 본다.<개정 1999.12.31, 2007.6.7, 2011.12.15>

제127조(변경승인등) ①경매장의 개설·운영승인을 얻은 자(이하 "경매장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7.6.7, 2010.2.18>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또는 임원
3. 경매장소재지 또는 경매장시설(대지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미만의 증·개축을 제외한다)
4. 삭제 <1999.12.31>
5. 성능점검·검사책임자
6. 경매장영업소의 설치 또는 이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매장개설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경매장개설·운영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매장개설·운영승인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③제12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8조(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검사등) ①경매장개설자는 법 제6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매대상자동차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검사하여야 한다.

1. 경매대상자동차에 표기된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당해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지의 여부
2. 경매대상자동차를 출품한 자가 당해자동차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인지의 여부
3. 경매대상자동차의 구조·장치에 대한 안전 및 성능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②경매장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검사결과를 별지 제89호서식의 경매대상자동차점검·검사기록부에 작성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점검·검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내용을 포함하는 컴퓨터화면·사진·필름 기타 영상매체를 통하여 경매에 참가하는 자가 점검·검사결과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한 경우에는 이를 고지한 것으로 본다.

③경매자개설자는 별표 25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성능점검·검사시설에서 제1항의 점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6.7>

제129조(경매보증금등) ①경매장개설자가 법 제62조에 따른 경매보증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및 납부절차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장개설자인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받을 수 있는 경매출품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품료 : 경매장시설물의 사용과 경매대상자동차의 성능점검·등록원부조회등 경매진행에 소요되는 비용
2. 경매수수료 : 경매대상자동차가 경락되었을 경우 출품자 및 경락자가 경매장개설자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이 경우 경매장개설자는 수수료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31]

제130조(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①제121조제6항·제122조(경매출품수수료 및 보증금을 제외한다) 및 제123조의 규정은 경매장의 개설·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31>

② 삭제 <2010.2.18>

③ 삭제 <1999.12.31>

제4절 자동차정비업

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①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6.30, 2007.6.7, 2011.12.15, 2014.10.6, 2014.12.31>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2. 소형자동차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1.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2. 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③ 제5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의 범위와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0.2.18, 2013.3.23, 2014.12.31>

제132조(정비업의 제외사항) 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2014.12.31>

1. 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밧데리·전기배선·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정비
6.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제133조(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 ① 법 제58조제4항제4호에 따라 정비업자는 표준정비시간을 해당 정비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인쇄물을 사업장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정비업자는 인쇄물을 사업장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정비시간은 제145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정비사업조합·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 업종별, 자동차의 종류별, 작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는 제2항에 따른 표준정비시간을 작성하여 해당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고 인쇄물로 발간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법 제58조제4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 작업"이란 별표 26의2에 따른 정비 작업을 말한다.

⑤ 법 제58조제4항제5호에 따라 정비업자는 제4항에 따른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업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1. 사업장 내의 사무실과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물을 붙일 것
2. 게시물의 크기는 가로 80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전문정비업자의 경우에는 가로 55센티미터 이상,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정비시간의 공개, 주요 정비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의 게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0.6]

제134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①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4항제7호에 따라 하여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9, 2007.7.20, 2010.2.18, 2012.8.10, 2013.12.12, 2014.10.6>

1. 점검·정비견적서(등록번호·견적일·견적내용 및 견적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와 점검·정비내역(등록번호, 점검·정비의뢰일, 점검·정비완료일, 점검·정비작업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 해당 증명서 또는 확인서의 발급기관명, 발급일자 및 발급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의 기록 및 보존(문서 또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보존하되, 견적일 또는 점검·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2.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중에 발생하는 고장등에 대한 무상점검·정비
 가.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90일이내
 나.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60일이내
 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 점검·정비일부터 30일이내

②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89호의3서식의 점검·정비견적서와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제1항제2호의 사후관리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점검·정비견적서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2.19, 1999.12.31, 2001.4.19, 2009.4.8, 2010.2.18>

③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재생품 등은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하며, 중고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에는 그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3.1.2>

④원동기정비업자는 원동기의 재생정비를 시행한 경우 정비의뢰자에게 별지 제92호서식의 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03.1.2>

제135조(정비책임자의 선임등) ①정비업자는 법 제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정비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정비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90호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신고서를 제1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조합(자동차전문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제14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신고인 경우에는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05.2.5, 2005.9.16, 2007.6.7, 2014.10.6>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삭제 <2005.2.5>
4. 6급이상의 기술직공무원으로서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②자동차정비사업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선임 또는 해임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91호서식의 정비책임자선임(해임)보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정비연합회(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전문정비연합회를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2014.10.6>

③ 삭제 <1999.2.19>

제136조(정비책임자의 직무등) ①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31, 2007.7.20>

1. 자동차의 점검·정비총괄
2. 정비요원의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3. 자동차정비기술에 관한 교육
4. 주행거리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4조의2에 따른 주행거리계의 변경 사유 및 증명 자료의 확인

②정비업자는 정비책임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비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즉시 제1항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7조(정비요금 등)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5.26, 1999.2.19, 1999.12.31, 2005.9.16, 2007.6.7>

1. 삭제 <2013.12.12>
2. 정비요금 : 정비에 드는 실제비용
3. 구난·견인을 위한 출장요금 : 정비의뢰된 자동차의 구난·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4. 관리비용 : 정비사업장에 72시간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후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정비완료사실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이후에도 통보한 날부터 72시간이

상 계속하여 정비사업장에 방치하는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 또는 정비완료사실통보일부터 72시간이내의 기간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5. 견적요금 : 견적을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실제비용(교통사고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정비업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삭제 <1999.2.19>

[제목개정 2013.12.12]

제5절 자동차해체재활용업 <개정 2010.2.18>

제138조(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①법 제2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1999.2.19, 1999.12.31, 2003.1.2, 2007.6.7, 2008.3.14, 2010.2.18, 2011.12.15, 2012.8.10, 2013.3.23>

1.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 또는 차체
2. 조향장치중 조향기어기구
3. 제동장치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4. 내압용기. 다만,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8년 이하인 압축천연가스 및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는 제외한다.

②제111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가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 또는 해체한 장치중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자동차 또는 장치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③해체재활용과정에서 회수되어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되는 중고부품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저촉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신설 2003.1.2, 2010.2.18>

④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재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주요 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에 업체명, 전화번호, 사용된 차종, 그 형식 및 연식, 부품의 명칭, 주행거리가 기재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기능성장치 또는 부품을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3.1.2, 2004.12.6, 2010.2.18>

1. 원동기
2. 동력전달장치 : 변속기 및 차동장치
3. 제동장치 : 캘리퍼 및 공기압축기

⑤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중고부품점검표에 주요 기능성장치의 손상 및 누유상태 등 이상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03.1.2, 2010.2.18>

[제목개정 2010.2.18]

제139조 삭제 <1999.12.31>

제140조(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설치) ①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접수, 인수, 견인 및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28의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2.18, 2013.9.6>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31, 2010.2.18, 2013.9.6>

③제111조(제1항제1호·제5호를 제외한다) 및 제112조의 규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2.19, 2010.2.18>

[제목개정 2010.2.18]

제141조(폐차요청등) ①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폐차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2, 2006.4.26, 2010.2.18, 2012.8.10>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전 3일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해당자동차에 저당·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등록이된 자동차에 한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강제처리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94호서식의 자동차폐차지시서에 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2010.2.18>

제142조(폐차금지등) ①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폐차대상인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1.2, 2010.2.18>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대번호 기타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②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폐차금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차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0.2.18>

제143조(폐차인수증명서등) ①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등록한 해당 사업장에서 자동차를 인수하고 폐차요청 또는 폐차지시를 한 자동차소유자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②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를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이를 3년간(제2호의 경우에는 10년간을 말한다)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0.2.18>

1. 삭제 <2015.7.7>
2. 별책 9의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3. 별책 10의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4. 폐차요청서(제141조제1항 각호의 첨부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5. 별지 제95호서식의 중고부품점검표

제144조(폐차수수료등)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5.26, 1999.12.31, 2001.4.19, 2005.9.16, 2010.2.18>

1. 말소등록신청대행수수료 : 말소등록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2. 견인요금 : 폐차의뢰된 자동차의 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견인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3. 관리비용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이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부터 5일 이내의 기간의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가. 폐차사업장에 5일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후 폐차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나. 제14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폐차금지사유를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그 자동차를 폐차사업장에 방치하는 경우

②법 제65조제2항에서 "자동차의 평가액"이라 함은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차량중량에서 폐기물중량을 뺀 중량에 1킬로그램당 고철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폐차에 드는 비용"이라 함은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차량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차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9.12.31, 2010.2.18>

③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폐차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기초를 명백히 하여 초과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폐차신청자 또는 소비자관련단체가 폐차수수료 금액의 산출근거제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관한 명확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2.19, 2010.2.18>

④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요금외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10.2.18>

제15장 사업자단체의 설립등

제145조(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단위의 조합 또는 전국단위의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0.2.18, 2014.10.6>

1. 자동차매매사업조합 : 자동차매매업의 경영합리화 및 그 향상·발전과 원활한 거래시장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2. 자동차정비사업조합 :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발전과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전문정비업자를 제외한다)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2의2.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발전과 자동차전문정비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

3.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영합리화와 폐차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설립하는 협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은 시·도지사의 설립인가를,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12.31, 2008.3.14, 2010.2.18, 2013.3.23, 2014.10.6>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그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0.2.18>

제146조(설립인가의 신청등)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그 설립의 취지를 기재한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2008.3.14, 2013.3.23>

1. 창립총회 의사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재산목록
5. 임원명부
6. 임원취임승낙서
7. 임원의 이력서

②조합등은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관할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4.11.29, 2005.9.16, 2008.3.14, 2010.2.18, 2011.4.11, 2013.3.23>

제147조(정관) ①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등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등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②조합등이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2013.3.23>

1. 정관변경안
2. 정관의 신·구조문대조표
3. 총회의사록
4. 정관의 변경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제148조(지도·감독) ①법 제6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등의 사무 및 회계 등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1.12.15,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등이 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요건에 미달하거나 운영사항의 개선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등에 대하여 정관·사업계획·수지예산 또는 임원의 변경이나 조합의 해산을 명하거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5.2.5, 2008.3.14, 2013.3.23>

제149조(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감독등) ①자동차매매사업조합·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8.3.14, 2013.3.23, 2014.10.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는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 및 회계의 지도·검사와 자동차관리사업의 체계개선에 관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③제146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등"은 "연합회"로 본다.

제16장 전산정보처리조직

제150조(전산처리하는 업무) ①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6, 2005.9.16, 2006.6.9, 2008.3.14, 2010.2.18, 2011.12.15, 2013.3.23, 2014.12.31>

1.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초본의 발급·열람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법 제11조 내지 법 제14조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업무
3.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업무

3의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업무

4. 법 제22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에 관한 업무
5.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자기인증에 따른 제원관리에 관한 업무
6.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튜닝승인 및 그에 따른 제원관리에 관한 업무

6의2. 법 제35조의7 및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 검사에 관한 업무

7. 삭제 <2013.12.12>

7의2. 법 제37조에 따른 명령 및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업무

8. 법 제43조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업무

8의2. 법 제45조 및 법 제45조의2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와 그 소속 기술인력의 관리에 관한 업무

8의3. 법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에 관한 업무

8의4.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업무

8의5. 법 제58조의2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업무

8의6.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업무

8의7.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8의8.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

9. 제1항 각 호의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수집·생산·관리되는 정보를 신청인 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0.2.18, 2013.3.23>

③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2010.2.18, 2013.3.23>

제150조의2(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 보고 또는 작성·비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15, 2014.10.6, 2014.12.31>

1. 제39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의 제원통보서 제출
1의2. 제36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의 기술검토신청서의 제출
1의3.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신청
2. 제43조제2항에 따른 제작자등의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
3. 제78조에 따른 튜닝검사의 신청
4. 제105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제원통보서의 제출
5. 제121조제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 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의 작성·비치
6. 제121조제5항에 따른 중고자동차 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의 제출
7. 제123조제3항에 따른 매매사원의 명단 제출

[본조신설 2010.2.18]

제15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전산운영지침을 작성·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운영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기조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기고장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3. 전산용비품 및 소모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2조(자료의 입력) ①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료를 입력하는 기기조작원은 자료발생당일에 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사용자지침서에 의하여 매일마감·집계하여야 한다.
②오류입력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정정입력하되 「자동차등록규칙」에 의하여 정정절차가 정하여진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그 절차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5.9.16>
③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하는 원시자료가 자체입력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원시자료를 해당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입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적정입력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제153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등) ①법 제69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전산자료이용심사(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6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승인내용을 별책 11의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2013.3.23>
③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의 이용이 승인된 자료 및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인쇄 또는 컴퓨터통신설비에의 연결 등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전산자료제공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2013.3.23>

제154조(전산처리통계의 공표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산처리되는 통계자료를 당해통계의 공표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외부에 공표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154조의2(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 등) ① 영 제14조의2제3호에 따라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파손여부에 대하여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파손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97호의3서식의 주행거리계 고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2.18]

제17장 보칙

제155조(출입공무원의 증표)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표 29에 의한다. <개정 2010.2.18>

제156조(수수료액) ①법 제76조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제12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30과 같다. <개정 2010.2.18>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의 수입증지(영 제17조제3항 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에는 시·군 또는 구의 수입증지를 말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2004.11.29, 2010.2.18, 2013.6.17>

③ 삭제 <1999.12.31>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이용에 관한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3.14, 2013.3.23, 2013.6.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관계법령에서 자료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재해의 발생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7조 삭제 <2010.2.18>

제15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제26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신청등: 2014년 1월 1일
2. 제74조 및 별표 15의2에 따른 그 밖의 자동차로서 차령이 5년을 초과하여 검사유효기간이 6개월인 사업용 중형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의 적절성

여부: 2014년 1월 1일

3. 제111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신청등: 2014년 1월 1일

4.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2014년 1월 1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12.31>

1. 제25조에 따른 방치자동차의 매각: 2015년 1월 1일

2. 제28조제2항에 따른 압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휴대: 2015년 1월 1일

3. 제32조에 따른 제작자등의 등록신청: 2015년 1월 1일

4.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39조에 따른 제작자등의 제원의 통보: 2015년 1월 1일

6. 제49조의3에 따른 자동차의 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2015년 1월 1일

7. 제57조의9에 따른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2015년 1월 1 일

8. 제57조의13부터 제57조의17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 기준·절차 등: 2015년 1월 1일

9. 제63조에 따른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2015년 1월 1일

10. 제68조에 따른 정밀도검사의 대상·기준 등: 2015년 1월 1일

11. 제73조에 따른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2015년 1월 1일

12. 제75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2015년 1월 1일

13.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의 구분·자격 및 직무 등: 2015년 1월 1일

14. 제106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2015년 1월 1일

15. 제120조제2항에 따른 성능·상태점검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 2015년 1월 1일

16. 제121조에 따른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 보관: 2015년 1월 1일

17. 제141조에 따른 자동차폐차요청서의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18. 제143조에 따른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2015년 1월 1일

19. 제153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3.12.30]

제18장 통고처분 <신설 2001.6.30>

제158조(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법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자를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159조(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①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2.18>

1.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범위 위반 : 별지 제99호서식
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방치행위 : 별지 제100호서식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의무 위반: 별지 제101호서식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책 12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을 비치하고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160조(범칙금의 납부등) ①범칙금을 납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발급하고 지체없이 영수필통지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2010.2.18>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별책 12의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에 징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부칙 <제83호,1996.1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중 승용·승합자동차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제33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은 1997년 5월 1일을 말한다)부터 시행하며,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제132조의 규정은 199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 제13호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1999.12.31>

제2조 (제작결함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결함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말소등록을 한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동차의 사후관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1997년 4월 30일 이후 최초로 판매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정기점검기간과 정기검사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정기점검을 받는 날부터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간을 적용하며,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 산정기준은 1997년 1월 1일이후에 최초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와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86조 및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중 공기과잉율측정기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서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외의 지역에서는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정비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점검·정비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동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2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개설하고자 하는 공동사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합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중 이 규칙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3.1.2>

제9조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1997년 5월 31일까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차대번호표기부호의 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차대번호각자부호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로 본다.

제11조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자동차의 형식승인신청·성능시험신청 및 동일형식신고에 대한 형식승인기준·안전기준 및 동일형식신고의 기준적용은 제33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안전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동차성능시험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자동차안전시험대행자로 본다.

제13조 (차고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시설의 신고를 한 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되, 1997년 4월 30일까지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차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 (정밀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기계·기구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정밀도검사 또는 정기정밀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접수된 신규검사신청 또는 정기검사신청에 대한 검사처리절차는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재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기준에 부적합판정된 자동차에 대한 재검사절차는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자동차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되,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지역의 자동차검사소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그외의 지역의 자동차검사소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검사용기계·기

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자동차관리사업허가신청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동차매매업의 하자보증금에 대하여는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1996년 12월 31일까지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을 확보하여 이를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 (상품용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신고를 받아 상품용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는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용표지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정비업의 제외사항에 관한 제132조의 규정이 시행되는 1998년 10월 30일까지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9 제1호가목 내지 사목의 정비작업
2. 원동기장치중 실린더헤드개스킷의 교환, 로커암커버개스킷의 교환 및 밸브간극 조정
3. 조향장치중 점화스위치 및 키뭉치의 점검·정비

제22조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자동차정비업·2급자동차정비업 또는 원동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의하여 각각 자동차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정비업 또는 원동기전문정비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1997년 4월 30일까지 별표 26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3조 (폐차업영업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한 폐차영업소는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폐차업영업소로 본다.

제24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은 1997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소"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소"로 한다.

②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중 "지프형택시"를 "다목적형택시"로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6호,1998.5.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95조제1항제3호·제2항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74조제1항 및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1998. 7. 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1998. 7. 1. 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택시미터사용검정주기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9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④(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정비사업자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시설기준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확보하여야 한다.

⑤(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86조제2항 및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정비사업자가 행할 수 있는 검사업무의 범위는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비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로 한다.

부칙 <제147호,1998.8.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내지 ③생략

④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 <제173호,1999.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기소음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 제2호 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열람·등록·허가·교부·지정·검정·승인·이용등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수수료란중 "500원"을 "7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수료란중 "1천원(단,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없습니다)"을 "1,300원(동일 시·도안의 주소변경을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란의 제8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 하자에 대하여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278호,2001.4.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별지 제82호서식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일 이후 6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83호,2001.6.30>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호,2002.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2003.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이미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로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9조의2(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05조 내지 106조의2를 말한다)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신규등록을 할 수 있다.
③(화물자동차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된 자동차는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화물자동차로 본다. <신설 2005.2.5>

부칙 <제379호,2003.11.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형식에 따라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자동차(신규자동차등록신청을 한 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제2조제1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화물자동차로 본다.

부칙 <제411호,200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호,2004.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2,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등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령 제346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 전에 이미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어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이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로서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동개정령 제31조 내지 제39조의2(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05조 내지 106조의2를 말한다) 및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등록을 할 수 있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423호,2005.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동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 별표 22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기점검유효기간의 기산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기점검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정기점검을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정비책임자의 선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제1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하여 선임된 자동차정비책임자로 본다.

부칙 <제470호,2005.9.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의 정기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기점검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정기점검을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3호,2006.3.15>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검사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6 및 별표 18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511호,2006.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8호,2006.6.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의 구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형 화물자동차 또는 중형 특수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한 자동차와 중형 화물자동차 또는 중형 특수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형식에 따라 제작·수입된 자동차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형 화물자동차 또는 중형 특수자동차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형 화물자동차 또는 소형 특수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소형 화물자동차 또는 소형 특수자동차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형 화물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된 화물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제74조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 및 제86조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이를 소형 화물자동차로 본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형 특수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된 특수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제86조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이를 소형 특수자동차로 본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자기인증을 한 형식에 따라 제작·수입된 중형 화물자동차 또는 중형 특수자동차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대하여 제131조제1항에 따른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이를 소형 화물자동차·소형 특수자동차로 본다.

제3조 (수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수입자로서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등록한 수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3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서류를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검사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 시설을 갖춘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월 이내에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530호,2006.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1호,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호,2007.6.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9년 6월 30일까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571호,2007.7.20>

이 규칙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2008.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2008.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3호나목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89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7의 주란 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 부터 <22> 까지 생략

부칙 <제112호,2009.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2항 중 "30일이내"를 "31일 이내"로 한다.

부칙 <제116호,2009.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호,2009.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150조제1항제3호의2、제7호의2、제8호、제8호의2 및 제8호의4부터 제8호의8까지, 제150조제2항, 제150조의2, 별표 30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 제2호카목 중 전자장치에 관한 개정규정, 제80조의3제1항 개정규정, 별표 16 제2호 검사장비에 관한 개정규정 및 별표 18 제1호 시설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검사표의 유효기간) 제80조의2제1항 중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는 이 규칙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속도계 항목의 "34.8"을 "32로" 하고, 같은 항목 괄호 안의 "정15%"를 "정 25%"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속도계 항목 괄호 안의 "34.8"을 "32"로 한다.

부칙 <제235호,2010.3.29>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제11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82조 및 제86조제1항 중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각각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⑭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7호,2010.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13호,2010.11.25>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호,2011.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기부호의 배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표기부호의 배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검사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작결함의 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부품(부칙 제11조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부품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동차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제2항제7호·제11호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동차검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동차검사의 교육계획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에 실시할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계획부터 적용한다.

제7조(택시미터의 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택시미터 검정신청부터 적용한다.

제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하거나 인터넷광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동차정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피견인자동차제작자등의 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안전검사시설확인서를 받은 피견인자동차 제작자등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검사의 직접실시를 위한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자동차부품자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등을 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후에 제작등이 되는 자동차부품부터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부품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내압용기장착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등을 하고 있는 내압용기 장착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1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제57조의11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97호,2012.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전자문서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10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전자문서로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9호,2012.8.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부품의 표기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9호의2서식 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 후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비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36호,2012.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 및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매사원증 반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매매사원증을 반납 또는 보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준의 시설기준 중 해체작업장 300㎡ 이상, 부품보관창고 300㎡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매매사원증 교체에 관한 경과조치) 매매업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급받은 매매사원증을 2013년 3월 31일까지 별표 24의 개정규정에 따른 매매사원증으로 교체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부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1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6조, 제20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제4호, 제39조제3항·제4항, 제39조의2제2항제2호사목,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7제2항, 제40조의8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0조의9제2항, 제40조의10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1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4제1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3제4항, 제46조제2호, 제47조 본문,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49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차목,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49조의3제3항·제4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4호가목, 제52조,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57조의6제1항·제2항, 제57조의8제4항·제5항, 제57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7조의11제2항제4호, 제57조의13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7조의14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의15제1항제1호·제2호, 제57조의16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57조의17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2항 단서, 제6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2조제2항, 제93조제1항, 제95조제1항제2호마목, 같은 조 제4항,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 본문, 제9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00조제1항, 제120조제1항제4호, 제131조제3항, 제145조제2항, 제1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8조제1항·제2항, 제149조제1항, 제150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51조제1항, 제15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54조, 제156조제4항제2호, 제157조의2, 별표 5의3 비고 제1호·제2호, 별표 5의5 비고, 별표 5의7 제1호가목(3), 별표 15 제2호처목 검사기준

란 및 검사방법란, 같은 표 제3호나목, 별표 17 주 제3호, 별표 21 제2호다목·라목, 별표 29 앞면, 별지 제7호서식 구비서류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구비서류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의4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26호의5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4호의7서식, 별지 제34호의8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96호서식 및 별지 제97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7조제1항·제2항, 제57조의2, 제57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 면제사유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구비서류란, 별지 제24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의4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99호서식, 별지 제100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80>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12호,2013.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호,2013.9.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좌석안전띠 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검사를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호,2014.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판매되는 자동차부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기록유지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호의2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판매되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호,2014.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구조의 변경승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제2호다목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자동차 구조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륜자동차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이륜자동차의 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0호,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21호,2014.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호,2014.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정비업자가 작성하여 보존 중인 점검·정비견적서 및 점검·정비내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및 부분정비연합회는 각각 제145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 및 제14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및 전문정비연합회로 본다.

제4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34호,2014.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11부터 제40조의16까지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시·도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101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변경신고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호,2015.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4항, 제100조제1항, 제3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호,2015.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1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4.8.18.>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종 류	경 형	소 형	중 형	대 형
승 용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 이상 2,000cc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cc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 하는 것
승 합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 물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 수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이 륜 자동차	배기량이 50cc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이하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한다)이 60킬로그램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 최대적재량이 60킬	배기량이 260cc (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이하인 것	로그램 초과 100 킬로그램 이하인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종 류	유 형 별	세 부 기 준
승 용 자 동 차	일 반 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 목 적 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기 타 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승 합 자 동 차	일 반 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 수 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화 물 자 동 차	일 반 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 프 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 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 수 용 도 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 수 자 동 차	견 인 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 난 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 수 작 업 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이 륜 자 동 차	일 반 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 수 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 타 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 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소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나. 이륜자동차(법 제3조제1항 제5호)의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2. 위 표 제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나.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다.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은 구동전동

기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한다.

[별표 2] <개정 2010.2.18>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시설 및 장비기준(제8조 관련)

구 분	기 준	
주 차 장	330㎡이상	
사 무 실	33㎡이상	
작 업 장	50㎡이상	
설 비	명 칭	수 량
	유 압 프 레 스 기	1대이상
	공 기 압 축 기	1대이상
	전기식자동건조로	1식이상
	문자용자동페인트로링기	1대이상
	무 인 기 계 경 비 장 치	1식
	철 형	대·중·소 보통형 각 1조이상
	기 타	시·도지사가 번호판제작·교부대행업무를 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구류

주 : 1.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의 발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주차장·사무실 및 작업장면적기준을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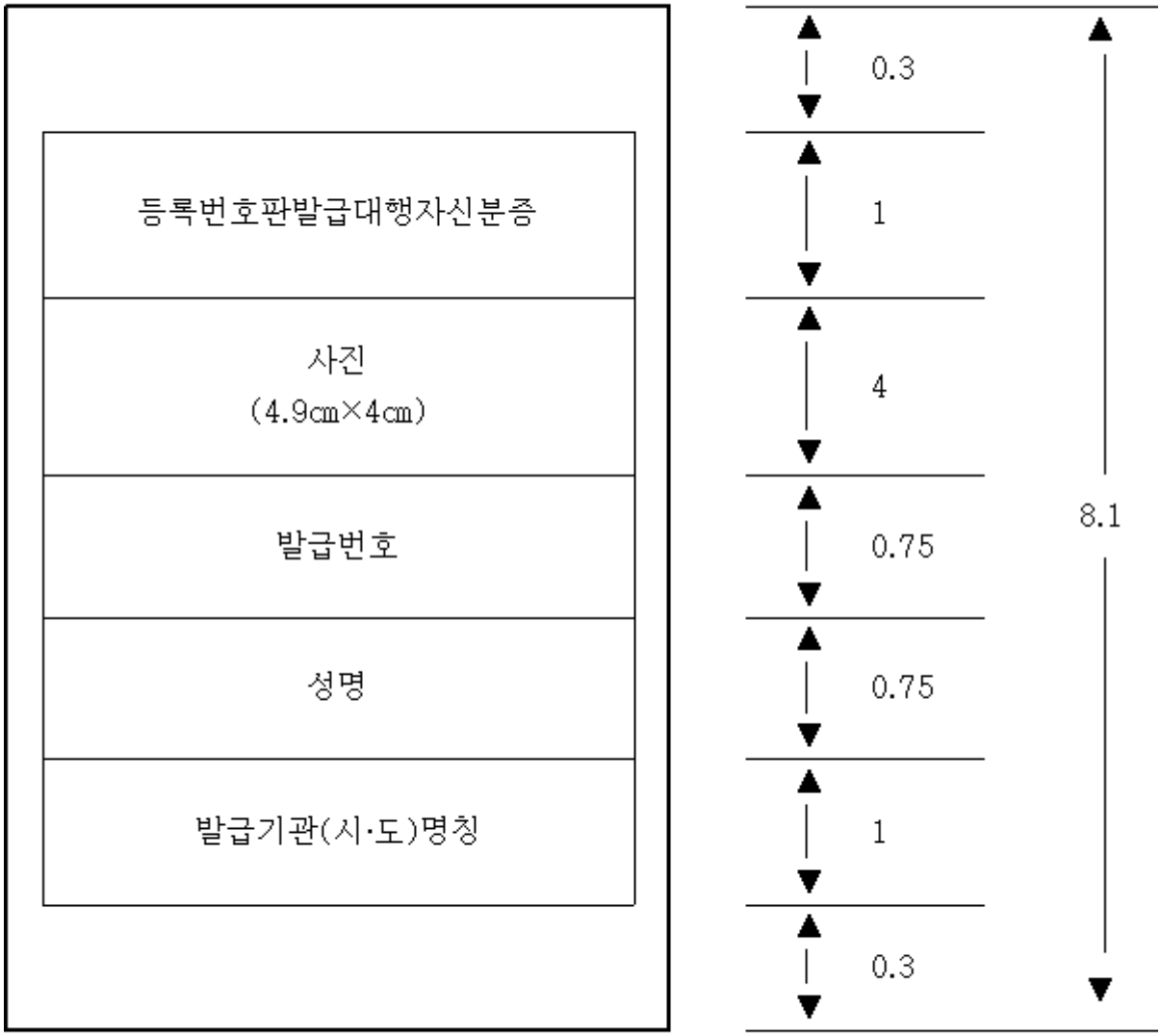
2. 교부대행업소내에 상주경비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위 설비중 무인기계경비장치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3] 삭제 <1999.2.19>

[별표 4] <개정 2010.2.18>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신분증(제11조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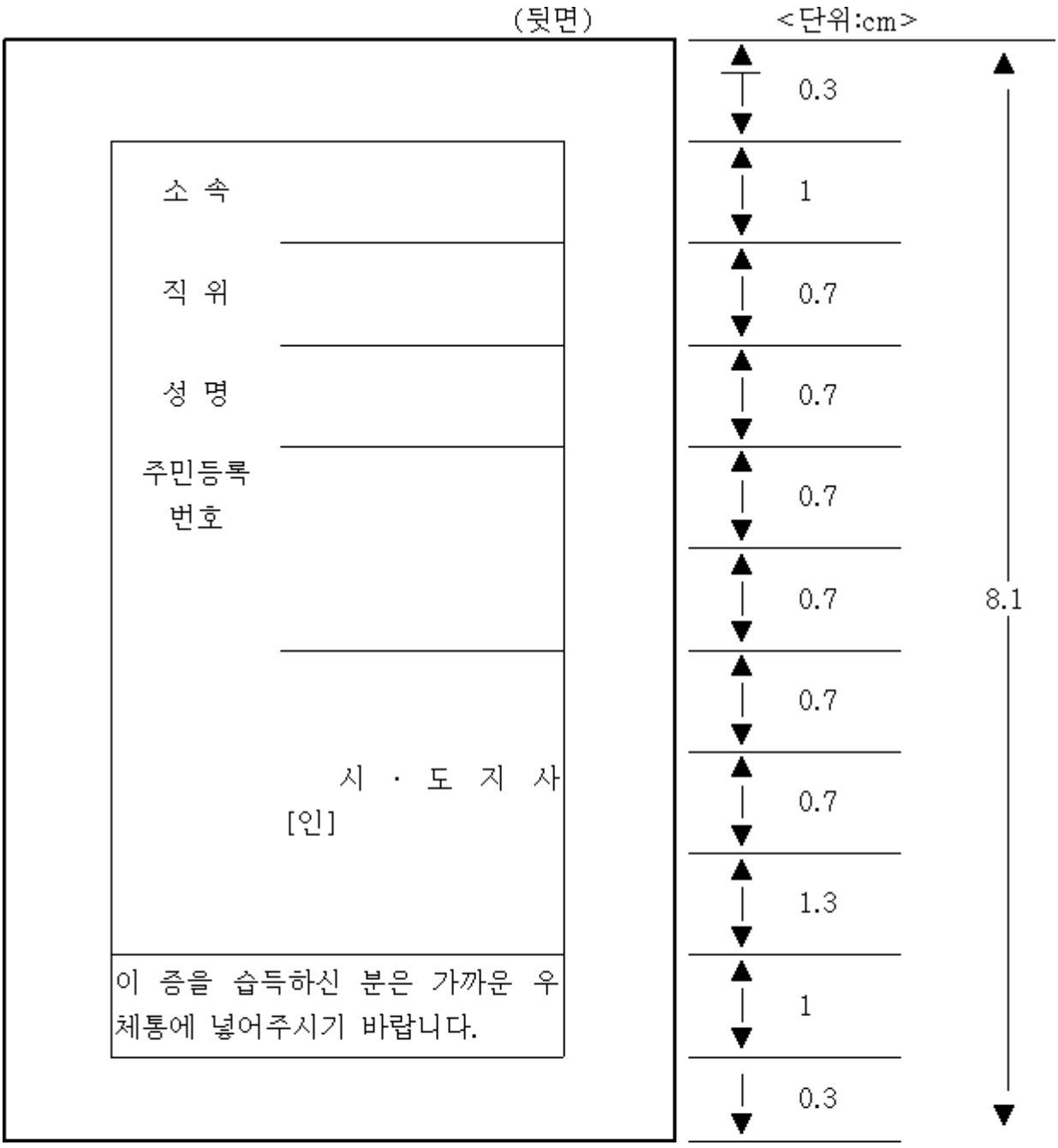
(앞면) <단위: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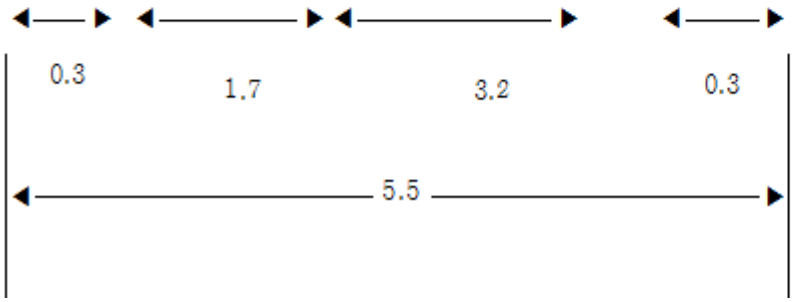


주 : 하늘색용지에 검정색 문자로 하며, P.V.C로 포장한다.

49㎜×75㎜

(인쇄용지(특급)190g/㎡)


(뒷면)
<단위:cm>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시 · 도 지 사 [인]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0.3
1
0.7
0.7
0.7
0.7
0.7
0.7
1.3
1
0.3
8.1


0.3
1.7
3.2
0.3
5.5

[별표 4의2] <신설 2006.6.9>

안전검사시설기준(제38조관련)

시설품명	세부기준
1. 중량계	○측정범위 : 0~5톤 이상, 최소지시값 : 1kg/ton 이하
2.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기	○측정각도 : 35° 이상 ○측정하중 : 40톤 이상
3. 사이드슬립 측정기	○미끄럼양의 지시 및 판정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 ·0점 지시 : ±0.2㎜/m(m/㎞) 이내 ·5㎜ 지시 : ±0.2㎜/m(m/㎞) 이내 ·판정정밀도 : ±0.2㎜/m(m/㎞) 이내
4. 제동시험기	○설정하중에 대한 제동력지시 및 중량설정지시의 허용오차 범위 ·좌우제동력지시 : ±5% 이내(차륜구동력은 ±2% 이내) ·좌우합계제동력지시 : ±5% 이내 ·좌우차이제동력판정 : ±25% 이내 ·중량설정지시 : ±5% 이내 ○축중에 대한 판정정밀도의 허용오차 범위 ·좌우제동력합계 판정 : ±5% 이내 ·좌우제동력차이지시 : ±2% 이내
5. 전조등시험기	○설정값에 대한 허용오차 범위 ·광도지시 : ±15% 이내 ·광도편차 : ±1/6도 이내 ·광도 : ±1000칸델라 이내 ·광축 : ±1/6도 이내
6. 소음 및 매연 측정기	○소음계 ·측정범위 : 24 ~ 120dB ·최소지시값 : 0.1dB 이내 ○매연측정기 ·지시계 : 0% ~ 100% 지시, 최소눈금치 1% 이하
7. 일산화탄소 측정기	○지시범위 ·CO : 지시범위는 0 ~ 5% 이상 10% 이하, 최소눈금치 0.2% 이하 ·HC : 지시범위는 0ppm ~ 1000ppm 이상 10000ppm 이하, 최소눈금치 20ppm 이하
8. 가스누출 측정기	○정밀도 : 폭발하한값(LEL) 20% 이내에서 감지
9.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	○측정범위 : 0 ~ 100 % ○정밀도 : 측정값의 ±3% 이내
10. 공기과잉율 측정기	○측정범위 : 0.5 ~ 1.6 이상, 최소눈금치 0.01 이하

주 : 1. 검사시설은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이어야 한다.
2. 제작자등은 제작하려는 자동차의 구조 및 사용연료 등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예)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 중량계, 최대안전경사각도시험기, 제동시험기
3. 검사시설의 정밀도는 별표 12에 따른다.

[별표 4의3] <신설 2011.12.15>

부품안전기준 시험시설기준(제40조의7관련)

1. 브레이크호스

시 설 품 명	세 부 기 준
가. 체적 팽창 시험기 (유압)	○시험압력: 20MPa 이상
나. 파열강도 시험기 (유압, 공기)	○시험압력: 49MPa 이상(유압), 6.2MPa 이상(공기)
다. 내 휨성 시험기 (유압)	○시험압력: 1.8MPa 이상
라. 인장강도 시험기 (유압, 공기)	○시험하중: 1,700N 이상
마. 항온 시험기	○시험온도: 85℃ 이상 ○연속시험시간: 70시간 이상
바. 저온 시험기 (유압, 공기)	○시험온도: -45 ~ -48℃ 유지 ○연속시험시간: 70시간 이상
사. 호환성 시험기 (유압)	○시험온도: 120℃ 유지 ○연속시험시간: 70시간 이상
아. 내오존 시험기 (유압, 공기)	○시험온도: 40℃ ○연속시험시간: 70시간 이상
자. 동적 오존 시험기 (유압)	○시험온도: 40℃ 유지 ○연속시험시간: 48시간 이상
차. 고온가진 시험기 (유압)	○가압성능: 5.6MPa/sec 이상 ○감압성능: 5.6MPa/sec 이상 ○가열성능: 146℃/30min 이상
카. 염수분무 시험기 (유압, 공기)	○염수분무: 24시간 이상
타. 내유성 시험기 (공기)	○시험온도: 100℃ 유지 ○연속시험시간: 70시간 이상
파. 진공상태 시험기 (공기)	○시험압력: 635mmHg 이하 유지
하. 내염화 아연성시험기	○시험유체: 염화아연 50% 수용액

(공기)	○ 시험시간: 200시간
거. 공기압 누설시험기 (공기)	○ 시험압력: 1 MPa/2분
너. 삽입게이지 (유압, 공기)	○ 공칭내경 측정가능
더. 확대경(유압, 공기)	○ 확대배율: 7배 이상

2. 등화장치

구 분	시설품명	세부기준
가. 비대칭 전조등 나. 가스방전식 전조등 다. 적응형 전조등	1. 회전가대	○ 연직면 ±30°이상 ○ 수평면 ±90°이상
	2. 조도계	○ 정도: 일반형 A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일 것 (KS C 1601) ○ ±5% 이내
	3. 색도계	○ 측정방법: 분광측색방법 또는 자극치 직독방법
	4. 표준전구	○ 전조등용 표준전구 확보 상태 ○ 성적서 상태유지 할 것
	5. 스크린	○ cut-off line을 확인할 수 있을 것
	6. 암실	○ 길이: 31m 이상 ○ 너비: 4m 이상 ○ 난반사를 차단할 수 있을 것

3. 후부반사기

시설품명	세부기준
가. 회전가대	○ 연직면 ±30°이상 ○ 수평면 ±90°이상
나. 반사성능시험기	○ Observation angle: 0.2~1.5° ○ 0~420mcd/Lux 이상 ○ 조사세기가 일정할 것
다. 암실	○ 길이: 31m 이상 ○ 너비: 4m 이상 ○ 난반사를 차단할 수 있을 것
라. 프로그램	○ 부품안전기준 시행세칙에 따라 시험할 수 있을 것

4. 좌석안전띠

시설품명	세부기준
가. 인장하중 시험기	○ 하중: 14,700N 이상

나. 내구성 시험기	○버클 내구성 시험기를 갖출 것 ○리트랙터 내구성 시험기를 갖출 것
다. 동하중 시험장비	○시험차를 장착한 상태에서 30g 이상의 관성하중을 가할 수 있을 것 ○대차: 시험조건에 따른 동하중 시험이 가능할 것
라. 인체모형	○인체모형(TNO-10)
마. 인체모형의 이동량 측정	○동하중 시험시 인체모형의 이동량 측정이 가능할 것
바. 냉·온장고	○온도(최소 15도이하에서 최고 70도 이상) 및 습도(60%이하에서 70%이상)조절이 가능한 온장고 ○온도(최소 -25도이하) 및 습도(60%이하에서 70%이상)조절이 가능한 냉장고

5. 후부안전판

시설품명	세부기준
1. 시험품 고정장치	○해당시험품을 고정할 수 있을 것
2. 하중부하장치	○수직모서리 곡률 반경이 5±1㎜이고 너비 200㎜, 높이 250㎜이하의 하중장치 ○하중: 해당시험품을 시험할 수 있을 것
3. 하중 측정장비	○하중 측정범위 : 해당시험품을 측정할 수 있을 것 ○정도: ±5%
4. 변위 측정장비	○변위 측정범위 : 400mm 이상 ○정도: ±5%
5. 데이터 출력장비	○하중 및 변위

※비고

1. 위 표의 규정에 따른 장비와 그 명칭이 다르거나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성능을 가진 장비로서 위 표에서 정한 세부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mmhg: 압력의 단위로 1기압의 1/760
 - ○ Pa: 단위면적당 압력(=1N/m^2)
 - ○ N: 힘의 단위 (1kg의 질량에 1m/s^2의 가속도를 발생시키는 힘의 크기)
 - ○ mcd: 1000분의 1 cd(칸델라)
 * 1 칸델라(cd): 백금의 응고점 온도에서 흑체 1cm^2당 방출하는 정상 광도의 60분의 1
 - ○ 룩스(Lux): 광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서의 측정한 밝기(빛의 밝기의 정도)
 - ○ TNO-10: 좌석안전띠의 변위 및 변형량만 측정하는 더미(인체모형)
 - ○ KS C 1601: 한국산업표준 전기-광전지조도계 규격

[별표 4의4] <신설 2013.12.12>

사고기록장치 세부 안내문(제30조의2제1항 관련)

이 자동차에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고기록장치는 자동차의 충돌 등 사고 전후 일정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주행속도, 제동페달, 가속페달 등의 작동 여부)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사고기록정보는 사고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별표 5] <신설 2003.1.2>

자기인증표시(제39조의2관련)

1. 국내 제작자

제 작 자 : _____

제 작 연 도 : _____

차량총중량 : _____kg

	적차시하중	타이어형식	공기압	림형식
전축	_____kg	_____	_____ kg/㎠(PSI)	_____
후축	_____kg	_____	_____ kg/㎠(PSI)	_____

이 자동차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차 대 번 호 : _____

차 종 : _____ 차 명 : _____

※승용자동차는 적차시 하중·타이어 형식·공기압 및 림형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수입자

최초제작자 : _____ 수 입 자 명 : _____

제 작 연 도 : _____

차량총중량 : _____

	적차시하중	타이어형식	공기압	림형식
전축	_____kg	_____	_____ kg/㎠(PSI)	_____
후축	_____kg	_____	_____ kg/㎠(PSI)	_____

이 자동차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령에 적합하게 제작(수입)되었습니다.

차 대 번 호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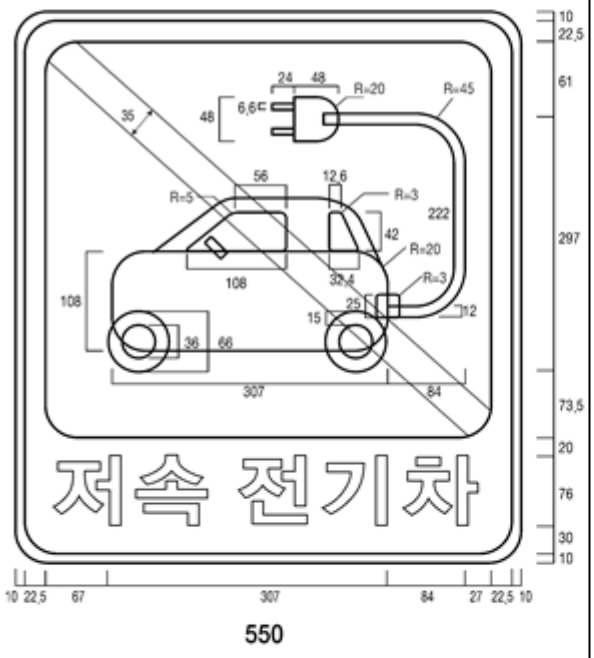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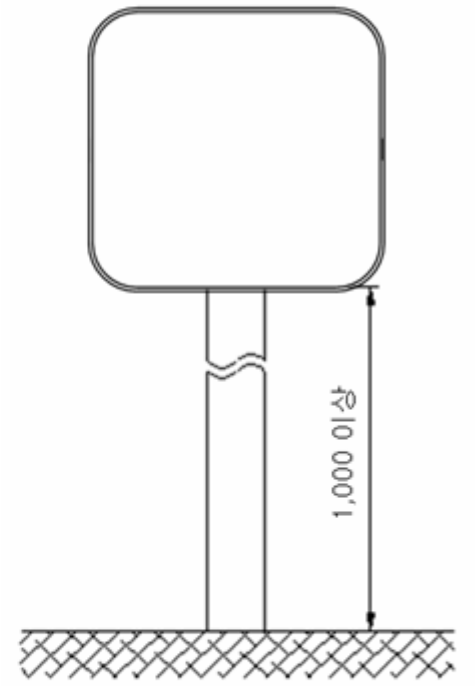
차 종 : _____ 차 명 : _____

※승용자동차는 적차시 하중·타이어 형식·공기압 및 림형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별표 5의2] <신설 2010.3.29>

운행구역 또는 운행제한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 등 시설물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제57조의6제3항 관련)

가. 공통기준

만드는 방식(단위: 밀리미터)	기둥의 규격(단위: 밀리미터)
	

나. 개별기준

일련번호	종 류	만드는 방식(단위: 밀리미터)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1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표지판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임을 지시하는 것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의 입구 그 밖에 필요한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 우측에 설치
2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제한구역 표지판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제한구역임을 지시하는 것	· 저속전기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주)

1. 표지판의 문자와 기호, 그림의 색채는 녹색 또는 백색으로, 바탕은 백색으로, 테두리는 녹색 또는 적색으로 한다.
2. 표지판의 크기는 교통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규격보다 아래와 같이 확대하거나, 0.5배 또는 0.8배 축소할 수 있다.

도 로 종 별	확 대 비 율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	1.5배, 2배, 2.5배
일반도로	1.3배 1.6배, 2배

3. 반사재료
 표지판은 고휘도 반사지 성능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문자의 서체 및 표지판의 재질
 문자의 서체 및 표지판의 재질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별표 5의3] <개정 2013.3.23>

내압용기안전기준(제57조의7관련)

1. 자동차용 내압용기(용기밸브 및 용기안전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조에 대한 안전기준

가. 기술기준

1) 내압용기의 재료는 그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전하는 고압가스의 종류·압력·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할 것

2) 내압용기의 두께는 그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용기에 사용한 재료, 충전하는 고압가스의 종류·압력·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합할 것

3) 내압용기의 구조는 그 용기의 안전성 및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전하는 고압가스의 종류·압력·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할 것

4) 내압용기의 치수는 그 용기의 안전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기의 재료, 충전하는 고압가스의 종류·충전압력·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할 것

5) 내압용기의 용접은 그 용기 이음매의 기계적 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기의 재료 및 구조에 따라 적절한 방법일 것

6) 내압용기의 열처리는 그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기의 재료 및 두께에 따라 적절한 방법일 것

7) 내압용기에는 그 용기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8) 내압용기에는 그 용기의 부속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부속장치를 부착할 것

나. 검사기준

1) 내압용기검사는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2) 설계단계검사는 내압용기가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제1호가목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항목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① 재료의 기계적·화학적 성능

② 용접부의 기계적 성능

③ 단열성능

④ 내압성능

⑤ 기밀성능

⑥ 그 밖에 용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3) 생산단계검사는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생산단계검사는 내압용기가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제1호가목의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① 재료의 기계적·화학적 성능

② 용접부의 기계적 성능

③ 단열성능

④ 내압성능

⑤ 기밀성능

⑥ 그 밖에 용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2. 용기밸브 및 용기안전장치 제조에 대한 안전기준

가. 기술기준

1) 용기밸브 및 용기안전장치(이하 "내압용기 부속품"이라 한다)의 재료는 그 내압용기 부속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압가스의 종류·압력·온도 및 사용환경에 적절할 것

2) 내압용기 부속품의 구조 및 치수는 그 용기부속품의 안전성·편리성 및 작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내압용기 부속품의 재료,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할 것

3) 내압용기 부속품은 그 내압용기 부속품의 재료,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 및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그 내압용기 부속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성능을 가질 것

4) 용기밸브에는 밸브의 개폐를 표시하는 문자와 개폐방향을 표시(핸들로 개폐하는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의 경우에는 "열림↔닫힘"으로 표시)할 것

나. 검사기준

1) 내압용기부속품 검사는 제2호가목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2) 설계단계검사는 내압용기부속품이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제2호가목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① 재료의 기계적·화학적 성능

② 내압성능

③ 기밀성능

④ 작동성능

⑤ 그 밖에 내압용기 부속품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3) 생산단계검사는 설계단계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 부속품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

며 생산단계검사는 내압용기 부속품이 안전하게 제조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제2호가목에 따른 기술기준과 다음의 성능 중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

① 내압성능

② 기밀성능

③ 작동성능

④ 그 밖에 내압용기 부속품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

※ 비고

1. 수입내압용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인정기준 및 공인검사기관이 인정한 항목에 대하여는 위 표에 따른 기술·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위 표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내압용기안전기준에 대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및 시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의4] <개정 2014.2.28>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및 표시방법(제57조의9 관련)

1. 내압용기에 각인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내압용기의 어깨부분 또는 프로텍터부분 등 보기 쉬운 곳에 각인할 것

나. 각인하기가 곤란한 내압용기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 또는 특수인쇄용지에 각인 또는 인쇄(글씨 크기는 세로 8mm 이상, 가로 6mm 이상일 것)한 표지를 내압용기 외면에 부착한 다음 투명한 수지로 감싸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할 것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라목6)의 "[KG]"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내압용기 외면에 부착할 수 있다.

라. 다음 사항을 순서에 따라 각인하되 1)부터 5)까지는 내압용기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직접 하고, 6)은 내압용기 검사를 실시한 검사원이 각인할 것

1) 용기번호

가) 내압용기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또는 약호: 알파벳 5자리 이내

나) 제조일련번호: 제조연도 뒤 2자리, 배치번호 4자리, 일련번호 3자리를 띄어쓰기 없이 숫자로 표기(예, YYXXXXXXX)

다) 내압시험 합격 연월: 합격 연도 4자리, 월 2자리를 띄어쓰기 없이 숫자로 표기(예, YYYYMM)

라) 내부용적(기호: V, 단위: L): 기호+내부용적(숫자 3자리)+단위를 띄어쓰기 없이 표기

마) 용기번호 가)부터 라)까지의 항목을 순서대로 한 줄로 이어서 각인할 경우 각 항목을 (-)로 구분하여 표기할 것

2) 내압용기 중량(기호: W, 단위: kgf, 용기에서 분리할 수 있는 용기밸브 및 용기안전장치는 중량에서 제외한다)

3) 충전가스 명칭

가) 압축천연가스를 충전하는 내압용기: CNG

나) 액화천연가스를 충전하는 내압용기: LNG

다)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내압용기: LPG

라) 압축수소가스를 충전하는 내압용기: CHG

4) 최고 충전압력(기호: FP, 단위: MPa)

5) 내압시험압력(기호: TP, 단위: MPa)

6) "[KG]"자의 각인: 크기 6㎜ × 10㎜

마. 내압용기 외면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내압용기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표시하도록 할 것

1) 내압용기 외면의 도색은 회색(압축수소내압용기는 주황색)으로 할 것. 다만,

스테인리스강 등 재질의 특성상 도색이 곤란한 경우에는 내압용기 동체의 외면 상단 둘레에 해당 색상의 폭 10cm 이상의 띠로 쉽게 지워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표시할 수 있다.

2) 내압용기 외면에 그 용도를 "자동차용"으로 표시할 것

3) 내압용기 외면에 가연성가스가 충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표시할 것



규격: 변의 길이 10cm, 테두리 1cm

색상: 테두리 – 빨간색, 바탕 – 흰색, 그림 – 검정색

4) 압축천연가스 및 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의 외면에는 사용연한(연월)을 표시하고, "이 내압용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용기밸브와 용기 안전장치만 부착할 것"의 문구를 표시할 것

2. 내압용기 부속품에 각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내압용기 부속품의 보기 쉬운 곳에 각인할 것

나. 각인하기가 곤란한 부속품의 경우에는 다른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해당 내압용기부속품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할 것

다. 다음 사항을 순서에 따라 각인하되 1)부터 7)까지는 내압용기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직접 하고, 8)은 내압용기 검사를 실시한 검사원이 각인할 것

1) 내압용기 부속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또는 약호

2) 내압용기 부속품의 형식: 알파벳 또는 숫자 7자리 이내

3) 제조일련번호: 제조연도 뒤 2자리, 제조 주(週) 2자리, 일련번호 6자리를 띄어쓰기 없이 숫자로 표기(예, YYXXXXXXXX)

4) 내압용기 부속품검사 합격 연월: 합격 연도 4자리, 월 2자리를 띄어쓰기 없이 숫자로 표기(예, YYYYMM)

5) 내압용기 부속품 중량(기호: W, 단위: kgf)

6) 내압시험압력(기호: TP, 단위: MPa)

7) 부속품의 기호

가) 압축천연가스를 충전하는 내압용기의 부속품: CNG

나) 액화천연가스를 충전하는 내압용기의 부속품: LNG

다)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내압용기의 부속품: LPG

라) 압축수소가스를 충전하는 내압용기의 부속품: CHG

8) "[illegible]"자의 각인: 크기 3㎜ × 5㎜

[별표 5의5] <개정 2013.3.23>

자동차용 내압용기장착검사기준(제57조의11관련)

1. 자동차에는 그 자동차 및 연료장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내압용기·용기밸브·안전밸브·과류방지밸브·역류방지밸브·가스충전구·가스충전밸브·주밸브·감압밸브·용기고정장치·압력계 및 연료계 등 필요한 장치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배관은 사용하는 연료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재료로 제조될 것

4.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내압성능을 가지며 그 배관에 대한 손상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할 것

5. 자동차에는 그 자동차 및 연료장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최고충전압력 등 적절한 표시를 할 것

6. 자동차의 내압용기는 자동차의 연료저장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7. 자동차의 연료장치에 설치하는 제품이 법 제35조의6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 비고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의6] <개정 2014.2.28>

내압용기의 각인 및 표시방법(제57조의15관련)

1. 합격표시 등

내압용기재검사에 합격한 내압용기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각인할 것. 다만, 각인하기가 곤란한 내압용기의 경우에는 다목과 같은 합격표의 부착으로 각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가. 내압용기재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약호

나. 내압용기재검사의 연월

다. 내압용기재검사 합격표

내압용기재검사 합격표				
자동차등록번호				합격인
재검사 연월일				
유효기간 만료일				
충전가스명				
최고충전압력(MPa)		개수		
번호	용기의 번호	부속품의 기호와 번호		
1				
2				
3				
4				
5				
6				
7				
8				
9				
10				

80

80

※ 비고

1. 재질은 금속박판 또는 특수인쇄용지로 한다.
2. 글자의 표기는 3년 이상 잘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인쇄한다.
3. 합격인은 직경 15㎜인 원형인 "합" 자 표시를 한다.
4. 유효기간 만료일은 해당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내압용기 중 가장 짧은 기간을 말한다.
5. 최고충전압력은 해당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내압용기 중 가장 낮은 압력을 말한다.
6. 합격표는 연료충전구 덮개 안쪽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이것이 곤란한 경우 충전구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별표 5의7] <개정 2014.2.28>

내압용기재검사기준 및 방법(제57조의13제2항관련)

1. 일반 기준 및 방법

가. 일반기준

(1)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의 내압용기재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내압용기를 깨끗하게 세척하고 건조한 상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연료장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별표5의3, 별표5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압축천연가스 및 압축수소가스 내압용기의 사용연한은 법 제35조의6에 따른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으로 한다.

(4) 가스누출검사는 연료가 충전된 상태에서 연료계통 및 내압용기를 가스누출감지기 및 감지액 등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차대번호 표기내용이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자동차등록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상세정밀검사

(1) 환기시설을 갖춘 검차장에서 내압용기가 자동차에 장착된 상태로 누출검사를 실시한 다음 2명이 상호 교차로 육안 및 검사기기로 내압용기 등을 검사한다.

(2) 내압용기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반사경 등 기계·기구를 이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내압용기 고정장치 설치 또는 차체 구조상 곤란한 부분은 계측기 및 육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공간이 협소하여 계측기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식 등의 깊이 측정을 생략하고, 육안으로 판정할 수 있다.

(5) 검사는 초음파두께측정기, 내시경 및 버니어캘리퍼스 등 결함 측정 장비와 확대경 등 보조 장비를 사용하여 검사한다.

2. 상세정밀검사의 기준 및 방법

항 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동일성 및 표시사항 확인		가.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차대번호 표기가 등록증 내용과 일치할 것 나. 내압용기(용기밸브를 포함한다)의 각인 또는 각인 표시사항이 법령에 적합할 것	가.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차대번호 표기가 일치한지 여부 확인 나. 각인 또는 각인 표시사항이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및 등록된 내용과 일치한지 여부 확인
손상	절상/	가. 손상 깊이는 금속재 0.5 ㎜이하, 복합	절상·긁힘·홈·마모에 의한 손상깊이

	긁힘/ 홈/	재 1.25mm이하일 것 나. 복합재의 섬유는 끊어짐, 노출 또는 탈락이 없을 것 다만, 섬유의 끊어짐이 원주방향으로 발생한 홈(실선)의 경우 금속라이너의 부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을 계측기 및 관능으로 확인
	마모	복합재의 마모깊이는 1.25㎜ 미만일 것	용기의 마모를 관능으로 확인하고 손상의 정도를 계측기로 측정
	응력균열	용기의 재질이 응력을 받아 용기 또는 복합재에 균열 또는 손상이 없을 것	용기 및 복합재의 응력균열 등의 손상 여부를 관능으로 확인
	함 몰 (우그러짐)	손상된 깊이가 1.6㎜ 미만이고, 그 손상의 직경 또는 길이가 50㎜ 이상일 것	손상의 깊이, 직경 및 길이를 계측기로 확인
	충격손상	복합재가 충격·사고 등에 의한 타격 손상 면적이 1㎠ 미만일 것	충격·사고 등에 의한 타격 면적을 계측기로 확인
부식	오목부식 (공식)	화학물질, 산화물 또는 녹에 의해 발생한 작은 구멍(공식)이 용기 최소두께의 25% 미만일 것	녹 등에 의해 발생한 구멍의 깊이를 계측기로 확인
	일반부식	화학적 산화 또는 녹으로 인한 부식의 깊이는 용기 최소두께의 15% 미만일 것	화학적 산화 또는 녹으로 인한 부식된 면적 및 깊이를 계측기로 확인
	선형부식	공식의 간격이 한 개의 공식 너비보다 큰 경우로서 그 부식 깊이가 용기 최소 두께의 10% 미만이고, 그 부식의 길이는 100㎜ 미만일 것	선상부식의 깊이 및 길이를 계측기로 확인
	섬유층 아래 부식	복합재 표면 또는 복합재의 끝과 인접한 금속라이너 표면에 부식이 없을 것	복합재료와 금속라이너 경계층 또는 연결부분의 부식여부를 관능으로 확인(필요시 접착 테이프를 분리한다)
외적 영향 결함	그을림	탄화된 흔적이나 그을림이 없거나 물에 씻겨 질 것	탄화된 흔적이나 그을림을 물로 씻은 후 관능으로 확인
	화학물질 침투	화학물질의 침투로 재질의 용해 등의 변형이 없거나 그 영향으로 영구적인 변색 또는 손상이 없을 것	화학물질의 침투 여부를 관능으로 확인

	자외선상해	가. 복합재의 내압부 재료가 자외선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 이 경우 복합재 표면의 광택이 퇴색되거나 백색으로 변색되는 경우는 손상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자외선에 의한 손상여부를 관능으로 확인
	열해 (熱害)	금속재 및 복합재에 화염 또는 전기 아크에 의한 열 손상이 없을 것	화염 또는 전기 아크 등 열에 의한 손상 여부를 관능으로 확인
변형	부풀음	용기의 부풀음 또는 휨이 없을 것	부풀음 여부를 관능으로 확인
	기포/들뜸	용기의 표면에 기포 또는 들뜸이 없을 것	기포 또는 들뜸 여부를 관능으로 확인
압력방출 장치		손상 깊이는 0.5mm 미만일 것	관능 및 계측기로 확인
연료장치		연료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연료계통에 가스누출이 없을 것	연료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를 관능으로 확인 가스누출감지기로 가스누출여부 확인

[별표 6] 삭제 <1999.12.31>

[별표 7] 삭제 <1999.12.31>

[별표 8] 삭제 <2013.12.12>

[별표 9] <개정 2004.12.6>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제62조관련)

1.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원동기

○ 에어클리너엘리먼트의 교환

○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 머플러의 교환

나. 동력전달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액셀레이터케이블의 교환

○ 클러치케이블의 교환

다. 제동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

라. 주행장치

○ 허브베어링을 제외한 주행장치의 점검·정비

○ 허브베어링의 점검·정비(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완충장치

○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쇽업쇼바의 교환

바. 전기장치

○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사. 기타

○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 판금·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2.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춘 경우

가. 자동차정비시설등을 모두 갖춘 경우

○ 자가자동차의 점검·정비

나. 차고 및 기계·기구를 갖추고,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갖춘 경우

(1) 원동기

○ 실린더헤드 및 타이밍벨트의 점검·정비(원동기의 종류에 따라 매연측정

기· 일산화탄소측정기 또는 탄화수소측정기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

○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 배기장치의 점검·정비

○ 플라이휠(flywheel) 및 센터베어링(centerbearing)의 점검·정비

(2) 동력전달장치

○ 클러치의 점검·정비

○ 변속기의 점검·정비

○ 차축 및 추진축의 점검·정비

○ 변속기와 일체형으로 된 차동기어의 교환·점검·정비

(3) 조향장치

○ 조향핸들의 점검·정비

(4) 제동장치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브레이크 파이프·호스·페달 및 레버와 공기탱크의 점검·정비

○ 브레이크라이닝 및 케이블의 점검·정비

(5) 주행장치

○ 차륜(허브베어링을 포함한다)의 점검·정비(차륜정렬은 부품의 탈거등을 제외한 단순조정에 한한다)

(6) 완충장치

○ 쇽업쇼바의 점검·정비

○ 코일스프링(쇽업쇼바의 선행작업)의 점검·정비

(7) 전기·전자장치

○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전자장치의 점검·정비

(8) 기타

○ 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 부분도장

○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비고 : "자동차정비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표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구 분	내 용
1.차고	보유자동차의 일상점검과 정비에 지장이 없는 면적의 차고를 갖출 것
2.기계·기구	가. 휠 밸런서 나. 공기압축기 다. 검차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라. 스프레이건 마. 부동액회수재생기(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3.시설·장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과 같다. 다만, 작업장 면적과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기술인력	가.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이상 또는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자가 2인이상일 것 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

[별표 10] <개정 2010.2.18>

자동차운행정지표지(제64조제1항 관련)

(앞 면)

자 동 차 운 행 정 지

자동차등록번호:

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운행정지를 명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인

134㎜×190㎜
(인쇄용지(특급) 120g/㎡)

(뒷 면)

이 표지는 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가 아니면 제거하지 못함

비고

1. 바탕색은 백색으로, 문자는 적색으로 한다.
2. 이 표지는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붙인다.

[별표 11] 삭제 <1999.12.31>

[별표 12] <개정 2003.1.2>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기준 및 검사방법(제68조제5항관련)

1. 검사기준

가. 제동시험기

(1) 형식의 구분

(가) 단순형 제동시험기 : 시험기의 롤러위에 자동차의 바퀴를 올려놓고 롤러를 구동시킨 상태에서 자동차바퀴를 제동할 때에 발생하는 회전력의 반력을 검출하여 제동력을 측정하는 제동시험기(이하 "롤러구동형 제동시험기"라 한다)중 각 바퀴의 제동력만을 측정하는 형식

(나) 판정형 제동시험기 : 롤러구동형 제동시험기중 각 바퀴의 제동력을 측정하여 합계 및 차이를 지시하거나 자동차의 축중 또는 차량중량에 대한 제동력의 비율로 지시하여 제동능력의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형식

(다) 차륜구동형 제동시험기 : 시험기의 롤러위에 자동차의 바퀴를 올려 놓고 바퀴의 구동에 의하여 롤러를 회전시켜 일정속도에서 제동할때의 롤러의 감속도를 검출하여 각 바퀴의 제동력을 측정하거나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형식

(2) 구조·장치의 작동 및 설치상태에 대한 검사기준

(가) 지시계 : 제동력 등 각 지시값은 과도한 변동이 없는 상태일 것

(나) 롤러 : 롤러는 기준직경의 5퍼센트 이상 과도하게 손상 또는 마모된 부분이 없을 것

(다) 제동력전달장치 : 감속기와 전동기는 구동중 심한 이상음 또는 진동이 없을 것

(라) 판정장치 : 판정형 및 차륜구동형 제동시험기의 제동력 판정장치는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마) 기록장치 : 자동차검사에 사용되는 기기는 기록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바) 중량설정장치 : 판정형 제동시험기의 중량설정장치는 작동 및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사) 기타 장치 및 표시

1) 리프트 또는 롤러고정장치등 자동차의 입·퇴출용 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2) 자동차바퀴의 이탈방지장치는 손상이 없고 그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3) 제동시험기의 형식, 제작번호, 허용축중(중량), 제작일자 및 제작회사가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아) 제동시험기는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

(3) 정밀도에 대한 검사기준

(가) 제동력지시 및 중량설정지시의 정밀도는 설정하중에 대하여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것

1) 좌·우제동력지시 : ±5퍼센트 이내(차륜구동형은 ±2퍼센트이내)

2) 좌·우합계제동력지시 : ±5퍼센트 이내

3) 좌·우차이제동력지시 : ±25퍼센트 이내

4) 중량설정지시 : ±5퍼센트 이내

(나) 판정정밀도는 축중에 대하여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이내일 것

1) 좌·우제동력합계 판정 : ±5퍼센트 이내

2) 좌·우제동력차이 판정 : ±2퍼센트 이내

나. 전조등시험기

(1) 형식의 구분

(가) 수동형 : 사람의 힘으로 전조등시험기를 전조등의 정면에 위치하도록 하여 광도 및 광축을 측정하는 형식

(나) 자동형 : 전조등시험기가 전조등의 광축을 스스로 추적하여 광도 및 광축을 측정하는 형식

(다) 집광식 : 전조등의 빛을 수광부 중앙의 집광렌즈로 모아 광전지에 비추어 광도 및 광축을 측정하는 방식

(라) 투영식 : 수광부 중앙의 집광렌즈와 상·하·좌·우 4개의 광전지를 설치하고 투영스크린에 전조등의 모양을 비추어 광도 및 광축을 측정하는 방식

(2) 구조·장치의 작동 및 설치상태에 대한 검사기준

(가) 지시계 : 광도 및 광축 지시값은 과도한 변동이 없는 상태일 것

(나) 정대장치 : 차량을 정면으로 조준하기 위한 조준기등의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다) 수광부지지대 및 이동장치 : 지주는 견고하게 지지되고 좌·우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라) 판정장치 : 자동형기기는 판정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마) 기록장치 : 자동차검사에 사용되는 기기는 기록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바) 형식등 표시 : 전조등시험기의 형식·제작번호·제작일자 및 제작회사가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사) 전조등시험기는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

(3) 정밀도에 대한 검사기준

전조등시험기의 광도지시·광축편차 및 판정정밀도는 설정값에 대하여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이내일 것

(가) 광도지시 : ±15퍼센트 이내

(나) 광축편차 : ±1/6도 이내

(다) 판정정밀도

1) 광도 : ±1,000칸델라 이내

2) 광축 : ±1/6도 이내

다. 사이드슬립측정기

(1) 형식의 구분

(가) 답판 연동형 : 자동차의 조향바퀴를 연동하는 양쪽 답판위에 통과시켜 주행에 의하여 발생되는 옆미끄럼량을 측정하는 형식

(나) 단일 답판형 : 자동차의 한쪽 조향바퀴만을 답판위에 통과시켜 주행에 의하여 발생되는 옆미끄럼량을 측정하는 형식

(다) 단순형 : 자동차의 옆미끄럼량을 측정하여 지시 또는 지시 및 판정하는 형식

(라) 자동형 : 제동시험기 및 속도계시험기와 복합하여 자동차의 옆미끄럼량을 측정하여 지시 및 판정하는 형식

(2) 구조·장치의 작동 및 설치상태에 대한 검사기준

(가) 답판 : 답판의 윗면은 자동차바퀴와의 사이에 적당한 마찰계수를 가져야 하며,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고, 답판의 이동에 소요되는 작동력은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이내일 것

1) 작동시작점 : 4킬로그램이내

2) 5밀리미터점 : 8킬로그램이내

(나) 지시계 : 지시값의 과도한 떨림이 없이 옆미끄럼량을 내측 또는 외측으로 확실하게 나타낼 것

(다) 판정장치 : 자동형기기는 판정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라) 기록장치 : 자동차검사에 사용되는 기기는 기록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마) 형식등 표시 : 사이드슬립측정기의 형식·제작번호·제작일자 및 제작회사가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바) 사이드슬립측정기는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

(3) 정밀도에 대한 검사기준

미끄럼량의 지시 및 판정에 대한 정밀도는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것

(가) 0점 지시 : ±0.2mm/m(m/km) 이내

(나) 5밀리미터 지시 : ±0.2mm/m(m/km) 이내

(다) 판정정밀도 : ±0.2mm/m(m/km) 이내

라. 속도계시험기

(1) 형식의 구분

(가) 차륜구동형(표준형) : 자동차바퀴의 구동에 의하여 롤러를 회전시켜 측정하는 형식

(나) 롤러구동형(자력식) : 시험기롤러의 구동에 의하여 자동차의 바퀴를 회전시켜 측정하는 형식

(다) 단순형 :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측정하여 지시 또는 지시 및 판정하는 형식

(라) 자동형 : 제동시험기 및 사이드슬립측정기와 복합하여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측정하여 지시 및 판정하는 형식

(2) 구조·장치의 작동 및 설치상태에 대한 검사기준

(가) 지시계 : 속도지시값은 과도한 변동이 없는 상태일 것

(나) 롤러 : 롤러등 회전부는 지시계가 지시하는 최고속도에 상당하는 회전수로 작동하는 경우라도 과도한 진동 및 이음이 없을 것

(다) 판정장치 : 자동형기기는 판정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라) 기록장치 : 자동차검사에 사용되는 기기는 기록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마) 롤러고정장치 : 자동차를 롤러에 안전하게 진입 및 퇴출시킬 수 있는 롤러고정장치의 작동상태에 이상이 없을 것

(바) 바퀴이탈방지장치 : 바퀴이탈방지장치는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상없이 작동할 것

(사) 리프트 : 자동차의 입·퇴출용 리프트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아) 형식 등 표시 : 속도계시험기의 형식·제작번호·허용축중(중량)·제작일자 및 제작회사가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자) 속도계시험기는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

(3) 정밀도에 대한 검사기준

(가) 지시 : 설정속도(35㎞/H 이상)의 ±3퍼센트 이내

(나) 판정 : 판정기준값의 1킬로미터 이내

마. 택시미터주행검사기

(1) 형식의 구분

(가) 외부검출형 : 회전롤러 외부에 설치한 광화이버 센서로 회전수를 검출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형식

(나) 내부검출형 : 회전롤러축에 장착된 엔코더로 회전수를 검출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형식

(2) 구조·장치의 작동 및 설치상태에 대한 검사기준

(가) 지시계 : 지시거리등 각 지시값은 과도한 변동이 없는 상태일 것

(나) 회전수검출기 : 검출센서, 연결선, 연결단자의 단선 및 파손등 이상이 없을 것
(다) 보정장치 : 실제주행 거리와 주행검사기 주행거리의 오차를 보정하는 보정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라) 형식등 표시 : 택시미터주행검사기의 형식, 제작번호, 제작일자 및 제작사가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3) 정밀도에 대한 검사기준
(가) 거리지시 : 기준기의 시험펄스값에 해당하는 주행거리를 지시할 것
(나) 보정치 : 롤러직경의 3%이내
(다) 판정장치 : 수리검정 또는 사용검정의 각각 거리허용차 범위에 적합하게 판정할 것

바. 가스누출감지기
(1) 형식의 구분
(가) 접촉연소형 : 접촉연소에 의한 촉매의 온도변화를 전기저항으로 변환하여 측정하는 형식
(나) 반도체형 : 가스흡착에 의한 반도체의 전도도 변화량을 측정하는 형식
(다) 기타형식 : 접촉연소형 또는 반도체형 이외의 형식
(2) 구조·장치의 작동 및 설치상태에 대한 검사기준
(가) 채취부 : 채취구 및 호스는 균열 및 파손등 이상이 없을 것
(나) 지시계 :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다) 경보장치 : 측정농도에 따른 경보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라) 형식등 표시 : 가스누출감지기의 형식, 제작번호, 제작일자 및 제작사가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3) 정밀도에 대한 검사기준
폭발하한값(LEL) 20%이내에서 가스누출을 감지하여야 한다.

2. 검사방법
가. 제동시험기
(1) 좌·우제동력
(가) 단순형 및 판정형 제동시험기는 최대제동력 지시값의 10퍼센트 이상에서 좌측 및 우측에 대하여 두가지이상의 하중을 설정하여 측정할 것
(나) 차륜구동형 제동시험기는 전·후·좌·우 롤러 각각에 대하여 세가지 이상의 압력을 주어 해당제동력을 측정할 것
(2) 좌·우합계제동력
최대제동력 지시값의 10퍼센트 이상에서 좌측 및 우측에 대하여 세가지 이상 의 하중을 설정하여 좌·우합계 지시값을 측정할 것
(3) 좌·우차이제동력
최대제동력차이 지시값의 20퍼센트 이상에서 좌·우 각각에 대하여 한가지 이상의 편하중을 설정하여 측정할 것
(4) 중량설정

자동중량설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으로 세가지 이상의 값을 설정하여 측정할 것

(5) 합계제동력 판정점

좌·우합계제동력 지시값을 설정중량에 대하여 주제동력 및 주차제동판정으로 나누어 각각 측정할 것. 다만, 판정점 기억방식은 판정기준값 설정상태의 적합성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6) 차이제동력 판정점

좌·우제동력차이 지시값을 설정중량에 대한 차이 판정값으로 나누어 측정할 것. 다만, 판정점 기억방식은 판정기준값 설정상태의 적합성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7) 구조·장치의 작동상태

각 구조·장치의 작동상태가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관능으로 확인할 것

나. 전조등시험기

(1) 광도지시

교정기의 상·하·좌·우향 광축을 각각 0(영)도로 설정한 상태에서 교정기의 광도를 1만칸델라, 2만칸델라 및 3만칸델라등 세가지 값 이상으로 측정할 것

(2) 광축 편차지시

(가) 광도변화에 따른 광축의 편차는 2만칸델라의 광도기준값이 상·하·좌 ·우 광축을 각각 0(영)도로 조정한 상태에서 광도를 1만칸델라 및 3만 칸델라로 각각 변화시켜 광축지시의 편차를 측정할 것

(나) 각도변화에 따른 광축의 편차는 광도를 2만칸델라로 설정하여 좌·우·하향 1도 및 2도, 상향 1도에서 각각 측정할 것

(3) 판정점

안전기준에서 정한 광도 및 광축의 기준에 대한 적정 판정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판정점 기억방식은 판정기준값 설정상태의 적합성 확인으로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4) 구조·장치의 작동상태

각 구조·장치의 작동상태가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다. 사이드슬립측정기

(1) 0점 지시

검출장치 부착측 답판을 내측 및 외측으로 3밀리미터 밀었다가 놓은 후 답판의 복원성 및 0점지시를 확인할 것

(2) 5밀리미터점 지시

답판에 대하여 내측 및 외측으로 각각 5밀리미터를 밀어 그때의 지시값을 측정할 것(답판의 길이는 1미터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판정점

지시검출측 답판을 내측 및 외측으로 5밀리미터 밀어 판정점을 확인할 것. 다만, 판정점 기억방식은 판정기준값 설정상태의 적합성 확인으로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4) 구조·장치의 작동상태

각 구조·장치의 작동상태가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라. 속도계시험기

(1) 속도지시

매시 30킬로미터이상 매시 100킬로미터이하의 속도에서 두가지 이상의 값으로 측정할 것

(2) 판정점

매시 40킬로미터의 속도에서 정 15퍼센트점과 부 10퍼센트점에서 정상판정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판정점 기억방식은 판정기준값 설정상태의 적합성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구조·장치의 작동상태

각 구조·장치의 작동상태가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마. 택시미터주행검사기

(1) 지시계 : 기준기로 기본거리 및 이후거리에 해당하는 펄스값을 주행검사기에 부여하여 지시값을 확인할 것

(2) 판정장치 : 기준기로 거리의 허용차(수리검정 0~4%, 사용검정 -1~+5%)에 해당하는 펄스값을 부여하여 판정여부를 확인할 것

(3) 각 구조·장치의 작동상태가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관능으로 확인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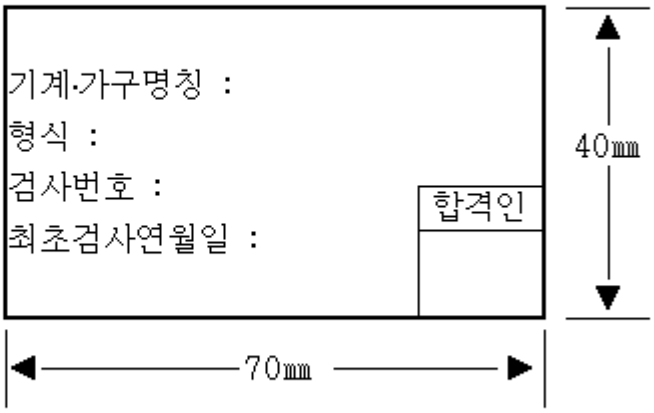
바. 가스누출감지기

(1) 표준가스를 사용하여 감지기능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것

(2) 각 구조·장치의 작동상태가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관능으로 확인할 것

[별표 13]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합격표(제69조제4항관련)



비고 :

1. 재질 : 알미늄판 또는 동판
2. 글자의 표기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인쇄 또는 각인
3. 합격인 : 직경 15㎜인 원형인("합"자 각인)



4. 기계·기구의 명칭은 다음 약호를 사용할 수 있다.
 가. AT : 사이드슬립측정기
 나. BT : 제동시험기
 다. ST : 속도계시험기
 라. HT : 전조등시험기
 마. BST : BT와 ST의 복합기기

[별표 14] 삭제 <1999.12.31>

[별표 15] <개정 2014.12.31.>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제73조 관련)

1. 일반기준 및 방법

가. 자동차의 검사항목 중 제원측정은 공차(空車)상태에서 시행하며 그 외의 항목은 공차상태에서 운전자 1명이 승차하여 시행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차(積車)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나. 자동차의 검사는 이 표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기기·계측기·관능 또는 서류확인 등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능(觀能)·서류 등으로 식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검사기기 또는 계측기에 의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제원측정 시 구조 및 제원이 자동차등록증, 자기인증(제원표) 또는 튜닝승인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

2) 타이어 요철형 무늬의 깊이, 배기관의 열림방향, 경적음, 배기소음 및 타이어공기압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동차의 전조등이 4등식일 때 좌·우 각 1개씩 주행빔의 광도, 광축을 측정한 때 나머지 전조등의 경우

4) 「소방기본법」, 「계량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 관계서류를 제시할 때 그 항목을 확인하는 경우

5) 검사시설이 없는 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

6) 특수한 구조로 검차장의 출입이나 검사기기로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인 경우

7) 전자제어장치 등의 장치가 없거나 전자장치진단기와 통신이 되지 아니하여 각종 센서를 진단할 수 없는 경우

2. 신규검사 및 정기검사

가. 비사업용 자동차

항 목	검 사 기 준	검 사 방 법
1) 동일성 확인	자동차의 표기와 등록번호판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대번호·원동기형식 및 등록번호가 일치하고,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상태가 양호할 것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 확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상태 확인
2) 제원측정	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하고, 제원이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길이·너비·높이·최저지상고, 뒤 오우버행(뒤차축중심부터 차체후단까지의 거리) 및 중량을

		계측기로 측정하고 제원허용차의 초과 여부 확인
3) 원동기	가) 시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없을 것	공회전 또는 무부하 급가속상태에서 진동·소음 확인
	나) 원동기의 설치상태가 확실할 것	원동기 설치상태 확인
	다) 점화·충전·시동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점화·충전·시동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라) 윤활유 계통에서 윤활유의 누출이 없고, 유량이 적정할 것	윤활유 계통의 누유 및 유량 확인
	마) 팬벨트 및 방열기 등 냉각계통의 손상이 없고 냉각수의 누출이 없을 것	냉각계통의 손상 여부 및 냉각수의 누출 여부 확인
4) 동력 전달장치	가) 손상·변형 및 누유가 없을 것	변속기의 작동 및 누유 여부 확인 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변형 여부 확인
	나) 클러치 페달 유격이 적정하고, 자동변속기 선택레버의 작동상태 및 현재 위치와 표시가 일치할 것	클러치 페달 유격 적정 여부, 자동변속기 선택레버의 작동상태 및 위치표시 확인
5) 주행장치	가) 차축의 외관, 휠 및 타이어의 손상·변형 및 돌출이 없고, 수나사 및 암나사가 견고하게 조여 있을 것	차축의 외관, 휠 및 타이어의 손상·변형 및 돌출 여부 확인 수나사·암나사의 조임 상태 확인
	나) 타이어 요철형 무늬의 깊이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할 것	타이어 요철형 무늬의 깊이 및 공기압을 계측기로 확인
	다) 흙받이 및 휠하우스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	흙받이 및 휠하우스 설치상태 확인
	라) 가변축 승강조작장치 및 압력조절장치의 설치위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가변축 승강조작장치 및 압력조절장치의 설치위치 및 상태 확인
6) 조종장치	조종장치의 작동상태가 정상일 것	시동·가속·클러치·변속·제동·등화·경음·창닦이기·세

		정액분사장치 등 조종장치의 작동 확인
7) 조향장치	가) 조향바퀴 옆미끄럼량은 1미터 주행에 5밀리미터 이내일 것	조향핸들에 힘을 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이드슬립측정기의 답판 위를 직진할 때 조향바퀴의 옆미끄럼량을 사이드슬립측정기로 측정
	나) 조향 계통의 변형·느슨함 및 누유가 없을 것	기어박스·로드암·파워실린더·너클 등의 설치상태 및 누유 여부 확인
	다) 동력조향 작동유의 유량이 적정할 것	동력조향 작동유의 유량 확인
8) 제동장치	가) 제동력 (1)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공차중량의 50퍼센트 이상이고 각축의 제동력은 해당 축중의 50퍼센트(뒤축의 제동력은 해당 축중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2) 동일 차축의 좌·우 차바퀴 제동력의 차이는 해당 축중의 8퍼센트 이내일 것 (3) 주차제동력의 합은 차량중량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주제동장치 및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력을 제동시험기로 측정
	나) 제동계통 장치의 설치상태가 견고하여야 하고, 손상 및 마멸된 부위가 없어야 하며, 오일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유량이 적정할 것	제동계통 장치의 설치상태 및 오일 등의 누출 여부 및 브레이크 오일량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
	다) 제동력 복원상태는 3초 이내에 해당 축중의 20퍼센트 이하로 감소될 것	주제동장치의 복원상태를 제동시험기로 측정
	라) 피견인자동차 중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는 제동장치 분리 시 자동으로 정지가 되어야 하며, 주차브레이	피견인자동차의 제동공기라인 분리 시 자동 정지 여부, 주차 및 비상브레이크 작동 및 설치상태 등 확인

	크 및 비상브레이크 작동상태 및 설치상태가 정상일 것	
9) 완충장치	균열·절손 및 오일 등의 누출이 없을 것	스프링·쇽업쇼버의 손상 및 오일 등의 누출 여부 확인
10) 연료장치	작동상태가 원활하고 파이프·호스의 손상·변형 및 연료누출이 없을 것	가) 연료장치의 작동상태, 손상·변형 및 조속기 봉인상태 확인 나)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가스누출감지기로 연료누출 여부를 확인 다) 연료의 누출 여부 확인(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로의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한 연료누출 여부 포함)
11) 전기 및 전자장치	가) 전기장치 (1) 축전지의 접속·절연 및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2) 자동차 구동 축전지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3) 전기배선의 손상이 없고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4) 차실 내 및 차체 외부에 노출되는 고전원전기장치간 전기배선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보호 기구를 설치할 것	가) 접속·손상·절연 및 설치상태 확인 나) 구동 축전지의 차실과의 격리상태 확인 다) 고전원전기장치의 전기배선 보호 기구 설치상태 확인
	나) 전자장치 (1) 원동기 전자제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2)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구동력제어장치(TCS), 전자식차동제한장치 및 차체자세제어장치, 에어백, 순항제어장치 등 안전운전 보조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전자장치진단기로 각종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12) 차체 및 차대	가) 차체 및 차대의 부식·절손 등으로 차체 및 차대의 변형	차체 및 차대의 부식 및 부착물의 설치상태 확인

	이 없을 것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손상·변형이 없을 것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설치상태 확인
	다) 최대적재량의 표시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일치할 것	최대적재량(탱크로리는 최대적재량·최대적재용량 및 적재품명) 표시 확인
	라) 차체에는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된 부분이 없을 것	차체의 외관 확인
	마)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및 보호표지는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차체의 색상 및 보호표지 설치상태 확인
13)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가) 변형 및 손상이 없을 것	커플러 및 킹핀의 변형 여부 확인
	나) 차량 총중량 0.75톤 이하 피견인자동차의 보조연결장치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보조연결장치 설치상태 확인
14) 승차장치	가)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좌석·승강구·조명·통로·좌석안전띠 및 비상구 등의 설치상태가 견고하고, 파손되어 있지 아니하며 좌석수의 증감이 없을 것	좌석·승강구·조명·통로·좌석안전띠 및 비상구 등의 설치상태와 비상탈출용 장비의 설치상태 확인
	나) 머리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을 것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 승합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 제외)에 머리지지대의 설치 여부 확인
	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승강구 설치상태 및 규격 확인
15) 물품적재장치	가) 적재함 바닥면의 부식으로 인한 변형이 없을 것 나) 적재량의 증가를 위한 적재함의 개조가 없을 것 다) 물품적재장치의 안전잠금장치가 견고할 것 라) 청소용자동차 등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에는	물품의 적재장치 및 안전시설 상태 확인(변경된 경우 계측기 등으로 측정)

<table>
<tr><td></td><td>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td><td></td></tr>
<tr><td>16) 창유리</td><td>접합유리 및 안전유리로 표시된 것일 것</td><td>유리(접합·안전)규격품 사용 여부 확인</td></tr>
<tr><td rowspan="3">17) 배기가스 발산방지 및 소음방지장치</td><td>가) 배기소음 및 배기가스농도는 운행차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td><td>배기소음 및 배기가스농도를 측정기로 측정</td></tr>
<tr><td>나) 배기관·소음기·촉매장치의 손상·변형·부식이 없을 것</td><td>배기관·촉매장치·소음기의 변형 및 배기계통에서의 배기가스 누출 여부 확인</td></tr>
<tr><td>다) 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닐 것</td><td>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치의 훼손 또는 조작 여부 확인</td></tr>
<tr><td rowspan="5">18) 등화장치</td><td>가) 광도(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하인 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1) 2등식: 1만 5천칸델라 이상
(2) 4등식: 1만 2천칸델라 이상</td><td rowspan="2">좌·우측 전조등의 광도와 주광축의 진폭을 전조등시험기로 측정</td></tr>
<tr><td>나) 주광축의 진폭은 10미터 위치에서 다음 수치 이내일 것
(단위: 센티미터)
<table>
<tr><td>구분</td><td>상</td><td>하</td><td>좌</td><td>우</td></tr>
<tr><td>좌측</td><td>10</td><td>30</td><td>15</td><td>30</td></tr>
<tr><td>우측</td><td>10</td><td>30</td><td>30</td><td>30</td></tr>
</table></td></tr>
<tr><td>다) 정위치에 견고히 부착되어 작동에 이상이 없고, 손상이 없어야 하며, 등광색이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td><td>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제동등·후퇴등·차폭등·후미등·안개등·비상점멸표시등과 그 밖의 등화장치의 점등·등광색 및 설치상태 확인</td></tr>
<tr><td>라) 후부반사기 및 후부반사판의 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td><td>후부반사기 및 후부반사판의 설치상태 확인</td></tr>
<tr><td>마)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된 표시등이 안전기준에</td><td>표시등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td></tr>
</table>

	적합할 것	
	바)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등화 및 금지등화가 없을 것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여부 확인
19) 경음기 및 경보장치	경음기의 음색이 동일하고, 경적음·싸이렌음의 크기는 안전기준상 허용기준 범위 이내일 것	경적음이 동일한 음색인지 확인 경적음 및 싸이렌음의 크기를 소음측정기로 확인(경보장치는 신규검사로 한정함)
20) 시야확보장치	가) 후사경은 좌·우 및 뒤쪽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돌출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후사경 설치상태 확인
	나) 창닦이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는 기능이 정상적일 것	창닦이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의 작동 및 설치상태 확인
	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광각 실외후사경이 설치되어 있을 것	광각 실외후사경 설치 여부 확인
21) 계기장치	가) 모든 계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계기장치의 설치 여부 확인
	나)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정 25퍼센트, 부 10퍼센트 이내일 것	매시 40킬로미터의 속도에서 자동차속도계의 지시오차를 속도계시험기로 측정
	다)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계, 주행기록계의 설치 및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최고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계, 주행기록계의 설치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22) 소화기 및 방화장치	소화기가 설치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소화기의 설치 여부 확인
23) 내압용기	용기 등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용기의 변형이 없고 사용연한 이내 일 것	용기 등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합격품인지 여부, 설치상태 및 변형·손상 여부 및 사용연한 확인
24) 기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및 보호표지 등 그 밖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그 밖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나. 사업용자동차

항 목	검 사 기 준	검 사 방 법

1) 동일성 확인	자동차의 표기와 등록번호판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대번호·원동기형식 및 등록번호가 일치하고,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상태가 양호할 것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 형식의 표기 확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상태 확인
2) 제원측정	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하고, 제원이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길이·너비·높이·최저지상고, 뒤 오우버행(뒤차축중심부터 차체후단까지의 거리) 및 중량을 계측기로 측정하고 제원허용차의 초과 여부 확인
3) 원동기	가) 시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없을 것	공회전 또는 무부하 급가속상태에서 진동·소음 확인
	나) 원동기의 설치상태가 확실할 것	원동기 설치상태 확인
	다) 점화·충전·시동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점화·충전·시동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라) 윤활유 계통에서 윤활유의 누출이 없고, 유량이 적정할 것	윤활유 계통의 누유 및 유량 확인
	마) 팬벨트 및 방열기 등 냉각계통의 손상이 없고 냉각수의 누출이 없을 것	냉각 계통의 손상 여부 및 냉각수의 누출 여부 확인
4) 동력 전달장치	가) 손상·변형 및 누유가 없을 것	변속기의 작동 및 누유 여부 확인 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변형 여부 확인
	나) 클러치 페달 유격이 적정하고, 자동변속기 선택레버의 작동상태 및 현재 위치와 표시가 일치할 것	클러치 페달 유격 적정 여부, 자동변속기 선택레버의 작동상태 및 위치표시 확인
5) 주행장치	가) 차축의 외관, 휠 및 타이어의 손상·변형 및 돌출이 없고, 수나사 및 암나사가 견고하게 조여 있을 것	차축의 외관, 휠 및 타이어의 손상·변형 및 돌출 여부 확인 수나사·암나사의 조임 상태 확인
	나) 타이어 요철형 무늬의 깊이는	타이어 요철형 무늬 깊이 및 공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할 것	기압을 계측기로 확인
	다) 흙받이 및 휠하우스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	흙받이 및 휠하우스 설치상태 확인
	라) 가변축 승강조작장치 및 압력조절장치의 설치위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가변축 승강조작장치 및 압력조절장치의 설치위치 및 상태 확인
	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버스의 앞바퀴에는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재생타이어 장착 여부 확인
	바)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및 시외직행버스의 앞바퀴는 튜브가 없는 타이어(Tubeless Tire)를 사용할 것	튜브가 없는 타이어(Tubeless Tire)의 장착 여부 확인
6) 조종장치	조종장치의 작동상태가 정상일 것	시동·가속·클러치·변속·제동·등화·경음·창닦이기·세정액분사장치 등 조종장치의 작동 확인
7) 조향장치	가) 조향바퀴 옆미끄럼량은 1미터 주행에 5밀리미터 이내일 것	조향핸들에 힘을 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이드슬립측정기의 답판 위를 직진할 때 조향바퀴의 옆미끄럼량을 사이드슬립측정기로 측정
	나) 조향계통의 변형·느슨함 및 누유가 없을 것	기어박스·로드암·파워실린더·너클 등의 설치상태 및 누유 여부 확인
	다) 동력조향 작동유의 유량이 적정할 것	동력조향 작동유의 유량 확인
8) 제동장치	가) 제동력 (1)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공차중량의 50퍼센트 이상이고 각축의 제동력은 해당 축중의 50퍼센트(뒤축의	주제동장치 및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력을 제동시험기로 측정

	제동력은 해당 축중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2) 동일 차축의 좌·우 차바퀴 제동력의 차이는 해당 축중의 8퍼센트 이내일 것 (3) 주차제동력의 합은 차량 중량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나) 제동계통 장치의 설치상태가 견고하여야 하고, 손상 및 마멸된 부위가 없어야 하며, 오일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유량이 적정할 것	제동계통 장치의 설치상태 및 오일 등의 누출 여부 및 브레이크 오일량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
	다) 제동력 복원상태는 3초 이내에 해당 축중의 20퍼센트 이하로 감소될 것	주제동장치의 복원상태를 제동시험기로 측정
	라) 피견인자동차 중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는 제동장치 분리 시 자동으로 정지가 되어야 하며, 주차브레이크 및 비상브레이크 작동상태 및 설치상태가 정상일 것	피견인자동차의 제동공기라인 분리 시 자동 정지 여부, 주차 및 비상브레이크 작동 및 설치상태 등 확인
	마) 드럼과 라이닝(또는 디스크와 패드)의 간격 및 마모상태가 정상일 것	점검구 등을 통하여 확인. 다만, 점검구 또는 관능으로 드럼과 라이닝(또는 디스크와 패드)의 간격 및 마모상태 확인이 곤란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동력 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9) 완충장치	균열·절손 및 오일 등의 누출이 없을 것	스프링·쇽업쇼버의 손상 및 오일 등의 누출 여부 확인
10) 연료장치	작동상태가 원활하고 파이프·호스의 손상·변형 및 연료누출이 없을 것	가) 연료장치의 작동상태, 손상·변형 및 조속기 봉인상태 확인 나)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가스누출감지기로 연료누출 여부를 확인

		다) 연료의 누출 여부 확인(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로의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한 연료누출 여부 포함)
11) 전기 및 전자장치	가) 전기장치 (1) 축전지의 접속·절연 및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2) 자동차 구동 축전지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3) 전기배선의 손상이 없고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 (4) 차실 내 및 차체 외부에 노출되는 고전원전기장치간 전기배선은 금속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보호 기구를 설치할 것	가) 접속·손상·절연 및 설치상태 확인 나) 구동 축전지의 차실과의 격리상태 확인 다) 고전원전기장치의 전기배선 보호 기구 설치상태 확인
	나) 전자장치 (1) 원동기 전자제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2)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구동력제어장치(TCS), 전자식차동제한장치 및 차체자세제어장치, 에어백, 순항제어장치 등 안전운전 보조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전자장치진단기로 각종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12) 차체 및 차대	가) 차체 및 차대의 부식·절손 등으로 차체 및 차대의 변형이 없을 것	차체 및 차대의 부식 및 부착물의 설치상태 확인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손상·변형이 없을 것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설치상태 확인
	다) 최대적재량의 표시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일치할 것	최대적재량(탱크로리는 최대적재량·최대적재용량 및 적재품명)표시 확인

	라) 차체에는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된 부분이 없을 것	차체의 외관 확인
	마)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및 보호표지는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차체의 색상 및 보호표지 설치상태 확인
13)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가) 변형 및 손상이 없을 것	커플러 및 킹핀의 변형 여부 확인
	나) 차량 총중량 0.75톤 이하 피견인자동차의 보조연결장치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보조연결장치 설치상태 확인
14) 승차장치	가)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좌석·승강구·조명·통로·좌석안전띠 및 비상구 등의 설치상태가 견고하고, 파손되어 있지 아니하며 좌석수의 증감이 없을 것	좌석·승강구·조명·통로·좌석안전띠 및 비상구 등의 설치상태와 비상탈출용 장비의 설치상태 확인
	나) 머리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을 것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승합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 제외)에 머리지지대의 설치 여부 확인
	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승강구 설치상태 및 규격 확인
	라) 입석손잡이가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고 손상이 없을 것	입석손잡이 설치상태 확인
	마) 일반시외, 시내, 마을, 농어촌 버스의 승강구 안전장치 및 가속페달잠금장치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일반시외, 시내, 마을, 농어촌 버스의 승강구 안전장치 및 가속페달잠금장치의 작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바) 승합자동차(15인 이하 제외)의 운전자의 좌석 뒤에는 승객석과 분리될 수 있는 보호봉 또는 격벽시설을 설치되어 있을 것	승합자동차(15인 이하 제외)의 운전자의 좌석 뒤에는 승객석과 분리될 수 있는 보호봉 또는 격벽시설을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15) 물품적재	가) 적재함 바닥면의 부식으로	물품의 적재장치 및 안전시설

<table>
<tr><td>장 치</td><td>인한 변형이 없을 것
나) 적재량의 증가를 위한 적재함의 개조가 없을 것
다) 물품적재장치의 안전잠금장치가 견고할 것
라) 청소용자동차 등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차량에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td><td>상태 확인(변경이 된 경우에는 계측기 등으로 측정)</td></tr>
<tr><td>16) 창유리</td><td>접합유리 및 안전유리로 표시된 것일 것</td><td>유리(접합·안전)규격품 사용 여부 확인</td></tr>
<tr><td rowspan="3">17) 배기가스 발산방지 및 소음방지장치</td><td>가) 배기소음 및 배기가스농도는 운행차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td><td>배기소음 및 배기가스농도를 측정기로 측정</td></tr>
<tr><td>나) 배기관·소음기·촉매장치의 손상·변형·부식이 없을 것</td><td>배기관·촉매장치·소음기의 변형 및 배기계통에서의 배기가스 누출 여부 확인</td></tr>
<tr><td>다) 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닐 것</td><td>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치의 훼손 또는 조작 여부확인</td></tr>
<tr><td rowspan="3">18) 등화장치</td><td>가) 광도(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제외한다)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1) 2등식: 1만 5천칸델라 이상
(2) 4등식: 1만 2천칸델라 이상</td><td rowspan="2">좌·우측 전조등의 광도와 주광축의 진폭을 전조등시험기로 측정</td></tr>
<tr><td>나) 주광축의 진폭은 10미터 위치에서 다음 수치 이내일 것
(단위: 센티미터)
<table>
<tr><th>구분</th><th>상</th><th>하</th><th>좌</th><th>우</th></tr>
<tr><td>좌측</td><td>10</td><td>30</td><td>15</td><td>30</td></tr>
<tr><td>우측</td><td>10</td><td>30</td><td>30</td><td>30</td></tr>
</table></td></tr>
<tr><td>다) 정위치에 견고히 부착되어 작동에 이상이 없고, 손상이</td><td>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제동등·후퇴등·차폭등·후미</td></tr>
</table>

	없어야 하며, 등광색이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등·안개등·비상점멸표시등과 그 밖의 등화장치의 점등·등광색 및 설치상태 확인
	라) 후부반사기 및 후부반사판의 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후부반사기 및 후부반사판의 설치상태 확인
	마)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된 표시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표시등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바) 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안내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안내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사)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등화 및 금지등화가 없을 것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여부 확인
19) 경음기 및 경보장치	경음기의 음색이 동일하고, 경적음·싸이렌음의 크기는 안전기준상 허용기준 범위 이내일 것	경적음이 동일한 음색인지 확인 경적음 및 싸이렌음의 크기를 소음측정기로 확인(경보장치는 신규검사로 한정함)
20) 시야확보장치	가) 후사경은 좌·우 및 뒤쪽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돌출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후사경 설치상태 확인
	나) 창닦이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는 기능이 정상적일 것	창닦이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의 작동 및 설치상태 확인
	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광각 실외후사경이 설치되어 있을 것	광각 실외후사경 설치 여부 확인
21) 계기장치	가) 모든 계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계기장치의 설치 여부 확인
	나)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정 25퍼센트, 부 10퍼센트 이내일 것	매시 40킬로미터 속도에서 자동차속도계의 지시오차를 속도계시험기로 측정
	다)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계, 주행기록계의 설치 및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최고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계, 주행기록계의 설치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22) 소화기 및 방화	소화기가 설치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것	소화기의 설치 여부 확인

장치		
23) 내압용기	용기 등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용기의 변형이 없고 사용연한 이내일 것	용기 등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합격품인지 여부, 설치상태 및 변형·손상 여부 및 사용연한 확인
24) 기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 및 보호표지 등 그 밖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그 밖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3. 튜닝검사

가. 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 튜닝과 관련된 검사항목(튜닝승인 내용대로 변경하였는지 등)은 신규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중량 측정 및 최대안전경사각도의 측정은 필요한 경우만 실시한다.

나. 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내압용기 중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내압용기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압용기장착검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4. 임시검사

법 제37조에 따른 정비명령 사항과 관련된 검사항목에 대하여 신규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5. 정기검사 중 환경 관련 항목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87조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별표 15의2] <개정 2006.3.15>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관련)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주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별표 16] <개정 2010.2.18>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기술인력기준 (제82조 관련)

1. 검사시설

가. 용지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모양으로 하되, 본검사소는 1,000㎡ 이상, 소규모검사소는 33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나. 용지 중 수검차량의 진입·진출로 및 주차장은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다. 검차장은 1검사진로 당 65㎡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라. 사무실은 수검자의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2. 검사장비

품 명	비 고
가. 사이드슬립측정기 나. 제동시험기 다. 속도계시험기 라. 전조등시험기 마. 소음측정기 바. 매연측정기 사. 일산화탄소측정기 아. 탄화수소측정기 자. 가스누출감지기 차. 공기과잉률측정기 카. 영상촬영용사진기 타. 전자장치진단기	1) 사이드슬립측정기, 제동시험기, 속도계시험기, 전조등시험기, 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공기과잉률측정기, 전자장치진단기는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실시간 통신 및 측정결과가 자동 입력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1개의 검사기기로 2 이상의 품명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때에는 다른 품명의 검사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영상촬영용 사진기는 촬영된 검사장면이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실시간 전송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4) 전자장치진단기는 원동기부분전자제어장치 및 섀시(동력전달장치 포함), 에어백(Air Bag) 등에 관련된 센서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5) 기타 하체유격검출기, 완충장치(쇼크업소버)측정기, 하체영상촬영장치 등을 갖추어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주: 각 호의 검사장비는 1대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3. 검사기술인력

가. 검사책임자: 검사소당 1명(검사책임자는 검사진로 당 검사원수에 포함한다)

나. 검사원

검사진로 당 연간 검사대수	검사진로 당 검사원수
(가) 7천대 미만	1인 이상
(나) 7천대 이상 1만5천대 미만	2인 이상
(다) 1만5천대 이상 2만5천대 미만	3인 이상
(라) 2만5천대 이상	4인 이상

주: 1. 자동차종합검사 시행지역은 종합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 기준을 적용하고, 가목 및 나목의 검사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출장검사를 행하는 검사소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검사원을 가산(소수점 이하는 1인으로 산정)하되, 출장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일수는 본검사소의 검사진로 당 검사인원으로 산정한다.

1주당 출장검사횟수/6

3. 검사진로 당 연간 검사대수(출장검사 대수를 제외한다)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하여 수행하는 모든 검사업무의 실적을 합산하되, 차대번호 등의 표기, 안전검사, 신규검사, 구조변경승인 및 구조변경검사의 실적은 1대를 2대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별표 17] <개정 2013.3.23>

자동차검사시설별 연간검사능력대수(제84조관련)

검 사 시 설	진 료 수	연 간 검 사 능 력
1. 자동제어방식 검사기기(모든 검사기기가 자동제어방식인 경우)	1개진료마다	4만대이하
2. 반자동제어방식 검사기기(전조등시험기가 반자동 또는 수동인 경우)	1개진료마다	2만5천대이하

주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연간검사능력대수를 초과하여 검사능력을 산정할 수 있다.

1.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때
2. 별표16제3호의 검사진료당 검사원수를 초과한 때
3.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이 우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기기를 설치한 때

[별표 18] <개정 2014.2.28>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의 범위와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제86조관련)

1. 검사업무의 범위 및 시설기준

<table>
<tr><td colspan="3" rowspan="2">검사업무의 범위</td><td>자동차종합정비업자</td><td>소형자동차
정 비 업 자</td></tr>
<tr><td>모든 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td><td>승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td></tr>
<tr><td rowspan="9">검차장
시설</td><td colspan="2">면적</td><td>65㎡ 이상</td><td>36㎡ 이상</td></tr>
<tr><td rowspan="3">검사
진로</td><td>길이</td><td>13m 이상</td><td>9m 이상</td></tr>
<tr><td>너비</td><td>5m 이상</td><td>4m 이상</td></tr>
<tr><td>높이</td><td>4m 이상</td><td>2.5m 이상</td></tr>
<tr><td rowspan="3">핏트</td><td>길이</td><td>8m 이상</td><td>5m 이상</td></tr>
<tr><td>깊이</td><td>1.5m 이상</td><td>1.5m 이상</td></tr>
<tr><td>너비</td><td>0.8m 이상</td><td>0.75m 이상</td></tr>
<tr><td colspan="2">진입·진출로</td><td>대형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td><td>승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td></tr>
<tr><td rowspan="11">검사용
기계
·
기구</td><td colspan="2">사이드슬립측정기</td><td>허용축중 10,000㎏f 이상의 것 1대 이상</td><td>허용축중 1,500㎏f 이상의 것 1대 이상</td></tr>
<tr><td colspan="2">제동시험기</td><td>허용축중 10,000㎏f 이상의 것 1대 이상</td><td>허용축중 1,500㎏f 이상의 것 1대 이상</td></tr>
<tr><td colspan="2">속도계시험기</td><td>허용축중 10,000㎏f 이상의 것 1대 이상</td><td>허용축중 1,500㎏f 이상의 것 1대 이상</td></tr>
<tr><td colspan="2">전조등시험기</td><td colspan="2">1대 이상</td></tr>
<tr><td colspan="2">전자장치진단기</td><td colspan="2">1대 이상</td></tr>
<tr><td colspan="2">배기가스(Co/Hc)·공기과잉률측정기</td><td colspan="2">각 1대 이상(겸용의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td></tr>
<tr><td colspan="2">매연측정기</td><td colspan="2">1대 이상</td></tr>
<tr><td colspan="2">가스누출감지기</td><td colspan="2">1대 이상</td></tr>
<tr><td colspan="2">소음측정기</td><td colspan="2">보통소음계 또는 정밀소음계 1대 이상</td></tr>
<tr><td colspan="2">영상촬영용사진기</td><td colspan="2">1대 이상</td></tr>
<tr><td colspan="2">기타</td><td colspan="2">표준가스 및 매연표준지(검·교정용품), 영상보관용단말기</td></tr>
<tr><td>택시미터</td><td colspan="2">주행검사기</td><td colspan="2">거리의 오차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1대 이상</td></tr>
</table>

사용 검정기기		
사무실	면적	10㎡ 이상(다른 사무실 겸용가능)

주: 1. 검사전용진로는 1개에 한한다.

2. 검차장에 별도의 진출로가 없는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경우에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중 대형자동차를 검사할 수 없고, 검차장에 별도의 진출로가 없는 소형자동차정비업자의 경우에는 길이 7미터 이상의 자동차를 검사할 수 없으며, 검차장에 별도의 진출로가 없는 자동차종합정비업자 및 소형자동차정비업자는 연간 9천600대를 초과하여 검사할 수 없다.

3. 검사용 기계·기구 중 사이드슬립측정기·제동시험기·속도계시험기는 순차진행에 의하여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판정·기록되고 경형자동차를 측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동시험기는 자동차축중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사이드슬립측정기·제동시험기·속도계시험기 및 전조등시험기의 전(前)방향 8미터 이상(소형자동차정비업자의 경우에는 5미터 이상)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5. 택시미터주행검사기는 주롤러의 원주길이가 500밀리미터 이상이고, 회전수를 검출하는 검출기는 1회전당 1펄스 또는 1회전을 검출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위 표 중 승용자동차에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7. 사이드슬립측정기, 제동력시험기, 속도계시험기, 전조등시험기, 전자장치진단기, 배출가스·공기과잉률측정기 및 매연측정기, 영상촬영용사진기는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실시간 통신 및 측정결과가 자동 입력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8. 지정정비사업자는 그밖에도 하체유격검출기, 완충장치(쇼크업소버)측정기, 하체영상촬영장치 등을 갖추어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2. 검사능력별 기술인력 확보수준

진로 당 월간검사대수	검사진로 당 최소인원수
(가) 800대 이하	1인
(나) 800대 초과 1천500대 이하	2인
(다) 1천500대 초과	3인

주: 1. 진로 당 월간검사대수는 자동제어방식 검사기기(모든 검사기기가 자동제어 방식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2천600대를 초과할 수 없고, 반자동 제어방식 검사기기(전조등시험기가 반자동 또는 수동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2천대를 초과할 수 없다.

2.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원은 검사책임자를 대신할 수 있으며, 검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인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19] <신설 2006.3.15>

자동차검사 기술인력 교육기준(제92조관련)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자동차 관련 법령	20시간 이상	·자동차관리법령 ·대기환경보전법령 ·소음진동규제법령
자동차 검사기기	5시간 이상	·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자동차 검사실무	10시간 이상	·검사실습 및 행정관리요령

[별표 20] <개정 2014.2.28>

기술인력의 구분·자격 및 직무(제90조 관련)

구 분	자 격	직 무
검사책임자	1. 자동차검사주무로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의 기계직공무원으로서 자동차검사 및 정비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자동차검사소의 검사업무 총괄
검사주무	1. 자동차정비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동차검사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동차검사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자동차검사진로의 검사업무관리 및 적합여부 판정 나. 자동차검사의 실시 및 적합여부 판정 다. 검사시설의 관리
검사원	1.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2. 자동차정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내압용기재검사 분야만 해당한다)	가. 자동차검사의 실시 및 적합여부 판정 나. 검사시설의 관리 다. 내압용기재검사의 실시 및 적합여부 판정

주

1. 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라 함은 자동차검사소·정비업체 또는 자동차제작회사에서 자동차의 점검 또는 검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기계·기구정밀도검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 검사책임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주무 경력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 기술인력의 검사원 경력을 포함한다. 다만, 검사주무 경력으로 볼 수 있는 경력은 2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자동차정비기사 이상의 기술인력인 경우 검사원 경력에서 3년을 뺀 나머지 경력의 2분의 1을 검사주무 경력으로 본다.

나. 자동차정비산업기사인 기술인력인 경우 검사원 경력에서 5년을 뺀 나머지

경력의 2분의 1을 검사주부 경력으로 본다.

3. 자동차정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검사원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사의 자격을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 취득 전의 검사 근무경력을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가. 자동차정비기사자격을 신규 취득한 경우: 근무경력의 5분의 4를 검사기사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나. 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격을 신규 취득한 경우: 검사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의 7분의 5를 자동차정비산업기사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4. 자동차정비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검사원이 자동차정비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 취득 전 근무경력의 5분의 4를 정비기사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별표 21] <개정 2014.2.28>

택시미터검정설비 및 검정요원자격기준(제96조제2항관련)

1. 검정설비기준

검정종류	검정항목	검정설비명	검정설비규격	수량
제작검정	기차	전기식택시미터용기준기 및 시험장치	펄스범위 : 9,999펄스 이상 펄스속도 : 0~60펄스/매초 이상의 것 ·기본, 이후 1차, 이후 2차에 대한 시간, 거리구동시험에 따른 입력, 표시장치가 있을 것 ·전압을 0~30V까지 가변할 수 있는 장치로 갖춘 것 ·전압 및 전류표시기능이 있을 것 ·시간, 거리병산제에 따른 시험속도를 가변시험할 수 있을 것	1
	시간의 오차	스톱워치	최소눈금값이 0.1s 이하인 것	1
	노이즈시험	노이즈시험기	펄스높이 : 300v이상 펄스 폭 : 1㎲ 펄스상승시간 : 1ns 펄스극성 : +, - 펄스위상 : 0~360 주파수 : 60Hz	1
	파형시험	오실로스코프	200㎒ 이상	1
	전압변동	전압조정기	DC0~30V까지 조정이 가능한 것	1
	온도시험	항온조	온도조정범위 : -10~35°이상 정도 : ±1℃ 내면의 크기 : 70×70×50cm 이상의 것	1
	전압, 전류 저항 측정	멀티미터	전류·전압 및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0.2급 이상의 것	1
	진동시험	진동시험기	복진폭 1밀리미터 이상, 진동수 60㎒, 최대가속도가 매초당 20㎨로 72시간 연속 측정할 수 있는 것	1
수리검정	기차	전기식택시미터용기준기	펄스범위 : 9,999펄스 이상 펄스속도 : 0~60펄스/매초 이상의 것	1

	시간의 오차	스톱워치	최소눈금값이 0.1s 이하의 것	1
	거리의 오차	주행검사기	<주롤러> 주롤러의 원주길이는 500밀리미터 이상 <검출기> 회전수를 검출하는 검출기는 1회전당 1펄스 또는 1회전을 검출하는 구조 <지시부> ·기본표시숫자 : 5자리 이상 ·이후표시숫자 : 5자리 이상 ·기본, 이후 로울러회전수 표시값에 5퍼센트 이내에서 경보음을 발생하는 기능이 있을 것 ·시험이 끝나면 "0" 점 복귀장치가 있을 것 <안전장치> 주행장치에 따른 자동차의 탈출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1
사용검정	거리의 오차	주행검사기	수리검정과 동일	1

주

1. 삭제 <2014.2.28>
2. 시·도지사는 수리검정시 주행검사기를 주행코스로 대체할 수 있다.

2. 검정요원 자격기준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기계공학과·전기공학과·전자공학과·물리학과 또는 이에 준하는 학과의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정비기능사·계량기사·계량기능사·정밀 측정기사 또는 정밀측정기능사자격을 취득한 자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35시간 이상 택시미터 검정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라. 기타 가목 내지 다목의 자와 동등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

[별표 21의2] <개정 2014.10.6.>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제111조의2 관련)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구분	기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 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	·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	·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정비·성능점검 시설	·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기타	·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에 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3. 나목의 전시시설의 구조는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정비·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구분		자동차 종합정비업	자동차 소형 정비업	자동차 전문 정비업	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가. 시설면적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1,000㎡ 이상	400㎡ 이상	50㎡ 이상	300㎡이상
나. 시설·장비	가.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
	나. 체인부록(1톤 이상)	–	–	–	○
	다.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	–
	라.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다. 정비·검사기구	가. 제동시험기	○	○	–	–
	나. 전조등시험기	○	○	–	–
	다.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라. 속도계시험기	○	○	–	–
	마.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바. 탄화수소측정기	○	○	○	○
	사. 매연측정기	○	○	○	○
라. 시험·측정기	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나. 압력측정기	○	○	–	○
	다. 회전반경측정기	○	○	○	–
	라. 휠밸런스	○	○	○	–
	마. 토인측정기	○	○	○	–
	바. 캠버캐스터측정기	○	○	○	–
	사. 엔진종합시험기	–	–	–	○
	아. 노즐시험기	–	–	–	○
마. 공작기계	가. 실린더보링머신	–	–	–	○
	나. 실린더호닝머신	–	–	–	○
	다. 밸브시트그라인더	–	–	–	○
	라. 밸브시트카터	–	–	–	○
	마. 크랭크연마기	–	–	–	○
바. 삭제 <2013.9.6>					

주)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에 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구분		기준
가. 시설 기준	시설 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	4,500㎡ 이상
	해체작업장	600㎡ 이상
	부품보관창고	600㎡ 이상
나. 장비 기준	구난차(권상능력 3톤 이상)	1식 이상
	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	1식 이상
	중량계(계량능력 20톤 이상)	1식 이상
	압축기(압축능력 10㎥ 이상)	압축기·파쇄기·전단기·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파쇄기(가압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 이상)	
	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	
	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	

주) 가목 및 나목 외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1의3] <신설 2013.9.6>

작업내용 구분

	바디(B)		엔진(E)
1	헤드램프(전조등)(좌/우)	1	엔진
2	컴비네이션램프(후미등)(좌/우)	2	엔진커버(타이밍커버)
3	프론트범퍼(전면범퍼)	3	드로틀바디
4	리어범퍼(후면범퍼)	4	인젝터
5	후드(본넷)	5	타이밍벨트
6	전·후패널	6	에어컴프레서
7	전·후펜더(좌/우)	7	디스트리뷰터(배전기)
8	프론트도어(좌/우)	8	에어컨컨덴서
9	사이드미러(좌/우)	9	에어컨 컴프레서
10	리어도어(좌,우)	10	라디에이터
11	트렁크리드	11	발전기
12	백도어	12	시동전동기
13	윈도우모터	13	헤드가스켓
14	트렁크플로워	14	연료분사펌프
15	휠하우스(좌·우)		
16	필러패널		
17	사이드패널		
18	대쉬패널		
19	크로스멤버		
20	루프패널		
	의장(D)		**샤시(S)**
1	대쉬보드(크러쉬패드)	1	트랜스미션
2	계기판	2	등속조인트(CV조인트)
3	히터 유니트	3	프로펠러 샤프트
4	컴비네이션 스위치	4	프론트 서스펜션
5	ECU(컴퓨터)	5	리어 서스펜션
6	와이퍼모터/링케이지	6	제동 마스터백/실린더
7	에어백모듈	7	쇽업소버
8	안전벨트	8	ABS모듈
9	침수차량 정비(엔진·전기·하체)	9	파워스티어링기어
		10	스티어링샤프트

[별표 21의4] <개정 2013.9.6>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제117조의2관련)

1. 공통사항(매매업·정비업·폐차업)
 가. 사업자
 (1) 고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종사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이어야 한다.
 (4)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에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관련법령을 준수한 자이어야 한다.
 (5) 사업자는 수수료·요금 또는 가액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 자이어야 한다.
 나. 종사원
 (1)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종사원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2)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고객과 상담하여야 한다.
 (3) 고객에게 호객행위와 불법적인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가. 매매업
 (1) 사무실과 전시장 주변환경은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있게 관리되어야 한다.
 (2) 사무실의 구조와 면적은 이용하기에 편리하여야 한다.
 (3) 상품용 차량은 전시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나. 정비업
 (1)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유·폐부동액·폐수 및 폐걸레 등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의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규제 법령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LPG연료사용자동차의 정비업자는 용기내부의 잔류가스처리설비 또는 잔류가스 연소장치, 가스누출감지기, 소화기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자동차의 정비용 부품은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의 품질인정표시를 받은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폐차업

(1)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유·폐부동액·폐수 및 폐걸레 등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작업장을 콘크리트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외부와 분리되도록 작업장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주변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작업장 면적 중 300㎡ 이상의 옥내작업장을 갖추어야 한다.
(4) LPG차량의 폐차를 위하여 용기내부의 잔류가스 처리설비 또는 잔류가스 연소장치, 가스누출감지기, 소화기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재활용 부품의 관리를 위하여 300㎡의 부품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2] <신설 2005.2.5>

성능·상태점검자의 시설·장비기준등(제120조제2항관련)

구 분	자 격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	1.성능점검책임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2. 성능점검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검사 또는 정비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자 1인이상
시설·장비	1. 핏트 또는 리프트 2. 자기 진단기(스캐너) 3. 도막측정기 4. 카레이지작기 5. 청진기 6. 멀티테스터 7. 타이어덥게이지 8. 배터리전압측정기 9. 비중계 10. 가스누출감지기 11. 배기가스측정기(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주

1. 성능·상태점검자가 위의 기준을 갖추어 성능·상태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1개의 시설·장비로 2 이상의 성능·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때에는 다른 품명의 시설·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3] <개정 2010.2.18>

중고자동차의 상품용 표지(제121조제3항관련)

중고자동차의 상품내역			
자동차등록번호		거 래 유 형	□ 매매 □ 매매의 알선
연 식	년식	주 행 거 리	km
체 납 세 액	원	체 납 벌 과 금 액	원
저 당 설 정 가 액	원	할 부 채 무 액	원
차 종 /정 원	/	배 기 량	cc
연 료 종 류		변 속 기 종 류	
주요장비(옵션)			
검 사 유 효 기 간	년 월 일~	년 월 일	
사 고 경 력 (세 부 내 용)			
거 래 예 정 가 액	원부터	원까지	
년 월 일 ○○자동차매매업소 ㊞			
【기재시 참고사항】 ※ 차종/정원 : 승용·승합·화물·특수/승차정원 ※ 연료 종류 : 휘발유(GSL), 경유(DSL), LPG, 전기, 수소가스 ※ 변속기종류 : 자동(A/T), 수동(M/T), 세미오토(SAT), 무단변속기(CVT) ※ 주요장비(옵션) : 파워핸들(PS), 파워윈도우(PW), 자동잠금장치(ADL),에어컨(AC), 에어백(AB), 미끄럼방지장치(ABS), 트랙션컨트롤시스템(TCS),선루프(SR), CD체인져(CDC), 텔레비젼(TV), 알루미늄휠(AW), 가죽시트(LS),네비게이션시스템(NAV)			

257㎜×365㎜(신문용지 54g/㎡)

[별표 24] <개정 2012.11.23>

자동차매매사원증(제123조제1항 관련) (앞 쪽)

연도 표기

자동차매매사원증

사진
(2.8㎝×4㎝)

자동차매매사원증 번호:

업체명:

성 명:

발급기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

85㎜×54㎜(보존용지(1종) 120g/㎡ 또는 플라스틱)

(뒤 쪽)

유효기간:
생년월일:
조합명: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85㎜×54㎜(보존용지(1종) 120g/㎡ 또는 플라스틱)

주) 자동차매매사원증의 글자크기는 다음과 같고, 제1호의 글자체는 헤드라인체로,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글자체는 굴림체로 표시하며, 앞면 연도 표기의 크기는 17포인트로, 글자체는 헤드라인체로 표시한다.

명 칭	크 기	명 칭	크 기	명 칭	크 기	명 칭	크 기
1. 자동차매매사원증	16 포인트	3. 업체명	16 포인트	5. 발급기관	15 포인트	7. 생년월일	15 포인트
2. 자동차매매사원증 번호	15 포인트	4. 성 명	16 포인트	6. 유효기간	15 포인트	8. 조합명	15 포인트

[별표 25] <개정 2007.6.7>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제124조 관련)

1. 시설기준

시설구분	기준면적	시설내역
주차장	3,300㎡ 이상	경매참가자동차의 보관·주차 장소
경매실	200㎡ 이상	○ 경매참가자용 좌석 : 100석 이상 ○ 전광판 : 1대 이상 ○ 환등기 : 1대 이상 ○ 방송시설 : 1실 이상
사무실		○ 참가접수, 등록, 안전점검 결과의 조회, 경매가격의 조정 등을 위한 시설
성능점검·검사시설	50㎡ 이상	○ 핏트 또는 리프트(0.8m×10m, 인상능력 3톤 이상) ○ 휠 밸런서 ○ 압력측정기(0~70kg/㎠) ○ 카레이지작키(인상능력 1.5톤 이상) ○ 전류시험기(0~±60A) ○ 타이어 게이지(0~84kg/㎠)

2. 인력기준

가. 성능점검·검사책임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또는 정비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동차 검사 또는 정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나. 성능점검·검사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또는 정비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 검사 또는 정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1인 이상

[별표 26] <개정 2014.10.6.>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제131조제1항제3호 관련)

장치명	제한되는 작업 범위
1. 원동기 장치	○ 엔진 교환, 엔진 분해정비 중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및 엔진 탈·부착(엔진 밑에 있는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엔진 단순 탈·부착은 제외한다) ○ 디젤분사펌프(코먼레일형식은 제외한다)의 탈·부착, 정비
2. 연료 장치	○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 정비
3. 조향 장치	○ 조향기어의 탈·부착, 정비
4. 제동 장치	○ ABS 및 ASR모듈레이터 탈·부착, 정비 ○ 브레이크 챔버 탈·부착, 정비 ○ 분리식 배력장치 탈·부착, 정비(일체식 배력장치는 제외한다)
5. 완충 장치	○ 없음
6. 전기·전자 장치	○ 전조등 탈·부착, 정비(전구교환 및 전조등 하부에 부착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단순 탈·부착은 제외한다)
7. 기타 장치	○ 차체,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용접·도장

주: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위 표 제6호의 작업을 할 수 있다.

[별표 26의2] <개정 2014.12.31.>

주요 정비 작업(제133조제4항 관련)

정비업종	작업항목	
정비업 공통 (종합·소형·전문 정비업)	교환	엔진오일
		오토미션 오일
		브레이크 오일
		부동액
		팬벨트
		브레이크 앞 패드
		발전기
		시동모터
		디젤연료 휠터
		에어콘가스 보충
		타이어펑크(간이식)
		타이어펑크(탈착식)
종합·소형 정비업	교환 및 탈부착	범퍼(앞/뒤)
		후드
		휀더
		도어(앞/뒤)
		슬라이딩 도어(옆)
		트렁크리드
		패널(앞/뒤)
		루프패널
	판금·도장 작업	범퍼(앞/뒤)
		후드
		휀더(앞/뒤)
		도어(앞/뒤)
		도어(슬라이딩)
		루프 패널
		루프 사이드패널
		트렁크리드
		윈도우 필라
		사이드 스텝패널
		센터 필라
		사이드 미러
		패널(앞/뒤)
		패널 외측 방청 도장
		조색

[별표 27] 삭제 <1999.12.31>

[별표 28] <개정 2010.2.18>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시설기준(제140조제1항관련)

구 분		확 보 기 준
대지(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300㎡이상
장비	중량기(계량능력 10톤이상)	1식이상
	고철운반용자동차(최대적재량 2톤이상)	1대이상
	지게차(인양능력 3.5톤이상)	1대이상

주 :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에서는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으며,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 수집에 전용하여야 한다.

[별표 29] <개정 2013.3.23>

출입공무원의 증표(제155조관련)

(앞 면)

제 호

검 사 공 무 원 증

직 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 진

위의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함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인]

90㎜×60㎜
(청색켄트지 120g/㎡)

(뒷 면)

1. 이 증표를 소지한 공무원은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자동차·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자동차·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2. 검사 및 확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30] <개정 2010.11.25>

수수료(제156조제1항 관련)

납 부 자	금 액
1.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을 신청하는 자	
가.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1건에 대하여 3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나. 등록원부의 열람	1건에 대하여 1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	1대에 대하여 2천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천500원으로 한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동일 시·도 안의 주소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은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	1대에 대하여 1천300원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자	1대에 대하여 1천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천500원으로 한다.
5.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자	1건에 대하여 1천원
6. 법 제 1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1건에 대하여 7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600원으로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변경사항의 기재란이 부족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7. 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건에 대하여 2만원
8. 법 제27조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	1대에 대하여 1천800원
9. 법 제44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건에 대하여 2만원

10.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건에 대하여 2만원
11. 법 제47조에 따라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건에 대하여 2만원
12. 법 제47조에 따라 택시미터의 검정(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리검정만 해당한다)을 신청하는 자	1대에 대하여 3천원
13.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가. 등록	1건에 대하여 2만원
나. 변경등록	1건에 대하여 1만3천100원
14.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신고를 하는 자	1건에 대하여 1만2천원
15.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합병신고를 하는 자	1건에 대하여 1만2천원
16.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경매장개설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건에 대하여 2만원
17.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	
가. 전산자료의 이용승인	1건에 대하여 1만원
나. 전산자료의 제공	1건에 대하여 300원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4.11>

제 호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 명(명 칭)		주 민(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자 동 차	등 록 번 호			
	차 종		용 도	
재발급사항	□ 앞번호판 □ 뒤번호판 □ 앞·뒤번호판 □ 재봉인			
재발급사유	□ 훼손 □ 갱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시·도지사 확인사항
	1.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도 또는 시·군·구청	처리기간	즉 시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3호).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3.6.17>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용도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시·도지사 확인사항	수수료
자동차등록증	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도지사가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도지사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2.18>

<table>
<tr><td colspan="5">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신청서</td></tr>
<tr><td rowspan="3">신 청 인</td><td>상호(명칭)</td><td colspan="3"></td></tr>
<tr><td>성명(대표자)</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전화번호:)</td></tr>
<tr><td>사업장소재지</td><td colspan="4"></td></tr>
<tr><td>사 업 구 역</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5">※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1부</td></tr>
</table>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도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20,000원		

3331-17111민 210㎜×297㎜

96.10.4 승인 (일반용지 260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2.18>

제 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

상호(명칭)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소재지) :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사람을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
도지사

33331-00711일
96.10.4 승인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삭제 <1999.2.19>

[별지 제5호서식] 삭제 <1999.2.19>

[별지 제6호서식] 삭제 <1999.2.1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8.7>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용하려는 표기부호	둘째자리											
	셋째자리	부호										
		표기 차종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연간 2천500대 이상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조립한 실적(신규 제작·조립자의 경우에는 연간 제작·조립계획대수를 말합니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검사시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부 2. 표기시행계획서(표기의 배열·위치·각인관리요령·표기시행장소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7>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table>
<tr><td rowspan="3">신청인</td><td colspan="2">제작자명</td><td colspan="2">제작자등록번호</td></tr>
<tr><td colspan="4">주 소</td></tr>
<tr><td colspan="2">대표자 성명</td><td colspan="2">생년월일</td></tr>
<tr><td colspan="2">사업장 소재지</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6">표기부호
및
표기차종</td><td>둘째자리</td><td colspan="4"></td></tr>
<tr><td></td><td>표기부호</td><td>표지차종</td><td>표기부호</td><td>표기차종</td></tr>
<tr><td>셋째자리</td><td></td><td></td><td></td><td></td></tr>
<tr><td>열두째자리</td><td></td><td></td><td></td><td></td></tr>
<tr><td>열셋째자리</td><td></td><td></td><td></td><td></td></tr>
<tr><td>열넷째자리</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표기대상자동차</td><td colspan="4"></td></tr>
</table>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차대번호부기부호를 배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4.1>

표기시행통보서

[] 차대번호 [] 원동기번호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표기 자동차	제원관리 번호	차명 및 형식
	원동기 형식	
표기내용	양식	
	위치	
	방법	
사업장 소재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7자리로 된 표기내용설명서 1부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8.7>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등 인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종 · 용도	원동기형식
신청사항	[] 차대번호신규표기	[] 차대번호표기지움 · 재표기
	[] 원동기형식신규표기	[] 원동기형식표기지움 · 재표기

「자동차관리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동차검사대행자 귀하

첨부서류	표기를 지우거나 새로운 표기를 하여야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표기체계가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수입한 경우 : 수입면장, 기술검토서 사본, 안전검사증 사본 ○ 교통사고로 표기부분이 손상된 경우 : 사고사실증명서 ○ 기타사유로 인한 경우 :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서류 등	수수료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유의사항

1.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제작 · 조립자 및 교통안전공단 외에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2.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5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결 재	→	구비서류 확인	→	표기명령서 교부	→	자동차 제시	→	표기 시행
신청인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신청인		교통안전공단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2.18>

※제 호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등명령서

소 유 자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자 동 차	등 록 번 호		형 식	
	차 명		차 종	
명 령 사 항	기 존 표 기	□차대번호 :	□원동기형식 :	
	명 령 표 기	□차대번호 :	□원동기형식 :	
	표기(지움)시한		자동차제시일시	
	자동차제시장소			
표 기 (지 움)명 령 사 유				

「자동차관리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명합니다.

년 월 일

교통안전공단이사장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소유자에게 표기를 받거나 지울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3조제2항).

○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7호)

33331-30011일 210㎜×297㎜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1.4.1>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통보서

[] 표기시행자 변경사항 [] 표기시행 폐지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표기	폐지사유	
	폐지예정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없음

유의사항

○ 표기시행자의 변경(성명, 법인의 대표자 및 주소)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표기시행자가 표기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mm X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1999.12.31>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1999.12.31>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0.2.18>

<table>
<tr><td colspan="5">※제　　호
자동차처리명령서</td></tr>
<tr><td rowspan="2">소 유 자</td><td>상호(명칭)</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전화번호 :　　)</td></tr>
<tr><td rowspan="4">자 동 차</td><td>등 록 번 호</td><td></td><td>차 대 번 호</td><td></td></tr>
<tr><td>차 종</td><td></td><td>차 명</td><td></td></tr>
<tr><td>방 치 된 장 소</td><td colspan="3"></td></tr>
<tr><td>보 관 된 장 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명 령 사 항</td><td colspan="3">년 월 일까지 위 자동차를 자진회수 또는 폐차조치</td></tr>
<tr><td colspan="5">「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동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의 자진처리를 명령하오니 지정된 기한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인]</td></tr>
<tr><td colspan="5">○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td></tr>
</table>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12.15>

임시운행 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용자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사항	차종	차명
	차대번호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규격 × (mm)
	운행목적	
	운행기간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시험·연구 계획서(시험·연구 목적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800원.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1. 운행목적별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신규등록 신청·차대번호 표기 또는 전시 등을 위한 운행: 10일 이내
 나. 수출을 위한 운행: 20일 이내
 다.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40일 이내
 라. 제작자 등의 연구·개발 목적의 운행: 2년 이내
2.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6일 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한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1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4.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0.2.18> (앞 쪽)

임시운행허가증				
자동차 사용자	성 명 (명 칭)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허 가 번 호			허 가 기 간	
차 명			차 대 번 호	
운 행 목 적				
운 행 구 간				

「자동차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시운행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33331-01911일
96.10.4 승인

182㎜×128㎜
(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소유자의 주의사항
1. 이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은 허가기간동안 반드시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붙이고 운행하여야 됩니다. 2. 자동차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관청(신규등록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신규등록신청서류에 첨부하여 등록지 관할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자동차임시운행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목적 또는 기간을 위반하여 운행하거나, 반납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고

1. 재질은 접착식으로 합니다.
2. 접착제는 앞면 실선 바깥부분에만 칠합니다.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3.3.23>

제작자등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제작자명(법인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원제작자	상 호(법 인 명)	(※수입자만 해당합니다)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제작구분		□ 국내 제작·조립자 □ 수입자		
등록목적		□ 판매목적 □ 자가사용		
제작 등을 하려는 자동차의 종류		□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 이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항 및 제33조제3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제작자등 등록을 신청합니다.
□ 위와 같이 제작자등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위와 같이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국토교통부장관 확인사항
	1. 자동차 생산규모(최근 3년간 제작·조립 대수) 2.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수입자만 해당합니다) 또는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의 최근 3년 중 연간 최대 생산실적 3.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시설의 확보 내역 4. 제38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검사시설 확보내역 5. 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계약서(수입자만 해당합니다) 6.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제49조의2에 따른 자동차 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내역 또는 확보계획(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1.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국토교통부	처리기간	15일(7일)
수 수 료	없 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3.23>

제작자등 등록증

신청인	제작자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제작자 등록번호	자기인증 능력 [] 확보 [] 미확보

제작자 구분	구분 1	[] 자동차 제작자 [] 이륜 자동차 제작자
	구분 2	[] 국내 제작·조립자 [] 수입자

제작등을 하는 자동차 종류

[]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 이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수리하고 제작자등록번호를 배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유의사항

○ 자기인증능력 미확보 제작자는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4.8.7>

기술검토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차명	형식
	차종	원동기형식
	최초제작자명	제작국가
	최초자동차의 제원관리번호	차대번호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능시험대행자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의 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합니다) 3. 차대번호 표기내용 또는 차대번호 표기시행 계획(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4. 자기인증표시의 내용 및 부착방법	수수료 성능시험대행자가 정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확인	→	기술검토	→	기술검토서 발급
신청인		성능시험대행자		성능시험대행자		성능시험대행자		성능시험대행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4.8.7>

기술검토서

신청인	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생년월일
	주소	
자동차	차명	최초제작자명
	형식	원동기형식
	차대번호	
차대번호표기(시행 계획) 내용의 적정성	[] 적합 [] 부적합	
자동차안전검사 시 주요 확인사항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제36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성능시험대행자 (인)

유의사항

차대번호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합니다.

1. 조립자동차는 최초제작자 차대번호(1~8째 자리)
2. 수입자동차는 그 자동차의 차대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07.6.7>

<table>
<tr><td colspan="5">자동차안전검사신청서</td></tr>
<tr><td rowspan="2">신 청 인</td><td>제작자명</td><td></td><td>제작자등록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전화번호 :)</td></tr>
<tr><td rowspan="3">자 동 차</td><td>차 명</td><td></td><td>형 식</td><td></td></tr>
<tr><td>차 종</td><td></td><td>원 동 기 형 식</td><td></td></tr>
<tr><td>제원관리번호</td><td></td><td>검사신청대수</td><td></td></tr>
<tr><td colspan="2">검 사 받 을 장 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7">차 대 번 호 내 역</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4"></td></tr>
<tr><td colspan="4"></td></tr>
<tr><td colspan="4"></td></tr>
<tr><td colspan="4"></td></tr>
<tr><td colspan="4"></td></tr>
<tr><td colspan="4"></td></tr>
<tr><td colspan="5">「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 안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5">※구비서류
1. 기술검토서 사본 1부
2. 자동차제원표 및 외관도 각1부
.3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자동차에 한합니다)</td></tr>
</table>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성능시험대행자	처리기간	즉 시
수수료	성능시험대행자가 정한 금액		

210㎜×297㎜

(일반용지 6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1.4.1>

자동차안전검사증

제	호	
신청인	제작자명	제작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표시	차명	형식
	차종	규모
	유형	원동기형식
	용도	제원관리번호
	차대번호	모델연도
주요제원	길이(㎜)	원동기출력(ps/rpm)
	너비(㎜)	배기량(cc)
	높이(㎜)	연료의 종류
	승차정원(명)	최대적재량(kg)
	차량중량(kg)	차량총중량(kg)

위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안전검사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성능시험대행자 또는 제작자 인

210mm X 297mm(일반용지 6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개정 2011.4.1>

안전검사시설확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제작자명	제작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안전검사 시설	품명	전화번호
	소재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능시험대행자 귀하

첨부서류	1. 안전검사시설 확보 내역 2. 안전검사시설 사양서 1부 3. 안전검사시설 정도확인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 X297mm(일반용지 6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개정 2011.4.1>

안전검사시설확인서

제	호	
신청인	제작자명	제작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안전검사시설 소재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시설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성능시험대행자 인

210mm X297mm(일반용지 120g/㎡)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 <신설 2011.12.15>

안전검사 직접실시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제작자명	
	대표자명	
	제작자등록번호	
안전검사시설	안전검사 대상차종	
	소 재 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능시험대행자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함을 증빙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승인서 발급
신청인		성능시험대행자		성능시험대행자		성능시험대행자		성능시험대행자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7.6.7>

<table>
<tr><td colspan="8">제원통보서</td></tr>
<tr><td rowspan="2">제 작 자</td><td>제작자명</td><td colspan="2"></td><td>제작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전 화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차 명</td><td colspan="2"></td><td>형 식</td><td colspan="2"></td><td>원동기형식</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변경전차종
제원관리번호</td><td colspan="2" rowspan="2"></td><td>최초자동차
제작자</td><td colspan="2"></td></tr>
<tr><td>차대번호군
(1~8째자리)</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8">자동차의 개략적인 설명(※특수장치 등 추가설명 필요시 별첨)</td></tr>
<tr><td colspan="8">「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원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작자 (서명 또는 날인)</td></tr>
<tr><td colspan="8">구비서류
1. 자동차제원표 1부
2. 자동차외관도 1부
3.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td></tr>
<tr><td>통 보 하 는 곳</td><td colspan="3">성능시험대행자</td><td>처리기간</td><td colspan="2">10일 이내</td></tr>
<tr><td>수 수 료</td><td colspan="7">없음</td></tr>
</table>

210㎜×297㎜
(일반용지 60g/㎡)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14.8.7>

부품제작자등 등록·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제작자명(법인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최초 제작자	상호(법인명) (※수입자만 해당합니다)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제작구분	[] 국내 제작·조립자 [] 수입자	
자동차부품명(생산자)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항·제3항 및 제40조의6제4항에 따라

[] 위와 같이 부품제작자등 등록을 신청합니다.
[] 위와 같이 부품제작자등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위와 같이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등록	1. 자동차부품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계획에 관한 서류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 확보내역(시험시설 사용계약서를 포함합니다)에 관한 서류 3. 부품자기인증과 관련된 기술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변경	1. 법인 명칭 및 주소의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2. 대표자 성명의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3.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의 변경(시험시설 사용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증빙하는 서류	
	재발급	1. 헐어 못쓰게 된 등록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국토교통부 (제작자등록 관련부서)		국토교통부 (제작자등록 관련부서)		국토교통부 (제작자등록 관련부서)		국토교통부 (제작자등록 관련부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14.8.7>

부품제작자등 등록증

신청인	제작자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부품제작자등록번호		
최초 제작자 구분	제작자명	
	주소	
제작등을 하는 자동차부품명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6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 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장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 X 297mm(일반용지 60g/㎡)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 <개정 2013.3.23>

자동차부품등 제원통보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부품제작자	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부품명	형식
최초부품제작자		
변경전 부품	제원관리번호	안전기준 적용연도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첨으로 제출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원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부품제작자등 (서명 또는 인)

성능시험대행자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자동차부품 제원표 2. 자동차부품의 외관도 3. 그 밖의 자동차부품의 기능설명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 <신설 2011.12.15>

자동차부품 제원관리번호통보서

통보서발급번호		
부품제원관리번호		
부품제작자	제작자명	
	부품제작자 등록번호	
부품명		
형식		
최초부품제작자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8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성능시험대행자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4.10.31.>

자 동 차 제 원 표

1	제 작 자 명 (원 제 작 자 명)				제작자등록번호 (제작국가명)			
2	차 명				6	종 별		
3	형 식				7	유 형		
4	차대 · 차체형상				8	구 분		
5	승차정원(명)				9	용 도		
10	차량중량(kg)		()	17 원동기	형 식			
11	최대적재량(kg)				최 고 출 력 (ps / rpm)		/	
12	차량총중량(kg)		()		기 통 수 / 총배기량(cc)		/	
13	차체 제원 (mm)	길이	()		사 용 연 료			
		너비	()	18	연료소비율(km/ℓ)			
		높이	()	19	축 간 거 리 (mm)			
14	하대 내측 지수 (mm)	길이		20	윤간거리(mm)	전		
		너비				후		
		높이		21	하대옵셋트(mm)			
15	공차시 하중분포 (kg)	전 전축	()	22	변 속 기	종류		
		후축	()			단수		
		후 전축	()	23	타 이 어 형 식	전		
		중축	()			후		
		후축	()	24	림 형 식	전		
16	적차시 하중분포 (kg)	전 전축	()			후		
		후축	()	25	차대번호(1~8자리)			
		후 전축	()	26	모델연도			
		중축	()					
		후축	()	27	축별설계허용하중	전		후
28	선 택 사 양							

유 의 사 항

1. 하대내측지수, 하대옵셋트는 적재량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승용자동차의 경우 축별설계허용하중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3.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 원동기란 중 "형식"은 "구동전동기 형식"을, "최고출력(ps/rpm)"은 "구동전동기 최고출력/회전수(kW/rpm)"를, "기통수/총배기량(cc)"은 "구동축전지 정격전압/용량(V/Ah)"을 말하며, "연료소비율(km/ℓ)"은 "연료소비율(km/kWh)"을 말합니다.
4. 사용연료의 종류가 수소인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 원동기란 중 "형식"은 "구동전동기 형식"을, "최고출력(ps/rpm)"은 "구동전동기 최고출력/회전수(kW/rpm)"를, "기통수/총배기량(cc)"은 "연료전지 최고출력(kW)"을 말하며, "연료소비율(km/ℓ)"은 "연료소비율(km/kg)"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07.6.7>

<table>
<tr><td colspan="5">제원관리번호통보서</td></tr>
<tr><td colspan="2">통 보 서 발 급 번 호</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제 원 관 리 번 호</td><td></td><td>제작자등록번호</td><td></td></tr>
<tr><td rowspan="3">제
작
자</td><td>제 작 자 명</td><td></td><td>전 화 번 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사 업 장 소 재 지</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4">자
동
차</td><td>차 명</td><td colspan="3"></td></tr>
<tr><td>형 식</td><td colspan="3"></td></tr>
<tr><td>원 동 기 형 식</td><td colspan="3"></td></tr>
<tr><td>최초자동차제작자</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성능시험대행자 ㊞</td></tr>
<tr><td colspan="5">붙임 : 정보처리조직 입력결과(자동차제원표) 1부</td></tr>
</table>

210㎜×297㎜
(일반용지 60g/㎡)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개정 2013.3.23>

자기인증 면제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차명	형식
	차종	원동기형식
	제작자명	제작국가
	차대번호	
면제 사유	[]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대한민국주재 아메리카합중국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 정부·지방자치단체·자동차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작등을 하거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기인증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수수료 : 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금액

210㎜×297㎜(일반용지 60g/㎡)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서식] <개정 2011.4.1>

자기인증 면제확인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차명	형식
	차종	원동기형식
	제작자명	제작국가
	차대번호	
면제사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자기인증면제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직인

210mmX297mm(일반용지 60g/㎡)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4서식] <개정 2013.3.23>

시정조치 면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제작자명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부품)	차명(부품명)	제작연도
	차종(부품종류)	원동기형식
	생산기간 및 대상대수 (생산기간 및 대상 부품개수)	안전기준 부적합조항
	차대번호(부품제원관리번호)	

면제 요청 사유	※ 면제요청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조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제4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증빙서류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검토 결과서 발급
신청인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5서식] <개정 2013.3.23>

시정조치 면제검토 결과서

신청인	제작자명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부품)	차명(부품명)	제작연도
	차종(부품종류)	원동기형식
	생산기간 및 대상대수 (생산기간 및 대상 부품개수)	안전기준 부적합조항
	차대번호(제원관리번호)	
검토결과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조치 면제검토 결과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4.8.7>

[] 국가간상호인증시험
성능시험신청서 [] 부품인증시험
[] 안전시험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소재지	

시험품목	명칭	형식	규격	제작번호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시험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유의사항

이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시험대상 부품 또는 장치와 설계도면,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삭제 <2003.1.2>

[별지 제29호서식] 삭제 <2003.1.2>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2003.1.2>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2003.1.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4.8.7>

부 품 인 증 서

신청인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소재지					
자동차부품 등의 명칭	형식	규격	제작번호	시험결과	안전기준 및 안전시험기준에의 적합여부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4항에 따라 부품인증시험결과가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 <개정 2011.12.15>

자동차제작자등(부품제작자등) : ○○○○(주)
주 소 :
연락처 :

제작결함안내(제50조 관련)

귀하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잦은 고장 등의 문제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기 및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즉시 ○○○○(주)와 제작결함조사를 시행하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소비자 불만사항 등을 접수하여 분석한 후 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제작결함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제작사에게 제작결함시정(recall)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결함 등 소비자 불만 접수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전화 : 080-357-2500
인터넷 홈페이지 : 제작결함정보전산망(www.car.go.kr)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4.12.31.> www.ts2020.kr(교통안전공단)에서도 신청가능 합니다.

튜닝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차명	형식
	원동기형식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튜닝항목	튜닝 전	튜닝 후
튜닝 사항	길이×너비×높이		
	차량총중량		
	장치(장치명칭 기재)		
	자동차의 유형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제원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튜닝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1부	수수료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유의사항

1. 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승인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반드시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체에서 튜닝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승인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원동기 등 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튜닝항목 장치란에 튜닝하는 장치명을 적기 바랍니다.
3.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튜닝한 자와 구조 등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호 및 제20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3호의2서식] <개정 2014.12.31.>

<table>
<tr><td colspan="11">튜닝 전·후의 주요제원 대비표</td></tr>
<tr><td>1</td><td colspan="3">소 유 자 주 소</td><td colspan="7"></td></tr>
<tr><td>2</td><td colspan="3">성 명</td><td colspan="2"></td><td>3</td><td>최 초 등 록 일</td><td colspan="3"></td></tr>
<tr><td>4</td><td colspan="3">등 록 번 호</td><td colspan="2"></td><td>5</td><td>종 별</td><td colspan="3"></td></tr>
<tr><td>6</td><td colspan="3">차 명</td><td colspan="2"></td><td>7</td><td>구 분</td><td colspan="3"></td></tr>
<tr><td>8</td><td colspan="3">형 식</td><td colspan="2"></td><td>9</td><td>차 체 형 상</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10</td><td colspan="3" rowspan="2">승 차 정 원</td><td>변경 전</td><td>변경 후</td><td rowspan="2">11</td><td rowspan="2">유 형</td><td>변경 전</td><td colspan="2">변경 후</td></tr>
<tr><td>인</td><td>인</td><td></td><td colspan="2"></td></tr>
<tr><td>12</td><td colspan="3">차 량 중 량(kg)</td><td></td><td></td><td>13</td><td>용 도</td><td></td><td colspan="2"></td></tr>
<tr><td>14</td><td colspan="3">최대 적재량(kg)</td><td></td><td></td><td>15</td><td>원 동 기 형 식</td><td></td><td colspan="2"></td></tr>
<tr><td>16</td><td colspan="3">차량 총중량(kg)</td><td></td><td></td><td>17</td><td>원동기최고출력
(ps/rpm)</td><td></td><td colspan="2"></td></tr>
<tr><td>18</td><td colspan="3">길 이(㎜)</td><td></td><td></td><td>19</td><td>기통수/
총 배 기 량(cc)</td><td></td><td colspan="2"></td></tr>
<tr><td>20</td><td colspan="3">너 비(㎜)</td><td></td><td></td><td>21</td><td>연 료 의 종 류</td><td></td><td colspan="2"></td></tr>
<tr><td>22</td><td colspan="3">높 이(㎜)</td><td></td><td></td><td>23</td><td>후단 오버항(㎜)</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24</td><td rowspan="3">하대내측
치수
(㎜)</td><td>길이</td><td></td><td></td><td>25</td><td>축 간 거 리(㎜)</td><td></td><td colspan="2"></td></tr>
<tr><td>너비</td><td></td><td></td><td>26</td><td>하대 옵세트(㎜)</td><td></td><td colspan="2"></td></tr>
<tr><td>높이</td><td></td><td></td><td rowspan="2">27</td><td rowspan="2">좌우바퀴
간거리
(㎜)</td><td>앞바퀴</td><td colspan="2"></td></tr>
<tr><td>28</td><td colspan="2">적재시앞바퀴
하중분포율</td><td>(%)</td><td>(%)</td><td>뒷바퀴</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5">29</td><td rowspan="5">공차시
하중분
포(kg)</td><td rowspan="2">전</td><td>전축중</td><td></td><td></td><td rowspan="5">30</td><td rowspan="5">적재시
하중분
포(kg)</td><td rowspan="2">전</td><td>전축중</td><td colspan="2"></td></tr>
<tr><td>후축중</td><td></td><td></td><td>후축중</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후</td><td>전축중</td><td></td><td></td><td rowspan="3">후</td><td>전축중</td><td colspan="2"></td></tr>
<tr><td>중축중</td><td></td><td></td><td>중축중</td><td colspan="2"></td></tr>
<tr><td>후축중</td><td></td><td></td><td>후축중</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5">31</td><td rowspan="5">적재시
타이어
하중율
(%)</td><td rowspan="2">전</td><td>전</td><td></td><td></td><td rowspan="2">32</td><td rowspan="2">타이어
형식</td><td>전</td><td colspan="2"></td></tr>
<tr><td>후</td><td></td><td></td><td>후</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후</td><td>전</td><td></td><td></td><td rowspan="3">33</td><td rowspan="3">변속기</td><td>종류</td><td colspan="2"></td></tr>
<tr><td>중</td><td></td><td></td><td rowspan="2">단수</td><td colspan="2" rowspan="2"></td></tr>
<tr><td>후</td><td></td><td></td></tr>
<tr><td>34</td><td colspan="3">튜닝 개요</td><td colspan="7"></td></tr>
</table>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4.12.31.>

<table>
<tr><td colspan="6">제 호
튜닝승인서</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명칭)</td><td></td><td>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소</td><td colspan="4">(전화번호 :)</td></tr>
<tr><td rowspan="2">자동차</td><td>차명 및 형식</td><td></td><td>차대번호</td><td colspan="2"></td></tr>
<tr><td>등록번호</td><td></td><td>원동기형식</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튜닝
승인
내용</td><td colspan="2">항목</td><td colspan="2">튜닝 전</td><td>튜닝 후</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6">「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라 튜닝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교통안전공단이사장 ㊞</td></tr>
</table>

33331-03211일 210㎜×297㎜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개정 2014.12.31.>

제 호

튜닝작업 완료증명서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차명 및 형식		제원관리번호
	등록번호		차대번호
업체명	성명(명칭)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인번호		완료일
튜닝승인 내 용	항목	튜닝 전	튜닝 후
작업내용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4항에 따라 튜닝승인 내용대로 튜닝작업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자동차정비사업자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 <개정 2011.4.1>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 지정 []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운행구간 및 연장

지정·변경 신청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운행구역 도면 또는 도면에 준하는 세부지도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4서식] <개정 2011.4.1>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용자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사항	차종		차명
	등록번호		
	운행목적	[] 자동차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 자동차 점검 및 정비 [] 자동차 검사 [] 기타 ()	
	운행구간		
	운행기간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저속전기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2.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사항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 검사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000원

유의사항

○ 운행목적별 허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 점검 및 정비: 30일 이내
- 자동차 검사: 30일 이내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

○ 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운행허가증을 차량에서 제거하여야 합니다.
허가받은 목적 또는 기간에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16호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10mm X297mm(일반용지 6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신규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차명	형식
	차종 · 용도	연식
	원동기형식	
	차대번호	

사용본거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동차검사대행자 귀하

첨부서류	1. 제원표 1부 2.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수입면장 또는 말소사실증명서 등)의 제시	수수료 자동차검사 대행자가 정한 금액

210㎜×297㎜(일반용지60g/㎡)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6서식] <개정 2014.2.28>

내압용기검사신청서 [] 설계단계 [] 생산단계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	
	성명(대표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종류 및 내용적
	내압용기 [] CNG용 ℓ [] LNG용 kg [] LPG용 kg [] CHG용 ℓ
	내압용기부속품 [] CNG용 [] LNG용 [] LPG용 [] CHG용
	검사 희망일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8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압용기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첨부물	내압용기	수수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하는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사	→	각인 등
신청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7서식] <개정 2013.3.23>

내압용기검사 생략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상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소 소재지 (전화:)	
사업의 종류		
내압용기의 종류		
내압용기 부속품의 종류		
수 량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6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의10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압용기검사 생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가스안전공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내압용기검사의 생략에 관한 증빙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과 통보
신청인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가스안전공사)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가스안전공사)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가스안전공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8서식] <개정 2013.3.23>

내압용기 기술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제작자명	
	자동차제작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자동차	차명	차종
내압 용기	설치 위치	형식
	사용 압력	용적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11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압용기 기술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능시험대행자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내압용기 연료장치 개요에 관한 도면 2. 내압용기 장착에 관한 도면 3. 내압용기검사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내압용기 및 그 가스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자료로써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성능시험대행자가 정하는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결과서 발급
신청인		성능시험대행자		성능시험대행자		성능시험대행자		성능시험대행자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9서식] <신설 2011.12.15>

내압용기 기술검사 결과서

발급번호 : - - -

신청인	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자동차	차 명	차 종
내압용기	설치위치	형 식
	사용압력	용 적

내압용기 및 장착부품의 주요 심사결과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11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압용기 기술심사 결과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성능시험대행자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10서식] <신설 2011.12.15>

내압용기 안전검사신청서 [] 최초 [] 계속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자동차	차명	형식
	차종	원동기형식
	기술심사결과서 발급번호	검사신청대수
검사받을장소		
차대번호내역		
내압용기번호		
밸브번호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11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압용기 안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능시험대행자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성능시험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사	→	검사증 발급
신청인		성능시험대행자		성능시험대행자		성능시험대행자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11서식] <신설 2011.12.15>

내압용기장착검사증

발급번호 : - - -

신청인	제작자명	
	제작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자동차	차 명	형 식
	원동기형식	
	차대번호	
	제원관리번호	
내압용기 주요제원	설치위치	
	용 적	
	사용압력	
	형 식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11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압용기 장착검사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성능시험대행자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12서식] <신설 2011.12.15>

내압용기 장착검사필증



50㎜×50㎜[PET 필름가공 유광합성지 160g/㎡]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13서식] <신설 2011.12.15>

내압용기재검사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자동차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자동차	차명	
	최초등록일	
	등록번호	용기개수

장착 위치	용기					용기밸브		안전장치	
	용기 제조사	제조 일련번호	제조 연월	내용적 (ℓ)	용기형식	모델명	일련 번호	모델명	일련 번호

검사희망일	
검 사 구 분	[]정기검사 []수시검사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1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동차검사대행자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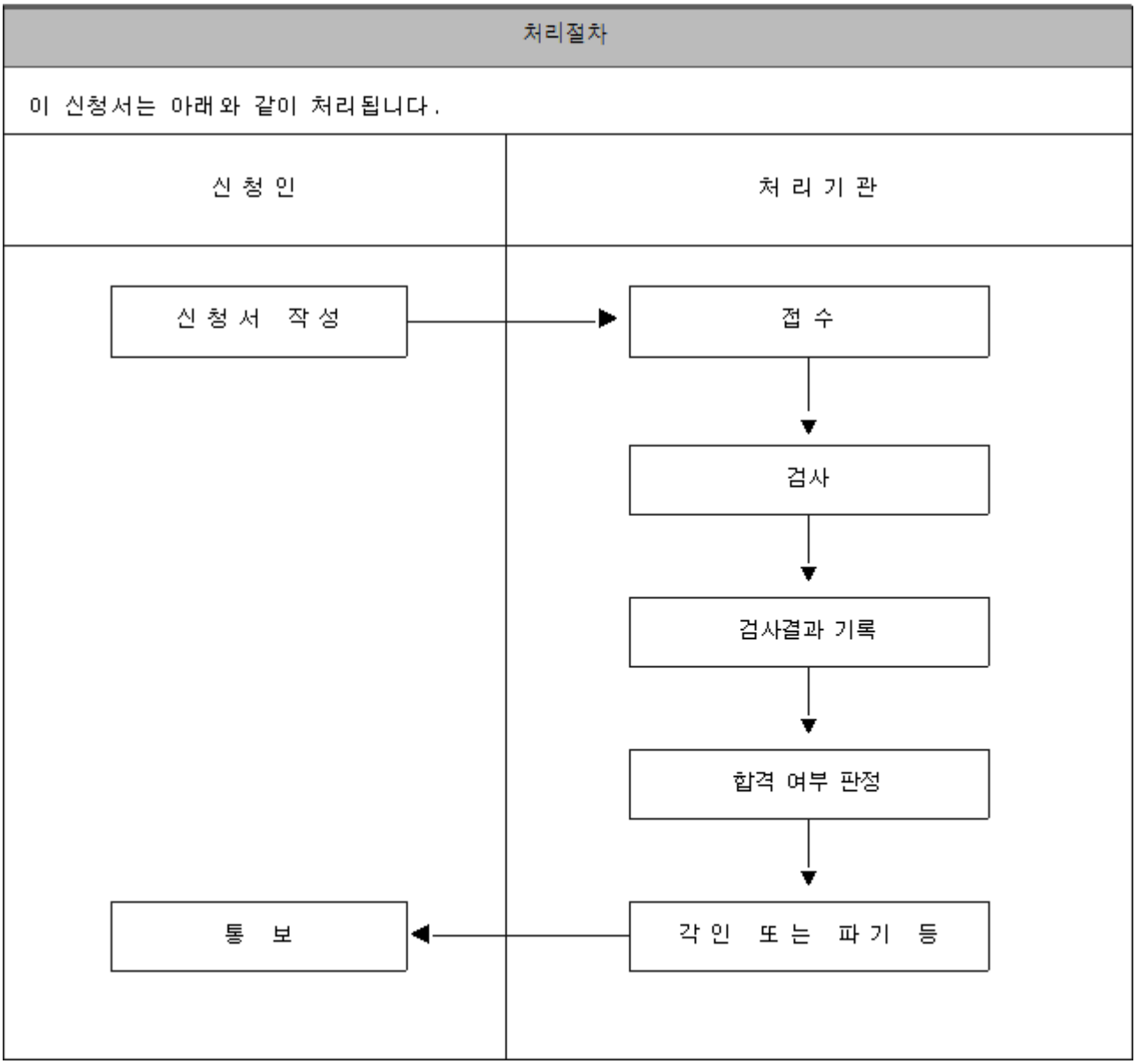
신청인 제출서류	정기검사	수시검사	수수료
	1.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등록증 2. 수시검사 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유의사항

1. 안전장치번호는 해당하는 자동차만 기재합니다.
2. 용기형식은 CNG1, CNG2, CNG3, CNG4, LNG, CHG로 구분합니다.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검사
검사결과 기록
합격 여부 판정
통 보
각 인 또 는 파 기 등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14서식] <신설 2011.12.15>

내압용기재검사결과표

자동차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자동차	차명	
	최초등록일	주행거리 km
	등록번호	용기개수

장착 위치	용기에 대한 판정								밸브(안전장치)에 대한 판정		
	용기 번호	사용 연한	표시 사항	외관검사				누출 검사	밸브 번호	외관 검사	누출 검사
				손상	부식	외적 영향	변형				
그 밖의 장치에 대한 판정											
불합격사유											
검사유효기간									재검사기간		
종합판정											
검사자	책임검사원								검사원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1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교통안전공단 직인

내압용기 불합격조치에 대한 안내

1. 불합격판정 받은 용기는 시행규칙 제57조의15에 따라 파기하여야 합니다.
2. 내압용기를 교체한 후에는 시행규칙 제57조의13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15서식] <신설 2011.12.15>

내압용기 교체증명서

자동차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자동차	차명
	최초등록일
	등록번호 교체용기개수

장착 위치	용기						밸브 및 안전장치 번호		
	교체 전	교체 후					교체 전	교체 후	
	용기의 번호	제조사	제조 일련번호	제조 연월	내용적 (ℓ)	용기 형식	밸브(안전장치)번호	모델명	일련 번호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15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내압용기를 교체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자동차정비업자 (인)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자동차 소유자는 내압용기재검사 결과표에 내압용기 교체증명서를 첨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13에 따른 수시검사를 신청하여야합니다.
2. 용기형식은 CNG1, CNG2, CNG3, CNG4, LNG, CHG로 구분합니다.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16서식] <개정 2012.8.10>

내압용기 파기증명서

자동차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자동차	차명
	최초등록일
	등록번호
	파기용기 개수

장착 위치	용기			밸브 및 안전장치		
	용기의 번호	파기사유	파기 방법	밸브 번호	파기사유	파기방법
입회자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15제2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내압용기 파기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또는 내압용기제조자등 (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35호서식] 삭제 <2013.12.1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3.12.12>

점검·정비 []
원 상 복 구 [] 기록부

소유자 성명		소유자 주소	
자동차등록번호		차명·형식	
명령기관(시·군·구)			
명령사유			
이행방법	[] 점검·정비 [] 원상복구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 항목 * 점검·정비·원상복구를 명령한 항목 기재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 결과 * 점검·정비·원상복구 결과 등 기재			

점검일자	정비업자명	고유번호	정비책임자 성 명	검 인 란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07.6.7>

<table>
<tr><td colspan="4">제 호
☐점검
☐정비 명령서
☐원상복구</td></tr>
<tr><td rowspan="2">소유자</td><td>성명(명칭)</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자동차</td><td>차명및형식</td><td>등록번호</td><td></td></tr>
<tr><td>차 대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적 발 내 용</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적발일시 및 장소</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명 령
사 항</td><td>명령사유</td><td colspan="2">☐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td></tr>
<tr><td>이해방법</td><td colspan="2">☐ 점검 ☐ 정비 ☐ 원상복구 ☐ 임시검사</td></tr>
<tr><td>이행기간</td><td colspan="2">년 월 일까지</td></tr>
<tr><td rowspan="2">임시검사</td><td>검사장소</td><td colspan="2"></td></tr>
<tr><td>검사일</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4">「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사항대로 이행할 것을 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td></tr>
<tr><td colspan="4">주 : 점검·정비·원상복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 지시서를 자동차정비사업자(임시검사지시가 포함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td></tr>
</table>

33331-03411일 210㎜×297㎜

98.3.13 승인 (일반용지 6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개정 2011.4.1>

자동차검사명령서

(앞 쪽)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자동차검사 명 령 서	주소:

자동차등록번호:

정 기 검 사 일:

□□□-□□□

받는 사람

주소:

성명:

□□□-□□□

(뒤 쪽)

자동차검사명령서

앞쪽에 기재된 귀하(사)의 자동차는 정기검사기간이 지나 정기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였으나 계속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검사를 명령하오니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일 이내에 가까운 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 말소등록등을 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전화 또는 우편(팩스)등으로 등록사항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사)가 소유한 자동차의 등록증에는 검사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여 정기검사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 자동차검사명령서의 내용은 추가하거나 바꾸어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180㎜×280㎜[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07.6.7> (앞 쪽)

제 호

운행정지명령서

소 유 자	①성명(명칭)	(운전자성명 :)
	②주 소	
③자 동 차 등 록 번 호		
위 반	④일 시	
	⑤장 소	
	⑥내 용	
⑦운 행 정 지 기 간		. . .~ . . .(일간)

위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정지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주 : 이 명령서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또는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목적을 위한 임시운행외에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33331-03511일 210㎜×297㎜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뒤 쪽)

○이 표는 다음 사람외에는 제거하지 못합니다.
·재검사에 합격한 때 : 이 자동차를 검사한 검사원
·정비를 받은 때 : 이 자동차를 정비한 정비업체의 정비책임자
※ 이 운행정지명령서를 받은 자동차를 임의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고

1. 바탕색은 백색으로, 문자는 적색으로 한다.
2. 이 표는 앞면유리 우측상다에 붙인다.

[별지 제39호서식] <신설 2007.7.20>

제 호

영 치 증

성 명 :

주 소 :

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의 등록번호 :

1. 위 자동차는 정기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2.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 정기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 영치증을 시(군·구) 과(팀)에 제시하면 즉시 영치를 해제합니다.
3.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제8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영 치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 단속공무원

소 속 : 시(군·구) 과(팀) 성 명 : (인)

(전화번호 :)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0호서식] 삭제 <1999.12.31>

[별지 제41호서식] 삭제 <1999.12.3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1.4.1>

기계·기구 정밀도검사신청서

[] 최초 [] 정기 [] 구변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계·기구 설치소재지 (전화번호:)

기계·기구의 표시	명칭	형식
	제작자	제작번호

검사희망일	종전검사일

「자동차관리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주요제원에 관한 서류(최초정밀도검사 및 구조변경정밀도검사신청시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주요구조 및 장치에 관한 도면(최초정밀도검사신청시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사용방법 및 교정에 관한 설명서(최초정밀도검사신청시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변경된 내용(구조변경정밀도검사신청시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유의사항

○ 기계·기구는 매 12월마다 정밀도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제3항).
-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3호).

210㎜×297㎜(일반용지60 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1.4.1>

기계·기구정밀도검사기간 조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계·기구설치소재지 (전화번호:)

기계·기구의 표시	명칭	형식
	제작번호	
	당초검사기간	조정신청기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조정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절 취 선

기계·기구정밀도검사기간 조정통보서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계·기구설치 소재지 (전화번호:)

기계·기구의 표시	명칭	형식
	제작번호	
	당초검사기간	조정신청기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밀도검사기간을 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160㎜(일반용지 60g/㎡)

[별지 제44호서식] 삭제 <1998.5.2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1.4.1>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형식
	검사유효기간 ~	
신청내용	연장(유예)신청기간 ~	
	연장(유예)사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연장(유예)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연장(유예)사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에 연장(유예)기간을 기재·발급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1.12.15>

신규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차명	형식
	차종·용도	연식
	원동기형식	
	차대번호	

사용본거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동차검사대행자 귀하

첨부서류	1. 제원표 1부 다만, 제원표가 없는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는 길이, 너비 등 필요한 제원을 측정하거나 확인한 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수입면장 또는 말소사실증명서 등)의 제시	수수료 자동차검사 대행자가 정한 금액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4.12.31.>

자동차 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차명	
	형식	
	등록번호	
검사구분	[]튜닝검사	[]임시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동차검사대행자 귀하

첨부서류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수료
	1. 자동차등록증 2. 튜닝승인서 3. 튜닝 전·후 주요제원대비표 1부 4. 튜닝 전·후 자동차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만 제출합니다) 1부 5. 튜닝하려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1부 6. 튜닝작업 완료증명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4항 단서에 따라 튜닝작업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점검(정비·원상복구)명령서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03.1.2> [유효기간 : 2012.2.18]

자동차검사표

①검 사 구 분				②접수번호	
③자동차등록번호				④차대번호	
소유자	⑤성명			⑥주행거리	
	⑦주소				
⑧차명		⑨연식		⑩원동기형식	
⑪차종		⑫용도		⑬연 료	
⑭제원관리번호					특 기 사 항

제 원						
	⑮길이 cm	㉒윤거 cm	㉘변속기	전 단	㉞관 청 코 드	
차체	⑯너비 cm	㉓<삭제>		후 단	㉟지 시 일 자	
	⑰높이 cm	㉔전축	전 kg	㉙정원명 kg	㊱지 시 번 호	
			중 kg	㉚적재량 kg	㊲내 용	
실내	⑱길이 cm	㉕후축	전 kg	㉛차량중량 kg		
	⑲너비 cm		후 kg	㉜총중량 kg		
	⑳높이 cm	㉖배기량 cc		㉝구변일자		
㉑축간거리 cm		㉗정격출력 ps		구변내용	제원수정 개항목	

㊳최 초 등록일		㊴유효기간 만 료 일		㊵유효기간	~

㊶1부 검사원	1회	재검사	㊷2부 검사원	1회	재검사	㊸판정 책임	검사일[]합·불·시정권고	재검일[]합·불·시정권고

1부 검사항목							
㊹동일성확인		㊷전기장치		㊵경보장치		㊼시정권고 내용	
㊺원동기		㊸차체·차대		㊶시야확보			
㊻동력전달		㊹연결장치		㊷계기장치			
㊼주행장치		㊺승차장치		㊸<삭제>			
㊽조향장치		㊻적재장치		㊹조속기		㊾부적합한 내용	
㊾제동장치		㊼창유리		㊺촉매			
㊿완충장치		㊽배기장치		㊻기타			
(51)연료장치		㊾등화장치					

2부	(67)사이드스립	(68)배출가스	(69)제동력	(70)전조등	(71)속도계	(72)소음	
		CO %				경적	
		HC ppm				배기	
		λ					
		매연 %					

33331-01511일
96.10.4 승인

180㎜×280㎜
(보존용지(1종) 90g/㎡)

[별지 제48호의2서식] <신설 2010.2.18>

접수번호: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

① 자동차등록번호		② 성명(상호)		③ 생년월일	
④ 차명		⑤ 차종(용도)		⑥ 제작연식	
⑦ 연료종류		⑧ 누적주행거리		⑨ 최초등록일	

검 사 결 과

⑩ 종합판정		관능·기능검사		기계·기구검사	
⑪ 다음 검사주기	~		⑫ 재검사기간	~	

⑬ 세부 검사내용

1부(관능 및 기능검사)	2부(기계·기구검사)					
<부적합 내용>	검사항목	기준값			측정값	판정
	⑭ 사이드슬립	1m 주행에 5mm 이내				
	⑮ 배출가스	혀발유·가스		일산화탄소(CO): %		
				탄화수소(HC): ppm		
				공기과잉률(λ):		
		경 유		매 연: %		
<시정권고 내용>	⑯ 제동력	앞축	전	앞축무게(kg)의 50% 이상	%(측정값: kg)	
			후	앞축무게(kg)의 50% 이상	%(측정값: kg)	
		뒤축	전	뒤축무게(kg)의 20% 이상	%(측정값: kg)	
			중	뒤축무게(kg)의 20% 이상	%(측정값: kg)	
			후	뒤축무게(kg)의 20% 이상	%(측정값: kg)	
		전체브레이크		전체무게(kg)의 50% 이상	%(측정값: kg)	
		주차브레이크		전체무게(kg)의 20% 이상	%(측정값: kg)	
		좌·우 차이(편차) 앞축	전	앞축무게(kg)의 8% 이하	%(: kg)	
			후	앞축무게(kg)의 8% 이하	%(: kg)	
		좌·우 차이(편차) 뒤축	전	뒤축무게(kg)의 8% 이하	%(: kg)	
			중	뒤축무게(kg)의 8% 이하	%(: kg)	
			후	뒤축무게(kg)의 8% 이하	%(: kg)	
	⑰ 전조등	광 도		12,000(15,000) ~ 112,500cd		
		진 폭		좌: 상10/하90/좌15/우30cm이내		
				우: 상10/하90/우30/우30cm이내		
특기사항:	⑱ 속도계	32~44.4km/h(정25%, 부10%)				
	⑲ 소 음	경 적				
		배 기				

⑳ 검사자	검사책임자	관능·기능검사	기계·기구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 인

※재검사에 관한 안내

1. 재검사대상인 경우에는 정비를 완료한 후 이 통지서를 제시하고 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재검사대상인 자동차는 검사를 받은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8호의3서식] <신설 2010.2.18>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검사일자: 년 월 일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명		차 명	
차 대 번 호		원동기형식		최초등록일	
다음 종합검사일		재검사 기간		주행거리	km

※ 다음검사는 위의 검사일 기준 전·후 31일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진단항목				안전진단기준(검사기준)	진단결과	진단의견
조향계통		앞바퀴 정렬		옆 방향 미끄러짐량 (1m 주행에 5mm 이내)		
		조향계통 설치상태 등		변형·느슨함·누유여부 파워스티어링 오일량		
주행계통		차축·타이어·휠		외관의 손상·변형·볼쭐 여부 타이어 상태		
		변속기 추진축 등		변속기 오일 오염도 추진축·등속조인트(손상·변형) 클러치 유격상태		
		뒷바퀴 정렬(옆 방향 미끄러짐)				
제동계통 (브레이크시스템)		제동력	앞축	선	앞축무게(kg)의 50%이상	%(측정값: kg)
				후	앞축무게(kg)의 50%이상	
			뒷축	선	뒷축무게(kg)의 20%이상	%(측정값: kg)
				중	뒷축무게(kg)의 20%이상	
				후	뒷축무게(kg)의 20%이상	
			선제브레이크		선제무게(kg)의 50%이상	%(측정값: kg)
			수자브레이크		선제무게(kg)의 20%이상	%(측정값: kg)
			좌·우 차이 (편차)	앞축	전 앞축무게(kg)의 8%이하	%(: kg)
					후 앞축무게(kg)의 8%이하	%(: kg)
				뒷축	전 뒷축무게(kg)의 8%이하	%(: kg)
					중 뒷축무게(kg)의 8%이하	%(: kg)
					후 뒷축무게(kg)의 8%이하	%(: kg)
		제동계통 설치상태 등		견고한 설치·손상·오일누출 배력장치의 작동상태		
				디스크·패드상태		
등화장치		전조등	밝기	좌/우	12,000(15,000) ~ 112,500cd	좌측밝기: cd 우측밝기: cd
			비추는 방향	좌	상10/하30/좌15/우30cm이내	상 cm, 하 cm 좌 cm, 우 cm
				우	상10/하30/좌30/우30cm이내	상 cm, 하 cm 좌 cm, 우 cm
		기타등화			설치위치, 등광색 등	
배출가스		휘발유 LPG			검사방법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공기과잉률(λ)	
		경유			검사방법	
					매연	
					최대출력	
					엔진회전수	
		배기,소음 발산방지장치			배기관·소음기·촉매장치의 손상,변형 등이 없을 것	
계기계통		속도계			40km/h일 때(32~44.4km/h)	
		계기장치			운행기록계·최고속제한장치 설치 및 작동여부	

진단항목		고장코드
자기진단 센서 점검		
		진단의견

검사항목		결과 및 의견	
관능(육안)검사	엔진오일 오염도 / 벨트상태 원동기 이상음 / 시동장치 / 방열기		
	동일성 / 차대 및 차체 / 물품적재장치		
	(승차 / 조종 / 완충 / 방화)장치		
	경음기 / (연결 및 견인 / 전기)장치		
	연료장치 / 내압용기 / 시야확보 / 창유리		
	기타장치		
서비스 제공			
종합 진단결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자동차검사소 검사책임자 인

※ 본 진단서는 고객님의 차량 관리를 위한 진단결과입니다.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07.6.7>

제 호	□검사부적합 □시정권고	통지서	
성 명 (명 칭)		검 사 접 수 번 호	
자동차등록번호		재 검 사 기 간	
부 적 합 내 용			
시 정 권 고 내 용			
주 : 시정권고 내용에 대하여는 자동차소유주가 수리(정비)등의 조치를 한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정비사업자) ㊞			
※재검사에 관한 안내 1. 재검사대상인 경우에는 수리·정비를 완료한 후 이 통지서를 제시하고 자동차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재검사대상인 자동차는 검사를 받은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3331-04611일 210㎜×297㎜

98.3.13 승인 (일반용지 6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11.4.1>

자동차신규검사 증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소유자	성명(명칭)					
	주소					
자동차 표시	차명				형식·연식	
	차종·용도				원동기형식	
	차대번호					
주요제원	차체	길이 cm	승차정원		원동기출력 ps/rpm	
		너비 cm	최대적재량 kg		총배기량 cc	
		높이 cm	차량중량 kg		연료의종류 cm	
	실내·하대	길이 cm	차량총중량		축간거리 cm	
		너비 cm	축중	전륜	전 kg	윤간거리 cm
					후 kg	
		높이 cm		후륜	전 kg	최저지상고 cm
					후 kg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신규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자동차검사대행자 인

210㎜×297㎜[보존용지(2종)70 g/㎡]

[별지 제50호의2서식] <개정 2014.12.31.>

제 호

튜닝검사증명서

<table>
<tr><td colspan="2" rowspan="2">소유자</td><td>성명(명칭)</td><td colspan="6"></td></tr>
<tr><td>주 소</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 rowspan="2">자동차표시</td><td>등 록 번 호</td><td colspan="2"></td><td>차 명</td><td colspan="2"></td></tr>
<tr><td>차 대 번 호</td><td colspan="2"></td><td>원 동 기 형 식</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8">주요제원</td><td rowspan="3">차체</td><td>길 이</td><td>cm</td><td>승 차 정 원</td><td>명</td><td>원동기출력</td><td>ps/rpm</td></tr>
<tr><td>너 비</td><td>cm</td><td>최대적재량</td><td>kg</td><td>총 배 기 량</td><td>cc</td></tr>
<tr><td>높 이</td><td>cm</td><td>차 량 중 량</td><td>kg</td><td>연료의 종류</td><td></td></tr>
<tr><td rowspan="3">실내·하대</td><td>길 이</td><td>cm</td><td>차량총중량</td><td>kg</td><td>축 간 거 리</td><td>cm</td></tr>
<tr><td>너 비</td><td>cm</td><td rowspan="2">축중</td><td>전 륜</td><td>전 kg
후 kg</td><td>윤 간 거 리</td><td>cm</td></tr>
<tr><td>높 이</td><td>cm</td><td>후 륜</td><td>전 kg
후 kg</td><td>최저 지상고</td><td>cm</td></tr>
<tr><td colspan="3">튜닝 이력</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3">최종 튜닝 수수료</td><td colspan="6"></td></tr>
</table>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인

210㎜×297㎜

일반용지 70g/㎡

[별지 제51호서식] 삭제 <1998.5.26>

[별지 제52호서식] 삭제 <2005.2.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13.3.23>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검사소	전화번호	
	주소	

부지면적 ㎡	건물면적 ㎡
검사장비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설비 및 기기업체 명세표와 배치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검사업무규정(시설 및 기술인력관리·검사시행절차 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부	20,000원

210㎜×297㎜(일반용지 6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13.3.23>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서

1. 명칭:

2.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3. 주소(법인의 경우는 주사무소 소재지):

4. 검사소의 소재지:

위 사람을 「자동차관리법」 제44조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5호서식] 삭제 <1999.2.19>

[별지 제56호서식] 삭제 <1999.2.1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11.4.1>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21일

신청인	업체명	등록(허가)일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대지면적(㎡)	종사원 수(명)

검사업무개시 희망일

자동차정비업종

「자동차관리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확보 증명서류 1부 2. 검사업무규정(시설 및 기술인력관리·검사시행절차 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3.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1부	20,000원

210㎜×297㎜(일반용지6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1.4.1>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1. 명칭(업종):

2. 성명(대표자):

3.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4. 사업장 소재지:

5. 검사업무범위:

위 자동차정비사업자를「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2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2서식] <개정 2011.4.1>

지정정비사업 [] 휴업 [] 폐업 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 내용	종류	
	사업장 소재지	
신고 내용	휴업(폐업)일자	
	휴업(폐업)사유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폐업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2011.4.1>

택시미터 [] 제작 [] 수리 [] 사용 검정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제작검정: 15일 수리검정: 30일 사용검정: 즉시

신청인	상호(명칭)	자동차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검정내역	형식	수량	제작번호	전 검정일자

「자동차관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제작검정: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 수리검정: 3000원 사용검정: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

작성방법
자동차등록번호는 수리검정 또는 사용검정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자 르 는 선

택시미터 검정 결과 [] 합 [] 불

구조검정	겉모양 [] 적합 [] 부적합	기차검정	구 분	기본거리	이후거리
			기 준		
	표기 및 표시 [] 적합 [] 부적합		검출치		
			판 정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검정시행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 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13.3.23>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서
[] 제작 [] 수리 [] 사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검정기관	전화번호	
	소재지	

「자동차관리법」 제4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검정요원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검정설비의 명세서 및 그 소재지를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20,000원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개정 2013.3.23>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서

[] 제작 [] 수리 [] 사용

1. 명칭(업종):

2. 성명(대표자):

3.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4. 검정기관 소재지:

위 사람을「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라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13.3.23>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검정기관 소재지	
	폐지사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유의사항
○ 검정기관이 지정을 폐지하려면 폐지예정일 3월 이전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15.6.4.>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고내용	이륜자동차	차명	총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사용본거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부 2.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2호).

210㎜×297㎜(일반용지 60g/㎡)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개정 2014.2.28>

제 호

이륜자동차제작증

자동차의 표시	제원관리번호		차대번호	
	차종		원동기형식	
	차명(형식)		모델연도	
	총중량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배기량(기통수)	
	색상		원동기마력	
	길이·너비·높이		연료의 종류	
제동장치 석면 사용여부			[] 사용 [] 사용안함	
최고속도 25km/h 이상 여부			[] 이상 [] 이하	
제작연월일		년 월 일		
양도연월일		년 월 일	양도금액	원
양수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를 제작·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작 및 양도인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유 의 사 항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 "원동기형식"은 "전동기형식", "배기량(기통수)"은 "축전지 정격전압/용량(V/Ah)", "원동기마력"은 "전동기 정격출력/정격회전수"를 나타냅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03.1.2> (제1쪽)

제 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읍장
면장 ㊞
동장

33331-06261일 74mm×105mm
96.10.4 승인 (보존용지(1종) 120g/㎡)

(제2쪽)

사용자 유의사항

○이 증명서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때에는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이륜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주소변경의 경우는 전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이 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처분).

○이륜자동차의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 증명서를 제출하여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승인 및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 : 읍·면 동장은 본 증명서를 투명비닐에 넣어 교부한다.

(제3쪽)

1. 제원(구조)			
제원관리번호		차대번호	
차명(형식)		원동기형식	
총 중 량		기 통 수	
배 기 량		연 식	
길 이		높 이	
너 비		승차정원	
적 재 량		원동기마력	
비 고			

74mm×105mm

(보존용지(1종) 120g/m²)

(제4쪽)

2. 계원(구조)변경사항				
순 위	구조변경 내 역	구 변 승 인연 월 일	승 인 기 관	확인연월일 확 인 자 ㊞

74mm×105mm

(보존용지(1종) 120g/m²)

(제5쪽)

3. 신고(변경사항)			
이륜자동차번호	소유자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신고연월일 확인기관㉑

74mm×105mm

(보존용지(1종) 120g/m²)

(제6쪽)

4. 정비(운행정지)명령사항			
순위	정비(운행정지) 명령내역	명령일자	확인일자 확인기관 ㉑

74mm×105mm

(보존용지(1종) 12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개정 2014.2.28>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륜자동차번호	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그 사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부 2.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기간 안에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가. 사용본거지 또는 소유자성명(명칭) 변경 시 : 30일 이내

나. 매매 : 15일 이내, 증여 :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66호 서식] 삭제 <2010.2.18>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07.6.7>

※제 호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소 유 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이 륜 자 동 차 번 호				
신 청 사 유	□ 훼손 □ 분실 □ 기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사용신고필증(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읍·면·동	처 리 기 간	즉 시
수 수 료	없음		

33331-06411민 210mm×297mm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5.6.4.>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고내용	이륜자동차번호	
	신고사유	[] 용도폐지 [] 분실·멸실 [] 도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 g/㎡)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2007.6.7>

제 호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사용폐지신고일자		년 월 일		
폐지당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비 고				

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폐지신고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읍장
면장 ㊞
동장

33331-06611일
96.10.4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70호서식] <개정 2007.6.7>

<table>
<tr><td colspan="8">이륜자동차제원통보서</td></tr>
<tr><td rowspan="2">제 작 자</td><td>제작자명</td><td colspan="2"></td><td>제작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전 화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차 명</td><td colspan="2"></td><td>형 식</td><td colspan="2"></td><td>원 동 기 형 식</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변경전차종
제원관리번호</td><td colspan="2" rowspan="2"></td><td>최초자동차
제 작 자</td><td colspan="2"></td></tr>
<tr><td>차대번호군
(1~8째자리)</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8">자동차의 개략적인 설명(※특수장치 등 추가설명 필요시 별첨)</td></tr>
<tr><td colspan="8">「자동차관리법」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원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작자 (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8">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제원표 1부
2. 자동차외관도 1부
3.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표기시행통보서 각 1부</td></tr>
</table>

신고안내

신고하는 곳	성능시험대행자	처 리 기 간	10일
수 수 료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2014.2.28>

이륜자동차제원표

1	제 작 자 명			제작자등록번호			
	원 제 작 자 명			(제작국가명)			
2	차 명			6	종 별		
3	형 식			7	유 형		
4	차 체 형 상			8	구 분		
5	승차정원(명)			9	용 도		
10	차량중량(kg)	()	17 원동기	형 식			
11	최대적재량(kg)			최 고 출 력 (ps / rpm)		/	
12	차량총중량(kg)	()		기 통 수 / 총배기량(cc)		/	
13	차체 제원 (mm)	길이 ()		사 용 연 료			
		너비 ()	18	연료소비율(km/ℓ)			
		높이 ()	19	축 간 거 리(mm)			
14	하대 내측 치수 (mm)	길이	20	윤간거리(mm)	전		
		너비			후		
		높이	21	하 대 옵 셋 트(mm)			
15	공차 시 하중분포 (kg)	전축 ()	22	변 속 기	종류		
					단수		
		후축 ()	23	타이어형식 [허용하중(kg), 허용압력(kg/㎠)]	전		
					후		
16	적차 시 하중분포 (kg)	전축 ()	24	림 형 식	전		
					후		
		후축 ()	25	차대번호(1~8자리)			
			26	모델연도기호			
28	선 택 사 양						

유 의 사 항

1.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 "형식"은 "전동기형식", "최고출력(ps/rpm)"은 "전동기 정격출력/정격회전수", "기통수/총배기량(cc)"은 "축전지 정격전압/용량(V/Ah)"을 나타냅니다.
2. 하대내측지수, 하대옵셋트는 적재량이 있는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3. ()에는 선택사양을 모두 적용할 때 해당하는 값을 표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72호서식] <개정 2009.4.8>

<table>
<tr><td colspan="6">이륜자동차 실측확인신청서</td></tr>
<tr><td rowspan="2">신 청 인</td><td>제 작 자 명</td><td></td><td>제작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4">(전화번호:)</td></tr>
<tr><td rowspan="3">이 륜
자 동 차</td><td>차 명</td><td></td><td>형 식</td><td colspan="2"></td></tr>
<tr><td>제원관리번호</td><td></td><td>원동기형식</td><td colspan="2"></td></tr>
<tr><td>총배기량(cc)</td><td></td><td>검사신청 대수</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확 인 받 을 장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6">신청차대번호
(번호란이
부족할 경우
별첨)</td><td>1</td><td colspan="2"></td><td>7</td><td></td></tr>
<tr><td>2</td><td colspan="2"></td><td>8</td><td></td></tr>
<tr><td>3</td><td colspan="2"></td><td>9</td><td></td></tr>
<tr><td>4</td><td colspan="2"></td><td>10</td><td></td></tr>
<tr><td>5</td><td colspan="2"></td><td>11</td><td></td></tr>
<tr><td>6</td><td colspan="2"></td><td>12</td><td></td></tr>
<tr><td colspan="6">「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6">첨부서류
1. 이륜자동차의 제원표 및 외관도
2.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이륜자동차만 해당합니다)</td></tr>
</table>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성능시험대행자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성능시험대행자가 정한 금액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72호의2서식] <개정 2012.8.10>

제 호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

신 청 인	제 작 자 명		제작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이륜자동차	차 명		형 식	
	승 차 정 원	명	원 동 기 형 식	
	최 대 적 재 량		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용 도		제원관리번호	
	차 대 번 호		모 델 연 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성능시험대행자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14.12.31.>

※제 호

이륜자동차튜닝승인신청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륜자동차	번호		차대번호	
	차명		원동기형식	
	형식		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튜닝 사항	튜닝항목		튜닝 전	튜닝 후
	구조	길이×너비×높이	mm	mm
		총중량	kg	kg
	장치			

「자동차관리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튜닝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1부
2. 튜닝 전·후의 이륜자동차외관도(외관튜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3. 튜닝 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1부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교통안전공단	처 리 기 간	10일
수 수 료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각 호의 것을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호).

33331-30911일
96.10.4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74호서식] <개정 2014.12.31.>

제 호

이륜자동차튜닝승인서

소유자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이륜자동차	번호		차대번호	
	차명		원동기형식	
	형식		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승인사항	항목	튜닝 전	튜닝 후	

「자동차관리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튜닝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교통안전공단이사장 ㊞

○ 위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승인 내용과 같이 튜닝을 완료한 후 년 월 일까지 해당 이륜자동차를 다음 장소에 제시(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지참)해야 합니다.

※ 제시장소 :

33331-31011일
96.10.4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07.6.7>

<table>
<tr><td colspan="3">제 호
이륜자동차정비명령서</td></tr>
<tr><td colspan="3">이 륜 자 동 차 번 호</td></tr>
<tr><td rowspan="2">소 유 자</td><td>성명(명칭)</td><td></td></tr>
<tr><td>주 소</td><td></td></tr>
<tr><td rowspan="2">적발사실</td><td>일 시</td><td></td></tr>
<tr><td>장 소</td><td></td></tr>
<tr><td colspan="2">정비하여야 할 사항</td><td></td></tr>
<tr><td colspan="2">정 비 이 행 기 간</td><td></td></tr>
<tr><td colspan="3">「자동차관리법」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의 정비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td></tr>
<tr><td colspan="3">○위 이륜자동차의 정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이 정비명령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td></tr>
</table>

33331-31111일 210mm×297mm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07.6.7>

제 호 이륜자동차운행정지명령서		
이 륜 자 동 차 번 호		
소 유 자	성명(명칭)	
	주 소	
적발사실	일 시	
	장 소	
	위 반 내 용	
운 행 정 지 기 간	~ (일간)	

「자동차관리법」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위 이륜자동차의 정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이 운행정지명령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운행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3331-31211일 182mm×257mm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14.10.6.>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등록신청업종		□ 자동차매매업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전문·원동기)		
사업장 개요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영업소명칭·위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 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군·구	처 리 기 간	15일
수 수 료	20,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 <개정 2011.12.16>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1. 명칭(업종):
2.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3.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사업장 소재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6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개정 2014.10.6.>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 신청업종	[] 자동차매매업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전문·원동기)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13,100원

210㎜×297㎜(일반용지 6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2011.4.1>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 양도·양수 [] 합병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합병 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양수인 (합병 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양도·양수 후 (합병 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양도·양수 원인	[] 매매 [] 상속 [] 증여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자동차관리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2,000원

210㎜×297㎜(일반용지 6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11.4.1>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 휴업 [] 폐업 [] 재개업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신고사항	휴업(폐업·재개업)일자
	휴업(폐업·재개업)사유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82호서식] <개정 2010.2.18> (앞 쪽)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 호

① 차명		② 자동차 등록번호		③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km □ 작동불량
④ 연식		⑤ 검사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⑥ 최초등록일		⑧ 변속기 종 류	□자동 □수동 □세미오토 □무단변속기 □기타()		
⑦ 원동기형식					
⑨ 차대번호		⑩ 보증유형	□ 자가보증 □ 보험사보증		
⑪ 동일성확인(차대번호표기)		□양호 □상이 □부식 □훼손(오손) □변조(변타) □도말			
⑫ 불법구조변경		□없음 □있음	⑬ 사고/침수유무(단순수리제외)		□유 □무

⑭ 자기진단 사항	항목	양호	정비요	⑮배출가스	일산화탄소(CO): % 탄화수소(HC): ppm 매연: %
	원동기				
	변속기				

⑯ 주요장치	항목	해당부품	상태
원동기	작동상태(공회전)		□양호 □지연 □소음 □정비요
	압축상태(공회전)		□양호 □불량 □정비요
	오일누유	실린더 헤드	□없음 □미세누유 □누유 □정비요
		실린더 블럭	□없음 □미세누유 □누유 □정비요
	오일 유량 및 오염		□적정 □부족 □오염 □교환요
	냉각수 누수	실린더 블럭	□없음 □미세누수 □정비요
		실린더 헤드 / 가스켓	□없음 □미세누수 □누수 □정비요
		워터펌프	□없음 □미세누수 □누수 □정비요
		냉각들러(라디에이터)	□없음 □미세누수 □누수 □정비요
		냉각수량 및 오염	□적정 □부족 □오염 □교환요(부식)
	고압펌프(커먼레일)		□양호 □정비요 □불량
변속기	자동변속기 (A/T)	오일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정비요
		오일유량 및 상태	□적정 □부족 □과다 □오염(희석)
		스톨시험(전진)	□양호 □슬립 □충격 □출력부족
		스톨시험(후진)	□양호 □슬립 □충격 □출력부족
		작동상태(공회전)	□양호 □지연 □소음 □정비요
	수동변속기 (M/T)	오일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정비요
		기어변속장치	□양호 □물림/빠짐 이상 □소음 □정비요
		오일유량 및 상태	□적정 □부족 □과다 □오염(희석)
		작동상태(공회전)	□양호 □지연 □소음 □정비요
동력전달	클러치 어셈블리		□양호 □누유 □슬립 □소음 □정비요
	등속조인트		□양호 □고무부트 손상 □정비요
	추진축 및 베어링		□양호 □소음 □유격 □정비요
조향	동력조향 작동 오일 누유		□없음 □미세누유 □누유 □정비요
	작동상태	스티어링 기어	□양호 □소음 □유격 □정비요
		스티어링 펌프	□양호 □소음 □정비요
		타이로드엔드 및 볼 조인트	□양호 □정비요
제동	브레이크 오일 유량상태		□적정 □부족 □오염 □교환요
	브레이크 오일 누유		□없음 □정비요
	배력장치 상태		□양호 □정비요
전기	발전기 출력		□양호 □정비요
	와이퍼 모터 기능		□양호 □정비요
	실내송풍 모터		□양호 □소음 □정비요
	라디에이터 팬 모터		□양호 □소음 □정비요
기타	연료누출(LP가스포함)		□없음 □있음
	원도우 모터 작동		□양호 □소음 □정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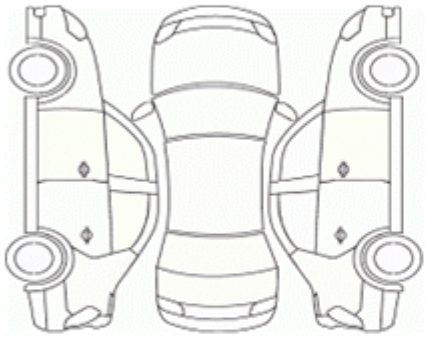
210㎜×297㎜
(일반용지 60g/㎡)

(뒤 쪽)

⑯ 자동차의 상태표시

[외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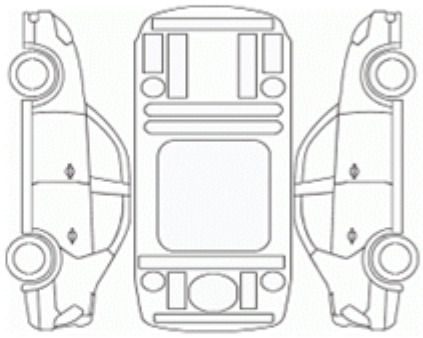
앞(전방)



뒤(후방)

[주요골격]

앞(전방)



뒤(후방)

●상태표시 부호
X: 교환(교체)
W: 판금, 용접

※ 승용차 외에는 승용차에 준하여 표시

⑰ 외판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후드	□프론트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라디에이터 서포트 (볼트체결부품)	□루프패널	□쿼터패널	□사이드실 패널

⑱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프론트패널	□크로스멤버	□인사이드패널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대쉬패널	□플로어패널	□필러패널
□리어패널	□트렁크플로어		

⑲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 (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고지자 자동차매매업소 (인)

본인은 위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인)

※ 성능·상태 점검의 보증에 관한 사항 등

1. 성능·상태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자동차인도일부터 보증기간은 ()일, 보증거리는 ()킬로미터로 합니다.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보증거리는 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2.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거짓 고지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4호의2 내지 제80조제4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성능·상태점검자가 성능점검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사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4. ⑫는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단, 루프패널, 쿼터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시에만 사고로 표기합니다.(후드, 프론트핸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⑬의 자기진단사항의 경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록하는 것 외에 자기진단기로 측정한 내역을 매수인에게 고지하고 그 내역을 점검일부터 120일간 보관하여야 합니다.(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6. 성능점검 방법은 자동차검사방법을 준용하여 점검합니다.

7. 체크항목 판단기준

· 미세누유(미세누수): 해당부위에 비치는 정도로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품 노후로 인한 형상
· 누유(누수): 해당부위에서 오일(냉각수)이 맺혀서 떨어지는 상태
· 소음/유격: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으로 결정하기에는 정도가 큰 소음 및 유격
· 정비요: 현재 상태로 운행 시 해당 부품의 고장으로 운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수리가 필요한 상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개정 2011.4.1>

중고자동차 제시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사업자	상호(대표자)	등록번호
	주소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차명	형식·연식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제시구분 [] 매매 [] 알선위탁	제시일
제시장소(명칭)	
매수 또는 매도위탁금액	

(전)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증명서 사본 1부(매수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소유자명의의 매매알선위탁서 1부(알선위탁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자동차등록증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6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1.4.1>

중고자동차 매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사업자	상호(대표자)	등록번호
	주소	
매도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매수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매도된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차명	형식·연식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매도종류 [] 매매 [] 알선위탁	매도연월일
매도장소	매도금액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제2항에 따라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자동차매매사업조합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증명서 사본 1부 2. 상품용 표지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자동차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가 제시된 때, 제시된 중고자동차가 매도된 때와 제시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때에는 중고자동차의 제시·매도·반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6호).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85호서식] <개정 2010.2.18>

※제 호

제시중고자동차반환신고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 업 자	상호(대표자)		등록번호	
	주 소			
자 동 차	등 록 번 호		차 종	
	차 명		형 식 ·연 식	
	차 대 번 호		원동기형식	
상 품 용 표 지 번 호			제시장소 (명 칭)	
제 시 일 자			반 환 일 자	
반 환 사 유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매매알선위탁계약해약서 1부
2. 상품용 표지 1부

※신고안내

신고하는 곳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처 리 기 간	즉 시
수 수 료	없음		

33331-36611민

96.10.4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86호서식] <개정 2010.2.18>

<table>
<tr><td colspan="5">경매장개설·운영승인신청서</td></tr>
<tr><td rowspan="3">신 청 인</td><td>상호(명칭)</td><td colspan="3"></td></tr>
<tr><td>성명(대표자)</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전화번호:)</td></tr>
<tr><td rowspan="3">경매장 개요</td><td>시 설 규 모</td><td colspan="3">대지: ㎡, 경매실: 석</td></tr>
<tr><td>소 재 지</td><td colspan="3"></td></tr>
<tr><td>시설확보기간</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자동차관리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td></tr>
<tr><td rowspan="2">구 비 서 류</td><td>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td><td colspan="3">담당공무원 확인사항</td></tr>
<tr><td>1. 경매장시설 및 경매사의 확보계획서(소요자금 및 인력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경매장(경매에 출품하는 자동차의 수입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경매장시설의 일람표와 그 예정배치도 1부</td><td colspan="3">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td></tr>
</table>

※신청안내

신고하는 곳	시·도	처 리 기 간	30일
수 수 료	20,000원		

33331-36711민 210㎜×297㎜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87호서식] <개정 2007.6.7>

제 호

자동차경매장개설·운영승인서

명칭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소재지) :

사업장소재지 :

사업시작(개시)일 :

「자동차관리법」 제6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운영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
도지사

33331-36811일
96.10.4 승인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88호서식] <개정 2007.6.7>

<table>
<tr><td colspan="5">자동차경매장개설·운영변경승인신청서</td></tr>
<tr><td rowspan="3">신 청 인</td><td>상호(명칭)</td><td></td><td>승인번호</td><td></td></tr>
<tr><td>성명(대표자)</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전화번호 :)</td></tr>
<tr><td rowspan="2">사업장</td><td>소 재 지</td><td colspan="3">(전화번호 :)</td></tr>
<tr><td>시설규모</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변경내용</td><td>변경사항</td><td>변 경 전</td><td colspan="2">변 경 후</td></tr>
<tr><td></td><td></td><td colspan="2"></td></tr>
<tr><td>변경사유</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5">「자동차관리법」 제6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5">※ 구비서류
1. 경매장 개설·운영승인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1부</td></tr>
</table>

※신청안내

신고하는 곳	시·도	처 리 기 간	5일
수 수 료	없음		

33331-36911민 210㎜×297㎜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89호서식] <개정 2007.6.7>

제 호

경매대상자동차점검·검사기록부

소유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동차의 표시	등록번호		차 명	
	차 종		형식·연식	
	용 도		원동기형식	
	차대번호			
	검사유효기간			

점검·검사사항	동일성확인	□차대번호 : □원동기형식						
	등록사항확인							
	구조·장치의 안전 및 성능확인	구변	불량	수리	갱환	분해	양호	조정
		◎	○	△	X	W	V	A

점검개소	점검결과	점검개소	점검결과
⑩기 관		⑬조향장치	
⑪동력전달장치		⑭등화장치	
⑫제 동 장 치		⑮주행장치	
		⑯축전기기계장치	

⑰차대번호확인		⑱봉 인 확 인		⑲주소변경확인	

「자동차관리법」 제6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경매대상자동차의 점검·결과를 고지합니다.

년 월 일

경매장명칭
성명(대표자) ㉑

33331-37011비
96.10.4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의2 서식] <개정 2014.10.6.>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차량 소유자	등록번호		차명(차종)	()	주행거리	km
	등록연월일		점검·정비 의뢰일자			
정비 사업자	사업자등록 번호		정비업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자)	()	주소	(전화번호:)		
	점검·정비 완료일자		출고일자		정비책임자	(서명 또는 인)

점검·정비내역		추가정비동의여부	[] 동의 [] 부동의

작업내용	부품				공임
	구분	수량	단가	계	

부품		공임		소계		부가가치세		총계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안내사항

1. 정비업자가 점검·정비의 잘못으로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중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하여는 무상점검·정비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제1항제2호).
 가.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점검·정비일부터 90일 이내
 나.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점검·정비일부터 60일 이내
 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점검·정비일부터 30일 이내
2. 이 내역서는 2부를 작성, 정비의뢰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정비사업자는 1부를 1년간 문서 또는 전산자료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3. 부품란의 구분란에는 다음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품(자동차 제작사의 경우에는 사후관리용 보증부품을 포함합니다): A
 나. 재제조품: B
 다. 중고품(재생품을 포함합니다): C
 라. 수입부품: F

※ 재생정비한 원동기를 부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9호의3 서식] <개정 2014.10.6.>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일련번호:

차량 소유자	등록번호		차명(차종)		주행거리	km
	등록년월일		차대번호			
정비 사업자	사업자 등록번호		정비업 등록번호			
	업체명 및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견적구분	[] 보험 [] 일반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견적내용	부품내역				공임	합계
	코드	수량	단가	계		

구분(보험·일반)	부품	공임	계	부가가치세	총액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안내사항

1. 견적요금은 교통사고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를 발행한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본 견적서는 교부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합니다.
3. 본 견적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품을 추가 시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비의뢰자는 동의한 부품 및 작업부분만 금액을 지불합니다.
4. 공급자의 직인이 없는 것은 무효로 합니다.
5. 부품가는 견적일자 기준입니다.
6. 본 견적서는 2부를 작성, 정비의뢰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정비업자는 1부를 1년간 문서 또는 전산자료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0호서식] <개정 2014.10.6.>

※제 호

정비책임자 □선임 □해임 신고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신 고 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정 비 책 임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선임(해임)일자				
	자 격 내 용	자 격 종 목	자 격 증 번 호	합 격 일 자	
	정 비 실 무 경 력	근 무 사 업 체 명	근 무 기 간		
해 임 사 유					

「자동차관리법」 제6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선임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신고안내

신고하는 곳	자동차정비사업조합(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처 리 기 간	즉 시
수 수 료	없음		

33331-08011민

96.10.4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91호서식] (제135조제2항관련)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발신 ㊞
제목 정비책임자 선임(해임)보고서

신 고 업 체		신 고 내 용					
①시·군	②업체명	③성명	④ 자 격 증 의종류	⑤자격증 번 호	⑥선임(해임) 원 월 일	⑦신고 일자	⑧해임 이유

33331-08011민 210㎜×297㎜
96.10.4 승인 (일반용지 60g/㎡)

[별지 제92호서식] <개정 2006.6.9, 2007.3.19>

제 호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

사 용 자	성 명			
	주 소			
자동차의 표시	등 록 번 호		차 종	
	차 명 /형 식		연식/주행거리	
원 동 기	형 식		배 기 량	cc
	기 통 수		행 정	㎜
	엔 진 출 력	ps/rpm	실 린 더 내 경	㎜

정 비 내 용

	분 해 정 비 개 소	정 비 사 항		분 해 정 비 개 소	정 비 사 항
1	실린더 블록		12	피스톤	
2	건식 라이너		13	피스톤 링	
3	습식 라이너		14	피스톤 핀	
4	크랭크축 베어링		15	헤드 면	
5	커넥팅로드 베어링		16	흡·배기밸브	
6	캠축 베어링		17	흡·배기밸브시트	
7	크랭크축		18	흡·배기밸브가이드	
8	캠축		19	엔진오일 펌프	
9	실린더 면		20	각종 가스켓	
10	타이밍기어 또는 체인		21	분사노즐	
11	헤드체결 볼트		22	연료분사펌프	

※ 정비사항은 수리·교환·조정으로 표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생정비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정비책임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정비 (업체명)

210㎜×297㎜

(일반용지 60g/㎡)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 <개정 2014.8.7>

자동차폐차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 형식
	차종	원동기형식
	차대번호	연식 · 주행거리

말소등록 대행여부	[] 필요 [] 불필요(소유자 직접 말소등록신청)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소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해당 자동차에 저당·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3.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임을 포함합니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 등록 또는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 수	→	폐 차	→	말소등록신청	→	말소등록
소유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소		소유자 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소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94호서식] <개정 2010.2.18>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명칭 및 대표자명) 발신 [인]

제목 자동차폐차지시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자동차의 폐차를 지시합니다.

등 록 번 호	차 명 ·형 식	차 종	원 동 기 형 식	차 대 번 호

33331-37111일

96.10.4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95호서식] <개정 2011.12.15>

중고부품점검표(제138조제5항관련)

성 명		차 명 /형 식	
소 유 자 주 소		원 동 기 형 식	
자 동 차 등 록 번 호		연 식	
차 대 번 호		주 행 거 리	

점 검 내 용

장치명	부 품 명	유			무
		손상	누유	양호	
원동기	원 동 기 본 체				
	원 동 기 헤 드				
	연료분사펌프				
	기 타				
동력 전달 장치	변 속 기				
	차 동 장 치				
	추 진 축				
	기 타				
주행 장치	전 차 축				
	후 차 축				
	기 타				
조향 장치	조 향 컬 럼				
	조 향 너 클				
	파워스티어링펌프				
	기 타				
제동 장치	캘 리 퍼				
	휠 실 린 더				
	드 럼				
	디 스 크				
	공 기 압 축 기				
	기 타				

장치명	부 품 명	유	무
현가 장치	쇽 업 쇼 버		
	전·후 자 축 스 프 링		
	기 타		
전기 장치	배 터 리		
	발 전 기		
	기 타		
연료 장치	연 료 탱 크		
	L P G 저 장 용 기		
	기 타		
차대 및 차체	범 퍼		
	문 짝		
	후 드		
	캡		
	휀 다		
	기 타		
등 화 장 치			
연 결 및 견 인 장 치			
승 차 장 치 및 좌 석			
물 품 적 재 장 치			
창 유 리			
계 근 중 량	kg		

폐차대상자동차장치의 폐차여부 등

	조향장치 중 조향기구	내압용기	제동장치중	
			마스터 실린더	배력 장치
압축,과쇄, 절단여부				
수출여부				

검수자 : ㊞

확인자(신청인) : ㊞

※폐차대상자동차장치의 폐차여부 등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장치의 압축·과쇄·절단이나 수출여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 . . .

210㎜×297㎜

(일반용지 6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6호서식] <개정 2013.12.12>

전산자료 이용 [] 심사 []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이용목적		
	근거법령		
	자료의 범위	[] 기개발자료	[] 가공자료
		[] 전국 [] 시·도	[] 시·군·구
	자료제공방식		
자료 관리	보관기관		
	안전관리대책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신청사항의 설명자료 1부. 2. 중앙행정기관의 심사결과(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1건당 1만원 (이용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전산자료 이용 심사신청은 자료이용 목적의 관계중앙행정기관에게 신청합니다.
2. 전산자료 이용 승인신청은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2개 이상의 시·도에 해당하는 자료를 동시에 제공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에게 신청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개정 2013.3.23>

전산자료 제공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신청목적		
	신청자료의 내용		
	자료의 범위	[] 전국 [] 시·도 [] 시·군·구	
	자료제공방식		
자료 관리	보관기관		
	안전관리대책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1건당 300원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97호의2서식] <신설 2010.2.18>

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번호			차 명	
신 청 인	성명(명칭)			
	주 소			
주행거리				
교체사유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4조의2제1항에 따라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 신청안내

신 청 하 는 곳	자동차검사대행자	처리기간	즉 시
수 수 료	검사대행자가 정한 금액		

210㎜×297㎜

(일반용지종) 60g/㎡

[별지 제97호의3서식] <신설 2010.2.18>

제 호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서

자동차등록번호		차 명	
소유자	성명(명칭)		
	주 소		
주행거리			
확인내용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4조의2제3항에 따라 고장여부를 확인하고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자동차검사대행자 인

210㎜×297㎜

(일반용지종) 60g/㎡

[별지 제98호서식] <개정 2007.6.7>

<table>
<tr><td colspan="3" rowspan="2">범칙자적발보고서</td><td>○○</td><td>○장</td><td>○장</td></tr>
<tr><td></td><td></td><td></td></tr>
<tr><td colspan="6">번호 : 20 -
수신 : 시장(군수, 구청장)
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보고
「자동차관리법」 제8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범위위반, 자동차무단방치)에 관한 범칙자를 아래와 같이 적발하여 보고합니다.</td></tr>
<tr><td rowspan="3">범칙자</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등록번호</td><td></td><td>전 화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범칙행위</td><td>일시/장소</td><td colspan="4"></td></tr>
<tr><td>위반내용
(붙임 : 증빙자료)</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6">시(군, 구청)
사법경찰관(리)(성명) (서명 또는 인)</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99호서식] <개정 2013.3.23>

통고서번호 범칙금수납의뢰서(수납기간보관용) 범칙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범칙자 주소 : 연 도 : 계좌번호 : 일반회계 : 국토교통부소관 세입징수관서 : 시장(군수,구청장) 「자동차관리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범칙금 수납을 의뢰합니다. 의뢰일 : 년 월 일	통고서번호 범칙금영수필통지서(발급기관송부용) 범칙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범칙자 주소 : 연 도 : 계좌번호 : 일반회계 : 국토교통부소관 세입징수관서 : 시장(군수,구청장) 「자동차관리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영수일 : 년 월 일	통고서번호 범칙금영수증서(납부자보관용) 범칙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범칙자 주소 :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적발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합니다. 통고일 : 년 월 일 ○○시장(군수, 구청장) ㊞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금 액	금 액	금 액

위반일시	
위반장소	
해 당 법조문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동법 제79조제3호
위반내용	(소형자동차정비업) □대형(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검정·정비 □중형(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검정·정비 (자동차부분정비업) □판금·용접 및 도장행위를 수반하는 점검·정비 □기타 정비작업범위를 위반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범칙금은 수납할 수 없습니다.

수납자인

년 월 일
○○시장(군수, 구청장) ㊞

한국은행 본·지점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은행 지점

수납자인	취급점 영수인

년 월 일
○○시장(군수, 구청장) ㊞

※ 납부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됩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영수일 : 년 월 일

한국은행 본·지점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은행 지점

수납자인	취급점 영수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0호서식] <개정 2013.3.23>

통고서번호 범칙금수납의뢰서(수납기간보관용) 범칙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범칙자 주소 : 연 도 : 계좌번호 : 일반회계 : 국토교통부소관 세입징수관서 : 시장(군수,구청장) 「자동차관리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범칙금 수납을 의뢰합니다. 의뢰일 : 년 월 일	통고서번호 범칙금영수필통지서(발급기관송부용) 범칙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범칙자 주소 : 연 도 : 계좌번호 : 일반회계 : 국토교통부소관 세입징수관서 : 시장(군수,구청장) 「자동차관리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영수일 : 년 월 일	통고서번호 범칙금영수증서(납부자보관용) 범칙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범칙자 주소 :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적발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합니다. 통고일 : 년 월 일 ○○시장(군수, 구청장) [인]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금 액	금 액	금 액
※납부기한이 지난 범칙금은 수납할 수 없습니다. 수납자인 년 월 일 ○○시장(군수, 구청장) [인]	한국은행 본·지점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은행 지점 수납자인 / 취급점 영수인 년 월 일 ○○시장(군수, 구청장) [인]	※납부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됩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영수일 : 년 월 일 한국은행 본·지점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은행 지점 수납자인 / 취급점 영수인

적발일시	
위반장소	
해 당 법조문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 제81조제1호
위반내용	□자진처리한경우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1호서식] <개정 2013.3.23>

통고서번호 범칙금수납의뢰서(수납기간보관용)	통고서번호 범칙금영수필통지서(발급기관송부용)	통고서번호 범칙금영수증서(납부자보관용)
범칙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범칙자 주소: 연 도 : 계좌번호: 일반회계: 국토교통부소관 세입징수관서: 시장(군수, 구청장) 「자동차관리법」 제8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범칙금 수납을 의뢰합니다. 의뢰일: 년 월 일	범칙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범칙자 주소: 연 도 : 계좌번호: 일반회계: 국토교통부소관 세입징수관서: 시장(군수, 구청장) 「자동차관리법」 제8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영수일: 년 월 일	범칙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범칙자 주소: 「자동차관리법」 제8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발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합니다. 통고일: 년 월 일 ○○시장(군수, 구청장) [인]
		적발일시
		위반장소
		해당 법조문: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81조제2호
		위반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자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금 액	금 액	금 액
※ 납부기한이 지난 범칙금은 수납할 수 없습니다. 수납자인 년 월 일 ○○시장(군수, 구청장) [인]	한국은행 본·지점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은행 지점 (수납자인 / 취급점 영수인) 년 월 일 ○○시장(군수, 구청장) [인]	※ 납부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됩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영수일: 년 월 일 한국은행 본·지점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은행 지점 (수납자인 / 취급점 영수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책 1] <개정 2006.6.9>

차대번호·원동기형식표기시행대장(제19조제1항관련)

연번	시 행 일 자	신청인 (구매자)	자 동 차		표 기 시 행 내 용		비 고
			차 종	차 명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364㎜×257㎜

(일반용지 60g/㎡)

[별책 2]

임시운행허가대장(제30조관련)

발 급 번 호	시 행 일 자	신 청 인		사 용 자		자 동 차		임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차 명	차 대 번 호	

[별책 3] 삭제 <2013.12.12>

[별책 4] <개정 2012.8.10>

이륜자동차대장(제99조제2항관련)

①이륜자동차번호		②제원관리번호	

제원구조

③ 차 명	④ 차 대 번 호	⑤ 원 동 기 형 식	⑥ 기 통 수		⑦ 총 중 량	⑧배기량(최고정격출력)	⑨

⑩ 길 이	⑪ 높 이	⑫ 너 비	⑬ 승 차 정 원	⑭ 적 재 량	⑮ 원 동 기

제원구조변경사항

순 위	구 조 변 경 내 역	승 인 연 월 일	승 인 기 관	확 인 연 월 일	확 인 자 ㊞	

신고사항변경내역

이 륜 자 동 차 번 호	소 유 자 성 명 (명 칭)	주 민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주 소	신 고 연 월 일	확 인
법제처		709	국가법령정보센터		

[별책 5]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제111조제5항관련)

[상호 또는 명칭:] [등록번호 :]

구 분	성 명	주 소		
대 표 자				
임 원				
사 업 장	소 재 지			
	대 지 면 적	㎡	건 물 면 적	㎡
영업소(폐차업에 한합니다)	소 재 지			
	대 지 면 적	㎡	건 물 면 적	㎡
기계·기구명세(정비 및 검사용기계·기구로서 정밀도검사 대상인 것에 한합니다)				

변 경 등 록 사 항			
변 경 내 용	변 경 등 록 일 자	확 인 일	확 인 자 인

33331-37611비 210mm×297mm

96.10.4 승인 (보존용지(1종) 120g/㎡)

[별책 6] <개정 2010.2.18>

중고자동차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제121조제4항관련)

① 일련번호	② 자동차표시			③ 매매업자명 (사업자)	④ 신고일자		⑤ 상품용 표지신고	⑥ 번호판 보관여부	
	자동차종별	등록번호	소유자		제시신고	매도신고		보관일	반환일

[별책 7]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제21조제6항관련)

일련번호	자동차의 표시			제시구분			⑦ 상품번호	⑧ 소유자	⑨ 주소 / ⑩ 성명	매매·알선·반환				⑮ 매수자	⑯ 주소 / ⑰ 성명	수익 및 수수료						취급자	
																		⑳관리비용		㉑등록대행		㉒알선종사원	
	① 등록번호	② 차명형식	③ 차종	④ 일시	⑤ 매입금액	⑥ 위탁금액				⑪ 일시	⑫ 매매금액	⑬ 알선금액	⑭ 반환			⑱ 매매이익금	⑲ 알선	기간	금액	일시	수수료	㉓등록대행	선

[별책 8] 삭제 <2015.7.7.>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책 9] <개정 2015.7.7.>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제143조제2항제2호 관련)

발급번호	발급연월일	등록번호	차종	차명/형식	연식/주행거리	소유자		폐차처리요구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생년월일

297mm×210mm[백상지 80g/㎡]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책 10] <개정 2015.7.7.>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143조제2항제3호 관련)

번호	요청일	차명	등록번호	말소등록		말소등록거부		기록자 (인)
				일자	결과 통보일	거부사유	통보일자	

297mm×210mm[백상지 80g/㎡]

[별책 11]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제153조제2항관련)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 청 인		사 용 목 적	신청 건수	전산본부 작업의뢰일	처리결과 통보일	처리 건수	사 용 료	기록자 인
		성 명	주 소							

33331-37711비

96.10.4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

[별책 12] <신설 2001.6.30>

범칙금통고및징수기록대장

① 연 월 일	② 범 칙 자		③통고서번호	④범칙금액	⑤납부기한	⑥납부일자	⑦송치일자
	성 명	주 소					

297mm×210mm

(보존용지(1종) 70g/㎡)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14.7.1] [국토교통부령 제00104호, 2014.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제45조의3제2항·제47조제6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및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와 같은 법 제46조제3항 및 제64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1]

제2조 삭제 <2000.7.14>

제3조(증거에 의한 처분) ①관할관청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이하 "등록등의 취소"라 한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의 정지,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대한 업무의 정지 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이하 "사업등의 정지"라 한다),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또는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자에 대한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이하 "해임명령"이라 한다) 및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직무정지명령(이하 "직무정지명령"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8.1.16, 1996.12.28, 2000.7.14, 2010.3.11>

②관할관청은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현지조사등을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청문) 관할관청이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대행자"라 한다), 자동차관리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또는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이하 "기술종사원"이라 한다)나 그 대리인에게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8.1.16, 2010.3.11>

제5조(처분의 기준) ①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동일한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 수개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개정 1988.1.16, 1996.12.28>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등록등의 취소 또는 해임명령인 때에는 등록등의 취소 또는 해임명령을 한다.
2.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사업등의 정지인 때에는 사업등의 정지를 하되, 2 이상의 사업등의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③이 규칙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순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중하되, 별표에서 순차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때 (순차적인 처분기준을 정하였으나 그 다음 순차의 처분기준이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사업등의 정지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사업등의 정지기간으로 한다.<개정 1988.1.16, 2000.7.14>

④관할관청이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등의 정지기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88.1.16>

⑤관할관청은 대행자(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제외한다)가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일부 사업장에 한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해당 위반 사업장의 업무에 대하여 일부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신설 2000.7.14, 2010.3.11>

제6조(행정처분의 감경등) ①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1988.1.16>

1.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그 사업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자동차의 등록·검사·정비업무의 발전에 공이 큰 때
2. 기타 관할관청이 자동차의 등록·검사·정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 의한 기준과 달리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 삭제 <1988.1.16>

③관할관청은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법이 정한 처분기준의 범위안에 그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개정 1988.1.16>

④ 삭제 <1996.12.28>

제7조(처분의 집행) ①관할관청은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별표의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안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처분을 하되,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이 당해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8.1.16, 1996.12.28, 2000.7.14>

②행정처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8.1.16, 1996.12.28, 2000.7.14>

1.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명령 : 별지 제1호서식
2.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 :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00.7.14>

③관할관청은 사업등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 출입문에 그 처분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8.1.16>

④관할관청은 대행자에 대하여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대행자에 갈음하여 다른 대행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8.1.16, 2000.7.14>

⑤ 삭제 <2000.7.14>

⑥ 삭제 <2000.7.14>

제8조(기록 및 보존) 관할관청이 이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때에는 대행자 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8.1.16, 2010.3.11>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부칙 <제802호,1984.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사업자나 정비관리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부칙 <제874호,1988.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7호,1996.1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48호,2000.7.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67호,2003.7.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종전의 별표 제5호 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후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1차 위반한 것으로 보고, 2차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후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2차 위반한 것으로 보며, 3차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후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3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2010.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호,2011.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자목,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4호가목9)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81>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11호,2013.6.17>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14.6.30>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개정 2014.6.30>

행정처분의 기준(제5조 관련)

구 분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처 분 내 용	
			대행자 또는 사업자	기술종사원
1.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2호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지정취소	
	다.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을 도난 당하거나 유출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3호	지정취소	
	라.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4호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마.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5호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바.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6호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사. 자산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7호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아. 등록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8호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지정취소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색상 등 제식(制式)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되게 제작·발급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9호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지정취소	
	차. 법 제21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10호	지정취소	
2.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1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직무정지 90일 3차: 해임
	다.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3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라.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4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2호	① 거짓으로 작성 지정취소 ② 다르게 작성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해임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해임
	마.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 기계·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3호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9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30일 3차: 직무정지 90일

바. 법 제43조제2항 또는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6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4호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6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30일 3차: 직무정지 60일
사. 법 제43조제3항(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7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5호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20일 3차: 업무정지 3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20일 3차: 직무정지 30일
아. 법 제43조제6항(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8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6호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6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30일 3차: 직무정지 60일
자. 법 제45조제1항 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9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7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해임
차. 법 제45조제2항이나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10호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지정취소	
카. 법 제45조제3항이나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11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8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업무정지 90일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직무정지 60일 3차: 직무정지 90일

	타. 법 제45조제7항(법 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12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지정취소	
	파.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13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하.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14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업무정지 90일	
	거.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15호	지정취소	
	너.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16호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90일	
	더.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17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업무정지 90일	
	러. 법 제45조의3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18호	지정취소	
3. 택시미터 전문 검정기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7조제5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5항제2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지정취소	

	다.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제47조제5항제3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라. 법 제47조제4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47조제5항제4호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지정취소	
	마.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정용 기계·기구로 검사를 한 경우 및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정용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정을 한 경우	법 제47조제5항제5호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90일	
	바.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7조제5항제6호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90일	
	사.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47조제5항제7호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업무정지 90일	
	아. 법 제47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	법 제47조제5항제8호	지정취소	
4. 자동차관리사업자 가. 공통사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 이상	법 제66조제1항제2호	등록취소	

	휴업한 경우			
	3) 법 제5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3호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4)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4호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등록취소	
	5) 법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신고 없이 양도·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5호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등록취소	
	6) 법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6호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7)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법 제66조제1항제7호 및 법 제57조제1항제1호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나)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법 제66조제1항제7호 및 법 제57조제1항제2호	① 사업장의 전부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취소 ② 사업장의 일부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법 제66조제1항제7호 및 법 제57조제1항제3호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법 제66조제1항제7호 및 법 제57조제1항제4호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마)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법 제66조제1항 제7호 및 제57조제1항제5호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등록취소	
	8) 법 제58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관리 및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8호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20일 3차: 사업정지 30일	
	9)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0호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10)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그 밖의 사유로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1호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취소	
	11) 법 제66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5호	등록취소	
나. 자동차매매업자	12) 자동차매매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고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2호가목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등록취소	
	나) 법 제57조제3항제	법 제66조제	1차: 사업정지 30일	

	1호를 위반하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경우	1항제12호나목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다)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2호다목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라) 법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2호라목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마)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장비 및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같은 조 제1항의 성능·상태의 점검을 받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2호마목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등록취소
	바) 법 제5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고 자동차매매업의 업무를 시작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9호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60일
	사)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2호바목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아)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2호사목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다. 자동차정비업자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거짓으로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가목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취소	
	나)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계·기구를 자동차의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에 사용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나목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취소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점검작업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 다만,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 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없는 지역은 제외한다.	법 제66조제1항제13호다목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등록취소	
	라)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라목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마)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34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작업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법 제66조제1항제13호마목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다르게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바) 거짓으로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성능·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바목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사)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사목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아)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를 두지 아니하거나 정비책임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아목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자) 법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3호자목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1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4호가목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등록취소	
	나)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폐차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한 경	법 제66조제1항제14호나목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60일 3차: 사업정지 90일	

	우			
	다)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4호다목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라) 법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4호라목	① 자동차 폐차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② 자동차등록증 등 폐기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3차: 등록취소	
	마) 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된 자동차의 폐차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6조제1항제14호마목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90일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3>

업무대행지정(사업등록)취소통지서
업무(사업) 정지명령서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대행지정(사업등록)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업무(사업)의 정지를 명합니다.

1. 처분사유:

2. 처분내용:

3.업무(사업)정기처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근거법령: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인

귀하는 이 통지서(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033-203일
84.7.21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3>

□해 임
□직무정지 명령서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대상자:

위 사람은 다음 사유로 해임(직무정지)을 명합니다.

1. 사유:

2. 처리기간(직무정지기간): 년 월 일

3. 근거방법: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인]

귀하는 이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033-204일 190mm×268mm
84.7.21 승인 (신문용지 54g/㎡)

[서식 3] 삭제 <2000.7.14>

[별지 제4호서식]

처 분 대 장

①업 체 명				②대 표 자 성 명	
③처 분 연 월 일	④위 반 내 용	⑤처 분 내 용	⑥기 록 자 인	⑦비 고	

3003-206비
84.7.21 승인

268mm×190mm
(인쇄용지(특급) 80g/㎡)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7.15] [국토교통부령 제00111호, 2014.7.1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등록·자기인증·점검·정비·검사·폐차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에 관하여 특례가 인정되는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31>

1. "외교용등의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나.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2. "미군등의 사유자동차"라 함은 대한민국주재 미합중국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용하는 사유자동차를 말한다.
3. "체약국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 국민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일시수입자동차"란 「관세법」에 따라 다시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국가안보 및 치안유지를 위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1996.12.17, 2006.6.8, 2008.3.14, 2013.3.23>

1. 경호·경비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경호용등의 자동차"라 한다)
2. 국방부 및 각군부대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서 수사등의 특수임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운행되는 자동차(이하 "군용특수자동차"라 한다)
3. 대테러·대간첩 작전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한 형태의 자동차(이하 "대테러용등의 자동차"라 한다)

제2장 외교용등의 자동차등

제4조(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 ①외교용등의 자동차의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1996.12.17, 2006.6.8, 2008.3.14,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12.17, 2006.6.8, 2008.3.14, 2013.3.23>

1. 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자동차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2. 자동차등록번호의 지정
3.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
4. 자동차의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
5. 자동차의 반출·폐차 및 말소등록

제5조(미군등의 사유자동차의 등록등) ①미군등의 사유자동차는 등록관청(「자동차등록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을 하고, 등록관청은 그 등록을 마친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6.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군등의 사유자동차에 대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자동차를 반입하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 주한미군차량기록관(이하 이 조에서 "기록관"이라 한다)에게 출석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자동차 손해배상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록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와 안전검사실시결과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당해자동차의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에 미군등의 사유자동차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6.6.8>

제6조(체약국자동차의 운행등) ①체약국자동차로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서 및 국가식별기호의 표시가 있는 자동차를 국내에 반입하여 운행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이하 "운행표"라 한다)를 발급받아 해당 자동차의 전면 창유리 우측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소지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0.10.6, 2006.6.8, 2007.7.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표를 발급받은 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개정 1996.12.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표의 유효기간은 자동차일시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재수출기간으로 한다.<개정 1996.12.17>

제7조(체약국자동차의 정비·검사 및 폐차)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운행표를 발급받은 체약국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자동차의 사용자에게 자동차의 정비 또는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17>

②시·도지사는 운행표의 발급을 받은 체약국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의 폐차 또는 일정한 장소로의 이전을 명

할 수 있다.<개정 1996.12.17>

제8조(운행표의 반납등)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표를 발급받은 체약국자동차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운행표를 발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운행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
2. 자동차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된 때

②체약국자동차의 사용자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 운행표의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의2(운행표의 교부등) 시·도지사는 체약국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세법」에 의하여 체약국자동차의 수출·입신고를 처리하는 세관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8>

1.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표의 교부 또는 재교부에 관한 업무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표의 회수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1996.12.17]

제8조의3(일시수입자동차의 운행 등) ①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일시수입자동차로서 시·도지사로부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이하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라 한다)를 발급받아 운행하는 자동차(이하 "일시운행자동차"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2012.1.5, 2013.3.23>

1.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차량으로서 항만 보세구역으로부터 공항 보세구역까지 왕복 1회에 한하여 환적(換積)물품을 운송하는 자동차이거나 등록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구간 및 경로에서 왕복 1회에 한하여 수출입물품·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일 것
 가. 상대국의 자동차를 자국 내에서 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양해각서 또는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의 자동차
 나.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피견인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일 것

②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7.15>

1. 수출국에서 발행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2.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운행허가서 사본

③일시운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의 전면 창유리 우측에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붙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소지하여야 하며, 대한민국과 체결한 협정 등에 따른 국가식별기호표를 해당 피견인자동차의 차체 뒷면 좌측의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

④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유효기간은 일시운행자동차의 목적·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11.1, 2013.3.23>

[본조신설 2007.7.31]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8로 이동 <2007.7.31>]

[국토해양부령 제431호(2012.1.5)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8조의3제1항제2호나목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8조의4(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 일시운행자동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항만 보세구역으로부터 공항 보세구역까지의 직선거리가 100킬로미터 이내인 구간 및 경로(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구간 및 경로를 말한다)에서만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7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정비·임시검사 또는 폐차 등을 하기 위한 경우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경로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그 지정된 경로를 벗어나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0.11.1, 2013.3.23>

[본조신설 2007.7.31]

제8조의5(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반납)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1.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시수입자동차를 다시 수출하려는 경우
2.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일시수입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본조신설 2007.7.31]

제8조의6(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발급대행 등) 시·도지사는 일시수입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일시수입자동차의 수출입 신고를 처리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제8조의5에 따른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회수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07.7.31]

제8조의7(일시운행자동차의 정비·임시검사 및 폐차) ①시·도지사는 일시운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자동차의 정비 또는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일시운행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또는 일정한 장소로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31]

제8조의8(대테러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대테러용등의 자동차를 등록관청에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본조신설 2006.6.8]

[제8조의3에서 이동 <2007.7.31>]

제9조(자기인증등의 면제) 외교용등의 자동차, 경호용등의 자동차, 미군등의 사유자동차, 체약국자동차, 대테러용등의 자동차 및 일시수입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경우 제5호 본문에 따른 자동차검사 중 정기검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7.19, 2010.11.1>

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
2. 삭제 <2003.7.19>
3. 삭제 <2003.7.19>
4. 삭제 <2006.6.8>
5.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다만, 일시운행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검사 중 임시검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6.12.17]

제3장 군용특수자동차

제10조(자동차의 배정등) ①국방부장관은 군용특수자동차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별로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군용특수자동차배정명세서를 2부씩 작성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17, 2007.7.31, 2008.3.14,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용특수자동차배정명세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중 1부를 등록관청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7, 2008.3.14, 2013.3.23>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등록대상인 군용특수자동차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군용특수자동차배정확인증(이하 "배정확인증"이라 한다)을 당해자동차를 배정받은 국방부소속의 각 기관의 장 또는 군부대의 장(이하 "운행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운행기간을 정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신청) 운행부대장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정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군용특수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배정확인증
2.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군의 참모총장이 발행한 별지 제3호서식의 군장비확인증

제12조(말소등록) ①등록관청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기간이 만료된 군용특수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만료일에 말소등록을 하고, 이를 운행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운행부대장은 지체없이 당해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7>

제13조(대체등록) ①운행부대장은 등록된 군용특수자동차의 노후·파손 또는 관리전환등의 사유로 이를 당해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대체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12.17, 2008.3.14, 2013.3.23>

③제1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등록의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구조변경신고) ①운행부대장은 군용특수자동차의 원동기를 다른 형식의 원동기로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변경신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군장비확인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시된 군용특수자동차의 원동기를 확인하고, 당해자동차등록증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검사등) ①군용특수자동차에 대한 신규검사·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는 등록관청의 공무원과 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소속기술인력이 공동으로 행하되, 국방부 및 각 군부대의 자동차검사에 관한 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96.12.17, 2006.6.8>

②등록관청의 공무원과 자동차검사소의 검사원이 제1항의 검사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기명날인한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관할구역외에서의 검사) ①운행부대장은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외에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타관할관청검사신청서 2부를 관할등록관청(이하 이 조에서 "갑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신청서에도 당해군용특수자동차가 다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내에 있다는 국방부장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갑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타관할관청검사신청서 1부에 당해군용특수자동차의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당해자동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하 이 조에서 "을관청"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을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관할관청검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사대행자를 지정하여 운행부대장에게 당해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관청은 자동차정비 및 검사기록대장등본을 검사대행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등본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당해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을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을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관청은 관할자동차검사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03.7.19>

제18조(등록현황의 제출) 국방부장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매월 말 현재의 시·도별 및 차종별 군용특수자동차등록현황을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전문개정 1996.12.17]

제19조(준용규정) 군용특수자동차의 등록·정비 및 폐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동차등록규칙」·「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제4장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와 수출용의 자동차

제20조(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①법 제7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2.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
3. 삭제 <2003.7.19>
4. 삭제 <2006.6.8>
5.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②「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기준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은 7인이상의 인원을 운송하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6.12.17, 2006.6.8>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에게 당해 자동차의 제원·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17>

제21조(수출용의 자동차) 법 제7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으로 제작·조립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10.6, 1996.12.17, 2003.7.19>

부칙 <제868호,1987.10.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군용특수차량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외교용자동차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외교용등의 자동차, 미군등의 사유자동차 및 군용특수자동차는 이 규칙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④(체약국자동차의 운행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를 발급받은 체약국자동차는 이 규칙에 의하여 운행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서식 생략

부칙 <제934호,1990.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1996.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호,2003.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호,2006.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호,2007.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호,2010.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교용등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에 따른 최초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교용등의 자동차는 해당 검사유효기간에, 최초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된 외교용등의 자동차는 2011년 3월 3일까지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431호,20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의3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지닌다.

부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의3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8조의4 본문, 제8조의8,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82>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111호,2014.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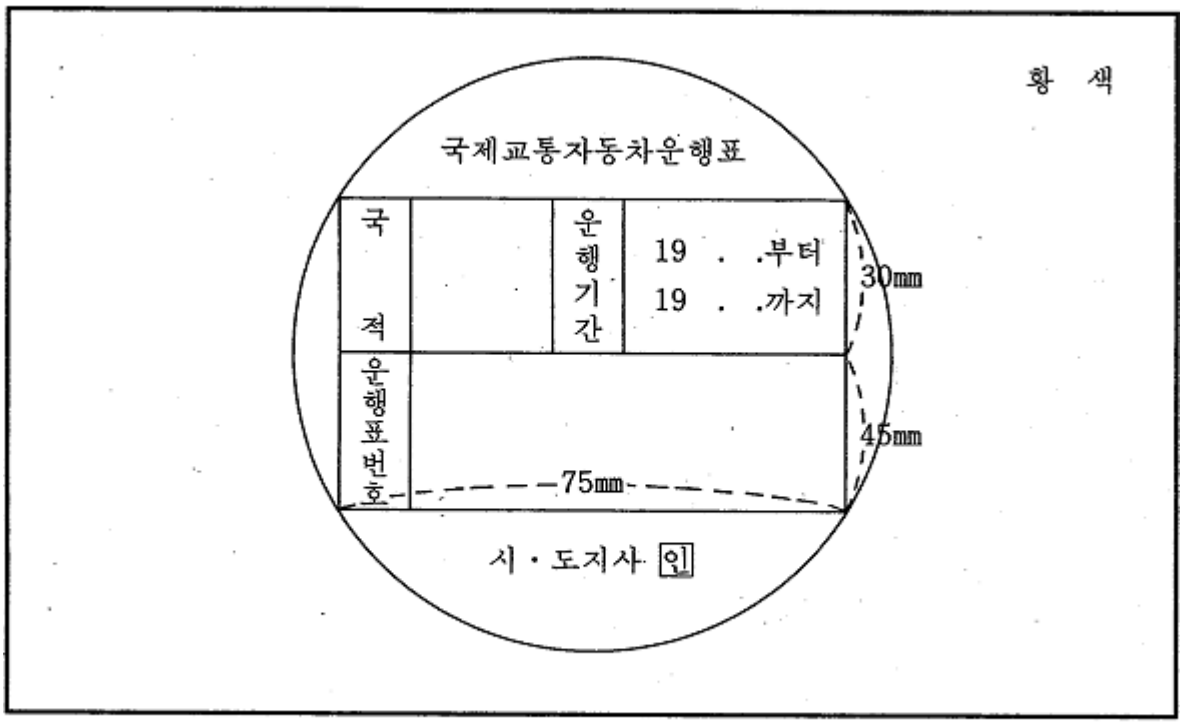
제8조의3제2항제2호 중 "「도로법」 제54조"를 "「도로법」 제77조"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별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동 <2007.7.31>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7.7.31>



130mm×130mm
(백상지 100g/㎡)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07.7.31> (앞 쪽)

<table>
<tr><td colspan="7">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td></tr>
<tr><td rowspan="3">신청인</td><td>상 호 (명 칭)</td><td colspan="5"></td></tr>
<tr><td>성 명 (대 표 자)</td><td colspan="2"></td><td>국 적</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5">(전 화 :)</td></tr>
<tr><td colspan="2">운행표번호</td><td colspan="2"></td><td>유 효 기 간</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등 록 국</td><td colspan="2"></td><td>등 록 번 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차 종</td><td></td><td>차 명</td><td></td><td>총중량</td><td></td></tr>
<tr><td colspan="2">차대번호</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운행목적</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 rowspan="2">운행구간</td><td>출발지</td><td colspan="2">경유지</td><td colspan="2">목적지</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7">「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장 또는 도지사 [인]</td></tr>
</table>

182㎜×128㎜(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주 의 사 항

1.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받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차의 전면 창유리 우측에 이 운행표를 붙이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2.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전에 해당 자동차를 다시 수출하는 경우 또는 해당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한 시·도지사 또는 일시수입자동차의 수출입 신고를 처리하는 세관장에게 이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비고 : 1. 이 운행표는 접착식으로 합니다.

2. 접착제는 앞면 실선 바깥 부분에만 칠합니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07.7.31>

<table>
<tr><td colspan="8">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 발급신청서</td></tr>
<tr><td rowspan="3">신청인</td><td>상 호(명 칭)</td><td colspan="6"></td></tr>
<tr><td>성명(대표자)</td><td colspan="2"></td><td>국 적</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6">(전화 :)</td></tr>
<tr><td rowspan="6">신청사항</td><td>등록국</td><td colspan="2"></td><td>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차 종</td><td></td><td>차 명</td><td></td><td>총중량</td><td colspan="2"></td></tr>
<tr><td>차대번호</td><td colspan="6"></td></tr>
<tr><td>운행목적</td><td colspan="6"></td></tr>
<tr><td>운행기간</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2">운행구간</td><td>출발지</td><td colspan="2">경유지</td><td colspan="3">목적지</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8">「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td></tr>
<tr><td colspan="8">구비서류
1. 수출국에서 발행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1부
2. 「도로법」 제54조 및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운행허가서 사본 1부</td></tr>
</table>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도(세관장이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발급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관)	처리기간	수수료
		즉 시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07.7.31>

군용특수자동차배정명세서

① 순위	② 배정 번호	③ 차종	④ 차명	⑤ 연식	⑥ 원동기 번호	⑦ 차대 번호	⑧ 취 득 경위	⑨ 취득 연월일	⑩ 소속 부대명 (기관)	⑪ 등록 관할	⑫ 비고

3004-4-56A

78.12.6 승인

36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군용특수자동차배정확인증

1. 배정번호 제 호

2. 배정내용

①차 종		⑩비고
②차 명		
③연 식		
④원 동 기 번 호		
⑤차 대 번 호		
⑥취 득 경 위		
⑦취 득 연 월 일		
⑧소속부대명(기관)		
⑨등 록 관 할		

3. 기한부배정: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4. 유효기간: 발행으로부터 30일

5. 위의 차는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 년도에 배정된 군용특수자동차임을 확인함

년 월 일

국방부장관 ㊞

3004-4-57A 190mm×268mm

78.12.6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군 장 비 확 인 증		
①장 비 명		⑦비고
②장 비 등 록 번 호		
③원 동 기 번 호		
④취 득 연 월 일		
⑤수 량		
⑥보 유 부 대 명		

위 장비는 ○군 ○○○○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군장비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국방부장관
○군참모총장 인

3004-4-58A
78.12.6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구 조 변 경 신 고 서

○○○시 · 도지사 귀하

①차종		⑥비고
②등 록 번 호		
③구 원 동 기 번 호		
④신 원 동 기 번 호		
⑤차대번호		

위의 자동차는 구조를 변경하였기에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부대장 ㊞

3004-4-59A
78.12.6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996.12.17>

<table>
<tr><td colspan="3">타관할관리청검사신청서</td><td>처리기간
즉 시</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①성 명</td><td colspan="2"></td></tr>
<tr><td>②주 소</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③자동차의등록번호</td><td>④등록증의검사유효기간</td><td></td></tr>
<tr><td colspan="2">⑤사 용 본 거 지</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⑥검 사 를 받 으 려 는
관 할 검 사 소</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⑦자동차의현소재지</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⑧신청사유</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4">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관할관청에 의한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특별시장
관역시장 귀하
도 지 사</td></tr>
<tr><td colspan="3">첨부서류 : 없 음</td><td>수수료
없음</td></tr>
</table>

33331-09211민 190mm×268mm

87.6.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개정 1996.12.17>

군 용 특 수 자 동 차 등 록 현 황

20 . . .

부대별 / 차종 / 시·도별	○ ○ ○ 부 대						○ ○ ○ 부 대						○ ○ ○ 부 대						합 계					
	① 승용	② 승합	③ 화물	④ 승용겸 화물	⑤ 특수	⑥ 계	⑦ 승용	⑧ 승합	⑨ 화물	⑩ 승용겸 화물	⑪ 특수	⑫ 계	⑬ 승용	⑭ 승합	⑮ 화물	⑯ 승용겸 화물	⑰ 특수	⑱ 계	⑲ 승용	⑳ 승합	㉑ 화물	㉒ 승용겸 화물	㉓ 특수	㉔ 계

3004-4-60일
78.12.6 승인

36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삭제<1996.12.17>

자동차등록규칙

[시행 2015.7.7] [국토교통부령 제00215호, 2015.7.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0.4.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7]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절차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자동차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7]

제3조(자동차의 사용본거지) ① 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2.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 그 법인등의 주사무소 소재지

② 제1항제2호의 장소 외의 다른 장소를 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이하 "사용본거지"라 한다)로 인정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령 제5조에 따른 등록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7]

제4조(자동차등록증)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저속전기자동차등록증은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6.11>

③ 신청인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자동차등록증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자동차등록증

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및 위조·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0.6.11>

[전문개정 2010.4.7]

제2장 자동차등록원부 <개정 2010.4.7>

제5조(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 등록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5.7.7]

제6조 삭제 <2015.7.7>

제7조 삭제 <2015.7.7>

제8조 삭제 <2015.7.7>

제9조 삭제 <2015.7.7>

제10조(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신청)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의 등본 또는 초본(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포함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등의 제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11, 2011.10.31., 2014.10.31, 2015.7.7>

② 법 제12조의2에 따라 등록원부의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열람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10.31>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4.7]

제11조(등록원부 등본·초본의 작성) ① 등록원부 등본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7.7>

② 등록원부 등본을 작성할 때에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원부에 기록된 사항을 전부 적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적

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0.31>

③ 등록원부 등본에 빈칸 또는 여백이 있는 경우에는 빈칸 또는 여백의 표시를 하고, 등록원부 등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각 장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7.7>

④ 등록원부 초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신청인(제10조제2항에 따른 신청인은 제외한다)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등록원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등록원부 등본·초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및 위조·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6.11, 2011.10.31>

[전문개정 2010.4.7]

제11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① 등록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용자(등록·해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1. 재직증명서 등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② 등록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등록의 갱신에 필요한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할 수 있다.<개정 2011.10.31, 2013.3.23, 2015.7.7>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한 자가 퇴사하거나 사업장이 휴업, 폐업 등으로 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소속사업체 등의 장(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대표를 포함한다)은 즉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용자(등록·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등록의 해지를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10.31>

[본조신설 2010.6.11]

제11조의3(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등 처리)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및 해지 신청을 받은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를 등록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11]

제12조(등록원부의 열람) ① 등록원부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열람 신청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1.10.31>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열람 신청: 별지 제5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서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열람 신청: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열람신청서

② 등록원부를 열람할 때에는 등록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가리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10.31>

③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보관된 자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7]

제13조(등록원부 멸실의 경우의 회복신청) 등록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 회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등록 회복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따로 저장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전문개정 2010.4.7]

제14조(멸실등록의 회복 처리) ① 등록관청은 제13조에 따른 등록 회복신청이 있거나 등록 회복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새로운 등록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원부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회복신청서 및 새로운 등록신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순서대로 철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제15조에 따른 등록서류 중 없어지지 아니한 등록서류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제3장 자동차등록서류 <개정 2010.4.7>

제15조(등록서류의 비치)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사무에 필요한 등록원부, 등록접수부, 등록신청서류철·등록통지부 및 자동차주소 변경등록신청서 접수·발송대장을 등록관청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0.6.11>

[전문개정 2010.4.7]

제16조(등록신청서류철) 등록관청은 등록에 관한 신청서·촉탁서·승낙서와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록신청서류철에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전문개정 2010.4.7]

제17조(등록통지부) ①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거나 최고(催告)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 또는 최고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통지부에 적어야 한다.

1. 법 제13조제4항·제5항의 통지사항
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의 통지사항
3. 등록령 제22조제6항, 등록령 제24조제2항, 등록령 제25조제4항, 등록령 제27조제2항, 등록령 제33조제1항 및 등록령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4. 제36조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규정된 사항

② 등록통지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제18조(등록서류의 관리) ① 등록령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서류의 관리방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3.19>

②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원부는 최초 5년간은 자기디스크파일에 보존하고, 그 후 5년간은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보존한다.

[전문개정 2010.4.7]

제4장 자동차등록절차

제1절 통칙

제19조(등록접수부) ①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접수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등록접수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제20조(접수번호) ①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의 접수 순서에 따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자동차에 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적는다.

②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한다.

[전문개정 2010.4.7]

제21조(병합신청)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같은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원인 및 목적이 같을 때에만 같은 등록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7]

제22조(간인 등) 등록신청인은 등록신청 관련 서류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며,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각 1인이 간인하거나 서명할 수 있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5.7.7]

제23조 삭제 <2010.4.7>

제24조(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한 뜻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와 등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4.7]

제25조(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할 때의 기재방법은 신청에 의한 등록에 준하되,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할 때에는 접수번호란에 사선을 그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제26조(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 등) ① 등록관청은 등록령 제1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에 의한 신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대위(代位)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의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뜻을 등록권리자 및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위권을 행사한 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등록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할위반의 말소등록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멸실되었던 등록이 회복된 경우

[전문개정 2010.4.7]

제2절 신규등록 <개정 2010.4.7>

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① 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0.8.30, 2014.10.31, 2015.3.19, 2015.7.7>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에 따른 서류 또는 제3호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이나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신조차(新造車)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신규검사증명서(등록령 제20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인 경우와 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해당한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해당한다)
7. 삭제 <2010.6.11>
8.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해당한다)
9.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하며,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이하 "사용본거지 확인정보"라 한다)와 제1항 각 호(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6.11>

1. 삭제 <2010.6.11>
2. 삭제 <2010.6.11>

③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5.3.19>

[전문개정 2010.4.7]

제28조(신규등록 신청의 대행)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려는 자는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의 신청인란에 대행자임을 표시하고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은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자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해당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에 드는 실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자는 자동차를 산 사람이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에 든 비용의 산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산출 명세를 명시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제3절 변경등록 <개정 2010.4.7>

제29조(변경등록 신청) ① 등록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및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5.3.19, 2015.7.7>

1. 삭제 <2010.6.11>
2.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등록령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6.18, 2013.3.23, 2014.10.31>

1.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려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3.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은 제외한다)

3의2. 자동차 소유자가 부여체계가 변경된 등록번호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은 제외한다)

4.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그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5.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마약, 조직폭력, 밀수 등의 범죄 수사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의 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4.7]

제30조 삭제 <2015.7.7>

제31조(시·도 간의 변경등록 절차) 등록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도 간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도 간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및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자동차운수사업용만 해당한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6.11]

제32조(자동차등록증의 변경기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마친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증의 해당 난에 변경사항을 적고 날인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제4절 이전등록 <개정 2010.4.7>

제33조(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및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3.12.27, 2014.3.25, 2015.3.19, 2015.7.7>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

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및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매각결정서(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해당한다)

5.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를 양도자와 양수인 간에 직접 거래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2. 자동차를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를 포함한다)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전문개정 2010.4.7]

제34조(이전등록 신청의 대행)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려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신청 시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에 매도인 또는 알선인임을 표시하고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은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제35조(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 등록관청은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작성하여 양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제36조(이전등록 사실의 통보 등) ① 등록관청은 등록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양도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양도자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교체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제5절 말소등록

제37조(말소등록 신청) ①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경우에는 폐차사실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및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4.12.31, 2015.3.19, 2015.7.7>

1. 자동차등록증(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수한 경우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와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반품확인서(자동차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관할 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도난된 경우만 해당한다)
6.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만 해당한다)
7.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만 해당한다)
8.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를 수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9. 등록령 제3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령 제31조제6항 각 호의 사유로 말소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등록령 제31조제5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폐차의뢰서에 의한다.
③ 폐차의뢰서를 통보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의뢰서를 제출하고 폐차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폐차의뢰서를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해당 자동차를 인수한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자동차를 폐차한 후 등록관청에는 폐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0.6.11, 2012.6.18>

[전문개정 2010.4.7]

제38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말소등록 신청)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제39조(말소등록된 등록번호판 등의 반납 면제) 법 제13조제5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란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이 멸실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7]

제40조(말소등록사실증명서의 발급) ① 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말소등록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등록원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말소등록사실증명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및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제41조(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① 등록령 제32조에 따라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수출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말소등록을 한 후 수출을 하지 아니하여 신규등록 신청이나 폐차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나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그 사실을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0.6.11>

[전문개정 2010.4.7]

제41조의2(압류등록) 압류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본조신설 2003.1.2]

제5장 저당권등록

제42조 삭제 <2010.4.7>

제43조 삭제 <2010.4.7>

제44조 삭제 <2010.4.7>

제45조 삭제 <2010.4.7>

제46조(공동저당의 경우의 통보) ① 공동저당권설정등록을 한 등록관청은 공동저당의 목적인 자동차가 다른 등록관청의 갑등록원부에 등록된 경우에는 그 등록관청에 공동저당권설정 사실 및 연월일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동저당권설정등록을 한 등록관청과 공동저당의 목적인 자동차의 등록을 한 등록관청이 서로 다른 경우 각 등록관청은 저당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와 발생연월일을 지체 없이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 경우
3.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제46조의2 삭제 <2010.4.7>

제6장 기타의 등록등

제47조(경정등록 신청) 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경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등록사항 경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9, 2015.7.7>

1. 자동차등록증
2.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3.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

이 대조·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7]

제48조 삭제 <2006.8.7>

제49조 삭제 <1999.11.5>

제50조(이의신청)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7]

제51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자동차를 매수한 때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대하여 201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3.25]

부칙 <제88호,1997.1.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말소등록신청의 대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말소등록신청의 대행기간에 관한 제38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인수한 폐차대상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은 1997년 2월 28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35호,1998.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8호 및 제3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1998.8.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내지 ④생략

⑤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8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37조제3호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부칙 <제176호,1999.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호,1999.1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6호서식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등록증의 저당권설정등록사실의 기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 의한 저당권 설정 또는 말소등록사실의 기재는 이 규칙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저당권설정등록을 하는 자동차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26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등록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수수료란중 "500원"을 "7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수료란중 "1천원(단,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없습니다)"을 "1,300원(동일 시·도안의 주소변경을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란의 제8조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 하자에 대하여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347호,200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호,200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8호,200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호,2006.7.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별지 제10호서식은 2006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530호,2006.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1호,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호,2007.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호,2008.1.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8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호,2010.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11조제5항, 제23조, 제40조제2항, 별지 제5호서식 중 "수수료(수입증지)"란 및 별도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호,2010.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6조, 제27조제1항제7호, 제31조, 제37조제4항, 제41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2010.8.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14호,2010.11.25>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93호,2011.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별지 제5호서식은 2012년 2월 24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80호,2012.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후단,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및 뒤쪽 말소등록 원인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50호,2013.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3월 18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83호,2014.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6호,2014.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63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2015.3.19>

이 규칙은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호,2015.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별지 제18호서식은 제외한다)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신설 2015.7.7.>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제5조 관련)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구분	세부유형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내버스(일반) 시내버스(좌석) 시내버스(직행좌석) 시내버스(광역급행) 농어촌버스(일반) 농어촌버스(좌석) 농어촌버스(직행좌석) 시외버스(일반) 시외버스(직행) 고속버스(일반) 고속버스(우등) 마을버스 예비차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 특수여객 일반택시 개인택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대여사업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구분	세부유형
일반수송용자동차	일반카고트럭류 풀카고(Pull-cargo)트럭류 덤프트럭류 그 밖의 일반수송용자동차
밴형자동차	일반밴형자동차 냉장·냉동자동차류 내장자동차류 보냉자동차류 윙바디(Wing-body)자동차류 자동하역자동차류

	이사화물수송자동차류 그 밖의 밴형자동차
트랙터	컨테이너수송 트랙터 벌크시멘트수송 트랙터 그 밖의 화물수송 트랙터
트레일러	탱크트레일러류 벌크트레일러류 평판트레일러류 컨테이너샤시트레일러류 저상식트레일러류 덤프트레일러류 폴카고(Pull-cargo)트레일러류 코일 전용 트레일러 그 밖의 트레일러
탱크로리	유류탱크로리류 급수차류 이동주유자동차류 살수차류 알루미늄 탱크로리류 가스수송탱크로리류 벌크트럭류 분뇨탱크로리류 화학물질 탱크로리류 그 밖의 탱크로리류
전문수송용자동차	트랜스포터(Transporter)류 셀프로더(Self-loader)류 세이프티로더(Safety-loader)류 보틀케리어(Bottle carrier)류 원목수송자동차류 현금수송자동차 곡물수송자동차류 사료수송자동차류 동물수송자동차류 활어수송용자동차류 그 밖의 전문수송용자동차
청소용자동차	압축·압착진개자동차류 암롤(Arm roll)트럭류 롤온(Roll on)트럭류

	진개덤프류 진공탱크로리류 도로청소자동차류 진공흡입자동차류 하수도청소자동차류 음식물수거자동차류 그 밖의 청소용자동차
크레인자동차	렉커트럭류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굴절식 카고크레인류 고소작업자동차류 절연고소작업자동차류 그 밖의 크레인자동차류
통신·광고용자동차	방송중계차류 무선중계차류 촬영 및 촬영보조차류 광고용자동차류 그 밖의 통신·광고용자동차
사다리차, 구급차 및 소방차	물탱크소방차류 소방펌프차류 화학소방차류 내폭화학소차류 배연차류 고가사다리차류 굴절사다리소방차류 조명차류 구조공작차류 구급차류 그 밖의 구급 및 소방차
그 밖의 자동차 ※ 위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2.27>

(앞쪽)

자 동 차 등 록 증

제 호 최초등록일 : 년 월 일

① 자동차등록번호		② 차 종		③ 용 도	
④ 차 명		⑤ 형식 및 모델연도			
⑥ 차 대 번 호		⑦ 원동기형식			
⑧ 사 용 본 거 지					
소유자 ⑨ 성명(명칭)		⑩ 주민(법인)등록번호			
소유자 ⑪ 주 소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등록관청명 직인

1. 제 원

⑫ 제원관리번호 (형식승인번호)			
⑭ 길이	mm	⑭ 너비	mm
⑮ 높이	mm	⑯ 총중량	kg
⑰ 배기량	cc	⑱ 정격출력	Ps/rpm
⑲ 승차정원	명	⑳ 최대적재량	kg
㉑ 기통수	기통	㉒ 연료의 종류	(연비 : km/L)

2. 등록번호판 교부 및 봉인

㉓ 구분	㉔ 번호판발급일	㉕ 봉인일	㉖ 발급대행자확인

3. 저당권등록사실(저당권등록의 내용은 자동차등록원부(을)를 열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㉗ 구분(설정 또는 말소)	㉘ 일 자

4. 검사유효기간

㉙ 연월일부터	㉚ 연월일까지	㉛ 검사시행장소	㉜주행거리	㉝ 검사책임자확인	㉞검사구분

주의사항 : ㉙항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

비 고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 제외):

210mm×297mm (백상지 120g/㎡)

(뒤 쪽)

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

○ 자동차사용자는 이 증을 자동차 안에 갖춰두고 운행해야 합니다(위반 시 과태료 5만원).

○ 주소·성명 등의 변경등록
- 전입신고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사용본거지의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등록관청에 주소·성명 등의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동차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유효기간 경과 시 30만원 이하 과태료).

○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전등록
- 양수인은 이전사유별로 다음의 기간 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범칙금).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양수인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도 양수인을 대신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말소등록
- 사유(폐차요청 등)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폐차인수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
- 자동차를 도로 등에 무단방치하는 경우에는 폐차 등 강제처리대상이 됩니다(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등록증

○○시·도

5. 변경등록사항

㉟ 성명	㊱ 주소	㊲ 등록일자	㊳ 확인

6. 구조·장치 변경사항

㊴ 내용	㊵ 검사일자	㊶ 검사책임자확인

7. 기타

㊷ 내 용	㊸ 일자	㊹ 확인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3.12.27>

(앞쪽)

저속전기자동차등록증

제 호 최초등록일 : 년 월 일

① 자동차등록번호		② 차 종		③ 용 도	
④ 차 명		⑤ 형식 및 모델연도			
⑥ 차 대 번 호		⑦ 원동기형식			
⑧ 사 용 본 거 지					
소유자 ⑨ 성명(명칭)		⑩ 주민(법인)등록번호			
소유자 ⑪ 주 소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등록관청명 직인

○ 저속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운행구역 안에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운행구역 외의 장소에서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15호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제 원

⑫ 제원관리번호 (형식승인번호)			
⑭ 길이	mm	⑭ 너비	mm
⑯ 높이	mm	⑮ 총중량	kg
⑰ 축전지용량	Ah	⑱ 정격출력	kW/h
⑲ 승차 정원	명	⑳ 최대적재량	kg
㉑ 축전지정격전압	V	㉒ 1회 충전 주행거리	km

2. 등록번호판 교부 및 봉인

㉓ 구분	㉔ 번호판발급일	㉕ 봉인일	㉖ 발급대행자확인

3. 저당권등록사실(저당권등록의 내용은 자동차등록원부(을)를 열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㉗ 구분(설정 또는 말소)	㉘ 일자

4. 검사유효기간

㉙ 연월일부터	㉚ 연월일까지	㉛ 검사시행장소	㉜ 주행거리	㉝ 검사책임자확인	㉞ 검사구분

주의사항 : ㉘항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

비 고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제외):

210mm×297mm (백상지 120g/㎡)

(뒤 쪽)

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

○ 자동차사용자는 이 증을 자동차 안에 갖춰두고 운행해야 합니다(위반 시 과태료 5만원).

○ 주소·성명 등의 변경등록
- 전입신고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사용본거지의 시·군·구청 또는 자동차등록관청에 주소·성명 등의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동차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유효기간 경과 시 30만원 이하 과태료).

○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전등록
- 양수인은 이전사유별로 다음의 기간 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범칙금).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양수인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도 양수인을 대신하여 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말소등록
- 사유(폐차요청 등)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폐차인수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
- 자동차를 도로 등에 무단방치하는 경우에는 폐차 등 강제처리대상이 됩니다(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등록증

○○시·도

5. 변경등록사항

㉟ 성명	㊱ 주소	㊲ 등록일자	㊳ 확인

6. 구조·장치 변경사항

㊴ 내용	㊵ 검사일자	㊶ 검사책임자확인

7. 기타

㊷ 내 용	㊸ 일자	㊹ 확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0.3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재발급 사유	[]분실·멸실　[]훼손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란 부족　[]기타		
분실 사유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7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600원입니다.

유의사항

1.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 안에 자동차등록증을 갖춰두고 운행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6만원을 부과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8호)
2.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군·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3. 신청인이 자동차의 공동소유자 중 한명이고 다른 공동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의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5.7.7.>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제 호		총 면 중 제 면
자동차등록번호	제원관리번호	말소등록일
차 명		차 종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용 도
모델연도	색 상	출처구분
최초등록일	세부유형(사업용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제작연월일
최종소유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차고지)		
검사유효기간		등록사항 확인일
		폐쇄일

순위번호		사 항 란	주민(법인)등록번호	등록일	접수번호
주등록	부기등록				

이 등본은 자동차등록원부(갑)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7.7.>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 · 초본

제 호	총 면 중 제 면

을부번호	저당권설정 접수번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채권가액	저당권설정일	저당권말소일
원		

순 위	구 분	사 항 란	등록일

공동저당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

종 류	자동차번호	설정일	말소일	종 류	자동차번호	설정일	말소일

폐쇄연월일

이 등본은 자동차등록원부(을)의 기재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10.3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서명 또는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발급·열람 대상 자동차	등록번호(또는 차대번호)	
	사용본거지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신청내용	발급 수량	갑부 []부 을부 []부
	열람 부분	갑부 [] 을부 []
용도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1항·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발급 수수료	열람 수수료
		1건당 3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1건당 1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유의사항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발급합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아도 되며, 신청인이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는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는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시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가립니다.
3.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은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4. 자동차소유자 본인이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만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열람이 가능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자동차등록규칙[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11.10.31>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열람신청서

※ 어두운 칸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이해관계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이해관계인 구분

발급·열람 대상 자동차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사용 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신청 내용	발급 수량	갑부 []장	을부 []장	
	열람 부분	갑부 []	을부 []	
발급·열람 용도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2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제2항·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발급 수수료	열람 수수료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1부)하여야 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자동차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	없음	없음

유의사항

1. 등록원부의 열람은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2. 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또는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이해관계인 구분란에는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저당권자, 압류채권자 등)을 적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11.10.31>

사용자(등록·해지) 신청서

※ 어두운 칸은 작성하지 마시고,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장주소		법정동 코드

신청인 소속 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 이전등록 신청 목적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사용자 등록목적	[] 신규등록 신청 [] 이전등록 신청 [] 말소등록 신청(수출이행여부의 신고)

「자동차등록령」 제6조의2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재직증명서 등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와 사무소의 소재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수수료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종사원 정보)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금액 (사용자 해지 신청은 없음)

유의사항

○ 사용자 등록 신청이 가능한 자

1.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 갈음하여 등록사무 신청이 가능한 자
2.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의 대표자
3.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포함) 등의 대표자

○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재직증명서, 해당 조합 또는 연합회에서 종사원임을 증명하는 증명문 등
2.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 신청인 소속 관리자

- 신청인 소속 관리자는 이전등록 신청 대상자에 한하며, 매매상사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 신청인과 신청인 소속 관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사항은 전자신청 시 공인인증서 확인을 위함이고,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사용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4.1>

자동차등록 회복신청서

※ 어두운 칸은 작성하지 마시고,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법정동 코드
자동차	등록번호		색상
	(구)등록번호(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전화번호
	사용본거지		법정동 코드
	용도	비사업용 [] 관용 [] 개인용 [] 법인·단체용	
		운수사업용 [] 개인택시 [] 영업용(개인택시 제외)	

부관	부관 종료일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령」 제10조제3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자동차등록원부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4.1>

등 록 통 지 부

일련번호(문서번호)	관련 자동차 등록번호	수신자(기관)	통지내용	비 고

210㎜×297㎜(보존용지(2종)70g/㎡)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4.1>

등 록 접 수 부

접수일	접수번호	접수구분(출석·우편)	신청종류	신청인	비고

210㎜×297㎜(보존용지(2종)70 g/㎡)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7.7.>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법정동 코드
자동차	등록번호		색상
	(구)등록번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전화번호
	사용본거지		법정동 코드
	용도	비사업용 []관용 []개인용 []법인·단체용	
		운수사업용 []개인택시 []개인택시외	
비과세 코드		부관	부관 종료일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제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임을 확인하는 사항으로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조차·수입차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호·다호의 서류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1부 사.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다. 신규검사증명서 1부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제출합니다)1부 마.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제출합니다) 사.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2,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600원입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4)
 가.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등
2.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3.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군·구)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12.27>

<table>
<tr><td colspan="6">제 호 자 동 차 제 작 증</td></tr>
<tr><td rowspan="7">자동차의 표시</td><td>제 원 관 리
(신 고)번 호</td><td></td><td>차대번호</td><td colspan="2"></td></tr>
<tr><td>차 종</td><td></td><td>원동기형식</td><td colspan="2"></td></tr>
<tr><td>차 명(형 식)</td><td></td><td>모 델 연 도</td><td colspan="2"></td></tr>
<tr><td>총 중 량</td><td></td><td>승차 정원</td><td colspan="2"></td></tr>
<tr><td>최대적재량</td><td></td><td>배기량(기통수)</td><td colspan="2"></td></tr>
<tr><td>색 상</td><td></td><td>원동기 마력</td><td colspan="2"></td></tr>
<tr><td>길이·너비·
높이</td><td></td><td>제동장치에
석면 사용 여부</td><td colspan="2">☐ 사용
☐ 사용 안 함</td></tr>
<tr><td colspan="2">제작연월일</td><td>년 월 일</td><td>등록번호판의
규 격</td><td colspan="2">× (㎜)</td></tr>
<tr><td colspan="2">양도연월일</td><td>년 월 일</td><td>공 급 가 액
(부가세 제외)</td><td colspan="2">원</td></tr>
<tr><td rowspan="2">양수인</td><td>성 명
(명 칭)</td><td></td><td>주민(법인)등록
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양수인의 신규등록 직접 신청 여부</td><td colspan="3">☐ 직접 신청
☐ 제작자 또는 판매자 등이 신청</td></tr>
<tr><td colspan="6">「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를 제작·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td></tr>
<tr><td rowspan="4">제작자
또는
양도인</td><td>업 체 명</td><td colspan="4"></td></tr>
<tr><td>대 표 자</td><td colspan="4">(서명 또는 인)</td></tr>
<tr><td>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4"></td></tr>
<tr><td>소 재 지</td><td colspan="4"></td></tr>
</table>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7.7.>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정동 코드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색상	전화번호
	사용본거지		법정동 코드
변경사항	[]명칭	[]자동차사용본거지	[]자동차의 용도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기 타
변경내용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1,300원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본거지 변경은 제외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수수료 1,300원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본거지 변경은 제외합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등록원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부등본은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사용본거지 변경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를 말합니다)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갈음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정정한 경우 정정신고로 갈음합니다.

3.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군·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1.4.1>

자동차주소 변경등록신청서 접수·발송 대장

일련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소 유 자		전입 신고일	변경등록신청서		비 고 (문서번호 또는 등기 우편번호)
		성명	구 주소		접수일	발송일	
		주민(법인)등록번호	신 주소				

210㎜×297㎜(보존용지(2종)70 g/㎡)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12.27>

시·도간 변경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정동코드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신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법정동 코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수수료
	1. 자동차등록증 1부 (자동차운수사업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자동차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등록원부	1,300원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시·도를 달리하여 사용본거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주소 변경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갈음합니다.
2.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
3. 휴대폰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군·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7.7.>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 소유자 (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차고지)		법정동 코드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구 소유자 (양도인)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차고지)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km	신 자동차등록번호

등록원인	[]매매	[]증여	[]촉탁	[]상속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제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장소재지)·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하거나 알선한 경우 나.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로서 경매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경매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의 원본을 제출한 경우 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매각결정서(「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각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6. 확정판결 등본(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수수료 1,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입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등록원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신청을 대행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2항)
2.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3. 양수인은 이전등록 기간(매매: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 15일 이내)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호)
4.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군·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10.31.>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 양수인 직접 거래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갑 (양도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을 (양수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거래 내용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인도일	주행거리 km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등시이행 등) "갑"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제3조(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불비, 그 밖에 행정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등록 지체 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7조(할부승계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제8조(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지니고 "을"은 이 증명서를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할 때(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특약사항:

수입인지
「인지세법」에 따름 (뒷면 여백에 붙임)

본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양도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2. 양수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이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 납부와 압류·저당권 등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공통사항 이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 포함)가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제79조제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6. 자동차세 납부여부와 압류내역 등 자동차보험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60g/㎡]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7.7.>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중고자동차 제시 또는 매도 번호	

계약 당사자	양도인 (갑)	성명(명칭)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을)	성명(명칭)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전화번호	
		주소		주소	
자동차 매매업자	등록번호 및 상호	제 호		제 호	
	대 표 자	[직인]		[직인]	
	취 급 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계약연월일	년 월 일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km
차종		차명	
차대번호		계약금	년 월 일 입금 원정
중도금	년 월 일 입금 원정	잔금	년 월 일 입금 원정
매매금액	입금 원정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등 록 비: 입금 원정 대행수수료: 입금 원정
매매알선수수료	입금 원정	관리비용	입금 원정
자동차인도일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등시이행 등) ① "갑"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매매금액의 2/3 이상의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비용을 자동차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가 매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매매업자는 잔금지급일부터 16일 이내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공과금 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법률상의 하자책임) ① 자동차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② 매매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내용을 "을"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해약금) "갑"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갑"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액을 "을"에게 배상해야 하며, "을"이 위약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는 방해하지 않는다.
제7조(매매업자의 책임) 제6조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매업자가 매도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며, 시·도의 조례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하자보증금으로 매수인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다만, 매매업자는 양도인 또는 그 하자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등록 지체 책임) "갑"과 "을"이 매매업자에게 이전등록의 대행에 필요한 서류 등의 발급 또는 권한의 위임을 한 후 매매업자가 이전등록 신청을 대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매매업자가 진다.
제9조(할부승계 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제10조(계약서) 이 계약서는 년 월 일 4통 작성하여 "갑"이 1통, "을"이 1통, 등록절차를 대행하는 매매업자가 2통씩을 각각 지닌다.

(특약사항):

수입인지
「인지세법」에 따름 (뒤쪽에 붙임)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기재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유의사항
1. 이 양도증명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매매업자는 반드시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3.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중고자동차 제시 또는 매도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4. 자동차세 납부여부와 압류내역 등 자동차보탈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7.7.>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주행거리 km

말소등록의 원인	[]폐차	[]제작·판매자에게 반품
	[]행정처분이행	[]수출예정
	[]도난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차령 초과
	[]연구·시험 사용 목적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용도 사용 목적
	[]섬지역에서의 해체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사용 목적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시·도지사가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말소사실 증명서	[]발급 필요	[]발급 불필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 따라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참조	수수료 1,000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말소등록 원인별 첨부서류

말소등록 원인	신청인 제출서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공통	1. 자등차등록증(자등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자등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자등차등록번호판(자등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 등의 사고에 따른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1. 자등차등록원부 2. 폐차인수증명서
폐차	자등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1부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	자등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등차 반품확인서 1부	
행정처분 이행	행정처분서 사본(자등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출 예정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도난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1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이 발행한 사고 사실 증명 서류 1부	
연구·시험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 용도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섬지역에서의 해체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인에게 양도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시·도지사가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시·도지사가 발행한 자등차 멸실 사실 인정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소원인별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11.4.1>

폐차의뢰서

문서번호	시행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수신(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명칭 및 대표자명)	담당(전화번호)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형식
	차종	원동기형식
	차대번호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의 폐차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60g/㎡)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7.7.>

폐차인수증명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제 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소유자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모델연도
	차종	차명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폐차인수 연월일	년 월 일	
자동차등록증 인수·폐기 여부	인수·폐기하였음 (서명 또는 인)	인수하지 않았음 (서명 또는 인)
등록번호판 인수·폐기 여부	()개를 인수·폐기하였음 (서명 또는 인)	인수하지 않았음 (서명 또는 인)
소유자의 말소등록 직접신청 여부	[] 직접 신청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신청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제58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차 의뢰된 자동차를 인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인

유의사항

1. 이 폐차인수증명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 이외의 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등록을 한 사업장 내에서 발급하되, 반드시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3.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아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폐차 사실의 통보)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19] 삭제 <1998.5.23>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5.3.19.> (앞 쪽)

<table>
<tr><td colspan="5">제 호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td></tr>
<tr><td rowspan="6">자동차의 표 시</td><td>자동차등록번호</td><td></td><td>차종 및 주행거리</td><td></td></tr>
<tr><td>차 명</td><td></td><td>차 대 번 호</td><td></td></tr>
<tr><td>원동기형식</td><td></td><td>모델연도</td><td></td></tr>
<tr><td>제원관리번호</td><td></td><td>용 도</td><td></td></tr>
<tr><td>최초등록일</td><td></td><td>사업용사용기간</td><td></td></tr>
<tr><td rowspan="2">소유자</td><td>성명(명칭)</td><td></td><td>주민(법인)등록 번 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말 소 등 록 일</td><td></td><td>증명서 용도</td><td></td></tr>
<tr><td colspan="2">말 소 등 록 구 분</td><td></td><td>권리관계 여부</td><td>압 류: 건
저당권: 건</td></tr>
<tr><td colspan="5">「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에 따라 말소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 장 · 군 수 또 는 구 청 장) ㊞</td></tr>
<tr><td colspan="5">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33331-10211일
96.10.4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뒤 쪽)

유 의 사 항

1.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아래의 구분에 따라 신규등록신청이 가능하며, 그 신청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말소등록 당시에 압류 및 저당권 등이 등록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해당 권리관계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규등록이 가능합니다.

말소등록 사유	신규등록 가능기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등록된 경우 ○ 자동차를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에 해당하여 말소등록된 경우 ○ 자동차의 차대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달라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경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경우	○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 도난으로 말소등록된 경우	○ 해당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반품하여 말소등록된 경우	○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 수출로 말소등록된 경우	○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1.4.1>

수출 이행여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수출업자	상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일련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말소등록일	수출면장발급일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8항, 「자동차등록령」 제32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출 목적으로 말소등록한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별 수출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출을 이행한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출을 이행하지 못하여 신규등록 신청 또는 폐차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등록 관청 또는 폐차업자가 말소등록을 한 관청으로 통보합니다. ※ 자동차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덧붙이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수출 목적으로 말소등록한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수출 목적으로 말소등록한 후 9개월 이내에 수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않거나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10㎜×297㎜(일반용지60g/㎡)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10.4.7>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2010.4.7>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2010.4.7>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2010.4.7>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5.7.7.>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경정사항	[]주소 []성명(명칭) []차명, 제원 []원동기형식 []기타		
	경정 전		
	경정 후		
등록원인 및 일자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1부 2.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자동차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그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등록사항의 경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43조)
2.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오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등록사무소 또는 시·군·구)에 알려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27] 삭제 <1999.11.5>

[별지 제28호서식] 삭제 <1999.11.5>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1.4.1>

이의신청서

※ 신청안내를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이의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의신청 분야	[] 임시운행허가	[] 신규등록	[] 변경등록
	[] 이전등록	[] 말소등록	[] 저당등록
	[] 압류등록	[] 경정등록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번호판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 표기	[] 강제처리
	[] 중고차 수출	[] 정기검사	[] 구조변경
	[] 과태료 · 과징금	[] 개선변경	[] 기타

처분관청			
처분일		처분장소	
이의신청 내용 (내용이 많을 때는 별지로 작성)			

「자동차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수수료 없음

신청안내

1. 처분관청은 이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8조제2항)
2. 처분관청은 이 이의신청 내용의 수용 여부를 신청인과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8조제3항)
3. 이 이의신청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은 불복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령에 따라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그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관청 또는 그 바로 위 상급 관청에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

210㎜×297㎜(일반용지60g/㎡)

자동차등록령

[시행 2015.7.7] [대통령령 제26380호, 2015.7.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10.19>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등록"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을 말한다.
2.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3조(등록의 종류) 등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등록: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2. 변경등록: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3. 이전등록: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4. 말소등록: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5. 압류등록: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
6. 저당권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설정등록·변경등록·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7. 경정등록: 제43조에 따른 등록
8. 예고등록: 제44조에 따른 등록

[전문개정 2009.10.19]

제4조(등록된 권리의 순위) ① 같은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19]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6.1>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6조(등록사무의 전산처리) ① 등록사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비 및 전산처리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전산기기의 장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수작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등록관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사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지체 없이 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6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①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에 소속된 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등록 및 사용자 등록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6.1]

제7조(등록서류의 보존·관리) ① 등록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6.1>

1. 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 폐쇄하거나 말소등록한 날부터 10년
2. 등록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등록신청 접수일부터 3년(신규등록의 경우 5년)

② 등록서류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0.19]

제2장 등록원부

제8조(등록원부의 서식 등) ① 등록원부는 자동차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이하 "갑등록원부"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을)(이하 "을등록원부"라 한다)로 구분한다.<개정 2015.7.6>

③ 법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른 자동차의 세부유형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세부유형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7.6>

[전문개정 2009.10.19]

[제목개정 2015.7.6]

제8조의2(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 ①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의 오른쪽 상단에 등록원부의 총 면수 및 각 면의 면수를 각각 적어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에 등록할 때에는 각각 등록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등록원부의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등록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신청이 접수되어 같은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같은 순위번호를 적어야 한다.

④ 등록관청은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갑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고,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 내용, 연월일과 자동차의 주행거리(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하되,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적어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제3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 또는 말소에 관한 등록을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을등록원부의 해당란에 새로 적거나 변경된 사항을 적고, 사항란에는 등록을 한 사유, 내용 및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⑥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도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
2. 제33조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
3. 멸실된 등록원부를 회복한 경우에는 회복한 사실, 연월일 및 직권으로 회복기재한 사항
4. 말소된 등록을 회복한 경우에는 회복한 사실 및 연월일
5. 저당권등록이 된 자동차인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의 사실과 을등록원부의 번호
6. 저당권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한 사실

⑦ 등록관청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원부의 기재 내용을 변경·경정 또는 말소한 경우에는 그 변경 전의 기재 내용을 등록원부에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⑧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43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43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갑등록원부의 검사유효기간란에 그 유효기간(유효기간이 있는 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항란에 검사 구분 및 주행거리를, 등록일란에 검사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⑨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경우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튜닝사항을, 등록일란에 튜닝검사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7.6]

제9조(등록원부의 멸실·훼손 방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원부가 없어지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될 것에 대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된 등록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억매체에 복사하여 안전한 장소에 따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0.19]

제10조(멸실·훼손된 등록원부의 회복)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지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복사한 등록자료와 등록 신청서류, 그 밖의 비치서류 등을 이용하여 그 등록원부를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복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등록원부에 등록을 한 자가 그 기간에 등록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 회복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시·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지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일시, 대상자동차, 복구 기간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0.19]

제3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개정 2009.10.19>

제11조(등록요건) ① 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②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12조(등록 신청) ①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1>

1. 등록권리자
2. 등록의무자
3. 법 제8조제3항·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6.1>

③ 제1항에 따라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원할 경우 등록관청은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10.6.1>

④ 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신설 2014.10.15>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전문개정 2009.10.19]

제13조(신청서 등) ①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식·구비서류 및 그 기재 방법은 등록의 종류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0.19]

제14조(채권자대위에 따른 신청)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명하거나 날인하고, 그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
3. 채권자대위의 원인

[전문개정 2009.10.19]

제15조(등록의 순위) 등록의 순위는 접수의 순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19]

제16조(자동차의 제시 요구)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19]

제17조(등록신청의 수리거부)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사무의 관할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2. 등록 신청의 내용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어야 할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임에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서에 적힌 사항과 등록원부에 적힌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
6. 제16조에 따른 자동차의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법 제76조에 따른 등록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8. 법 제9조(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문개정 2009.10.19]

제2절 신규등록

제18조(신규등록 신청)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19조 삭제 <1999.7.29>

제20조(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4호·제8호 또는 제13조제3항제2호·제4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3.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
4. 법 제13조제7항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해당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문개정 2009.10.19]

제21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 ① 등록번호는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자동차의 용도(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것과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구분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각각 순서대로 부여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에서는 10개의 등록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중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9, 2013.3.23>

②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이 회수되고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그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19]

제3절 변경등록

제22조(변경등록 신청) ① 변경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3. 자동차 소유자의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

1.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2.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4.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5. 자동차의 용도

⑤ 변경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개정 2010.6.1>

⑥ 등록관청은 제2항제1호의 정정신고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변경 사항 및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대한 사항을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23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힌 행정구역 또는 행정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해당 내용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0.19]

제24조(등록번호의 변경) ①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개정 2013.3.23>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시·도 간 변경등록하는 경우
3.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해당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등록번호의 변경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변경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뜻을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리고, 변경 전 등록관청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할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번호판, 봉인 및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지체 없이 변경된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 봉인 및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신설 2011.10.19>

[전문개정 2009.10.19]

제25조(시·도 간의 변경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12.17>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조회한 후 변경사항을 그 등록원부에 적어야 하며, 해당 자동차가 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종전의 등록번호판, 봉인 및 자동차등록증을 반납받은 후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새로운 등록번호판, 봉인 및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6.1>

③ 삭제 <2010.6.1>

④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뜻을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변경 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6.1>

[전문개정 2009.10.19]

제4절 이전등록

제26조(이전등록 신청) ①이전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2013.12.17>

1.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3.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② 등록관청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신설 2011.10.19, 2013.3.23>

[전문개정 2009.10.19]

제27조(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최고 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0.19]

제28조(공매처분에 따른 이전등록) ① 조세 관계 법령 또는 「민사집행법」 등에 따라 자동차를 공매처분하거나 한 경우 해당 기관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록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공매처분을 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 및 저당권등록을 말소하고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29조 삭제 <1999.7.29>

제30조(여러 개의 등록에 관한 일괄 신청) 한 대의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과 변경등록을 함께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있으면 이전등록 신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19]

제5절 말소등록 및 압류등록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
3. 제6항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4.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12.27>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④ 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폐차할 것을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 법 제13조제1항제8호에서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3.23>

1.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교육·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섬(육지와 연결된 섬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4. 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해당 공관장 또는 부대장이 해당 용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5. 법 제70조제7호에 따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7.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⑦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⑧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0.19]

제32조(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그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해당 말소등록을 한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0.19]

제33조(관할위반 등의 말소등록) ① 등록관청은 등록을 마친 후에 그 등록이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등록명의인 및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34조(말소된 등록의 회복)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35조 삭제 <2002.12.31>

제4장 삭제 <2009.7.7>

제36조 삭제 <1999.7.29>

제37조 삭제 <2009.7.7>

제38조 삭제 <2009.7.7>

제39조 삭제 <2009.7.7>

제40조 삭제 <2009.7.7>

제41조 삭제 <2009.7.7>

제42조 삭제 <2009.7.7>

제5장 그 밖의 등록 <개정 2009.10.19>

제43조(경정등록) ① 등록관청은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착오 또는 누락이 해당 등록관청의 과오로 인한 것이면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등록명의인 또는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착오 또는 누락이 해당 등록관청의 과오로 인한 것이 아니면 그 뜻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알리는 경우 등록이 제1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에 의한 신청에 따른 등록인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 등록관청은 등록에 관한 착오나 누락에 따른 경정등록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한다.

1.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2.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전문개정 2009.10.19]

제44조(예고등록) ①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라는 이유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하여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등록원인이 취소라는 이유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만 예고등록을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되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예고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45조(예고등록의 말소) 법원은 제44조에 따른 소를 각하하는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게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청구의 목적에 관하여 화해가

있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판결문등본 또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예고등록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제46조 삭제 <1999.7.29>

부칙 <제15162호,1996.10.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등록과 이에 관련된 처분은 이 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법 제13조제8항 후단 또는 법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신규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경우 : 이 영 시행일 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6월이내
2. 도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경우 : 이 영 시행일 또는 당해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이내
3. 기타의 사유로 말소등록한 경우 :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

④(저당권에 관한 경과조치) 1994년 6월 30일 당시 교통부령에 의하여 승합자동차중 소형으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1994년 6월 30일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은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저당권이 말소등록될 때까지 이 영에 의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803호,1998.5.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97호,1999.7.29>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75호,200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2조제2항(시·도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4.10.15.>

부칙 <제17952호,2003.4.4>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57호,2005.11.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1월 1일 전에 등록한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6년 1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도간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부칙 <제19773호,2006.12.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4.10.15.>

부칙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32조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21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제4호, 제31조제6항제6호, 제31조제6항제6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88>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1616호,2009.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동차저당법」에 의한"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동차저당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자동차저당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장(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을 삭제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789호,2009.10.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2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6.1>

부칙 <제22180호,2010.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의2, 제12조, 제22조제5항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32호,201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번호의 부여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268호,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말소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압류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 본문, 제6조의2제2항·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 본문, 제27조제1항·제3항 및 제3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10조제4항,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1항제4호, 제26조제2항 및 제31조제6항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71>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5012호,2013.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662호,2014.10.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80호,2015.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2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된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 기재에 관한 경과조치) 등록관청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부유형을 등록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자동차등록령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5.7.6.>

자동차등록원부(갑)

		총 면 중 제 면
자동차등록번호	제원관리번호	말소등록일
차 명		차 종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용 도
모델연도	색 상	출처구분
최초등록일	세부유형(사업용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제작연월일
최종소유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차고지)		
검사유효기간		등록사항 확인일
		폐쇄일

순위번호		사 항 란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록일	접수번호
주등록	부기등록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 자동차등록령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5.7.6.>

자동차등록원부(을)

			총 면 중 제 면
을부번호		저당권설정 접수번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채권가액 원		저당권설정일	저당권말소일

순 위	구 분	사 항 란	등록일

공동저당된 자동차의 등록번호 등

종 류	자동차번호	설정일	말소일	종 류	자동차번호	설정일	말소일

폐쇄연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 2009.9.26] [법률 제09525호, 2009.3.25,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動産)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고, 저당권자·저당권설정자 및 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동산"이란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를 말한다.
2. "등록관청"이란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등록·변경등록·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말한다.

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다음 각 호의 특정동산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2.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
 가.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의 소형선박 중 같은 법 제26조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
 나.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4. 비행기와 회전익(回轉翼) 항공기로서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제4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나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특정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효력 등) ①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다음 각 호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2. 「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3. 「어선법」에 따른 어선원부
4.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6.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

②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은 설정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③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 등록관청은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동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뜻을 미리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특정동산에 대한 등록의 말소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하려는 경우
2. 소형선박: 「선박법」 제22조, 「어선법」 제19조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3.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4. 항공기: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어 말소등록의 신청을 수리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고를 한 후 해당 항공기의 소유자가 기간 내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제7조(저당권의 행사 등) ① 저당권자는 제6조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그 특정동산에 대하여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저당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저당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각각 저당권의 행사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 1개월
2. 소형선박: 2개월
3. 건설기계 및 항공기: 3개월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저당권행사의 개시 기한까지 저당권의 행사 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동산에 대하여 말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자가 그 기간 내에 저당권의 행사 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행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말소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등록관청은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행사하여 경매의 매수인이 그 특정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정동산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건설기계에 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며, 항공기에 관하여는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조(양도명령에 따른 환가방법의 특례) ① 담보목적물(항공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저당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저당권자에게 압류된 담보목적물의 매각을 허가하는 양도명령의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질권설정의 금지) 특정동산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10조(저당권 말소등록 등의 서류 교부) 저당권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저당채무가 소멸되어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의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권리자에게 그 특정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①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및 면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준용규정)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9525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기계저당법
2. 소형선박저당법
3. 자동차저당법
4. 항공기저당법

제3조(경과조치)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8622호 소형선박저당법 시행 전에 소형선박에 대하여 설정된 질권은 그 질권설정계약의 존속기간에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법률 제4646호 자동차저당법개정법률 시행 전에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그 저당권이 말소등록될 때까지 이 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단서 중 "「소형선박저당법」"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으로 한다.

②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7조 및 제270조 중 "「소형선박저당법」 제2조"를 각각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③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 중 "「소형선박저당법」 제2조제3호"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다목에"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기계저당법」, 종전의 「소형선박저당법」, 종전의 「자동차저당법」, 종전의 「항공기저당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시행 2015.1.6] [대통령령 제25985호, 2015.1.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당권의 설정등록) 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동산에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국토교통부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한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 해당 소형선박을 등록한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3.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자동차등록령」 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관할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등록관청
4.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항공기: 국토교통부장관.

②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액
2. 채무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3. 채권의 변제기(辨濟期), 이자, 이자의 발생 시기 및 지급 시기
4. 조건부 채권의 경우 그 조건
5.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6.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담보하는 가격
7.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인 경우에는 등록 원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

려는 자는 해당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사본을 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신설 2010.1.11>

제3조(공동저당 등록) ①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특정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특정동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2대 이상의 건설기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각 건설기계에 관한 신청서에 다른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2척 이상의 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각 선박의 선명, 총톤수, 소유자 및 선박번호(「어선법」에 따른 어선은 어선번호를 말하고,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모터보트는 등록번호를 말한다)
2.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각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
3. 2대 이상의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항공기등록령」 제1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② 제1항의 저당권 설정등록은 같은 종류의 특정동산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특정동산에 저당권 설정등록을 한 후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특정동산에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저당권 등록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4조(저당권의 변경등록) ①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에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저당권의 변경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을 때 또는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때에만 부기(附記)로써 변경등록을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의 경우 등록관청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사본을 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신설 2010.1.11>

1. 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2.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제5조(저당권의 이전등록) ①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에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② 채권 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③ 저당권의 이전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제6조(저당권의 말소등록) ①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에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②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除權判決) 등본
2.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③ 저당권의 말소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을 때 또는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때에만 말소등록을 한다.

제7조(항공기에 관한 저당권 말소등록의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록령」 제36조에 따라 공매신청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에 관하여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으면 그 저당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저당항공기에 대하여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등록원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항공기에 관하여 경락(競落)에 의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고 이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할 때에는 공매신청의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8조(등록된 권리의 우선순위) ① 동일한 특정동산에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주등록의 순위가 같은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제9조(채권자의 대위) 채권자가 「민법」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서에 채권자·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대위 원인을 적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고,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11조에 따라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건설기계 및 자동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저당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채권가액의 1천분의 4
 나. 저당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대당 1천원
2. 소형선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채권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가. 저당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채권가액의 1만분의 2
 나. 저당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채권가액의 10만분의 2
3. 항공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등록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붙이는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제11조(등록의 경정) ① 등록관청은 특정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 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착오나 누락이 등록관청의 과오(過誤)로 인한 것인 경우: 부기로써 경정등록(更正登錄)을 하고, 그 뜻을 지체 없이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등록명의인 또는 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한다. 그 등록이 제9조에 따른 것일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통지한다.
2. 착오나 누락이 등록관청의 과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지체 없이 그 뜻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한다.

② 등록에 관한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경정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신청서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만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특정동산의 저당권 등록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령」을, 항공기에 대해서는 「항공기등록령」을,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선박법 시행령」 또는 「어선법 시행령」을 각각 준용한다.

부칙 <제21616호,2009.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과 소형선박저당법 시행령은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동차저당법」에 의한"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동차저당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자동차저당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장(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을 삭제한다.

② 항공기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항공기 저당법(이하 "저당법"이라 한다)에 의한"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하 "저당법"이라 한다)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호적등본 또는 호적초본을"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로 한다.

제4장제3절(제27조부터 제3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기계저당법 시행령」, 「소형선박저당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987호,2010.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1> 까지 생략

<13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323호,201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3807호,2012.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44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9>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8.4>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설정 금액	[]채권액 []채권최고액 []담보가격 원		변제기
이자	원	이자 발생 시기	이자 지급 시기

등록 원인
대위 원인
조건 또는 약정
종전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0.1.11>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을부번호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처리기간: 즉시(항공기의 경우 7일)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 (등록기호)		을부번호		
저당권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저당권 변경계약서 등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저당권자·특정동산 소유자 인감증명서(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며, 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외합니다)
2.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등본(저당권의 변경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수수료: 시행령 제10조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5.23>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하고, 을부번호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항공기의 경우 7일)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을부번호
이전 명세	이전 전	이전 후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그 밖의 변경 사항		
[] 양도 채권액 [] 대위변제 채권액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종전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2.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0.1.11>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항공기의 경우 7일)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 (등록기호)	
저당권자	주소		
	성명 또는 명칭		
☐ 채권액 ☐ 채권최고액 ☐ 담보가격			
채무자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저당권 설정자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대위 원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손도장)

귀하

※ 구비서류

1.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2.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저당권의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본 또는 「공탁법」에 따른 공탁을 한 경우는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시행령 제10조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6.10] [국토교통부령 제00099호, 2014.6.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 제29조의3제1항·제4항, 제32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7, 2003.2.25, 2005.8.10, 2009.1.23, 2014.2.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7.21, 1997.1.17, 1997.8.25, 1999.2.19, 2001.4.28, 2004.8.6, 2005.8.10, 2006.4.14, 2006.10.26, 2008.1.14, 2008.12.8, 2009.1.23, 2010.3.29, 2010.11.10, 2011.3.16, 2011.8.31, 2012.2.15, 2012.7.9, 2014.6.10>

1. "공차상태"란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물품(예비부분품 및 공구 기타 휴대물품을 포함한다)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연료·냉각수 및 윤활유를 만재하고 예비타이어(예비타이어를 장착한 자동차만 해당한다)를 설치하여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적차상태"라 함은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승차정원의 인원이 승차하고 최대적재량의 물품이 적재된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승차정원 1인(13세 미만의 자는 1.5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의 중량은 65킬로그램으로 계산하고, 좌석정원의 인원은 정위치에, 입석정원의 인원은 입석에 균등하게 승차시키며, 물품은 물품적재장치에 균등하게 적재시킨 상태이어야 한다.
3. "축중"이라 함은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의 윤중을 합한 것을 말한다.
4. "윤중"이라 함은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중량을 말한다.
5. "차량중심선"이라 함은 직진상태의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가장 앞의 차축의 중심점(앞차축이 설치되지 아니한 3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바퀴의 접지부분 중심점을 앞차축의 중심점으로 본다)과 가장 뒤의 차축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말하며, 이륜자동차(측차를 붙인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앞·뒷바퀴(측차를 붙인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측차를 제외한다)의 타이어접지부분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말한다.
6. "차량중량"이라 함은 공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7. "차량총중량"이라 함은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8. "풀트레일러"란 자동차 및 적재물 중량의 대부분을 해당 자동차의 차축으로 지지하는 구조의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8의2. "저상트레일러"란 중량물의 운송에 적합하고 세미트레일러의 구조를 갖춘 것으로서, 대부분의 상면지상고가 1,100밀리미터 이하이며 견인자동차의 커플러 상부높이보다 낮게 제작된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8의3. "세미트레일러"란 그 일부가 견인자동차의 상부에 실리고, 해당 자동차 및 적재물 중량의 상당 부분을 견인자동차에 분담시키는 구조의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8의4. "센터차축트레일러"란 균등하게 적재한 상태에서의 무게중심이 차량축 중심의 앞쪽에 있고, 견인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수직방향으로 굴절되지 아니하며, 차량총중량의 10퍼센트 또는 1천 킬로그램보다 작은 하중을 견인자동차에 분담시키는 구조로서 1개 이상의 축을 가진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8의5. "모듈트레일러"란 초대형 중량물의 운송을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2대 이상을 조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서 하중을 골고루 분산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9. "연결자동차"라 함은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의 자동차를 말한다.

10. "접지부분"이라 함은 적정공기압의 상태에서 타이어가 지면과 접촉되는 부분을 말한다.

11. "조향비"라 함은 조향핸들의 회전각도와 조향바퀴의 조향각도와의 비율을 말한다.

12. 삭제 <2001.4.28>

13. "승차정원"이라 함은 자동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최대인원(운전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4. "최대적재량"이라 함은 자동차에 적재할 수 있도록 허용된 물품의 최대중량을 말한다.

15. "유효조광면적"이라 함은 등화렌즈의 바깥둘레를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에서 반사기렌즈의 면적과 등화부착용 나사머리부의 면적등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16. "단일배율후사경"이라 함은 반사면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있는 물체는 반사면상에 동일한 크기와 모양으로 나타나는 후사경을 말한다.

17. "조향기둥"이라 함은 조향핸들축을 둘러싸고 있는 외장부분을 말한다.

18. "조향핸들축"이라 함은 조향회전력을 조향핸들에서 조향기어로 전달하는 축을 말한다.

19. "머리충격부위"라 함은 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착석기준점 및 착석기준점 앞 127밀리미터의 지점(조절범위가 127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최대치)에서 위로 19밀리미터지점에서, 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석기준점에서 지름이 165밀리미터인 구형의 머리모형을 지닌 측정장치의 머리모형의 가장 윗부분을 736밀리미터(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좌석등받이 시험의 경우에는 600밀리미터)에서 838밀리미터까지 조절할 때에 그 머리모형이 정적으로 접할 수 있는 표면중 유리면외의 차실안의 표면을 말한다.

20. "착석기준점"이라 함은 좌석(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뒤의 위치의 좌석을, 좌석을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위치의 좌석을, 좌석의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준설계각도로 조절한 상태의 좌석을 말한다)에 착석시킨 인체모형의 상체와 골반사이의 회전중심점 또는 제작자등이 정하는 이에 상당하는 표준설계위

치를 말한다.

21. "골반충격부위"라 함은 착석기준점에서 위로 178밀리미터, 아래로 102밀리미터, 앞으로 204밀리미터, 뒤로 51밀리미터로 결정되는 지면과 수직인 직사각형을 좌우로 이동할 경우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
22. 삭제 <1995.12.30>
23.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
24.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란 어린이보호용 좌석을 부착구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차체 또는 좌석 등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치를 말한다.
25.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라 함은 바퀴의 회전량을 감지·분석하여 바퀴의 제동력을 조절하여 줌으로써 제동시 바퀴의 미끄러짐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25의2. "주제동장치"라 함은 주행 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를 말한다.

25의3. "비상제동장치"라 함은 주행 중에 주제동장치의 계통 중 하나의 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말한다.

25의4. "자동제어제동"이란 운전자의 제동장치 조작과는 관계 없이 전자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제동을 말한다.

25의5. "선택적 제동"이란 운전자의 제동장치 조작과는 관계 없이 전자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차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제동을 말한다.

25의6. "긴급제동신호장치"란 자동차의 주행 중 급제동 시 제동감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경고를 주는 장치 또는 그러한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25의7.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란 자동차의 주행 중 각 바퀴의 브레이크 압력과 원동기 출력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시킴으로써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25의8. "제동력지원장치"란 급제동시 제동페달에 가하여지는 힘이나 속도를 감지하여 제동력을 최대로 증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26. "천연가스"라 함은 탄화수소가스와 증기의 혼합물로서 주로 메탄이 가스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자동차용 연료를 말한다.
27. "천연가스용기"라 함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용기를 말한다.
28. "천연가스연료장치"라 함은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용기와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29. 삭제 <2001.4.28>
30. 삭제 <2001.4.28>
31. "천연가스연료장치의 고압부분"이라 함은 압축천연가스용기부터 첫번째 압력조정기까지의 부분중 첫번째 압력조정기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3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어린이(13세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33. "하이브리드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34. "2층대형승합자동차"라 함은 운전자 및 승객을 위하여 제공되는 차실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2층 구조로 하면서 위층에는 입석을 하지 아니하는 대형승합자동차를 말한다.
35. "굴절버스"란 각각 독립적인 차실을 갖춘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여 굴절이 되는 자동차로서 승객이 차실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연결부분이 쉽게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36. 삭제 <2014.6.10>
37. "보조제동장치"란 주제동장치의 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장시간에 걸쳐 제동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리타더 및 배기제동장치 등을 말한다. 다만, 연동제동장치를 갖춘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연동제동장치와 별도로 작동되는 주제동장치를 말한다.
38. "연동제동장치"란 이륜자동차의 모든 바퀴의 브레이크가 하나의 조종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는 주제동장치를 말한다.
39. "분할제동장치"란 이륜자동차의 주제동장치 내의 둘 이상의 계통 중 하나의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계통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주제동장치로서, 하나의 조종장치로 모든 바퀴의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주제동장치를 말한다.
40. "보행자머리모형"이란 보행자보호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성인머리모형 및 어린이머리모형을 말한다.
41. "보행자다리모형"이란 보행자보호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상부다리모형 및 하부다리모형을 말한다.
42. "보행자머리충격부위"란 횡단경계선 1,000밀리미터부터 1,700밀리미터까지와 좌·우 측면기준선이 경계가 되는 어린이머리모형충격부위 및 횡단경계선 1,700밀리미터부터 2,100밀리미터와 좌·우 측면기준선이 경계가 되는 성인머리모형충격부위로 구성된 자동차 앞면 구조물 표면(창유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43. "보행자다리충격부위"란 보행자의 다리가 충격하는 자동차앞면에 설치된 범퍼시험영역을 말한다.
44. "횡단경계선"이란 줄자의 한쪽 끝을 범퍼 앞면에서 수직한 지면에 놓고 다른 한쪽 끝을 자동차 앞면 구조물 표면에 놓은 상태로 후드와 범퍼를 따라 좌우로 움직일 때 앞면 구조물 표면에 발생하는 접점의 연장선을 말한다.

45. "측면기준선"이란 직선자를 자동차의 너비방향면에 평행하고 지면에 수직하게 하여 자동차의 측면방향으로 45도 기울여서 자동차 측면표면과 접촉을 시킨 상태로 자동차의 측면을 따라 앞뒤로 움직일 때 직선자와 자동차구조물간의 가장 높은 접점의 연장선을 말한다.
46. "범퍼모서리"란 자동차의 길이방향면과 60도의 각도를 이루는 수직면이 범퍼의 외부표면에 접촉하는 지점을 말한다.
47. "범퍼시험영역"이란 양쪽 두개의 범퍼모서리에서 자동차 중심방향으로 자동차너비방향과 평행하게 66밀리미터 이동한 지점과 자동차 수직종단면이 교차하는 지점에 의하여 경계가 되는 점퍼의 앞면표면을 말한다.
48. "범퍼하부기준선높이"란 직선자를 자동차길이방향면에 평행하고 지면에 수직하게 하여 직선자를 자동차길이방향 뒤쪽으로 25도 기울여 지면 및 범퍼표면과 접촉시킨 상태로 자동차의 앞면을 따라 좌우로 움직일 때 직선자와 범퍼간의 가장 낮은 접점의 연장선을 말한다.
49. 삭제 <2011.10.6>
50.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50의2. "저속전기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51. "전기회생제동장치"란 자동차를 감속시킬 때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말한다.
52. "고전원전기장치"란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작동전압이 직류 60볼트 초과 1,500볼트 이하이고, 교류(실효치를 말한다) 3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의 전기장치를 말한다.
53.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54. "구동전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회전운동하는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한다.
55. "활선도체부"란 통상 사용상태에서 전기적으로 통전(通電)되는 도체(導體) 또는 도전성(導電性)부위를 말한다.
56.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란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 공기압의 저하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타이어 공기압의 상태를 알려주는 장치를 말한다.
57. "수륙양용(水陸兩用)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수상에서 항행할 수 있는 구조와 장치 등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58. "연료전지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9. "연료전지"란 수소를 사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조 및 장치의 안전성 확보)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되거나 정비되어야 한다.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1절 자동차의 안전기준

제4조(길이·너비 및 높이) ①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7.1.17>

1. 길이 : 13미터(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16.7미터를 말한다)
2. 너비 : 2.5미터(후사경·환기장치 또는 밖으로 열리는 창의 경우 이들 장치의 너비는 승용자동차에 있어서는 25센티미터, 기타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30센티미터.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너비가 견인자동차의 너비보다 넓은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후사경에 한하여 피견인자동차의 가장 바깥쪽으로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3. 높이 : 4미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는 다음 각호의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1. 공차상태
2. 직진상태에서 수평면에 있는 상태
3. 차체 밖에 부착하는 후사경, 안테나, 밖으로 열리는 창, 긴급자동차의 경광등 및 환기장치등의 바깥 돌출부분은 이를 제거하거나 닫은 상태

제5조(최저지상고)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있어서 접지부분외의 부분은 지면과의 사이에 12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작업용자동차, 경주용자동차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자동차의 제작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7.21, 2008.3.14, 2013.3.23>

제6조(차량총중량등) ①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20톤(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30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40톤), 축중은 10톤, 윤중은 5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8.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축중 및 윤중은 연결자동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중량분포) ①자동차의 조향바퀴의 윤중의 합은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각각에 대하여 20퍼센트(3륜의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18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5.12.30>

②견인자동차는 피견인자동차(풀트레일러를 제외한다)를 연결한 상태에서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최대안전경사각도) 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좌우로 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서 고소작업·방송중계·진공흡입청소 등의 특정작업을 위한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승차정원 10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공차상태에서 35도(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 이하인 경우에는 30도)
2. 승차정원 11명 이상인 승합자동차: 적차상태에서 28도

[전문개정 2008.12.8]

제9조(최소회전반경) ①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바깥쪽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할 때에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2.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반지름 5.3미터와 12.5미터의 동심원 사이를 회전하였을 때 그 차체가 각 동심원에 모두 접촉되어서는 아니된다.<신설 2012.2.15>

[전문개정 1999.6.28]

제10조(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지부분은 소음의 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일 것
2. 삭제 <1999.2.19>
3. 무한궤도를 장착한 자동차의 접지압력은 무한궤도 1제곱센티미터당 3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삭제 <1999.2.19>

제11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1997.8.25, 2009.1.23>

1.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주시동장치 및 정지장치는 운전자의 좌석에서 원동기를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2. 삭제 <2011.10.6>
3. 삭제 <1997.8.25>
4. 삭제 <1997.8.25>

②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등이 없어야 한다.<개정 2009.6.18>

③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조속기는 연료의 분사량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하여야 하며, 봉인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조작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5.7.21>

제12조(주행장치) ① 자동차의 공기압고무타이어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

②자동차의 타이어 및 기타 주행장치의 각부는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하며,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과도하게 부식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③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바퀴 뒤쪽에는 흙받이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제12조의2(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복륜(複輪)인 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최소한 시속 40킬로미터부터 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까지의 범위에서 작동될 것
2. 경고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점등되고 정상상태 시 소등될 것. 다만, 공유구역(1개 이상의 식별표시, 표시장치, 식별부호 또는 그 밖의 메시지를 표시하지만 동시에 표시하지 아니하는 구역을 말한다)에 표시되는 식별표시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운전자가 낮에도 운전석에서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

[본조신설 2011.3.16]

제13조(조종장치등) ①자동차에 설치된 다음 각호의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는 운전자가 좌석안전띠(이하 "안전띠"라 한다)를 착용한 상태에서 쉽게 조작 및 식별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1997.1.17, 2003.2.25, 2010.3.29>

1. 주시동장치·정지장치·가속제어장치 및 기타 원동기의 조작장치
2. 제동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3. 변속장치·창닦이기·세정액분사장치·서리제거장치·안개제거장치·전조등·등화점등장치·비상경고신호등·방향지시등 및 경음기의 조작장치
4. 속도계·방향지시등·주행빔·연료장치·원동기냉각수·윤활유·제동경고등·충전장치 및 경제운전의 표시장치

②가속제어장치의 복귀장치는 가속페달에서 작용력을 제거할 때에 원동기의 가속제어장치를 가속위치에서 공회전위치로 복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최소한 2개 이상이어야 하며, 변속장치의 조종레버(변속레버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는 변속단수별 조작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자동변속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7.1.17, 2005.8.10, 2009.6.18, 2010.11.10>

1. 중립위치는 전진위치와 후진위치 사이에 있을 것
2. 조종레버가 조향기둥에 설치된 경우 조종레버의 조작방향은 중립위치에서 전진위치로 조작되는 방향이 시계방향일 것
3. 주차위치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위치에 가까운 끝부분에 있을 것. 다만, 순서대로 조작되지 아니하는 조종레버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조종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위치에 있는 경우 원동기가 시동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이브리드자동차
 나. 전기자동차
 다. 원동기의 구동이 모두 정지될 경우 변속기가 자동으로 중립위치로 변환되는 구조를 갖춘 자동차
 라. 주행하다가 정지하면 원동기의 시동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를 갖춘 자동차
5. 전진변속단수가 2단계 이상일 경우 매시 4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에서 저속변속단수에서의 원동기제동효과는 고속변속단수에서의 원동기제동효과보다 클 것

④자동차에 별표 1의2에서 정하고 있는 손조작식 조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표에서 정하는 조종장치의 식별단어·약어 또는 식별부호(이하 "식별표시"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조향기둥 좌우측에 위치한 방향지시등·비상점멸표시등·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등의 레버식조종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2>

⑤자동차의 차실안에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표에서 정하는 식별표시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장치의 작동여부 및 상태의 정상여부를 나타내 주는 표시장치(이하 "자동표시기"라 한다)가 자동표시기 외의 표시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당해자동표시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자동차에 보조시동장치(전파등을 이용한 원격시동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조종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위치에 있는 경우 원동기가 시동(크랭킹의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5.7.21>

⑦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가변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변축 승강조작장치 및 압력조절장치를 자동차의 좌측면 가변축 또는 가장 뒤축의 주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으로 하중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전자제어식 가변축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8.1.14, 2008.12.8, 2014.6.10>

1. 구동축의 축중이 제6조에 따른 축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가변축이 자동으로 내려오고 상승조작이 불가능한 조작장치를 갖춘 경우
2. 험로(險路) 탈출 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구동축의 축중을 일시적으로 최대 15톤까지 증가시켜 시속 30킬로미터에 도달 시 자동으로 해제되는 장치를 갖춘 경우

제14조(조향장치) ①자동차의 조향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5, 2010.11.10>

1. 조향장치의 각부는 조작시에 차대 및 차체등 자동차의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고,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손상이 없으며,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2. 조향장치는 조작시에 운전자의 옷이나 장신구등에 걸리지 아니할 것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 구분에 따른 해당 속도로 반지름 50미터의 곡선에 접하여 주행할 때 자동차의 선회원(旋回圓)이 동일하거나 더 커지는 구조일 것

가. 승용자동차: 시속 50킬로미터

나.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 시속 40킬로미터(최고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

4. 자동차를 최고속도(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견인자동차의 최고속도를 말한다)까지 주행하는 동안 조향핸들이 비정상적으로 조작되거나 조향장치가 비정상적으로 진동되지 아니하고 직진 주행이 가능할 것. 다만, 제10호가목에 따른 조향장치에 의한 진동은 제외한다.

5. 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가 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동안 발생되는 응력(應力)에 견딜 것

6. 조향장치(피견인자동차를 조향하는 제어장치를 포함한다)는 자기장이나 전기장에 의하여 작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

7. 조향장치의 결합구조를 조절하는 장치는 잠금장치에 의하여 고정되도록 할 것

8. 조향바퀴는 뒷바퀴에만 있어서는 아니 될 것. 다만, 세미트레일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조향장치 중 기계적인 강성이 필요한 모든 관련 부품은 제동장치 등과 같은 필수부품과 동등한 안전특성으로 충분한 크기를 갖추어야 하고, 그 부품의 고장으로 자동차를 조종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품은 금속 또는 이와 동등한 특성을 갖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작동 중일 때에는 해당 부품에 심각한 변형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10. 조향장치의 기능을 저해시키는 고장(기계적인 부품의 고장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고장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고장치를 갖출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고장 시 조향장치에 의도적으로 진동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구조인 경우

나. 고장 시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조향조종력이 증가되는 구조인 경우

다.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고장 시 기계적인 표시기를 갖춘 구조인 경우

② 삭제 <2003.2.25>

③조향핸들의 유격(조향바퀴가 움직이기 직전까지 조향핸들이 움직인 거리를 말한다)은 당해 자동차의 조향핸들지름의 12.5퍼센트이내이어야 한다.

④조향바퀴의 옆으로 미끄러짐이 1미터 주행에 좌우방향으로 각각 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각 바퀴의 정렬상태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15조(제동장치) ①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주제동장치와 주차 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이하 "주차제동장치"라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그 구조와 제동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09.1.23, 2011.12.23, 2014.6.10>

1.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주제동장치는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하는 구조일 것

2. 주제동장치의 계통 중 하나의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고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주제동장치의 다른 계통 등으로 자동차를 정지시킬 수 있고, 제동력을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제동될 수 있는 구조일 것

3. 제동액 저장장치에는 제동액에 대한 권장규격을 표시할 것
4. 주제동장치에는 라이닝 등의 마모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다만,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모든 바퀴로 구동할 수 있는 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후축의 주제동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주제동장치의 라이닝 마모상태를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장치(경고음 또는 황색경고등을 말한다)를 설치하거나 자동차의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6. 에너지저장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는 주제동장치에는 2개(에너지 저장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전자의 힘으로만 기계적으로 주제동장치가 작동될 수 있는 구조의 경우는 1개) 이상의 독립된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각 에너지저장장치는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고장치를 설치할 것
7. 주차제동장치는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잠김상태가 유지되는 구조일 것
8. 주차제동장치는 주행중에도 제동을 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9.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출 것
 가. 각 계통별 에너지저장장치의 공기압력을 나타내는 압력계는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나. 2개 이상의 독립된 계통을 갖춘 공기식 주제동장치는 제동조종장치와 제동바퀴 사이에서 공기누설이 발생할 경우 누설된 공기를 대기중으로 배출시키는 구조일 것
10. 주제동장치의 급제동능력은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도로에서 주행중인 자동차를 급제동할 때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할 것
11.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할 것
12.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피견인자동차(차량총중량이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제4호(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제5호·제7호 및 제10호 내지 제1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피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구조일 것
3.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는 주행중 견인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분리되는 경우 피견인자동차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다만, 차량총중량이 1.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가 체인·와이어로프 등 보조연결장치에 의하여 조절되고 연결봉이 지면에 닿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피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에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독립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③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제동장치에는 제동액의 기준유량(공기식의 경우에는 기준공기압을 말한다)이 부족할 경우 등 제동기능의 결함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장치

를 설치하여야 하고, 경고장치는 다음 각호 중 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고장치에 사용되는 경고음 또는 경고등은 다른 경고장치의 경고음 또는 경고등과 구별이 될 수 있을 것. 다만, 주차제동장치의 표시장치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고장치의 경고등은 충분한 밝기를 갖춘 적색의 등화로서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경고장치의 경고음은 운전자의 귀의 위치에서 측정할 때에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65데시벨 이상, 그 밖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75데시벨 이상일 것. 다만,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70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④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세미트레일러형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관성제동구조의 주제동장치(이하 "관성제동장치"라 한다) 또는 제6항의 기준에 적합한 전기식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0.3.29, 2011.12.23>

1. 주행중에 사용하는 관성제동장치와 주차중에 사용하는 주차제동장치를 모두 갖출 것
2. 관성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제동감속도에 비례하여 제동력이 발생되는 구조일 것
3. 관성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관성제동장치는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연결자동차의 급제동능력이 제1항제10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5. 연결자동차가 후진할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관성제동장치는 제동기능이 작동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6. 연결자동차가 전진할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관성제동장치는 제동기능이 스스로 해제되는 구조일 것
7.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와 분리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은 11도 30분의 경사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8. 삭제 <2011.12.23>

⑤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캠핑용트레일러ㆍ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08.12.8, 2012.2.15>

1.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황색경고등을 설치할 것
2.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피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견인자동차의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황색경고등을 설치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황색경고등은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로 조작한 때에 켜졌다가 고장이 없는 경우에는 꺼지고, 고장이 있는 경우에는 켜진 상태가 지속되는 구조일 것

4. 피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구조일 것

⑥전기식(제동력 전달계통이 전기식인 경우를 말한다)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4.6.10>

1. 전원공급장치(발전기와 축전지를 말한다)는 피견인자동차의 전기식 주제동장치에 충분한 전류를 공급하는 용량을 갖출 것
2. 제동장치의 전기회로는 과부하시에도 단락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2개 이상의 독립된 계통을 갖춘 주제동장치의 경우에는 하나의 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다른 계통으로 피견인자동차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제동시킬 수 있을 것
4. 전기식 주제동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제동작동회로는 여유부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견인자동차의 제동등과 병렬로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⑦연결자동차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6.4.14>

1. 제1항 내지 제6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견인자동차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사이의 공기라인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공기가 차단되는 구조일 것
3.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사이의 공기라인이 차단되는 경우에도 견인자동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4.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주제동장치의 계통 중 하나의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고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주제동장치의 다른 계통 등으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력을 조절하여 정지시킬 수 있을 것
 나. 피견인자동차와 연결된 공기라인 중 하나의 공기라인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 피견인자동차가 자동으로 제동되거나 견인자동차에서 피견인자동차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제동시킬 수 있을 것
 다. 스프링제동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공기압력의 손실로 인하여 스프링제동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될 때 피견인자동차도 자동적으로 제동될 것

4의2.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비상제동장치 또는 주차제동장치는 피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동시에 연동하여 작동되는 구조일 것.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이 연결자동차의 안정성을 위하여 단독으로 자동작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견인자동차와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동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가 연결된 상태에서의 주차제동능력은 피견인자동차의 공기식 제동장치와 연동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의 기계적인 작동만으로 주차제동이 가

능할 것. 다만, 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의 기계적인 작동만으로 연결자동차의 주차제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피견인자동차의 공기식 제동장치와 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연동하여 작동하게 할 수 있다.

⑧ 제동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점등되고, 제동력이 해제될 때까지 점등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선택적 제동에 의한 경우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보조제동장치에 의한 제동의 경우에는 감가속도에 따라 점등되거나 점등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08.1.14>

1. 운전자의 조작에 의하여 주제동장치가 작동된 경우
2. 자동제어제동에 의하여 주제동장치가 작동된 경우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제동신호장치 또는 전기회생제동장치(승용자동차에 한정한다)를 갖춘 자동차의 제동등(보조제동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방향지시등은 다음 각 호의 작동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4.6.10>

1. 긴급제동신호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제동등 또는 방향지시등은 급제동 시 별표 5의2 제1호의 긴급제동신호의 작동기준에 적합하게 작동될 것
2. 가속페달 해제에 의하여 감속도가 발생하는 전기회생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제동등은 별표 5의2 제2호의 제동등 작동기준에 적합하게 작동될 것

⑩ 전기회생제동장치를 갖춘 승용자동차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09.1.23>

1. 전기회생제동장치가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2. 전기회생제동장치가 주제동장치의 일부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출 것
 가. 주제동장치 작동 시 전기회생제동장치가 독립적으로 제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요구되는 제동력(이하 이 호에서 "요구제동력"이라 한다)을 전기회생제동력과 마찰제동력 간에 자동으로 보상하는 구조일 것
 나. 전기회생제동력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마찰제동력이 작동하여 1초 내에 해제 당시 요구제동력의 75퍼센트 이상 도달하는 구조일 것
 다. 주제동장치는 하나의 조종장치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는 제동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라. 주제동장치의 제동력은 동력 전달계통으로부터의 구동전동기 분리 또는 자동차의 변속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⑪ 자동차에 장착되는 브레이크호스는 제112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1.12.23>

⑫ 자동차에는 별표 4의3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동력지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 및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신설 2012.2.15>

⑬ 제동력 제어계통이 전기식인 승용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별표 4의5의 주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4.6.10>

[전문개정 2003.2.25]

제15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4개 바퀴(앞 차축 및 뒤 차축의 좌우 각각 한 개의 바퀴를 말한다)에 개별적으로 회전제동력(braking torque)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제어하는 방식을 갖출 것
2. 주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항상 작동할 수 있을 것
 가. 운전자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기능을 정지시킨 경우
 나.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다. 시동 시 자가 진단하는 경우
 라. 자동차를 후진하는 경우
3.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또는 구동력 제어장치가 작동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작동될 것
4. 고장 발생 시 점등되는 경고등(警告燈)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10.11.10]

제16조(완충장치) ①자동차는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스프링 기타의 완충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장치의 각부는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탈락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제17조(연료장치) ①자동차의 연료탱크·주입구 및 가스배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7, 1997.8.25>

1. 연료장치는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하여 연료가 새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 배기관의 끝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연료탱크를 제외한다)
3. 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로부터 2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연료탱크를 제외한다)
4. 차실안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료탱크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②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4.6.10>

1. 자동차의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수소농도는 평균 4%, 순간 최대 8%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차단밸브(내압용기의 연료공급 자동 차단장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후의 연료장치에서 수소가스 누출 시 승객거주 공간의 공기 중 수소농도는 1% 이하일 것

3. 차단밸브 이후의 연료장치에서 수소가스 누출 시 승객거주 공간, 수하물 공간, 후드 하부 등 밀폐 또는 반밀폐 공간의 공기 중 수소농도가 2±1% 초과 시 적색경고등이 점등되고, 3±1% 초과 시 차단밸브가 작동할 것

제18조(전기장치) 자동차의 전기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 씌우고, 차체에 고정시킬 것
2. 차실안의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는 적절히 절연물질로 덮어 씌울 것
3. 축전지는 자동차의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키고, 차실안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절연물질로 덮어 씌울 것

제18조의2(고전원전기장치) 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는 별표 5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0]

제18조의3(구동축전지) 자동차의 구동축전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2. 설계된 범위를 초과하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 및 열적 충격조건에서 발화 또는 폭발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09.1.23]

제19조(차대 및 차체) ①자동차의 차대 및 차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는 차대에 견고하게 붙여져서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차체의 가연성부분은 배기관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자동차의 가장 뒤의 차축 중심에서 차체의 뒷부분 끝(범퍼 및 견인용장치등을 제외한다)까지의 수평거리("뒤 오우버행"을 말한다)는 가장 앞의 차축중심에서 가장 뒤의 차축중심까지의 수평거리의 2분의 1(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20분의 11, 승합자동차와 화물을 차체밖으로 나오게 적재할 우려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는 3분의 2)이하일 것

②화물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탱크로리에 있어서는 차량총중량ㆍ최대적재량ㆍ최대적재용적 및 적재물품명)을 표시하고, 견인형특수자동차의 뒷면 또는 우측면에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의 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최대적재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총중량이 15톤 미만인 경우에는 차량총중량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5.7.21, 1999.2.19, 2006.4.14, 2008.12.8>

③차량총중량이 8톤 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연결자동차는 포장노면위의 공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측면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 등이 뒷바퀴에 말려들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 차체 등의 구조물과의 간섭으로 설치가 곤란한 자동차 및 조향축간 거리가 2,100밀리미터 이하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01.4.28, 2009.6.18, 2014.6.10>

1.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뒷바퀴와의 간격은 각각 4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만,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뒷바퀴와의 간격을 400밀리미터 이내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자동차의 경우 앞·뒷바퀴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측면보호대의 가장 아랫 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50밀리미터 이하일 것
3. 측면보호대의 가장 윗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95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측면보호대 가장 윗부분과 차체 바닥면과의 간격이 350밀리미터 이하일 경우는 제외한다.
4. 측면보호대 가장 바깥쪽 면은 차체의 가장 바깥쪽 면보다 안쪽에 위치하여야 하며, 그 간격은 15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측면보호대의 뒷부분부터 최소한 250밀리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은 측면보호대의 가장 바깥쪽 면이 차체의 가장 바깥쪽 면부터 타이어의 가장 바깥쪽 면의 안쪽으로 30밀리미터까지에 해당하는 구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측면보호대 각각의 단면 높이는 50밀리미터 이상이고, 측면보호대 사이의 높이 간격은 3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6. 측면보호대에 1킬로뉴턴의 하중을 가할 때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측면보호대의 뒷부분부터 250밀리미터까지는 30밀리미터, 그 외 구간은 150밀리미터 이내로 변형되어야 한다.

④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포장노면 위에서 공차상태로 측정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자동차가 추돌할 경우 그 자동차의 차체 앞부분이 들어올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할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목재·철재·기둥 등과 같이 길고 분리할 수 없는 화물운송용 특수트레일러 및 후부안전판이 차량용도에 전혀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1.4.28, 2003.2.25, 2014.6.10>

1. 후부안전판의 양 끝 부분은 뒷차축 중 가장 넓은 차축의 좌·우 최외측 타이어 바깥면(지면과 접지되어 발생되는 타이어 부풀림양은 제외한다) 지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좌·우 최외측 타이어 바깥면 지점부터의 간격은 각각 100밀리미터 이내일 것
2. 가장 아랫 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50밀리미터 이내일 것
3. 차량 수직방향의 단면 최소높이는 100밀리미터 이상일 것
4. 좌·우 측면의 곡률반경은 2.5밀리미터 이상일 것
5. 지상부터 2미터 이하의 높이에 있는 차체 후단부터 차량길이 방향의 안쪽으로 4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4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가 곤란한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6. 화물 하역장치 등이 설치되어 해당 작동부로 인하여 후부안전판이 양쪽으로 분리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화물 하역장치 등과 후부안전판 끝부분과의 간격은 각각 25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분리된 후부안전판 각각의 면적은 최소 35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의 너비가 2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동차의 고압가스운송용기는 그 용기의 뒤쪽 끝(가스충전구에 안전장치를 한 경우에는 그 장치의 뒤쪽 끝을 말한다)이 차체의 뒷범퍼 안쪽으로 30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이 되어야 하며, 차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개정 2001.4.28, 2005.8.10>

⑥차체의 외형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수자동차로서 기능상 부득이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삭제 <2004.12.6>

⑧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신설 1997.8.25>

⑨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앞과 뒤에는 별표 5의3 제1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97.8.25, 2008.12.8, 2014.2.21>

⑩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측 옆면 앞부분에는 별표 5의3 제2호에 따른 정지표시장치(이하 "정지표시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좌측 옆면 뒷부분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4.2.21>

⑪ 2층 전체 또는 일부분에 지붕이 없는 2층대형승합자동차(이하 "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라 한다)의 위층에는 승객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호판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4.6.10>

1. 정면은 140센티미터 이상의 판넬을 설치할 것
2. 옆면은 110센티미터 이상, 뒷면은 120센티미터 이상의 판넬을 설치하거나 옆면과 뒷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판넬과 다음 각 목에 적합한 보호봉을 함께 설치할 것
가. 보호봉(비상구 부분은 보호봉의 일부로 본다)은 차체에 견고하게 부착된 구조이고 보호봉의 단면 크기 두께는 2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일 것
나. 인접한 판넬 또는 보호봉과의 간격은 20센티미터 이내의 구조일 것

제20조(견인장치 및 연결장치) ①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 또는 뒷면에는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견인할 때에 해당 자동차 중량의 2분의 1 이상의 힘에 견딜 수 있고,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견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자동차에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한 연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피견인자동차가 연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연결장치는 등록번호판을 가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장치가 공구의 사용 없이 쉽게 분리되거나 등록번호판이 가리지 아니하도록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등화장치가 연동될 수 있는 전기 커넥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차량총중량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주행 중 견인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분리될 경우에 자동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의 제동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주행 중 연결장치가 분리될 경우에 연결봉 등이 지면에 닿지 아니하는 구조의 보조연결장치(체인·와이어로프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연결장치의 설치 및 강도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6.10]

제21조(후드걸쇠장치) 자동차의 후드에는 견고한 후드걸쇠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앞 방향으로 개폐되는 후드가 운행 중에 열릴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구조의 자동차는 2차 잠금 또는 2개소 잠금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9]

제22조(도난방지장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열쇠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8, 2005.8.10>

1. 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한 경우 원동기 또는 동력원의 정상작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
2. 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출 것
 가. 자동차의 조향기능을 억제하는 기능
 나. 변속장치의 위치조작 기능을 억제하는 기능
 다. 자동차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기능
3. 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동기나 동력원의 작동이 정지된 경우에도 조향기능은 정상작동할 수 있을 것
4. 열쇠잠금장치의 조합수는 최소 1천조합이상일 것. 다만, 제작자동차의 수가 1천대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제작대수의 조합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승차장치) ①자동차의 승차장치는 승차인이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운전자 및 승객이 타는 자동차는 차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방자동차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용도상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21, 2008.3.14, 2013.3.23>

③자동차의 차실에는 조명시설 및 환기시설(컨버터블 및 무개자동차를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하며, 원동기의 냉각수(난방용수를 제외한다)·정류기·변환기·변압기·공기청정기등 승객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치를 차실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8.25>

④제2항에 따른 차실의 유효높이는 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8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 또는 아래층(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아래층에 한정한다)의 경우는 차실의 유효높이를 168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7.1.17, 2006.10.26, 2014.6.10>

⑤ 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에는 위층 탑승객의 착석여부를 운전석에서 확인 및 통제할 수 있는 영상장치와 안내방송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4.6.10>

제24조(운전자의 좌석) ①운전자의 좌석은 운전에 필요한 시야가 확보되고 승객 또는 화물등에 의하여 운전조작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운전자의 좌석은 운전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종장치의 원활한 조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운전자의 좌석과 조향핸들의 중심과의 과도한 편차로 인하여 운전조작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 그 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4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③승합자동차(입석을 할 수 없는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의 좌석 뒤에는 승객석과 분리될 수 있는 보호봉 또는 격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5.8.10, 2009.2.24>

④ 삭제 <2009.2.24>

제25조(승객좌석의 규격) ① 승객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40센티미터(2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좌석의 수 보다 입석의 수가 많은 22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좌석의 세로는 35센티미터) 이상,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65센티미터(승합자동차에 설치되는 마주보는 좌석등받이의 앞면 간의 거리는 1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구급자동차·소방자동차 및 특수구조의 자동차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자동차의 제작목적상 좌석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21, 2008.3.14, 2012.8.31, 2013.3.23>

②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용 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27센티미터 이상,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4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2.2.15>

③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승객좌석의 높이는40센티미터 이상 50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원동기부분 및 바퀴부분의 좌석등 그 구조상 40센티미터 이상 50센티미터 이하로 좌석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부분의 좌석을 제외한다.<개정 2012.8.31>

④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열좌석(운전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는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탈부착이 가능한 좌석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탈부착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별 구분이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신설 2005.8.10>

⑤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에는 옆면을 향한 좌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신설 2014.6.10>

제25조의2(접이식좌석) ①통로에 설치하는 접이식좌석은 3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안내원용 접이식좌석은 3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접이식좌석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이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6.10>

[본조신설 1999.2.19]

제26조(머리지지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는 추돌시 승차인의 머리부분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머리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승용자동차
2.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4.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전문개정 2010.3.29]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①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2008.3.14, 2011.12.23, 2013.3.23>

1. 환자수송용 좌석 또는 특수구조자동차의 좌석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좌석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
3. 삭제 <2011.12.23>

②승용자동차의 모든 좌석과 그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좌석 및 운전자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에는 3점식 이상의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중간좌석과 좌석의 구조상 3점식 이상의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5.7.21, 2010.3.29, 2011.12.23>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띠는 제112조의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3>

④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띠를 설치한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시동할 경우 운전석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경고등 또는 경고음을 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별표 5의24의 기준에 적합한 경고등 및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6.10>

⑤ 삭제 <2008.1.14>

⑥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신설 1997.8.25>

[제목개정 1997.1.17]

제27조의2(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승용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객좌석이 1열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8>

1.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2곳 이상의 좌석에 설치하되, 최소한 1곳은 제2열 좌석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다른 도구가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 여부 및 설치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부부착구 및 부착구의 중심을 통과하는 자동차길이방향의 수평선으로부터 위로 30도의 방향에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부부착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착구를 통하여 차실 안으로 배기가스가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하부의 부착장치는 착석기준점으로부터 뒤쪽으로 120밀리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좌석부착장치가 제1열에 설치되고 그 전면에 에어백이 장착된 경우에는 에어백 작동을 중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별표 5의4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상부부착구 1개와 하부부착구 2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컨버터블자동차의 경우에는 상부부착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상부부착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4]

제28조(입석) ①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차실안의 유효높이는 180센티미터 이상, 통로의 유효너비는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1인의 입석의 면적은 0.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통로의 유효너비 30센티미터에 해당하는 부분과 좌석전방 25센티미터인 좌석의 폭에 해당하는 부분은 입석면적에서 제외한다.

③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에는 입석을 할 수 없다.<신설 2014.6.10>

제29조(승강구) ①자동차의 차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7.8.25, 2008.12.8, 2009.6.18, 2011.8.31, 2014.6.10>

1. 승강구(승강구를 열고 바로 탑승하도록 좌석이 설치된 구조의 승강구는 제외한다)의 유효너비는 60센티미터 이상, 유효높이는 160센티미터(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8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차실안의 유효높이가 120센티미터 미만의 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삭제 <2009.6.18>
3. 대형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제1단 발판의 높이는 40센티미터 이하이고, 승강구문이 열릴 경우 발판을 밝힐 수 있는 등화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승하차의 편의를 위한 승하차용손잡이를 설치할 것
4.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1단의 발판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이고, 발판 윗면은 가로의 경우 승강구 유효너비(여닫이식 승강구에 보조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보조발판 바로 위 발판 윗면의 유효너비)의 80퍼센트 이상, 세로의 경우 20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제2단 이상 발판의 높이는 20센티미터 이하일 것. 다만,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각 단(제1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판은 높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된 구조의 보조발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승하차 시에만 돌출되도록 작동하는 보조발판은 위에서 보아 두 모서리가 만나는 꼭짓점 부분의 곡률반경이 20밀리미터 이상이고, 나머지 각 모서리 부분은 곡률반경이 2.5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둥글게 처리하고 고무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마감할 것

라. 보조발판은 자동 돌출 등 작동 시 어린이 등의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작동되는 구조일 것

마. 각 단의 발판은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마감할 것

②승차정원 30인 이상 자동차의 모든 자동식 승강구는 비상시 탈출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동으로도 쉽게 열 수 있어야 하고, 수동작동장치의 설치위치 및 조작방법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여야 한다.<신설 2001.4.28>

③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아래층에 2개의 승강구를 설치하되, 승강구 중심 간의 거리는 자동차 길이의 25퍼센트 이상이거나 아래층 승객석 공간 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06.10.26>

④ 중형승합자동차 및 대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승강구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9.6.18>

1. 모든 승강구의 잠금장치는 그 조작장치를 차실 내에 설치할 것
2. 모든 승강구의 잠금장치는 잠김상태에서 바깥쪽 문걸쇠풀림장치에 의하여 승강구가 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옆면 뒤쪽 승강구의 잠금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옆면 뒤쪽 승강구에 승강구의 잠금장치와 연동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작동하는 어린이보호 잠금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잠김상태에서 안쪽 문걸쇠풀림장치에 의하여 승강구가 열리지 아니할 것
 나. 잠금장치의 조작장치와 안쪽 문걸쇠풀림장치는 구별될 것
4. 뒷면 승강구에 안쪽 문걸쇠풀림장치를 설치한 경우 잠금장치의 조작장치는 안쪽 문걸쇠풀림장치와 구별될 것

제30조(비상구) ①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8, 2014.6.10>

1. 비상구의 위치는 차체의 좌측면 뒤쪽 또는 뒷면으로 할 것
2. 비상구의 유효너비는 40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는 1,200밀리미터 이상일 것
3. 비상구는 밖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고, 열쇠 기타 특별한 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열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구의 부근에는 탈출에 방해가 되는 장치가 없어야 하고, 비상구의 출구에는 단층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비상구의 주위에 있는 좌석은 쉽게 제거할 수 있거나 접을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문의 규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총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인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창문이 있는 자동차의 경우 비상구를 갖춘 것으로 본다.<신설 2014.6.10>

1. 유효너비 1,20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 400밀리미터 이상
2. 유효너비 40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 1,200밀리미터 이상
3. 유효너비 70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 500밀리미터 이상
4. 유효너비 50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 700밀리미터 이상
5. 뒤쪽 창문으로서 유효너비 1,55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 350밀리미터 이상
6. 뒤쪽 창문으로서 유효너비 35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 1,550밀리미터 이상

③비상구를 설치한 자동차에는 비상구 또는 그 주위의 보기쉬운 곳에 비상구의 위치 및 문을 여는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6.10>

④제2항에 따른 자동차(개폐식창문의 구조로서 그 크기가 비상구의 규격에 적합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탈출을 위하여 자동차의 유리를 깰 수 있는 장구를 차실안에 4개 이상 설치하고, 탈출방법등을 기재한 표지를 각각의 장구 또는 덮개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2층대형승합자동차에는 위층(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과 아래층 각각의 차실 안에 해당 장구를 4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1.4.28, 2006.10.26, 2014.6.10>

제31조(통로) ①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자동차에는 유효너비 30센티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구로부터 직접 착석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제25조의2에 따라 통로에 접이식좌석을 설치한 자동차에 있어서 당해 좌석을 접을 경우 30센티미터 이상의 유효너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자동차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19, 2006.10.26>

②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아래층의 출입문 안쪽이나 통로에서 위층으로 연결되는 내부 통로로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폭과 손잡이를 갖춘 계단식통로를 하나 이상 설치하되, 승강구와의 거리는 3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계단식통로의 발판을 밝힐 수 있는 등화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위층에 30인 이상의 좌석을 갖춘 때에는 2개의 계단식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26, 2014.6.10>

제32조(물품적재장치) ①자동차의 적재함 기타의 물품적재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운반할 수 있는 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2001.4.28, 2003.2.25, 2005.8.10, 2008.3.14, 2008.12.8, 2013.3.23>

1. 일반형 및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은 위쪽이 개방된 구조일 것
2.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물품적하구는 뒷쪽 또는 옆쪽으로 하되, 문은 좌우·상하로 열리는 구조이거나 미닫이식으로 할 것

나.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는 차체와 동일한 재질의 철판 또는 최대적재량의 50퍼센트의 하중을 가할 때 300밀리미터 이상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질의 격벽으로 폐쇄할 것. 다만, 통기구 등 제작공정상 불가피한 부분 및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봉을 설치한 창유리 부분(격벽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물품적재장치의 옆면벽과 뒷면벽 또는 뒷문은 차체와 동일한 재질로 하고 창유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리창을 지탱하는 창문틀 또는 차체에 2개 이상의 보호봉을 용접한 옆면벽과 보호봉을 설치한 뒷면벽 또는 뒷문의 경우에는 창유리를 설치할 수 있다.

라.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3.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에 필요한 구조 또는 장치를 한 자동차로서 다른 목적에 사용이 곤란한 탱크로리·살수자동차등의 물품적재장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송물품별 비중에 의하여 산출되는 중량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유류·가스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적재용량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②사체·독극물·고압가스·화약류 기타 위험물을 적재하는 장치는 차실과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며, 차체외부에서 적재물품을 적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운행중 적재물의 탈락의 우려가 있는 청소용 자동차등의 물품적재장치는 덮개등을 설치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33조(가스운송장치) 가스를 운송하기 위해 자동차에 설치하는 가스운송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스용기는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2. 가스용기는 누출된 가스 등이 차실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거나 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밸브주변이 견고한 재질로 밀폐되어 있고, 충격 등으로부터 용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 밖으로부터 공기가 통하는 곳에 설치할 것.
3. 가스용기 및 도관에는 필요한 곳에 보호장치를 할 것
4. 가스용기 및 도관에는 배기관 및 소음방지장치의 발열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열장치를 할 것
5. 도관은 강관·동관 또는 내유성고무관으로 할 것
6. 양끝이 고정된 도관(내유성고무관을 제외한다)은 완곡된 형태로 최소한 1미터마다 차체에 고정시킬 것
7. 고압부분의 도관은 가스용기 충전압력의 1.5배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8. 가스충전밸브는 충전구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중간차단밸브를 작동하는 조작장치(시동장치로 작동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운전자가 조작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9. 가스용기 및 용기밸브 등은 차체의 최후단으로부터 300밀리미터 이상, 차체의 최외측면으로부터 20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다만, 강도가 강재의 표준규격 41(SS41) 이상이고 두께가 3.2밀리미터 이상인 강판 또는 형강으로 가스용기 및 용기밸브

등을 보호한 경우에는 차체의 최후단으로부터 200밀리미터 이상, 차체의 최외측면으로부터 10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0]

제34조(창유리 등) ① 자동차의 앞면창유리는 접합유리 또는 유리·플라스틱 조합유리로, 그 밖의 창유리는 강화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 또는 유리·플라스틱 조합유리 중 하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컨버터블자동차 및 캠핑용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의 앞면 외의 창유리와 피견인자동차의 창유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29>

② 삭제 <2010.3.29>

③ 삭제 <2010.3.29>

④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창유리·선루프 또는 격실문(이하 "창유리등"이라 한다)이 전동식장치에 의해 닫혀지는 창유리등의 경우에는 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닫히는 창유리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05.8.10, 2008.12.8, 2014.6.10>

1.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 위치 또는 라디오 등 편의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상태(기계식 외의 시동장치로서 위와 동등한 상태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닫히는 경우
2. 자동차로부터 전원공급이 없이 완력에 의하여 닫히는 경우
3. 자동차 외부에서 창유리등을 자동으로 닫을 수 있는 장치(작동버튼을 계속 누르는 등 연속 작동이 있어야 닫힘이 완료되는 것에 한한다)를 작동하여 닫히는 경우
4. 시동장치의 열쇠를 원동기 작동 위치에서 제거한 후 자동차 앞문(조수석 쪽의 앞문을 포함한다)을 열 때까지 닫히는 경우
5. 창유리등이 4밀리미터 이하로 열린 상태에서 닫히는 경우
6. 창문틀이 없는 문의 경우 창유리가 12밀리미터 이하로 열려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의 문을 닫을 때 자동으로 닫히는 경우
7. 원격조종장치에 의하여 창유리등을 닫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와 원격조종장치간의 거리가 11미터(장애물이 있는 경우 6미터) 이하에서 원격조종장치를 연속적으로 작동하여 닫히는 경우
8. 운전석 창유리 및 선루프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1회의 조작으로 닫히는 경우
 가.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 위치에 있는 경우
 나. 1열 승강구가 승차인이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열리지 아니한 상태로서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 위치에서 벗어나거나 제거된 경우(기계식 외의 시동장치로서 위와 동등한 조건의 경우를 포함한다)

⑤창유리등이 닫힐 때 창유리등의 윗면에 지름 4밀리미터부터 200밀리미터까지의 반강체원통(탄성계수가 밀리미터당 1킬로그램인 것을 말한다)이 닿거나 1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1999.2.19, 2005.8.10, 2014.6.10>

1. 창유리등이 닫히기 시작하기 전의 위치로 돌아갈 것
2. 창유리등이 반강체원통에 닿거나 하중을 가한 위치로부터 50밀리미터이상 열릴 것
3. 창유리등이 200밀리미터이상 열릴 것
4. 사선방향의 여닫이 방식으로 열리는 기능만 갖춘 선루프의 경우에는 최대 개방 가능한 상태로 열릴 것

제35조(소음방지장치)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는 「소음·진동관리법」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5, 2005.8.10, 2008.12.31, 2010.6.30>

제36조(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자동차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 2010.3.29>

제37조(배기관) ①자동차의 배기관의 열림방향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열려 있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7>

②배기관의 열림방향이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왼쪽으로 30도 이내인 것과 배기관이 차량중심선에서 왼쪽에 위치하고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오른쪽으로 30도 이내인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7.1.17, 2005.8.10>

③배기관은 자동차 또는 적재물을 발화시키거나 자동차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전조등) ①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을 좌우에 각각 1개(4등식의 경우에는 2개를 1개로 본다)씩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가변형 전조등의 경우에는 전조등 안에 각각 1개의 보조 등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1995.12.30, 1997.1.17, 1999.6.28, 2001.4.28, 2008.1.14>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2. 1등당 광도(최대광도점의 광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행빔은 1만5천칸델라(4등식중 주행빔과 변환빔이 동시에 점등되는 형식은 1만2천칸델라)이상 11만2천5백칸델라 이하이고, 변환빔은 3천칸델라 이상 4만5천칸델라 이하일 것.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의 자동차의 경우 15미터 전방에 있는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광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행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방향 또는 진행하려는 방향과 같아야 하고, 전방 10미터 거리에서 주광축의 좌우측 진폭은 300밀리미터 이내, 상향진폭은 100밀리미터 이내, 하향 진폭은 등화설치높이의 10분의3 이내일 것. 다만, 좌측전조등의 경우 좌측방향의 진폭은 15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운행자동차의 하향진폭은 300밀리미터 이내로 하게 할 수 있으며, 조명가변형 전조등은 자동차가 앞으로 움직일 때에만 작동되어야 한다.
4.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공차상태에서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내가 되게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차

체의 가장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변환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방향 또는 진행하려는 방향과 같아야 하고, 주행빔의 주광축의 광도를 감광할 수 있거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의2. 전조등빔 또는 컷오프선(변환빔을 자동차길이방향의 앞면 25미터에 위치한 수직면에 비추었을 때에 나타나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경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꼭짓점이 회전하는 방식의 조명가변형 전조등은 자동차가 앞으로 움직일 때에만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점등시 주행빔 및 변환빔의 렌즈는 다음 각도에서 관측할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주행빔과 변환빔이 한개의 렌즈를 사용할 때에는 변환빔렌즈의 관측각도를 적용한다.

구분	관측각도			
	상측	하측	내측	외측
주행빔렌즈	5도	5도	5도	5도
변환빔렌즈	15도	10도	10도	45도

7.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합(자동차에 설치된 각각의 전조등에 대한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총합을 말한다)은 22만5천칸델라 이하일 것

8. 전조등빔 또는 컷오프선의 꼭짓점이 회전하는 방식의 조명가변형 전조등은 고장이 난 경우 자동으로 이를 표시하는 고장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방전식전구를 사용하는 전조등 또는 발광다이오드(LED) 전조등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1999.2.19, 2001.4.28, 2005.8.10, 2009.6.18>

1. 자동으로 전조등의 광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공기식 현가장치 등 전조등의 광축을 자동으로 하향으로 조절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조등 외에 자동차의 앞면에는 도로환경 및 자동차 속도 변화에 따라 전조등의 빔 모드(mode)가 자동으로 변환되는 적응형 전조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0.11.10>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2. 좌우에 각각 1개씩 설치할 것

3. 등화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등화의 발광면은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나. 등화의 발광면 간 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의 전폭이 1,3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등화의 발광면 간 거리는 4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 등화의 발광면은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4. 등화는 변환빔의 기능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갖출 것
 가. 시속 50킬로미터 이하이거나 노면의 밝기가 제곱미터당 1칸델라 이상 또는 도로 조명이 10룩스 이상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가지 모드
 나.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고속도로 모드
 다. 젖은 노면을 인지하거나 창닦이기 장치가 2분 이상 작동할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젖은도로 모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조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1.10.6>

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전환장치(도로 사정 및 기상 조건 등을 인식하여 주행빔과 변환빔이 자동적으로 변환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주위 밝기가 7천룩스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전환장치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구조일 것
 나. 수동으로 자동전환장치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자동전환장치가 작동 중임을 나타내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적외선투사장치(적외선을 투사하여 야간운행 시 운전자가 도로상의 장애물 및 보행자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전조등의 점등 또는 소등과 동시에 적외선투사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 또는 정지되는 구조일 것
 나. 전조등이 고장난 경우에는 적외선투사장치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구조일 것

제38조의2(안개등) ①자동차의 앞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1. 비추는 방향은 앞면 진행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2. 1등당 광도는 940칸델라 이상 1만칸델라 이하일 것
3.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4.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공차상태에서 발광면의 가장 아래쪽이 지상 2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발광면의 가장 위쪽이 변환빔 전조등 발광면의 가장 위쪽과 같거나 그 보다 낮게 설치할 것
5. 후미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전조등과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자동차의 뒷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2개 이하로 설치할 것
2.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ㆍ우가 대칭이 되게 설치할 것. 다만, 1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중심선이나 차량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3. 1등당 광도는 150칸델라 이상 300칸델라 이하일 것
4. 등광색은 적색일 것
5.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 이상 10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6. 1등당 유효조광면적은 140제곱센티미터 이하일 것
7. 등화의 발광면은 제동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8. 앞면안개등과 연동하여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앞면안개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9. 점등상태를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점등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10. 점등시 안개등의 렌즈를 상·하 5도, 좌·우 25도(안개등이 2개인 경우에는 자동차 외측의 수평각 25도를 말한다)의 각도에서 관측할 때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1997.1.17]

제38조의3(바닥조명등) 자동차의 외부에 바닥조명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

1.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점등될 것
2. 자동차가 주행하기 시작한 후 1분 이내에 소등될 것
3. 비추는 방향은 아래쪽으로 하고, 도로의 바닥을 비추도록 할 것
4. 최대광도는 30칸델라 이하일 것
5. 등광색은 백색일 것
6. 다른 운전자에게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08.1.14]

제38조의4(주간주행등) 주간운전 시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앞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주간주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8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14.6.10]

제39조(후퇴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2005.8.10>

1. 2개 이하로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는 지면에 수평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H선) 하부의 한 등당 광도가 300칸델라를 초과하는 경우 주광축은 하향으로 하고, 자동차뒤쪽 75미터이내의 지면을 비출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 자동차의 변속장치를 후퇴위치로 조작할 때에 점등되도록 할 것
5. 1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80칸델라 이상 600칸델라 이하이고, 아랫쪽에서는 80칸델라 이상 5천칸델라이하일 것

6. 지름 2.5센티미터의 관측표를 광원의 중심점과 일치하게 렌즈에 붙인후 자동차뒤쪽 90센티미터 및 자동차 가장바깥쪽의 좌우 90센티미터를 포함하는 범위와 높이 60센티미터 이상 180센티미터 이하의 범위의 어느 위치에서도 관측표의 전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40조(차폭등) ①자동차의 앞면의 양쪽 또는 양옆면의 앞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2011.10.6>

1. 1등당 광도는 등화중심선의 위쪽에서는 4칸델라이상 125칸델라 이하이고, 아랫쪽에서는 4칸델라 이상 250칸델라 이하일 것
2. 공차상태에서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등화의 중심점은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발광면의 가장바깥쪽이 차체바깥쪽으로부터 40센티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조등이 차체바깥쪽으로부터 65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등광색은 백색、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차폭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적외선투사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1.10.6>

1. 자동차가 전방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적외선투사장치가 작동되는 구조일 것
2. 전조등 및 차폭등의 점등 또는 소등과 동시에 적외선투사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 또는 정지되는 구조일 것
3. 전조등이 고장난 경우에는 적외선투사장치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구조일 것

제41조(번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番號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6>

1. 등록번호판 숫자위의 조도는 어느 부분에서도 8룩스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는 최소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의 20배이내일 것
2.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3. 전조등、후미등、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이고, 램프발광면의 가장바깥부분과 등록번호판의 가장 먼점(2개 이상의 램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각의 램프가 비추도록 설계된 등록번호판의 가장 먼점)이 이루는 각(입사각을 말한다)은 8도 이상일 것
4. 번호등의 바로 뒤쪽에서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제42조(후미등) 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1. 1등당 광도는 2칸델라 이상 25칸델라 이하일 것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3.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이 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설치할 것
4.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영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후부반사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기의 면적을 제외한다)이상일 것

제43조(제동등) ①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2008.1.14, 2008.12.8>

1. 제1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작동될 것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3. 1등당 광도는 40칸델라이상 420칸델라 이하일 것
4.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은 제동조작을 할 경우 그 광도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
5.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 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로 하고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6.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영면적이 1등당 12.5제곱센티미터(후부반사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기의 면적을 제외한다)이상일 것
7. 1등당 유효조광면적은 22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②승용자동차와 자동차의 너비가 200센티미터 미만이고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5.7.21>

1. 자동차의 수직중심선의 좌우수평각 45도에서 발광면이 보일 것
2. 등화의 중심점은 자동차의 뒷면 수직중심선상에 위치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동등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3. 뒷유리의 아래에 설치할 경우에는 등화렌즈의 어떤 부분도 뒷유리 아래로 7.5센티미터(컨버터블자동차의 경우에는 15센티미터)보다 낮게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차실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비추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반사빛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 1등당 광도는 25칸델라이상 160칸델라 이하일 것
6. 등화렌즈의 유효조광면적은 28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7.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③자동차의 너비가 200센티미터 미만이고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 수직 중심선상에 1개의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자동차의 뒷면 양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신설 1995.7.21>

1. 각각의 등화의 중심점은 동일한 높이이어야 하며, 뒷면 수직중심선상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동등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2. 등화렌즈의 유효조광면적은 각각 14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각각의 등화는 제2항제1호·제5호 및 제7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44조(방향지시등)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방향지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12.8, 2010.11.10>

1. 자동차의 앞·뒷면(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면을 제외한다) 양쪽 또는 옆면에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다만, 옆면에 보조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길이가 600센티미터 미만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200센티미터이내, 길이가 600센티미터 이상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자동차 길이의 60퍼센트이내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량중심선과 평행한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의 1등당 투영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3. 등화의 유효조광면적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앞면 : 1등당 22제곱센티미터 이상
 나. 뒷면 : 1등당 37.5제곱센티미터 이상
4. 차체너비의 50퍼센트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5. 매분 60회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하는 구조일 것
6.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할 것
7.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천50칸델라 이하일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른 보조방향지시등의 경우에는 0.6칸델라 이상 200칸델라 이하이어야 한다.
8. 긴급제동신호장치에 의한 경우 제15조제9항에 따라 작동 될 것

제44조의2(옆면표시등) ① 길이 6미터 이상인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등당 광도는 25칸델라 이하이어야 하며, 제106조제13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앞부분과 중간부분의 등광색은 호박색이어야 하며, 가장 뒷부분의 등광색은 호박색 또는 적색일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지상으로부터 250밀리미터 이상 1천50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설치할 것. 다만, 차체 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2천100밀리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4. 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3천밀리미터 이내, 자동차의 가장 뒷부분에서 1천밀리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할 것
5. 등화의 발광면간 거리는 3천밀리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길이 6미터 미만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옆면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옆면표시등은 방향지시등과 연동하여 점멸하는 구조를 갖추어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뒷부분의 등광색은 호박색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3]

제45조(비상점멸표시등) ①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2009.6.18>

1. 모든 비상점멸표시등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비상점멸표시등은 시동스위치의 조작에 관계없이 점등조작이 가능한 구조일 것

② 비상점멸표시등은 자동차가 주행 중 충돌한 경우 또는 제15조제9항에 따라 긴급제동신호가 소멸된 경우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등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신설 2009.6.18>

③ 제15조제9항에 따라 긴급제동신호가 작동 중일 때 비상점멸표시등을 수동으로 작동하는 경우 긴급제동신호는 정지되어야 한다..<신설 2009.6.18>

④ 그 밖의 비상점멸표시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4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6.18>

제45조의2(후방추돌경고등) 후행하는 자동차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방추돌경고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후방추돌경고신호의 발생과 동시에 후방추돌경고등이 작동될 것
2. 후방추돌경고등의 작동기준은 별표 6의20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14.6.10]

제46조(군용화 장치) ①최대 적재량 8톤 이상 9톤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물자동차에는 핀틀후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6.28, 2011.12.23,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핀틀후크의 규격 및 설치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5.7.21, 1999.6.28, 2008.3.14, 2013.3.23>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 ①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색등화, 버스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표시등 및 긴급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25, 2003.2.25>

②자동차의 뒷면에는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와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8.25>

③ 자동차에는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및 제58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8.12.8, 2010.11.10>

1. 삭제 <2011.12.23>
2. 상부끝단 표시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앞면의 경우 백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뒷면의 경우 적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3. 호박색 또는 적색의 옆면 중간부분 보조반사기를 설치하는 경우

4. 승합자동차에 행선지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
5.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뒷바퀴 조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백색의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6. 코너링 조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앞부분에 백색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방향지시기 또는 조향핸들과 연동하여 작동하는 구조일 것
7. 주차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앞면의 경우 백색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다만, 주차등이 보조방향지시등 또는 옆면표시등과 겸용인 경우에는 호박색으로 할 수 있다.
 나. 뒷면의 경우 적색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 할 것
8.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작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운행 중 조작이 불가능한 구조일 것
 나. 등광색은 백색일 것

제48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①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 이상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08.12.8>

③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전구는 별표 6의21의 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1997.8.25, 2008.12.8, 2009.6.18, 2014.6.10>

④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7.8.25, 1999.2.19, 1999.6.28, 2008.12.8>

1.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이상 120회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할 것
2. 적색표시등은 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 안쪽에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앞면표시등은 앞면창유리 위로 앞에서 가능한 한 높게 하고, 뒷면표시등의 렌즈하단부는 뒷면 옆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 하되, 좌·우의 높이가 같게 설치할 것
4.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5.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할 것
 나. 가목의 점멸 이후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적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다.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에는 다시 자동으로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라. 다목의 점멸 시 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지 아니할 것

6. 앞면과 뒷면에 설치하는 표시등은 별표 28의2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⑤ 자동차 등화장치 및 반사장치의 색도기준은 별표 6의22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4.6.10>

제49조(후부반사기 등) ①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옆면에는 보조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1995.12.30, 2001.4.28, 2006.4.14, 2009.6.18>

1. 반사부의 모양은 삼각형 모양 이외의 것일 것
2. 반사부의 면적은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 1,000제곱밀리미터 이상, 그 밖의 자동차의 경우 2,000제곱밀리미터 이상일 것
3. 반사기에 의한 반사광은 다음 각목의 색상일 것

가. 후부반사기 : 적색

나. 옆면 앞부분의 보조반사기 : 황색 또는 호박색

다. 옆면 뒷부분의 보조반사기 : 적색 또는 호박색

4. 반사기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5. 삭제 <2009.6.18>
6. 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29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차량총중량이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7.1.17, 1997.8.25, 1999.2.19, 2001.4.28, 2006.4.14>

1. 후부반사지 또는 후부반사판의 형상·반사성능 및 부착방법은 별표 29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삭제 <2009.6.18>
3. 반사부 및 형광부의 반사광은 다음 각 목의 색상일 것

가. 반사부 : 황색 또는 적색

나. 형광부 : 적색

4. 반사부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5. 삭제 <2006.4.14>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삼각형 모양의 후부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09.6.18>

1. 반사기의 반사성능 및 형상은 별표 29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반사기에 의한 반사광의 색상은 적색일 것
3. 반사기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의 높이가 되게 할 것

제50조(후사경 등) ①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우측 및 뒤쪽의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1999.2.19, 2008.1.14, 2010.11.10>

1.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단일배율의 실내후사경을 설치할 것
 가. 운전자가 최소 20도의 후방수평각의 시계와 자동차의 뒤쪽 61미터지점의 평탄한 노면을 확인할 수 있는 수직간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사경을 이용하여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지지부는 수평·수직의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거울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것일 것
2. 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실외후사경을 별표 5의6과 같이 설치할 것
 가. 반사면은 수평·수직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고[한쪽 방향만의 조절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視界)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은 제외한다], 지지부는 예리한 돌출물이나 모서리가 없어야 하며, 거울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구조일 것
 나. 다음 구분에 따른 후사경별 시계범위에 적합할 것
 1) 실외후사경의 후방 시계범위: 별표 5의7
 2) 광각 실외후사경(실외후사경보다 넓은 범위의 뒷면을 확인할 수 있는 실외후사경을 말한다)의 후방 시계범위: 별표 5의8
 3) 근접 실외후사경(조수석 하단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실외후사경을 말한다)의 후방 시계범위: 별표 5의9
 다. 측면 창유리 또는 앞면 창유리의 창닦이기에 의하여 세척되는 부분을 통하여 나목의 시계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다만, 10인승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우측에 설치하는 실외후사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실외후사경 및 광각 실외후사경의 아랫부분에는 4.5밀리미터 이상 6.5밀리미터 이하 글자크기로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
3. 삭제 <2010.11.10>
4. 삭제 <2010.11.10>
5. 삭제 <2010.11.10>
6. 삭제 <2010.11.1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원동기가 운전석으로부터 앞쪽에 위치해 있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차체 바로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997.8.25, 2008.3.14, 2010.11.10, 2014.2.21>

1. 차량총중량 8톤 이상의 자동차 또는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6인이상의 자동차
3.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③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우에 설치하는 광각 실외후사경은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승강구가 없는 차체 쪽의 경우는 승강구가 있는 차체의 지점과 대칭인 지점을 말한다)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하였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신설 2008.1.14, 2011.8.31, 2014.2.21>

④ 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의 실외후사경에 추가로 평균곡률반경이 200밀리미터 이상이고 반사면이 1만제곱밀리미터 이상인 광각 실외후사경 또는 영상장치를 설치하여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1.8.31>

제51조(창닦이기 장치등) ①자동차의 앞면창유리(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 앞면창유리는 제외한다)에는 시야확보를 위한 자동식창닦이기·세정액분사장치·서리제거장치 및 안개제거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뒷면 및 기타 창유리의 경우에도 창닦이기·세정액분사장치·서리제거장치 또는 안개제거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7.1.17, 2014.6.10>

②자동차의 앞면창유리에 설치하는 창닦이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7.1.17>

1. 작동주기의 종류는 2가지 이상일 것
2. 최저작동주기는 매분당 20회 이상이고, 다른 하나의 작동주기는 매분당 45회 이상일 것
3. 최고작동주기와 다른 하나의 작동주기의 차이는 매분당 15회 이상일 것
4. 작동을 정지시킨 경우 자동적으로 최초의 위치로 복귀되는 구조일 것

제52조 삭제 <2009.6.18>

제53조(경음기) 자동차의 경음기(싸이렌 및 종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2001.4.28, 2005.8.10, 2008.12.31, 2010.6.30>

1. 동일한 음색으로 연속하여 소리를 내는 것일 것
2. 경적음의 크기는 일정하여야 하며, 차체전방에서 2미터 떨어진 지상높이 1.2±0.05미터가 되는 지점에서 측정한 값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음의 최소크기는 90데시벨(C) 이상일 것
 나. 음의 최대크기는 「소음·진동관리법」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제53조의2(후방 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등)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는 자동차 후방 끝단 중심으로부터 좌우 1천밀리미터 및 후방 300밀리미터부터 2천밀리미터까지의 영역에 설치된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500밀리미터의 관측봉 전부가 보일 수 있는 영상장치 또는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거나 운전자에게 자동차 후방 보행자의 근접 여부를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대형 화물자동차
2. 대형 특수자동차
3. 밴형 화물자동차
4.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박스형 적재함이 있는 자동차
5.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본조신설 2014.2.21]

제5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① 자동차에는 제110조에 따른 속도계와 통산 운행거리를 표시할 수 있는 구조의 주행거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

②다음 각 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와 당해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995.12.30, 1997.1.17, 2003.2.25, 2005.8.10, 2010.3.29, 2012.2.15>

1. 승합자동차
2.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는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4. 저속전기자동차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신설 1995.7.21, 1995.12.30, 2003.2.25, 2005.8.10, 2010.3.29>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110킬로미터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90킬로미터
3. 제2항제4호에 따른 저속전기자동차: 매시 60킬로미터

④ 삭제 <2012.2.15>

제55조 삭제 <2001.4.28>

제56조(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범위와 운행기록장치의 장착기준은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2.21]

제57조(소화설비) 자동차에는 에이·비·씨 소화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차정원 11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

2006.4.14, 2006.10.26, 2008.1.14, 2008.12.31 >

1.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2.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나.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다. 승차정원 3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다만,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
 가. 중형: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나. 대형: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7 제3호나목중 이동탱크저장소란 및 비고란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와 수량

[전문개정 2003.2.25]

제58조(경광등 및 싸이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 및 싸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7.1.17, 2005.8.10, 2006.5.30, 2012.8.31, 2014.6.10 >

1. 경광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1등당 광도는 135칸델라이상 2천5백칸델라이하일 것
 나. 등광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구분	등광색
(가)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밖의 긴급한 경찰임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다)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라)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마) 소방용자동차	적색 또는 청색
(가) 전신·전화의 수리공사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중 긴급배달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나) 전기사업·가스사업 그밖의 공익사업 기관에서 위해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을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라)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마)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바) 기타자동차	황색
구급차·혈액 공급차량	녹색

2. 싸이렌음의 크기는 자동차의 전방 30미터의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 120데시벨이하일 것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난형특수자동차와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1995.7.21, 1997.1.17, 2005.8.10>

1. 경광등의 광도는 제1항제1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황색일 것

제2절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59조(길이·너비·높이) 이륜자동차는 측차를 제외한 공차상태에서 길이 2.5미터(대형의 경우에는 4미터), 너비 2미터, 높이 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2.25,

2014.12.31>

제60조(차량총중량) 이륜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일반형 및 특수형의 경우에는 600킬로그램, 기타형의 경우에는 1천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4.12.31>

제61조(중량분포) 이륜자동차의 조향바퀴에 작용하는 하중은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각각에 대하여 18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62조(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①이륜자동차의 접지부분은 소음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삼륜형 이륜자동차의 뒷차축에 설치하는 공기압고무타이어의 접지압력은 타이어접지부분의 너비 1센티미터당 150킬로그램(타이어 접지부분의 너비가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제63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이륜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1.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운전자의 좌석에서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2. 차량총중량 100킬로그램당 출력이 1마력(PS)이상일 것. 다만,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최대출력은 20마력(PS) 이하일 것

②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8.12.8>

1. 정지상태에서 최초 100미터 지점까지의 도달시간이 다음 계산식을 만족할 것

 $t \leq 10+4G$

 t : 정지상태에서 최초 100미터 지점까지의 도달시간(초)

 G : 차량총중량(톤)
2. 20퍼센트(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말한다) 경사로에서 정지상태에서 위 방향으로 주행시 소요시간이 다음 계산식을 만족할 것

 $t1 \geq t2 - t1$

 t1 : 원점에서 10m 표시점까지 소요시간(초)

 t2 : 원점에서 20m 표시점까지 소요시간(초)

③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구동축의 안쪽바퀴와 바깥쪽바퀴의 회전 차이를 만들어 안전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전달장치를 갖추어야 한다.<신설 2008.12.8>

제63조의2(원동기의 출력 오차 등) ①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및 구동전동기의 출력 오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1. 최고출력

 가. 원동기

1) 11킬로와트 이하인 원동기: 해당 최고출력의 ±10퍼센트

2) 1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원동기: 해당 최고출력의 ±5퍼센트

나. 구동전동기

최고출력으로 30분 동안 유지한 상태에서 해당 최고출력의 ±5퍼센트

2. 최고출력 외의 출력

가. 원동기: 해당 출력의 ±4퍼센트

나. 구동전동기: 해당 출력의 ±5퍼센트

②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및 구동전동기의 회전수 오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동기: 최고 회전수의 ±1.5퍼센트

2. 구동전동기: 최고 회전수의 ±2퍼센트

[본조신설 2012.2.15]

제64조(주행장치) ①이륜자동차의 공기압 고무타이어는 적차상태에서 타이어에 적용되는 하중이 당해 타이어의 제작자가 표시하는 최대허용하중(최대허용하중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타이어제작국가의 공업규격에서 정한 최대허용하중을 말한다)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1997.8.25>

② 이륜자동차 타이어는 타이어의 제작자가 도로주행용으로 적합하게 제작한 구조이어야 한다.<개정 2008.12.8>

③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주행 안정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8.12.8, 2010.11.10>

1. 최고속도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속도에서 가속제어장치 작용력을 제거한 상태로 자동차의 앞면 내측 모서리가 반경 12미터인 원에 접하여 선회할 때 안쪽바퀴가 시험노면에서부터 동시에 5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지 아니할 것

2. 20퍼센트(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말한다)의 경사로에서 정지상태에서 위 방향으로 급가속 시 앞바퀴가 동시에 시험노면에서부터 5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지 아니할 것

3. 최고속도에서 가속제어장치 작용력을 제거한 상태로 진입하여 별표 5의10의 경로를 따라 주행 시 안쪽바퀴가 시험노면에서부터 동시에 5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지 아니하고 경로이탈 없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을 것

제65조(조종장치) ① 이륜자동차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장치는 차량중심선에서부터 좌우 각각 60센티미터 이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시동장치, 가속제어장치, 변속장치 및 그 밖에 원동기의 조작장치

2. 제동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3. 등화점등장치, 경음기, 방향지시등의 조작장치

② 이륜자동차에 별표 5의11에서 정하고 있는 손조작식 조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하는 조종장치의 식별단어·약어 또는 식별부호(이하 "식별표시"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0>

③ 이륜자동차에 별표 5의12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하는 식별표시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장치의 자동표시기가 자동표시기 외의 표시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자동표시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1.10>

[전문개정 2008.12.8]

제66조(조향장치)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의 각 구성부품은 조작 시에 차대 및 차체 등 이륜자동차의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4.6.10>

제67조(제동장치) ① 이륜자동차(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제동장치와 제동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10, 2011.12.23, 2014.6.10>

1. 주제동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정상적으로 앉아서 조향장치를 양손으로 잡은 채로 조종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2. 보조제동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정상적으로 앉아서 조향장치를 적어도 한손으로 잡은 채로 조종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3. 주차제동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조종장치가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와 분리되어야 하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정상적으로 앉아서 조종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잠김상태가 유지되는 구조로서 18퍼센트(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말한다) 경사로에서 적차상태의 이륜자동차를 정지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4. 이륜형 이륜자동차 및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주제동장치를 갖추거나 앞바퀴의 1개 이상 브레이크와 뒷바퀴의 1개 이상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분할제동장치를 갖춘 구조일 것.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가 별표 5의13의 제동능력 기준에 적합한 경우 측차의 브레이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제동장치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제동장치를 갖춘 구조일 것
 가. 배기량이 50cc 이하이며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앞바퀴와 뒷바퀴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주제동장치 또는 분할제동장치 또는 연동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
 나. 배기량이 50cc 초과이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초과인 경우: 발조작식 분할제동장치 또는 발조작식 연동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 다만, 장애인용의 경우에는 발조작식 외에 다른 형태의 조작방식에 따른 주제동장치를 갖출 수 있다.
6. 제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유압유체를 사용하는 마스터실린더를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액 저장장치를 갖출 것

가. 덮개를 갖추고 밀봉하여 제동액을 외부와 격리시키는 구조일 것
나. 브레이크 라이닝 간극을 최대로 한 상태에서 새 라이닝이 완전히 마모될 때까지의 유체 소요량의 1.5배에 상당하는 저장장치 용량을 갖출 것
다. 덮개를 열지 아니하여도 유량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7. 모든 경고장치의 경고등은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구조일 것
8. 분할제동장치를 갖춘 이륜자동차에는 적색경고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로 조작할 때 켜졌다가 고장이 없으면 꺼지고, 고장이 있으면 켜진 상태가 지속되는 구조일 것
9.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이륜자동차에는 황색경고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로 조작할 때 켜졌다가 고장이 없으면 꺼지고, 고장이 있으면 켜진 상태가 지속되는 구조일 것
10. 브레이크는 자동적이거나 수동적인 장치에 의하여 라이닝 마모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11. 브레이크를 분해하지 아니하고 눈으로 라이닝의 마모상태를 확인할 수 있거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장치에 의하여 라이닝의 마모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12. 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5의13의 제동능력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0>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별표 5의13의 제동능력 기준 중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08.12.8]

제68조(완충장치) 제16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의 완충장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9조(연료장치 및 전기장치) ①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는 운행중 진동등에 의하여 연료가 새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료장치 및 그 구성부품은 별표 5의1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이륜자동차의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씌워야 한다.

제70조(차체) ① 이륜자동차의 차체(타이어를 포함한다) 외형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차체의 외부로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해당 금지 외형의 세부적 기준 및 유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23, 2013.3.23>

② 이륜자동차에는 사람 또는 화물 등을 운송하기 위한 견인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8]

제71조(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등) ①이륜자동차의 승차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1.12.23>

1. 운전자의 좌석과 기타의 좌석에는 승차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2. 운전자 좌석 외의 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 승차인의 이탈방지에 필요한 손잡이, 발걸이 또는 그 밖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손잡이는 별표 5의16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이륜자동차의 적재함 또는 그 밖의 물품적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9>

1.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운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 뒷면에 최대적재량을 표시할 것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물품적재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③ 삭제 <2010.3.29>

제72조(방풍장치) 이륜자동차에 방풍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행중 진동·충격등에 의하여 이탈되지 아니할 것
2.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제73조(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의 허용기준)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4조(배기관) 이륜자동차의 배기관은 적재물등을 발화시키거나 이륜자동차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제75조(전조등) ① 이륜자동차(측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는 2개 이하의 전조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의2에 따른 주간주행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는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조등의 주행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등당 광도는 2만칸델라 이상 15만칸델라 이하이어야 하며, 별표 5의17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천300밀리미터 이하일 것
4.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합(이륜자동차에 설치된 각각의 전조등에 대한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총합을 말한다)은 22만5천칸델라 이하일 것
5. 2개의 주행빔을 설치하는 경우 주행빔간 설치거리는 200밀리미터 이내일 것

③ 제1항에 따른 전조등의 변환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등당 광도는 4만5천칸델라 이하이어야 하며, 별표 5의17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천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전문개정 2012.2.15]

제75조의2(주간주행등)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주간주행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2. 원동기의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어야 하며, 원동기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등될 것
3. 주간주행등의 광도는 별표 6의8 제2호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10.11.10]

제75조의3(안개등) ① 이륜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앞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별표 20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전조등보다 낮은 높이에 설치할 것
4. 전조등과 독립적으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 2개 이하일 것

② 이륜자동차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뒷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별표 20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천밀리미터 이하일 것
4. 제동등과의 거리는 100밀리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5. 2개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2.2.15]

제76조(번호등)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1. 등록번호판 위의 각 측정점별 밝기는 1제곱미터당 2칸델라 이상일 것
2. 등광색은 백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번호등은 전조등 또는 후미등과 동시에 점등 또는 소등되는 구조일 것
4. 등화의 입사각(발광면의 가장 바깥 부분과 등록번호표의 가장 먼 점이 이루는 각도를 말한다)은 8도 이상일 것
5. 번호등의 바로 뒤쪽에서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제77조(후미등)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 또는 양쪽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 5의19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천5백밀리미터 이하일 것
4. 2개 이하일 것

[전문개정 2012.2.15]

제77조의2(차폭등) 이륜자동차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별표 5의20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천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4. 2개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2.2.15]

제78조(제동등)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 또는 양쪽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 5의21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의 경우에는 제동조작을 할 때에 그 광도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
3. 등광색은 적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4.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천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5. 2개 이하일 것

[전문개정 2012.2.15]

제79조(방향지시등) 이륜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1. 별표 5의22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천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4. 앞면 및 뒷면의 양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할 것
5. 등화의 간격은 앞면 등화는 240밀리미터 이상, 뒷면 등화는 180밀리미터(측차를 붙인 삼륜형·사륜형의 경우에는 차체 너비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6.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하는 구조일 것
7. 뒷면방향지시등은 후방 끝단에서 안쪽으로 300밀리미터 이내일 것

제79조의2(비상점멸표시등) ①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는 제45조제1항 및 제79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륜형 및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는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9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18]

제80조(후부반사기 및 보조반사기) ①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 또는 양쪽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1. 반사광은 적색이어야 하며, 반사성능은 별표 5의23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반사기의 반사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하일 것
3. 2개 이하일 것
② 이륜자동차의 옆면의 앞부분 또는 뒷부분에는 다음 각 호 기준에 적합한 보조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후부반사기의 설치 기준에 적합할 것
2. 옆면 앞부분의 보조반사기의 반사광은 호박색, 옆면 뒷부분의 보조반사기의 반사광은 호박색 또는 적색일 것
[전문개정 2012.2.15]

제80조의2(후퇴등)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제39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8]

제81조(기타의 등화) ①이륜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이륜자동차의 각종 표시장치에는 야간 운행시 운전자가 계기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ㆍ도형 또는 지시침등에 발광도료등을 사용하여 조명장치를 대신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①이륜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 이상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5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의 등화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7.21, 2008.3.14, 2013.3.23>

③ 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전구는 별표 5의14의 이륜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9.6.18, 2010.11.10>

제83조(경음기) 제53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의 경음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4조(후사경) 이륜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우측의 뒤쪽 50미터 사이에 있는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5조(속도계) ① 이륜자동차에는 속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속도계의 속도표시부는 제110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이륜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0 \leq V_1 - V_2 \leq V_2/10 + 8$ (킬로미터/시간)

V_1 : 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

V_2 : 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

③ 사륜형 이륜자동차(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제4항에서 정한 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최고속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8]

제3장 제작자동차등의 안전기준 <개정 1997.1.17>

제85조의2(적용범위) 이 장은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7.1.17]

제86조 삭제 <2003.2.25>

제87조(가속제어장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의 가속제어장치는 자동차를 섭씨 영하 18도부터 섭씨 영상 52도까지의 주변온도에서 12시간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속페달에서 작용력을 제거하거나 1개의 복귀동력원을 절단하여 작용력을 제거할 경우: 운전자가 작용력을 제거한 시점부터 1초 이내에 가속위치에서 공회전 상태로 복귀할 것
2. 제어계통이 전기식인 가속제어장치로서 제어계통의 어느 한 부분이 절단되거나 단락될 경우: 운전자가 작용력을 제거한 시점 또는 절단이나 단락 발생 시점으로부터 1초 이내에 가속위치에서 공회전 상태로 복귀할 것

[전문개정 2014.6.10]

제88조(계기판넬)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화물자동차 및 경형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머리충격부위안의 계기판넬중 다음 각호의 부분을 제외한 계기판넬은 지름 165밀리미터, 무게 6.8킬로그램의 머리모형을 매시 24.2킬로미터(승객측 계기판넬에 에어백을 장착한 경우에는 매시 19.2킬로미터)의 속도로 계기판넬에 충돌시킬 경우 머리모형이 받는 감속도가 1천분의 3초이상 연속적으로 중력가속도의 8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격실문이 설치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내부격실문이 열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1995.12.30>

1. 라디오·변속레버·재털이등을 설치한 콘솔부분
2. 차체옆면에서 차실안쪽으로 127밀리미터지점까지의 부분
3. 머리모형이 앞면창유리와 계기판넬에 동시에 접할 경우 계기판넬의 접점부분에서 앞면창유리까지의 부분
4. 머리모형이 조향핸들의 승객측 가장자리에 접하는 수직종단면과 계기판넬에 동시에 접할 경우 계기판넬의 접점부분에서 운전자측 차체옆면까지의 부분
5. 계기판넬 가장뒤끝의 아래부분

제88조의2(타이어) 승용자동차가 시속 97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선 주행하는 상태에서 그 자동차의 타이어를 파열시켜 급속하게 공기를 빠지게 하고, 동시에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바퀴의 잠김없이 일정한 감속도로 정지시킬 경우 정지할 때까지 파열된 타이어가 타이어림에서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2.25]

제88조의3(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성능·경고표시 및 표기기준 등은 별표 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16]

제89조(조향장치) ①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조향장치의 충격흡수능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2003.2.25>

1. 조향핸들에 몸체모형을 매시 24.2킬로미터의 속도로 충돌시킬 경우 몸체모형에 의하여 조향장치에 전달되는 충격하중이 1천분의 3초 이상 연속적으로 1천13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다만, 조향축의 수평면에 대한 설치각도가 35도를 초과하는 조향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전방조종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매시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경우 조향기둥과 조향핸들축 위끝의 후방변위량이 자동차길이 방향으로 127밀리미터 이하일 것

② 자동차의 조향장치에 대한 구조 및 성능, 고장 시 기준 및 경고장치 기준 등은 별표 6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0>

제90조(제동장치) 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는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4.14>

1. 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3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4의 기준에 적합할 것
5.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5의 기준에 적합할 것
6.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연결자동차의 선회시 제동능력은 별표 7의6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풀트레일러 형식의 연결자동차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3.2.25]

제90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능고장 식별표시 기준 등은 별표 7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10]

제91조(연료장치) ①인화성액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별표 10의 연료장치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7.8.25, 2001.4.28>

1. 삭제 <2001.4.28>
2. 삭제 <2001.4.28>

②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는 별표 11의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01.4.28>

③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는 별표 11의2의 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1997.8.25>

④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4.5톤 이하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는 별표 11의3의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

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는 별표 11의5의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4.6.10>

⑥ 내압용기를 사용하는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내압용기 고정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하중을 가할 때 파손되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신설 2014.6.10>

1. 차량총중량 4.5톤 초과 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중량 4.5톤 초과 12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가. 자동차 길이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10.0배
 나. 자동차 수평횡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5.0배
2. 차량총중량 5톤 초과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자동차
 가. 자동차 길이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6.6배
 나. 자동차 수평횡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5.0배

[전문개정 1995.7.21]

제92조(천정구조) 승용자동차(별표 14의 동적전복시험기준에 적합한 자동차 및 컨버터블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천정은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75센티미터 및 180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120초 이내의 시간에 매초 12.7밀리미터 이하의 속도로 하중값이 차량중량의 1.5배 또는 2천270킬로그램중 작은 값에 도달할 때까지 하중을 가할 때에 천정의 변위량이 127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1995.7.21>

제93조(범퍼) 승용자동차에는 별표 11의4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범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6]

제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 ①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는 별표 12의 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와 제50조에 따른 운전자의 후방시계범위를 확보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08.1.14>

②자동차의 앞면창유리[승용자동차(컨버터블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뒷면창유리 또는 창을 포함함다] 및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운전자의 시계범위외의 차광을 위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9.2.19>

[전문개정 1995.7.21]

제95조(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 자동차의 차실안에 설치되어 있는 다음 각호의 내장재는 매분당 102밀리미터 이상의 속도로 연소가 진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5>

1. 좌석·좌석등받이 및 안전띠
2. 팔걸이·머리지지대 및 햇빛가리개
3. 차실천정·차실바닥 및 깔판
4. 내부판넬

제96조(후부안전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부안전판은 별표 13의 후부안전판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4.28]

제97조(운전자 및 승객좌석의 설치) ①자동차의 좌석(옆면을 향한 좌석, 접이식보조좌석 및 승합자동차의 승객용 좌석을 제외한다)은 조절이 가능한 어느 위치에 있을 경우에도 제1호 또는 제2호의 힘을 가할 때와 좌석을 가장 뒤쪽에 위치시키고 제3호의 힘을 가할 때에 이에 견디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힘을 가하기 이전의 위치에서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1995.7.21>

1. 안전띠가 좌석에 부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좌석무게의 20배에 해당하는 앞과 뒤로 가하여지는 자동차길이방향의 힘
2. 안전띠가 좌석에 부착된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힘과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띠에 가하여지는 힘을 합산한 힘
3. 전방을 향한 좌석의 경우에는 착석기준점에 대한 38킬로그램·미터의 후방모멘트, 후방을 향한 좌석의 경우에는 착석기준점에 대한 38킬로그램·미터의 전방모멘트

②경첩식좌석과 접이식좌석(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좌석과 승합자동차의 승객용 좌석을 제외한다)에는 좌석과 좌석등받이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와 잠금상태를 풀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금장치는 다음 각호의 힘을 잠금장치에 가할 때에 풀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앞쪽을 향한 좌석에 있어서는 좌석이 젖혀지거나 접히는 부분의 중량의 20배에 상당하는 앞으로 가하여지는 자동차길이방향의 힘
2. 뒷쪽을 향한 좌석에 있어서는 좌석이 젖혀지거나 접히는 부분의 중량의 8배에 상당하는 뒤로 가하여지는 자동차길이방향의 힘
3. 좌석이 젖혀지거나 접히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가하여지는 중력가속도의 20배에 상당하는 자동차길이방향의 관성하중

제98조(좌석등받이)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머리충격부위안의 좌석 등받이는 지름 165밀리미터, 무게 6.8킬로그램의 머리모형을 매시 24.2킬로미터의 속도로 좌석등받이(머리지지대가 설치된 좌석의 경우에는 머리지지대)에 충돌시킬 때에 머리모형이 받는 감속도가 1천분의 3초 이상 연속적으로 중력가속도의 8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 격실문이 설치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내부 격실문이 열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서 정한 좌석등받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7.21, 2008.3.14, 2013.3.23>

1. 가장뒷열에 있는 좌석등받이
2. 측면을 향한 좌석등받이
3. 서로 마주붙은 좌석등받이
4. 접이식보조좌석의 좌석등받이

5.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좌석등받이

제99조(머리지지대)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 및 그 밖의 좌석(머리지지대를 설치한 좌석만 해당한다)의 머리지지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접이식 보조좌석, 옆보기 좌석 및 뒤보기 좌석의 머리지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3.29]

제100조(팔걸이)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설치하는 팔걸이는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흡수재로 제작되는 접이식팔걸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에너지흡수재로 제작되고 옆방향으로 하중을 가할 때에 하중을 가하는 물체와 팔걸이 내부의 단단한 부분이 접촉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50밀리미터이상 옆방향으로 비틀리거나 찌그러지는 구조일 것
2. 골반충격부위안에서 수직방향으로 높이가 50밀리미터이상인 부분이 연속하여 50밀리미터이상일 것

제101조(햇빛가리개)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의 좌석과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햇빛가리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에너지흡수재로 제작되거나 감싸여져 있을 것
2. 지름 165밀리미터의 머리모형과 정적으로 접할 수 있는 머리충격부위안의 단단한 재질로 된 모서리의 반경은 3.2밀리미터이상일 것

제102조(충돌시의 승객보호) ①승용자동차는 별표 14의 충돌시 인체모형의 상해기준과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시 인체모형의 상해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별표 14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9>

②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는 별표 14의3의 충돌시 차체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경우는 별표 14의4의 승합자동차의 차체강도기준의 시험조건중 하나로 시험하였을 경우 차체강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3.2.25, 2014.6.10>

③앞좌석 승객석에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의 바깥면에 별표 14의5의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4.28]

제102조의2(보행자 보호)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앞바퀴 중심축에서 운전자 좌석의 착석기준점까지의 거리가 1천1백밀리미터 이하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1.10.6>

1. 보행자머리모형을 자동차길이방향의 수평선으로부터 아래방향(성인머리모형의 경우 65도, 어린이머리모형의 경우 50도의 각도를 말한다)으로 시속 35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머리모형충격부위에 충돌시킬 때 별표 14의6의 보행자머리모형 상해기준에 적합할 것
2. 보행자다리모형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시킬 때 별표 14의6의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에 적합할 것
 가. 범퍼하부기준선높이가 지면에서 425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보행자하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
 나. 범퍼하부기준선높이가 지면에서 425밀리미터 이상 50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보행자하부다리모형 또는 보행자상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
 다. 범퍼하부기준선높이가 지면에서 5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보행자상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

[본조신설 2008.12.8]

[시행일:2018.1.1]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제103조(좌석안전띠장치 등) ① 자동차에 설치하는 안전띠는 별표 15의 좌석안전띠의 조절기준 및 별표 16의 좌석안전띠의 정적강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

② 삭제 <2014.6.10>

③자동차의 안전띠부착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995.12.30, 1997.8.25, 2005.8.10>

1. 2점식 또는 어깨부분과 골반부분이 분리되는 3점식 안전띠의 골반부분부착장치는 2천270킬로그램의 하중에 10초이상 견딜 것. 다만, 경형자동차에 설치된 경우에는 1천820킬로그램, 승합자동차의 제1열좌석(운전자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 설치된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130킬로그램)의 하중에 0.2초이상 견디어야 한다.
2. 3점식 안전띠의 어깨부분 및 골반부분에 동시에 1천360킬로그램의 하중을 가할 때에 10초이상 견딜 것. 다만, 경형자동차에 설치된 경우에는 1천100킬로그램, 승합자동차의 제1열좌석(운전자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 설치된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690킬로그램)의 하중에 0.2초이상 견디어야 한다.
3. 2점식 또는 3점식 안전띠의 골반부분부착장치는 착석기준점과 골반부분부착장치의 설치지점을 동시에 지나고 차량중심면(차량중심면을 포함하며 지면에 수직인 평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직인 평면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가 30도이상 75도이하이어야 하고, 부착장치의 설치지점을 지나고 차량중심면에 평행한 두 평면사이의 거리가 165밀리미터이상일 것
4. 3점식 안전띠의 어깨부분부착장치는 별표 17에 표시된 범위안에 설치할 것

④ 삭제 <2008.1.14>

제103조의2(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승용자동차에 설치하는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27조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상부부착구는 자동차길이방향으로 816킬로그램의 하중을 0.2초 이상 가할 때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변위량은 12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하부부착구는 자동차길이방향으로 816킬로그램 및 자동차길이방향의 75도 방향으로 510킬로그램의 하중을 각각 0.2초 이상 가할 때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변위량은 12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4]

제104조(승강구) ①승용자동차의 옆문은 지름 305밀리미터의 강철제 원형 또는 반원형기둥의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매초 12.7밀리미터이하의 속도로 하중을 가할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1995.7.21, 2001.4.28>

1. 승강구의 옆좌석을 떼어내고 시험할 경우
 가. 155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0.83배 또는 1천20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일 것
 나. 310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1.3배 또는 1천580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일 것
 다. 460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최대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2배 또는 3천160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일 것
2. 승강구의 옆좌석을 떼어내지 아니하고 시험할 경우
 가. 155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0.83배 또는 1천20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일 것
 나. 310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1.63배 또는 1천980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일 것
 다. 460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최대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3.5배 또는 5천645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일 것

②중형 및 대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옆문 승강구와 탑승자의 승하차가 가능하거나 수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뒷문 승강구(이하 "뒷문"이라 한다)의 문걸쇠장치 및 문경첩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휠체어승강기가 설치된 승강구, 접이식승강구, 말려올라가는 구조의 승강구, 탈착식 승강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21, 1995.12.30, 2006.4.14>

1. 여닫이식 승강구의 경우
 가.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와 중간닫힘위치로 구분되는 구조일 것
 나.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1천130킬로그램의 하중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905킬로그램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이어야 하고, 뒷문은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

는 방향에 모두 수직인 방향으로 905킬로그램의 하중에도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경형자동차의 경우에는 문걸쇠장치에 수직인 방향으로 910킬로그램의 하중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730킬로그램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이어야 하고, 뒷문은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에 모두 수직인 방향으로 730킬로그램의 하중에도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자동차길이방향과 자동차너비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고, 뒷문은 자동차수직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도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문걸쇠장치는 중간닫힘위치에서 450킬로그램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일 것. 다만, 경형자동차의 경우에는 360킬로그램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각각 견디어야 한다.

마. 문경첩장치는 1천130킬로그램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905킬로그램의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이고, 뒷문은 905킬로그램의 자동차수직방향의 하중에도 견디는 구조일 것. 다만, 경형자동차의 경우에는 910킬로그램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730킬로그램의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이고, 뒷문은 730킬로그램의 자동차수직방향의 하중에도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2. 미닫이식 승강구(경형자동차의 승강구를 제외한다)의 경우

가.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와 중간닫힘위치로 구분되는 구조일 것

나.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1천130킬로그램의 하중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905킬로그램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일 것

다.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자동차길이방향과 자동차너비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문걸쇠장치는 중간닫힘위치에서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각각 450킬로그램의 하중에 견디는 구조일 것

마. 문이 닫힌 상태에서 문의 양쪽 끝에 있는 승강구의 지지부분에 자동차너비방향으로 각각 905킬로그램의 하중을 동시에 가할 때 승강구의 지지부분과 문 사이의 간격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각각의 하중부과장치의 너비방향 최종변위가 300밀리미터 이하일 것

제105조(창유리의 안전성 등) ① 제34조제1항의 창유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적 강성 등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0.3.29, 2013.3.23>

②승용자동차의 앞면창유리는 자동차를 매시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때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0.3.29>

1. 에어백 또는 자동안전띠등과 같은 승객자동보호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는 창유리가 붙어 있는 창유리지지틀의 길이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각각 창유리지지틀 둘레의 50퍼센트이상일 것

2. 승객자동보호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창유리가 붙어 있는 창유리지지틀의 길이가 전체 창유리지지틀 둘레의 75퍼센트이상일 것
3. 창유리지지틀 및 창유리와 접하여 설치된 장치를 제외한 차실밖에 있는 부품이 별표 18의 앞면창유리보호구역에 설치된 보호형판의 내부로 6.3밀리미터를 초과하여 들어오지 아니하여야 하고, 보호구역 아래의 창유리부분을 관통하여 차실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③다음 각호의 자동차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7.21, 1995.12.30, 2010.3.29>

1. 앞면창유리를 뗄 수 있거나 접을 수 있도록 제작된 무개자동차
2. 전방조종자동차
3. 경형자동차

[제목개정 2010.3.29]

제106조(등화장치)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등화장치의 광도 및 조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7, 1997.8.25, 1999.2.19, 1999.6.28, 2008.1.14, 2008.12.8, 2010.11.10, 2011.12.23, 2012.2.15>

1. 전조등은 그 형식, 전구형식, 조준방식 및 등화식에 따라 별표 19 및 별표 19의2부터 별표 19의6까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조명가변형 전조등은 별표 19 및 별표 19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38조제3항에 따른 적응형 전조등은 별표 19의9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안개등은 별표 20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후퇴등은 별표 21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차폭등은 별표 22의 기준에 적합할 것
5. 번호등은 별표 23의 기준에 적합할 것
6. 후미등은 별표 24의 기준에 적합할 것
7. 제동등은 별표 25의 기준에 적합할 것
8. 보조제동등은 별표 26의 기준에 적합할 것
9. 방향지시등은 별표 27의 기준에 적합할 것
10. 측면보조방향지시등은 별표 28의 기준에 적합할 것
11.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표시등은 별표 28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12. 제38조의4 및 제75조의2에 따른 주간주행등은 별표 28의3의 기준에 적합할 것
13. 옆면표시등은 별표 28의4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107조(후부반사기 등) 자동차의 뒷면 및 옆면에 설치하는 반사기·반사판 및 반사지의 반사성능 및 형상 등은 별표 29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8>

[전문개정 2006.4.14]

제108조(후사경)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의 머리충격부위안에 설치된 실내후사경의 지지부는 40킬로그램의 하중을 자동차의 길이방향과 45도 이내의 각을 이루도록 거울면에 가할

때에 휘어지거나 예리한 돌출부가 없이 분리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08.1.14>

제109조(창닦이기장치등)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창닦이기·서리제거장치·안개제거장치 및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

1. 창닦이기는 제51조제2항 및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8퍼센트이상을, 동 "나"부분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을 각각 세척할 수 있을 것
 나. 섭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4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2분이상 정상작동을 할 수 있을 것
 다. 최고속도의 80퍼센트 또는 매시 120킬로미터의 속도에 해당하는 상대공기속도를 가하였을 때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8퍼센트이상을 세척할 수 있을 것
2. 서리제거장치는 섭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10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작동시켰을 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작동후 20분이내에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의 서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
 나. 작동후 25분이내에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과 자동차길이방향으로 대칭되는 앞면창유리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의 서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
 다. 작동후 40분이내에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나"부분 면적의 95퍼센트이상의 서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
3. 안개제거장치는 섭씨 영하 3도의 주변온도에서 10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작동시켰을 때 10분이내에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0퍼센트이상, 동 "나"부분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의 안개를 제거할 수 있을 것
4.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창닦이기를 최대속도로 10회 작동시키는 동안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의 60퍼센트이상의 면적을 세척하는데 필요한 양의 세정액을 분사할 수 있을 것
 나. 섭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4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정상작동을 할 수 있을 것
 다. 섭씨 영상 60도의 주변온도에서 8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정상작동을 할 수 있을 것

[전문개정 1997.1.17]

제110조(속도계) ①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속도표시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1. 속도표시부는 운전자의 직접시계의 범위내에 위치하고, 주·야간에 속도값을 명확히 읽을 수 있을 것
2. 속도표시범위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포함되도록 할 것
3. 눈금은 시속 1킬로미터·2킬로미터·5킬로미터 또는 10킬로미터 단위로 구분되고, 다음 각목의 값들이 숫자로 표시될 것. 다만, 속도표시값의 간격은 균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가. 속도표시부의 최고속도값이 시속 20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시속 20킬로미터 이하 간격의 속도값

나. 속도표시부의 최고속도값이 시속 2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시속 30킬로미터 이하 간격의 속도값

②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O \leq V_1 - V_2 \leq V_2/10 + 6$(킬로미터/시간)

V_1 : 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

V_2 : 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

[전문개정 2003.2.25]

제110조의2(최고속도제한장치)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는 별표 30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2.25]

제111조(원동기출력) 자동차의 원동기(내연기관, 구동전동기, 연료전지를 포함한다) 출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내연기관 출력 및 해당 회전수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양산자동차의 경우에는 각각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최고출력의 경우: ±2퍼센트
 나. 그 밖의 부분출력의 경우: ±4퍼센트
 다. 회전수의 경우: ±1.5퍼센트
2. 자동차의 구동전동기 출력 및 해당 회전수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양산자동차의 경우에는 각각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최고출력의 경우: ±5퍼센트
 나. 그 밖의 부분출력(최고 30분 출력은 제외한다)의 경우: ±5퍼센트
 다. 회전수의 경우: ±2퍼센트
 라. 최고 30분 출력의 경우: ±5퍼센트
3. 자동차용 연료전지의 최고출력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14.6.10]

제111조의2(전자파 적합성) 자동차는 별표 30의3의 전자파 적합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

제111조의3(내부격실문)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화물자동차 및 경형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의 계기판넬·좌석등받이 및 설계착석위치와 인접한 측면판넬 등에 설치된 내부격실문은 내부격실문의 잠금장치를 잠그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각호중 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부격실문의 걸쇠장치에 자동차의 수직방향과 수평횡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1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 열리지 아니할 것
2. 매시 48.3킬로미터(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때 열리지 아니할 것
3. 내부격실문의 걸쇠장치에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 열리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1997.1.17]

제111조의4(연료소비율) ①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은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시가지주행 연료소비율: -5퍼센트 이내
2. 고속도로주행 연료소비율: -5퍼센트 이내
3. 정속주행 연료소비율: -5퍼센트 이내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한 연료소비율 시험대상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시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6.4.14, 2010.11.10, 2013.3.23, 2014.12.31>

1. 시가지주행 연료소비율 및 고속도로주행 연료소비율: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특수형은 제외한다), 경형화물자동차 및 소형화물자동차
2. 정속주행 연료소비율: 제1호에 따른 시험대상자동차 외의 자동차

[전문개정 2003.2.25]

제112조(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기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의 기준에 대하여는 제2장 및 이 장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3.2.25]

제3장의2 부품의 안전기준 <신설 2011.12.23>

제112조의2(브레이크호스) 자동차에 사용되는 브레이크호스는 별표 30의4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기압브레이크호스를 제외한 다른 브레이크호스는 분해되지 아니하는 일체형 구조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3]

제112조의3(좌석안전띠장치) 자동차에 사용되는 좌석안전띠는 별표 1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3]

제112조의4(등화장치)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조등은 별표 19, 별표 19의2부터 별표 19의6까지 및 별표 19의9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3]

제112조의5(후부반사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후부반사기(보조반사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후부반사기의 반사부 모양은 삼각형 모양 외의 것일 것. 다만, 피견인자동차에 사용되는 후부반사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후부반사기에 의한 반사광은 적색이어야 할 것. 다만, 보조반사기의 경우에는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할 수 있다.
3.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29 제1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11.12.23]

제112조의6(후부안전판) 자동차에 사용되는 후부안전판은 별표 1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3]

제4장 보칙

제113조(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①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은 제2장제1절 및 제3장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개정 1995.7.21, 2008.3.14, 2010.3.29>

② 이륜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은 제2장제2절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개정 2008.12.8, 2010.3.29>

1. 승차정원
 가. 이륜·삼륜형: 2명 이하
 나. 사륜형: 1명
2. 최대적재량
 가. 이륜형: 60킬로그램 이하
 나. 삼륜형: 100킬로그램 이하

제114조(기준적용의 특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보도용자동차, 분리하여 운반할 수 없는 규격화된 물품을 운송하는 자동차,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 2층대형승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그 밖의 특수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길이·너비·최대안전경사각도 및 최소회전반경등에 관하여 별표 31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7.8.25, 2006.10.26, 2008.1.14, 2008.3.14, 2008.11.6, 2013.3.23>

②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2조의2,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제1항, 제27조제4항, 제54조제1항, 제87조 내지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제96조 내지 제99조, 제101조 내지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5조, 제108조부터 110조까지, 제110조의2, 제111조,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노면청소작업차에 대하여는 제16조 및 제22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7.8.25, 2003.2.25, 2011.10.6, 2011.12.23, 2014.6.10>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안보·치안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작하거나 공항 또는 공장시설·광산·건설공사현장등 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등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자동차의 제작목적·용도 및 기능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행에 필요한 조건을 부칠 수 있다.<개정 1995.7.21, 2008.3.14, 2013.3.23>

④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에는 당해자동차의 차체뒷면 오른쪽아랫부분에 외부에서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2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2항 및 제9항에 따라 특례를 인정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도 「도로법」·「도로교통법」등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7.21, 2005.8.10, 2008.1.14>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 또는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12.8, 2013.3.23>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의 자동차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기준중 이 규칙에서 정한 안전기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국가별 기준을 고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시된 외국의 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이 규칙의 안전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3.2.25, 2008.3.14, 2011.10.6, 2013.3.23>

⑧도로의 보수·제설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차에 부착하는 충격완화장치 또는 모래살포장치 등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6.4.14>

⑨ 모듈트레일러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5조 및 제9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2.8>

⑩ 총중량 100톤 이상의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35조,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 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10.6, 2013.3.23>

⑪ 제1항,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길이 및 너비에 대한 기준적용의 특례를 적용받는 자동차(굴절버스, 보도용 자동차, 환경측정용 자동차, 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자동차의 좌우 측면과 뒷면에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별표 3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사띠를 부착하고, 해당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8.1.14, 2008.12.8, 2011.10.6>

⑫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2조의2·제15조의2·제87조·제88조·제88조의2·제88조의3·제89조제1항·제90조의2·제92조·제93조·제94조제2항·제95조부터 제

101조까지、제102조의2、제103조의2、제104조、제105조、제108조、제110조의2、제111조의3、제111조의4 및 별표 7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8조제3항、제51조、제109조제1호、제2호、제4호 및 별표 7 제4호、제6호、제8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4의 저속전기자동차의 특례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0.3.29, 2010.11.10, 2011.3.16, 2011.10.6, 2011.12.23, 2014.6.10>

⑬ 안전기준에 관한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인정되는 안전기준은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11.6.28, 2011.10.6, 2013.3.23>

⑭ 수륙양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안전기준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운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12.7.9, 2013.3.23>

1. 제2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차실(車室)의 유효높이: 168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제102조제2항에 따른 차체강도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계산법에 따른 시험에 적합할 것. 다만, 연간 10대 이하의 수륙양용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15조(제원의 허용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자동차의 각종 구조 및 장치의 제원이 이 규칙에 의한 기준과 다른 경우 별표 33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3.14, 2013.3.23>

제116조(시험방법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3.14, 2010.3.29, 2013.3.23>

[제목개정 2010.3.29]

부칙 <제1002호,1993.5.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3항제3호, 제99조제1호, 제103조제2항 및 제104조제2항제1호 다목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7조 및 제109조의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 및 자동차의 성능시험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성능시험의 기준、방법은 이 규칙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등록자동차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 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13조, 제19조제3항제2호 나목, 제21조, 제22조, 제29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50조

내지 제52조, 제55조제2항제4호, 제58조 및 제1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60조 내지 제66조,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2조, 제77조 내지 제7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중 "시험대상자동차 1대"를 "시험대상자동차"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부칙 <제1019호,1994.1.8>(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2.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다의 (1) 및 (2)중 "60퍼센트"를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별표 8]의 3.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6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22호,1995.7.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3항·제19조제3항·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
2. 승합자동차에 대한 제89조·제91조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
3.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대한 제88조·제89조·제97조제1항·제98조·제103조 및 제104조제2항의 개정규정
4. 경승용자동차에 대한 제89조제2호·제92조·제102조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
5. 제9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 11의 경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연료장치충돌시험기준의 개정규정

제2조 (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제19조제3항·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1996년 1월 1일,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1996년 7월 1일을 말한다)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2호·제19조제3항·제20조·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

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62조제2항 및 제6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차량총중량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는 1996년 1월 1일이후에 최초로 계속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까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견인형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말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 및 자동차의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성능시험의 기준·방법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1. 신규검사 및 계속검사의 검사항목란의 아. 제동장치의 검사기준란중 (1) 제동력의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공차중량의 50%이상이고, 각축의 제동력은 당해축중의 50%(뒷축의 제동력은 당해축중의 20%)이상일 것

부칙 <제44호,19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제5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신규검사·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54조제2항제2호 가목·제54조제2항제3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자동차의 성능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의 성능시험의 기준·방법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0호,1997.1.17>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 제19조제3항제2호 가목·나목·마목·바목 및 제5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6항, 제49조제2항, 제56조제1항제1호·2호, 제56조제3항, 제90조제5항, 제107조 및 별표 29 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6항 및 제90조제5항의 개정규정 : 승합자동차는 1997년 7월 1일, 피견인자동차 및 견인자동차는 1998년 1월 1일, 기타의 자동차는 1999년 1월 1일

2. 제49조제2항, 제107조 및 별표 29 제2호의 개정규정 : 1997년 7월 1일

3. 제5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 : 중형 및 대형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1997년 7월 1일, 경형 및 소형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1998년 1월 1일

제2조 (공차상태에 관한 적용례) 공차상태에 관한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동일형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부칙에서 같다)을 신청하거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동기출력에 관한 적용례) 원동기출력에 관한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거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자파장해방지장치에 관한 적용례) 전자파장해방지장치 및 그 안전시험에 관한 제111조의2 및 별표 6 제4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기본차종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와 동차종의 전자파장해방지장치를 변경한 자동차에 한한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1. 승용자동차 : 1997년 7월 1일

2.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1999년 1월 1일

3. 기타의 자동차 : 2000년 1월 1일

제5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교통부령 제1002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1월 1일전에 기본차종의 형식승인을 얻은 차종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이후 그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된 구조 또는 장치외의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후 다시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는 제2조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6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7조제5항, 제38조의2, 제49조제2항, 제54조제2항제3호,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56조제3항, 제86조, 제87조, 제90조제5항, 제103조제4항, 제107조, 제109조,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1조의3, 제112조,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19, 별표 20, 별표 29 및 별표 3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호,1997.8.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적용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관한 제2조·제19조·제27조·제29조·제47조·제48조제4항 및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좌석안전띠장치등에 대한 적용례) 좌석안전띠장치등에 대한 제10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한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④(자동차형식승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안전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신규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제17조·제48조제3항·제82조 및 별표 5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7호,1998.8.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내지 ⑤생략

⑥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단서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⑦내지 ⑧생략

부칙 <제174호,1999.2.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형식승인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등록자동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확인검사·완성검사 또는 신규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후 말소등록을 한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34조제4항, 제48조제4항제6호 및 제4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8호,1999.6.28>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2001.4.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제49조제2항, 제96조, 제102조제3항, 제111조제2호 및 별표 19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6항, 제75조제2항, 제91조제1항·제2항, 제93조, 제102조제1항·제2항, 제104조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 또는 확인검사를 받은 당해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15조제6항, 제19조제3항·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제49조제2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0호,2003.2.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제57조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에 대한 제15조·제89조제2항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5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 2004년 7월 1일
2.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 : 승합자동차는 2005년 7월 1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2006년 7월 1일
3.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 : 2004년 7월 1일
4. 제90조의 개정규정 :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관련 개정규정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가. 승차정원 11인 이상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 2005년 7월 1일(다만, 승합자동차중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7.5톤 이하 승합자동차는 2006년 7월 1일)

나.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7.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2006년 7월 1일

②(등록자동차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08호,2004.8.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의 안전기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350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제15조(제5항을 제외한다)、제89조제2항、제90조(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관련규정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제15조、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의 안전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350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제15조(제5항을 제외한다)、제89조제2항 및 제90조(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관련규정을 제외한다)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15호,2004.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465호,2005.8.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 별표 19의2 주란의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3조제3항제1호 본문、단서 및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격벽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단서, 제27조제1항,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03조제3항제1호 본문、단서 및 제2호 단서,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9호,2006.4.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 및 별표 14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9조 및 별표 29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7조 단서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9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0호"로 한다.

⑫내지 <16>생략

부칙 <제537호,2006.10.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3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별표 23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승합자동차 차실높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 단서,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 후단, 제31조제2항, 제57조제2호 다목 단서, 제114조제1항, 별표 23(별표 23의2를 포함한다) 및 별표 3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2호,2008.1.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7항, 제43조제1항제1호, 제50조제3항, 제57조제3호 및 제114조제10항(모듈트레일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2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4조제10항의 개정규정 중 모듈트레일러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 당시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의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27조의2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모듈트레일러의 반사띠 부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된 모듈트레일러는 제114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사띠 부착 및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14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사띠 부착 및 표시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2008.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75호,2008.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4조제2항·제3항, 제65조제2항·제3항, 제67조제2항, 제71조제1항,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5조제3항·제4항 및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7항, 제29조제1항제4호, 제47조제3항제8호가목, 제48조제4항, 제79조의2, 제106조, 별표 19의7 및 별표 19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8.12.31>

1. 승용차: 2013년 1월 1일
2.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 2018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행자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식의 승용자동차의 보행자보호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까지는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7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4호,2009.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2호,2009.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36호,2009.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륜자동차의 비상점멸표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75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같은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9년 6월 9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비상점멸표시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34호,2010.3.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6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3점식 안전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승용자동차에 부착된 2점식 안전띠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는 제27조의 개정규

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머리지지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부착된 머리지지대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최고속도가 시속 99킬로미터로 제한된 경형승합자동차 및 경형화물자동차의 경우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제26조, 제99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8>

부칙 <제374호,201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및 제53조제2호나목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⑮ 부터 <2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07호,2010.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50조, 제90조의2, 별표 1, 별표 2, 별표 5의6부터 별표 5의9까지, 별표 7의7 및 별표 30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5조의2, 제90조의2,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7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최고속도가 시속 99킬로미터로 제한된 경형승합자동차 및 경형화물자동차의 경우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8>

제4조(후사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50조 및 별표 5의6부터 별표 5의9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측면보조방향지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승용자동차, 중형 및 대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부착되는 측면보조방향지시등에 대해서는 별표 2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전자파적합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표 30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9호,201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2조의2, 제88조의3,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최고속도가 시속 99킬로미터로 제한된 경형승합자동차 및 경형화물자동차의 경우 2017년 7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8>

부칙 <제360호,2011.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호,2011.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90호,2011.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의 개정규정(다목적형 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0호,2011.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1항, 제27조제1항제2호·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0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 중단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는 제112조의2부터 제112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옆면표시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이륜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제69조·제70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의 경우에는 2012년 6월 16일까지는 제112조의2부터 제112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442호,2012.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제2항, 제15조제5항 및 제12항,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에서 제80조까지, 제106조, 별표 19의7 및 별표 19의8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5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차량총중량이 4.5톤 초과 10톤 미만인 승합자동차: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다. 차량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승합자동차 : 공포한 날

3. 제5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차량총중량이 3.5톤 초과 16톤 미만인 화물·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차량총중량이 16톤 이상인 화물·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공포한 날

4. 제63조의2의 개정규정: 2014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저속전기자동

차, 경형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최고속도가 시속 99킬로미터로 제한된 경형승합자동차 및 경형화물자동차의 경우 2020년 8월 1일) 이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8.8>

제4조(제동력지원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최고속도가 시속 99킬로미터로 제한된 경형승합자동차 및 경형화물자동차의 경우 2020년 8월 1일) 이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8.8>

제5조(이륜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①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구동전동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제76조·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제8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륜자동차의 전조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이륜자동차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광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9의7 및 별표 19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96호,2012.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4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5호,2012.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제18조의3제3호, 제23조제2항 단서, 제25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 후단, 제82조제2항, 제98조제5호, 제99조 본문, 제105조제1항, 제1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4조제1항·제3항·제6항·제7항·제10항, 같은 조 제13항 후단,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본문, 제115조, 제116조, 별표 5의4 제3호나목, 별표 5의15 비고, 별표 14의4 주 제2호, 별표 19의2 주 제10호, 별표 31 최소회전반경의 대상차종란 나목 및 같은 표 완충장치의 대상차종란 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5>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56호,2014.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기압고무타이어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2 및 별표 5의25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정지표시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0항 및 별표 5의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후사경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후방 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고기록장치에 대한 적용례) 제56조의2 및 별표5의2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호,2014.6.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9항제2호, 제15조제13항, 제19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5항, 제27조, 제30조, 제38조의4, 제67조제1항, 제75조의2, 제87조, 제91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103조, 제114조제12항 및 별표 7의2: 2015년 7월 1일
2.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5,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제49조, 제79조의2, 제106조, 제107조, 제112조의4 및 제112조의5 : 2016년 1월 1일
4. 제15조제4항 및 제20조제2항 : 2016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기회생제동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9항제2호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측면보호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상차종 중 피견인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 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5조(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및 등화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38조의5,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7조, 제49조, 제75조의2, 제79조의2, 제87조, 제106조, 제107조, 제112조의4 및 제11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좌석안전띠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보조제동장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7호,2014.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료소비율 시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신설 2014.1.2>

공기압고무타이어의 표기·구조 및 성능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공기압고무타이어 표기 기준

가. 공기압고무타이어(이하 이 표에서 "타이어"라 한다) 트레드 부분에는 트레드 깊이가 1.6밀리미터까지 마모된 것을 표시하는 트레드 마모지시기를 표기할 것

나. 타이어 사이드월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표기되어 있을 것

1) 제작사명 또는 제작사를 표시하는 기호

2) 제작번호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기호

3) 타이어의 호칭(다음 사항을 말하며, 세부표기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가) 타이어 너비

나) 편평비(타이어 너비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말한다)

다) 타이어를 구성하는 내부 구조

라) 타이어의 비드부가 장착되는 림 지름(inch)

마) 하중 지수(LI) 별 최대허용하중 (단위 : N)

LI	최대허용하중	LI	최대허용하중	LI	최대허용하중	LI	최대허용하중	LI	최대허용하중	LI	최대허용하중
0	441.3	43	1,520.0	86	5,197.5	129	18,142.3	172	61,781.9	215	213,785.0
1	453.1	44	1,569.1	87	5,344.6	130	18,632.6	173	63,743.2	216	219,669.0
2	465.8	45	1,618.1	88	5,491.7	131	19,123.0	174	65,704.6	217	225,553.0
3	477.6	46	1,667.1	89	5,687.9	132	19,613.3	175	67,665.9	218	231,436.9
4	490.3	47	1,716.2	90	5,884.0	133	20,201.7	176	69,627.2	219	238,301.6
5	505.0	48	1,765.2	91	6,031.1	134	20,790.1	177	71,588.5	220	245,166.3
6	519.8	49	1,814.2	92	6,178.2	135	21,378.5	178	73,549.9	221	252,521.2
7	534.5	50	1,863.3	93	6,374.3	136	21,966.9	179	76,001.5	222	259,876.2
8	549.2	51	1,912.3	94	6,570.5	137	22,555.3	180	78,453.2	223	267,231.2
9	568.8	52	1,961.3	95	6,766.6	138	23,143.7	181	80,904.9	224	274,586.2
10	588.4	53	2,020.2	96	6,962.7	139	23,830.2	182	83,356.5	225	284,392.9
11	603.1	54	2,079.0	97	7,158.9	140	24,516.6	183	85,808.2	226	294,199.5
12	617.8	55	2,137.8	98	7,355.0	141	25,252.1	184	88,259.9	227	301,554.5
13	637.4	56	2,196.7	99	7,600.2	142	25,987.6	185	90,711.5	228	308,909.5
14	657.0	57	2,255.5	100	7,845.3	143	26,723.1	186	93,163.2	229	318,716.1
15	676.7	58	2,314.4	101	8,090.5	144	27,458.6	187	95,614.8	230	328,522.8
16	696.3	59	2,383.0	102	8,335.7	145	28,439.3	188	98,066.5	231	338,329.4
17	715.9	60	2,451.7	103	8,580.8	146	29,420.0	189	101,008.5	232	348,136.1
18	735.5	61	2,520.3	104	8,826.0	147	30,155.4	190	103,950.5	233	357,942.7
19	760.0	62	2,598.8	105	9,071.2	148	30,890.9	191	106,892.5	234	367,749.4

20	784.5	63	2,667.4	106	9,316.3	149	31,871.6	192	109,834.5	235	380,007.7
21	809.0	64	2,745.9	107	9,561.5	150	32,852.3	193	112,776.5	236	392,266.0
22	833.6	65	2,843.9	108	9,806.7	151	33,832.9	194	115,718.5	237	404,524.3
23	858.1	66	2,942.0	109	10,100.8	152	34,813.6	195	119,150.8	238	416,782.6
24	882.6	67	3,010.6	110	10,395.0	153	35,794.3	196	122,583.1	239	429,040.9
25	907.1	68	3,089.1	111	10,689.2	154	36,774.9	197	126,015.5	240	441,299.3
26	931.6	69	3,187.2	112	10,983.4	155	38,000.8	198	129,447.8	241	453,557.6
27	956.1	70	3,285.2	113	11,277.6	156	39,226.6	199	133,370.4	242	465,815.9
28	980.7	71	3,383.3	114	11,571.8	157	40,452.4	200	137,293.1	243	478,074.2
29	1010.1	72	3,481.4	115	11,915.1	158	41,678.3	201	142,196.4	244	490,332.5
30	1039.5	73	3,579.4	116	12,258.3	159	42,904.1	202	147,099.8	245	505,042.5
31	1068.9	74	3,677.5	117	12,601.5	160	44,129.9	203	152,003.1	246	519,752.5
32	1098.3	75	3,795.2	118	12,944.8	161	45,355.8	204	156,906.4	247	534,462.4
33	1127.8	76	3,922.7	119	13,337.0	162	46,581.6	205	161,809.7	248	549,172.4
34	1157.2	77	4,040.3	120	13,729.3	163	47,807.4	206	166,713.1	249	568,785.7
35	1186.6	78	4,167.8	121	14,219.6	164	49,033.3	207	171,616.4	250	588,399.0
36	1225.8	79	4,285.5	122	14,710.0	165	50,504.2	208	176,519.7	251	603,109.0
37	1255.3	80	4,413.0	123	15,200.3	166	51,975.2	209	181,423.0	252	617,819.0
38	1294.5	81	4,530.7	124	15,690.6	167	53,446.2	210	186,326.4	253	637,432.3
39	1333.7	82	4,658.2	125	16,181.0	168	54,917.2	211	191,229.7	254	657,045.6
40	1372.9	83	4,775.8	126	16,671.3	169	56,878.6	212	196,133.0	255	676,658.9
41	1422.0	84	4,903.3	127	17,161.6	170	58,839.9	213	202,017.0	256	696,272.2
42	1471.0	85	5,050.4	128	17,652.0	171	60,310.9	214	207,901.0	257	715,885.5

주) "하중 지수(LI : Load Index)"란 타이어의 최대허용하중을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바) 속도 기호 별 최고 속도

속도 기호	최고 속도(km/h)
B	50
C	60
D	65
E	70
F	80
G	90
J	100
K	110
L	120
M	130
N	140
P	150
Q	160
R	170
S	180
T	190
U	200

H	210
V	240
W	270
Y	300 또는 300 초과속도

4) 타이어의 종류

구 분	사이드월의 표기	비 고
레이디얼 타이어	RADIAL	1. 영문자는 대문자 또는 소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다만, 응급용 타이어 및 T타입 응급용 타이어의 경우에는 대문자(단위 표기는 제외한다)로 한다. 2. 호칭 또는 제품명 등으로 명확하게 타이어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튜브리스 타이어	TUBELESS	
겨울용 타이어	SNOW, M+S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기호	
응급용 타이어	TEMPORARY USE ONLY	
T타입 응급용 타이어	TEMPORARY USE ONLY 및 INFLATE TO 420 kPa(60 psi)	
경형승합자동차 또는 경형화물자동차 타이어	ULTRA LIGHT TRUCK 또는 그 약칭	
소형승합자동차 또는 소형화물자동차 타이어	LIGHT TRUCK 또는 그 약칭	
중형승합자동차·중형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승합자동차·대형화물자동차 타이어	HIGHWAY TREAD-J(HW-J) 또는 EXTRA HEAVY TREAD(EHT). 다만, 겨울용 바이어스 타이어는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주) 1. 타이어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가. "카카스"란 타이어의 골격을 형성하는 코드층을 말한다.

나. "트레드"란 타이어 접지 부분의 고무층으로 노면과 접촉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 "비드"란 강선에 고무를 피복하여 타이어가 림에 장착될 때 고정되는 부분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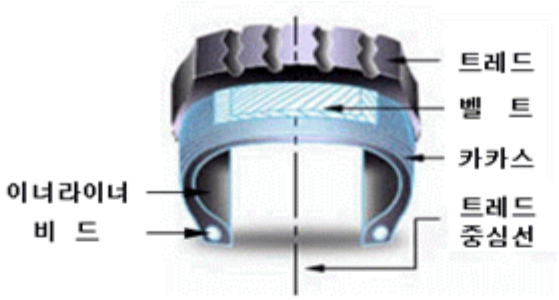
라. "벨트"란 레이디얼 타이어의 트레드와 카카스 사이에 위치하여, 카카스를 원둘레 방향으로 강하게 죄어 트레드의 강성을 높이고 노면에 닿는 트레드 부위를 넓게 하여 주행안정성을 높이는 보강대 역할을 하는 부분을 말한다.

마. "코드"란 카카스, 벨트 등의 고무층을 구성하도록 짜여진 섬유선 또는 금속선을 말한다.

바. "사이드월"이란 트레드와 비드 사이 부분의 고무층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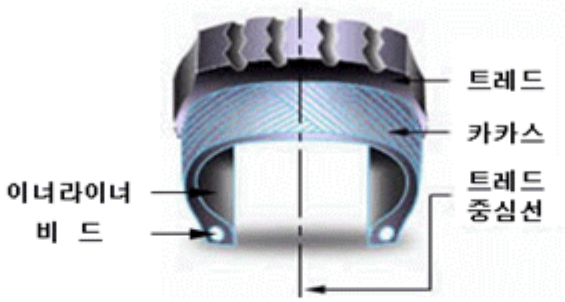
사. "이너 라이너"란 튜브리스 타이어의 공기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카카스 내면에 부착된 기밀성이 높은 고무층을 말한다.

2. "레이디얼 타이어"란 트레드 중심선에 대하여 카카스 고무층 코드가 90° 각도로 배열된 구조를 가지며, 벨트에 의하여 단단히 보강된 타이어를 말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3. "튜브리스 타이어"란 림에 타이어를 조립할 때 튜브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된 타이어 형태를 말한다.
4. "겨울용 타이어"란 눈길 또는 빙판길에서 일반 타이어보다 조종안정성 및 구동, 제동 성능을 우수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타이어를 말한다.
5. "응급용 타이어"란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가 파손 등의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중량, 부피 등이 감소된 타이어로서 꺾어 접은 상태로 보관하는 중첩식 응급용 타이어와 일반용 표준 타이어보다 단면너비가 적고 높은 공기압을 사용하는 T타입 응급용 타이어를 말한다.
6. "M+S"란 진흙(Mud)길이나 눈(Snow)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타이어를 말한다.
7. "HIGHWAY TREAD-J(HW-J)"란 중형승합자동차·중형화물자동차·대형승합자동차 또는 대형화물자동차의 트레드 깊이가 얕은 타이어를 말한다.
8. "EXTRA HEAVY TREAD(EHT)"란 중형승합자동차·중형화물자동차·대형승합자동차 또는 대형화물자동차의 트레드 깊이가 깊은 타이어를 말한다.
9. "바이어스 타이어"란 트레드 중심선에 대하여 카카스 고무층 코드가 경사진 각도로 교차하는 구조를 갖는 타이어를 말한다(그림 2 참조).



(그림 2)

5) 제품명
6) 제작시기[제작하는 주(週)와 년도]: 해당 "주"와 "제작년도"를 각각 두자리의 숫자로 순차적으로 표기한다. 예) 4012: 2012년 40번째 주
7) 제작국명

2. 타이어 구조 기준

가. 타이어에 작용되는 적차상태의 하중은 해당 타이어의 제작사가 표시하는 최대 허용하중의 범위 이내 일 것

나. 타이어의 최대 허용속도가 표기되어 있을 것

다. 타이어의 최대 허용속도는 해당 자동차의 최고 속도 이상일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이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응급용 타이어

2) 겨울용 타이어

3) 험로주행 등 특수한 사용 조건하에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트레드 패턴을 가진 타이어

라. 금이 가고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트레드깊이가 1.6밀리미터 이상 유지될 것

마. 타이어의 용도를 알 수 있는 타이어 제원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도록 양각 또는 음각으로 표기되어 있을 것

3. 타이어 성능 기준

타이어가 장착되는 자동차의 종류별로 아래 표에 따른 성능 기준 A 또는 B 중의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타이어 종류 / 성능 기준		승용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 또는 경형화물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또는 소형화물자동차			중형승합자동차, 대형승합자동차, 중형화물자동차 또는 대형화물자동차
		튜브 타입	튜브리스		8PR 이하 림지름 15인치 미만	8PR 이하 림지름 15인치 이상	10PR 이상	
성능기준 A	트레드 강도	○	○	○	○	○	○	○
	비드이탈 강도	-	○	-	-	-	-	-
	내구성능 a	○	○	○	○	○	○	○
	고속성능 a	○	○	○	○	-	-	-
성능기준 B	내구성능 b	-	-	○	○	○	○	○
	고속성능 b	○	○	-	-	-	-	-

주) 1. "튜브 타입" 이란 림에 타이어를 조립할 때 튜브를 사용하여 공기압을 유지되도록 설계된 타이어의 형태를 말한다.

2. "플라이 지수(PR)"란 타이어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면으로 만들어진 고무층에 해당하는 강도를 상대적으로 표시한 지수를 말한다.

가. 성능 기준 A

1) 트레드 강도(파괴에너지) 최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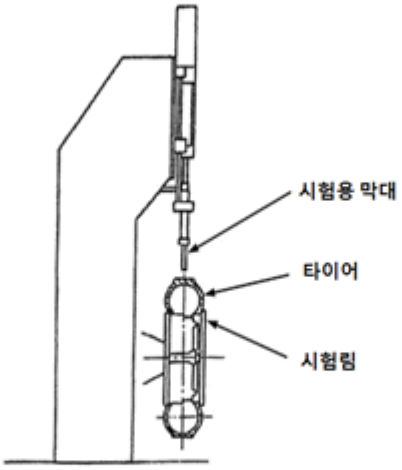
가) 승용자동차용 타이어

(단위 : J)

승용자동차용 타이어			T타입 응급용 타이어	
표준하중 단면 너비의 호칭		강화 또는 추가 하중	최대허용하중	
160밀리미터 미만	160밀리미터 이상		400킬로그램 미만	400킬로그램 이상
220	295	585	220	295

주) 1. 단면 너비의 호칭이 3자리 정수로 표시되지 않은 타이어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한다.

2. 레이온 재질의 카카스로 구성된 바이어스 타이어는 표에 나타낸 수치의 60퍼센트를 규정값으로 적용한다.
3. 모든 측정 위치(원주 방향으로 균등하게 72° 각도의 5개 위치를 말하되, 림 지름 12인치 이상은 3개 위치를 말한다)에서 타이어가 파괴되지 않고 구형 끝단을 갖는 시험용 막대가 림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규정값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그림 3 참조).



(그림 3) 트레드 강도 시험장비

4. "강화 또는 추가 하중"이란 카카스가 표준 하중 타이어의 구조보다 더 큰 내성을 갖도록 설계된 타이어를 표기하는 방법으로서 "reinforced" 또는 "extra load"로 표시된다.

나) 하중 지수가 표시되어 있는 승합자동차용 또는 화물자동차용 타이어

(단위 : J)

최대허용하중에 대응하는 공기압(kPa)	하중 지수(단륜) 121 이하		하중 지수(단륜) 122 이상
	림 지름의 호칭		
	13인치 미만	13인치 이상	
250 이하	136	294	-
251~350	203	362	-
351~450	271	514	-
451~550	-	576	972
551~650	-	644	1,412
651~750	-	712	1,695
751~850	-	-	2,090
851 이상	-	-	2,203

다) 하중 지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승합자동차용 또는 화물자동차용 타이어

(단위 : J)

PR	경형승합자동차, 경형화물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또는 소형화물자동차			중형승합자동차, 중형화물자동차,대형승합자동차 또는 대형화물자동차	
	림 지름의 호칭 13인치 미만	튜브 타입 림 지름의 호칭 13~14인치	튜브리스 림 지름의 호칭 13~17.5인치	튜브리스	튜브 타입
2	68	-	226	-	-
4	136	192	294	-	-
6	203	271	362	576	768
8	271	384	514	734	893
10	339	-	576	972	1,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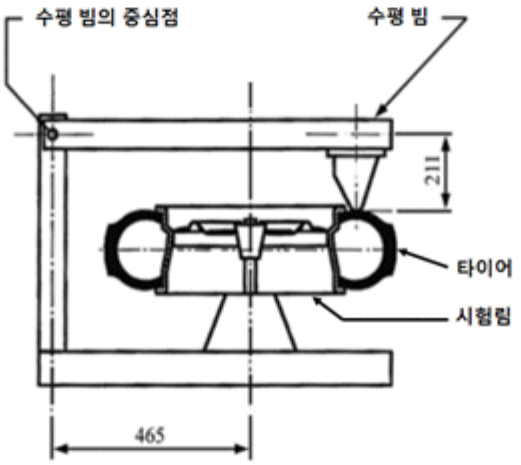
12	407	–	644	1,412	1,785
14	–	–	712	1,695	2,282
16	–	–	768	2,090	2,599
18	–	–	–	2,203	2,825
20	–	–	–	–	3,051
22	–	–	–	–	3,220
24	–	–	–	–	3,390

2) 승용자동차용 튜브리스 타이어의 비드이탈 강도(저항값) 최소 기준

(단위 :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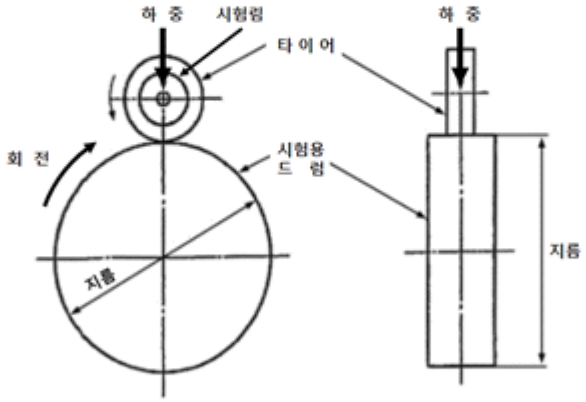
승용자동차용 타이어			T타입 응급용 타이어		
단면 너비의 호칭			하중 지수		
160밀리미터 미만	160밀리미터 이상 205밀리미터 미만	205밀리미터 이상	75 이하	76~92	93 이상
6,670	8,890	11,120	6,670	8,890	11,120

주) 1. 하중 지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타이어는 하중 지수에 대응하는 최대허용하중에 따른다.
2. "수평 빔(beam)"이란 비드이탈 강도 시험에서 시험 하중을 가하는 직선형 막대를 말한다(그림 4 참조).



(그림 4) 비드이탈 강도 시험장비

3) 내구성능 a 기준



(그림 5) 내구성능 및 고속성능 시험장비

가) 트레드, 사이드월, 고무층, 코드, 이너 라이너, 벨트 또는 비드의 분리, 뜯김, 이음매의 벌어짐, 균열 또는 코드의 절단이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나) 시험 후 즉시 측정한 타이어의 공기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초기압력

보다 높을 것
(1) 승용자동차용 타이어: 180kPa
(2) T타입 응급용 타이어: 360kPa
(3) 강화 또는 추가 하중 타이어: 220kPa
(4) 그 밖의 타이어: 최대허용하중에 대응하는 공기압(단륜과 복륜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복륜 사용 시의 최대허용하중에 대응하는 공기압을 말한다)

주) 1. 내구성능 a에 대한 시험조건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분리"란 트레드, 비드, 사이드월, 코드, 고무층, 벨트 및 이너 라이너가 서로 인접한 구성물에서 접착 또는 연결이 해체되는 것을 말한다.
3. "뜯김"이란 트레드 패턴 부위의 고무가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한다.
4. "균열"이란 트레드, 사이드월 및 이너 라이너 부위에 발생하는 고무의 갈라짐을 말한다.
5. "이음매 벌어짐"이란 트레드, 사이드월 및 이너 라이너의 이음매 부위가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4) 고속성능 a 기준

가) 트레드, 사이드월, 고무층, 코드, 이너 라이너, 벨트 또는 비드의 분리, 뜯김, 이음매의 벌어짐, 균열 또는 코드의 전단이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나) 시험 후 즉시 측정한 타이어의 공기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초기압력보다 높을 것
(1) 승용자동차용 타이어: 220kPa
(2) T타입 응급용 타이어: 400kPa
(3) 강화 또는 추가 하중 타이어: 260kPa
(4) 그 밖의 타이어: 최대허용하중에 대응하는 공기압(단륜과 복륜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복륜 사용 시의 최대허용하중에 대응하는 공기압을 말한다)

주) 고속성능 a에 대한 시험조건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성능 기준 B

내구성능 b 기준	가) 트레드, 사이드월, 고무층, 코드, 이너 라이너, 벨트 또는 비드의 분리, 뜯김, 이음매의 벌어짐, 균열 또는 코드의 전단이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고속성능 b 기준	나) 시험 6시간 이후에 측정한 타이어의 바깥 지름은 시험 전에 측정된 바깥 지름과 비교하여 ±3.5퍼센트 이상 차이가 없을 것

주) 내구성능 b 및 고속성능 b에 대한 시험조건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의2] <개정 2014.1.2>

손조작식 조종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13조제4항관련)

조 종 장 치	식별단어 또는 약어	식 별 부 호	조명기준
등화점등장치	점등 또는 Light		설치가능
전조등·후미등	제작자가 정함	제작자가 정함	설치가능
경음기	경음기 또는 Horn		설치가능
방향지시기	표시가능		설치가능
비상경고신호등	비상 또는 Hazard		설치필요
앞면창유리창닦이기	창닦이기, Wiper 또는 Wipe		설치필요
앞면창유리세정액 분사장치	세정액, Washer 또는 Wash		설치필요
앞면창유리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	창닦이기-세정액, Wash-wipe 또는 Washer-wiper		설치필요
냉·난방용 팬	팬 또는 Fan		설치필요
앞면창유리서리제거장치	서리제거, Defrost, Defog 또는 Def		설치필요
뒷면창유리서리제거장치	뒷면서리제거, Rear Def, Rear Defrost, Rear Defog 또는 R-Def		설치필요
차폭등	차폭등, Marker Lamps 또는 Mk Lps		설치필요
수동초우크	초우크 또는 Choke	표시가능	설치가능
원동기 시동	시동 또는 Engine Start	표시가능	설치가능
원동기 정지	정지 또는 Engine Stop	표시가능	설치필요
손조작 스로틀	스로틀 또는 Throttle	표시가능	설치가능
정속주행장치	제작자가 정함	표시가능	설치필요
냉·난방장치	제작자가 정함	표시가능	설치필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정지	ESC OFF		설치필요

주 : 1.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목의 조종장치를 제외한 기타의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는 오프위치에서 운전자가 식별표시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가. 회전식 등화점등장치 및 회전식 전조등·후미등의 조종장치

나. 오프위치가 없는 회전식 조종장치

다. 경음기의 조종장치

2. 제작자등은 식별표시에 다른 식별표시를 추가하여 표시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다.

3. 정속주행장치 및 냉·난방장치의 조종장치에는 기능을 조종하는 각 조종위치마다 식별표시를 하여야 하고, 1개의 기능에 관하여 등급이나 정도를 조절하는 조종장치에는 양 끝의 조절위치에 그 등급이나 정도표시를 하여야 하며, 온도를 조절하는 조종장치의 양 끝의 조절위치의 표시를 색상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온도의 조절위치는 청색으로, 가장 높은 온도의 조절위치는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는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는 전조등이 지속적으로 점등되는 경우에 조명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계기판넬의 윗부분, 조향기둥, 차실바닥 및 바닥에 있는 콘솔부분에 설치된 조종장치의 식별표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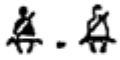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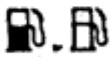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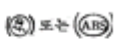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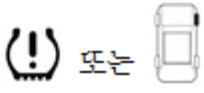
5. 원동기시동 및 원동기정지를 위한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는 당해 조종장치들이 열쇠잠금장치와 별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6. 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냉·난방용팬과 냉·난방장치에는 조명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등화점등장치에 의하여 조종되는 조종장치는 별도의 식별표시나 조명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14.6.10>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13조제5항관련)

표 시 장 치	식별색상	식별단어 또는 약어	식별부호	조명기준
방향지시등 자동표시기	녹 색	–		–
비상경고신호등 자동표시기	–	–		–
안전띠자동표시기	적 색	안전띠착용, fasten Belts 또는 Fasten Seat belts		–
연료량자동표시기	–	연료 또는 Fuel		–
연료계	–			설치필요
오일압력자동표시기	–	오일 또는 oil		–
오일압력계	–			설치필요
냉각수온도자동표시기	–	온도 또는 Temp		–
온도계	–			설치필요
충전자동표시기	–	전압, 전류, 충전, Volts, Amp 또는 Charge		–
전류계	–			설치필요
주행빔자동표시기	청색 또는 녹색	–		–
ABS고장자동표시기	황 색	자동제어 또는 ABS		–
제동장치고장자동표시기	적색 또는 황색	제동, Brake		–
주차제동장치자동표시기	적색 또는 황색	주차, Parking		–
속도계	–	Km/h 또는 MPH	–	설치필요
자동변속기변속단수	–	제작자가 정함	–	설치필요
경제운전 표시장치	청색 또는 녹색	에코 또는 ECO	–	설치필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자동표시기	황색 또는 호박색	ESC		–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	황색	–	 또는	–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정지 자동표시기	황색 또는 호박색	ESC OFF		-
수소누출감지 자동표시기	적색	수소누출, H_2 또는 H_2 Leak	-	설치필요
수소누출감지기 고장 자동표시기	황색 또는 호박색	수소센서, H_2 또는 H_2 Sensor	-	설치필요

주 : 1. 제작자는 식별표시에 다른 식별표시를 추가하여 표시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경제운전 표시장치의 경우는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에 대하여 제작사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는 표시장치의 식별표시는 전조등이 지속적으로 점등되는 경우에 조명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표시장치의 색상은 배경과 대조되는 색상이어야 한다.

4. 자동표시기는 당해 자동표시기가 지시하는 장치가 작동하는 경우, 비정상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자동출발시의 등화점검의 경우 외에는 빛을 발산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비상경고신호등의 표시장치로서 방향지시등의 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상경고신호등의 식별부호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6. 공기식 주제동장치의 제동장치고장 자동표시기의 경우 "제동공기 또는 Brake Air" 식별단어 또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7.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및 기능정지 자동표시기의 색상은 제12조의2 및 제15조의2에 따른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설치대상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제작사가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의 경우, 식별부호의 자동차 외형은 실제 외형을 더 잘 표시하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 외형을 사용할 수 있다.

9. 하나의 표시장치로 2개 이상의 제동장치상태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동장치고장자동표시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03.2.25>

주제동장치의 급제동정지거리 및 조작력 기준(제15조제1항제10호관련)

구 분	최고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최고속도가 매시 35킬로미터 이상 80킬로미터 미만의 자동차	최고속도가 매시 35킬로미터 미만의 자동차
1.제동초속도 (킬로미터/시간)	50	35	당해 자동차의 최고속도
2.급제동정지거리 (미터)	22 이하	14 이하	5 이하
3.측정시조작력 (킬로그램)	발조작식의 경우 : 90이하		
	손조작식의 경우 : 30이하		
4.측정자동차의 상태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운전자 1인이 승차한 상태		

[별표 4] <개정 2011.12.23>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및 조작력 기준(제15조제1항제11호관련)

구 분	기 준
1. 측정자동차의 상태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운전자 1인이 승차한 상태
2. 제동능력	가. 최고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 이상이고 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 이하인 자동차의 각축의 제동력의 합 : 차량총중량의 50퍼센트 이상 나. 최고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 미만이고 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5배 이하인 자동차의 각축의 제동력의 합 : 차량총중량의 40퍼센트 이상 다. 기타의 자동차 (1) 각축의 제동력의 합 : 차량중량의 50퍼센트 이상 (2) 각축의 제동력 : 각 축중의 50퍼센트(다만, 뒷축의 경우에는 당해 축중의 20퍼센트) 이상
3, 좌·우바퀴의 제동력의 차이	당해 축중의 8퍼센트 이하
4. 제동력의 복원	브레이크페달을 놓을 때에 제동력이 3초 이내에 당해 축중의 20퍼센트 이하로 감소될 것

주) 관성제동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에 대해서는 위 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4의2] <개정 2009.1.23>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및 조작력 기준(제15조제1항제12호관련)

1.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및 조작력 기준

구 분		기 준
1. 측정자동차의 상태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운전자 1인이 승차한 상태
2. 측정시 조작력	승용자동차	발조작식의 경우 : 60킬로그램 이하
		손조작식의 경우 : 40킬로그램 이하
	그 밖의 자동차	발조작식의 경우 : 70킬로그램 이하
		손조작식의 경우 : 50킬로그램 이하
3. 제동능력		경사각 11도30분 이상의 경사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나 제동능력이 차량중량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2. 주차 제동을 위한 조작력 전달계통이 전기식(electric transmission)인 주차제동장치 기준

가.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및 조작력은 제1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주차제동을 위한 조작력 전달계통이 전기식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차제동장치의 오동작이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주차제동을 위한 조작력전달계통이 전기식인 배선[에너지공급장치는 제외하며,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조종장치와 전자제어장치를 직접 연결하는 배선만 해당한다]에 단선 등 파손이 있거나 주차제동장치의 조종장치에 전기적인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전자가 운전자석에서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적차(積車)상태의 자동차를 8퍼센트 경사로에서 전진 및 후진방향으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위 1)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정지 시 자동으로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어 위 1)의 성능기준에 만족할 때에는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동장치의 열쇠 위치와 상관없이 주차제동장치 작동상태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하며, 운전자석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출발시킬 때에는 주차제동상태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에 설치된 공구 또는 보조장치를 이용하여 주차제동장치를 해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3)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는 수동변속장치의 조종레버를 변속위치로 하거나 자동변속장치의 조종레버를 주차위치로 하여 위 1)의 성능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라. 다목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운전자석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충분한 밝기를 갖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황색경고등이 점등할 것

(2) 주차제동장치의 전기식 조종장치가 작동위치에 있고 시동장치의 열쇠가 10초 이상 작동위치에 있을 때에는 적색경고등이 점멸할 것

마. 주차제동장치의 작동을 표시하는 별도의 적색표시등을 갖춘 경우에도 라목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 시동장치의 열쇠를 해제위치로 조작하거나 제거한 상태에서도 주차제동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하며 해제시킬 수 없어야 한다.

[별표 4의3] <신설 2012.2.15>

제동력지원장치의 성능기준(제15조제12항 관련)

1. 제동페달에 가해지는 힘을 감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제동력지원장치가 작동되는 경우에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최대 사이클로 작동될 때의 제동페달에 가해지는 힘은 제동력지원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최대 사이클로 작동될 때의 제동페달에 가해지는 힘보다 적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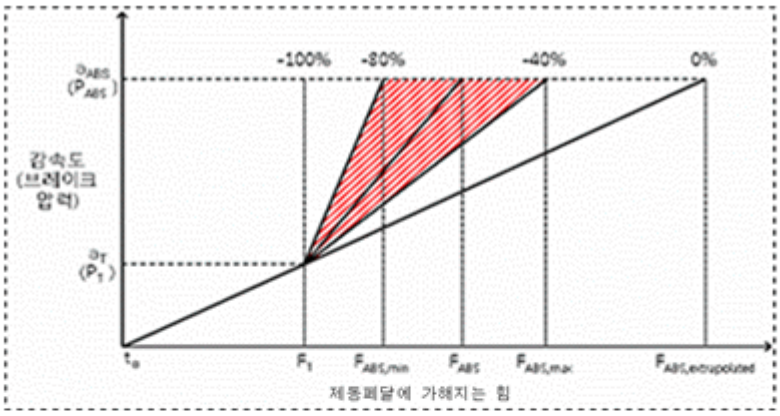
나. 제동력지원장치가 작동하는 경우에 제동페달에 가해지는 힘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1) $F_{ABS,min} \leq F_{ABS} \leq F_{ABS,max}$

2) $F_{ABS,max} \leq F_T + (F_{ABS,extrapolated} - F_T) \times 0.6$

3) $F_{ABS,min} \geq F_T + (F_{ABS,extrapolated} - F_T) \times 0.2$

<그림 1>



※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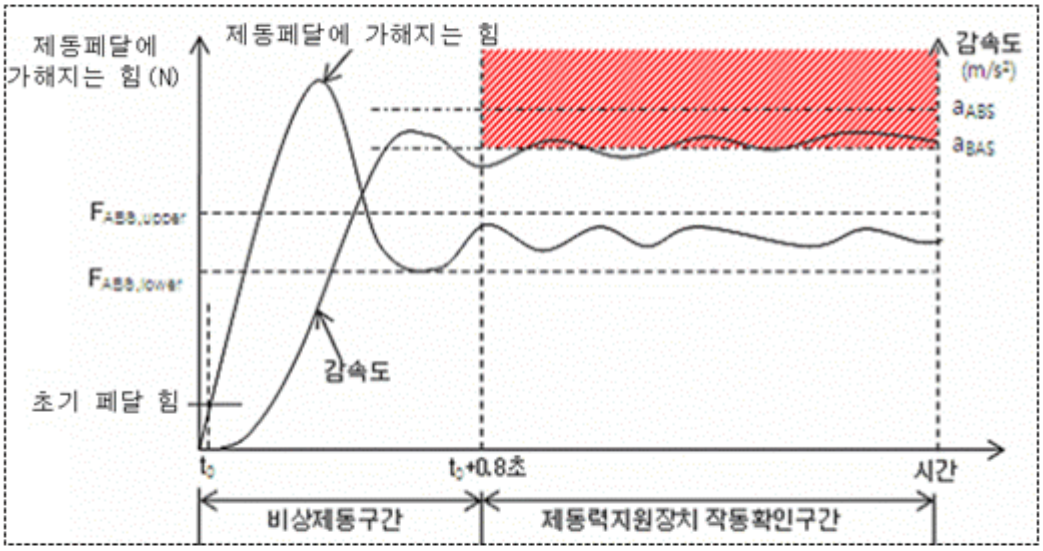
1. t_0: 제동시작 후 제동페달에 가해지는 힘이 20N(Newton)에 도달하는 순간의 시간
2. F_T: 제동력지원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해 제동페달에 가해지는 최소의 힘
3. $F_{ABS,min}$: F_{ABS}의 최소값
4. F_{ABS}: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최대사이클로 작동시키기 위해 제동페달에 가해지는 힘
5. $F_{ABS,max}$: F_{ABS}의 최대값
6. $F_{ABS,extrapolated}$: 원점에서 F_T 및 a_T의 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연장선이

a_{ABS}로 표시되는 수평선과 만나는 점에서의 제동페달에 가해지는 힘

7. a_{ABS}: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작동될 때의 감속도
8. P_{ABS}: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작동될 때의 브레이크압력
9. a_T: 제동력지원장치가 작동되는 임계 감속도
10. P_T: 제동력지원장치가 작동되는 임계 브레이크압력

2. 제동페달에 가해지는 속도를 감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제동력지원장치가 작동되었을 때의 평균 감속도(a_{BAS})는 t(초)=t_0+0.8초 이후 15km/h의 속도로 감속될 때까지 a_{ABS}×0.85 이상으로 유지할 것

<그림 2>



※ 비고

1. t_0: 제동시작 후 제동페달에 가해지는 힘이 20N(Newton)에 도달하는 순간의 시간
2. a_{ABS}: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작동될 때의 감속도
3. a_{BAS}: 제동력지원장치가 작동될 때의 감속도
4. $F_{ABS,upper}$: a_{ABS}에 도달하는 제동페달에 가해지는 힘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힘
5. $F_{ABS,lower}$: a_{ABS}에 도달하는 제동페달에 가해지는 힘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힘

[별표 4의4] <신설 2014.6.10>

관성제동장치의 구조기준(제15조제4항제8호 관련)

1. 관성제동장치는 조종장치, 전달계통 및 브레이크로 구성되며 견인자동차의 제동감속도에 비례하여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조종장치 슬라이딩 마찰 부분은 자기윤활기능이 있거나 부품의 분해·조립 없이 윤활작업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전달계통은 견인자동차로부터 공기압·유압 또는 전기 등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브레이크 작동상태에서 후진 시 정상적인 후진이 가능하도록 자동으로 제동력이 감소되고, 다시 전진 시에는 자동으로 정상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주행 또는 제동 중 내부 요인에 의해 비정상적인 진동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조종장치의 작동구간은 브레이크가 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조종장치 작동구간의 마찰부분은 보호커버 등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전달계통 및 브레이크와의 간섭이 없으며, 영구적인 변형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8. 전달계통은 기계식(강재를 연결한 방식) 또는 유압식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전달계통의 일부 구간에 한하여 보호커버가 있는 경우는 케이블 구조로 할 수 있다.

[별표 4의5] <신설 2014.6.10>

제동력 제어계통이 전기식인 승용자동차의 주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제15조제13항 관련)

1. 주제동장치의 성능이 저하되거나 이상발생 등으로 발생한 제동력 편차에 대한 제어계통 보상값이 아래 한계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경고장치에 따른 황색 경고를 운전자에게 주어야 한다.

구 분	한계값
차륜	좌·우 차륜의 브레이크 제동압력 중의 높은 값 : 25%
차축	각 차축의 정상상태 제동력과의 차이값 : 50%

2. 운전자의 의지에 반하여 주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주차제동장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시동장치의 전원이 꺼진 후 1분 이내에 3회의 주제동장치를 작동하였을 때까지는 별표 7 제4호 중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란의 기준에 따른 제동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주차제동장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시동장치의 전원이 꺼진 후 1분 이내에 최소 4회 이상 주제동장치를 작동시킬 때 또는 1분이 경과한 후 최소 1회 이상 주제동장치를 작동시킬 때에는 별표 7 제6호 중 전달장치 고장 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란의 기준에 따른 제동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전기식 제동력 제어계통의 부품이나 기능의 고장으로 제동장치의 성능에 영향이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장치에 따른 경고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7 제4호 중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란의 기준에 규정된 제동성능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색경고를 주어야 한다.

6. 전기식 제동력 제어계통의 부품 또는 기능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별표 7 제6호 중 전달장치 고장 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전기식 제동력 제어계통의 에너지원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20회 작동한 후 21회 작동 시 제동력, 제동압력 또는 전기식 제동력 제어계통의 출력값은 정상적인 제동작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별표 7 제4호 중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축전지 전압 강하에 따라 별표 7 제4호 중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란의 기준

또는 제6호 중 전달장치 고장 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란의 기준에 저해될 경우에 사전에 적색경고등을 점등하여야 하며, 경고등 점등 후 별표 7 제6호 중 전달장치 고장 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5] <개정 2014.6.10>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의2 관련)

1. 고전원전기장치 활선도체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활선도체부의 보호기구는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개방·분해·제거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승객거주 또는 수화물 공간의 활선도체부는 IPXXD 접근 시 직접 접촉되지 말아야 한다.
 다. 나목을 제외한 활선도체부는 IPXXB 접근 시 직접 접촉되지 말아야 한다.
2. 고전원전기장치의 커넥터(전기자동차 충전 접속구를 포함한다)는 제1호나목 및 다목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커넥터가 차체 외부바닥면에 위치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구조인 경우
 나. 커넥터에 잠금장치가 있고 커넥터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는 구조인 경우
 다. 커넥터를 분리한 후 1초 이내에 전압이 직류 60볼트 또는 교류 30볼트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3. 고전원전기장치의 점검·수리를 위한 고전압회로 차단장치가 공구 없이 개방·분해·제거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IPXXB 접근 시 직접 접촉되지 말아야 한다.
4. 고전원전기장치의 외부 또는 보호기구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전압 커넥터 및 차체 외부 바닥면에 위치하거나 쉽게 접근·개방·제거되지 않도록 보호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경고표시는 다음과 같다.



색상 : 바탕은 노란색, 그림·외곽선은 검정색

 나. 경고표시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고 쉽게 변색되거나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다. 구동축전지의 경우는 상부 또는 주변에 경고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5. 고전원전기장치 간 전기배선(보호기구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피복은 주황색이어야 한다.
6. 고전원전기장치 보호기구의 노출 도전부는 전기적샤시와 배선, 용접 또는 볼트 등의 방법으로 전기적으로 접속되어야 하고, 노출 도전부와 전기적 샤시 사

이의 저항은 0.1Ω 미만이어야 한다.

7. 고전원전기장치 활선도체부와 전기적 샤시 사이의 절연저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직류회로 및 교류회로가 독립적으로 구성된 경우 절연저항은 각각 100Ω/V(DC), 500Ω/V(AC) 이상이어야 한다.

나. 직류회로 및 교류회로가 전기적으로 조합되어 있는 경우 절연저항은 500Ω/V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류회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할 경우에는 100Ω/V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고전원전기장치의 보호기구 내부에 이중 이상의 절연체로 절연되어 있고 제6호를 만족하는 경우

2) 구동전동기 하우징, 전력 변환장치 외함 및 커넥터 등이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장착된 구조일 경우

다. 연료전지자동차의 고전압 직류회로는 절연저항이 100Ω/V 이하로 떨어질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를 줄 수 있도록 절연저항 감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라. 전기자동차 충전 접속구의 활선도체부와 전기적 샤시 사이의 절연저항은 최소 1MΩ 이상이어야 한다.

8.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기 위하여 외부 전원(충전 전압 및 전류)이 들어오기 전에 자동차 및 외부 충전장치의 접지가 우선 연결되어야 하고 외부 전원이 분리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동안에는 자동차가 구동되지 않아야 한다.

주)

1. IPXXB : 국제보호등급(International Protection) 코드(IEC 60529)에서 규정한 손가락 접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손가락 모형
2. IPXXD : 국제보호등급(International Protection) 코드(IEC 60529)에서 규정한 철사 접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철사 모형
3. 전기적 샤시 : 자동차 차체 중 전기가 통하는 도전부를 말한다.

[별표 5의2] <개정 2014.6.10>

긴급제동신호 및 전기회생제동장치의 작동기준(제15조제9항 관련)

1. 긴급제동신호의 작동기준

가. 긴급제동신호 발생기준

순번	자동차 구분	발생 기준
1	1) 승용자동차 2)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50km/h 초과의 속도에서 주제동장치 작동 시 제동감속도 6.0m/s2 이상일 때 발생될 것 - 2.5m/s2 미만으로 감속되기 이전에 긴급제동신호가 소멸될 것
2	1) 승합자동차 2)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50km/h 초과의 속도에서 주제동장치 작동 시 제동감속도 4.0m/s2 이상일 때 발생될 것 - 2.5m/s2 미만으로 감속되기 이전에 긴급제동신호가 소멸될 것
3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장착 자동차	-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따르거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최대사이클로 작동하는 경우에 발생되고, 최대사이클을 종료하였을 때 소멸될 것

나. 긴급제동신호에 의한 등화의 작동기준

1) 긴급제동신호 발생 신호주기(4.0±1.0 Hz, 필라멘트 광원은 $4.0^{+0}_{-1.0}$ Hz)에 따라 제동등 또는 방향지시등이 점멸될 것
2) 긴급제동신호에 의한 등화는 다른 등화와 독립적으로 작동할 것
3) 긴급제동신호에 의한 등화는 신호발생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등 또는 소등되는 구조일 것

다. 표시장치

긴급제동신호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 설치가능

라. 그 밖의 기준

1) 3) 및 4)를 제외하고, 견인자동차에 피견인자동차가 연결된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긴급제동신호는 견인자동차의 신호와 동시에 작동될 것
2) 견인자동차에는 피견인자동차가 전기적으로 연결된 경우, 나목1)에 적합하게

작동될 것

3) 견인자동차에 연속적 또는 반연속적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피견인자동차가 연결된 경우 견인자동차는 피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가 작동하는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등이 점등되도록 전기커넥터를 통해 전기가 항상 공급되는 구조일 것

4) 피견인자동차의 긴급제동신호는 견인자동차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동일하게 점멸되지 않는 구조도 가능할 것

2. 전기회생제동장치의 제동등 작동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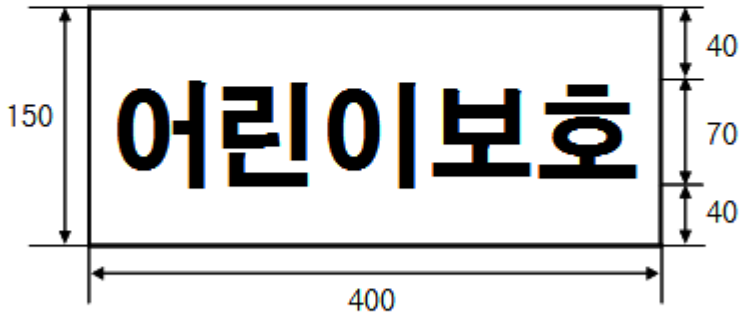
감속도(m/s2)	작동 기준	비 고
0.7 이하	점등되지 말 것	-
0.7 초과, 1.3 이하	점등 가능	0.7m/s2 미만으로 감속되기 전에 소등될 것
1.3 초과	점등될 것	

[별표 5의3] <개정 2014.6.10>

어린이 보호표지 및 정지표시장치(제19조제9항·제10항 관련)

1. 어린이 보호표지

가. 앞면부착용 표지



나. 뒷면부착용 표지



주)

1.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한다.
2. 재질은 두께 1밀리미터 이상의 아크릴이어야 한다.
3. 글씨는 고딕체로 하고, 그 높이가 앞면부착용 표지의 경우에는 70밀리미터 이상, 뒷면 부착용 표지의 경우에는 80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간격은 적절히 조절하도록 한다.

2. 정지표시장치

가. 정지표시장치의 구조

1) 정지표시장치는 어린이가 승하차 중임을 알리는 표시부와 이를 차체에 장착하는 지지부로 구성될 것

2) 지지부는 주행 중 정지표시장치가 차체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부착되고, 예리한 돌출부분이나 모서리가 없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외부 충격 시 정지표시장치의 지지부 일부가 접혀야 하고, 표시부는 교체를 위한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정지표시장치의 표시부는 양쪽면으로 이루어지며, 양쪽면의 규격은 다음과 같을 것



<표시부 규격>

주)

1. 바탕면은 적색, 글자와 테두리는 흰색으로 한다.
2. 각 모서리의 곡률은 1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로 한다.
4. 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인 중형 승합자동차 및 대형 승합자동차의 정지표시장치 표시부의 규격은 표시부 규격의 125퍼센트 또는 150퍼센트로 한다.

나. 정지표시장치의 표시부 작동기준

1)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차체와 수직인 방향으로 펼쳐질 것

2)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닫힐 때에는 자동으로 차체와 나란한 방향으로 접힐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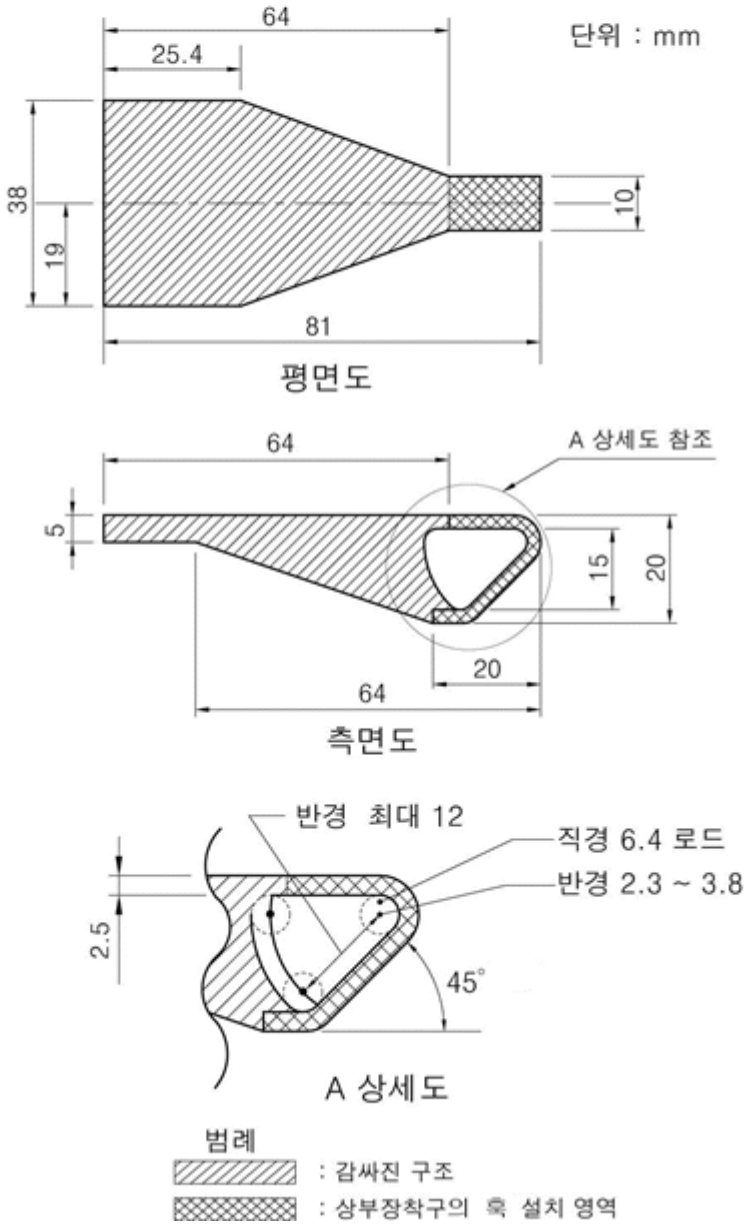
다. 정지표시장치 표시부 반사성능 기준

입사각(각도)	반사성능(cd/lux · ㎡)			
	관측각(0.2°)		관측각(0.5°)	
	백색(글자)	적색(바탕면)	백색(글자)	적색(바탕면)
4D	250	30	95	10
30U	150	12	6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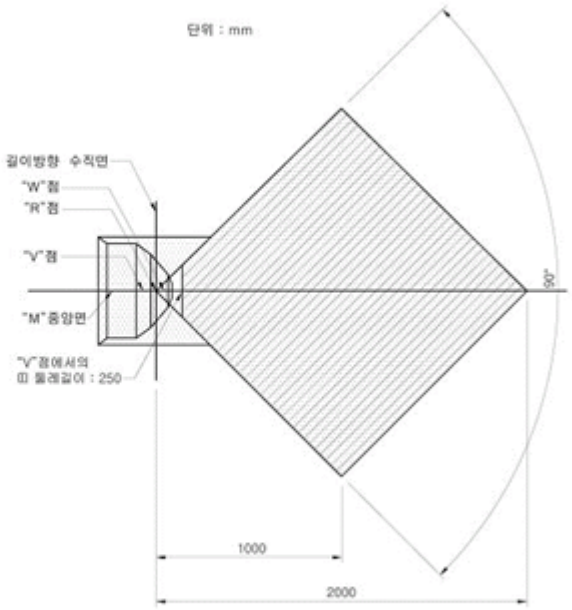
[별표 5의4] <개정 2013.3.23>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기준(제27조의2제7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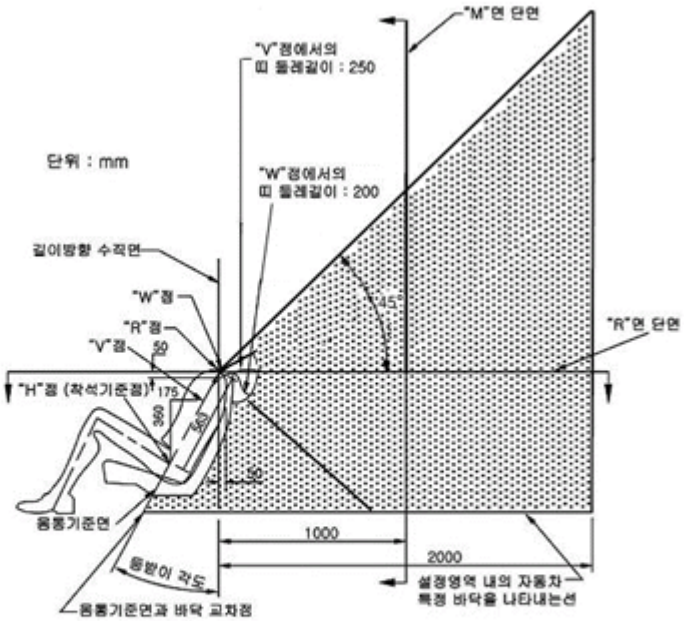
1. 어린이보호용 좌석의 상부 고정용 혹 모양



2. 어린이보호용 좌석의 상부부착구 설치범위



평면의 설치범위도



측면의 설치범위도

주) 1. "R"점 : 어깨기준점

2. "H"점 : 착석기준점

3. "V"점 : "H"점으로부터 수직 위 350mm 및 수평 뒤 175mm

4. "W"점 : "R"점으로부터 수직 아래 50mm 및 수평 뒤 5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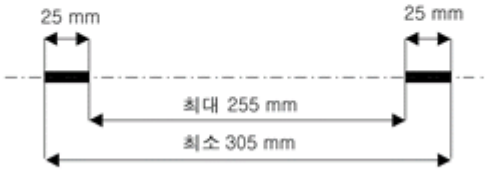
5. "M"면 : "R"점으로부터 수평 뒤 1,000mm

3. 어린이보호용 좌석의 하부부착구 설치기준

가. 어린이보호용 좌석의 하부부착구는 어린이보호용 좌석모형이 장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어린이보호용 좌석모형의 세부제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어린이보호용 좌석의 하부부착구는 직경 6밀리미터의 수평막대로 아래의 그림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하부부착구의 설치

[별표 5의5] 삭제 <2014.6.10>

[별표 5의6] <개정 2014.6.10>

실외후사경 설치기준(제50조제1항제2호 관련)

구분	종류	실외후사경	광각 실외후사경	근접 실외후사경
	곡률반지름	120cm 이상	30cm 이상	30cm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화물·특수자동차		○		
차량총중량 4.5톤 초과 7.5톤 이하의 화물·특수자동차		○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	○	○

주) 1. 실외후사경 및 광각 실외후사경은 운전자측과 승객측에 각각 1개씩, 근접 실외후사경은 승객측에 1개 설치하여야 한다.

2.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의 운전자측에 볼록거울 실외후사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점에서의 곡률반지름과 평균곡률반지름의 차이가 평균곡률반지름값의 1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3. 근접 실외후사경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차체 구조상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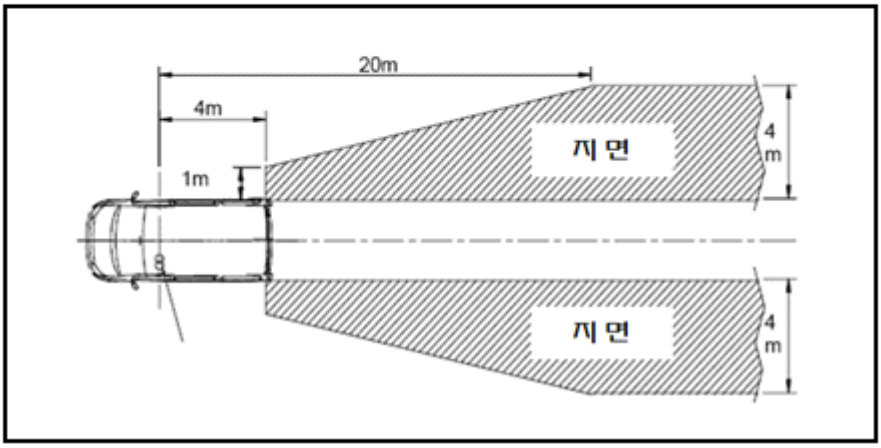
4.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실외후사경의 경우는 곡률반지름이 100cm 이상이어야 한다.

5. 동일 후사경에 서로 다른 곡률을 가진 반사면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 이상의 반사면이 곡률반지름 및 후방시계범위를 충족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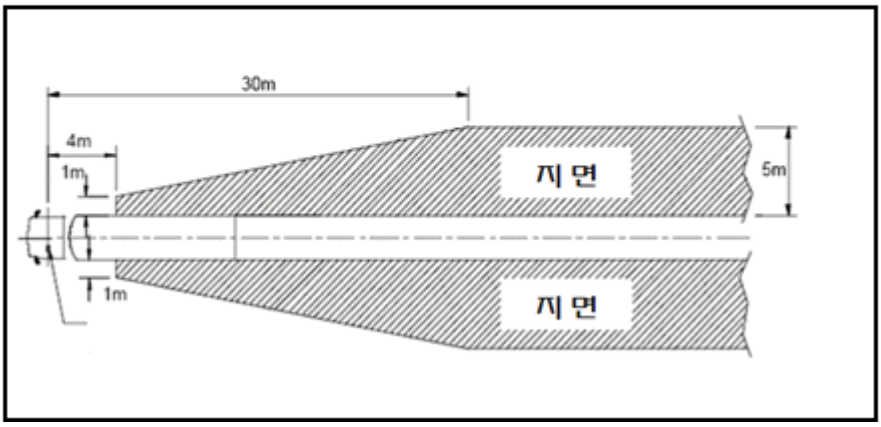
[별표 5의7] <신설 2010.11.10>

실외후사경의 후방 시계범위(제50조제1항제2호나목1) 관련)

1.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특수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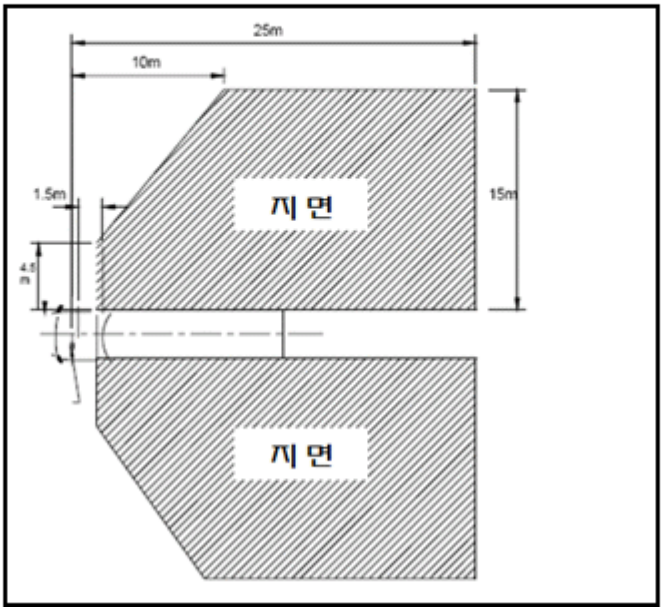


2.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외의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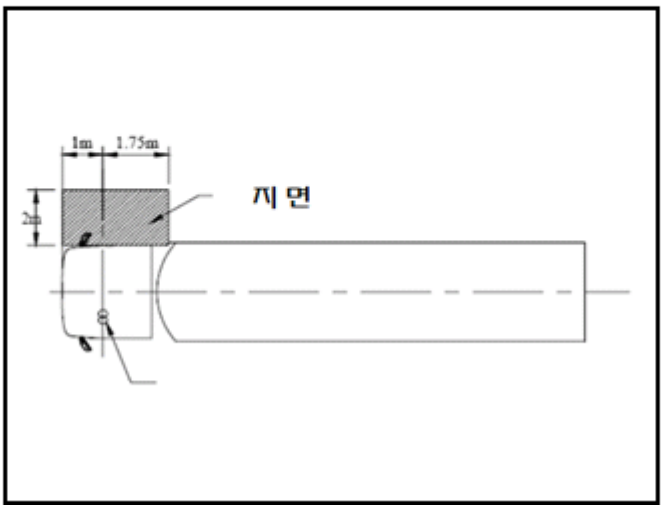
[별표 5의8] <신설 2010.11.10>

광각 실외후사경의 후방 시계범위(제50조제1항제2호나목2) 관련)



[별표 5의9] <신설 2010.1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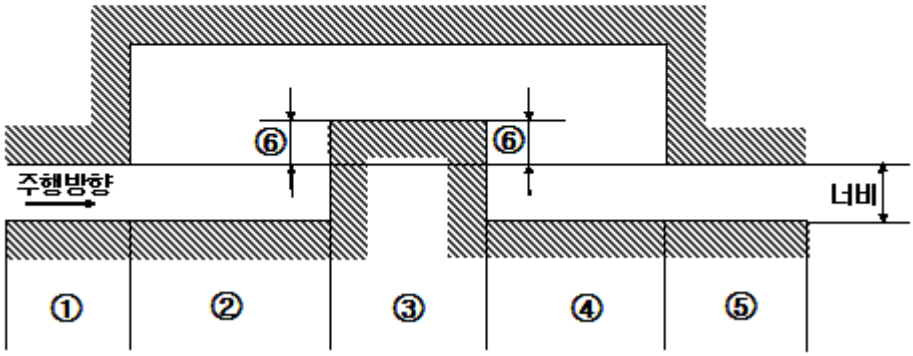
근접 실외후사경의 후방 시계범위(제50조제1항제2호나목3) 관련)



[별표 5의10] <개정 2010.11.10>

사륜형 이륜자동차 장애물회피시험로 형태 및 규격(제64조제3항제3호 관련)

1. 시험로 형태 및 구역



2. 시험로 구역별 규격

(단위: 미터)

구 역	길 이	너 비
1	12	1.1×차량너비+0.25
2	13.5	-
3	11	차량너비+1
4	12.5	-
5	12	1.3×차량너비+0.25(최소 3m 이상)
6	-	1(Lane offset)

[별표 5의11] <개정 2010.11.10>

이륜자동차 손조작식 조종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65조제2항 관련)

표 시 장 치	식별색상	식별단어 또는 약어	식별부호	조명기준
원동기 정지	-	정지 또는 Engine Stop		설치가능
손조작 스로틀	-	스로틀 또는 Throttle		설치가능
원동기 시동	-	시동 또는 Engine Start		설치가능
수동초우크	-	초우크 또는 Choke		설치가능
연료차단밸브 잠김	-	잠김 또는 Closed		설치가능
연료차단밸브 열림	-	열림 또는 Open		설치가능
경음기	-	경음기 또는 Horn		설치가능
차폭등 스위치	-			설치가능
등화장치 조작스위치	-			설치가능
주차등 스위치	-			설치가능

주

1. 운전자가 이륜자동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조종장치를 제외한 그 밖의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는 오프위치에서 운전자가 식별표시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가. 회전식 등화점등장치 및 회전식 전조등, 후미등의 조종장치
 나. 오프위치가 없는 회전식 조종장치
 다. 경음기의 조종장치
2. 제작자등은 식별표시에 다른 식별표시를 추가하여 표시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다.
3.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는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는 전조등이 지속적으로 점등되는 경우에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원동기시동 및 원동기정지를 위한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는 해당 조종장치들이 열쇠잠금장치와 별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5. 등화점등장치에 의하여 조종되는 조종장치는 별도의 식별표시나 조명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5의12] <개정 2010.11.10>

이륜자동차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65조제3항 관련)

표시장치	식별색상	식별단어 또는 약어	식별부호	조명기준
수동초우크 자동표시기	황색			
중립기어 자동표시기	녹색		N	
전조등 자동표시기	청색 녹색		주행빔 변환빔	
안개등 자동표시기	녹색 황색		전방 후방	
방향지시등 자동표시기	녹색	-		-
비상경고신호등 자동표시기	녹색 또는 적색	-		-
연료량자동표시기	황색	연료 또는 Fuel		-
연료계	-			설치 필요
냉각수온도자동표시기	적색	온도 또는 Temp		-
충전자동표시기	적색	전압, 전류, 충전, Volts, Amp 또는 Charge		-
오일압력자동표시기	적색	오일 또는 oil		-
ABS고장자동표시기	황색	자동제어 또는 ABS	ABS	-
속도계	-	km/h 또는 MPH	-	설치 필요

주

1. 제작자는 식별표시에 다른 식별표시를 추가하여 표시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다.
2.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는 표시장치의 식별표시는 전조등이 지속적으로 점등되는 경우에 조명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표시장치의 색상은 배경과 대조되는 색상이어야 한다.
4. 자동표시기는 당해 자동표시기가 지시하는 장치가 작동하는 경우, 비정상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자동출발시의 등화점검의 경우 외에는 빛을 발산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비상경고신호등의 표시장치로서 방향지시등의 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상경고신호등의 식별부호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별표 5의13] <개정 2014.6.10>

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67조제1항제4호·제12호 및 제2항제2호 관련)

1. 마른노면에서의 제동능력 기준

가. 독립적 작동의 경우(단독제동장치): 주제동장치의 각 조종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

구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삼륜형 이륜자동차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
단독 제동 장치 (앞바퀴만을 제동)	제동초속도(km/h)		60(4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m)	적차 상태	0.1V+0.0087V2 이하 (0.1V+0.0111V2 이하)	(0.1V+0.0143V2 이하)	0.1V+0.0105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m/s^2)	적차 상태	4.40 이상 (3.40 이상)	(2.70 이상)	3.60 이상
단독 제동 장치 (뒷바퀴만을 제동)	제동초속도(km/h)		60(4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m)	적차 상태	0.1V+0.0133V2 이하 (0.1V+0.0143V2 이하)	(0.1V+0.0143V2 이하)	0.1V+0.0105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m/s^2)	적차 상태	2.90 이상 (2.70 이상)	(2.70 이상)	3.60 이상
측정 시 조작력(N)			발조작식: 350 이하, 손조작식: 200 이하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상태 포함)		
시험 노면			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건조하며,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노면		
제동 시 자동차 상태			·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2.5m의 노면 너비(3개 바퀴를 가진 자동차의 경우에는 2.5m의 노면 너비에 자동차의 너비를 더한 값)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주)

1. V: 제동초속도(km/h)
2. ()는 배기량 50cc 이하이며 최고속도 50km/h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제동초속도, 제동거리, 평균최대감속도를 말한다.
3. 단독 제동장치: 하나의 차축에만 작동하는 제동장치를 말한다.
4. 이륜형 이륜자동차: 앞바퀴 1개, 뒷바퀴 1개로 구성된 자동차를 말한다.
5. 삼륜형 이륜자동차: 3개의 바퀴로 구성되며 자동차 세로 중심면에 대하여 대칭적으로 배열된 구조의 자동차를 말한다.
6.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 3개의 바퀴로 구성되며 자동차 세로 중심면에 대하여 비대칭적으로 배열된 구조의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형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구조를 갖춘 삼륜형을 포함한다.

7. 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기준 제동거리 또는 기준 평균최대감속도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나. 독립적 작동의 경우(연동제동장치·분할제동장치·보조제동장치): 주제동장치의 각 조종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삼륜형 이륜자동차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
연동제동장치 또는 분할제동장치	제동초속도(km/h)		60(4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m)	적차 상태 및 경적차 상태	$0.1V+0.0076V^2$ 이하 ($0.1V+0.0087V^2$ 이하)	$0.1V+0.0077V^2$ 이하 ($0.1V+0.0087V^2$ 이하)	$0.1V+0.0071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m/s^2)		5.10 이상 (4.40 이상)	5.00 이상 (4.40 이상)	5.40 이상
보조제동장치	제동초속도(km/h)		60(4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m)	적차 상태	$0.1V + 0.0154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m/s^2)		2.50 이상		
측정 시 조작력(N)			발조작식: 350 이하 손조작식: 200 이하	발조작식: 500(350) 이하 손조작식: 200 이하	발조작식: 350 이하 손조작식: 200 이하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상태 포함)		
시험 노면			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건조하며,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노면		
제동 시 자동차 상태			·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2.5m의 노면 너비(3개 바퀴를 가진 자동차의 경우에는 2.5m의 노면 너비에 자동차의 너비를 더한 값)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주)

1. V: 제동초속도(km/h)
2. ()는 배기량 50cc 이하이며 최고속도 50km/h 이하인 이륜자동차의 제동초속도, 제동거리, 평균최대감속도를 말한다.

다. 동시작동의 경우(배기량 50cc 초과하거나 최고속도 50km/h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만 해당한다)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삼륜형 이륜자동차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
제동초속도	10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km/h)				
제동거리 (m)	경적차 상태	$0.0060V^2$ 이하		
측정시 조작력(N)		발조작식: 400 이하 손조작식: 250 이하	발조작식: 500 이하 손조작식: 250 이하	발조작식: 400 이하 손조작식: 250 이하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상태 포함)		
시험 노면		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건조하며,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노면		
제동 시 자동차 상태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2.5m의 노면 너비(3개 바퀴를 가진 자동차의 경우에는 2.5m의 노면 너비에 자동차의 너비를 더한 값)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주 V: 제동초속도(km/h)

라. 동시작동의 경우 고속제동능력(최고속도 시속 125킬로미터 초과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 주제동장치의 각 조종장치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경우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삼륜형 이륜자동차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
제동초속도 (km/h)		·최고속도가 125km/h 초과 200km/h 미만인 자동차: 최고속도의 80퍼센트 ·최고속도가 200km/h 이상인 자동차: 160		
제동거리 (m)	경적차 상태	$0.1V + 0.0067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m/s^2)		5.80 이상		
측정 시 조작력(N)		발조작식: 350 이하 손조작식: 200 이하	발조작식: 500 이하 손조작식: 200 이하	발조작식: 350 이하 손조작식: 200 이하
측정 상태		엔진 연결상태(변속기의 최고 기어비에 연결상태)		
시험 노면		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건조하며,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노면		
제동 시 자동차 상태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2.5m의 노면 너비(3개 바퀴를 가진 자동차의 경우에는 2.5m의 노면 너비에 자동차의 너비를 더한 값)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주 V: 제동초속도(km/h)

2. 젖은 브레이크에 대한 제동능력 기준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삼륜형 이륜자동차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
기준시험	측정 속도 (km/h)	60(배기량 50cc 이하이며 최고속도 50km/h 이하인 경우 4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측정자동차 상태	적차상태 (연동제동장치와 분할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 경적차상태 포함)		
	측정조건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험방법을 이용하여 각 제동장치에 대하여 감속도 2.5~3.0m/s2에 상당하는 조종장치의 조작력으로 3회 실시하여 아래 각 평균값을 측정 1) 측정속도의 80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의 조종장치의 평균조작력		

		(N) 2) 조종장치의 조작 후 0.5초에서 1.0초까지의 평균감속도(m/s2) 3) 완전정지(최종 0.5초 구간 제외)까지의 최대감속도(m/s2)
	측정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상태 포함)
	시험노면	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건조하며,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노면
젖은 브레이크에 대한 제동능력 기준(기준시험 완료 후)	측정조건	· 기준시험과 동일하게 설정(측정속도, 측정자동차 상태, 측정상태, 시험노면) · 시험대상 브레이크에 물분사장치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물을 15ℓ/h의 유속으로 분사하는 상태로 하여 500m 이상의 거리를 주행 후 위 기준시험에서 측정된 조종장치의 평균조작력으로 작동
	기 준	· 평균감속도(m/s2)는 위 기준시험의 측정조건 2)에서의 평균감속도(m/s2)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 최대감속도(m/s2)는 위 기준시험의 측정조건 3)에서의 최대감속도(m/s2)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제동 시 자동차 상태	·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2.5m의 노면 너비(3개 바퀴를 가진 자동차의 경우에는 2.5m의 노면 너비에 자동차의 너비를 더한 값)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주)

1. 젖은 브레이크에 대한 제동능력 기준은 보조제동장치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차제동장치의 경우와 통풍장치(열려진 검사포트)가 없는 드럼브레이크 또는 완전히 밀봉된 디스크브레이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기준시험: 젖은 브레이크에 대한 제동시험 이전에 제동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련의 제동시험을 말한다.

3. 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 기준(배기량 50cc 초과하거나 최고속도 50km/h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만 해당한다)

가. 기준시험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삼륜형 이륜자동차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
제동초속도(km/h)	6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측정자동차 상태	적차상태		
측정조건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험방법을 이용하여 각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분리하여 조작력 측정		
측정 시 조작력(N)	발조작식: 350 이하 손조작식: 200 이하	발조작식: 500 이하 손조작식: 200 이하	발조작식: 350 이하 손조작식: 200 이하
측정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상태 포함)		
시험노면	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건조하며,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노면		

나. 가열절차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삼륜형 이륜자동차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
시험속도	· 단독제동장치: 100㎞/h 또는 최고속도의 7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앞바퀴만을 제동) · 단독제동장치: 80㎞/h 또는 최고속도의 7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뒷바퀴만을 제동) · 연동제동장치 또는 분할제동장치: 100㎞/h 또는 최고속도의 7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시험조건	· 첫 번째 정지 이전에만 100℃ 이하로 하여 위 시험속도의 80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 3.0~3.5m/s^2의 감속도에 상당하는 조종장치의 일정한 조작력으로 각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분리하여 작동 · 각 정지 시 위 시험속도에서 시험속도의 50퍼센트까지는 가장 높은 적절한 기어로 연결된 상태이며, 시험속도의 50퍼센트에서 정지까지는 엔진 미연결상태 · 첫 번째 정지 후 정지연속회수: 10회 · 첫 번째 정지 후 연속정지 시 간격: 1,000m		

주

1. 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 기준은 주차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기준시험: 가열절차 이전에 제동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일련의 제동시험을 말한다.

다. 고온제동능력(가열절차 완료 후)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삼륜형 이륜자동차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
측정조건	· 기준시험과 동일하게 설정(제동초속도, 측정자동차 상태, 측정상태, 시험노면) · 위 가열절차 완료 후 1분 이내 기준시험 시 측정된 조종장치의 조작력 이하로 작동시켜 제동거리 또는 평균최대감속도 측정		
기 준	· 제동거리(m) $S_2 = 1.67 \times S_1 - 0.67 \times 0.1V$ 이하일 것 S_1: 기준시험에서 얻어진 교정제동거리(m) S_2: 위 측정방법에서 얻어진 교정제동거리(m) V: 규정된 제동초속도(㎞/h) · 평균최대감속도(m/s^2)는 기준시험에서 얻어진 평균최대감속도(m/s^2)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제동 시 자동차 상태	·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2.5m의 노면 너비(3개 바퀴를 가진 자동차의 경우에는 2.5m의 노면 너비에 자동차의 너비를 더한 값)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주차제동능력 기준

(주차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만 해당한다)

구 분	삼륜형 이륜자동차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

기 준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8퍼센트인 경사로에서 위 방향 및 아래 방향으로 각각 5분 동안 정지상태를 유지할 것
측정자동차 상태	적차상태
측정 시 조작력(N)	발조작식: 500 이하, 손조작식: 400 이하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상태 포함)
시험 노면	깨끗한 마른노면

5.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만 해당한다)

가. 고마찰로에서의 제동능력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제동초속도 (km/h)		6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 (m)	경적차 상태	$0.0063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m/s^2)		6.17 이상
측정 조건		· 조종장치의 조작력은 속도 10km/h까지 최대사이클로 함. 다만, 2개 바퀴 중 1개 바퀴에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퀴잠김을 발생시키는 힘보다 낮은 조작력으로 한다. · 2개 조종장치로 동시에 각 브레이크 작동. 모든 바퀴가 작동하는 제동장치의 경우에는 1개 조종장치로 브레이크 작동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시험 노면		고마찰로
제동 시 자동차 상태		·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2.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주

1. V: 제동초속도(km/h)
2. 고마찰로: 0.9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건조하며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노면을 말한다.
3. 바퀴잠김: 제동 시 바퀴의 회전이 완전히 정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4. 최대사이클: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직접조절바퀴의 잠김을 방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제동력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저마찰로에서의 제동능력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제동초속도(km/h)		6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 (m)	경적차 상태	$0.0056V^2 / P$ 이하 (P : 최대제동계수)
평균최대		6.87 × P 이상 (P : 최대제동계수)

감속도(m/s^2)	
측정 조건	· 조종장치의 조작력은 속도 10㎞/h까지 최대사이클로 함. 다만, 2개 바퀴 중 1개 바퀴에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퀴잠김을 발생시키는 힘보다 낮은 조작력으로 한다. · 2개 조종장치로 동시에 각 브레이크 작동. 모든 바퀴가 작동하는 제동장치의 경우에는 1개 조종장치로 브레이크 작동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시험 노면	저마찰로
제동 시 자동차 상태	·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2.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주

1. V: 제동초속도(㎞/h)
2. 저마찰로: 0.45 이하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노면을 말한다.
3. 최대제동계수 : 회전하는 타이어의 최대감속도를 기준으로 타이어와 노면마찰의 수치를 말한다.

다. 고마찰로 및 저마찰로에서의 바퀴잠김 확인시험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제동초속도(㎞/h)	· 고마찰로: 80 또는 최고속도의 8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 저마찰로: 60 또는 최고속도의 8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측정 조건	· 조종장치의 조작력은 속도 10㎞/h까지 최대사이클로 함 · 각 조종장치를 분리하여 작동.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2개의 제동장치에 모두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2개의 조종장치의 동시작동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시험 노면	고마찰로 및 저마찰로
제동 시 자동차 상태	·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2.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라. 고마찰로에서 저마찰로 통과 시 바퀴잠김 확인시험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제동 시 통과속도 (㎞/h)	50 또는 최고속도의 5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측정 조건	· 조종장치의 조작력은 속도 10㎞/h까지 최대사이클로 함 · 각 조종장치를 분리하여 작동.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2개의 제동장치에 모두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2개의 조종장치의 동시작동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시험 노면	고마찰로 및 저마찰로
제동 시	·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2.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

자동차 상태	할 것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마. 저마찰로에서 고마찰로 통과 시 바퀴잠김 확인시험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제동 시 통과속도 (㎞/h)	50 또는 최고속도의 5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측정 조건	· 조종장치의 조작력은 속도 10㎞/h까지 최대사이클로 함 · 각 조종장치를 분리하여 작동,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2개의 제동장치에 모두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2개의 조종장치의 동시작동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시험 노면	저마찰로 및 고마찰로 (고마찰로의 경우, 최대제동계수가 0.8 이상일 것)
제동 시 자동차상태	·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2.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저마찰로에서 고마찰로의 경계지점에 뒷바퀴 통과 후 1초 이내 자동차의 감속도가 증가할 것

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고장 시 제동능력(주제동장치의 각 조종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적합하여야 할 기준)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제동초속도(㎞/h)		6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m)	적차 및 경적차 상태	$0.1V+0.0133V^2$ 이하
평균최대감속도 (m/s^2)		2.90 이상
측정시 조작력(N)		발조작식 : 350 이하, 손조작식 : 200 이하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 엔진 연결상태 포함)
측정 조건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전기장치를 고장상태로 설정
시험 노면		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건조하며,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노면
제동 시 자동차 상태		· 제67조제9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2.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주 V: 제동초속도(㎞/h)

6. 분할제동장치의 유압계통 고장 시 제동능력 기준(분할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만 해당한다)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삼륜형 이륜자동차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

제동초속도(km/h)		50, 100 또는 최고속도의 8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m)	정적차 상태	$0.1V + 0.0117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m/s^2)	정적차 상태	3.30 이상
측정시 조작력(N)		발조작식 : 400 이하, 손조작식 : 250 이하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 엔진 연결상태 포함)
측정 조건		· 유압시스템의 계통중 하나의 계통에서 누설고장 시 잔류하는 다른 계통으로 제동성능 확인 · 계통을 변경하여 누설시켜 반복시험 실시
시험 노면		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건조하며,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노면
제동 시 자동차 상태		· 제67조제1항제8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2.5m의 노면 너비(3개 바퀴를 가진 자동차의 경우에는 2.5m의 노면 너비에 자동차의 너비를 더한 값)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주 V: 제동초속도(km/h)

7. 동력지원제동장치의 동력지원 고장 시 제동능력 기준(주제동장치의 각 조종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적합하여야 할 기준)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삼륜형 이륜자동차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
단독 제동 장치	제동초속도 (km/h)		6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 (m)	적차 상태	$0.1V+0.0133V^2$ 이하	-	$0.1V+0.0105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 (m/s^2)	적차 상태	2.90 이상	-	3.60 이상
연동 제동 장치 또는 분할 제동 장치	제동초속도 (km/h)		6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제동거리 (m)	적차 상태	$0.1V + 0.0154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 (m/s^2)	적차 상태	2.50 이상		
측정시 조작력(N)			발조작식: 350 이하	발조작식: 500 이하	발조작식: 350 이하

	손조작식: 200 이하	손조작식: 200 이하	손조작식: 200 이하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상태 포함)		
측정 조건	· 동력지원이 작동되지 아니하는 주제동장치에 대하여 제동성능 확인		
시험 노면	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건조하며,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노면		
제동 시 자동차 상태	·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2.5m의 노면 너비(3개 바퀴를 가진 자동차의 경우에는 2.5m의 노면 너비에 자동차의 너비를 더한 값)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비 고	· 동력지원이 1개 초과 조종장치에 의해 작동되는 경우에는 각 조종장치를 분리하여 작동시켜 위 성능에 적합할 것		

주

1. V: 제동초속도(㎞/h)
2. 동력지원제동장치: 제동력 발생을 위한 에너지가 하나 이상의 에너지공급장치(예로, 진공부스터를 갖추어 지원되는 진공압)에 의하여 지원되어 운전자의 근육힘으로 작동되는 제동장치를 말한다.
3. 동력지원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만 해당한다.

[별표 5의14] <개정 2011.12.23>

이륜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제82조제3항 관련)

1. 이륜자동차의 전조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순번	종류	형식	전력(와트)		순번	종류	형식	전력(와트)	
			6볼트계	12볼트계				6볼트계	12볼트계
1	필라멘트 전구	R2	45/40	45/40	22	필라멘트 전구	HB4A	×	51
2		H1	55	55	23		HIR1	×	65
3		H3	55	55	24		HIR2	×	55
4		H4	35/35	35/35 또는 60/55	25		H27W/1	×	27
5		H7	×	55	26		H27W/2	×	27
6		H8	×	35	27		HS1	35	35
7		H8B	×	35	28		HS2	15	15
8		H9	×	65	29		HS5	×	35/30
9		H9B	×	65	30		S1	25/25	25/25
10		H10	×	45	31		S2	35/35	35/35
11		H11	×	55	32		S3	15	15
12		H11B	×	55	33	가스방전식 전구	D1S	×	35
13		H12	×	53	34		D2S	×	35
14		H13	×	60/55	35		D1R	×	35
15		H14	×	60/55	36		D2R	×	35
16		H15	×	55	37		D3S	×	35
17		H16	×	19					
18		HB2	×	65/42	39		D3R	×	35
19		HB3	×	60	40		D4S	×	35
20		HB3A	×	60			D4R	×	35
21		HB4	×	51	41	LED	-	-	-

주) 1) 전력란의 "00/00"은 이중필라멘트 구조로 "주행빔/변환빔" 전력기준을 구분하여 적용하며, "00"는 주행빔 및 변환빔 구분 없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2) 전력란의 "×"는 사용불가를 의미하며, "-"는 전력제한기준의 적용 예외를 의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3) 위 표 광원의 색상은 해당 등화장치에 적합한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2. 이륜자동차의 앞면 안개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순번	종류	형식	전력(와트)	
			6볼트계	12볼트계
1	필라멘트 전구	H1	55	55
2		H3	55	55
3		H7	×	55
4		H8	×	35
5		H10	×	42
6		H11	×	55
7		H12	×	53
8		H16	×	19
9		H27W/1	×	27
10		H27W/2	×	27
11	LED	-	-	-

3. 이륜자동차의 후퇴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순번	종류	형식	전력(와트)	
			6볼트계	12볼트계
1	필라멘트전구	P21W	21, 27 또는 28	21, 27 또는 28
2		PY21W	21	21
3	LED	-	-	-

4. 이륜자동차의 주간주행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순번	종류	형식	전력(와트)	
			6볼트계	12볼트계
1	필라멘트 전구	P13W	×	13
2		PSX26W	×	24
3		H15	×	15
4		P19W	×	19
5		PS19W	×	19
6		P21W	21	21
7		P21/5W	21/4	21/4
8	LED	-	-	-

[별표 5의15] <개정 2013.3.23>

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 및 구성부품 기준(제69조제1항 관련)

1. 연료장치 및 그 구성부품은 연료의 사용조건을 적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열적·기계적·화학적 특성에 맞게 제작되어야 하며, 인접한 부속 등과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부식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연료장치는 정해진 압력에서 기밀시험을 통과해야 할 것. 이 경우 정해진 압력은 평상시의 압력의 2배이며, 최소 130kPa의 절대압력과 동등한 압력이어야 한다.
4. 평상시 압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압력은 자동적으로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오리피스, 안전밸브 등)로 조절되어야 하며, 발화의 위험이 없을 것
5. 연료장치를 거꾸로 뒤집은 경우에도 연료 누유량은 30g/min을 초과하지 않을 것
6. 금속재질 이외의 연료장치의 경우에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비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5의16] <신설 2011.12.23>

이륜자동차의 손잡이 설치기준(제71조제1항제2호 후단 관련)

1. 가죽 손잡이가 설치된 경우
 가. 승차인이 손쉽게 이용 가능할 것
 나. 손잡이는 진행방향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어야 하며, 손잡이 중앙부위 하단부에 2MPa의 최대압력에서 정적으로 적용된 2kN의 수직견인 하중을 가했을 때 끊어지지 않을 것
2. 그 밖의 손잡이가 설치된 경우
 가.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손잡이가 2개인 경우
 손잡이는 진행방향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어야 하며, 각각의 손잡이 중앙부위 하단부에 1MPa의 최대압력에서 정적으로 적용된 1kN의 수직견인 하중을 가했을 때 끊어지지 않을 것

[별표 5의17] <신설 2012.2.15>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광도기준(제75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관련)

1. 광도측정시 공통 사항

가.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V"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고 시험스크린 및 지면에 동시에 수직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2) "H"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는 지면에 수평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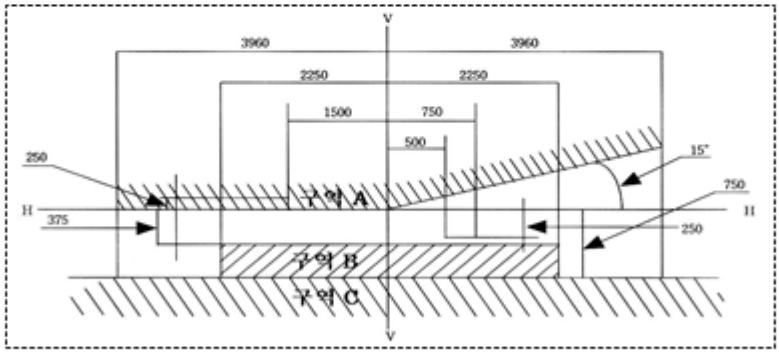
3) "측정점"이란 시험스크린 상에서 광도가 측정되는 점들로서 H선과 V선의 교차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표시하는 점을 말한다. 이 경우 측정점을 표시하는 "U" 및 "D"는 H선 위쪽과 아래쪽의 거리를 말하고, "L" 및 "R"은 V선 왼쪽과 오른쪽의 거리를 말한다.

나. 시험스크린의 위치는 등화장치의 광원에서 25미터의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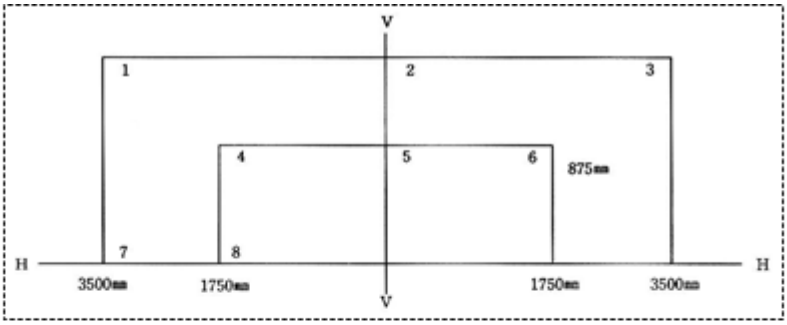
다. 중복된 측정구역의 경계선에는 두 광도 기준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라. 변환빔의 경우 선명한 컷-오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

마. 측정점·측정구역 및 컷-오프선(제2호다목 및 바목은 제외한다)은 다음 그림과 같다.



바. 마목에 따른 그림의 측정구역 A안의 각 측정점에 따른 변환빔의 광도값(제2호 나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광도범위안에 있어야 한다.



광도범위 : 62칸델라 ≦ 1, 2, 3, 7 ≦ 437칸델라

125칸델라 ≦ 4, 5, 6, 8 ≦ 437칸델라

2. 전구형식 및 광속에 따른 광도기준

가. 전구형식이 R2인 필라멘트전구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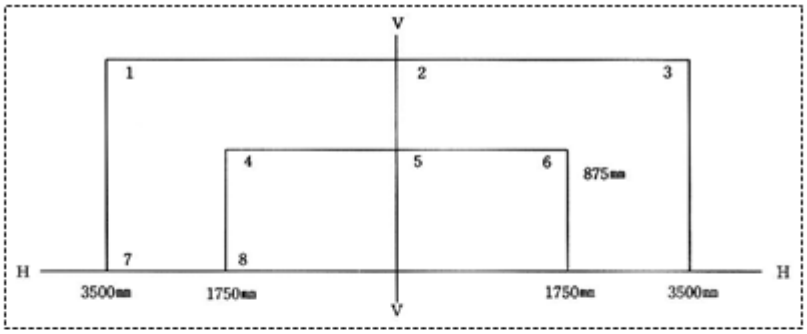
측정점 및 측정구역 (밀리미터)		광도(칸델라)
주행빔	H-V	최대광도의 90% 이상
	H-1125L	10,000 이상
	H-1125R	10,000 이상
	H-2250L	2,500 이상
	H-2250R	2,500 이상
	최대광도값 위치	20,000 이상 112,500 이하
변환빔	250U-1500L	250 이하
	250D-500R	3,750 이상
	375D-1500L	3,750 이상
	750D-3960L, 3960R	938 이상
	구역 A	438 이하
	구역 B	1,250 이상
	구역 C	12,500 이하

나. 전구형식이 H1, H2, H3, H4, HB3, HB4, H7, H8, H9, HIR1, HIR2, H11인 할로겐 전구의 경우

측정점 및 측정구역 (밀리미터)		광도(칸델라)
주행빔	H-V	최대광도의 80% 이상
	H-1125L	15,000 이상
	H-1125R	15,000 이상
	H-2250L	3,750 이상

	H-2250R	3,750 이상
	최대광도값 위치	30,000 이상 150,000 이하
변환빔	250U-1500L	250 이하
	250D-500R	7,500 이상
	250D-1500L	7,500 이상
	375D-1500L	9,375 이하
	375D-750R	7,500 이상
	375D-V	3,750 이상
	750D-3960L, 3960R	1,250 이상
	구역 A	438 이하
	구역 B	1,875 이상
	구역 C	375D-750R, 375D-1500L의 2배 이하일 것

※ 비고: 측정구역 A안의 각 측정점에 따른 변환빔의 광도값은 다음의 광도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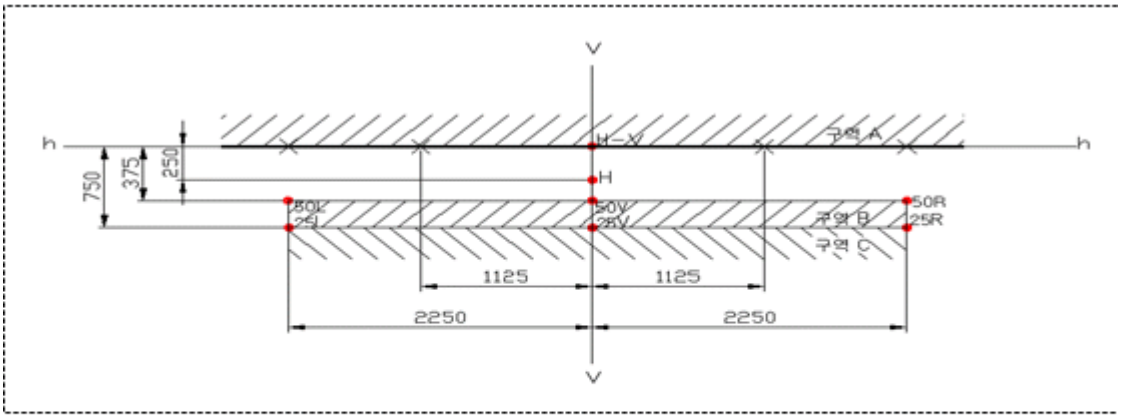
광도범위: 1 + 2 + 3 ≦ 187칸델라
4 + 5 + 6 ≦ 375칸델라
62칸델라 ≦ 7 ≦ 437칸델라
125칸델라 ≦ 8 ≦ 437칸델라

다. 전구형식이 S1 및 S2인 필라멘트전구의 경우

측정점 및 측정구역 (밀리미터)		광도(칸델라)
주행빔	H-V	최대광도의 90% 이상
	H-1125L	7,500 이상
	H-1125R	7,500 이상
	H-2250L	1,875 이상
	H-2250R	1,875 이상

	최대광도값 위치	20,000 이상
변환빔	H-H선 윗부분	438 이하
	375D-2250L	938 이상
	375D-2250R	938 이상
	375D-V	1,875 이상
	750D-2250L, 2250R	1,875 이상
	구역 B	938 이상

※ 비고: 측정점·측정구역 및 컷-오프선은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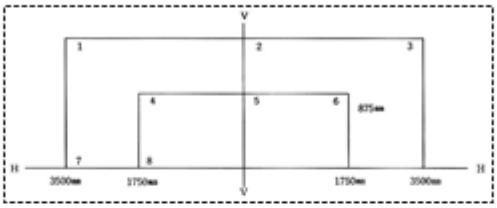
라. 전구형식이 HS1인 할로겐전구의 경우

측정점 및 측정구역 (밀리미터)		광도(칸델라)
주행빔	H-V	최대광도의 90% 이상
	H-1125L	10,000 이상
	H-1125R	10,000 이상
	H-2250L	2,500 이상
	H-2250R	2,500 이상
	최대광도값 위치	20,000 이상 150,000 이하
변환빔	250U-1500L	188 이하
	250D-1500L	3,750 이상
	375D-1500L	3,750 이상
	750D-3960L, 3960R	938 이상
	구역 A	438 이하
	구역 B	1,250 이상
	구역 C	12,500 이하

마. 전구형식이 필라멘트전구 및 할로겐전구인 경우

측정점 및 측정구역 (밀리미터)		광도(칸델라)	
		필라멘트전구	할로겐전구
주행빔	H-V	최대광도의 80% 이상	
	H-1125L	10,000 이상	15,000 이상
	H-1125R	10,000 이상	15,000 이상
	H-2250L	2,500 이상	3,750 이상
	H-2250R	2,500 이상	3,750 이상
	최대광도값 위치	20,000 이상 150,000 이하	30,000 이상 150,000 이하
변환빔	250U-1500L	250 이하	250 이하
	250D-500R	3,750 이상	7,500 이상
	250D-1500L	7,500 이하	7,500 이하
	375D-1500L	9,375 이하	9,375 이하
	375D-750R	3,750 이상	7,500 이상
	375D-V	-	3,750 이상
	750D-3960L, 3960R	938 이상	1,250 이상
	구역 A	438 이하	438 이하
	구역 B	1,250 이상	1,875 이상
	구역 C	12,000 이하	375D-750R, 375D-1500L의 2배 이하

※ 비고: 측정구역 A안의 각 측정점에 따른 변환빔의 광도값은 다음의 광도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광도범위 : 1 + 2 + 3 ≦ 187칸델라
4 + 5 + 6 ≦ 375칸델라
62칸델라 ≦ 7 ≦ 437칸델라
125칸델라 ≦ 8 ≦ 437칸델라

바. 전구의 광속분류에 따른 경우

측정점 및 측정구역 (밀리미터)		광도(칸델라)			
		Class A	Class B	Class C	Class D
주행빔	H-V	최대광도의 80% 이상			
	H-1125L	-	7,500 이상	-	-
	H-1125R	-	7,500 이상	-	-
	H-2250L	-	1,875 이상	-	-
	H-2250R	-	1,875 이상	-	-
	H-131L, 131R	-	-	8,000 이상	12,000 이상
	H-263L, 263R	-	-	2,600 이상	4,000 이상
	H-396L, 396R	-	-	1,600 이상	2,400 이상
	H-530L, 530R	-	-	500 이상	800 이상
	B7U-V	-	-	800 이상	1,200 이상
	175D-V	-	-	최대광도의 30%이하	
	최대광도값 위치	-	20,000 이상 150,000 이하	20,000 이상 112,500 이하	32,000 이상 112,500 이하
변환빔	H-H 윗부분	200이하	438 이하	-	-
	375D-2250L, 2250R	-	938 이상	-	-
	375D-V	-	1,875 이상	-	-
	750D-2250L, 2250R	800이상	1,875 이상	-	-
	1500D-2250L, 2250R	400이상	-	-	-
	375D-1530L, 1530R	-	-	1,438 이상 9,625 이하	
	375D-V	-	-	1,813 이상	3,625 이상
	218U-655L, 655R	-	-	675 이하	
	B73U-6700L, 6700R	-	-	400 이상	800 이상
	174BU-9100L, 9100R	-	-	119 이상	238 이상
	H-V	-	-	1,200 이하	
	B73D-4000L~4000R	-	-	1,000 이상	
	3069U-4408L~440	-	-	188 이하	

	BR			
	44DBU-44DBL~44DBR	-	-	94 이하
	V	-	-	94 이하
	174BU-3513L, 3513R	-	-	62.5 이상 675 이하
	174BU-V	-	-	62.5 이상 675 이하
	B73U-174BL, 174BR	-	-	125 이상 675 이하
	B73U-V	-	-	125 이상 675 이하
	H-3513L, 3513R	-	-	62.5 이상
	H-174BL, 174BR	-	-	125 이상 675 이하
	구역 1		-	675 이하
	구역 2		-	187.5 이하
	구역 3		-	187.5 이하
	구역 4	-	93B이상	-

※ 비고

1. 광속의 분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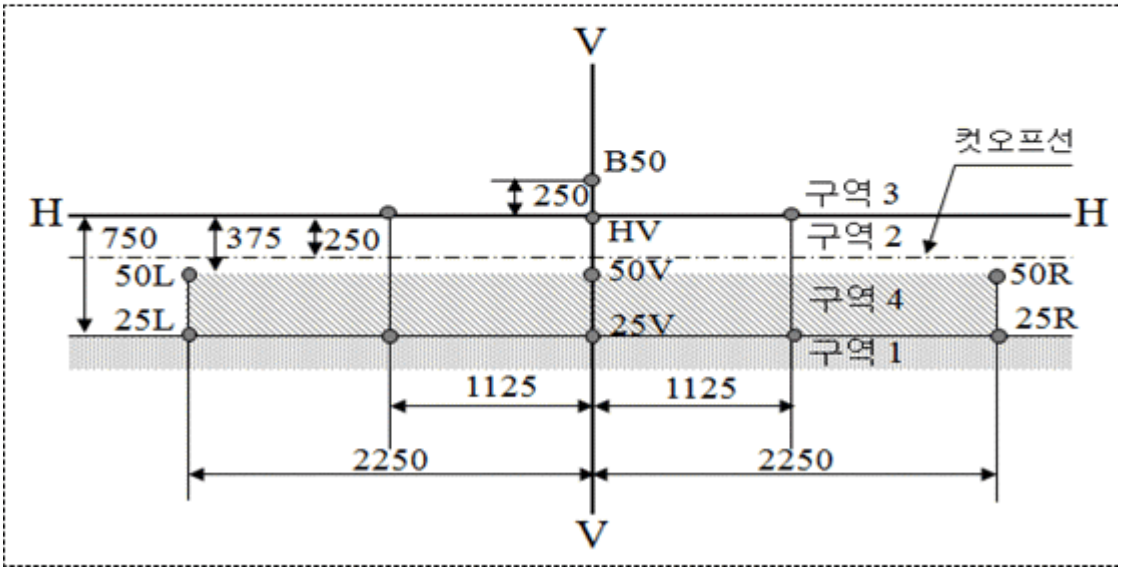
가. Class A: 전구의 광속이 600루멘(lm) 미만인 필라멘트전구

나. Class B: 전구의 광속이 600루멘(lm) 미만인 할로겐전구

다. Class C: 엔진용량이 125cc 이하인 이륜자동차에 사용되며, 전구의 광속이 2천루멘(lm) 미만인 모든 형식의 전구(가스방전식 전구는 제외한다)

라. Class D: 엔진용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사용되며, 전구의 광속이 2천루멘(lm) 미만인 모든 형식의 전구

2. 측정점·측정구역 및 컷-오프선은 다음 그림과 같다.



[별표 5의18] <신설 2012.2.15>

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 색도기준

(제75조제2항제2호·제3항제2호, 제75조의3제1항제2호·제2항제2호, 제76조제2호, 제77조제2호, 제77조의2제2호, 제78조제2호, 제79조제2호 관련)

측정방법	기 준
분광측색방법, 자극치 직독방법	· 백색 청색경계 : x≥0.310 황색경계 : x≤0.500 녹색경계 : y≤0.150+0.640x y≤0.440 보라색경계 : y≥0.050+0.750x 적색경계 : y≥0.382 · 황색 y≥0.138+0.580x, y≥0.440, y≤1.290x-0.100 y≥-x+0.940, y≥0.440, y≤-x+0.992 · 호박색 y≤x-0.120, y≥0.390, y≥0.790-0.670x · 적색 y≤0.335, z≤0.008

※ 비고

1. "분광측색방법"이란 반사된 빛을 분광하여 파장별 반사율을 계산하여 3자극치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자극치 직독방법"이란 분광측색기에 의해 수광기의 출력으로부터 3자극치를 직접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x, y, z는 색도좌표를 말한다.

[별표 5의19] <신설 2012.2.15>

이륜자동차의 후미등 광도기준(제77조제1호 관련)

1. 최대광도

4칸델라 이상 12칸델라 이하일 것

2. 각 측정점에서의 최소광도

측정점(각도)		최소광도(칸델라)
20L	5U	0.4 이상
	5D	0.4 이상
5L	10U	0.8 이상
	10D	0.8 이상
10L	5U	0.8 이상
	H	1.4 이상
	5D	0.8 이상
V	5U	2.8 이상
5L	H	3.6 이상
V		4.0 이상
5R		3.6 이상
V	5D	2.8 이상
10R	5U	0.8 이상
	H	1.4 이상
	5D	0.8 이상
5R	10U	0.8 이상
	10D	0.8 이상
20R	5U	0.4 이상
	5D	0.4 이상

※ 비고: "측정점"이란 시험스크린 상에서 광도가 측정되는 점들로서 H선과 V선을 기준으로 한 각도(°)로 표시되는 점을 말한다. 이

경우 측정점을 표시하는 "U" 및 "D"는 H선 위쪽과 아래쪽의 각도(°)를 말하고, "L" 및 "R"은 V선 왼쪽과 오른쪽의 각도(°)를 말한다.

[별표 5의20] <신설 2012.2.15>

이륜자동차의 차폭등 광도기준(제77조의2제1호 관련)

1. 최대광도

4칸델라 이상 60칸델라 이하일 것. 다만, 전조등과 결합되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칸델라 이하이어야 한다.

2. 각 측정점에서의 최소광도

측정점(각도)		최소광도(칸델라)
20L	5U	0.4 이상
	5D	0.4 이상
5L	10U	0.8 이상
	10D	0.8 이상
10L	5U	0.8 이상
	H	1.4 이상
	5D	0.8 이상
V	5U	2.8 이상
5L	H	3.6 이상
V		4.0 이상
5R		3.6 이상
V	5D	2.8 이상
10R	5U	0.8 이상
	H	1.4 이상
	5D	0.8 이상
5R	10U	0.8 이상
	10D	0.8 이상
20R	5U	0.4 이상
	5D	0.4 이상

※ 비고: "측정점"이란 시험스크린 상에서 광도가 측정되는 점들로서 H선과 V선을 기준으로 한 각도(°)로 표시되는 점을 말한다. 이 경우 측정점을 표시하는 "U" 및 "D"는 H선 위쪽과 아래쪽의 각도(°)를 말하고, "L" 및 "R"은 V선 왼쪽과 오른쪽의 각도(°)를

말한다.

[별표 5의21] <신설 2012.2.15>

이륜자동차의 제동등 광도기준(제78조제1호 관련)

1. 최대광도

40칸델라 이상 185칸델라 이하일 것

2. 각 측정점에서의 최소광도

측정점(각도)		최소광도(칸델라)
20L	5U	4 이상
	5D	4 이상
5L	10U	8 이상
	10D	8 이상
10L	5U	8 이상
	H	14 이상
	5D	8 이상
V	5U	28 이상
5L	H	36 이상
V		40 이상
5R		36 이상
V	5D	28 이상
10R	5U	8 이상
	H	14 이상
	5D	8 이상
5R	10U	8 이상
	10D	8 이상
20R	5U	4 이상
	5D	4 이상

※ 비고: "측정점"이란 시험스크린 상에서 광도가 측정되는 점들로서 H선과 V선을 기준으로 한 각도(°)로 표시되는 점을 말한다. 이 경우 측정점을 표시하는 "U" 및 "D"는 H선 위쪽과 아래쪽의 각도(°)를 말하고, "L" 및 "R"은 V선 왼쪽과 오른쪽의 각도(°)를 말한다.

[별표 5의22] <신설 2012.2.15>

이륜자동차의 방향지시등 광도기준(제79조제1호 관련)

1. 앞면방향지시등

가. 앞면방향지시등의 최대광도

구 분	최대 광도 (칸델라)
형식 A	700 이하
형식 B	700 이하
형식 C	800 이하
형식 D	860 이하

※ 비고

1. 형식 A: 전조등과의 거리가 75 mm 이상인 경우
2. 형식 B: 전조등과의 거리가 40 mm 이상인 경우
3. 형식 C: 전조등과의 거리가 20 mm 이상인 경우
4. 형식 D: 전조등과의 거리가 20 mm 이하인 경우

나. 앞면방향지시등의 최소광도

측정점(각도)		최소광도(칸델라)			
		형식 A	형식 B	형식 C	형식 D
20L	5U	9 이상	17.5 이상	25 이상	40 이상
	5D	9 이상	17.5 이상	25 이상	40 이상
5L	10U	18 이상	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10D	18 이상	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10L	5U	18 이상	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H	32.4 이상	63 이상	90 이상	140 이상
	5D	18 이상	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V	5U	63 이상	122.5 이상	175 이상	280 이상
5L	H	81 이상	157.5 이상	225 이상	360 이상
V		90 이상	175 이상	250 이상	400 이상
5R		81 이상	157.5 이상	225 이상	360 이상
V	5D	63 이상	122.5 이상	175 이상	280 이상
10R	5U	18 이상	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H	32.4 이상	63 이상	90 이상	140 이상
	5D	18 이상	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5R	10U	18 이상	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10D	18 이상	35 이상	50 이상	80 이상
20R	5U	9 이상	17.5 이상	25 이상	40 이상
	5D	9 이상	17.5 이상	25 이상	40 이상

2. 뒷면방향지시등

가. 뒷면방향지시등의 최대광도

350칸델라 이하일 것

나. 뒷면방향지시등의 최소광도

측정점(각도)		최소광도(칸델라)
20L	5U	5 이상
	5D	5 이상
5L	10U	10 이상
	10D	10 이상
10L	5U	10 이상
	H	18 이상
	5D	10 이상
V	5U	35 이상
5L	H	45 이상
V		50 이상
5R		45 이상
V	5D	35 이상
10R	5U	10 이상
	H	18 이상
	5D	10 이상
5R	10U	10 이상
	10D	10 이상
20R	5U	5 이상
	5D	5 이상

※ 비고: "측정점"이란 시험스크린 상에서 광도가 측정되는 점들로서 H선과 V선을 기준으로 한 각도(°)로 표시되는 점을 말한다. 이 경우 측정점을 표시하는 "U" 및 "D"는 H선 위쪽과 아래쪽의 각도(°)를 말하고, "L" 및 "R"은 V선 왼쪽과 오른쪽의 각도(°)를 말한다.

[별표 5의23] <신설 2012.2.15>

이륜자동차의 후부반사기 등 반사성능 기준(제80조제1항제1호 관련)

관측각(각도)	입사각(각도)	최소 반사성능(mcd/lx)	
		적색	호박색
0.33	H-V	300 이상	750 이상
	H-10U, 10D	200 이상	500 이상
	20R, 20L-5U	100 이상	250 이상
	20R, 20L-5D	100 이상	250 이상
1.5	H-V	5 이상	12.5 이상
	H-10U, 10D	2.8 이상	7 이상
	20R, 20L-5U	2.5 이상	6.25 이상
	20R, 20L-5D	2.5 이상	6.25 이상

※ 비고

1. "입사각"이란 반사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투광기의 조사된 빛이 입사하는 각도로서 H선과 V선을 기준으로 한 각도(°)로 표시되는 점을 말한다. 이 경우 측정점을 표시하는 "U" 및 "D"는 H선 위쪽과 아래쪽의 각도(°)를 말하고, "L" 및 "R"은 V선 왼쪽과 오른쪽의 각도(°)를 말한다.
2. "반사성능"은 측정된 반사광의 광도(mcd)를 투광기에 의해 조사된 시험품의 조도(lx)로 나눈 값을 말한다.

[별표 5의24] <신설 2014.6.10>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제27조제4항 관련)

1.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설치기준

가. 경고등은 운전자가 낮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다른 경고등과 구별되어야 하며, 별표 2의 안전띠자동표시기 식별표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경고음은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지속적인 음향·음성 또는 주기적인 음향·음성이어야 한다. 이 경우 음성 경고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작동기준

가. 1단계 경고

자동차 정지상태에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시동장치 열쇠가 원동기 작동위치에 있을 경우에 4초 이상 경고등이 작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고음도 추가 작동하게 할 수 있다.

나. 2단계 경고

자동차가 정상 주행상태(시속 10킬로미터 이상으로 전방주행 중인 상태)에서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기 전에 경고등 및 경고음이 작동하기 시작하여야 한다. 이 때 경고등 및 경고음은 30초(주기적인 경고 사이의 간격이 3초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동시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상 작동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주행거리 : 500미터

2) 자동차의 속도 : 시속 25킬로미터

3) 자동차 주행시간 : 60초

[별표 5의25] <신설 2014.2.21>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제56조의2제2항 관련)

1. 사고기록장치 장착 일반기준

가. 사고기록장치는 제5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먼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 표 제2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운행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나. 사고기록장치는 가목에 따른 운행정보의 기록을 2회 이상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그 밖에 사고기록장치 운행정보의 기록방법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사고기록장치 기록 항목

가. 사고기록장치에는 다음과 같은 운행정보가 기록되어야 한다.

순번	기록항목	기록 간격·시간	초당 기록회수
1)	진행방향 속도변화 누계	다음 각 목 중 짧은 시간 가. 0초부터 0.25초까지 나. 0초부터 사고종료시점 + 0.03초 까지	100
2)	진행방향 최대 속도변화값	다음 각 목 중 짧은 시간 가. 0초부터 0.30초까지 나. 0초부터 사고종료시점 + 0.03초 까지	해당 없음
3)	최대 속도변화값 시간		
4)	자동차 속도	-5초부터 0초까지	2
5)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	-5초부터 0초까지	2
6)	제동페달 작동 여부	-5초부터 0초까지	2
7)	시동장치의 원동기 작동위치 누적 횟수	-1초 시점	해당 없음
8)	정보추출 시 시동장치의 원동기 작동위치 누적 횟수	정보 추출시점	해당 없음
9)	운전석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	-1초 시점	해당 없음
10)	정면 에어백 경고등 점등 여부	-1초 시점	해당 없음
11)	운전석 정면 에어백 전개 시간(다단 에어백은 1단계 전개 시간)	0초부터 전개시점까지	해당 없음
12)	조수석 정면 에어백 전개 시간(다단 에어백은 1단계 전개 시	0초부터 전개시점까지	해당 없음

	간)		
13)	다중사고 횟수	다중사고 종료시점	해당 없음
14)	다중사고 간격	시간 간격	해당 없음
15)	1)부터 14)까지 항목의 정상 기록완료 여부	예 또는 아니오	해당 없음

주)

1. "0초"란 사고기록 시 기록간격이나 시간간격에 대한 기준시점으로서 다음 각 목 중 먼저 발생된 경우의 시점을 말한다.
 가. 에어백제어장치의 "켜짐(wake-up)" 기능을 가진 경우에는 에어백 제어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경우
 나. 에어백제어장치의 연속작동 제어 프로그램을 가진 경우에는 0.02초 이내에 진행방향 속도 변화 누계가 시속 0.8킬로미터 이상 도달하는 경우(측면방향 속도변화가 기록되는 자동차는 0.005초 이내에 측면방향 속도 변화 누계가 시속 0.8킬로미터 이상 도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에어백 또는 좌석안전띠 프리로딩 장치 등 비가역안전장치가 전개되는 경우
2. "사고종료시점"이란 사고기록을 종료하는 기준시점으로 다음 각 목 중 먼저 발생된 경우의 시점을 말한다.
 가. 0.02초 이내에 진행방향 속도 변화 누계가 시속 0.8킬로미터 미만일 경우. 다만, 측면방향 속도 변화가 기록되는 자동차는 0.02초 이내에 진행방향과 측면방향의 합성 속도 변화 누계가 시속 0.8킬로미터 미만일 경우를 말한다.
 나. 에어백제어장치의 에어백 등 비가역안전장치 제어 프로그램이 재설정되는 경우
3. "제동페달"에는 발조작식 외에 다른 형태의 조작방식을 포함한다.
4. "시동장치의 원동기 작동위치 누적횟수"란 사고시점까지 시동장치의 원동기 작동위치 누적 횟수를 말한다.
5. "정보 추출 시 시동장치의 원동기 작동위치 누적횟수"란 정보 추출시점까지 시동장치의 원동기 작동위치 누적횟수를 말한다.
6. "다중사고 횟수"란 교차로 사고 등 5초 이내에 발생한 연속 사고의 횟수를 말한다.
7. "다중사고 간격"이란 첫 번째 사고의 0초부터 두 번째 사고의 0초까지의 시간 간격을 말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항목 이외의 아래 표의 기록항목과 같은 운행정보를 추가로 기록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기록방법에 적합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순번	기록 항목	기록 간격·시간	초당 기록회수
1)	측면방향 속도변화 누계	다음 각 목 중 짧은 시간	100

		가. 0초부터 0.25초까지 나. 0초부터 사고종료시점 +0.03초까지	
2)	측면방향속도 최대변화값	다음 각 목 중 짧은 시간 가. 0초부터 0.30초까지 나. 0초부터 사고종료시점 +0.03초까지	해당 없음
3)	측면방향속도 최대변화값 시간		
4)	합성속도 최대변화값 시간		
5)	자동차 전복경사각도	-1초부터 1초 이상까지	10
6)	엔진 회전수(RPM)	-5초부터 0초까지	2
7)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ABS) 작동 여부		
8)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작동 여부		
9)	조향핸들 각도		
10)	조수석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	-1초 시점	해당 없음
11)	조수석 정면에어백 작동상태(켜짐, 꺼짐, 자동)	-1초 시점	해당 없음
12)	운전석 정면 다단 에어백의 2단계부터 단계별 전개 시간	0초부터 전개시점까지	해당 없음
13)	조수석 정면 다단 에어백의 2단계부터 단계별 전개 시간		
14)	운전석 정면 다단 에어백의 2단계부터 단계별 추진체 강제처리 여부		
15)	조수석 정면 다단 에어백의 2단계부터 단계별 추진체 강제처리 여부		
16)	운전석 측면 에어백 전개 시간	0초부터 전개시점까지	해당 없음
17)	조수석 측면 에어백 전개 시간		
18)	운전석 커튼 에어백 전개 시간		
19)	조수석 커튼 에어백 전개 시간		
20)	운전석 좌석안전띠 프리로딩 장치 전개 시간		
21)	조수석 좌석안전띠 프리로딩 장치 전개 시간		
22)	운전석좌석 최전방 위치이동 스위치 작동 여부	-1초 시점	해당 없음
23)	조수석좌석 최전방 위치이동 스위치 작동 여부		

24)	운전석 승객 크기 유형		
25)	조수석 승객 크기 유형		
26)	운전자 정위치 착석 여부		
27)	조수석 정위치 착석 여부		
28)	측면방향 가속도	다음 각 목 중 짧은 시간 가. 0초부터 0.25초까지 나. 0초부터 사고종료시점 +0.03초 까지	해당 없음
29)	진행방향 가속도		
30)	수직방향 가속도		

주)

1. "합성속도 최대변화값 시간"이란 진행방향과 측면방향의 합성속도변화 최대값에 대한 시간을 말한다.
2. "에어백의 단계별 추진체 강제처리 여부"란 에어백 추진체의 처리 목적이 승객보호인지 강제처리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12)부터 15)까지는 1단계를 제외한 남은 단계의 수만큼 항목을 추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4. "승객 크기 유형"이란 승객의 몸무게 또는 신체크기 등을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6] <신설 2011.3.16>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에 대한 기준(제88조의3 관련)

1. 성능기준

1)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 중 1개 타이어의 "운행공기압"이 20%가 감소된 공기압 또는 최소압력이 150kPa인 공기압 중 큰 공기압에 도달한 후 10분의 누적주행시간이내에 별표 2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를 점등시킬 것
2)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 중 4개 타이어의 "운행공기압"이 20%가 감소된 공기압에 도달한 후 60분의 누적주행시간이내에 별표 2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를 점등시킬 것
3)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내에 제어신호 또는 반응신호를 발생시키거나 전송하는 데 영향을 주는 기능고장이 발생한 후 10분의 누적주행시간이내에 별표 2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를 점등시킬 것. 다만, 무선주파수 잡음 등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기능고장 감지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

주) 1. "운행공기압"이란 자동차를 운행하는 동안 각 타이어의 "추천냉간팽창공기압"이 온도영향으로 증가된 타이어팽창공기압을 말한다.
2. "추천냉간팽창공기압"이란 해당 자동차의 속도 및 하중 등 사용조건에 따라 제작자가 각 위치의 타이어에 대하여 권장하는 타이어공기압(타이어공기압 표찰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을 말한다.

2. 경고표시기준

1) 자동차에 설치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경고등은 기능고장을 표시하는 경고등과 겸용으로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아래 "가)" 및 "나)"에 적합할 것
가) 원동기 구동 전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 기능고장을 표시하기 위하여 점멸되어야 하며, 짧은 시간경과 후 기능고장이 있고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에는 지속적으로 점등될 것
나) 기능고장이 수리될 때까지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마다 위 "가)"에 따른 점멸 및 점등의 순서로 작동이 반복될 것
2) 별표 2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는 자동차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설정할 경우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초기화상태를 알리기 위하여 점멸될 수 있다.

3. 표기기준

1)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가 설치된 자동차의 취급설명서에는 아래 "가)"부터 "다)"까지의 사항을 표기할 것. 다만, 제작자가 취급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기판넬 등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아래 "가)" 및 "나)"를 표기하여야 한다.
가)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설치를 알리는 문구와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재설정방법(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에 재설정기능이 있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나) 별표 2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 형상과 기능고장 식별부호 형상(기능고장 전용 식별부호가 설치된 자동차만 해당한다)
다) 별표 2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 점등에 대한 현상설명 및 올바른 조치방법

[별표 6의2] <개정 2010.11.10>

조향장치에 대한 기준(제89조제2항 관련)

1. 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조향장치 기준

1) 조향조종장치의 작동방향은 자동차의 방향변화와 일치하여야 하고, 조향조종장치의 편향도와 조향각 사이에는 연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 다만, 자동명령조향기능 또는 수정조향기능을 갖는 장치, 연동가변조향장치 및 자동차가 정차상태에서 전압이 인가되지 아니한 상태인 완전동력조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향전달장치의 어떠한 부품도 최대조향각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다만, 최대조향각을 제한할 목적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는 아래 "가)"부터 "다)"까지의 기준에 각각 적합할 것

가) 장치의 기능이 조향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항상 인위적으로 기능을 해제할 수 있을 것

나) 자동명령조향기능이 작동되는 경우에는 이를 항상 운전자에게 알려야 하고, 자동차속도가 저속운전 등에서 설정한계인 시속 10킬로미터를 20퍼센트 초과하거나 평가되는 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제될 것

다) 위 "나)"의 제어가 중지되면 시각신호와 청각신호 또는 시각신호와 조향조종장치의 촉각신호를 발생시켜 운전자에게 짧지만 쉽게 구별이 될 수 있는 경고를 할 것

4) 자동차의 구성(예, 연장가능한 세미트레일러)을 다르게 하기 위하여 분리될 수 있는 조향전달장치는 재배치된 부품을 확실히 고정시키는 잠금장치를 갖출 것. 다만, 자동으로 잠기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작동되는 잠금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5) 동일한 에너지공급장치를 조향장치나 그 밖에 다른 장치에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에너지공급장치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제3호 "조향장치의 고장 시 기준 및 성능기준"의 "1)"의 "다)"에 적합할 것

6) 완전공기식 전달장치를 갖춘 조향장치, 자율조향장치, 작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견인자동차에서 받는 피견인자동차의 완전동력조향장치 및 피견인자동차에 장착된 완전동력조향장치의 전기식제어장치(추가조향장치는 제외한다)는 설치할 수 없다.

주) 1. "조향장치"란 조향조종장치, 조향전달장치, 에너지공급장치(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조향바퀴로 구성되어 자동차의 이동방향을 결정하는 모든 장치를 말한다.

2. "조향조종장치"란 조향장치의 작동을 조종하는 조향장치의 일부를 말한다. 이는 운전자의 직접적인 개입여부에 상관없이 작동될 수 있으며, 운전자의 근육힘으로 조향력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급하는 조향장치의 조향조종장치는 기계, 유압 및 전기적인 수단에 의하여 조향조종력을 변환하는 지점까지의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

3. "조향력"이란 조향전달장치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말한다.

4. "조향각"이란 자동차 세로축의 투영과 바퀴면(바퀴가 회전하는 부근의 축에 수직인 바퀴의 중심면)과 도로면의 교차선 사이의 각을 말한다.

5. "연동가변조향장치"란 자동차(피견인자동차 제외)의 바퀴가 주조향장치의 조향바퀴에 따라 주조향장치의 조향바퀴와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로 조향되고 전륜 및 후륜과 전륜 또는 후륜의 조향각을 자동차의 움직임에 따라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6. "주조향장치"란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이동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주로 담당하는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말하며, 아래 "1)"부터 "3)"까지로 분류된다.
 1) "수동조향장치"란 조향력이 운전자의 근육힘에 의하여서만 발생되는 조향장치를 말한다.
 2) "동력지원조향장치"란 조향력이 운전자의 근육힘과 에너지공급장치로 발생되는 조향장치를 말하며, 조향장치가 정상일 때에는 조향력이 오직 1개 이상의 에너지공급장치에서 발생되지만 조향장치가 고장이 발생된 경우에는 운전자의 근육힘만으로 조향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조향장치를 포함한다.
 3) "완전동력조향장치"란 조향력이 1개 이상의 에너지공급장치에 의하여서만 발생되는 조향장치를 말한다.
7. "조향전달장치"란 조향조종장치와 조향바퀴 사이에 기능적인 연결로 구성된 모든 부품을 말하며, 제어전달장치와 에너지전달장치로 분류된다.
8.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란 주조향장치에 추가되어 자동차를 조향하도록 운전자를 보조하지만 운전자가 항상 자동차의 주된 제어를 하는 장치를 말하며, 아래 "1)"과 "2)"의 항목의 기능 중 1항목 또는 2항목 모두로 구성된다.
 1) "자동명령조향기능"이란 저속운전 또는 주차운전에서 운전자가 특정경로를 추종하도록 보조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어작동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수동적인 시설물과 연계하여 자동차 내부에서 발생된 신호를 자동으로 평가하여 조향장치를 작동시키는 복합전자식제어시스템내의 기능을 말한다.
 2) "수정조향기능"이란 자동차 내부에서 발생되는 신호를 자동으로 평가하여 제한된 시간동안 자동차의 요구경로를 유지하거나 자동차의 동적거동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1개 이상의 바퀴의 조향각을 변화시키는 복합전자제어시스템내의 비연속적인 제어기능을 말하며, 조향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지만 수동적인 시설물과 연계하여 조향조종장치에 촉각경고를 발생시켜 운전자에게 자동차가 이상적인 경로를 이탈하거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위험을 경고하는 시스템 또한 이 기능으로 본다.
9. "에너지공급장치"란 조향장치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 에너지를 조절하며, 필요시 에너지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조향장치의 일부(아래 "1)"부터 "3)"까지로 분류된다)를 말한다. 이는 작동수단과 복귀라인을 위한 저장용기는 포함하지만 자동차의 엔진 또는 에너지원에 연결된 구동장치는 제외한다. 다만, 자동차의 엔진을 이용하는 동력지원조향장치일 때에는 자동차의 엔진을 포함한다.
 1) "에너지원"이란 에너지를 필요한 형태로 공급하는 에너지공급장치의 일부를 말한다.
 2) "에너지저장장치"란 에너지원이 공급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에너지공급장치의 일부(예를 들어 유압용기, 자동차 배터리 등)를 말한다.
 3) "저장장치"란 대기압 또는 그 부근에서 작동매체를 저장하는 에너지공급장치의 일부(예를 들어 유체용기)를 말한다.
10. "자율조향장치"란 자동차를 지정된 경로를 추종하게 하거나 자동차의 외부에서 발생되어 전송되는 신호에 따라 자동차의 경로를 변경하는 복합전자식제어시스템내에 어떠한 기능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이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의 주된 제어를 하지 아니한다.
11. "추가조향장치"란 운행목적에 따라 조향장치를 갖는 1개 이상 차축의 조향각을 선택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장치로 주조향장치와는 독립된 장치를 말한다.

2. 피견인자동차의 조향장치 추가기준

1) 조향바퀴를 갖는 2개 이상의 차축이 설치된 피견인자동차(세미트레일러와 센터차축트레일러 제외)와 조향바퀴를 갖는 1개 이상의 차축이 설치된 세미트레일러 및 센터차축트레일러는 제6호 "피견인자동차의 조향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자기추적조향장치가 장착된 차축의 중량이 모든 하중조건하에서 비조향차축의 중량에 1.6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기추적조향장치를 장착한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자기추적조향장치가 장착된 차축의 중량이 모든 하중조건하에서 비조향차축(또는 굴절조향장치를 장착한 차축)의 중량에 대하여 1.0배 이상일 것
3) 견인자동차가 전방으로 직진 주행 시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일렬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동으로 일렬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피견인자동차에 적절한 조정장치를 갖출 것

주) 1. "조향바퀴"란 자동차의 이동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세로축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정되도록 정렬된 바퀴(자동차의 이동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바퀴를 회전시키는 주변의 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기추적조향장치"란 주로 도로에 접하는 타이어에 힘과 모멘트가 작용될 때에만 1개 이상의 바퀴의 조향각이 변화하는 장치를 말한다.
3. "굴절조향장치"란 조향력이 견인자동차의 방향변화로 발생되며 피견인자동차의 조향바퀴 이동이 견인자동차의 세로축과 피견인자동차의 세로축사이의 상대각도에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 장치를 말한다.

3. 조향장치의 고장 시 기준 및 성능기준

1) 일반기준
가) 조향장치 고장상태의 자동차가 제14조제1항제4호, 제1호 "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조향장치 기준"의 "1)" 및 제5호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조향성능기준"의 "1)"에 규정된 해당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동안에는 제14조제1항제4호, 제1호의 "1)" 및 제5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정차상태인 자동차의 완전동력조향장치인 경우에는 제1호의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제어전달장치 또는 에너지전달장치(기계식은 제외한다)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제4호 "조향장치의 경고기준"에 따라 운전자에게 확실하게 경고하여야 하고, 고장상태의 조향조종력이 제5호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조향성능기준"의 "3)"의 고장상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평균조향비를 변경할 수 있다.

다)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 또는 에너지공급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향장치의 성능을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 아래 "(1)" 및 "(2)"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에너지원 고장

(가) 동력지원조향장치: 제3호 2) 및 제7호 1)

(나) 완전동력조향장치: 제3호 3) 및 제7호 1)

(2) 에너지공급장치 고장

(가) 동력지원조향장치: 제3호 2) 및 제7호 2)

(나) 완전동력조향장치: 제3호 3) 및 제7호 2)

라) 피견인자동차는 조향장치 고장 시에도 제2호 "피견인자동차의 조향장치 추가기준"의 "3)" 및 제6호 "피견인자동차의 조향성능기준"의 "4)"에 적합할 것

2) 동력지원조향장치 기준

가) 엔진이 정지되거나 조향장치의 부품에 고장(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품의 고장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향각의 즉각적인 변화가 없을 것

나) 위 "가)"의 고장상태에서 자동차가 시속 1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주행이 가능한 동안에는 제5호의 "3)"의 고장상태 기준에 적합할 것

3) 완전동력조향장치 기준

가) 제4호의 "2)"의 "가)"의 "(1)"의 경고신호가 작동되어야 하는 고장상태인 경우에는 항상 자동차가 시속 1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속도로 주행할 수 없게 할 것

나) 제어전달장치 내에 고장(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품의 고장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5호의 "1)"부터 "3)"까지의 정상상태 성능수준으로 조향할 수 있을 것

다) 제어전달장치의 에너지원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호의 "1)"부터 "3)"까지의 정상상태 성능수준으로 지름 40미터인 "8"자모양의 경로를 따라 시속 10킬로미터로 최소 24바퀴를 주행할 수 있을 것

라) 에너지전달장치 내 고장(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품의 고장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향각의 즉각적인 변화가 없으며, 자동차가 시속 1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주행이 가능한 동안에는 지름 40미터인 "8"자모양의 경로를 따라 시속 10킬로미터로 최소 25바퀴를 주행한 후 제5호 "자동차(피견인자동차 제외)의 조향성능기준"의 "3)"의 고장상태 기준에 적합할 것

주) 1. "제어전달장치"란 조향장치를 제어하기 위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모든 부품을 말한다.
2. "에너지전달장치"란 바퀴의 조향기능을 제어 또는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모든 부품을 말한다.
3. "조향조종력"이란 자동차를 조종하기 위하여 조향조종장치에 작용되는 힘을 말한다.
4. "평균조향비"란 조향조종장치를 한쪽 방향으로 최대로 회전시킨 상태에서 반대방향으로 최대로 회전시키는 동안 조향바퀴가 지나간 조향각의 평균값에 대한 조향조종장치의 각 변위의 비를 말한다.

4. 조향장치의 경고기준

1) 일반기준
가) 조향장치나 그 밖에 다른 장치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에너지저장장치(또는 저장장치)의 에너지(또는 유량)가 조향조종력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수준까지 떨어질 때 운전자에게 시각적 또는 청각적으로 알려주는 경고장치를 갖출 것. 다만, 그 밖에 다른 장치가 제동장치인 경우에는 제동장치의 고장을 알리는 경고장치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추가조향장치가 작동상태이거나 그 장치에 의한 조향각이 정상 주행위치로 복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고신호로 운전자에게 알릴 것
2) 완전동력조향장치 기준
가) 자동차(괴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는 아래의 고장 및 결함경고신호를 제공할 것
(1) 주조향장치내에 제3호 "조향장치의 고장 시 기준 및 성능기준"의 "1)"의 "나)"의 고장을 알리는 적색경고신호
(2) 적색경고신호에 의하여 지시되지 아니하는 조향장치 내 전기적으로 감지된 결함을 알리는 황색경고신호(설치된 경우)
(3) 식별부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을 것



(4) 자동차의 전기장치 및 조향장치에 전압이 인가될 때 "(1)" 및 "(2)"의 경고신호는 점등되어야 하고, 자동차의 정차상태에서 고장 또는 결함이 없는 경우에는 꺼지고, 있는 경우에는 켜진 상태가 지속될 것. 다만, "(1)" 및 "(2)"의 경고신호가 점등되어야 하지만 정차상태에서는 감지되지 아니하는 고장 또는 결함은 감지 즉시 저장되어야 하고, 고장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엔진 시동 시 및 시동스위치가 "ON"위치에 있을 때는 항상 표시되어야 한다.

5. 자동차(피견인자동차 제외)의 조향성능기준

1) 아래 해당 자동차의 속도로 조향장치의 이상 진동 없이 자동차의 전면외측모서리(외측 후사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반지름 50미터인 곡선에 접하여 선회할 수 있을 것
 가) 승용자동차: 시속 50킬로미터
 나)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 시속 40킬로미터 또는 최고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미만일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
2) 조향바퀴를 최대조향각의 절반까지 조향한 상태로 최소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정속주행 중 조향조종장치를 놓을 경우 선회원은 계속 동일하거나 더 커질 것
3) 아래 표의 정상상태 및 고장상태의 조향장치 최대허용 조향시간 및 최대허용 조향조종력 기준에 적합할 것

구 분	정 상			고 장		
	최대허용 조향조종력 (N)	최대허용 조향시간 (초)	선회 반지름 (m)	최대허용 조향조종력 (N)	최대허용 조향시간 (초)	선회 반지름 (m)
승용자동차	150	4	12	300	4	20
차량총중량 5톤 이하 승합자동차	150	4	12	300	4	20
차량총중량 5톤 초과 승합자동차	200	4	12	450[주]	6	20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 및 특수 자동차	200	4	12	300	4	20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12톤 이하 화물 및 특수 자동차	250	4	12	400	4	20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 및 특수 자동차	200	4	12	450[주]	6	20
측정방법	조향장치의 정상상태 및 고장상태에서 자동차를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시키다가 나선형으로 주행시켜 자동차의 전면외측모서리가 해당 선회반지름에 일치할 때까지의 조향조종력을 조향조종장치의 공칭반지름에서 측정					

주) 1. 자기추적조향장치를 제외한 2개 이상의 조향차축을 갖춘 일체형 자동차의 경우에는 500N으로 한다.

2. "조향시간"이란 조향조종장치가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조향바퀴가 지정된 조향각에 도달하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3. "선회원"이란 자동차가 선회시 자동차의 전면외측모서리(실외후사경을 제외한다)의 궤적을 따라 그려지는 원을 말한다.

4. "조향조종장치의 공칭반지름"이란 조향핸들의 경우에는 조향핸들의 회전중심에서 가장자리의 최끝단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하며, 다른 유형의 조향조종장치는 조향조종장치의 회전중심과 조향력이 작용하는 지점(이러한 지점이 1개 이상일 때에는 가장 큰 힘을 필요로 하는 지점으로 한다)간의 거리를 말한다.

6. 피견인자동차의 조향성능기준

1) 견인자동차가 시속 80킬로미터의 속도(견인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제작사가 정한 최고속도)로 평탄하고 수평한 도로를 직선 주행할 때 피견인자동차는 조향장치의 과도한 편향 또는 이상 진동 없이 주행할 수 있을 것

2) 시속 5킬로미터 및 시속 25킬로미터의 속도로 반지름 25미터인 선회원에 견인자동차의 전면외측모서리가 접하여 선회하도록 하여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가 안정된 선회상태에서 피견인자동차의 최후단 외측모서리에 의하여 그려진 원을 각각 측정하여 시속 25킬로미터의 속도로 선회 시 그려진 원은 시속 5킬로미터의 속도로 선회 시 그려진 원 밖으로 0.7미터 이상 벗어나지 아니할 것

3) 시속 25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2)"의 원형경로를 지나는 견인자동차가 반지름 25미터인 원의 접선을 따라 주행 중 접선이 원과 만나는 지점에서 접선을 따라 40미터를 주행한 지점까지 피견인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그 원의 접선에서 0.5미터 이상 벗어나지 아니하여야 하며, 40미터를 주행한 지점 이후 피견인자동차는 위 "1)"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조향장치의 정상상태 및 고장상태에서 견인자동차의 전면외측모서리가 연결자동차 길이의 0.67배인 반지름(다만, 12.5미터 이상으로 한다)에 접하여 시속 5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선회주행시켜 연결자동차의 고리모양 점유폭을 각각 측정하여 고장상태에서 측정된 점유폭이 8.3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고장상태의 점유폭이 정상상태의 점유폭보다 1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점유폭의 외측반지름은 중

가되지 아니할 것

7. 제동장치와 조향장치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 또는 에너지공급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의 제동성능기준

1) 에너지원 고장 시 주제동장치 제동능력기준

구 분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제동초속도 (km/h)	80	60	80	60
평균최대감속도 (m/s^2)	5.8 이상	5.0 이상		
측정 시 조작력 (N)	500 이하	700 이하		
측정조건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1회째 "측정 시 조작력"으로 작동			

주) 평균최대감속도: 제동 시 감속의 크기가 최대로 일정하게 되어 안정되었을 때의 감속도 값

2) 조향장치 또는 에너지공급장치 고장 시 주제동장치 제동능력기준

구 분		승용 자동차	승합 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12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제동초속도(km/h)		80	60	70	50	40
주제동장치와 비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공통 사용하는 경우	평균 최대 감속도 (m/s^2)	2.90 이상	2.50 이상	2.20 이상		
주제동장치와 비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공통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평균 최대 감속도 (m/s^2)	1.70 이상	1.50 이상	1.30 이상		
측정 시 조작력 (N)		500 이하	발조작식: 700 이하, 손조작식: 600 이하			

측정조건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8회 최대작동한 후 9회째 "측정시 조작력"으로 작동

8. 연동가변조향장치를 설치한 자동차 추가기준

1) 조향전달장치 구조기준

구 분	기 준
기계식 조향전달장치	제14조제1항제9호에 적합할 것
유압식 조향전달장치	정상 최대압력(T)을 초과하는 압력으로부터 보호될 것
전기식 조향전달장치	과도한 에너지공급으로부터 보호될 것
하이브리드 조향전달장치	기계식, 유압식 및 전기식 조향전달장치로 이루어진 조향전달장치는 위의 각 해당 기준에 적합할 것

주) 1. "기계식 조향전달장치"란 조향력을 기계적인 수단으로만 전달하는 조향전달장치를 말한다.

2. "유압식 조향전달장치"란 전달장치 어딘가에 조향력을 유압적인 수단으로만 전달하는 조향전달장치를 말한다.

3. "전기식 조향전달장치"란 전달장치 어딘가에 조향력을 전기적인 수단으로만 전달하는 조향전달장치를 말한다.

4. "하이브리드 조향전달장치"란 일부 조향력을 기계식, 유압식 및 전기식 조향전달장치 중 1개 조향전달장치와 다른 1개의 조향전달장치로 전달하는 조향전달장치를 말한다. 다만, 전달장치의 어떤 기계부품이 오직 위치만을 되돌려 주고 조향력의 전부를 전달하기에는 약할 때에는 이 전달장치는 유압식 또는 전기식 조향전달장치로 본다.

2) 고장 시 성능기준

가) 연동가변조향장치의 어떤 부품에 기능고장 또는 파손(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품의 고장은 제외한다)이 발생되어도 자동차거동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여야 하고, 제5호 "자동차(피견인자동차 제외)의 조향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나) 자동차의 전면외측모서리가 해당 반지름의 원에 접하게 주행시켜 아래 해당 시험속도에서 고장을 발생시켰을 때 비정상적인 조향보정 없이 자동차를 조종할 수 있을 것

구 분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차량총중량 5톤 이하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12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차량총중량 5톤 초과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시험속도 (km/h)	80		50		45	
선회반지름 (m)	100		50			

3) 고장 시 성능기준고장 시 경고기준: 연동가변조향장치에 아래의 고장(제14조제1항 제9호에 따른 부품의 고장은 제외한다) 발생 시 운전자에게 알릴 것
가) 전기식 및 유압식 조종장치의 차단
나) 에너지공급장치의 고장
다) 전기식 조종장치(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외부배선 단선 및 단락

9. 유압식 조향전달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 추가기준

구 분	기 준
유압라인	제작사가 정한 정상 최대압력(T)의 최소 4배인 파열압력을 견딜 것
호스어셈블리	국제표준(ISO 1402:1994, 6605:1986 및 7751:1991)의 기준에 적합할 것
에너지공급장치	정상 최대압력(T)에서 작동되는 압력제한밸브를 갖출 것
조향전달장치	정상 최대압력(T)의 1.5배와 2.2배 사이에서 작동되는 압력제한밸브를 갖출 것

[별표 6의3] <신설 2014.6.10>

주행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1항제3호 관련)

1. 주행빔 전조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자동차 구조물의 직접적·간접적 반사에 의해 해당 운전자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나. 관측각도

주행빔 전조등의 발광면은 상측·하측·내측·외측의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 방향

1)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2) 곡선로 조명을 구현하는 경우에는 좌·우로 회전 가능하며, 이 경우 좌·우에 각 1개만 작동하도록 설치할 것

라. 작동조건

1) 주행빔은 변환빔에서 전환 시 좌·우가 동시에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하고, 변환빔으로 전환 시 동시에 소등되는 구조일 것

2) 변환빔에서 주행빔으로 전환 시 변환빔은 지속 점등도 가능

마. 표시장치

주행빔 전조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바. 추가적인 요구사항

1) 동시에 점등되는 등화의 최고광도 총합은 43만칸델라 이하일 것

2) 도로 및 기상 조건 등을 인식하여 주행빔과 변환빔을 자동으로 변환하는 자동전환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주위 밝기가 7천룩스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전환장치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구조일 것

나) 수동으로 자동전환장치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

다) 자동전환장치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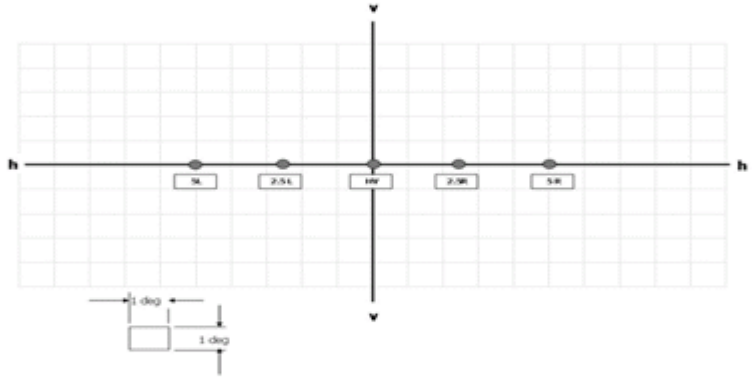
2. 주행빔 전조등의 광도기준

가. 주행빔 전조등의 광도기준(1)

구 분	측정점	각 도	기준값(칸델라)
주행빔	최대광도값	-	30,000 이상
	H-V	-	최대광도값의 80% 이상
	H-5L	0.0, 5.0L	3,750 이상
	H-2.5L	0.0, 2.5L	15,000 이상
	H-2.5R	0.0, 2.5R	15,000 이상
	H-5R	0.0, 5.0R	3,750 이상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H"는 HH선을 의미한다.
4. "V"는 VV선을 의미한다.



<25m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주행빔 측정점 위치>

5. 양산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광도기준은 위 기준의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주행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나. 주행빔(가스방전식) 전조등의 광도기준(2)

구 분	측정점	측정각도	광도(칸델라)
주행빔	최대광도값		43,800 이상
	H-V		최대광도값의 80% 이상
	H-5L	0.0, 5.0L	6,250 이상
	H-2.5L	0.0, 2.5L	25,000 이상
	H-2.5R	0.0, 2.5R	25,000 이상
	H-5R	0.0, 5.0R	6,250 이상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H"는 HH선을 의미한다.
4. "V"는 VV선을 의미한다.
5. 양산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광도기준은 위 기준의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주행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별표 6의4] <신설 2014.6.10>

변환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2항제3호 관련)

1. 변환빔 전조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기준

1) 너비

가) 변환빔 전조등의 발광면 외측 끝단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경우 기준축 방향에서 전조등 발광면간 설치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너비가 1,300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높이

변환빔 전조등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관측각도

1) 변환빔 전조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하측 10도·외측 45도·내측 1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1) 수직위치

가) 컷오프선의 수직위치는 자동차의 변환빔 전조등 설치높이(발광면 최하단) 대비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

(1) 설치높이가 0.8미터 이하인 경우

(가) 한계 범위: -0.5% ~ -2.5%

(나) 초기 설정범위: -1.0% ~ -1.5%

(2) 설치높이가 0.8미터 초과 1.0미터 이내인 경우

(가) 한계 범위: -0.5% ~ -2.5%

(나) 초기 설정범위: -1.0% ~ -1.5%

다만, 제작자의 설정에 따라 한계 범위: -1.0% ~ -3.0%, 초기 설정범위: -1.5% ~ -2.0%도 가능

(3) 설치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가) 한계 범위: -1.0% ~ -3.0%

(나) 초기 설정범위: -1.5% ~ -2.0%

나) 컷오프선 수직위치 범위 측정 시 0.1% 단위의 정확도로 측정할 것

2) 전조등 광축조절장치

가) 변환빔 전조등은 다목1)을 만족하는 광축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광축조절장치는 연속 또는 비연속적으로 작동되고 스크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이용하여 초기 설정범위 위치로 조절 및 유지가 가능한 구조일 경우 수동 광축조절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수동 광축조절장치는 운전자석에서 조작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비연속적 조절장치는 1)에 수직위치 조건에 적합하도록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마) 2)의 가)부터 라)까지에 적합한 광축조절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컷오프선의 위치는 고장시점 위치 또는 그 이하일 것

3) 수평위치

곡선로 조명을 구현하기 위한 한 개 또는 두 개의 변환빔은 수평방향으로 빔 전체 또는 컷오프선의 꺾임점이 회전할 수 있으며, 컷오프선의 꺾임점은 자동차 무게중심의 회전궤적과 자동차 앞면으로부터 변환빔 전조등 설치높이의 100배 이상 거리에서 교차하지 아니할 것

라. 작동조건

1) 변환빔에서 주행빔으로 전환 시 변환빔은 점등될 수 있다.

2) 변환빔이 가스방전식전조등인 경우 주행빔으로 전환 시 변환빔은 점등을 지속할 것

3) 변환빔(주행빔은 제외한다) 내에 한 개 이상의 추가적인 광원을 이용하여 곡선로 조명을 구현하는 경우 자동차 회전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작동될 것

4) 변환빔은 자동으로 점등·소등되는 구조도 가능하나, 수동으로 점등·소등하는 구조를 갖출 것

5) 변환빔 내에 한 개 이상의 추가적인 광원을 이용하여 적외선 투사장치를 구현하는 경우 변환빔의 점등·소등과 동시에 적외선 투사장치도 자동으로 작동 또는 정지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변환빔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적외선 투사장치의 작동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구조일 것

마. 표시장치

1) 등화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아래의 경우 점멸형 또는 점등형 고장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가) 빔 전체 또는 컷오프선의 꺾임점이 회전하는 곡선로 조명인 경우

나) 적외선 투사장치용 광원과 곡선로 조명을 위한 추가광원을 제외한 변환빔이 한 개 이상의 발광소자 모듈로 구현되는 경우

다) 1) 또는 2)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장표시장치가 작동될 것. 다만, 고

장표시장치는 일시적으로 해제될 수 있으나, 엔진 시동장치 재작동마다 고장표시장치도 재작동되어야 한다.

바. 추가적인 요구사항

1) 아래의 경우 다목2)가)에 따른 광축조절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 적외선 투사장치용 광원과 곡선로 조명을 위한 추가광원을 제외한 변환빔이 발광소자 모듈인 경우

나) 적외선 투사장치용 광원과 곡선로 조명을 위한 추가광원을 제외한 변환빔 광원의 광속이 2,000루멘 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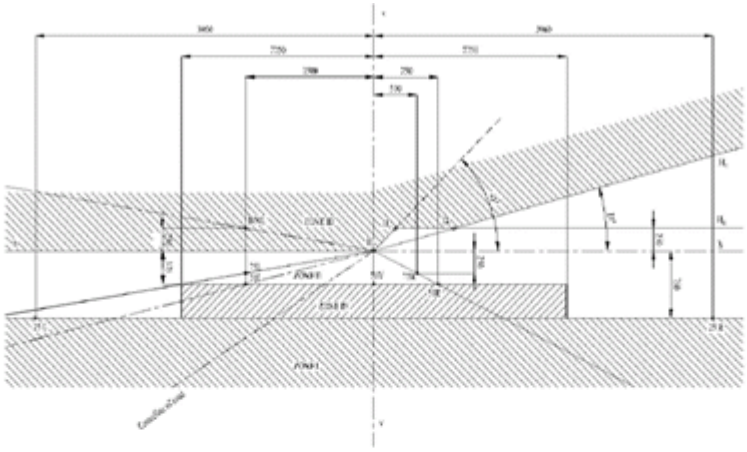
2) 곡선로 조명을 구현하기 위하여 컷오프선의 꺾임점 또는 빔전체가 수평으로 회전하는 구조는 자동차가 앞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만 작동될 것. 다만,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변환빔 전조등의 광도기준-1

구 분	측정점	각 도	기준값(칸델라)
변환빔	B50L	0.57U, 3.43L	250 이하
	75R	0.57D, 1.15R	7,500 이상
	75L	0.57D, 3.43L	7,500 이하
	50L	0.86D, 3.43L	9,375 이하
	50R	0.86D, 1.72R	7,500 이상
	50V	0.86D, 0	3,750 이상
	25L	1.72D, 9.0L	1,250 이상
	25R	1.72D, 9.0R	1,250 이상
	구역 Ⅲ	-	438 이하
	구역 Ⅳ	-	1,875 이상
	구역 Ⅰ	-	2×50R 이하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U"는 HH선의 상측을 의미한다.
4. "D"는 HH선의 하측을 의미한다.
5. "V"는 VV선을 의미한다.



<25m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변환빔 측정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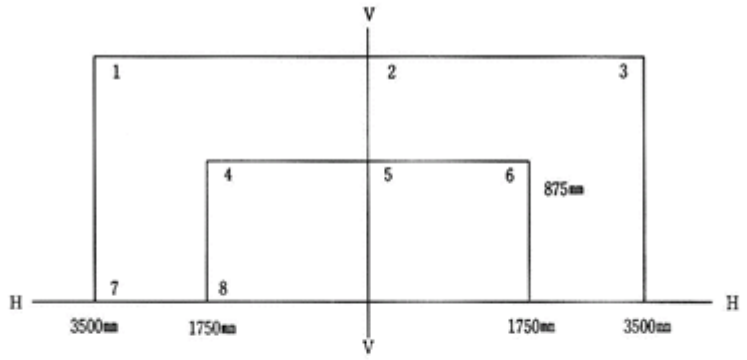
6. 변환빔의 구역 Ⅲ내에서 아래 측정점의 광도값은 다음의 광도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가. 1 + 2 + 3 ≥ 187칸델라

나. 4 + 5 + 6 ≥ 375칸델라

다. 438칸델라 ≥ 7 ≥ 63칸델라

라. 438칸델라 ≥ 8 ≥ 125칸델라



<구역 Ⅲ내의 측정점>

7. 양산자동차 변환빔 전조등의 광도기준은 위 기준의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구역 Ⅲ에서는 625칸델라 이하, B50L은 375칸델라 이하이어야 한다.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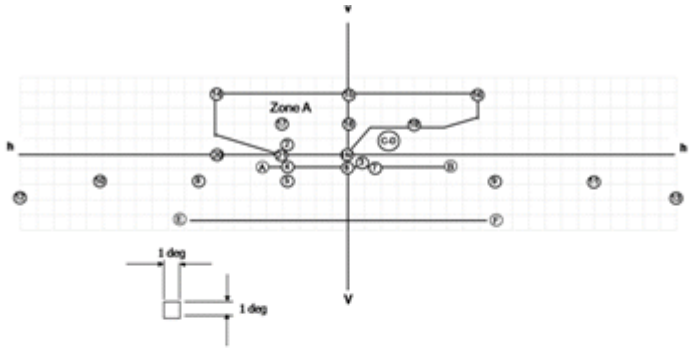
9. 발광소자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측정 광도값에 0.7을 곱하여 기준 적합성을 판정한다.

3. 전조등의 광도기준(가스방전식전조등)-2

구 분	측정점		측정각도	광도(칸델라)
변환빔	8L 1U / 8L 4U / 8R 4U / 8R 2U / 6R 1.5U / 1.5R 1.5U / V-V H-H / 4L H-H			625 이하
	1	HV	0, 0	625 이하
	2	B50L	0.57U, 3.43L	350 이하
	3	75R	0.57D, 1.15R	12,500 이상
	4	50L	0.86D, 3.43L	12,500 이하
	5	25L1	1.72D, 3.43L	18,800 이하
	6	50V	0.86D, 0	7,500 이상
	7	50R	0.86D, 1.72R	12,500 이상
	8	25L2	1.72D, 9L	2,500 이상
	9	25R1	1.72D, 9R	2,500 이상
	10	25L3	1.72D, 15L	1,250 이상
	11	25R2	1.72D, 15R	1,250 이상
	12	15L	2.86D, 20L	625 이상
	13	15R	2.86D, 20R	625 이상
	14	-	4U, 8L	-
	15	-	4U, 0	-
	16	-	4U, 8R	-
	17	-	2U, 4L	-
	18	-	2U, 0	-
	19	-	2U, 4R	-
	20	-	0, 8L	65 이상
	21	-	0, 4L	125 이상
	A~B	구역 I	0.86D, 5.15L~5.15R	3,750 이상
	C-D	구역 II	1U, 2.5R	1,750 이하
	E~F	구역 III을 포함한 아랫부분	4.29D, 9.37L~8.53R	12,500 이하
	우측 최대광도		1.72D 윗부분-VV선 우측	43,800 이하
	좌측 최대광도		VV선 좌측	31,300 이하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U"는 HH선의 상측을 의미한다.
4. "D"는 HH선의 하측을 의미한다.
5. "H"는 HH선을 의미한다.
6. "V"는 VV선을 의미한다.



<25m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변환빔 측정점 위치>

7. 14+15+16≥187칸델라, 17+18+19≥375칸델라 이상이어야 한다.
8. 양산자동차 변환빔 전조등의 광도기준은 위 표 기준의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구역 A에서는 880칸델라 이하, B50L은 520칸델라 이하이어야 한다.
9. 제7호에도 불구하고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별표 6의5] <신설 2014.6.10>

적응형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3항제3호 관련)

1. 적응형 전조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적응형 전조등의 설치위치는 기본모드에서 기준에 적합할 것

1) 너비와 높이

적응형 전조등의 조명 유니트(적응형 전조등에 구성된 한 개 이상의 전방조명모드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부품을 말한다)는 최외측 발광면을 측정하여 나)부터 마)까지에 적합할 것. 다만, 동일한 조명 모드는 동시에 점등된 상태에서 적합하여야 한다.

가) 대칭위치인 두 개의 조명 유니트는 별표 6의3 제1호가목 및 별표 6의4 제1호가목에 적합할 것

나) 자동차 중심선에서 두 개의 대칭위치인 조명 유니트 너비와 높이의 설치 오차는 50밀리미터 이내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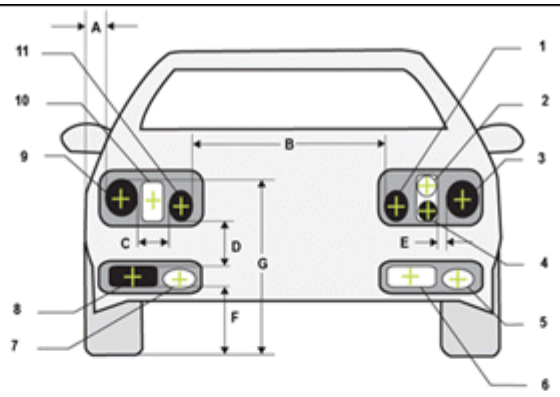
다) 자동차의 각 측면에 추가적으로 설치된 조명 유니트는 인접한 조명 유니트의 발광면으로부터 수직방향으로 400밀리미터(그림 D 참조) 이내이어야 하며, 수평방향으로 140밀리미터(그림 E 참조) 이내일 것. 다만, 좌·우 대칭인 경우에는 수평방향으로 200밀리미터(그림 C 참조) 이내이어야 한다.

라) 추가적으로 설치된 조명 유니트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그림 F 참조) 이상 1,200밀리미터(그림 G 참조) 이하일 것

마) 추가적인 변환빔 각 모드인 경우

(1) 각 모드별 조명 유니트 중 최소 한 개의 발광면 끝단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그림 A 참조) 이내일 것

(2)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하고, 각 모드별 조명 유니트의 발광면간 설치거리는 600밀리미터(그림 B 참조) 이상일 것. 다만, 너비가 1,300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주)

1. 모드 작동을 위해 동시점등된 조명 유니트
 가. 대칭으로 설치된 두 개의 조명 유니트 3과 9
 나. 대칭으로 설치된 두 개의 조명 유니트 1과 11
 다. 두 개의 추가적으로 설치된 조명 유니트 4와 8
2. 모드 작동을 위해 점등되지 않은 조명 유니트
 가. 대칭으로 설치된 두 개의 조명 유니트 2와 10
 나. 추가적으로 설치된 조명 유니트 5
 다. 대칭으로 설치된 두 개의 조명 유니트 6과 7
3. 수평거리(밀리미터)
 가. A ≤ 400
 나. B ≥ 600. 너비가 1300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이상일 것. 다만,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C ≤ 200
 라. E ≤ 140
4. 수직거리(밀리미터)
 가. D ≤ 400
 나. F ≥ 250
 다. G ≤ 1200

<적응형 전조등 조명 유니트의 발광면>

나. 관측각도

1) 주행빔의 관측각도는 별표 6의3 제1호나목에 적합할 것
2) 변환빔의 관측각도는 별표 6의4 제1호나목에 적합할 것
3) 각 모드별 조명 유니트인 경우에도 1) 및 2)에 적합할 것

다.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이어야 하고, 기본 모드가 작동 중인 중립상태에서 적합할 것

1) 수직위치

가) 컷오프선의 위치는 운전자 1인이 승차한 상태에서 0.1% 단위의 정확도로 측정할 것

나) 컷오프선의 수직위치는 별표 6의5 제1호다목1)에 적합할 것

다) 별도 조명 유니트에 의해 변환빔을 구현하는 경우에도 나)에 적합할 것

2) 전조등 광축조절장치

가) 다목1)을 만족하는 광축조절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일 것

나) 자동 광축조절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컷오프선의 위치는 고장시점 위치 또는 그 이하일 것

3) 수평위치

각 조명 유니트의 기준축과 컷오프선 꺾임점의 수직선은 일치하여야 하나, 우측으로 0.5도 허용오차 발생도 가능하다.

4) 측정순서

가) 초기 조준 후, 변환빔 또는 다른 조명 유니트에서 점등되는 기본 변환빔의 수직위치는 다목1)나)에 적합할 것

나) 변환빔 수직위치의 변화측정은 별표 6의5의 제1호다목1)에 적합할 것

라. 작동조건

1) 주행빔

가) 주행빔의 조명 유니트는 동시 또는 쌍으로 점등될 것

나) 변환빔에서 주행빔으로 전환 시 최소 한 쌍 이상의 조명 유니트가 점등될 것

다) 변환빔에서 주행빔으로 전환 시 변환빔의 지속 점등도 가능

2) 변환빔

가) 변환빔으로 전환 시 모든 주행빔 또는 조명 유니트는 동시에 소등될 것

나) 변환빔에서 주행빔으로 전환 시 변환빔은 점등될 수 있다.

다) 변환빔의 조명 유니트가 가스방전식 전조등인 경우 주행빔으로 전환 시 변환빔은 점등을 지속할 것

3) 변환빔의 점등·소등은 자동으로 변환할 수 있음

4) 적응형 전조등의 자동작동

적응형 전조등은 적합한 모드의 선정과 모드 변환은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하고, 운전자 및 도로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가) 적응형 전조등의 변환빔은 다른 모드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기본 모드가 작동될 것

나) 시가지 모드(V 신호)는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자동으로 감지 시 작동될 것

(1) 시가지 도로에서 자동차 속도가 60km/h 이하
(2) 고정된 도로조명이 설치된 도로에서 자동차 속도가 60km/h 이하
(3) 연속적으로 도로면의 휘도(輝度)가 1cd/㎡ 이상 또는 도로면의 수평조도가 10lx 이상
(4) 자동차 속도가 50km/h 이하

다) 고속도로 모드(E 모드)는 자동차 속도가 70km/h를 초과하고,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자동으로 감지 시 작동될 것
(1) E 신호 : 고속도로 조건 또는 자동차 속도가 110km/h 초과
(2) E1 신호 : 자동차 속도 100km/h 초과
(3) E2 신호 : 자동차 속도 90km/h 초과
(4) E3 신호 : 자동차 속도 80km/h 초과

라) 젖은도로 모드(W 신호)는 앞면안개등이 소등되고,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자동으로 감지 시 작동될 것
(1) 젖은도로를 자동으로 감지할 경우
(2) 수동 또는 자동으로 창닦이기가 2분 이상 작동될 경우

마) 각 모드는 조향장치의 각도 또는 자동차 무게중심의 궤적이 변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곡선로 조명이 작동 가능할 것
(1) 컷오프선의 꺾임점 또는 빔전체가 수평으로 회전하는 구조는 자동차가 앞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만 작동될 것. 다만,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컷오프선의 꺾임점은 자동차 무게중심의 회전궤적과 자동차 앞면으로부터 변환빔 설치높이의 100배 이상 거리에서 교차하지 아니할 것
(3) 한 개 이상의 추가적인 광원을 이용하여 곡선로 조명을 구현하는 경우 자동차 회전반경 500m 이내에서 작동될 것

바) 적응형 전조등은 운전자가 기본 모드로 고정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작동상태로 되돌아 갈 수 있을 것

마. 표시장치

1) 적응형 전조등은 별표 6의3 제1호마목 및 별표 6의4 제1호마목에 적합할 것
2) 점등형 고장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3) 제어신호 또는 광원의 고장이 발생된 경우 고장표시장치가 점등될 것
4) 고장시간동안 고장표시장치가 점등될 것
5) 원동기 정지에 의해 고장표시장치는 일시적으로 해제될 수 있으나, 원동기 재작동 시 고장표시장치는 자동작동상태로 되돌아 갈 것

바. 추가적인 요구사항

동시점등되는 주행빔 또는 주행빔 조명 유니트의 광도 총합은 43만칸델라 이하일 것

2. 적응형 전조등의 광도기준

가. 광도 요구사항

1) 주행빔

측정점(각도)	광도(칸델라)	
	최소	최대
H-V	최대광도 80% 이상	-
최대광도값	40,500	215,000
H-5L	5,100	-
H-2.5L	20,300	-
H-2.5R	20,300	-
H-5R	5,100	-

2) 변환빔(표-1)

측정점 및 측정구역		측정 각도		기본		시가지		고속도로		젖은도로	
		수평각	수직각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1	B50L	3.43L	0.57U	50[4]	350	50	350	50	625[8]	50	625
2	H-V	V	H	50[4]	625	50	625	50		50	
3	BR	2.5R	1U	50[4]	1,750	50	880	50	1,750	50	2,650
4	구역 BRR	8R~20R	0.57U	50[4]	3,550		880		3,550		5,300
5	구역 BLL	8L~20L	0.57U	50[4]	625		880		880		880
6	P	7L	H	63						63	
7	구역 Ⅲ(표 3)				625		625		880		880
8	S50, S50LL, S50RR		4U	190				190		190	
9	S100, S100LL, S100RR		2U	375				375		375	
10	50R	1.72R	0.86D			5,100					
11	75R	1.15R	0.57D	10,100				15,200		20,300	
12	50V	V	0.86D	5,100		5,100		10,100		10,100	
13	50L	3.43L	0.86D	3,550	13,200[9]	3,550	13,200[9]	6,800		6,800	26,400[9]
14	25LL	16L	1.72D	1,180		845		1,180		3,400	
15	25RR	11R	1.72D	1,180		845		1,180		3,400	
16	구역 20을 포함한 아랫부분	3.5L~V	2D								17,600[2]
17	구역 10을 포함한 아랫부분	4.5L~2R	4D		12,300[1]		12,300[1]		12,300[1]		7,100[2]
18	최대광도값[5]			16,900	44,100	8,400	44,100	16,900	79,300[6]	29,530	70,500[2]
도로의 곡률조건 또는 조향조건에 따라 조명의 밝기나 방향이 조절되는 곡선로 조명이 적용된 경우 위 표 1, 2, 7, 13, 18의 광도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B50L	3.43L	0.57U	50[4]	530		530				790
2	H-V	V	H	50[4]	880		880				
7	구역 Ⅲ(표 3)				880		880		880		880
13	50L	3.43L	0.86D	1,700		1,700		3,400		3,400	
18	최대광도값[6]			10,100	44,100	5,100	44,100	10,100	79,300[6]	20,300	70,500[2]

주)

1. 젖은도로 모드인 경우 최대광도는 15,900칸델라 이하일 것

2.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표-4에 적합할 것
3. 각 모드별 최대광도 및 컷오프선 수평부 위치는 표-2에 적합할 것
4. 측정된 광도값은 좌·우 각각 50칸델라 이상일 것. 다만, 세부구역 BLL과 BRR은 측정된 광도값 중 최소 한 점은 50칸델라 이상이어야 한다.
5. 측정점 및 측정구역은 표-5에 적합할 것
6. 각 모드별 최대광도점의 위치는 HV에서 하향 2도, 좌·우측 45도 및 표-2의 수직 최대위치 이내일 것
7. 차폭등이 적응형 전조등의 일부이거나, 적응형 전조등과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는 제작자의 설정에 따라 점등이 가능하다.
8. 고속도로 모드는 표-6에 적합할 것
9. 정전압장치 또는 자동차시스템에 의해 이 값이 초과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최대광도값의 1.4배를 적용할 수 있을 것

나. 변환빔 각도 위치/범위 조건(표-2)

각도 위치/범위		기본		시가지		고속도로		젖은 도로	
모드 명칭 및 요구사항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2.1	최대광도값의 위치	0.5L -3R	0.3D -1.72D		0.3D -1.72D	0.5L -3R	0.1D -1.72D	0.5L -3R	0.3D -1.72D
2.2	컷오프 꺾임점이 V-V에 위치할 것								
	컷오프선 수평부의 위치		0.57D		0.57D -1.3D		0.23D -0.57D		0.23D -0.57D

다. 구역 Ⅲ의 측정위치(표-3)

범위	경계점	1	2	3	4	5	6	7	8
구역 A-1 (기본, 시가지)	수평	8L	8L	8R	8R	6R	1.5R	V-V	4L
	수직	1U	4U	4U	2U	1.5U	1.5U	H-H	H-H
구역 A-2 (젖은 도로, 고속도로)	수평	8L	8L	8R	8R	6R	1.5R	0.5L	4L
	수직	1U	4U	4U	2U	1.5U	1.5U	0.34U	0.34U

라. 젖은도로 모드의 추가적인 기준(표-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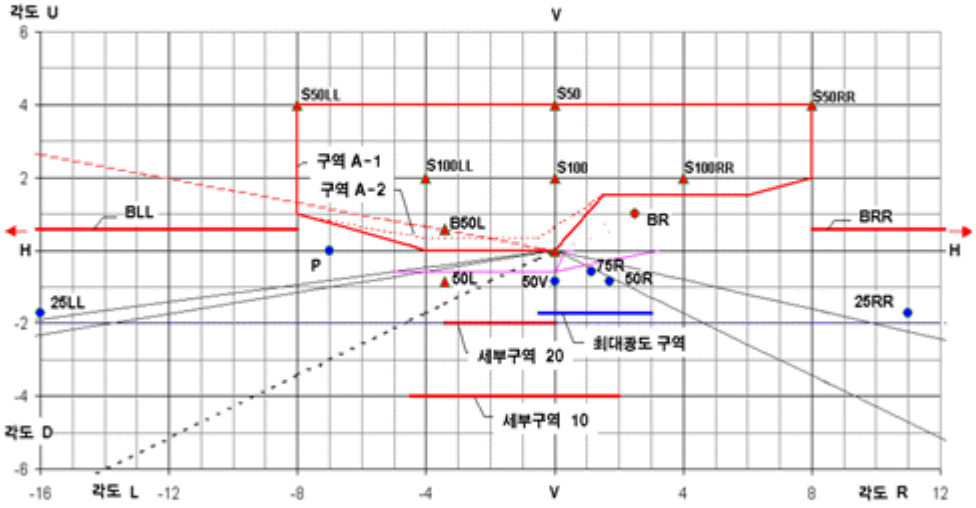
4.1	구역 E, F1, F2 그리고 F3의 요구사항 및 정의
	구역 E, F1, F2, F3에서 175칸델라 이하일 것 a) 구역 E : 10U-20L~20R b) 구역 F1 : 10L-10U~60U, 구역 F2 : V-10U~60U, 구역 F3 : 10R-10U~60U
4.2	최대광도, 구역 20, 구역 10의 요구사항에 따른 대체 또는 추가적인 설정 표 1의 16, 17, 18의 최대 요구사항은 아래의 값으로 대체 가능할 것
	구역 20과 아랫부분 : 8,800칸델라 이하, 구역 10과 아랫부분 : 3,550칸델라 이하로 설계된 경우 최대광도값은 88,100칸델라 이하일 것

마. 측정위치(표-5)

구 분	S50LL	S50	S50RR	S100LL	S100	S100RR
측정 각도	4U/8L	4U/V-V	4U/8R	2U/4L	2U/V-V	2U/4R

바. 고속도로모드의 추가기준(표-6)

표-1 그리고 표-2를 적용하되, 표-1의 1과 18 그리고 표-2의 2.2는 아래값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			
구 분	표-1의 1 EB50L 최대	표-1의 18 최대광도값 최대	표-2의 2.2 컷오프선의 수평부 조준
E1	530	70,500	0.34D
E2	440	61,700	0.45D
E3	350	52,900	0.57D



<25m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변환빔 측정점 위치>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U"는 HH선의 상측을 의미한다.
4. "D"는 HH선의 하측을 의미한다.
5. "H"는 HH선을 의미한다.
6. "V"는 VV선을 의미한다.
7. 양산자동차 적응형 전조등의 광도기준은 위 표 기준의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세부적인 측정점은 아래를 적용한다.
 가. B50L의 최대값에 170칸델라를 합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나. 구역 Ⅲ, HV, 구역 BLL의 최대값에 255칸델라를 합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다. E, F1, F2, F3의 최대값에 170칸델라를 합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라. 주행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8. 제6호에도 불구하고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의 광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9. 좌·우측 전조등의 각 측정값의 평균을 적용하여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별표 6의6] <신설 2014.6.10>

앞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1항제3호 관련)

1. 앞면안개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발광면 외측 끝단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일 것

2) 높이

가)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앞면안개등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8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그 외의 자동차는 1,2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나) 앞면안개등은 변환빔 발광면의 가장 높은 부분보다 낮게 설치할 것

나. 관측각도

1) 앞면안개등의 발광면은 상측 5도·하측 5도·외측 45도·내측 1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2) 앞면안개등의 관측각도 내에서는 1칸델라 이상일 것

다. 방향

비추는 방향은 전방일 것

1) 수직위치

가) 클래스 B 앞면안개등(필라멘트 광원으로 점등되는 안개등을 말한다)인 경우 컷오프선의 위치는 운전자 1인이 승차한 공차상태에서 −1.5% 또는 그 이하일 것

나) 클래스 F3 앞면안개등(필라멘트, 가스방전식, 발광소자 광원으로 점등되는 안개등을 말한다)인 경우

(1) 컷오프선의 초기 하향값은 1.0% 단위의 정확도로 측정될 것

(2) 설치높이 측정은 공차상태에서 발광면 최하단을 측정할 것

(3) 컷오프선의 수직위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설치높이가 0.8미터 이하인 경우

① 한계값 : −1.0% ~ −3.0%

② 초기 조준값 : −1.5% ~ −2.0%

(나) 설치높이가 0.8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① 한계값 : −1.5% ~ −3.5%

② 초기 조준값 : −2.0% ~ −2.5%

다) 광축조절장치

(1) 앞면안개등에 사용되는 광원이 2,000루멘 이상인 경우 다목1)나)(3)을 자동으로 만족할 것

(2) 앞면안개등의 광축조절장치가 독립적으로 작동하거나 다른 앞면 등화장치에 조합되어 작동되더라도 다목1)나)(3)을 만족할 것

(3) F3 앞면안개등이 변환빔 전조등 또는 적응형전조등의 일부분으로 사용되는 경우 점등 시에는 별표 6의5 제1호다목에 적합할 것

(4) 별표 6의5 제1호다목에 적합하도록 주위환경에 따라 수직위치는 자동적으로 조절 가능할 것

(5) 광축조절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컷오프선의 위치는 고장시점 위치 또는 수직위치는 고장시점의 수직위치 이하일 것

마. 작동조건

1) 앞면안개등은 독립적으로 점등·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앞면안개등이 적응형 전조등의 일부분으로 사용되더라도 앞면안개등 기능에 우선할 것

바. 표시장치

앞면안개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점등형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사. 추가적인 요구사항

F3 앞면안개등은 주위환경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광도가 변할 수도 있다.

2. 앞면안개등의 광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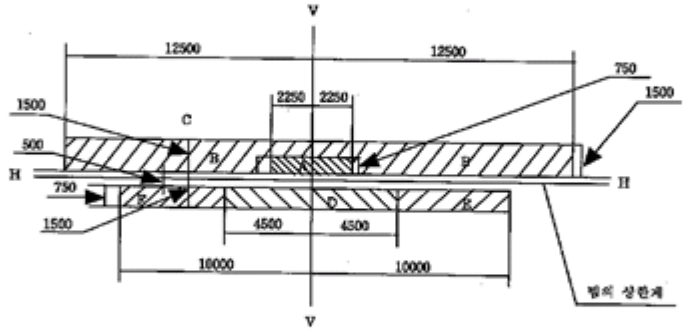
가. 광도기준－Ⅰ(클래스 B)

측정구역	기준값(칸델라)	
구역 A(225L~225R과 H~75U)	95 이상 625 이하	-
구역 B(구역 A를 제외한 1250L~1250R과 H~150U)	625 이하	구역 A 제외
구역 C(1250L~1250R과 150U 윗부분)	315 이하	-
구역 D(450L~450R과 75D~150D)	940 이상	각 수직선에서 최소 한 개의 측정점 이상
구역 E(구역 D를 제외한 1000L~1000R과 75D~150D)	315 이상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U"는 HH선의 상측을 의미한다.

4. "D"는 HH선의 하측을 의미한다.
5. "H"는 HH선을 의미한다.
6. 양산자동차 앞면안개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상기 표의 광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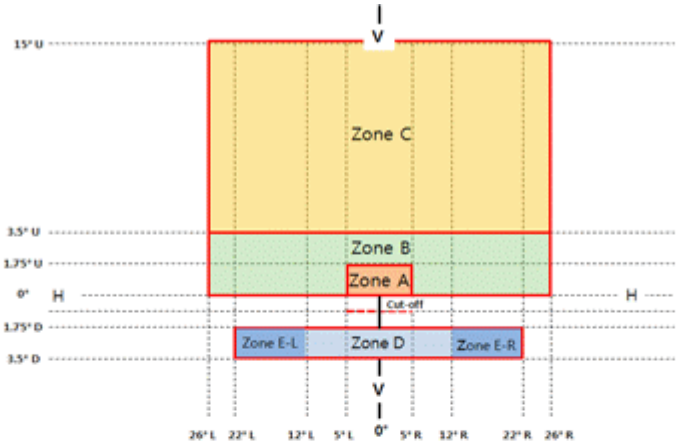
<25m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측정점 위치>

나. 광도기준-Ⅱ(클래스 B)

측정위치	수직 위치(*)	수평 위치(*)	기준값(칸델라)	
선 1(**)	15° U-60° U	0°	100 이하	모든 선
구역 A	0° -1.75° U	5° L-5° R	62 이상	전체 구역
구역 B	0° -3.5° U	26° L-26° R	400 이하	
구역 C	3.5° U-15° U	26° L-26° R	250 이하	
구역 D	1.75° D-3.5° D	12° L-12° R	1,250 이상 8,000 이하	각 수직선에서 최소 한개의 측정점 이상
구역 E	1.75° D-3.5° D	12° L-22° L 그리고 12° R-22° R	600 이상 8,000 이하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U"는 HH선의 상측을 의미한다.
4. "D"는 HH선의 하측을 의미한다.
5. (*) : 수직축 각도 좌표계를 적용한다.
6. (**) : 선 1 영역에서 한 개의 좁은 구역 또는 줄무늬는 230칸델라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좁은 구역 또는 줄무늬는 2도의 원추각 또는 너비 1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다수의 좁은 구역 또는 줄무늬는 최소 10도 이상 떨어질 것
7. 양산자동차 앞면안개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상기 표의 광도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25m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측정점 위치>

다. 광도기준-Ⅲ(클래스 F3)

측정위치	수직위치(*)	수평위치(*)	기준값(칸델라)	
점 1, 2(**)	+60°	±45°	60 이하	전측정점
점 3, 4(**)	+40°	±30°		
점 5, 6(**)	+30°	±60°		
점 7, 10(**)	+20°	±40°		
점 8, 9(**)	+20°	±15°		
선 1(**)	+8°	-26° ~ +26°	90 이하	모든 선
선 2(**)	+4°		105 이하	
선 3	+2°		170 이하	
선 4	+1°		250 이하	
선 5	0°	-10° ~ +10°	340 이하	
선 6(***)	-2.5°	내측 5° 외측 10°	2,000 이상	
선 7(***)	-6.0°		선 6 측정최대값의 50% 이하	
선 8L/R(***)	-1.5° ~ -3.5°	-22° , +22°	800 이상	한 개 이상의 측정점
선 9L/R(***)	-1.5° ~ -4.5°	-35° , +35°	320 이상	
구역 D(***)	-1.5° ~ -3.5°	-10° ~ +10°	8,400 이하	전체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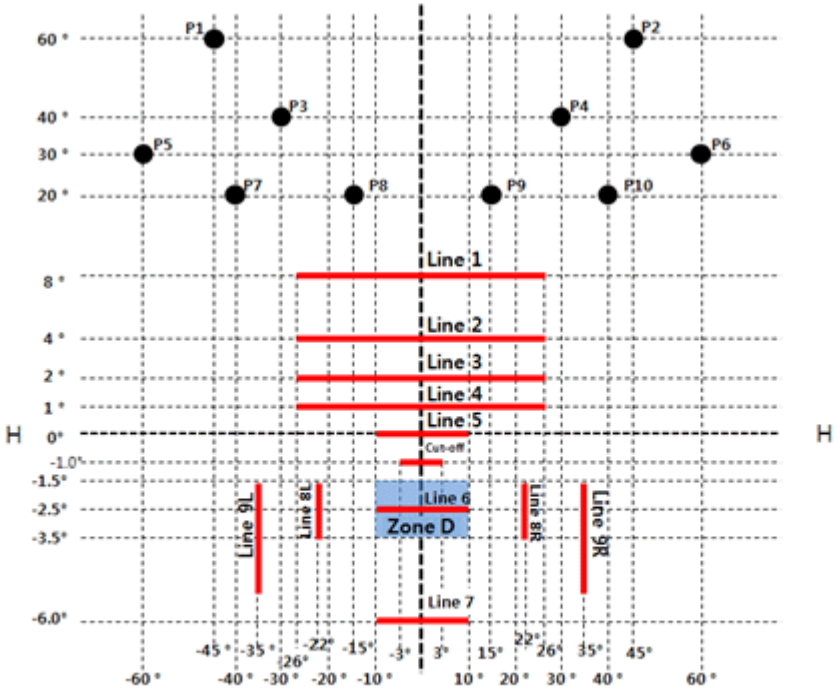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U"는 HH선의 상측을 의미한다.
4. "D"는 HH선의 하측을 의미한다.
5. (*) : 수직축 각도 좌표계를 적용한다.
6. (**) : 측정점 1부터 10까지 그리고 선 1 또는 선 1과 2의 영역에서 한

개의 좁은 구역 또는 줄무늬는 160칸델라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좁은 구역 또는 줄무늬는 2도의 원추각 또는 너비 1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다수의 좁은 구역 또는 줄무늬는 최소 10도 이상 떨어질 것

7. (***) : 결합 쌍으로 구성된 두 개의 앞면안개등은 각각 시험할 수 있을 것. 다만, 선 6, 7, 8, 9와 구역 D는 좌·우측 앞면안개등의 측정값 평균을 적용하여야 한다.

8. 양산자동차 앞면안개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상기 표의 광도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25m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측정점 위치>

[별표 6의7] <신설 2014.6.10>

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2항제3호 관련)

1. 뒷면안개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뒷면안개등 1개를 설치할 경우 자동차 중심이나 자동차 수직중심선에서 왼쪽에 설치할 것

2) 높이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천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뒷면에 설치된 다른 등화장치와 결합(기준축 방향에서 발광면과 광원은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몸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된 경우 1,2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나. 관측각도

발광면은 상측 5도·하측 5도·외측 25도·내측 2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라. 작동조건

1) 주행빔 전조등 또는 변환빔 전조등 또는 앞면안개등이 점등된 상태에서만 점등될 수 있는 구조일 것

2)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아래 하나 이상을 적용할 것

가) 후미등 소등 전까지 뒷면안개등은 점등할 수 있으며, 후미등이 재점등되기 전까지 소등이 지속될 것

나) 뒷면안개등의 스위치가 점등위치에서 시동장치가 제거되고 운전석 문이 열린 경우 청각적 경고신호를 제공할 것

4) 피견인자동차의 뒷면안개등이 점등되는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앞면안개등은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일 것

마. 표시장치

점등상태를 알려주는 점등형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바. 추가적인 요구사항

1) 뒷면안개등은 제동등과의 발광면간 설치거리가 100밀리미터를 초과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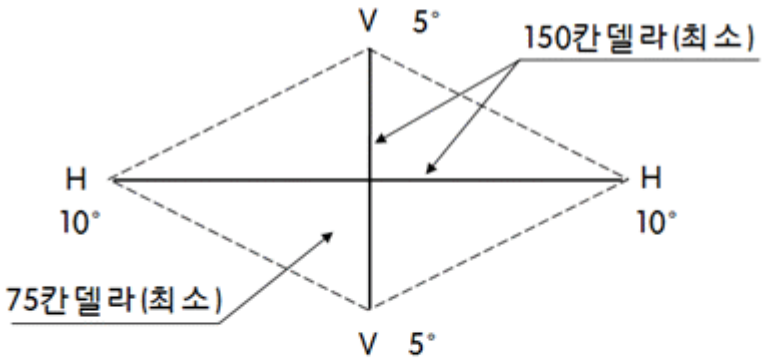
2) 뒷면안개등은 다양한 환경조건 및 발광면의 오염 등에 따라 가변광도 적용이 가능할 것

2. 뒷면안개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광도 : 300칸델라 이하일 것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H-10L~10R	150 이상
V-5U~5D	150 이상
이외의 구역	75 이상



주)

양산자동차 뒷면안개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상기 표의 광도기준에 만족해야 한다.

[별표 6의8] <신설 2014.6.10>

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4제3호, 제75조의2제3호 관련)

1. 주간주행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주간주행등의 발광면간 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 전폭이 1,3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400밀리미터 이상일 것

2) 높이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관측각도

발광면은 상측 10도·하측 10도·외측 20도·내측 2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라.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점등형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작동기준

1)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위치에서 자동으로 점등될 것.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소등될 수 있다.

가) 자동변속기 조종장치가 주차위치 시

나) 주차제동장치 작동 시

다) 원동기 시동 후 최초 이동전

2) 전조등 또는 앞면안개등을 점등할 때 자동으로 소등될 것. 다만, 전조등의 주행빔을 경고의 뜻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추가적인 요구사항

1) 주간주행등과 연동되어 차폭등 또는 후미등이 점등될 수 있다.

2) 앞면방향지시등과 거리가 40밀리미터 이하인 주간주행등의 경우 방향지시등 점등 시 방향지시등이 점등되는 쪽의 주간주행등이 소등되거나 좌·우측 주간주행등의 광도를 감광하여 점등할 수 있다.

2. 주간주행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 광도 : 1,200칸델라 이하일 것

나. 측정점의 최소광도

측 정 점		광도(칸델라)
10U	5L	80 이상
	V	80 이상
	5R	80 이상
5U	20L	40 이상
	10L	80 이상
	V	280 이상
	10R	80 이상
	20R	40 이상
H	20L	100 이상
	10L	280 이상
	5L	360 이상
	V	400 이상
	5R	360 이상
	10R	280 이상
	20R	100 이상
5D	20L	40 이상
	10L	80 이상
	V	280 이상
	10R	80 이상
	20R	40 이상

주)

양산자동차 및 양산이륜자동차의 주간주행등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광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별표 6의9] <신설 2014.6.10>

코너링조명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5제3호 관련)

1. 코너링조명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코너링조명등은 좌·우 측면에 설치할 것

2) 길이

코너링조명등은 자동차 앞면으로부터 1,000밀리미터 이내일 것

3) 높이

가) 코너링조명등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코너링조명등은 변환빔 발광면의 가장 높은 부분보다 낮게 설치할 것

나. 관측각도

코너링조명등의 발광면은 상측 10도·하측 10도·자동차 외측으로부터 30도 이상 6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 작동조건

1) 코너링조명등은 주행빔 전조등 또는 변환빔 전조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점등되는 구조일 것

2) 방향지시등이 점등되는 방향 또는 조향핸들이 조작되는 방향의 코너링조명등이 자동으로 점등될 것

3) 방향지시등이 소등되거나 조향핸들이 정위치로 되돌아가는 경우 코너링조명등은 소등되는 구조일 것

4) 방향지시등 또는 조향핸들의 위치와 무관하게 후퇴등이 점등되는 경우 양측의 코너링조명등은 동시에 점등 가능할 것. 다만, 후퇴등이 소등되는 경우 코너링조명등도 소등되어야 한다.

라. 추가적인 요구사항

코너링조명등은 차량 속도 40km/h 이상에서 작동되지 아니할 것

2. 코너링조명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광도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1U-L ~ R 윗부분	300 이하
H선과 1U-L ~ R 사이	600 이하
0.57D-L ~ R 아랫부분	14,000 이하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2.5D-30L	240 이상
2.5D-45L	400 이상
2.5D-60L	240 이상
10U~10D-30L~60L	1 이상

주)

1. 우측은 대칭으로 적용할 것
2. 양산자동차 코너링조명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상기 표의 광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별표 6의10] <신설 2014.6.10>

후퇴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9조제3호 관련)

1. 후퇴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높이

후퇴등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내일 것

2) 길이

제39조제1호 단서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치할 경우 자동차의 뒷면 또는 옆면에 설치할 것

나. 관측각도

1) 후퇴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하측 5도·내측 및 외측 4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추가적으로 설치할 경우 내측은 3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해야 한다.

2) 추가적으로 옆면에 설치할 경우 자동차 중심축으로부터 측면으로 10±5도에 설치할 것

다. 방향

1) 후퇴등의 비추는 방향은 후방일 것

2) 추가적으로 옆면에 설치할 경우 자동차 중심축으로부터 측면으로 15도 이내를 비출 것

라. 작동조건

1) 원동기의 시동 또는 정지장치가 원동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자동차 변속장치가 후퇴위치인 경우에만 점등될 것

2) 차폭등·후미등·끝단표시등·옆면표시등·번호등이 점등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설치된 후퇴등도 점등되지 아니할 것

3) 아래의 기준을 만족할 경우 옆면에 설치된 후퇴등은 전방으로 자동차의 속도가 10km/h까지 점등할 수 있다.

가) 후퇴등은 별도의 스위치에 의해 수동으로 점등·소등이 가능한 구조

나) 변속장치가 후퇴위치에서 해제되더라도 점등상태가 유지되는 구조

다) 차량 속도가 10km/h를 초과할 경우 별도 스위치의 위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소등되고, 재작동전까지 소등상태가 유지되는 구조

마.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후퇴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광도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H선 윗부분	300 이하
H-H~5D	600 이하
5D 아랫부분	8,000 이하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10U	10L, 10R	10 이상
	V	15 이상
5U	45L, 45R	15 이상
	10L, 10R	20 이상
	V	25 이상
H, 5D	45L, 45R	15 이상
	30L, 30R	25 이상
	10L, 10R	50 이상
	V	80 이상

주)

양산자동차 후퇴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만족하여야 한다.

[별표 6의11] <신설 2014.6.10>

차폭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제3호 관련)

1. 차폭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가) 차폭등의 발광면 외측 끝단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나) 피견인자동차인 경우 차폭등의 발광면 외측 끝단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15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하고, 기준축 방향에서 차폭등의 발광면간 설치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너비가 1,300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높이
 차폭등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만,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 2,1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3) 차폭등이 다른 등화와 상호 결합된 경우 다른 등화의 기준축 방향 발광면으로부터 1) 및 2)의 확인이 가능할 것
 나. 관측각도
 1) 수평각
 가) 차폭등의 발광면은 내측 45도·외측 8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발광면 최하단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내인 경우 차폭등의 기준축을 포함한 수평면 아래의 내측 관측각도는 2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 피견인자동차인 경우 내측 관측각도는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2) 수직각
 가) 등화의 발광면은 상측 15도·하측 1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나)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된 등화인 경우 하측 관측각도는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3)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앞면에 설치된 옆면표시등으로 차폭등을 대체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내측 45도·외측 4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발광면 최하단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내인 경우, 차폭등의 기준축을 포함한 수평면 아래의 내측 관측각도는 2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나) 상측 15도·하측 1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된 등화인 경우, 하측 관측각도는 5도 이내에서 관

측 가능하여야 한다.

다) 빛을 투과하지 않는 반사기의 조명면을 제외하고 차폭등의 발광면은 12.5㎠ 이상일 것

다.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라. 작동조건

1) 후미등·끝단표시등·옆면표시등·번호등과 동시에 점·소등되는 구조일 것

2) 차폭등이 방향지시등과 상호 결합된 경우 방향지시등이 작동하는 동안 차폭등은 소등되는 구조도 가능

마.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식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계기판넬 내의 조명이 차폭등과 동시에 점등될 경우는 제외한다.

바. 추가적인 요구사항

1) 차폭등 내에 설치된 한 개 이상의 적외선 투사장치는 자동차가 전방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만 작동하며, 양쪽 전조등 중 점등된 전조등 쪽의 적외선 투사장치만 작동되는 구조일 것

2) 전조등 및 차폭등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장이 발생한 측면의 적외선 투사장치는 자동적으로 소등되는 구조일 것

3) 곡선로 조명 기능의 적응형전조등에 차폭등이 상호 결합된 조명 유니트인 경우에는 좌·우 회전도 가능할 것

2. 차폭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 및 최소광도

구 분	최소광도(칸델라)	최대광도(칸델라)	
		단일 등화	D-등화
차폭등	4 이상	140 이하	70 이하
차폭등(전조등내)	4 이상	140 이하	-

주)

D-등화는 동일한 기능을 가진 2개의 독립된 등화의 조합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1. 기준축 방향에서 투영면의 전체면적이 투영면들을 밖으로 감싸는 최소 사각형 면적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2. 투영된 두개의 분리된 면간 접선거리가 기준축 방향에서 15mm 이하이어야 한다.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H	10L, 10R	1.4 이상
	5L, 5R	3.6 이상
	V	4.0 이상
5U, 5D	20L, 20R	0.4 이상
	10L, 10R	0.8 이상
	V	2.8 이상
10U, 10D	5L, 5R	0.8 이상
관측각도 범위내		0.05 이상

주)

양산자동차 차폭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상기 표의 광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별표 6의12] <신설 2014.6.10>

끝단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의2제3호 관련)

1. 끝단표시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가) 끝단표시등은 자동차의 최외측 끝단에 설치할 것
 나) 끝단표시등의 발광면 외측 끝단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일 것
 2) 높이
 가) 앞면
 (1) 기준축 방향에서 끝단표시등의 발광면 최상단은 앞면창유리 투명한 구역의 최상단보다 높게 설치할 것
 (2) 피견인자동차는 차체구조 및 작동조건을 고려하여 최상단에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나) 뒷면
 (1) 차체구조 및 작동조건을 고려하여 최상단에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끝단표시등는 차체구조 및 작동조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분리하여 설치할 것
 나. 관측각도
 1) 외측 8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2) 상측 5도·하측 2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 끝단표시등의 비추는 방향은 앞·뒷면의 관측각도에 적합한 방향일 것
 라. 작동조건
 후미등·차폭등·옆면표시등·번호등과 동시에 점등·소등되는 구조일 것
 마.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차폭등과 후미등의 표시장치로 대체가 가능하다.
 바. 추가적인 요구사항
 1) 앞면·뒷면의 끝단표시등은 하나의 장치로 작동되는 구조일 것
 2) 끝단표시등의 발광면은 차폭등 또는 후미등의 발광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가 200밀리미터 이상일 것

2. 끝단표시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 및 최소광도

구 분		최소광도 (칸델라)	최대광도(칸델라)	
			단일 등화	D-등화
끝단표시등(앞면)		4 이상	140 이하	70 이하
끝단표시등(뒷면)	고정광도	4 이상	17 이하	8.5 이하
	가변광도	4 이상	42 이하	21 이하

주)

1. D-등화는 동일한 기능을 가진 2개의 독립된 등화의 조합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가. 기준축 방향에서 투영면의 전체면적이 투영면들을 밖으로 감싸는 최소 사각형 면적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나. 투영된 두개의 분리된 면간 접선거리가 기준축 방향에서 15mm 이하이어야 한다.
2. 고정광도는 고정된 광도를 제공하는 끝단표시등을 의미한다.
3. 가변광도는 작동조건에 따라 광도가 변하는 끝단표시등을 의미한다.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H	10L, 10R	1.4 이상
	5L, 5R	3.6 이상
	V	4 이상
5U, 5D	20L, 20R	0.4 이상
	10L, 10R	0.8 이상
	V	2.8 이상
10U, 10D	5L, 5R	0.8 이상
관측각도 범위내		0.05 이상

주)

양산자동차 끝단표시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상기 표의 광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별표 6의13] <신설 2014.6.10>

번호등의 설치 및 휘도(輝度)기준(제41조제2호 관련)

1. 번호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번호등은 번호판을 잘 비추는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작동조건

후미등·차폭등·옆면표시등·끝단표시등과 동시에 점등·소등되는 구조일 것

다.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표시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차폭등과 후미등의 표시장치로 대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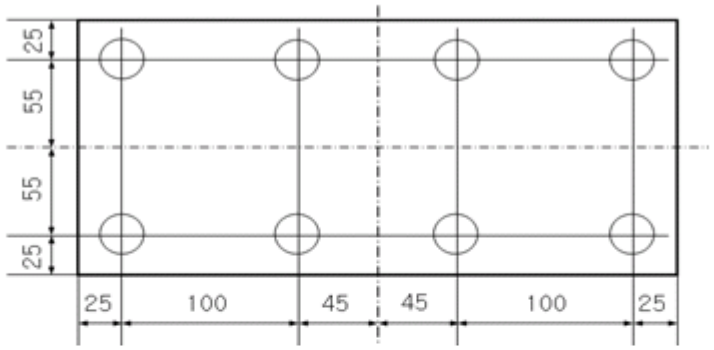
라. 추가 요구사항

번호등이 후미등과 상호 결합된 경우, 제동등 또는 뒷면안개등 내에 상호 결합된 경우 번호등의 광학적 특성은 제동등 또는 뒷면안개등이 점등되는 동안 변경 가능한 구조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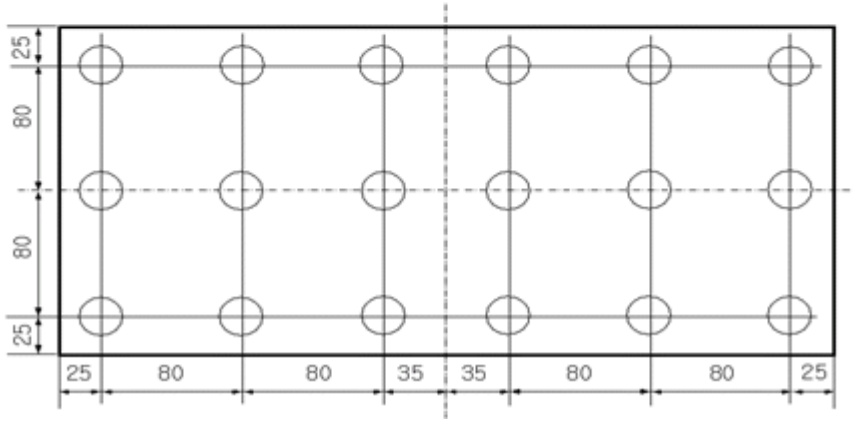
2. 번호등의 휘도기준

가. 등록번호판 시험판의 규격 및 휘도 측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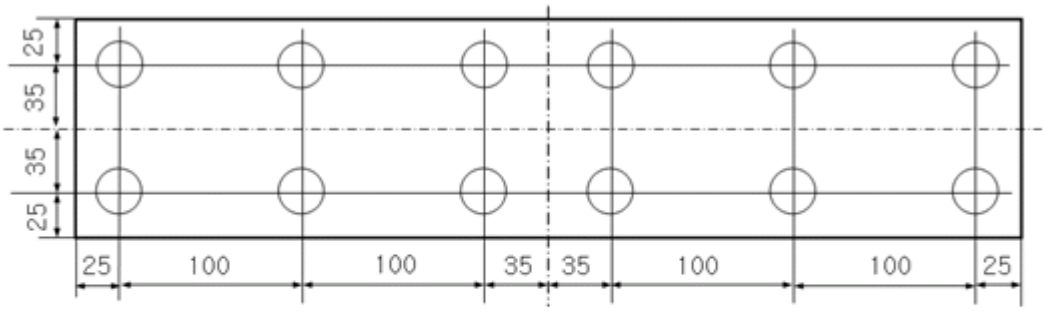
1) 등록번호판의 규격이 335×155mm 또는 335×170mm인 경우



2) 등록번호판의 규격이 440×200mm 또는 440×220mm인 경우



3) 등록번호판의 규격이 520mm×110mm인 경우



주)

1. 단위 : 밀리미터
2. ◯ : 휘도 측정점(지름 25밀리미터)

나. 휘도 기준

1) 측정점별 최소 휘도는 2.5cd/㎡ 이상일 것
2) 임의의 두 측정점의 휘도차이를 두 측정점의 거리(cm)로 나눈 값은 측정된 최소휘도값의 2배 이하일 것

$$\frac{B_2 - B_1}{(1,2\text{측정점 사이의 거리})} \leq 2 \times B_0$$

B_0 = 측정된 최소휘도값
B_1, B_2 = 임의의 두 측정점의 휘도값

주)

양산자동차 자동차는 나목1)에 ±20퍼센트 이내, 2)에 2.5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나목을 만족해야 한다.

[별표 6의14] <신설 2014.6.10>

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2조제3호 관련)

1. 후미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가) 후미등의 발광면 외측 끝단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만 추가적으로 부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하고, 기준축 방향에서 후미등의 발광면간 설치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너비가 1,300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높이

가) 후미등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만,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2,1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나) 후미등이 추가로 설치된 경우 가)에 적합하도록 좌·우 대칭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의무적으로 설치된 후미등과의 수직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관측각도

1) 수평각

후미등의 발광면은 내측 45도·외측 8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2) 수직각

가) 후미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하측 1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나)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된 후미등인 경우 하측 관측각도는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 지상에서 2,1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된 추가적인 후미등인 경우 상측 관측각도는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3)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 설치된 옆면표시등으로 후미등을 대체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내측 45도·외측 4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나) 상측 15도·하측 1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된 등화인 경우 하측 관측각도는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해야 한다.

다) 후미등의 가려지지 않는 발광면은 12.5㎠ 이상일 것. 다만, 빛을 투과하지 않는 반사기의 조명면은 제외한다.

다. 후미등이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라. 작동조건

1) 후미등·끝단표시등·옆면표시등·번호등과 동시에 점·소등되는 구조일

것

2) 후미등이 방향지시등과 상호 결합된 경우 방향지시등이 작동하는 동안 후미등이 소등되는 구조도 가능

마.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폭등과 결합되어 작동되는 구조일 것

바. 기타

후미등은 다양한 환경조건 및 발광면의 오염 등에 따라 가변광도 제어 적용도 가능할 것

2. 후미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 및 최소광도

구 분	최소광도 (칸델라)	최대광도(칸델라)	
		단일 등화	D-등화
고정광도	4 이상	17 이하	8.5 이하
가변광도	4 이상	42 이하	21 이하

주)

1. D-등화는 동일한 기능을 가진 2개의 독립된 등화의 조합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가. 기준축 방향에서 투영면의 전체면적이 투영면들을 밖으로 감싸는 최소 사각형 면적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나. 투영된 두개의 분리된 면간 접선거리가 기준축 방향에서 15mm 이하이어야 한다.

2. 고정광도는 고정된 광도를 제공하는 후미등을 의미한다.

3. 가변광도는 작동조건에 따라 광도가 변하는 후미등을 의미한다.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H	10L, 10R	1.4 이상
	5L, 5R	3.6 이상
	V	4 이상
5U, 5D	20L, 20R	0.4 이상
	10L, 10R	0.8 이상
	V	2.8 이상
10U, 10D	5L, 5R	0.8 이상
관측각도 범위내		0.05 이상

주)

양산자동차 후미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제2호가목 및 나목을 만족해야 한다.

[별표 6의15] <신설 2014.6.10>

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3조제1항제3호 관련)

1. 제동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가)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인 경우 제동등의 발광면 외측 끝단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인 경우 기준축 방향에서 양쪽 제동등의 발광면간 설치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너비가 1,300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높이

가) 제동등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만,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2,1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나) 제동등이 추가로 설치되는 경우 가)에 적합하도록 좌·우 대칭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의무적으로 설치된 제동등과의 수직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3) 길이

자동차의 뒷면에 설치할 것

나. 관측각도

1) 수평각

제동등의 발광면은 좌측 45도·우측 4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2) 수직각

가) 제동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하측 1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된 경우에 하측 관측각도는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하여야 한다.

나) 지상에서 2,1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된 추가 제동등인 경우 상측 관측각도는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 제동등이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라. 작동조건

1) 제동등은 제1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작동될 것

2) 제동등은 원동기를 시동 또는 정지시키는 장치가 원동기를 작동시킬 수 없는 위치인 경우에는 점등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마.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표시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동등의 고장발생 시 비점멸 고장표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바. 기타

제동등은 다양한 환경조건 및 발광면의 오염 등에 따라 가변광도 제어 적용도 가능할 것

2. 제동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 및 최소광도

구 분	최소광도 (칸델라)	최대광도(칸델라)	
		단일 등화	D-등화
고정광도	60 이상	260 이하	130 이하
가변광도	60 이상	730 이하	365 이하

주)

1. D-등화는 동일한 기능을 가진 2개의 독립된 등화의 조합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가. 기준축 방향에서 투영면의 전체면적이 투영면들을 밖으로 감싸는 최소 사각형 면적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나. 투영된 두개의 분리된 면간 접선거리가 기준축 방향에서 15mm 이하이어야 한다.

2. 고정광도는 고정된 광도를 제공하는 제동등을 의미한다.

3. 가변광도는 작동조건에 따라 광도가 변하는 제동등을 의미한다.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H	10L, 10R	21 이상
	5L, 5R	54 이상
	V	60 이상
5U, 5D	20L, 20R	6 이상
	10L, 10R	12 이상
	V	42 이상
10U, 10D	5L, 5R	12 이상
관측각도 범위내		0.3 이상

주)

양산자동차 제동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별표 6의16] <신설 2014.6.10>

보조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3조제2항제3호 관련)

1. 보조제동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가) 보조제동등의 기준점은 자동차의 수직 중심면에 위치할 것. 다만, 2개의 보조제동등이 설치된 경우 가능한 한 수직 중심면에 가깝게 양쪽에 설치해야 한다.

나) 보조제동등의 기준점은 수직 중심면에서 최대 15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2) 높이

가) 보조제동등의 발광면 최하단 수평면은 뒷면 창유리 노출면 최하단 아래 방향으로 150밀리미터 이내이거나 지상에서 850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보조제동등의 발광면 최하단 수평면은 제동등의 발광면 최상단 수평면보다 높게 설치할 것

3) 길이

자동차의 뒷면에 설치할 것

나. 관측각도

1) 수평각

보조제동등의 발광면은 좌측 10도·우측 1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2) 수직각

보조제동등의 발광면은 상측 10도·하측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 보조제동등이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라. 추가적인 요구사항

1) 보조제동등은 다른 등화장치와 독립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2) 보조제동등은 자동차 실내 또는 실외에 설치해야 한다.

2. 보조제동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 및 최소광도

구 분	최소광도 (칸델라)	최대광도(칸델라)	
		단일 등화	D-등화
고정광도	25 이상	110 이하	55 이하
가변광도	25 이상	160 이하	80 이하

주)

1. D-등화는 동일한 기능을 가진 2개의 독립된 등화의 조합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가. 기준축 방향에서 투영면의 전체면적이 투영면들을 밖으로 감싸는 최소 사각형 면적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나. 투영된 두개의 분리된 면간 접선거리가 기준축 방향에서 15mm 이하이어야 한다.

2. 고정광도는 고정된 광도를 제공하는 보조제동등을 의미한다.

3. 가변광도는 작동조건에 따라 광도가 변하는 보조제동등을 의미한다.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H, 5U, 5D	10L, 10R	16 이상
	5L, 5R	25 이상
	V	25 이상
10U	10L, 10R	8 이상
	V	16 이상
관측각도 범위내		0.3 이상

주)

양산자동차 보조제동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제2호가목 및 나목을 만족해야 한다.

[별표 6의17] <신설 2014.6.10>

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제2호 관련)

1. 방향지시등의 설치기준

가. 배열

1) 자동차 앞면 양측에 각각 1개의 앞면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것

가) 카테고리-1 또는 1a 또는 1b

기준축 방향에서 앞면방향지시등의 발광면과 변환빔 전조등 또는 앞면안개등의 발광면사이의 거리가 4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나) 카테고리-1a 또는 1b

기준축 방향에서 앞면방향지시등의 발광면과 변환빔 전조등 또는 앞면안개등의 발광면사이의 거리가 20밀리미터 이상 4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다) 카테고리-1b

기준축 방향에서 앞면방향지시등의 발광면과 변환빔 전조등 또는 앞면안개등의 발광면사이의 거리가 2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2) 자동차 뒷면 양측에 각각 1개의 뒷면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것(카테고리-2a 또는2b). 다만,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는 2개의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3) 자동차 옆면 양측에 각각 1개의 보조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것(카테고리-5 또는 6)

가) 카테고리-5 보조방향지시등은 승용자동차와 길이 6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카테고리-6 보조방향지시등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와 길이 6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보조방향지시등 카테고리-5는 카테고리-6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라) 앞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1 또는 1a 또는 1b)과 보조방향지시등(카테고리-5 또는 6)의 기능이 결합된 등화인 경우 추가로 설치한 보조방향지시등(카테고리-5 또는 6)은 다)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4) 피견인자동차의 뒷면 양측에 각각 1개의 뒷면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것(카테고리-2a 또는 2b). 다만, 차량총중량 0.7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에는 2개의 뒷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2a 또는 2b)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5) 적응형 전조등인 경우 카테고리 적용을 위한 기준거리는 변환빔 작동 시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의 조명 유니트와 앞면방향지시등과의 거리일 것

나. 설치위치

1) 너비

가) 방향지시등의 발광면 외측 끝단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만, 추가 설치한 뒷면방향지시등은 제외한다.

나) 방향지시등의 발광면간 설치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너비가 1,300 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이여야 한다.

2) 높이

가)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보조방향지시등(카테고리-5 또는 6) 투영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만, 그 이외의 자동차는 50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나) 앞면 및 뒷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1·1a·1b·2a·2b)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 보조방향지시등은 2,300밀리미터, 앞면 및 뒷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1·1a·1b·2a·2b)은 2,1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설치한 방향지시등은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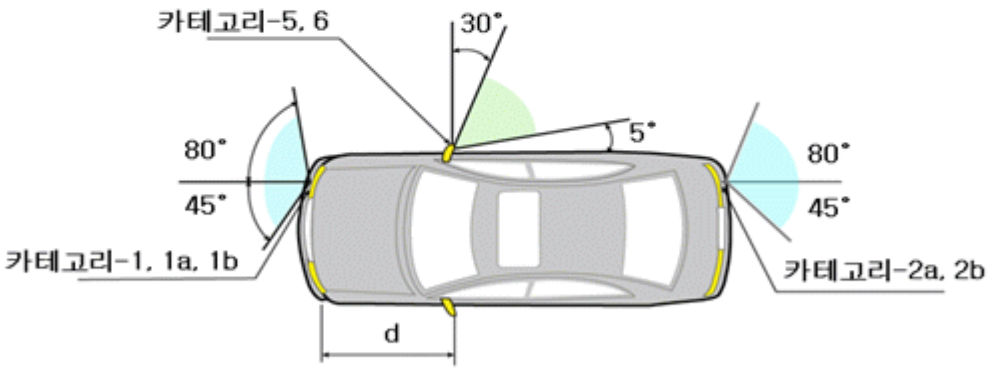
라) 추가로 설치한 방향지시등은 나목1)가) 및 나)에 적합하도록 좌·우 대칭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의무적으로 설치된 방향지시등과의 수직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3) 길이

보조방향지시등 투영면까지의 거리는 자동차 앞면에서 1,8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만,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와 그 이외의 모든 자동차에서 최소 관측각도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2,5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 가능

다. 관측각도

1) 수평각은 아래 그림과 같을 것



2) 수직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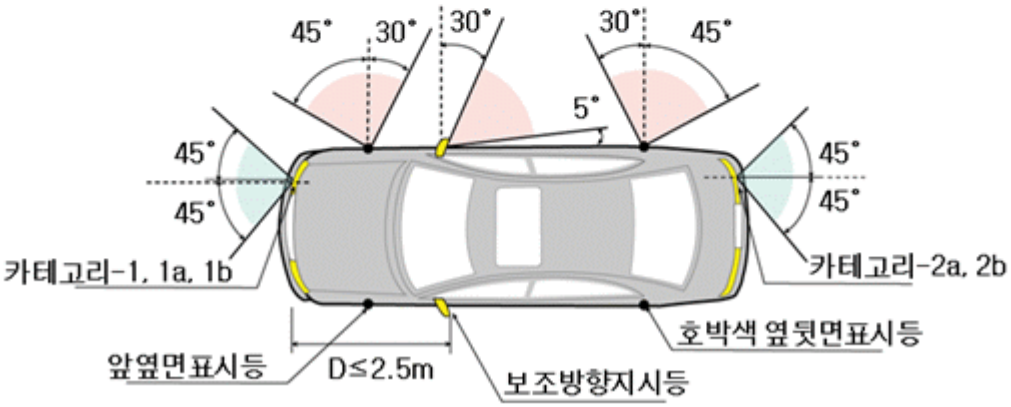
가) 방향지시등(카테고리-1·1a·1b·2a·2b·5)의 발광면은 상측 15도·하측 1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

내에 설치된 경우 하측 관측각도는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하여야 한다.

나) 방향지시등(카테고리-6)의 발광면은 상측 30도·하측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2,100밀리미터 이내에 추가 설치된 방향지시등인 경우 상측 관측각도는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하여야 한다.

다)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방향지시등(카테고리-1·1a·1b)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된 경우에는 내측 관측각도는 2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3)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방향지시등과 옆면표시등은 아래 그림과 같이 설치할 것



가) 방향지시등(카테고리-1·1a·1b)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된 경우에는 내측 관측각도는 2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나) 방향지시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하측 1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내에 추가로 설치된 방향지시등의 하측 관측각도는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하여야 한다.

다) 보조방향지시등(카테고리-5·6)을 제외하고, 방향지시등의 발광면은 12.5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빛을 투과하지 않는 반사기의 조명면은 제외한다.

라. 작동조건

1) 방향지시등은 다른 등화장치와 독립적으로 작동되는 구조일 것

2) 자동차 좌·우측에 설치된 방향지시등은 한 개의 스위치에 의해 동시에 점멸하는 구조일 것

3) 자동차 길이가 6미터 미만인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호박색 옆면표시등이 설치된 경우 다목3)에 적합하여야 하고, 옆면표시등은 방향지시등과 동일하게 점멸되는 구조일 것

마. 표시장치

1) 방향지시등(카테고리-1·1a·1b·2a·2b)은 시각적, 청각적 또는 시각

적·청각적으로 동시에 작동되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2) 자동차의 앞면·뒷면 방향지시등 중 어느 하나라도 고장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것

가) 시각적 표시장치는 주파수 변화에 의해 점멸속도가 변화하거나 점등이 지속되거나 소등되는 구조

나) 경고음을 제공하는 경우 주파수 변화에 의해 점멸속도가 변화하는 기능이 동시에 제공될 것

3) 방향지시등의 고장을 경고하기 위해 경고음을 제공하는 경우 주파수 변화에 의해 점멸속도가 변화하는 기능이 동시에 제공될 것

4) 피견인자동차의 방향지시등 오작동을 견인자동차에서 감지하지 못할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방향지시등 오작동을 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각적 고장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바. 추가적인 요구사항

1) 방향지시등은 1분간 90±30회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

2) 방향지시기를 조작한 후 1초 이내에 점등되어야 하며, 1.5초 이내에 소등될 것

3)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방향지시등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일 것

4) 한 개의 방향지시등에서 합선 외의 고장이 발생된 경우 다른 방향지시등은 작동되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점멸회수는 변경될 수 있다.

사. 기타

뒷면방향지시등은 다양한 환경 조건 및 발광면의 오염 등에 따라 가변광도 적용도 가능할 것

2. 방향지시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 및 최소광도

구 분		최소광도 (칸델라)	최대광도(칸델라)	
			단일 등화	D-등화
앞면방향지시등	카테고리-1	175 이상	1,000 이하	500 이하
	카테고리-1a	250 이상	1,200 이하	600 이하
	카테고리-1b	400 이상	1,200 이하	600 이하
뒷면방향지시등	카테고리-2a (고정)	50 이상	500 이하	250 이하
	카테고리-2b (가변)	50 이상	1,000 이하	500 이하
보조방향지시등	카테고리-5	0.6 이상	280 이하	140 이하
	카테고리-6	50 이상	280 이하	140 이하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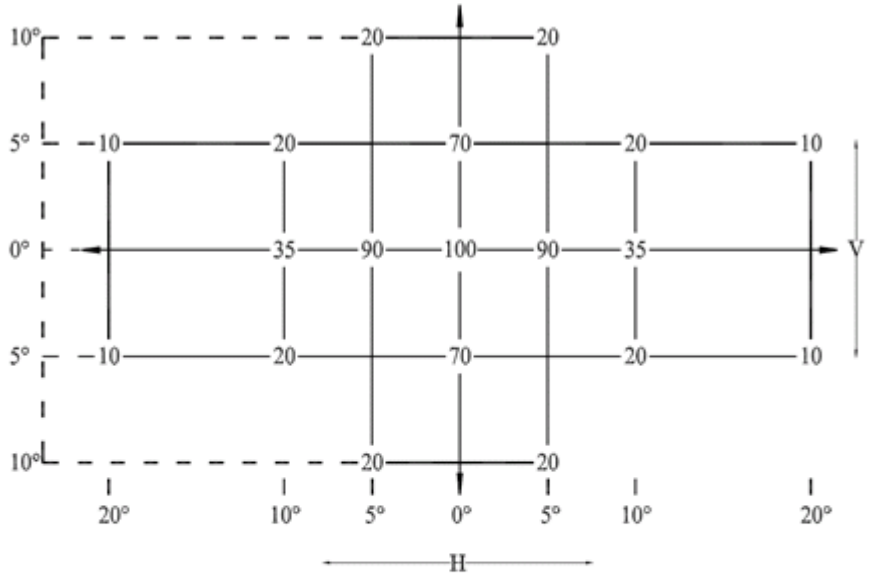
1. D-등화는 동일한 기능을 가진 2개의 독립된 등화의 조합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가. 기준축 방향에서 투영면의 전체면적이 투영면들을 밖으로 감싸는 최소 사각형 면적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나. 투영된 두개의 분리된 면간 접선거리가 기준축 방향에서 15mm 이하이어야 한다.
2. 고정광도는 고정된 광도를 제공하는 방향지시등을 의미한다.
3. 가변광도는 작동조건에 따라 광도가 변하는 방향지시등을 의미한다.

나. 앞면방향지시등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카테고리-1)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H	10L, 10R	61.25 이상
	5L, 5R	157.5 이상
	V	175 이상
5U, 5D	20L, 20R	17.5 이상
	10L, 10R	35 이상
	V	122.5 이상
10U, 10D	5L, 5R	35이상
관측각도 범위내		0.3 이상

주)

카테고리-1a, 1b, 2b의 측정점 및 측정구역 최소광도는 아래 그림의 비율로 적용할 것



다. 뒷면방향지시등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카테고리-2a)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H	10L, 10R	17.5 이상
	5L, 5R	45 이상
	V	50 이상
5U, 5D	20L, 20R	5 이상
	10L, 10R	10 이상
	V	35 이상
10U, 10D	5L, 5R	10 이상
관측각도 범위내		0.3 이상

주)

카테고리2b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는 나목의 비율을 적용할 것

라. 보조방향지시등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카테고리-5)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15U~15D	30R ~ 85R(우측) 30L ~ 85L(좌측)	0.6 이상

마. 보조방향지시등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카테고리-6)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30U	5R, 60R	10 이상
20U	30R	15 이상
15U	20R	15 이상
10U	5R, 10R	20 이상
5U	5R, 10R	30 이상
H	5R	50 이상
	10R	40 이상
	20R	20 이상
5D	5R	30 이상
	10R	30 이상
	20R	20 이상
	30R, 60R	10 이상

주)

1. 좌측은 대칭으로 적용할 것
2. 양산자동차 방향지시등 및 보조방향지시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만족해야 한다.

[별표 6의18] <신설 2014.6.10>

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의2제2호 관련)

1. 옆면표시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

1) SM1 형식의 옆면표시등은 모든 자동차에 설치 가능하며, SM2 형식의 옆면표시등은 승용자동차에 설치할 것

2) 길이 6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별표 6의11 제1호나목과 별표 6의14 제1호나목의 관측각도를 만족할 경우 옆면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설치위치

1) 높이

옆면표시등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만,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2,1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 할 수 있다.

2) 길이

가) 1개 이상의 옆면표시등을 자동차 길이방향으로 3등분하여 중앙부에 설치하고, 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3,0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나) 인접하는 2개 등화간 거리는 30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만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 40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다) 옆면표시등은 자동차의 가장 뒷부분에서 1,0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라) 자동차 길이가 6미터이내인 경우 자동차 길이방향으로 3등분하여 앞부분, 뒷부분 또는 앞뒤 부분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 관측각도

1) 수평각

가) 옆면표시등의 발광면은 앞측 45도·뒷측 4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추가로 설치되는 경우 3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하여야 한다.

나) 별표 6의14의 제1호나목 및 별표6의17의 제1호다목의 관측각도를 만족시키기 위해 옆면표시등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옆면표시등의 발광면은 앞측 및 뒷측 45도, 자동차 중심방향에서 3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2) 수직각

옆면표시등의 발광면은 상측 10도·하측 1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된 경우 하측 관측각도는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하여야 한다.

라. 옆면표시등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옆면일 것

마. 작동조건

길이 6미터 미만인 승용자동차와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설치된 호박색 옆면표시등은 동일한 측면의 방향지시등과 동일하게 점멸하는 구조일 것

바.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차폭등과 후미등의 표시장치로 대체가 가능하다.

사. 추가적인 요구사항

1) 옆면표시등이 후미등과 결합되거나, 뒷면안개등 또는 제동등과 상호 결합되어 점등된 경우에는 옆면표시등의 광학적 특성의 변경도 가능할 것

2) 뒷부분 옆면표시등이 방향지시등과 동시에 점멸하는 구조인 경우 호박색일 것

2. 옆면표시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 및 최소광도

구 분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SM1 형식	10U~10D-45L~45R	25 이하
SM2 형식	10U~10D-30L~30R	25 이하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구 분	측정점 및 측정구역(각도)	광도(칸델라)
SM1 형식	H-V	4 이상
	10U~10D-45L~45R	0.6 이상
SM2 형식	H-V	0.6 이상
	10U~10D-30L~30R	0.6 이상

주)

양산자동차 옆면표시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제2호가목 및 나목을 만족해야 한다.

[별표 6의19] <신설 2014.6.10>

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기준(제45조제2호 관련)

1. 작동조건
 가. 비상점멸표시등은 모든 방향지시등을 동시에 점멸할 수 있도록 독립된 조작장치에 의해 작동될 것
 나. 비상점멸표시등은 충돌사고 또는 긴급제동신호가 소멸되더라도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수동으로 점멸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 길이 6미터 미만인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설치된 호박색 옆면표시등은 동일한 측면의 방향지시등과 동일하게 점멸하는 구조일 것
2.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점멸식 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별표 6의17 제1호 마목의 표시장치와 연동되어 작동될 것
3. 추가적인 요구사항
 가. 피견인자동차의 비상점멸표시등은 견인자동차의 비상점멸표시등과 동시에 작동되는 구조일 것
 나. 비상점멸표시등은 원동기의 작동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도 작동하는 구조일 것

[별표 6의20] <신설 2014.6.10>

후방추돌경고등의 작동기준(제45조의2제2호 관련)

1. 작동기준

가. 후방추돌경고신호에 의해 작동되는 방향지시등은 4.0±1.0Hz로 점멸될 것. 다만, 필라멘트 광원인 경우에는 4.0+0.0/−1.0Hz로 점멸되어야 한다.

나. 후방추돌경고등이 점등될 경우 다른 등화장치와 독립적으로 작동할 것

다. 후방추돌경고등은 자동으로 점등 또는 소등되는 구조일 것

라. 후방추돌경고등은 방향지시등, 비상경고신호, 긴급제동신호가 작동 중에는 작동되지 않는 구조일 것

마. 후방추돌경고등의 작동기준

Vr	작동기준(초)
Vr 〉 30km/h	추돌예상시간 ≤ 1.4
Vr ≤ 30km/h	추돌예상시간 ≤ 1.4/30×Vr

주)

Vr은 후방추돌경고등을 갖춘 선행하는 자동차와 동일 차선에서 후행하는 자동차와의 속도 차이를 의미한다.

바. 후방추돌경고등의 작동시간은 3초 이내일 것

2.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별표 6의21] <신설 2014.6.10>

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제48조제3항 관련)

1. 자동차의 전조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순번	종류	형식	전력(와트)		순번	종류	형식	전력(와트)	
			12볼트계	24볼트계				12볼트계	24볼트계
1	필라멘트 광원	R2	45/40	55/50	29	필라멘트 광원	2B1	70/60	×
2		H1	55	70	30		1C1	55	×
3		H3	55	70	31		2C1	65/43	×
4		H4	35/35 또는 60/55	75/70	32		2D1	65/55	×
5		H7	55	70	33		2E1	70/60	×
6		H8	35	×	34		UF	70	×
7		H8B	35	×	35		LF	60	×
8		H9	65	×	36		1G1	55	×
9		H9B	65	×	37		2G1	43 또는65	×
10		H10	45	×	38		2H1	70/60	×
11		H11	55	70	39		HB1	70/50	×
12		H11B	55	70	40		HB2	72/65	×
13		H12	53	×	41		HB3	70	×
14		H13	60/55	×	42		HB4	60	×
15		H14	60/55	×	43		HB5	70/60	×
16		H15	55	×	44	가스방전식 광원	D1S	35	35
17		H16	19	×	45		D2S	35	35
18		HB2	72/65	×	46		D1R	35	35
19		HB3	60	×	47		D2R	35	35
20		HB3A	60	×	48		D3S	35	×
21		HB4	51	×	49		D3R	35	×
22		HB4A	51	×	50		D4S	35	×
23		HIR1	65	×	51		D4R	35	×
24		HIR2	55	×	52		D5S	25	×
25		H27W/1	27	×	53		D6S	25	×
26		H27W/2	27	×	54		D8S	25	×
27		1A1	55	×	55	LED	-	-	-
28		2A1	65/43	×					

주)

1. 1A1부터 HB5까지 형식의 광원은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5까지의 광도 기준을 적용하는 전조등을 말한다.
2. 전력란의 "00/00"은 이중필라멘트 구조로 "주행빔/변환빔" 전력기준을 구분하여 적용하며, "00"는 주행빔 및 변환빔의 구분 없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3. 전력란의 "×"는 사용불가를 의미하며, "-"는 전력제한기준의 적용 예외를 의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4. 위 표 광원의 색상은 해당 등화장치에 적합한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2. 자동차의 앞면안개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순번	종류	형식	전력(와트)	
			12볼트계	24볼트계
1	필라멘트 전구	H1	55	70
2		H2	55	70
3		H3	55	70
4		H7	55	70
5		H8	35	×
6		H10	45	×
7		H11	55	70
8		H11B	55	70
9		H12	53	×
10		H15	55	60
11		H16	19	×
12		H27W/1	27	×
13		H27W/2	27	×
14		HB4	51	×
15		HB4A	51	×
16		PSX24W	24	×
17	가스방전식 전구	D1S	35	35
18		D2S	35	35
19		D1R	35	35
20		D2R	35	35
21		D3S	35	×
22		D3R	35	×
23		D4S	35	×
24		D4R	35	×
25	LED	-	-	-

3. 자동차의 후퇴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순번	종류	형식	전력(와트)	
			12볼트계	24볼트계
1	필라멘트 전구	P21W	21, 27 또는 28	21, 27 또는 28
2		PY21W	21	21
3		W16W	16	16
4		W21W	21	21
5	LED	-	-	-

4. 자동차의 주간주행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순번	종류	형식	전력(와트)	
			12볼트계	24볼트계
1	필라멘트 전구	P13W	13	×
2		PSX26W	24	24
3		H15	15	20
4		P19W	19	×
5		PS19W	19	×
6		P21W	21	21
7		P21/5W	21/4	21/4
8	LED	-	-	-

[별표 6의22] <신설 2014.6.10>

자동차 등화장치 및 반사장치의 색도기준(제48조제5항 관련)

1.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에 대한 색도는 다음 각 목의 색도 교차점 및 색도경계선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가. 백색의 색도 교차점 및 색도 경계선

색도 교차점			색도 경계선	
구 분	x	y	구분	색도 경계
W1	0.310	0.348	녹색경계(W12)	y = 0.150 + 0.640x
W2	0.453	0.440	황녹색경계(W23)	y = 0.440
W3	0.500	0.440	황색경계(W34)	x = 0.500
W4	0.500	0.382	적자주색경계(W45)	y = 0.382
W5	0.443	0.382	자주색경계(W56)	y = 0.050 + 0.750x
W6	0.310	0.283	청색경계(W61)	x = 0.310

나. 황색의 색도 교차점 및 색도 경계선

색도 교차점			색도 경계선	
구 분	x	y	구분	색도 경계
SY1	0.454	0.486	녹색경계(SY12)	y = 1.290x - 0.100
SY2	0.480	0.519	분광궤적(SY23)	
SY3	0.545	0.454	적색경계(SY34)	y = 0.138 + 0.580x
SY4	0.521	0.440	황백색경계(SY45)	y = 0.440
SY5	0.500	0.440	백색경계(SY51)	y = 0.940 - x

다. 호박색의 색도 교차점 및 색도 경계선

색도 교차점			색도 경계선	
구 분	x	y	구분	색도 경계
A1	0.545	0.425	녹색경계(A12)	y = x - 0.120
A2	0.560	0.440	분광궤적(A23)	
A3	0.609	0.390	적색경계(A34)	y = 0.390
A4	0.597	0.390	백색경계(A41)	y = 0.790 - 0.670x

라. 적색의 색도 교차점 및 색도 경계선

색도 교차점			색도 경계선	
구 분	x	y	구분	색도 경계
R1	0.645	0.335	황색경계(R12)	y = 0.335
R2	0.665	0.335	분광궤적(R23)	
R3	0.735	0.265	자주색선(R34)	적색과 분광궤적 청색끝단사이의 보라색 영역을 가로지르는 연장선
R4	0.721	0.259	자주색경계(R41)	y = 0.980 - x

2. 자동차 반사장치 색상에 대한 색도는 다음 각 목의 색도 교차점 및 색도경계선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가. 반사장치의 야간 색도기준

1) 백색의 색도 교차점 및 색도 경계선

색도 교차점			색도 경계선	
구 분	x	y	구분	색도 경계
W1	0.373	0.402	청색경계(W12)	y = 0.843 - 1.182x
W2	0.417	0.350	보라색경계(W23)	y = 0.489x + 0.146
W3	0.548	0.414	황색경계(W34)	y = 0.968 - 1.010x
W4	0.450	0.513	녹색경계(W41)	y = 1.442x - 0.136

2) 황색의 색도 교차점 및 색도 경계선

색도 교차점			색도 경계선	
구 분	x	y	구분	색도 경계
Y1	0.505	0.465	녹색경계(Y12)	y = x - 0.040
Y2	0.520	0.480	분광궤적(Y23)	
Y3	0.610	0.390	적색경계(Y34)	y = 0.200x + 0.268
Y4	0.585	0.385	백색경계(Y41)	y = 0.970 - x

3) 호박색의 색도 교차점 및 색도 경계선

색도 교차점			색도 경계선	
구 분	x	y	구분	색도 경계
A1	0.545	0.425	녹색경계(A12)	y = 1.417x - 0.347
A2	0.557	0.442	분광궤적(A23)	
A3	0.609	0.390	적색경계(A34)	y = 0.390
A4	0.597	0.390	백색경계(A41)	y = 0.790 - 0.670x

4) 적색의 색도 교차점 및 색도 경계선

색도 교차점			색도 경계선	
구 분	x	y	구분	색도 경계
R1	0.643	0.335	황색경계(R12)	y = 0.335
R2	0.665	0.335	분광궤적(R23)	
R3	0.735	0.265	자주색선(R34)	
R4	0.720	0.258	자주색경계(R41)	y = 0.978 - x

나. 반사장치의 주간 색도기준

1) 백색의 색도 교차점 및 색도 경계선

색도 교차점			색도 경계선	
구 분	x	y	구분	색도 경계
W1	0.300	0.270	보라색경계(W12)	y = x - 0.030
W2	0.385	0.355	황색경계(W23)	y = 0.740 - x
W3	0.345	0.395	녹색경계(W34)	y = x + 0.050
W4	0.260	0.310	청색경계(W41)	y = 0.570 - x

2) 황색의 색도 교차점 및 색도 경계선

색도 교차점			색도 경계선	
구 분	x	y	구분	색도 경계
Y1	0.545	0.454	적색경계(Y12)	y = 0.534x + 0.163
Y2	0.487	0.423	백색경계(Y23)	y = 0.910 - x
Y3	0.427	0.483	녹색경계(Y34)	y = 1.342x - 0.090
Y4	0.465	0.534	분광궤적(Y41)	

3) 적색의 색도 교차점 및 색도 경계선

색도 교차점			색도 경계선	
구 분	x	y	구분	색도 경계
R1	0.690	0.310	적색경계(R12)	y = 0.346 - 0.053x
R2	0.595	0.315	자주색경계(R23)	y = 0.910 - x
R3	0.560	0.350	황색경계(R34)	y = 0.350
R4	0.650	0.350	분광궤적(R41)	

다. 반사장치(형광)의 주간 색도기준 : 적색의 색도 교차점 및 색도 경계선

색도 교차점			색도 경계선	
구 분	x	y	구분	색도 경계
FR1	0.690	0.310	적색경계(FR12)	y = 0.346 - 0.053x
FR2	0.595	0.315	자주색경계(FR23)	y = 0.910 - x
FR3	0.569	0.341	황색경계(FR34)	y = 0.315 + 0.047x
FR4	0.655	0.345	분광궤적(FR41)	

주)

1. x, y, z는 색도좌표를 의미한다.
2. 색도좌표는 분광측색방법, 자극치 직독방법으로 측정한다.
 가. "분광측색방법"이란 반사된 빛을 분광하여 파장별 반사율을 계산하여 3자극치를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자극치 직독방법"이란 분광측색기에 의해 수광기의 출력으로부터 3자극치를 직접 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측정은 국제색채위원회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한다.(CIE Publication 15.2, 1986, Colorimetry, the CIE 1931 관측자 적용)

[별표 6의23] <신설 2014.6.10>

후부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1항제3호 관련)

1. 설치
 가. 피견인자동차의 후부반사기가 뒷면의 등화장치와 결합된 경우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나. 후부반사기는 IA, IB 형식의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다. 추가로 설치된 후부반사기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된 다른 등화장치 기능을 저해해서는 아니된다.
2. 설치위치
 가. 너비
 1) 후부반사기의 조명면 외측 끝단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일 것
 2)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하고, 기준축 방향에서 후부반사기의 조명면간 설치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너비가 1,300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높이
 후부반사기의 조명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만, 다른 등화장치와 결합된 경우 1,2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1,5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길이
 자동차의 뒷면에 설치할 것
3. 관측각도
 가. 수평각
 후부반사기의 조명면은 내측 30도·외측 3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나. 수직각
 후부반사기의 조명면은 상측 10도·하측 1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하측 5도 이내에서 관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추가적인 요구사항
 후부반사기의 조명면은 자동차 뒷면의 별도로 설치된 등화장치의 발광면을 공유할 수 있다.

[별표 6의24] <신설 2014.6.10>

피견인자동차용 삼각형 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2항제3호 관련)

1. 설치
 가.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는 IIIA, IIIB 형식의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나.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가 추가로 설치된 경우 의무 설치된 다른 등화장치 기능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삼각형의 꼭지점이 위쪽을 향하게 설치할 것
2. 설치위치
 가. 너비
 1)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의 조명면 외측 끝단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일 것
 2) 기준축 방향에서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의 조명면간 설치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너비가 1,300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높이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의 조명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만,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1,5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길이
 자동차의 뒷면에 설치할 것
3. 관측각도
 가. 수평각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의 조명면은 내측 30도·외측 3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나. 수직각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의 조명면은 상측 15도·하측 1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하측 5도 이내에서 관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추가적인 요구사항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의 조명면은 자동차 뒷면에 설치된 다른 등화장치의 발광면을 공유할 수 있다.

[별표 6의25] <신설 2014.6.10>

앞면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3항제3호 관련)

1. 설치
 가. 앞면반사기는 IA, IB 형식의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나. 앞면반사기가 추가로 설치된 경우에는 의무 설치된 다른 등화장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설치위치
 가. 너비
 1) 앞면반사기의 조명면 외측 끝단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일 것
 2) 피견인자동차인 경우 등화의 조명면 외측 끝단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150밀리미터 이내일 것
 3) 승용자동차와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하고, 기준축 방향에서 앞면반사기의 조명면간 설치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너비가 1,300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높이
 앞면반사기의 조명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만,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 1,5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길이
 자동차의 앞면에 설치할 것
3. 관측각도
 가. 수평각
 1) 앞면반사기의 조명면은 내측 30도·외측 3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피견인자동차인 경우에 내측은 1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하여야 한다.
 2) 1)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앞면반사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관측각도를 만족할 것
 나. 수직각
 앞면반사기의 조명면은 상측 10도·하측 1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하측 5도 이내에서 관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추가적인 요구사항
 앞면반사기의 조명면은 자동차 앞면에 설치된 다른 등화장치의 발광면을 공유할 수 있다.

[별표 6의26] <신설 2014.6.10>

옆면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4항제2호 관련)

1. 설치
 가. 옆면반사기는 IA, IB 형식의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나. 옆면반사기가 추가로 설치된 경우 의무 설치된 다른 등화장치 기능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2. 설치위치
 가. 높이
 옆면반사기의 조명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만, 다른 등화장치와 결합된 경우 1,2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1,5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길이
 1) 1개 이상의 옆면반사기를 설치할 경우 자동차 길이방향으로 3등분하여 중앙부에 1개를 설치하고, 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3,000밀리미터 이내에 1개를 설치할 것
 2) 인접하는 2개의 옆면반사기간 거리는 30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만,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 인접하는 2개의 옆면반사기간 거리는 4,000밀리미터 이내일 것
 4) 옆면반사기는 자동차의 가장 뒷부분에서 1,0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 길이가 6미터이내인 경우 자동차 길이방향으로 3등분하여 앞부분, 뒷부분 또는 앞·뒤 부분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관측각도
 가. 수평각
 1) 옆면반사기의 조명면은 앞측 45도·뒷측 4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2) 1)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옆면반사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관측각도를 만족할 것
 나. 수직각
 옆면반사기의 조명면은 상측 10도·하측 1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 다만, 지상에서 5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하측 5도 이내에서 관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추가적인 요구사항
 옆면반사기의 조명면은 자동차 옆면에 설치된 다른 등화장치의 발광면을 공유할 수 있다.

[별표 6의27] <신설 2014.6.10>

반사기의 반사성능 기준(제49조의제5항 관련)

1. IA, IB, IIIA, IIIB 형식의 반사성능

구 분	입사각(각도)		반사성능(mcd/lx)	
			관측각(각도)	
			0.33°	1.5°
IA, IB	10U	V	200	2.8
	5U	20L, 20R	100	2.5
	H	V	300	5
	5D	20L, 20R	100	2.5
	10D	V	200	2.8
IIIA, IIIB	10U	V	200	8
	5U	20L, 20R	150	8
	H	V	450	12
	5D	20L, 20R	150	8
	10D	V	200	8

주)

1. 호박색 반사기의 반사성능은 위 표에 2.5배를 적용할 것
2. 백색 반사기의 반사성능은 위 표에 4배를 적용할 것

2. IVA 형식의 반사성능

입사각(각도)		반사성능(mcd/lx)					
		관측각(각도)					
		0.33°			1.5°		
		백색	호박색	적색	백색	호박색	적색
H	V	1,800	1,125	450	34	21	9
10U	V	1,200	750	300	24	15	6
10D	V	1,200	750	300	24	15	6
H	20L, 20R	610	380	150	15	10	4
H	30L, 30R	540	335	135	15	10	4
H	40L, 40R	470	290	115	15	10	4
H	50L, 50R	400	250	100	15	10	4

주)

양산자동차 반사장치의 반사성능 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제1호 또는 제2호를 만족해야 한다.

[별표 6의28] <신설 2014.6.10>

후부반사판의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6항제4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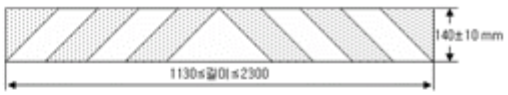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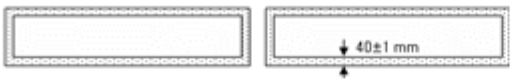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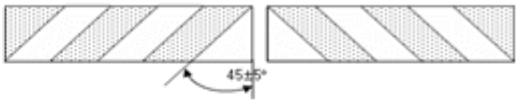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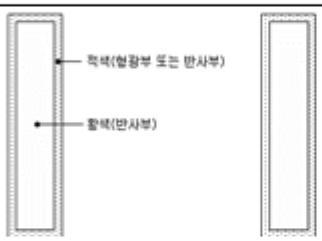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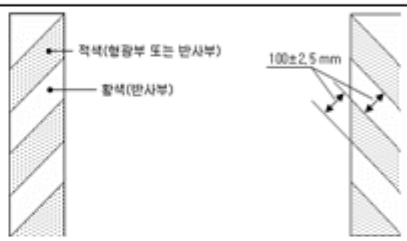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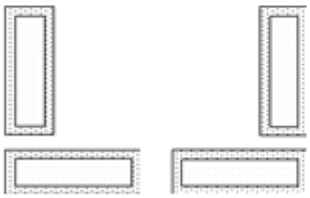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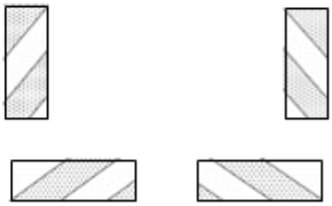
1. 후부반사판의 반사성능

입사각(각도)	반사성능(cd/ix · ㎡) 관측각(0.33°)	
	황색	적색
5R	300	10
30R	180	7
40R	75	4
60R	10	–

2. 후부반사판의 휘도계수

적 색	0.03 이상
황 색	0.16 이상

3. 후부반사판의 형상 및 부착방법

부착 형식	피견인자동차	화물 · 특수자동차 (피견인자동차는 제외)
형식 1		
형식 2	 크기 : 형식1 길이의 1/2	 크기 : 형식1 길이의 1/2
형식 3	 크기 : 형식2와 같음	 크기 : 형식2와 같음
형식 4	 크기 : 형식3 길이의 1/2	 크기 : 형식3 길이의 1/2

주)

1. 위 4가지 형식 중 하나의 형식으로 부착할 것

2. 저상트레일러에 형식 1 또는 형식 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판의 너비를 140±10mm, 적색 테두리의 두께를 20±1mm로 할 수 있다.
3. 양산자동차 후부반사판의 반사성능 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제1호를 만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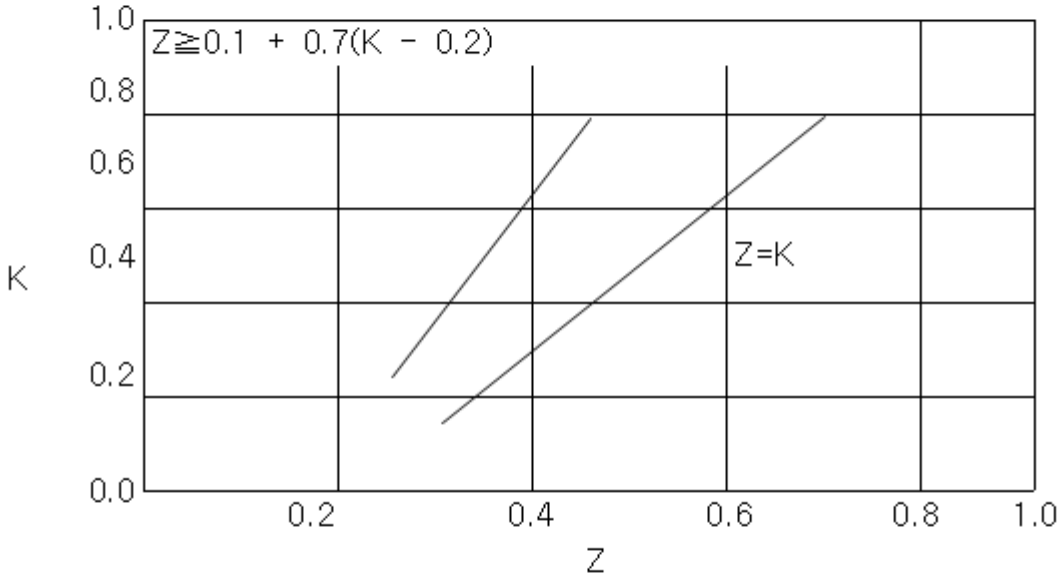
[별표 7] <개정 2009.1.23>

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1호관련)

1. 차축 사이의 제동력 배분 기준(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를 제외한다)

가. 제동률(Z)이 0.15 이상 0.80 이하인 경우에서는 적차상태 및 경적차상태(운전자 1명 및 측정장비를 실은 상태를 말한다)에서 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규정된 적재조건에서 자동차의 제동률에 대한 각 차축의 점착력을 나타내는 곡선을 말한다)은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보다 위에 위치할 것

나. 노면마찰계수(K)가 0.20 이상 0.80 이하인 경우에는 $Z \geq 0.1 + 0.7(K - 0.2)$의 산식에 적합할 것



K : 노면마찰계수, Z : 제동률(감속도/중력가속도)

2. 바퀴잠김 확인시험 기준(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를 제외한다)

제동률(Z)이 0.15 이상 0.80 이하인 경우에서는 전차축의 양쪽바퀴는 후차축의 양쪽바퀴보다 먼저 바퀴잠김(제동시 바퀴의 회전이 완전정지되는 상태를 말한다)이 발생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한 경우에서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전차축의 양쪽바퀴와 후차축의 1개 바퀴가 잠김이 발생하거나 후차축의 바퀴가 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다. 2개 차축이 동시잠김(시속 3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에서 제동시 전차축 및 후차축의 각각 늦게 잠기기 시작하는 순간의 바퀴 사이의 시간간격이 0.1초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

3. 토오크휠시험(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를 제외한다)

제1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4.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및 고속제동능력(최고속도가 시속 125킬로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원동기정지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

구 분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주제동장치의 고속제동능력	원동기정지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제동초속도(㎞/h)	100	최고속도의 80%(다만, 최고속도의 80%값이 16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60을 적용한다)	100
제동거리(m)	0.1V+0.006V 이하	0.1V+0.006V 이하	0.1V+0.006V 이하
평균최대감속도 (㎨)	6.43 이상(제동장치가 없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자동차는 연결상태에서 5.4㎨ 이상일 것)	5.76 이상	6.43 이상
측정시 조작력(N)	500 이하		
제동시자동차상태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3.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정지시 차량중심선은 차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측정자동차상태	적차 및 경적차상태		

주)

1) V : 제동초속도(㎞/h)

2) 평균최대감속도 : 제동시 감속의 크기가 최대로 일정하게 되어 안정되었을 때의 감속값을 말한다.

5.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고장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가변식장치 고장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충전능력 기준

구 분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고장	가변식장치 고장시 주제동장치의	에너지저장장치의 충전능력

	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제동능력	
제동초속도(km/h)	100		·"P_2"에서 "P_1"까지의 도달시간은 20초 이하일 것
제동거리(m)	0.1V+0.0075V	0.1V+0.01V 이하	
평균최대감속도(m/s²)	5.15 이상	3.86 이상	
측정시조작력(N)	500이하		
제동시자동차상태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정지시 차량중심선은 차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동시 각 바퀴는 16km/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경고등은"P_7"상태에서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2회 최대작동하였을 때 점등되지 아니할 것
측정자동차상태	적차 및 경적차상태		

주)

1) 압력단위 : bar
2) V : 제동초속도(km/h)
3) P_1 : 제작자에 의하여 규정된 유압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최대작동압력(출력제한압력)
4) P_2 : 유압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에너지공급없이 P_1에서 시작하여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로 4회 최대작동한 후의 압력
5) P_7 : 제작자에 의하여 규정된 유압식 에너지저장장치의 하한압력(입력제한압력)
6) 가변식장치 : 자동차의 정적하중변화, 동적하중이동 또는 감속도로 인하여 바퀴의 하중변화를 보상하기 위하여 2개 이상 바퀴 사이의 제동압력 비율을 자동적으로 변화시키는 1개 이상의 장치를 말한다.

6. 전달장치, 유압계통, 에너지저장장치 및 전기회생제동장치 고장 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

구 분	전달장치 고장 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유압계통 고장 시 주제동장치	에너지저장장치 고장 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전기회생제동장치 고장 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의 제동 능력		
제동초속도(㎞/h)	100			
제 동 거 리(m)	$0.1V+0.0158V^2$ 이하			
평균최대감속도(㎨)	2.44 이상			
측정시조작력(N)	500 이하			
제동시자동차상태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정지시 차량중심선은 차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측정자동차상태	적차 및 경적차상태			

주)

1) V : 제동초속도(㎞/h)

2) 전달장치 :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와 제동작동부품 사이에 기능적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으로, 기계식·유압식·공기식·전기식 또는 혼합식으로 구성되며 제동력이 에너지원의 지원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에너지저장장치도 전달장치에 해당된다.

7.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

구 분	정 적 제 동 능 력	동 적 제 동 능 력	
기 준	20%경사로(피견인자동차와 연결이 가능한 자동차는 연결자동차의 상태에서 12%경사로)에서 위 방향 및 아래방향으로 각각 5분동안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제동초속도(㎞/h)	30
		제 동 거 리(m)	$0.1V+0.0257V^2$ 이하
		평균최대감속도(㎨) 정지직전감속도(㎨)	1.50 이상
측정시조작력(N)	손조작식 : 400 이하 발조작식 : 500 이하		
측정자동차상태	적차상태		
시 험 로	건조한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의	건조하고 평탄한 직선포장로	

	경사로	

주) V : 제동초속도(㎞/h)

8. 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 및 회복제동능력 기준

구 분	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	주제동장치의 회복제동능력
제동초속도 (㎞/h)	·1차 : 100	·2차 : 100
제 동 거 리 (m)(S)	·1차 : $0.1V+\frac{Sc-0.1V}{0.6}$ 이하 ·2차 : $0.1V+0.008V^2$ 이하	·1차 : $0.1V+\frac{Sc-0.1V}{1.5} \leqq S \leqq 0.1V+\frac{Sc-0.1V}{1.5}$ ·2차 : 1차와 동일함
평균최대감속도 (㎨)	·1차 : 0.60dc 이상 ·2차 : 4.82 이상	0.70dc 이상 ~ 1.50dc 미만
측정시조작력 (N)	·1차 : 제4호의 주제동장치의 적차상태 지동능력 중에서 가장 짧은 제동거리(m) 또는 가장 높은 평균최대감속도(㎨)로 기록되었을 때의 평균조작력(N) 이하로 작동시킬 것 ·2차 : 500 이하	·1차 : 제4호의 주제동장치의 적차상태 제동능력 중에서 가장 짧은 제동거리(m)또는 가장 높은 평균최대감속도(㎨)로 기록되었을 때의 평균조작력(N) 이하로 작동시킬 것 ·2차 : 1차와 동일함
제동시자동차상태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정지시 차량중심선은 차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측 정 자 동 차 상 태	적차상태	
비 고	2회 제동시험중 1차시험이 기준에 적합하면 2차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2회 제동시험중 최소 1회가 위 기준에 적합할 것

주)

1) V : 제동초속도(㎞/h)

2) S : 제동거리 교정값(m)

3) Sc : 제4호의 주제동장치의 적차상태 제동능력 중에서 가장 짧은 제동거리 교정값(m) 다만, 주제동장치의 일부로 작동되는 전기회생제동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추가 비교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추가 비교시험 시의 제동거리 교정값(m)으로 한다.

4) dc : 제4호의 주제동장치의 적차상태 제동능력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최대감속도(㎧) 다만, 주제동장치의 일부로 작동되는 전기회생제동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추가 비교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추가 비교시험 시의 평균최대감속도(m/s^2)로 한다.

[별표 7의2] <개정 2014.6.10>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2호관련)

1. 제동장치의 구조기준 및 제동력 배분

가. 구조기준

(1) 가변식장치는 자동적으로 작동하여야 하며, 수동가변식장치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가변범위에서 이 기준에 적합할 것

(2) 세미트레일러용 견인자동차의 제동력은 피견인자동차가 없는 상태에서 공차상태의 피견인자동차가 있는 상태까지 계속적으로 변화할 것

(3) 차량총중량이 3.5톤(세미트레일러 또는 센터차축 트레일러의 경우에는 적차상태의 후차축하중의 총합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견인자동차에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까지 공급되는 공기압력은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가 최대작동될 때에는 피견인자동차의 공기조절라인 및 공기공급라인으로 공급되는 공기압력은 6.5 ~ 8.5bar가 될 것

(나)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이 "P "일 때에는 피견인자동차의 공기공급라인으로 공급되는 공기압력은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가 작동되기 이전에 7.0bar 이상이 될 것. 이 경우 "P "는 공기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조정기의 하한압력(입력제한압력)을 말하고, 압력조정기가 없는 경우에는 에너지원에서의 압력(최대압력×0.9)을 말한다.

(다) 가변식장치가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가) 및 (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제동력 배분(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를 제외한다)

(1) 2축 자동차

(가) 노면마찰계수(K)가 0.20 이상 0.80 이하인 경우에는 전차축 및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그림 1A 내지 그림 1C의 A선 아래로 위치할 것

(나) 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보다 위에 위치할 것. 다만, 아래 1) 내지 3)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로서 적차 및 공차상태의 후차축하중의 비율이 1.50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또는 차량총중량이 2톤 미만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제동률(Z)이 0.15 초과 0.30 미만 및 0.45 초과 0.80 이하일 때 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보다 위에 위치하여야 하

며, Z가 0.30 이상 0.45 이하일 때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그림 1A의 B선 아래에 위치할 것

2) 1)에 속하지 아니하는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다음 가) 또는 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Z가 0.15 이상 0.50 이하일 때 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보다 위에 위치할 것

나) Z가 0.15 초과 0.30 미만일 때 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그림 1C의 C-1선과 C-2선 사이에 위치하여야 하며, Z가 0.15 초과 0.50 미만일 때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그림 1C의 C-1선 아래에 위치할 것. 또한 Z가 0.50 이상 0.61 이하일 때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그림 1C의 D선 아래에 위치할 것

3) 승합자동차·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다음 가) 또는 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Z가 0.15 이상 0.30 이하일 때 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보다 위에 위치할 것

나) Z가 0.15 초과 0.30 미만일 때 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그림 1B의 E-1선과 E-2선 사이에 위치하여야 하며, Z가 0.15 초과 0.30 미만일 때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그림 1B의 E-1선 아래에 위치할 것. 또한 Z가 0.30이상 0.61이하일 때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그림 1B의 F선 아래에 위치할 것

(2) 3축 이상 자동차

3축 이상 자동차의 경우에도 2축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Z가 0.15 이상 0.30 이하일 때 전차축 중에서 1개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이 후차축 중에서 1개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보다 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위 2축 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의 견인자동차

(가) 압력(P)과 제동률(T /P) 사이의 관계는 그림 2와 그림 3에 보여준 범위 이내일 것

(나) 압력(P)값은 7.5bar 이하일 것

(다) 제동률(T /P)이 그림 2와 그림 3에서 0~0.1일 때 압력(P)과 제동률(T /P)은 서로 비례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시험자동차의 상태가 공차상태에서 적차상태로 변화될 때 압력(P)과 제동률(T /P)사이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변화할 것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로서 적차 및 공차상태의 후차축하중의 비율이 1.50 이하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또는 차량총중량이 2톤 미만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k(f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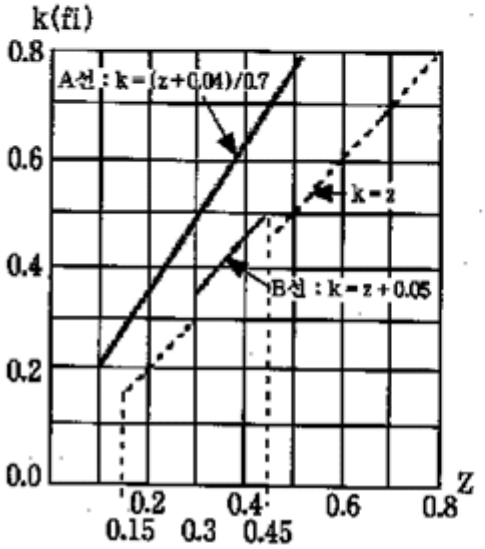


그림 1A

승합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k(fi) F선 : k=(z-0.0188)/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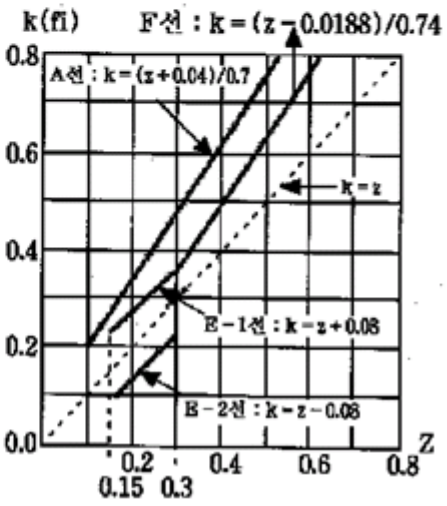


그림 1B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그림1A의 자동차 제외)

k(fi)

k=(z-0.21)/0.5:D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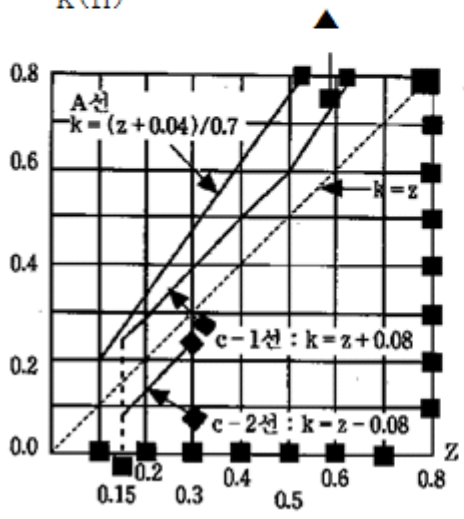


그림 1C

세미트레일러용 외의 견인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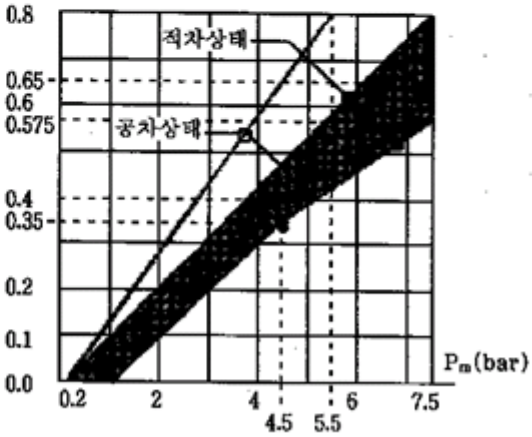


그림 2

세미트레일러용 견인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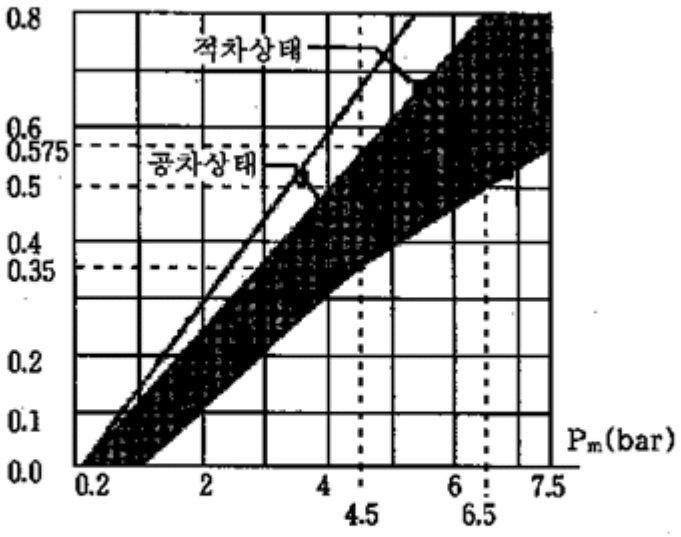


그림 3

2.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원동기정지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을 포함한다) 기준

구 분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제동초속도(km/h)	60	80	60
제동거리(m)	0.15V+0.0077V 이하		
평균최대감속도(m/s²)	5.00 이상		
측정시조작력(N)	700 이하		
제동시자동차상태	·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5m, 승합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 제동시 각 바퀴는 16km/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측정자동차상태	적차 및 경적차상태 (원동기정지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은 적차상태일 것)		

주) V : 제동초속도(㎞/h)

3.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확인시험 기준

구 분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제동초속도(㎞/h)	최고속도의 30%
측정시조작력(N)	700이하
제동시자동차상태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5m, 승합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측정자동차상태	적차 및 경적차상태

4. 주제동장치의 고속제동능력(최고속도가 시속 75킬로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기준

구 분	·차량총중량 5톤 초과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차량총중량 5톤 이하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12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제동초속도(㎞/h)	최고속도의 80%(다만, 최고속도의 80%값이 9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을 적용한다)	최고속도의 80%(다만, 최고속도의 80%값이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을 적용한다)	최고속도의 80%(다만, 최고속도의 80%값이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을 적용한다)
제동거리(m)	0.15V+0.0097V 이하		
평균최대감속도(㎨)	4.00 이상		
측정시조작력(N)	700 이하		
제동시자동차상태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5m, 승합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측정자동차상태	적차 및 경적차 상태

주)

1) V : 제동초속도(㎞/h)

2)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는 시험상한속도를 시속 80킬로미터로 한다.

5. 조건별 제동능력 기준

가. 조건별 기준적용방법

조 건 항 목		기 준 적 용 방 법
· 제동액 누설 고장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1) 주제동장치와 비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기준(1)을 적용할 것 (2) 주제동장치와 비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공통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나목의 기준 (1)과 (2)를 적용할 것 -비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사용하여 나목의 기준(1)을 적용하고, -주제동장치의 기능고장상태에서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사용하여 나목의 기준 (2)를 적용할 것
· 에너지 고장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에너지원 고장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나목의 기준 (1)을 적용할 것
	-전달장치 고장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1	"제동액 누설 고장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의 기준적용방법과 동일함
	-전달장치 고장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2	
· 가변식장치 고장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나목의 기준(1)을 적용할 것
· 에너지저장장치의 총용량능력		나목의 기준(1)을 적용할 것
· 압력보호밸브 후단부측 에너지저장장치의 총용량능력		나목의 기준(1)을 적용할 것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고장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나목의 기준(2)를 적용할 것

주)

1) 비상제동장치 : 주제동장치중 하나의 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운전자가 자동차를 조종할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말한다.

2) 에너지원 : 주제동장치에서 운전자의 조작력을 증가시키기 위하거나 관련된 힘을 받아 운전자의 조작력을 대신하여 제동작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힘 또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나. 차종별 시험적용기준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차량총중량 5톤이하 승합자동차</th><th>차량총중량 5톤초과 승합자동차</th><th>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th><th>차량총중량 3.5톤 초과 12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th><th>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th></tr>
<tr><td colspan="3">제동초속도(㎞/h)</td><td>60</td><td>60</td><td>70</td><td>50</td><td>40</td></tr>
<tr><td rowspan="2">기준 (1)</td><td>제동거리(m)</td><td>적차경적차</td><td colspan="2">0.15V+0.0154V 이하</td><td colspan="3">0.15V+0.0175V 이하</td></tr>
<tr><td>평균최대감속도(㎨)</td><td colspan="2">2.50 이상</td><td colspan="3">2.20 이상</td></tr>
<tr><td rowspan="4">기준 (2)</td><td rowspan="2">제동거리(m)</td><td>적차</td><td colspan="2">0.15V+0.00257V 이하</td><td colspan="3">0.15V+0.0297V 이하</td></tr>
<tr><td>경적차</td><td>0.15V+0.0297V 이하</td><td>0.15V+0.0257V 이하</td><td colspan="2">0.15V+0.0351V 이하</td><td>0.15V+0.0297V 이하</td></tr>
<tr><td rowspan="2">평균최대감속도(㎨)</td><td>적차</td><td colspan="2">1.50 이상</td><td colspan="3">1.30 이상</td></tr>
<tr><td>경적차</td><td>1.30 이상</td><td>1.50 이상</td><td colspan="2">1.10 이상</td><td>1.30 이상</td></tr>
<tr><td colspan="3">측정시조작력(N)</td><td colspan="5">발조작식 : 700 이하, 손조작식 : 600 이하</td></tr>
<tr><td colspan="3">제동시자동차상태</td><td colspan="5">·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5m, 승합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td></tr>
</table>

주)

1) V : 제동초속도(㎞/h)

2) 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제6호 및 제7호의 에너지저장장치의 총용량능력 시험으로 실시할 수 있다.

6. 견인자동차의 에너지저장장치의 총용량능력 기준

구분	공기에너지저장장치	진공에너지저장장치	
		에너지원이 원동기인 경우	에너지원이 진공펌프인 경우
기준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9회째 최대작동하였을 때의 공기조절라인의 압력은 1회째 압력의 50% 이상일 것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5회째 최대작동하였을 때의 조절라인의 압력은 1회째 압력의 50% 이상일 것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9회째 최대작동하였을 때의 조절라인의 압력은 1회째 압력의 50% 이상일 것
측정조건	0.5ℓ 이상의 시험용탱크를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로 가는 공기조절라인의 연결커넥터에 부착하여 공기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이 "P "인 상태	0.5ℓ이상의 시험용탱크를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로 가는 조절라인의 연결커넥터에 부착하여 진공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이 "P "인 상태	
측정자동차 상태	적차 또는 경적차상태		

주)

1) 압력단위 : bar

2) P : 공기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조정기의 설계상한압력(출력제한압력)

3) P : 진공식 에너지저장장치 최대압력의 90퍼센트까지의 설계압력

7. 견인자동차의 압력보호밸브 후단부측 에너지저장장치의 총용량능력 기준

기준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9회째 최대작동하였을 때의 공기조절라인의 압력은 1회째 압력의 50% 이상일 것
측정조건	0.5ℓ 이상의 시험용탱크를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로 가는 공기조절라인의 연결커넥터에 부착하여 공기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이 P 인 상태
측정자동차 상태	적차 또는 경적차상태

주)

1) 압력단위 : bar

2) P : 공기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조정기의 설계상한압력(출력제한압력)

8. 제동액 누설 고장시 경고등 작동 기준

기준	시동스위치가 "ON" 위치에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고등이 작동할 것 ·경고등은 적색으로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경고등은 다른 경고등과 쉽게 구별될 수 있을 것. 다만, 이 경고등은 다른 제동장치의 경고등과 겸용으로 할 수 있다.
측정조건	제동액이 저장장치내의 격벽의 가장 낮은 부분 아래로 떨어지거나 최대정상수준의 4분의1로 감소하였을 때 또는 마스터실린더의 출구근처에서 정상계통과 고장계통의 압력차이가 15bar에 도달하였을 때 측정
측정자동차 상태	적차 또는 경적차상태

9.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고장시 경고등 작동 기준

기준	시동스위치가 "ON" 위치에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고등이 작동할 것 ·경고등은 황색으로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경고등은 다른 경고등과 쉽게 구별될 수 있을 것. 다만, 이 경고등은 다른 제동장치의 경고등과 겸용으로 할 수 있다.
측정조건	자동차의 전원으로부터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까지의 전원케이블 또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로부터 제동력을 조절하는 모듈레이터까지의 입력(출력)케이블을 분리시켜 측정
측정자동차 상태	적차 또는 경적차상태

10. 경고장치의 작동 기준

구분	(1) 에너지원 고장시 경고음 또는 경고등 작동	(2) 전달장치 고장시 경고음 및 경고등 작동 1	(3) 전달장치 고장시 경고음 또는 경고등 작동 2

기준	시동스위치가 "ON" 위치에서 (1)과 (3)의 시험은 아래 경고음 또는 경고등이 작동되어야 하고, (2)의 시험은 다음 경고음 및 경고등이 작동할 것. 다만, (2)의 시험에서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어 있거나 자동변속레버가 "Park" 위치에 있다면 경고등만 작동될 수 있다. ·경고음은 운전자의 귀의 위치에서 65dB(A) 이상일 것 ·경고등은 적색으로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경고등은 다른 경고등과 쉽게 구별될 수 있을 것. 다만, 이 경고등은 다른 제동장치의 경고등과 겸용으로 할 수 있다.		
측정조건	주제동장치의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을 경고작동압력보다 높게 설정한 상태에서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경고장치가 작동될 때까지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반복 작동한 상태	주제동장치의 유압에너지저장장치의 입력제한압력 상태에서 에너지원을 정지시키거나 원동기를 공회전시켜 에너지원으로부터 2개 이상 배관에서 1개배관을 대기로 연 상태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에너지원으로부터 2개 이상 배관에서 1개배관을 대기로 열어 모든 에너지를 배출시킨 상태
측정자동차 상태	적차 또는 경적차 상태		

11.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의 감속능력 기준

순번	적용대상 차종	적용기준
1	가. 차량총중량 5톤을 초과하는 다음의 승합자동차. 다만, 순번 제3호에 해당하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1) 승차정원 22인 이하이고 입석이 가능한 구조 2) 승차정원 22인 초과이고 입석정원이 좌석정원보다 많은 구조 나.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아래 가목에 따른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의 감속능력 기준(Ⅰ)
2	가. 차량총중량 5톤을 초과하는 다음의 승합자동차. 다만, 순번 제3호에 해당하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1) 승차정원 22인 이하이고 입석이 없는 구조 2) 승차정원 22인 초과이고 좌석정원이 입석정원보	아래 나목에 따른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의 감속능력 기준(Ⅱ)

	다 많은 구조 나.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견인형 특수자동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길이가 10미터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아래 나목에 따른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의 감속능력 기준(Ⅱ)의 견인 측정시험기준

가.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의 감속능력 기준(Ⅰ)

구 분	감속도 측정시험 기준	견인 측정시험 기준
적용 기준	감속도 0.5m/s^2 이상	(고온제동능력시험) 가) 차량총중량 5톤 초과 승합자동차 $0.15V+0.0103V^2$이하, 3.75m/s^2이상 나)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견인형 제외) $0.15V+0.0117V^2$이하, 3.30m/s^2이상
측정 조건	가) 25km/h의 속도를 얻을 수 있는 최저단기어 선택(원동기 최대회전수 이내) 나) 이 기어의 최대속도에서 가속페달 해제와 보조제동장치를 작동시켜 5km/h의 속도가 감속되는 시간(초) 측정(다만, 25km/h의 속도는 측정 범위에 있을 것)하여 아래 산식으로 산출 $f=\frac{1.39}{t}$ f=제동감속도(m/s^2), t=시간(초) 다)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만을 사용 라) 왕복으로 총 2회 평균값으로 산출하여 기준 적합여부 판정	(가열시험과정) 가) 시험대상자동차의 총중량 6% 계산 나) 시험대상자동차로 30km/h의 속도를 얻을 수 있는 최저단기어 선택(원동기 최대회전수 이내) 다) 견인자동차와 시험대상자동차 사이에 인장력계를 설치하여 서로 연결 라) 견인자동차로 시험대상자동차를 견인하여 주행 시 시험대상자동차의 총중량의 6% 이상이 인장력계에 부하가 걸리도록 주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주행 마) 6km 이상의 거리 주행 후 최대한 빨리 견인자동차와 시험대상자동차를 분리시키고 시험대상자동차의 고온제동능력시험 실시

측정 자동차 상태	적차상태	적차상태(시험대상자동차)
적용 방법	감속도 측정시험 부적합 시 견인 측정시험을 실시함	

나.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의 감속능력 기준(Ⅱ)

구 분	감속도 측정시험 기준	견인 측정시험 기준
적용기준	제동감속도 $0.6m/s^2$ 이상	가) 시험대상자동차의 해당 인장력을 유지하여 6km 이상의 거리를 주행 완료할 것 나) 주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험대상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인장력을 유지하여 6km 이상의 거리 주행 중 주제동장치의 온도는 100℃ 이하일 것
측정조건	가) 25km/h의 속도를 얻을 수 있는 최저단기어 선택(원동기 최대회전수 이내) 나) 이 기어의 최대속도에서 가속페달해제와 보조제동장치를 작동시켜 5km/h의 속도가 감속되는 시간(초) 측정(다만, 25km/h의 속도는 측정 범위에 있을 것)하여 아래 산식으로 산출 $f = \frac{1.39}{t}$ f = 제동감속도(m/s^2), t = 시간(초) 다)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만을 사용 라) 왕복으로 총 2회 평균값으로 산출하여 기준적합여부 판정	가) 시험대상자동차로 30km/h의 속도를 얻을 수 있는 최저단기어 선택(원동기 최대회전수 이내) 나) 견인자동차와 시험대상자동차 사이에 인장력계를 설치하여 서로 연결 다) 견인자동차로 시험대상자동차를 견인하여 주행 시 시험대상자동차의 총중량(순번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차량으로서 총중량이 26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6톤)의 7%(순번 제3호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10%) 이상이 인장력계에 부하가 걸리도록 보조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6km 이상의 거리를 주행 라) 주제동장치, 주차제동장치, 비상제동장치를 사용해서는 안됨
측정 자동차 상태	적차상태	적차상태(시험대상자동차)

적용 방법	가) 감속도 측정시험 부적합 시 견인 측정시험을 실시함 나) 원동기 성능과 영향이 없는 보조제동장치는 견인 측정시험을 실시함

12. 삭제 <2014.6.10>

13. 에너지저장장치의 충전능력 기준

가. 공기식 에너지저장장치를 갖춘 자동차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3">견인자동차</th><th>견인자동차외의 자동차</th></tr>
<tr><td rowspan="4">기준</td><td rowspan="4">에너지원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저장장치의 압력이 대기압에서 "P "까지 증가하는데 필요한 요구시간(t) 및 대기압에서 "P "까지 증가하는데 필요한 요구시간(t)</td><td rowspan="2">(1) 시험</td><td>견인자동차 단독상태</td><td>t : 3분 이하
t : 6분 이하</td><td rowspan="2">t : 3분 이하
t : 6분 이하</td></tr>
<tr><td>시험용탱크 연결상태</td><td>t : 6분 이하
t : 9분 이하</td></tr>
<tr><td rowspan="2">(2) 시험</td><td>견인자동차 단독상태</td><td>t : 8분 이하</td><td rowspan="2">t : 8분 이하</td></tr>
<tr><td>시험용탱크 연결상태</td><td>t :11분 이하</td></tr>
</table>

측정조건	(1)시험은 외부장치로 가는 배관을 차단하고 [(2)시험의 경우에는 외부장치로 가는 배관을 차단하지 아니한다]원동기를 정지하여 저장장치내의 모든 에너지를 배출시킨 상태에서 원동기시동과 동시에 최대출력회전수로 유지시킴(견인자동차는 다음 산식에 적합한 시험용탱크를 공급라인커넥터에 부착한다) V≧20R/P V : 시험용탱크용량(ℓ) P : 피견인자동차의 공기공급라인의 설계상한압력(bar) R : 피견인자동차의 최대허용 총차축하중(톤)
측정자동차상태	적차 또는 경적차상태

주)

1) 압력단위 : bar

2) (2)시험은 외부장치(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를 제외한 에너지저장장치를 말한다)의 저장능력이 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 능력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P : 공기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조정기의 설계상한압력(출력제한압력)

4) P : P ×0.65의 압력

나. 진공식 에너지저장장치를 갖춘 자동차

구분		견인자동차	견인자동차 외의 자동차
기준	에너지원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저장장치의 압력이 대기압에서 "P "까지 증가하는데 필요한 요구시간	6분 이하	3분 이하
측정조건	외부장치로 가는 배관을 차단하고 원동기를 정지하여 저장장치내의 모든 에너지를 배출시킨 상태에서 원동기시동과 동시에 에너지원이 원동기인 경우 공회전수로 유지시키고, 에너지원이 진공펌프인 경우 최대출력회전수×0.65로 유지시킴(견인자동차는 아래 산식에 적합한 시험용 탱크를 공급라인커넥터에 부착한다) V≧15R ·V : 시험용탱크용량(ℓ) ·R : 피견인자동차의 최대허용 총차축하중(톤)		
측정자동차상태	적차 또는 경적차상태		

주)

1) 압력단위 : bar

2) P : 진공식 에너지저장장치 최대압력의 90퍼센트까지의 설계압력

다. 유압식 에너지저장장치를 갖춘 자동차

구분		· 차량총중량 5톤 초과 승합자동차 ·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그 밖의 자동차
기준	에너지원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저장장치의 압력이 "P "에서 "P "까지 증가하는데 필요한 요구시간	30초 이하	20초 이하
	경고등은 "P " 상태에서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2회 최대작동하였을 때 점등되지 아니할 것		
측정조건	· 외부장치로 가는 배관을 정상상태로 하고 원동기를 정지하여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4회 최대작동시킨 후의 압력상태에서 원동기시동과 동시에 최대출력회전수로 유지시켜 측정 · 경고등은 "P "상태에서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2회 최대작동시켜 점등여부를 확인		
측정자동차상태	적차 또는 경적차상태		

주)

1) 압력단위 : bar

2) P : 제작자에 의하여 규정된 유압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최대작동압력(출력제한압력)

3) P : 유압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에너지공급없이 P 에서 시작하여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로 4회 최대작동한 후의 압력

4) P : 제작자에 의하여 규정된 유압식 에너지저장장치의 하한압력(입력제한압력)

14. 제동작동 반응시간 기준(공기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에 적용한다)

구분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		공기배력유압식 주제동장치를 갖춘자동차
	견인자동차	견인자동차외의 자동차	

기준	단독상태	자동페달로부터 가장 긴 배관을 가진 제동챔버의 압력은 제동페달개시에서부터 0.6초 이내 안정수준의 75%에 도달할 것	제동페달로부터 가장 긴 배관을 가진 제동챔버의 압력은 제동페달개시에서부터 0.6초 이내 안정수준의 75%에 도달할 것	제동페달로부터 가장 긴 배관을 가진 공기유압컨버터의 공기압력 챔버의 압력은 제동페달개시에서부터 0.6초 이내 안정수준의 75%에 도달할 것
	시험용탱크연결상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로 가는 공기조절라인커넥터에 연결된 2.5m의 파이프 끝점의 압력은 자동페달 개시에서부터 0.2초 이내 안정수준의 10% 및 0.4초 이내 안정수준의 75%에 도달할 것		
측정조건	에너지원의 압력조정기에 근접한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을 "P "로 하여 원동기를 정지한 상태에서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0.15초 이상으로 최대작동시킴			
측정자동차상태	적차 또는 경적차상태(가변식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적차상태일 것)			

주)

1) 압력단위 : bar

2) 안정수준 : 제동챔버의 압력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아니하고 안정된 상태

3) P : 공기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조정기의 하한압력(입력제한압력)을 말하고, 압력조정기 없는 경우에는 에너지원에서의 압력(최대압력×0.9)

15. 압축공기 누설시 배출반응시간 기준(공기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기준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로 가는 공기공급라인커넥터에 연결된 2.5m의 파이프 끝점의 압력은 제동페달 개시에서부터 2초 이내 1.5bar로 감소할 것
측정조건	에너지원의 압력조정기에 근접한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을 "P "로 하여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로 가는 공기조절라인커넥터를 대기로 연 상태에서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0.15초 이상으로 최대작동시킴
측정자동차상태	적차 또는 경적차상태

주)

1) 압력단위 : bar

2) P : 공기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조정기의 하한압력(입력제한압력)을 말하고, 압력조정기 없는 경우에는 에너지원에서의 압력(최대압력×0.9)

16. 스프링제동장치의 구조기준 및 제동능력 기준

가. 구조기준

(1) 스프링제동장치는 주제동장치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 스프링압축챔버의 공급계통은 자체적인 에너지저장장치를 갖추거나, 2개 이상의 독립적인 에너지저장장치로부터 공급을 받는 구조일 것 (3) 스프링제동장치는 제동장치 내의 공기압력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적차상태의 자동차를 주제동조종장치의 작동으로 이 호 나목 "제동능력 기준" 중에서 "(4) 주제동장치의 작동보증시험"의 기준에 적합한 주제동장치의 공기압력으로 재충전될 때까지 해제되지 아니할 것 (4) 스프링제동장치가 한번 작동된 경우에도 적차상태의 자동차를 주제동조종장치의 작동으로 이 표 제5호나목 "차종별 시험적용기준"의 "기준(2)"에 적합한 주제동장치의 공기압력이 될 때까지 해제되지 아니할 것 (5) 스프링제동장치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스프링제동장치를 해제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6) 외부장치에 필요한 에너지를 스프링제동장치의 에너지저장장치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에너지원에서 고장이 발생되고, 외부장치로 가는 계통에서 대기상태로 열려 있는 경우에는 스프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1회 이상 해제가 가능할 것

주) 1. 압력단위: bar

2. 스프링제동장치: 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에너지저장장치로 작동하는 1개 이상 스프링에 의하여 작동되는 장치를 말한다.

3. 스프링압축챔버: 스프링의 압축을 일으키는 압력변화가 실제적으로 발생되는 공간을 말한다.

4. 외부장치: 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를 제외한 에너지저장장치를 말한다.

나. 제동능력 기준

(1) 경고압력 확인시험

기준	(1) 스프링제동장치의 경고압력은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시작

	압력 이상일 것 (2) 시동스위치가 "ON" 위치에서 스프링제동장치의 경고압력이 작동될 때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고등이 작동할 것 - 경고등은 적색으로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 경고등은 다른 경고등과 쉽게 구별될 수 있을 것. 다만, 이 경고등은 다른 제동장치의 경고등과 겸용으로 할 수 있다.
측정조건	스프링제동장치를 해제상태로 하여 스프링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의 공기압력을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스프링제동장치의 경고압력 및 작동시작압력을 측정
측정자동차 상태	적차 또는 경적차 상태

(2) 작동 및 해제시험

기준	스프링압축챔버 내의 최대설계 공기압력 상태에서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 및 해제가 각 3회 이상 가능할 것
측정 조건	(1) 스프링제동장치를 해제상태로 하여 스프링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의 공기압력을 "P3" 상태로 충전후 에너지원으로부터 배관을 차단 (2) 스프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작동 및 해제위치로 반복 조작
측정자동차 상태	적차 또는 경적차 상태

주) P3 = 공기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조정기의 설계상한압력(출력제한압력)

(3) 작동시작압력 확인시험

기 준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시작압력은 주제동장치의 공기압력(P5)의 80% 이하일 것
측 정 조 건	(1) 스프링제동장치를 해제상태로 하여 스프링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의 공기압력을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시작압력을 측정 (2)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시작압력과 "P5"의 압력을 비교 확인
측정자동차 상태	적차 또는 경적차 상태

주) P5 = 공기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조정기의 하한압력(입력제한압력)을

말하고, 압력조정기가 없는 경우에는 에너지원에서의 압력(최대압력×0.9)

(4) 주제동장치의 작동보증시험

구분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12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제동초속도(km/h)	60	70	50	40
제동거리(m)	0.15V+0.0154V2 이하(승합자동차) 0.15V+0.0175V2 이하(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평균최대감속도(m/s2)	2.50 이상(승합자동차) 2.20 이상(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측정조건	(1) 에너지원을 정지시키고 주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 스프링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 및 스프링압축챔버의 압력을 대기로 방출한다. (2) (1)의 모든 장치를 정상상태로 복귀시키고 스프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해제위치로 고정한 후 에너지원을 작동시킨다. (3) 스프링압축챔버의 압력이 해제압력에 도달하였을 때 주제동장치의 자동차의 제동능력을 측정한다.			
측정시조작력(N)	700 이하			
제동 시 자동차 상태	(1)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3.5m, 승합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2) 제동 시 각 바퀴는 16km/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이상 진동 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측정자동차 상태	적차 및 경적차 상태			

주) 1. 압력단위: bar

2. V: 제동초속도(km/h)

17.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

가. 정적 제동능력

구분	경사로시험	제동력시험 또는 견인력시험	
기준	18%경사로(피견인자동차의 연결이 가능한 자동차는 연결자동차의 상태에서 12%경사	연결자동차	연결자동차 외의 자동차
		$\frac{Tp}{Pc}\times 100 \geqq 12\%$	$\frac{Tp}{Pu}\times 100 \geqq 18\%$

	로)에서 위방향 및 아랫방향으로 각각 5분 동안 정지상태를 유지할 것	Tp : 제동력 총합(N) 또는 견인기어에 의한 견인력(N) Pc : 연결상태(견인자동차의 제5륜에 피견인자동차의 연결상당하중을 부과시킨 상태 포함)의 적차중량(N) Pu : 시험자동차의 적차중량(N)
측정시조작력(N)	손조작식 : 600 이하, 발조작식 : 700 이하	
측정자동차상태	적차상태	
시험로	건조한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의 경사로	제동시험기 또는 건조하고 평탄한 직선포장로
비고	경사로시험·제동력시험·견인력시험중 하나의 시험을 선택할 수 있음	

나. 동력제동능력

기준	제동초속도(km/h)	30
	제동거리(m)	0.15V+0.0257V2 이하
	평균최대감속도(㎨) 정지직전감속도(㎨)	1.50 이상
측정시조작력(N)	손조작식 : 600 이하, 발조작식 : 700 이하	
측정자동차상태	적차상태	
시험로	건조하고 평탄한 직선포장로	

주)

1) V : 제동초속도(km/h)

2) 동적 제동능력시험은 주제동장치와 비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8. 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기준

구분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제동초속도(km/h)	·1차 : 60 ·2차 : 60	·1차 : 80 ·2차 : 80
제동거리(m)(S)	·1차 : $0.15V+\frac{Sc-0.15V}{0.6}$ 이하 ·2차 : 0.15V+0.0097V2 이하	
평균최대감속도	·1차 : 0.60dc 이상 ·2차 : 4.00 이상	

(㎧)	
측정시조작력(N)	· 1차 : 제2호의 주제동장치의 적차상태 제동능력 중에서 가장 짧은 제동거리(m) 또는 가장 높은 평균최대감속도(㎧)로 기록되었을 때의 평균조작력(N) 이하로 작동시킬 것 · 2차 : 700 이하
제동시자동차상태	·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5m, 승합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 제동시 각 바퀴는 16km/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측정자동차상태	적차상태

주)

1) 2회 제동시험 중에서 1차시험의 기준에 적합하면 2차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2) V : 제동초속도(km/h)

3) S : 제동거리 교정값(m)

4) Sc : 제2호의 주제동장치의 적차상태 제동능력 중에서 가장 짧은 제동거리 교정값(m)

5) dc : 제2호의 주제동장치의 적차상태 제동능력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최대감속도(㎧)

[별표 7의3] <개정 2010.11.10>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3호관련)

1. 제동력 배분(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를 제외한다)

가. 2축 풀트레일러

2m 이상 축간거리를 갖춘 풀트레일러의 경우에는 그림 1에 따른 적차 및 공차상태의 점착력이용곡선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1) Z가 0.15 이상 0.30 미만인 경우에는 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C선 위에 위치하고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A선 아래에 위치할 것

(2) Z가 0.30 이상 0.61 이하인 경우에는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B선 아래에 위치할 것

나. 3축 이상 풀트레일러

3축 이상 풀트레일러의 경우에도 2축 풀트레일러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Z가 0.15 이상 0.30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1개 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최소 1개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보다 위에 위치할 것

다. 견인자동차에 연결된 상태의 피견인자동차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피견인자동차가 적차 및 공차상태로 연결되어 견인될 때의 제동력배분곡선은 7.5bar 이하의 압력(P)상태에서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1) 풀트레일러가 견인될 때의 제동력배분곡선은 그림 2에서 보여준 범위 이내에 위치할 것

(2) 센터차축 트레일러가 견인될 때의 제동력배분곡선은 그림 2의 수직축에서 읽은 값에 0.95를 곱하여 얻어진 범위 이내에 위치할 것

(3) 세미트레일러가 견인될 때의 제동력배분곡선은 그림 3의 수직축에서 읽은 값에 다음의 공식에 의해 얻어진 수정계수값(K)을 곱하여 얻어진 범위 이내에 위치할 것

K=(1.7-)[1.35- (1.0+(h -1.2))]-

(1.0-)()

·K : 노면마찰계수

·g : 중력가속도 (10㎨)

·P : 세미트레일러의 중량(N)

·P : 세미트레일러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P : 세미트레일러의 최대중량시의 P 값(N)

·E : 세미트레일러의 킹핀중심과 차축중심 사이의 거리(m)

·h : 세미트레일러의 무게 중심고(m)

·T : 세미트레일러에서 작동하는 모든 바퀴의 제동력 합(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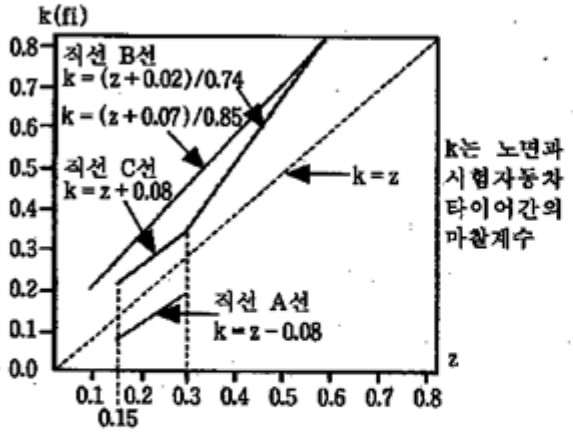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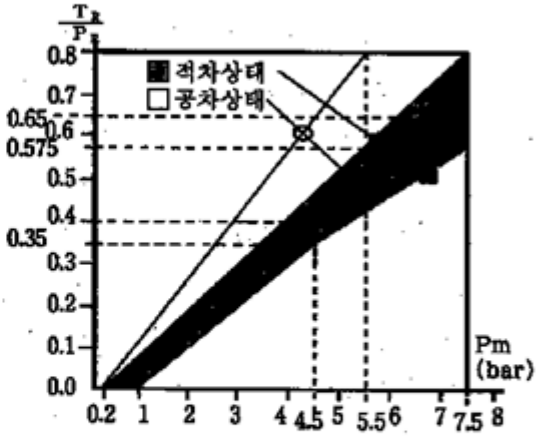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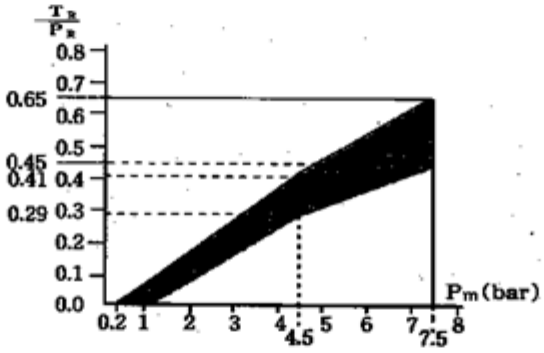


그림 3

2.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기준

구 분	풀트레일러 센터차축 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제동초속도(㎞/h)	60	60
피견인자동차 제동거리(m)	0.15V+0.0077V 이하	0.15V+0.0086V 이하
피견인자동차평균최대감속도(㎧)	5.00 이상	4.50 이상
측 정 조 건	피견인자동차의 공기조절라인의 압력은 6.5bar 이하이고, 공기공급라인의 압력은 7.0bar 이하인 상태	
제동시자동차상태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차량총중량 0.75톤 이하 피견인자동차 : 3.5m, 그 밖의 피견인자동차 : 3.7m)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측정자동차상태	견인자동차와 연결된 적차 및 공차상태

주) V : 제동초속도(㎞/h)

3. 제동작동 반응시간 기준

기 준	모의시험장치의 출구에서 측정된 순간압력이 0.65bar에 도달할 때와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챔버 입구에서 측정된 순간압력이 안정수준의 75%에 도달할 때 사이의 시간은 0.4초 이하일 것
측 정 조 건	모의시험장치의 공기저장장치의 압력·배관의 압력 및 피견인자동차의 공기저장장치의 압력을 6.5bar로 설정한 상태에서 모의시험장치의 밸브를 작동시켜 모의시험장치의 출구의 압력이 0.65bar에 도달할 때 측정
측정자동차상태	모의시험장치와 연결된 적차 또는 공차상태 (가변식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적차상태일 것)

4. 에너지저장장치의 총용량능력 기준

기 준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9회째 최대작동하였을 때의 피견인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은 1회째 압력의 50% 이상일 것
측 정 조 건	피견인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을 8.5bar로 설정한 상태에서 공기공급라인을 차단하고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9회 최대작동(각 제동작동시 공기조절라인의 압력은 7.5bar인 상태)반복하여 압력을 측정
측정자동차상태	견인자동차 또는 모의시험장치와 연결된 적차 또는 공차상태

5. 자동제동작동시 제동능력 기준

제동초속도(㎞/h)	40
피견인자동차 제동거리(m)	0.15V+0.0286V 이하
피견인자동차평균최대감속도(㎨)	1.35 이상
측 정 조 건	제동초속도에 도달하였을 때 피견인자동차축의 공기공급연결커플링(풀트레일러 및 센터차축트레일러는 견인자동차측의 연결호스)을 대기로 연 상태

제동시 자동차 상태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차량총중량 0.75톤 이하 피견인자동차 : 3.5m, 그 밖의 피견인자동차 : 3.7m)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측정자동차 상태	견인자동차와 연결된 적차상태

주)

1) V : 제동초속도(㎞/h)

2) 자동제동작동 : 연결자동차에서 연결커플링이 파손되어 분리되었을 때 피견인자동차가 자동적으로 제동작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제동작동시 작동시작압력 기준

기 준	피견인자동차의 자동제동작동은 피견인자동차 공기공급라인의 압력이 2bar로 감소하기 이전에 시작할 것
측 정 조 건	피견인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을 7.0bar로 설정한 상태에서 공기공급라인을 차단하고 피견인자동차측의 공기공급연결커플링(풀트레일러 및 센터차축 트레일러는 견인자동차측의 연결호스)을 대기로 열어 매초당 1bar 이상의 비율로 압력을 감소시키는 상태
측정자동차 상 태	견인자동차 또는 모의시험장치와 연결된 적차 또는 공차상태

7.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고장시 경고등 작동 기준

기 준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에는 시동스위치를 "ON"위치에서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황색경고등을 갖출 것 ·황색경고등은 다른 경고등과 쉽게 구별될 수 있을 것. 다만, 이 황색경고등은 다른 제동장치의 경고등과 겸용으로 할 수 있다.
측 정 조 건	연결자동차 상태에서 견인자동차의 전원으로부터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까지의 전원케이블 또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로부터 제동력을 조절하는 모듈레이터까지의 입력(출력)케이블을 분리시켜 측정
측정자동차 상태	적차 또는 경적차상태

8. 스프링제동장치의 구조기준 및 제동능력 기준

가. 구조기준

(1) 스프링제동장치는 주제동장치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 스프링제동장치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스프링제동장치를 해제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3) 피견인자동차가 견인자동차와 연결된 경우에도 피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의 작동 및 해제를 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제동능력 기준

(1) 에너지저장장치 용량시험

기 준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조종장치를 4회 최대작동한 후의 피견인자동차 스프링압축챔버 내의 공기압력은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시작압력 이상일 것
측 정 조 건	(1) 스프링제동장치를 작동상태로 하여 스프링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의 공기압력을 7.0bar로 설정한 상태에서 공기공급라인을 차단하고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조종장치를 4회 최대행정작동한 후 피견인자동차 스프링압축챔버 내의 공기압력을 측정 (2) 스프링압축챔버 내의 공기압력을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시작압력을 측정
측정자동차 상태	견인자동차 또는 모의시험장치와 연결된 적차 또는 공차상태

주) 압력단위 = bar

(2) 해제횟수시험

기 준	피견인자동차의 스프링제동장치가 3회 이상 해제 가능할 것
측 정 조 건	(1) 스프링제동장치를 작동상태로 하고 견인자동차와 분리하기전 공기공급라인의 압력을 7.5bar로 설정하고 비상브레이크가 해제된 조건에서 공기공급라인 및 공기조절라인을 분리 (2) 피견인자동차 스프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해제 및 작동위치로 반복조작하여 스프링제동장치의 해제횟수를 측정
측정자동차 상태	피견인자동차 단독상태 (적차 또는 공차 상태)

주) 압력단위 = bar

9. 보조제동장치의 감속능력 기준(보조제동장치를 갖춘 차량총중량 10톤 초과 피견인자동차에 적용한다)

감속초속도(㎞/h)	30
감 속 도 (m/s²)	0.50 이상
측정자동차상태	견인자동차와 연결된 적차상태

10.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

구 분	정 적 제 동 능 력	
	경 사 로 시 험	제동력시험 또는 견인력시험
기 준	18%경사로에서 위방향 및 아래방향으로 각각 5분동안 정지상태를 유지할 것	×100≧18% T : 제동력 총합(N) 또는 견인기어에 의한 견인력(N) P : 시험자동차의 적차중량(N)
측정시조작력(N)	손조작식 : 600 이하	
측정자동차상태	견인자동차와 분리된 적차상태	제동력시험은 견인자동차와 연결된 상태의 적차상태, 견인력시험은 견인자동차와 분리된 상태의 적차상태
시험로	건조한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의 경사로	제동시험기 또는 건조하고 평탄한 직선포장로
비고	경사로시험·제동력시험·견인력시험중 하나의 시험을 선택할 수 있음	

11. 주제동장치의 연속제동후 고온제동능력 기준

구분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
제동초속도(㎞/h)	40
피견인자동차제동거리(S)(m)	·1차 : 0.15V+ 이하 ·2차 : 0.15V+0.0107V 이하
피견인자동차평균최대감속도(㎨)	·1차 : d ≧0.60d ·2차 : 3.60이상
측정조건	·1차 : 공기조절라인의 압력은 기준성능시험의 차축잠김 시작압력(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자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작동시작압력)의 90%와 동등한 상태 ·2차 : 공기조절라인의 압력은 6.5bar 이하인 상태
제동시자동차상태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측정자동차상태	견인자동차와 연결된 적차상태

주)

1) 제13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1호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2회 제동시험 중에서 1차시험이 적합하면 2차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3) V : 제동초속도(㎞/h)

4) 기준성능시험 : 고온제동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제동장치의 가열시험과정 이전에 제동거리 또는 평균최대감속도를 측정하는 시험을 말한다.

5) S : 피견인자동차의 제동거리 교정값(m)

6) Sa : 기준성능시험의 연결시 제동거리 측정값(m)

7) Va : 기준성능시험의 제동초속도 측정값(㎞/h)

8) R : 구름저항계수(0.01)

9) P : 견인자동차를 포함한 비제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축중(N)

10) P :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축중(N)

11) g : 중력가속도(10㎨)

12) d : 피견인자동차의 평균최대감속도 교정값(㎨)

13) d : 기준성능시험의 피견인자동차의 평균최대감속도 교정값(㎨)

12. 주제동장치의 과부하 연속제동 후 고온제동능력 기준

구 분	차량총중량 10톤 초과 피견인자동차
제동초속도(㎞/h)	40
피견인자동차 제동거리(m)	0.15V+0.0117V 이하
피견인자동차평균최대감속도(㎨)	3.30이상
측정조건	피견인자동차의 공기조절라인의 압력은 6.5bar 이하이며, 공기공급라인의 압력은 7.0bar 이하인 상태
제동시 자동차 상태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측정자동차상태	견인자동차와 연결된 적차상태

주)

1) 제9호 또는 제13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2호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V : 제동초속도(㎞/h)

13. 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 기준

구 분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
제동초속도(㎞/h)	60
피견인자동차 제동거리(S)(m)	·1차 : 0.15V+ 이하 ·2차 : 0.15V+0.0097V 이하
피견인자동차 평균최대감속도(㎨)	·1차 : d ≧0.60d ·2차 : 4.00이상
측정조건	·1차 : 공기조절라인의 압력이 기준성능시험의 차축잠김 시작압력(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작동시작압력)의 90%와 동등한 상태 ·2차 : 공기조절라인의 압력이 6.5bar 이하인 상태
제동시자동차 상태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측정자동차 상태	견인자동차와 연결된 적차상태

주)

1) 2회 제동시험 중에서 1차시험이 기준에 적합하면 2차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2) V : 제동초속도(㎞/h)

3) S : 피견인자동차의 제동거리 교정값(m)

4) Sa : 기준성능시험의 연결시 제동거리 측정값(m)

5) Va : 기준성능시험의 제동초속도 측정값(㎞/h)

6) R : 구름저항계수(0.01)

7) P : 견인자동차를 포함한 비제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축중(N)

8) P :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축중(N)

9) g : 중력가속도(10㎨)

10) d : 피견인자동차의 평균최대감속도 교정값(㎨)

11) d : 기준성능시험의 피견인자동차의 평균최대감속도 교정값(㎨)

[별표 7의4] <신설 2003.2.25 ; 시행일 : 부칙 제1항 참조>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4호관련)

1. 에너지소비시험 기준

<table>
<tr><td rowspan="4">저마찰로</td><td>제동시간(초)</td><td colspan="5">(다만, 15초 이상이어야 한다)</td></tr>
<tr><td>제동초속도(㎞/h)</td><td colspan="5">50 이상</td></tr>
<tr><td>제동시자동차 상태</td><td colspan="5">·원동기정지 또는 에너지저장장치의 공급중단상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정상작동상태</td></tr>
<tr><td>측정자동차 상태</td><td colspan="5">적차상태(공기식주제동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0.5L의 용량인 시험용탱크를 부착한 상태)</td></tr>
<tr><td></td><td>기 준</td><td colspan="5">·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최대 제동시간(초)동안 계속 작동되어야 하며,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모든 바퀴는 제어될 것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는 제동시간 완료 후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5회 최대작동시의 시험용탱크압력은 저마찰로 시험전 1회 최대작동시 압력의 50% 이상일 것. 다만, 이 기준은 건조로의 시험으로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만족한 것으로 본다.</td></tr>
<tr><td rowspan="5">건조로</td><td rowspan="2">제동초속도(㎞/h)</td><td>승용자동차</td><td>승합자동차</td><td>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td><td>차량총중량 3.5톤 초과 12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td><td>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td></tr>
<tr><td>100</td><td>60</td><td>70</td><td>50</td><td>40</td></tr>
<tr><td>제동거리(m)</td><td>0.1V + 0.0158V 이하</td><td>0.15V + 0.0154V 이하</td><td colspan="3">0.15V + 0.0174V 이하</td></tr>
<tr><td>평균최대감속도(㎨)</td><td>2.44 이상</td><td>2.50 이상</td><td colspan="3">2.20 이상</td></tr>
<tr><td>측정시조작력(N)</td><td>·손조작식 : 400 이하
·발조작식 : 500 이하</td><td colspan="4">·손조작식 : 600 이하, ·발조작식 : 700 이하</td></tr>
</table>

	제동시자동차 상 태	·원동기정지 또는 에너지저장장치의 공급중단상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정상작동상태
	측 정 자 동 차 상 태	적차상태
	기 준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승용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5m, 그 박의 자동차 :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정지시 차량중심선은 차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주)

1) 저마찰로에서 제동시간 완료 후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5회 최대작동한 후 건조로에서 제동을 실시한다.

2) V : 제동초속도(㎞/h)

3) V : 최고속도(다만, 160㎞/h 이하이어야 한다.)

4) 저마찰로 : 0.4 이하의 점착력값을 갖춘 평탄하고 수평한 직선인 미끄러운 노면을 말한다.

5) 건조로 : 좋은 점착력값을 갖춘 평탄하고 수평한 직선인 노면을 말한다.

2. 점착력값 산출시험 기준

구 분	전차축의 점착력값(K)	후차축의 점착력값(K)
시 험 노 면	저마찰로 및 고마찰로	
주 제 동 장 치 작 동 상 태	전차축 작동상태	후차축 작동상태
바퀴잠김방지식 주 제 동 장 치 작 동 상 태	비작동상태	
측 정 자 동 차 상 태	적차 및 경적차상태	
제 동 률 (Z)	Z =Z의 최대값 t=바퀴잠김없이 제동하여 40㎞/h부터 20㎞/h까지의 감속시간(초)	

평 균 제 동 률 (Z m)	(t : 바퀴잠김없이 제동하여 40㎞/h부터 20㎞/h까지의 감속시간(초)를 반복측정하여 3개값을 선택하여 산출한 평균값)	
점 착 력 값 (K , K)	K = K=도로와 타이어 사이의 점착력값 K =1개 전차축의 점착력값 P=자동차 중량(㎏) g=중력가속도(10㎨) r=구름저항값(구동차축에서 제동되는 경우 0.01, 비구동차축에서 제동되는 경우 0.015) F =정적상태의 전축중(N) F =정적상태의 후축중(N) h=무게중심고(m) E=축간거리(m)	K = K=도로와 타이어 사이의 점착력값 K =1개 전차축의 점착력값 P=자동차 중량(㎏) g=중력가속도(10㎨) r=구름저항값(구동차축에서 제동되는 경우 0.01, 비구동차축에서 제동되는 경우 0.015) F =정적상태의 전축중(N) F =정적상태의 후축중(N) h=무게중심고(m) E=축간거리(m)

주) 고마찰로 : 약 0.8의 점착력값을 갖춘 평탄하고 수평한 직선인 미끄러운 노면을 말한다.

3. 점착력이용값 결정시험 기준

시 험 노 면	저마찰로 및 고마찰로
주 제 동 장 치 작 동 상 태	모든 차축 작동상태
바퀴잠김방지식 주 제 동 장 치 작 동 상 태	정상작동상태
측 정 자 동 차 상 태	적차 및 경적차상태
최 대 제 동 률 (Z)	(t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최대사이클로 작동되도록 제동하여 45㎞/h부터 15㎞/h까지의 감속시간(초)을 반복측정하여 3개값을 선택하여 산출한 평균값)

동적상태의 전축중(F), 동적상태의 후축중(F)	F =F + ·Z ·P·g F =정적상태의 전축중(N) P=자동차 중량(kg) g=중력가속도(10㎨) h=무게중심고(m) E=축간거리(m)	F =F − ·Z ·P·g F =정적상태의 전축중(N) P=자동차 중량(kg) g=중력가속도(10㎨) h=무게중심고(m) E=축간거리(m)
점착력값 (K)	K =전차축의 점착력값 K =후차축의 점착력값 P=자동차 중량(kg) g=중력가속도(10㎨)	
점착력이용값 (ε)		
기준(ε)	각 시험노면 및 적재조건에서 0.75 이상일 것	

주) 최대사이클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직접 조절되는 바퀴의 잠김이 방지되도록 제동을 최대로 반복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지시까지 바퀴잠김방지 작동이 한번만 발생하는 제동은 제외한다.

4. 추가확인시험 기준

구분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고마찰로에서 저마찰로 통과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시험노면			저마찰로 및 고마찰로 (고마찰력값≧0.5, 고마찰력값/저마찰력값≧2)	
주제동장치 작동상태			모든 차축 작동상태	
바퀴잠김방지식주제동장치 작동상태			정상작동상태	
측정자동차상태			적차 및 경적차상태	
제동초속도 (㎞/h)	승용자동차	저마찰로	40 및 최고속도의 80%(다만, 당해자동차의 최고속도의 80%값이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을 적용한다)	
		고마찰로		
	승합자동차	저마찰로	40 및 최고속도의 80%(다만, 당해자동차의 최고속도의 80%값이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0을 적용한다)	
		고마찰로	40 및 최고속도의 80%(다만, 당해자동차의 최고속도의 80%값이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을 적용한다)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저마찰로	40 및 최고속도의 80%(다만, 당해자동차의 최고속도의 80%값이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을 적용한다)
		고마찰로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저마찰로	40 및 최고속도의 80%(다만, 당해자동차의 최고속도의 80%값이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0을 적용하며, 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70을 적용한다)
		고마찰로	40 및 최고속도의 80%(다만, 당해자동차의 최고속도의 80%값이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을 적용한다)
측 정 시 조 작 력 (N)			승용자동차 : 500이하, 그 밖의 자동차 : 700 이하
기 준			·직접 조절되는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0.50초를 초과하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제동시 주행안정성 및 조향안정성을 유지할 것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승용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5m, 그 밖의 자동차 :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정지시 차량중심선은 차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주) 고마찰로에서 저마찰로 통과시 제동초속도는 경계지점 통과속도를 말한다.

구 분	저마찰로에서 고마찰로 통과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저마찰로 및 고마찰로 또는 고마찰로 및 저마찰로 비균일노면 동시통과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시 험 노 면	저마찰로 및 고마찰로 (고마찰력값≧0.5, 고마찰력값/저마찰력값≧2)	
주 제 동 장 치 작 동 상 태	모든 차축 작동상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작동 상 태	정 상 작 동 상 태	
측정자동차상태	적차 및 경적차상태	
제동초속도(㎞/h)	50(경계지점 통과속도)	50
측정시조작력(N)	승용자동차 : 500 이하, 그 밖의 자동차 : 700 이하	

기 준	·자동차의 감속도는 적절한 시간 이내에 적절한 높은 값으로 증가할 것	·조향핸들의 각도회전은 제동시 초기 2초구간은 120° 이내, 전구간은 240° 이내일 것 ·제동시 자동차의 좌우바퀴는 각각의 마찰로의 경계선을 넘지 아니할 것 ·적차상태의 자동차는 아래 공식에 적합할 것 Z ≧0.75· 및 Z ≧K Z : 비균일노면의 최대 제동률 K : 저마찰로의 점착력값 K : 고마찰로의 점착력값
	·직접 조절되는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0.50초를 초과하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제동시 주행안정성 및 조향안정성을 유지할 것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승용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5m, 그 밖의 자동차 :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정지시 차량중심선은 차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별표 7의5] <신설 2003.2.25 ; 시행일 : 부칙 제1항 참조>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

(제90조제5호관련)

1. 에너지소비시험 기준

시 험 노 면	0.50 이상의 점착력값을 갖춘 직선인 평탄한 노면
제 동 시 간 (초)	15
제동초속도(㎞/h)	30
제동시자동차상태	·피견인자동차 공급라인의 커플링헤드의 압력이 8.0bar에서 공급중단된 상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는 상태(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
측정자동차상태	견인자동차에 연결된 공차상태. 다만, 가변식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적차상태로 한다.
기 준	제동시간 15초 경과후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5회째 최대작동하였을 때의 피견인자동차 공급라인의 커플링헤드 압력은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작동된 바퀴의 정적상태인 총최대윤중의 22.5% 이상의 총제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

2. 점착력값 산출시험 기준

가. 풀트레일러

구 분	1개 전차축의 점착력값(K)	1개 후차축의 점착력값(K)
시 험 노 면	저마찰로 및 고마찰로	
제 동 시 자 동 차 상 태	·주제동장치는 피견인자동차의 전차축 및 후차축에서 각각 작동되는 상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	
측정자동차상태	견인자동차에 연결된 공차상태	
제 동 률 (Z)	t : 바퀴잠김없이 제동하여 40㎞/h부터 20㎞/h까지의 감속시간(초)	
최 대 제 동 률 (Z)	t : 바퀴잠김없이 제동하여 40㎞/h부터 20㎞/h까지의 감속시간(초)을 반복측정하여 3개값을 선택하여 산출한 평균값)	

피견인자동차 전차축 및 후차축 제동력최대값 (F)	Z (F +F)-0.01F -0.015F F =견인자동차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F =피견인자동차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F =연결자동차의 비제동 및 비구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F =연결자동차의 비제동 및 구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동적상태의 각 축중 (F)	(전차축) F + (후차축) F - F =정적상태의 전축중(N) F =정적상태의 후축중(N) F =견인자동차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h =연결봉의 높이(피견인자동차의 연결봉의 연결지점)(m) g=중력가속도(10㎨) P=자동차 중량(kg) h =피견인자동차의 무게 중심고(m) F =0.01F +0.015F F =견인자동차의 비제동 및 비구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F =견인자동차의 비제동 및 구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E=축간거리(m)
전차축 및 후차축 점착력값(K , K	
점착력값(K)	K =1개 전차축의 점착력값 K =1개 후차축의 점착력값

	F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작동되는 동적상태의 전축중(N) F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작동되는 동적상태의 후축중(N) g=중력가속도(10㎨) P=자동차 중량(kg)

나. 세미트레일러 및 센터차축 트레일러

구 분	1개차축의 점착력값(K)
시 험 노 면	저마찰로 및 고마찰로
제동시자동차상태	·주제동장치는 피견인자동차의 1개차축에만 작동되는 상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
측정자동차상태	견인자동차에 연결된 공차상태
제 동 률 (Z)	t : 바퀴잠김없이 제동하여 40㎞/h부터 20㎞/h까지의 감속시간(초)
최 대 제 동 률 (Z)	t : 바퀴잠김없이 제동하여 40㎞/h부터 20㎞/h까지의 감속시간(초)을 반복측정하여 3개값을 선택하여 산출한 평균값)
피 견 인 자 동 차 제 동 력 최 대 값 (F)	Z (F +F)-F F =견인자동차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F =피견인자동차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F =0.01F_{Mnd}+0.015F_{Md} F =견인자동차의 비제동 및 구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F =견인자동차의 비제동 및 비구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동 적 상 태 의 총 축 중 (F)	F - F =피견인자동차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h =5륜커플링(킹핀)의 높이(m)

	g=중력가속도(10㎨) P=자동차 중량(kg) h =피견인자동차의 무게중심고(m) E =세미트레일러의 킹핀과 차축중심 사이의 거리(m) 센터차축트레일러의 연결봉커플링과 차축중심 사이의 거리(m)
1개차축점착력값 (K)	

3. 점착력이용값 결정시험 기준

가. 풀트레일러

시 험 노 면	저마찰로 및 고마찰로
제동시자동차상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는 상태(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
측정자동차상태	견인자동차에 연결된 공차상태. 다만, 가변식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적차상태로 한다.
최 대 제 동 률 (Z)	t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최대사이클로 작동되도록 제동하여 40㎞/h부터 20㎞/h까지의 감속시간(초)을 반복측정하여 3개값을 선택하여 산출한 평균값
피 견 인 자 동 차 최 대 제 동 률 (Z)	F =견인자동차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F =피견인자동차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F =연결자동차의 비제동 및 비구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F =연결자동차의 비제동 및 구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점 착 력 이 용 값 (ε)	
기 준 (ε)	각 시험노면에서 0.75 이상일 것

나. 세미트레일러 및 센터차축 트레일러

시 험 노 면	저마찰로 및 고마찰로
제동시자동차상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는 상태(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

측정자동차상태	견인자동차에 연결된 공차상태. 다만, 가변식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적차상태로 한다.
최대제동률 (Z)	t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최대사이클로 작동되도록 제동하여 40㎞/h부터 20㎞/h까지의 감속시간(초)을 반복측정하여 3개값을 선택하여 산출한 평균값)
피견인자동차 제동력최대값 (F)	Z (F +F)-F F =견인자동차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F =피견인자동차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F =0.01F +0.015F F =견인자동차의 비제동 및 비구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F =견인자동차의 비제동 및 구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동적상태의총축중 (F)	F - F =피견인자동차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h =제 5 륜커플링(킹핀)의 높이(m) g=중력가속도(10㎨) P=자동차 중량(kg) h =피견인자동차의 무게중심고(m) E =세미트레일러의 킹핀과 차축중심 사이의 거리(m) 센터차축트레일러의 연결봉커플링과 차축중심 사이의 거리(m)
피견인자동차최대제동률(Z)	
점착력이용값 (ε)	$\frac{Z_{RAL}}{K}$
기준(ε)	각 시험노면에서 0.75 이상일 것

4. 추가확인시험 기준

구 분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저마찰로 및 고마찰로 또는 고마찰로 및 저마찰로 비균일노면 동시통과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table>
<tr><td>시 험 노 면</td><td>직선인 평탄한 노면
(점착력 0.5 이상)</td><td>점착력이용값 결정시험에서 측정된 점착력값
$\frac{Z}{\varepsilon} \geqq 0.5$ 및 $\frac{Z}{Z} \geqq 2$</td></tr>
<tr><td>제동시자동차상태</td><td colspan="2">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는 상태(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td></tr>
<tr><td>측정자동차상태</td><td colspan="2">견인자동차에 연결된 공차상태</td></tr>
<tr><td>제동초속도(㎞/h)</td><td>40 및 80</td><td>50</td></tr>
<tr><td>측정시조작력(N)</td><td colspan="2">700 이하</td></tr>
<tr><td rowspan="2">기 준</td><td colspan="2">·직접 조절되는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0.50초를 초과하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제동시 주행안전성 및 조향안전성을 유지할 것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차량총중량 0.75톤 이하 피견인자동차 : 3.5m, 차량총중량 0.7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 :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td></tr>
<tr><td>-</td><td>·제동시 자동차의 좌우바퀴는 각각의 마찰로의 경계선을 넘지 아니할 것
·공차상태의 자동차는 다음 공식에 적합할 것
$Z \geqq \frac{0.75}{\varepsilon} \cdot \frac{4Z + Z}{5}$ 및
$Z > \frac{Z}{\varepsilon}$
Z : 비균일노면에서 견인자동차의 비제동 및 기어중립상태와 피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작동상태로 모든 차축을 제동한 제동률
Z : 저점착노면에서 견인자동차의 비제동 및 기어중립상태와 피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작동상태로 모든 차축을 제동한 제동률
Z : 고점착노면에서 견인자동차의 비제동 및 기어중립상태와 피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작동상태로 모든 차축을 제동한 제동률
ε : 고마찰노면의 ε값</td></tr>
</table>

[별표 7의6] <신설 2003.2.25>

연결자동차의 선회시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 6 호관련)

구 분	기준곡선(반경 25m)	기준곡선(반경 40m)
제동초속도(km/h)	35	40
평균최대감속도(m/s²)	3.63 이상	4.12 이상
측정시조작력(N)	700 이하	
측정자동차상태	적차상태	
기 준	정지시 차체 최외측부와 기준곡선 사이의 간격은 2.2m 이내일 것	

[별표 7의7] <개정 2014.1.2>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에 대한 기준(제90조의2 관련)

1. 방향안정성능 및 반응성능

1)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작동상태에서 "정지시간을 갖는 0.7헤르쯔 정현파조향입력"을 종료한 시점(이를 "조향종료"라 한다)으로부터 1.0초 및 1.75초 후에 측정한 요레이트는 아래 "가)" 및 "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1.0초: 조향핸들각의 부호가 변한 후에 측정한 1번째 최대요레이트의 35퍼센트 이하
 나) 1.75초: 조향핸들각의 부호가 변한 후에 측정한 1번째 최대요레이트의 20퍼센트 이하
2)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작동상태에서 기준조향각(제곱초당 3.0미터인 횡방향 가속도를 발생시키는 조향핸들각을 말한다)의 5배 이상인 조향핸들각으로 "정지시간을 갖는 0.7헤르쯔 정현파조향입력"을 시작한 시점(이를 "조향시작"이라 한다)으로부터 1.07초 후에 측정한 횡방향이동량은 아래 "가)" 또는 "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자동차: 1.83미터 이상
 나) 차량총중량 3.5톤 초과한 자동차: 1.52미터 이상

주) 1.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란 아래 "1)"부터 "5)"까지의 특성을 모두 갖춘 장치를 말한다.
 1) 운전자가 요구하는 자동차거동과 실제 자동차거동을 비교하여 적절한 요모멘트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각 차축 또는 각 차축그룹(차축그룹 및 복륜은 각각 단독차축 및 단륜으로 본다)중 1개 차축의 좌측바퀴 및 우측바퀴의 제동토크를 개별적으로 자동조절하는 능력을 최소한으로 갖추어 자동차의 방향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
 2) 운전자가 요구하는 자동차거동과 실제 자동차거동을 비교하여 자동차의 오버스티어 및 언더스티어를 제한하기 위하여 폐루프연산방식을 이용하는 전산기로 제어하는 것
 3) 자동차의 요레이트를 직접 측정하고 자동차의 횡슬립(또는 횡슬립각)을 추정하는 수단을 갖는 것
 4) 운전자의 조향입력을 감지하는 수단을 갖는 것
 5) 필요상황을 결정하는 연산방식과 운전자를 보조하여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제어하며 필요시에는 추진토크를 변경하는 수단을 갖는 것
 2. "요레이트"란 자동차무게중심을 통과하는 수직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을 초당 각도로 측정한 자동차진로각의 변화속도를 말한다.
 3. "횡슬립(또는 횡슬립각)"이란 자동차무게중심의 횡방향속도를 종방향속도로 나눈 아크탄젠트를 말한다.
 4. "오버스티어"란 애커먼조향각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요레이트가 자동차속도에서 발생되는 요레이트보다 큰 상태를 말한다.
 5. "언더스티어"란 애커먼조향각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요레이트가 자동차속도에서 발생되는 요레이트보다 작은 상태를 말한다.
 6. "애커먼조향각"이란 매우 낮은 속도에서 축거를 회전반지름으로 나눈 탄젠트의 각도를 말한다.
 7. "횡방향 가속도"란 자동차 X축(세로방향)에 수직하고 노면에 평행한 자동차 내

어떠한 지점의 가속도벡터의 성분을 말한다.

2. 기능고장 식별표시

1)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제어신호 또는 반응신호의 생성 및 전달에 영향을 주는 기능고장의 발생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식별표시를 갖추어야 하고, 그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아래 "2)"부터 "4)"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아래 "가)"부터 "사)"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나) 운전 중인 운전자가 바르게 볼 수 있을 것

다) 점등 시 운전자가 도로주변 조명상황에 적응한 후 주간·야간의 주행조건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밝기를 갖출 것

라) 원동기 구동 전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 점등 후 정상상태 시 소등될 것. 다만, 시동잠금상태 및 공유구역에 표시되는 식별표시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기능고장 발생 시 점등되어야 하고, 시동장치가 "On"(또는 "Run")위치에 있을 때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제어신호 또는 반응신호의 생성 및 전달에 영향을 주는 기능고장 발생시 지속적으로 점등될 것

바) 기능고장이 수리된 후 다음 시동싸이클에서 소등될 것

사) 구동력제어기능, 트레일러안정성보조기능, 코너브레이크제어나 그 밖의 유사기능을 갖춘 장치(쓰로틀 또는 개별토크를 제어하기 위하여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부품을 작동시키는 장치를 말한다)의 기능고장 발생시에도 이를 운전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별표 2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자동표시기"를 사용할 수 있다.

3)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작동을 표시하기 위하여 기능고장 식별표시를 점멸시킬 수 있다.

4)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부품의 고장상태에서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 기능고장 식별표시가 점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동기를 구동시킨 후 30초 내에 자동차를 전방으로 주행시켜 48±8km/h의 지정속도에 도달시킨 다음 2분 이내에 방향안정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완만한 좌측선회 및 우측선회를 각각 최소 1회와 브레이크를 최소 1회를 작동시켰을 때 지정속도에 도달한 시간부터 2분 이내에 기능고장 식별표시를 점등시킬 것

주) "공유구역"이란 1개 이상의 식별표시, 표시장치, 식별부호, 그 밖의 메시지를 표시하지만 동시에 표시하지 아니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기능정지 조종장치 및 그 밖의 장치의 조종장치

1) 자동차전조등이 점등될 때 발광되며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하는 "기능정지 조종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작동에 부가적인 영향을 주는 "그 밖의 장치의 조종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능정지 조종장치 및 그 밖의 장치의 조종장치"는 아래 "2)"부터 "5)"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는 운전자가 이전에 선택한 모드에 관계없이 새로운 시동싸이클마다 제1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0조의2의 기준에 적합한 제작사의 최초기본설정모드로 복귀될 것. 다만, 아래 "가)" 또는 "나)"의 경우에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새로운 시동싸이클 마다 위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모드로 복귀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저속 또는 비포장로 주행을 위하여 자동차의 앞 차축 및 뒤 차축의 구동기어가 함께 잠기고, 엔진속도와 자동차속도간의 추가적 기어감속이 1.6 이상이 되도록 운전자가 선택한 사륜구동방식인 경우

나) 눈, 모래 또는 진흙으로 덮인 도로상에서 자동차가 보다 높은 속도로 주행하도록 설계되고 앞 차축 및 뒤 차축의 구동기어가 함께 잠기도록 운전자가 선택한 사륜구동방식인 경우. 다만, 이 모드에서는 제1호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전 시동싸이클에 선택한 구동방식에서 제1호 1)의 기준에 적합한 1개 이상의 자동차안정성제어모드를 갖춘 경우에는 새로운 시동싸이클마다 이전 시동싸이클에서 선택한 구동방식에 적합한 제작자의 최초기본설정모드로 복귀되어야 한다.

3)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하는 모드로 설정하는 유일한 기능을 갖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조종장치는 별표 1의2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정지의 식별부호 또는 식별약어로 식별될 것

4)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하는 1개 이상의 다른 모드로 설정하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조종장치는 그 모드를 위한 조종장치의 근접한 곳에 "OFF" 단어를 갖는 아래의 식별부호로 식별하거나 다기능조종장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모드를 제어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정지"의 식별부호 또는 식별약어로 표시하여 운전자가 명확히 식별할 수 있게 할 것



5)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하는 부가적인 영향을 주는 그 밖의 장치의 조종장치는 별표 1의2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정지 식별부호 또는 식별약어로 식별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능정지 식별표시

1)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정지시키거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조종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임을 운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아래 "2)"부터 "4)"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3호 2)나)의 기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가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하는 모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기능정지 식별표시를 설치할 것

3) 기능정지 식별표시는 아래 "가)"부터 "아)"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나) 운전 중인 운전자가 바르게 볼 수 있을 것

다) 별표 2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정지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 또는 식별약어로 식별되거나 제3호의 3) 및 4)에 규정된 조종장치 또는 별표 2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 또는 식별약어의 표면 위 또는 근접한 곳에 영문자 "OFF"를 위치시켜 식별될 것

라) 식별색상은 황색 또는 호박색일 것

마) 점등 시 운전자가 도로주변 조명상황에 적응한 후 주간·야간의 주행조건에서 명확히 인식되도록 충분한 밝기를 갖출 것

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모드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지속적으로 점등될 것

사) 원동기 구동 전 시동장치가 "On"(또는 "Run") 위치로 있을 때 또는 제작사가 점검위치로 지정한 "On"(또는 "Run")과 "Start"사이의 위치에 있을 때에 점등확인기능으로 점등될 것. 다만, 시동잠금장치가 작동상태이거나 공유구역에 표시되는 식별표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제작자의 최초기본설정모드로 복귀된 후 소등될 것

4)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 중 어느 수준에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제작사의 최초기본설정모드가 아닌 수준의 기능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기능정지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 또는 식별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8] 삭제 <2003.2.25>

[별표 9] 삭제 <2003.2.25>

[별표 10] <개정 2001.4.28>

연료장치의 충돌시험기준(제91조제1항관련)

1. 고정벽 정면충돌 및 이동벽 뒷면추돌시험을 할 때에 연료의 누유량이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측 정 방 법	정지시까지 누유량	정지후 5분간 누유량	정지후 5분 이후부터 25분간 누유량
가. 매시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때 나. 매시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벽을 자동차의 뒷면에 추돌시킬 때	28그램 이하	141그램 이하	매 1분당 28그램 이하

2.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돌시험을 한 자동차를 자동차의 길이방향의 축을 중심으로 90도씩 4번을 회전시키되, 각 90도가 되는 위치에서 5분을 정지시키는 시험을 할 때에 연료 누유량이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기 준	
각 회전시 회전시간을 포함하여 회전이 끝난 상태에 있는 동안 5분간 누유량	전회 회전시작 5분 이후 다음 90도 회전시작전까지의 누유량
141그램 이하	매 1분당 28그램 이하

[별표 11] <개정 2001.4.28>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제2항관련)

시 험 조 건	기 준
1. 매시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때 2. 매시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벽을 자동차의 뒷면에 추돌시킬 때 3. 매시 32.2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벽을 자동차의 옆면에 충돌시킬 때	가. 자동차의 정지순간부터 90분 동안 연료장치에서의 연료누출이 없을 것 나. 연료장치에서의 온도보정 압력은 자동차의 정지순간부터 90분 동안 시험전 압력의 95퍼센트 이상을 유지할 것 다. 연료탱크는 자동차의 부착지점으로부터 떨어지거나 분리되지 아니할 것

[별표 11의2] <개정 2001.4.28>

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의 충돌시험기준(제91조제3항관련)

시 험 조 건	기 준
1. 매시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때 2. 매시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벽을 자동차의 뒷면에 추돌시킬 때 3. 매시 32.2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벽을 자동차의 옆면에 충돌시킬 때	연료장치의 고압부분에서의 압력강하는 자동차의 정지순간부터 60분동안 1,062킬로파스칼 또는 895×(T/V)중 높은 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비 고

T : 시험가스의 평균 절대온도

V : 연료저장용기와 첫 번째 압력조정기까지의 연료라인의 내부부피

[별표 11의3] <개정 2014.6.10>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제91조제4항 관련)

<table>
<tr><th>대상</th><th>시험조건</th><th>기 준</th></tr>
<tr><td rowspan="3">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td><td>1. 시속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 충돌시킬 때</td><td rowspan="3">가.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하지 않을 것
나. 자동차의 정지순간부터 30분 동안 구동축전지 전해액 누출량이 전체 용량의 7% 이하일 것
다. 차실 내로 구동축전지 전해액이 유입되지 않을 것
라. 구동축전지 장치 중의 일부라도 차실 내로 침입하지 않을 것
마. 고전원 활선도체부와 노출 도전부(전기적 샤시)와의 절연저항은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을 만족 할 것
1) 충돌 후 60초 이내 Vb, V1, V2의 전압이 각각 60볼트[DC] 또는 30볼트[AC] 이하일 것
2) 직류 및 교류회로가 독립적으로 구성된 경우 절연저항은 각각 100Ω/V[DC], 500Ω/V[AC] 이상일 것.
3) 직류 및 교류회로가 전기적으로 조합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 만족
가) 고전원 활선도체부와 전기적 샤시의 절연저항은 최소 500Ω/V 이상
나) 고전원 활선도체부와 전기적 샤시의 절연저항은 최소 100Ω/V 이상이고, 노출도전부와 전기적샤시 사이의 저항은 0.1Ω 이하일 것
다) 고전원 활선도체부와 전기적 샤시의 절연저항은 최소 100Ω/V 이고, 충돌 후 60초 이내 이내 Vb, V1, V2의 전압이 각각 60볼트[DC] 또는 30볼트[AC] 이하일 것
4) 승객거주 또는 수화물공간의 활선도체부는 IPXXB 접근시 직접 접촉되지 말아야 하며 노출 도전부와 전기적 샤시 사이의 저항은 0.1Ω 이하일 것</td></tr>
<tr><td>2. 시속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벽을 자동차의 뒷면에 추돌시킬 때</td></tr>
<tr><td>3.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벽을 자동차의 옆면에 충돌시킬 때</td></tr>
<tr><td>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td><td>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건으로 충돌시험을 한 자동차를 각각 자동차의 길이방향의 축을 중심으로 90도씩 4번을 회전시키되, 매 90도가 되는 위치에서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시험을 할 때</td></tr>
</table>

주)

1.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호의 충돌속도를 40킬로미터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Vb : 구동축전지의 전압
3. V1 : 구동축전지의 음극(-)과 전기적 샤시 사이의 전압
4. V2 : 구동축전지의 양극(+)과 전기적 샤시 사이의 전압

[별표 11의4] <신설 2011.10.6>

범퍼의 안전기준(제93조 관련)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정면 충격</th><th>모서리 충격</th></tr>
<tr><td rowspan="4">시험기준</td><td>진자 속도</td><td>4㎞/h</td><td>2.5㎞/h</td></tr>
<tr><td>충격선 높이</td><td colspan="2">445㎜
※ 다만,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작·조립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제시한 충격선 높이를 적용한다.</td></tr>
<tr><td>진자 중량</td><td colspan="2">차량중량</td></tr>
<tr><td>충격 방법</td><td>- 앞면 범퍼에 2회 충격
- 뒷면 범퍼에 2회 충격</td><td>- 앞면 범퍼의 좌측·우측 모서리에 각각 1회 충격
- 뒷면 범퍼의 좌측·우측 모서리에 각각 1회 충격</td></tr>
<tr><td colspan="2">판정기준</td><td colspan="2">1. 전조등, 방향지시등, 제동등, 비상등, 후퇴등, 차폭등, 후미등 및 후부반사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다만, 전구의 필라멘트 파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시험 후 승강구, 후드 및 트렁크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닫힐 것. 이 경우 승강구의 경우에는 충격시험 중 열려서는 아니된다.
3. 연료장치 및 냉각장치는 새거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변형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이 경우 각종 마개 및 캡은 정상적으로 열리거나 닫힐 수 있어야 한다.
4. 배기장치의 손상이나 이탈이 없을 것
5. 동력장치, 현가장치(타이어를 포함한다),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치 등은 시험 후에도 시험 전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td></tr>
</table>

[별표 11의5] <신설 2014.6.10>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

(제91조제5항 관련)

시 험 조 건	기 준
1. 시속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 충돌시킬 때	가. 자동차의 정지 순간부터 60분동안 누출된 가스량은 평균 118 NL/분(min) 이하 일 것 나. 승객거주 공간 및 수화물 공간의 공기 중 수소농도는 3±1.0% 이하일 것, 다만, 충돌 후 5초 이내에 저장소의 차단밸브가 잠기고 저장소로부터 누출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수소가스내압용기는 자동차의 부착지점으로부터 1곳 이상 부착되어 있을 것
2. 시속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벽을 자동차의 뒷면에 추돌시킬 때	
3.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벽을 자동차의 옆면에 충돌시킬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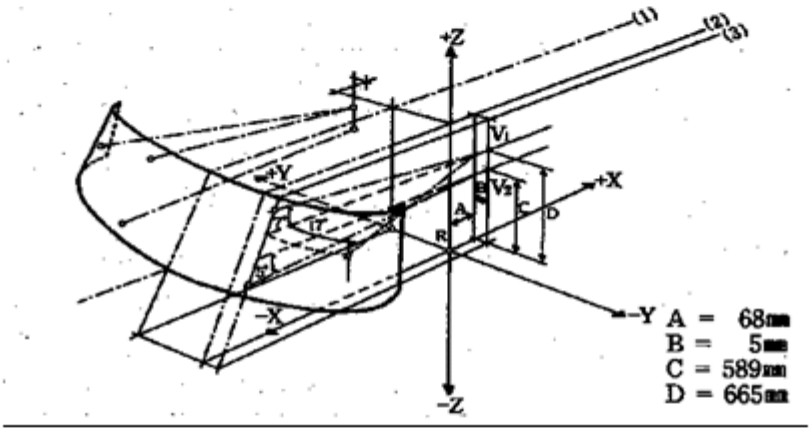
주) NL(Normal Liter) : 표준상태(0℃, 1기압)에서 측정한 부피

[별표 12] <개정 2012.8.31>

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제94조관련)

1. 앞면창유리상의 다음 각목의 점들이 포함된 창유리면은 가시광선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가. V 점 전방 수평좌향 17도인 점
 나. V 점 전방 수평상향 7도인 점
 다. V 점 전방 수평하향 5도인 점
 라. 위의 3개의 점들이 차량중심선을 포함하고 지면에 수직한 면에 각각 대칭인 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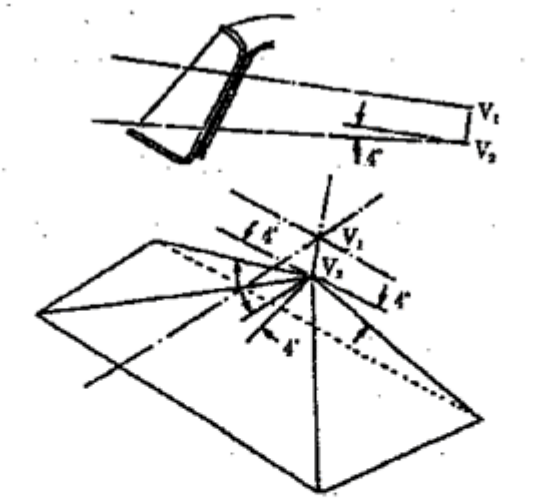
V점 및 앞면창유리 기준점의 위치



주 : (1)은 차량중심선을 포함하고 지면에 수직한 면이다.
(2)는 착석기준점(R점)을 포함하고 지면에 수직한 면이다.
(3)은 V점을 포함하고 지면에 수직한 면이다.

2. A-필라는 두 개 이하이어야 하며, 그 방해각은 6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다음 각목의 면으로 구성된 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 안에는 A-필라, 창분리지지대, 실외 라디오안테나, 후사경, 창닦이기를 제외한 방해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가. V 점을 지나는 수평면 아래부분
 나. X-Z면에 수직하면서 V 점을 지나는 면과 전방하향 4도의 각을 이루는 면의 윗부분
 다. Y-Z면에 수직하면서 V 점을 지나는 면과 좌측하향 4도의 각을 이루는 면의 윗부분
 라. Y-Z면에 수직하면서 V 점을 지나는 면과 우측하향 4도인 각을 이루는 면의 윗부분

운전자전방시계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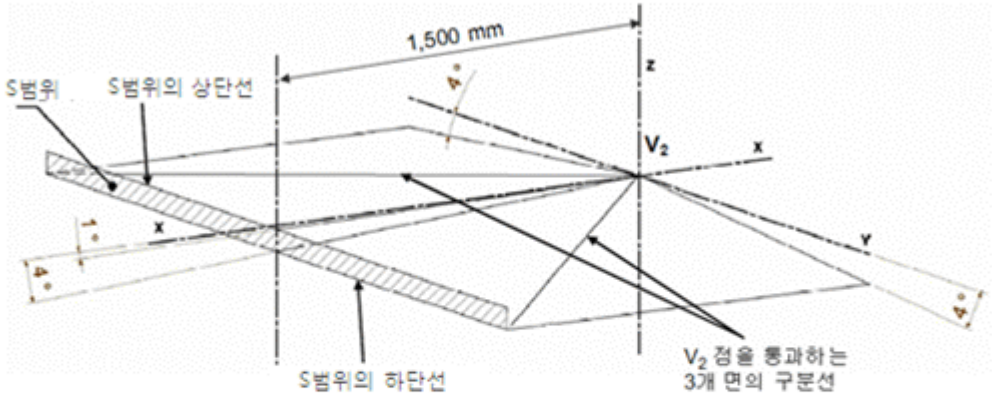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면으로 구성된 범위(S범위)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는 운행정보를 보여주거나 비춰 보여주는 장치와 그 장치에 의해 보여주거나 비춰 보여주는 부분, 조향핸들 및 계기판넬이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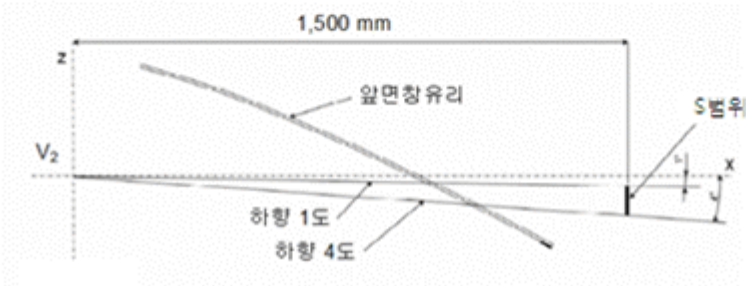
가. X-Z면에 수직하면서 V점을 지나는 면과 전방하향 1도의 각을 이루는 면의 아랫부분

나. X-Z면에 수직하면서 V점을 지나는 면과 전방하향 4도의 각을 이루는 면의 윗부분

다. V점에서 A-필라를 지나는 면의 좌·우측 내부

S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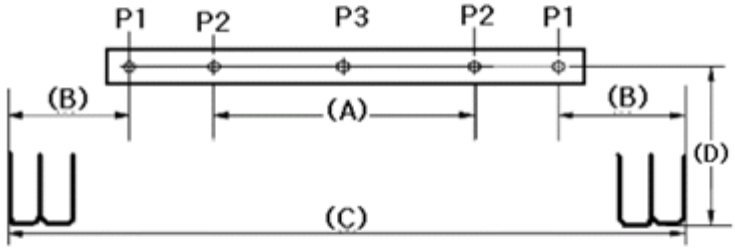
[별표 13] <개정 2014.6.10>

후부안전판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기준(제96조 및 제112조의6 관련)

1. 시험하중

가. P1점 및 P3점에 가하는 시험하중은 차량총중량의 25퍼센트 또는 50킬로뉴톤 중 작은값, P2점에 가하는 시험하중은 차량총중량의 50퍼센트 또는 100킬로뉴톤 중 작은값으로 한다.

나. 시험하중의 작용점은 다음과 같다.



(A) 700㎜ ~ 1000㎜이하

(B) 300±25㎜ 이내

(C) 차량 뒷 측 바깥바퀴의 폭(표준공기압에서의 지면에 접지된 상태의 최외측)

(D) 600㎜ 이하 : 종전에는 중심에 하중 적용

2. 설치강도

제1호에서 정한 하중을 가할 때에 후부안전판과 지상 2미터 이하의 차체 가장 뒷부분과의 간격은 4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별표 14] <개정 2010.3.29>

충돌시 인체모형의 상해기준(제102조제 1 항관련)

측 정 조 건	상 해 기 준
1. 매시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때에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 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 착석시킨 인체모형의 상해기준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인체모형 머리의 상해기준값이 1,000이하일 것 $[\frac{1}{t_2 - t_1}\int_{t_1}^{t_2} a^{2.5}\,dt]^{0.4}(t_2 - t_1)$ a : 중력가속도의 배수로 표시되는 합성가속도 t_1, t_2 : 충돌중 36/1,000초 이하의 간격을 갖는 임의의 두 순간 나. 흉부의 가속도가 3/1,000초 이상 연속적으로 중력가속도의 60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대퇴부의 압축하중이 1,02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인체모형의 어느 부분도 차실을 벗어나지 아니할 것 마. 인체모형 Ⅲ를 사용할 경우 흉골의 압축변위량이 76.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매시 48.3킬로미터의 속도에서 동적 전복시킬 때에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의 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 착석시킨 인체모형 중 낮은 쪽에 위치한 인체모형의 상해기준	인체모형의 어느 부분도 차실을 벗어나지 아니할 것

주

1. 시험에 사용되는 인체모형은 인체모형Ⅱ 또는 인체모형Ⅲ로서 50퍼센트 성인남자를 대표하는 인체모형 중에서 제작자가 선택한다.
2. "인체모형Ⅱ"라 함은 자동차안전도시험에 사용되는 인체의 특성을 갖춘 시험용 인체모형을 말한다.
3. "인체모형Ⅲ"라 함은 인체모형Ⅱ를 인체의 특성에 더욱 유사하도록 개량한 시험용 인체모형을 말한다.

4. 운전자 좌석 및 운전자 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 3점식 안전띠를 부착한 자동차중 컨버터블 자동차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천정구조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는 제 2 호의 동적 전복시험의 상해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5.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호의 충돌속도를 40킬로미터로 하고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4의2] <개정 2008.12.8>

측면충돌 시 인체모형의 상해기준(제102조제1항 관련)

시 험 조 건	기 준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측면충돌이동벽을 그 진행방향과 자동차의 길이방향 중심선이 90도가 되도록 자동차의 운전자측 옆면(차체가 좌우대칭이 아닐 때는 운전자측 또는 그 반대측면)에 충돌시킬 때에 충돌면에 인접한 전열좌석에 착석시킨 인체모형의 상해기준, 문열림장치기준 및 연료장치기준	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측면충돌 인체모형의 머리상해기준값이 1,000 이하일 것 [1/(t -t)] (t -t) a: 중력가속도의 배수로 표시되는 합성가속도 t , t : 최초의 접촉과 최종접촉 마지막 순간 사이의 임의의 두 순간 나. 갈비뼈변형값이 4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흉부연성조직의 기준값이 초속 1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치골유착하중은 6킬로뉴톤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마. 복부내부하중은 2.5킬로뉴톤을 초과하지 아나할 것 바. 충돌 시 문은 열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충돌 후 모든 승객이 연장 등의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문을 열 수 있을 것 사. 충돌 후 보호장치로부터 인체모형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인체모형을 자동차 바깥으로 옮길 수 있을 것 아. 실내장치 또는 부품은 날카로운 돌출물이나 톱니모양의 모서리 형태가 되어 상해위험을 현저하게 증가시키지 아니할 것 자. 충돌 후 연료장치로부터의 누유량이 1분당 30그램 이하일 것

주

1. 시험에 사용되는 인체모형은 50퍼센트 성인남자를 대표하는 측면충돌인체모형 Ⅰ 또는 Ⅱ를 사용한다.
2. "측면충돌인체모형Ⅰ"이란 자동차 측면충돌 안전시험에 사용되는 인체의 특성을 갖춘 시험용 인체모형을 말한다.
3. "측면충돌인체모형Ⅱ"란 측면충돌인체모형Ⅰ을 인체의 특성에 더욱 유사하도록 개선한 시험용 인체모형을 말한다.
4. 머리상해기준값은 인체모형의 머리가 충돌 시 차실내장재 등에 접촉이 없을 때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5. 가장 낮은 좌석의 착석기준점(H-point)이 지상에서 700밀리미터보다 높은 경우에는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4의3] <신설 2001.4.28>

충돌시 차체구조기준(제102조제2항관련)

측 정 조 건	차 체 구 조 기 준
1. 매시 48.3~53.1킬로미터의 속도로 고정벽 정면 수직 충돌시	가. 좌석중심에서 좌·우 150밀리미터의 범위에서 앞좌석 착석기준점을 지나는 수직횡단면과 계기판넬 가장 뒤끝을 지나는 수직횡단면과의 거리는 450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앞좌석 착석기준점을 지나는 수직횡단면과 앞쪽 내부격벽과의 거리는 브레이크페달 중심높이에서 65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 앞좌석의 발놓는 공간 측벽간의 거리는 브레이크페달 중심높이에서 250밀리미터 이상일 것 라. 앞좌석 착석기준점을 지나는 천정과 바닥까지의 수직거리는 10퍼센트 이상 수축되지 아니할 것 마. 충돌시 옆문이 열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충돌후 모든 승객이 연장 등의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문을 열 수 있을 것
2. 매시 35~38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벽후면 충돌시	가. 최후방 좌석의 착석기준점의 차량중심선 방향으로의 변위량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충돌시 옆문이 열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충돌후 모든 승객이 연장 등의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문을 열 수 있을 것

[별표 14의4] <개정 2013.3.23>

승합자동차의 차체강도기준(제102조제2항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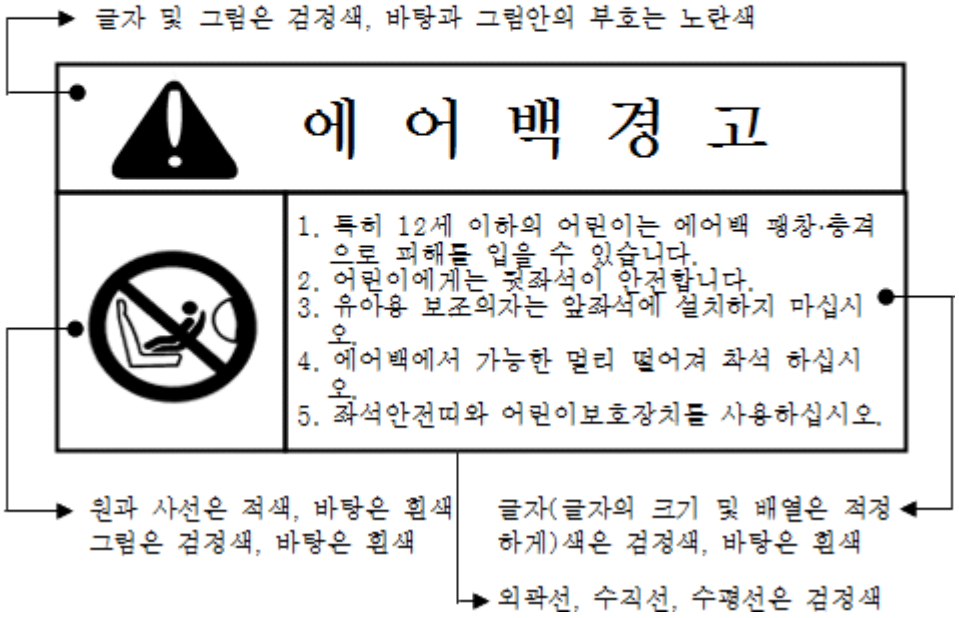
시 험 조 건	차 체 강 도 기 준
1. 완성차의 전복시험 2. 완성차를 대표하는 주요차체구조물의 전복시험	차체구조물의 변형된 부품이 승객거주공간을 침입해서는 아니되며, "승객거주공간"의 부품이 변형된 차체구조물 밖으로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차체구조물은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주 : 1. "승객거주공간"이라 함은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최외측 좌우 좌석의 착석기준점에 대하여 바깥쪽 150㎜인 각 지점과 착석기준점 상방 750㎜, 안쪽 100㎜인 각 지점을 연결한 수직횡단면을 승합차의 최후단 좌석에서부터 최전방승객좌석까지 연결한 체적공간을 의미한다.

2. 위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 대하여 일부 구조 및 장치의 변경으로 차체강도의 재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차체일부분에 대한 진자(Body Section Pendulum)시험 또는 강도계산법에 의한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14의5] <개정 2006.4.14>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제102조제3항관련)



[별표 14의6] <신설 2008.12.8>

보행자머리모형 및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
(제102조의2제2호나목 관련)

구 분	상 해 기 준
1. 보행자머리모형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보행자머리모형의 상해값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할 것 가. 어린이머리모형충격부위의 2분의 1 이상과 어린이와 성인머리모형충격부위의 3분의 2 이상은 1,000 이하일 것 나. 가목 이외의 머리모형충격부위는 1,700 이하일 것 다. 어린이머리모형충격부위만 있는 자동차의 경우 충격부위의 3분의 2 이상이 1,000 이하, 나머지 충격부위는 1,700 이하일 것 $\left[\frac{1}{t_2-t_1}\int_{t_1}^{t_2} a\,dt\right]^{2.5}(t_2-t_1)$ a: 중력가속도의 배수로 표시되는 합성가속도 t_1, t_2: 충격 중 15/1000초 이하의 간격을 갖는 임의의 두 순간
2. 보행자다리모형	보행자하부다리모형의 상해값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할 것 가. 최대 동적무릎굽힘각도는 19도 이하일 것 나. 최대 동적전단변위량은 6.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 경골의 중력가속도는 170배 이하일 것 단, 제작사가 지정하는 보행자다리충격부위 폭의 합이 264밀리미터까지는 경골의 중력가속도는 250배 이하일 것
	보행자상부다리모형의 상해값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할 것 가. 충격 하중의 합이 7.5킬로뉴톤 이하일 것 나. 굽힘 모멘트는 510뉴톤미터 이하일 것
3. 보행자머리충격부위 및 보행자다리충격부위 상해영역 구분	제작사는 보행자머리충격부위 및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서 상해영역(보행자머리모형 상해값 1,000이하 또는 1,700이하 영역, 경골 중력가속도 250배 이하 영역)을 구분하여야 하며, 기준적합 확인 시 관련 근거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어야 함

[별표 15] <개정 2008.1.14>

좌석안전띠의 조절기준(제103조제1항관련)

좌 석 위 치	안전띠위치	조 절 범 위		조 절 장 치
1.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의 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	골 반	운 전 자의 좌석	5퍼센트의 성인여자의 인체모형과 95퍼센트의 성인남자의 인체모형의 사용에 적합할 것	비상잠금조절장치를 갖출 것
		그 외 좌 석	6살 어린이의 인체모형과 95퍼센트의 성인남자의 인체모형의 사용에 적합할 것	
	어 깨	5퍼센트의 성인여자의 인체모형과 95퍼센트의 성인남자의 인체모형의 사용에 적합할 것		
2. 제 1 호외의 좌석	골 반	6살 어린이의 인체모형과 95퍼센트의 성인남자의 인체모형의 사용에 적합할 것		비상잠금조절장치, 자동잠금조절장치 또는 수동잠금조절장치를 갖출 것
	어 깨	5퍼센트의 성인여자의 인체모형과 95퍼센트의 성인남자의 인체모형의 사용에 적합할 것		비상잠금조절장치 또는 자동잠금조절장치를 갖출 것

주 : 3점식 안전띠의 골반부분조절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6] <개정 2014.6.10>

좌석안전띠 성능기준(제103조제1항 및 제112조의3 관련)

1. 좌석안전띠는 탑승자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예리한 돌출부나 모서리 등이 없을 것
2. 좌석안전띠의 각 부는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하며, 갈라지거나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식 등이 없을 것
3. 성능기준

가. 정지상태에서의 하중에 관한 기준

구분	항목	성능기준
안전띠	인장강도	1) 2개 시험품의 파단하중은 14,700N 이상이어야 하며, 그 파단하중의 차이는 큰 값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2개의 파단하중은 2개 평균값의 75퍼센트 이상일 것
	너비	1) 인장하중 9,800 $^{+1,000}_{-0}$ N의 하중에서 안전띠 너비 46mm 이상일 것
안전띠 조절장치	검사	1) 좌석안전띠는 착용 시 착용자의 몸에 맞고 쉽게 조절될 것
	강도	1) 인장하중 9,800N의 하중에서 분리되거나 파손되지 않을 것
	마이크로 슬립시험	1) 시험 시 2개의 안전띠 조절장치의 각 시험품마다 안전띠의 미끄러짐은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 2) 2개 안전띠 이동량의 합은 4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버클	검사	1) 부분적으로 잠기는 등 부정확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없을 것 2) 착용자의 몸에 닿을 수 있는 경우의 버클은 넓이 20㎠ 이상, 너비 46㎜ 이상일 것(2점식 및 3점식 좌석안전띠만 해당한다) 3) 버클의 잠금 해제를 위한 버튼은 적색이어야 하고, 다른 부분은 적색이 아닐 것
	강도	1) 인장하중 9,800N의 하중에서 분리되거나 파손되지 않을 것
	내구성	1) 버클은 5,000사이클의 체결과 비체결을 반복적으로

		작동 시 이상이 없을 것
	성능	1) 버클의 체결된 상태에서는 항상 잠겨져있어야 하며, 10N 이하의 힘으로는 해제되지 않을 것 2) 움직이는 상태에서의 시험이 완료된 버클의 해리력은 60N을 초과하지 않을 것
리트랙터	강도	1) 리트랙터는 14,700N의 인장하중 시험 시 파손되거나 분리되지 않을 것. 다만, 리트렉터에 상부 슬립가이드가 적용된 경우에는 9,800N의 인장하중 시험 시 파손되거나 분리되어서는 아니된다.
	수동 잠금해제 리트랙터	1) 안전띠는 리트랙터의 잠금위치에서 이동량이 25㎜ 이하일 것 2) 14N ~ 22N 사이의 장력에서 안전띠가 빠져나오는 길이는 6㎜ 이하일 것 3) 리트랙터 작동을 10,000회 반복 후에도 정상 작동할 것
	자동 잠금 리트랙터	1) 안전띠는 리트랙터의 잠금위치에서 이동량이 30㎜ 이하일 것 2) 골반을 구속하는 경우 복원력이 7N 이상이어야 하며, 상체구속장치의 일부인 경우 2N 이상 7N 이하일 것 3) 리트랙터 작동을 10,000회 반복 후에도 정상 작동할 것
	비상 잠금 리트랙터	1) 자동차의 감속도값이 0.45g(반응력이 높은 비상잠금 리트랙터의 경우 0.85g) 이하에서 잠길 것 2) 안전띠의 가속도값이 0.8g(반응력이 높은 비상잠금 리트랙터의 경우 1.0g) 이하에서 잠기지 아니할 것 3) 리트랙터가 잠기는 조건에서 리트랙터가 잠기기 전의 안전띠 이동량은 5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설치 위치로부터 어느 방향이든 12도 이하로 기울어질 때는 잠기지 아니할 것 5) 설치 위치로부터 27도(반응력이 높은 비상잠금 리트랙터의 경우 40도) 이상의 각도에서 잠길 것 6) 리트랙터 작동을 45,000회 반복 후에도 정상 작동할 것
부착구와 안전	강도	1) 인장하중 14,700N의 하중에서 분리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할 것

띠 높이 조절장치		

나. 움직이는 상태에서의 하중에 관한 기준

항목	성능기준
내하중성	1) 중력가속도의 30배의 관성하중으로 시험하였을 때 손상이 없어야 하며, 버클 또는 잠금 장치가 풀리지 않을 것
인체모형의 이동량	1) 골반부는 80mm 이상 200mm 이하이며, 흉부는 100mm 이상 300mm 이하일 것. 다만, 프리로딩 장치가 설치된 안전띠의 경우에는 골반부, 흉부 모두 최소 이동량을 50퍼센트까지 허용한다. 2) 에어백이 있는 경우에는 흉부 최대 이동량이 300mm를 초과시의 흉부속도는 300mm 시점에서 24km/h 이하일 것. 다만, 흉부 최대 이동량이 300mm를 초과하는 시점에서 24km/h를 초과하는 경우 인체모형의 구속상태 평가를 통해 자동차 전방의 단단한 부품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이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시험 후 확인	1) 시험 후 변위장치와 잠금장치 등은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을 것 2) 시험 후 좌석안전띠장치의 파손과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변형 및 균열이 없을 것

비고: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띠 조절장치"란 안전띠를 착용자에 맞게 조절하도록 설계된 단단한 부품이며, 버클, 부착구 또는 리트렉터 등을 조합하여 구성한 것을 말한다.
2. "마이크로슬립시험"이란 미세하게 미끄러짐량을 측정하는 시험을 말한다.
3. "버클"이란 탑승자를 구속하고 신속하게 해리하기 위한 좌석안전띠장치의 연결부를 말한다.
4. "해리력"이란 버클을 분리하는데 사용되는 힘을 말한다.
5. "리트랙터"란 좌석안전띠 중 안전띠 일부 또는 전체를 수납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수동 잠금해제 리트랙터"란 안전띠를 원하는 길이로 끌어내기 위해서 착용자가 리트랙터의 잠금을 풀려면 장치를 수동으로 작동시켜야 하고, 이

작동이 멈추면 자동적으로 잠겨지는 리트랙터를 말한다.

나. "자동 잠금 리트랙터"란 안전띠를 원하는 길이로 끌어낼 수 있고 버클을 연결하면 자동적으로 안전띠를 착용자의 몸에 맞추어 조절하는 리트랙터로 착용자의 자발적 개입없이 안전띠를 더 끌어내는 것을 방지하는 리트랙터를 말한다.

다. "비상 잠금 리트랙터"란 정상적인 운전조건 동안 안전띠 착용자의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는 리트랙터를 말한다.

예) 비상 시 자동차의 충돌·추돌·전복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감속(단일 감지기능) 또는 자동차의 감속과 다른 동작의 감지(다중 감지기능)를 통해 잠금 기구가 작동하여 잠기는 리트랙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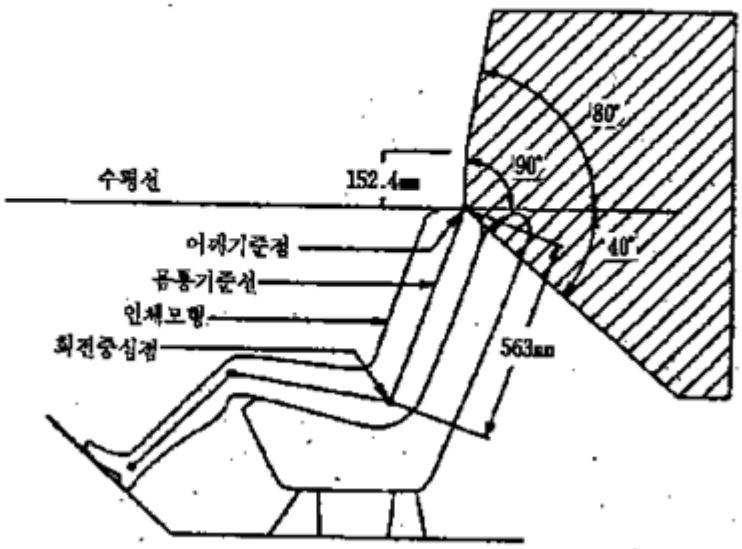
6. "부착구"란 안전띠부착장치에 좌석안전띠를 견고하게 고정시키기 위하여 금속 또는 단단한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진 좌석안전띠의 일부를 말한다.

7. "안전띠 높이 조절장치"란 좌석안전띠의 자동차 상부 필라 루프 높이에 있는 위치를 개별 좌석안전띠 착용자의 조건에 따라 위치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8. "프리로딩 장치"란 충돌순간 안전띠의 느슨함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띠를 감아주기 위해 추가하는 장치 또는 내부장치를 말한다.

[별표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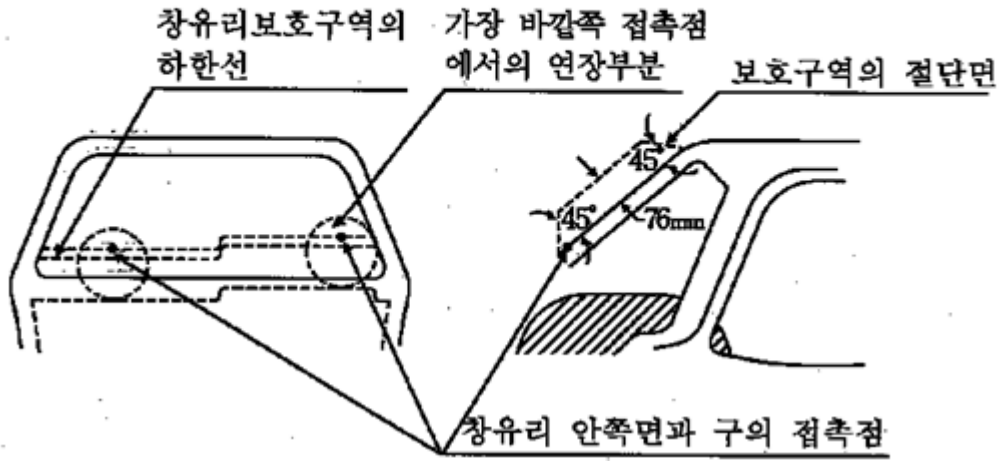
3점식 안전띠의 어깨부분부착장치의 설치범위(제103조제3항제4호관련)



[별표 18]

앞면창유리의 보호구역(제105조제1항제3호관련)

1. 보호구역은 다음 각목의 면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한다.
 가. 창유리 바깥면
 나. 창유리 바깥면의 각 지점에서 수직으로 76밀리미터 바깥쪽에 있는 점의 궤적
 다. 창유리 바깥면의 윗변과 옆변 및 보호구역하한선의 각 지점에서 창유리 바깥면과 45도의 각을 이루는 면의 궤적
2. 제 1 호에서 보호구역하한선이라 함은 지름 165밀리미터, 무게 6.8킬로그램의 구가 창유리 안쪽면과 계기판넬 표면에 동시에 접하는 당해 창유리의 점들의 궤적을 그린 후 가장 바깥쪽의 양쪽 접촉점에서 창유리의 가장자리까지 수평으로 궤적을 연장할 때에 연장된 궤적과 평행한 12.7밀리미터 아래쪽 선을 말한다.



[별표 19] 삭제 <2014.6.10>

[별표 19의2] 삭제 <2014.6.10>

[별표 19의3] 삭제 <2014.6.10>

[별표 19의4] 삭제 <2014.6.10>

[별표 19의5] 삭제 <2014.6.10>

[별표 19의6] 삭제 <2014.6.10>

[별표 19의7] 삭제 <2012.2.15>

[별표 19의8] 삭제 <2012.2.15>

[별표 19의9] 삭제 <2014.6.10>

[별표 20] 삭제 <2014.6.10>

[별표 21] 삭제 <2014.6.10>

[별표 22] 삭제 <2014.6.10>

[별표 23] 삭제 <2014.6.10>

[별표 23의2] 삭제 <2014.6.10>

[별표 24] 삭제 <2014.6.10>

[별표 25] 삭제 <2014.6.10>

[별표 26] 삭제 <2014.6.10>

[별표 27] 삭제 <2014.6.10>

[별표 28] 삭제 <2014.6.10>

[별표 28의2] <개정 2014.6.10>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의 광도기준(제48조제4항제6호 관련)

1. 각 측정점에서의 최소광도가 다음 표의 최소광도 이상일 것

측 정 점		최 소 광 도(칸델라 : cd)	
		적 색	황 색
10U	5L	20	50
	V	50	125
	5R	20	50
5U	20L	150	375
	10L	300	750
	5L	300	750
	V	300	750
	5R	300	750
	10R	300	750
	20R	150	375
H	30L	30	75
	20L	180	450
	10L	400	1000
	5L	500	1250
	V	600	1500
	5R	500	1250
	10R	400	1000
	20R	180	450
	30R	30	75
5D	30L	30	75
	20L	200	500
	10L	300	750
	5L	450	1125
	V	450	1125
	5R	450	1125
	10R	300	750
	20R	200	500
	30R	30	75
10D	5L	40	100
	V	40	100
	5R	40	100

2. 각 측정점에서의 최소광도의 합이 다음 표의 최소광도의 합 이상일 것(각 측정점에서의 최소광도가 위 표에 의한 최소광도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구 역	측 정 점 (도)	최소광도의 합(칸델라 : cd)	
		적 색	황 색
1	H 30L 5D 30L 5U 20L H 20L 5D 20L	590	1475
2	10U 5L 10U V 10U 5R	90	225
3	5U 10L 5U 5L 5U V 5U 5R 5U 10R	1500	3750
4	H 10L H 5L H V H 5R H 10R	2400	6000
5	5D 10L 5D 5L 5D V 5D 5R 5D 10R	1950	4875
6	10D 5L 10D V 10D 5R	120	300
7	5U 20R H 20R 5D 20R H 30R 5D 30R	590	1475

[별표 28의3] 삭제 <2014.6.10>

[별표 28의4] 삭제 <2014.6.10>

[별표 29] 삭제 <2014.6.10>

[별표 30] <개정 1997.1.17>

창닦이기와 세정액분사장치의 세척부분과 서리제거장치 및 안개제거장치의 제거부분(제109조관련)

1. "가"부분은 V점으로부터 앞으로 향한 아래의 4개 평면에 의하여 앞면창유리 외측 표면에 표시되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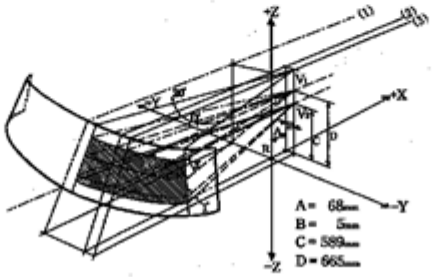
가. V 점과 V 점을 지나고 X축의 좌향으로 13도의 각도를 이루는 수직평면

나. V 점과 V 점을 지나고 X축의 우향으로 20도의 각도를 이루는 수직평면

다. V 점을 지나고 X축의 상향으로 3도의 각도를 이루는 Y축에 평행한 평면

라. V 점을 지나고 X축의 하향으로 1도의 각도를 이루는 Y축에 평행한 평면

"가"부분의 위치



주

(1)은 차량중심선을 포함하고 지면에 수직한 면이다.

(2)는 착석기준점(R점)을 포함하고 지면에 수직한 면이다.

(3)은 V 점과 V 점을 포함하고 지면에 수직한 면이다.

2. "나"부분은 앞면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인 부분의 외측 끝단에서 25밀리미터 이상 떨어지고, V점으로부터 앞으로 향한 아래의 4개 평면에 의하여 앞면창유리 외측 표면에 표시되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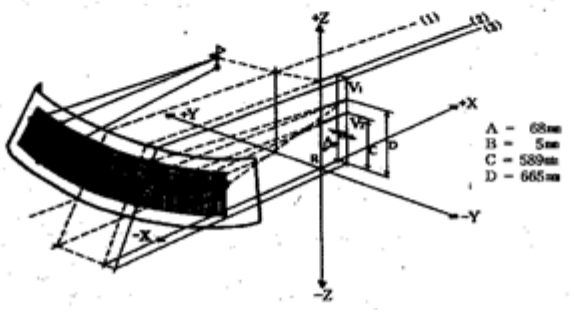
가. V 점과 V 점을 지나고 X축의 좌향으로 17도의 각도를 이루는 수직평면

나. 가목에서 규정한 평면이 자동차길이방향 수직종단면에 대하여 대칭되는 평면

다. V 점을 지나고 X축의 상향으로 7도의 각도를 이루는 Y축에 평행한 평면

라. V 점을 지나고 X축의 하향으로 5도의 각도를 이루는 Y축에 평행한 평면

"나"부분의 위치



주

(1)은 차량중심선을 포함하고 지면에 수직한 면이다.

(2)는 착석기준점(R점)을 포함하고 지면에 수직한 면이다.

(3)은 V 점과 V 점을 포함하고 지면에 수직한 면이다.

[별표 30의2] <개정 2012.2.15>

최고속도제한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제110조의2 관련)

1. 구조 기준

가. 공통사항

1)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의 진동에 견딜 수 있을 것

2) 외부의 전자파에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

3) 임의적인 개조가 곤란한 구조일 것

4)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제어장치·작동장치 및 연결장치에 봉인을 할 것. 다만, 엔진전자장치진단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기능 변경을 하지 못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주제동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구조일 것. 다만,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변속장치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나. 고정형 최고속도제한장치: 운전자가 임의로 최고속도를 변경할 수 없는 속도제한장치

1)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작동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작동 중에는 설정된 최고속도를 변경하거나 해제 시킬 수 없을 것

다. 조절형 최고속도제한장치: 운전자가 임의로 최고속도를 변경할 수 있는 속도제한장치

1) 운전석에서 설정된 최고속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최고속도의 변경이나 해제가 항상 가능할 것

3) 원동기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설정된 최고속도가 해제될 것

4) 가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최고속도를 초과할 수 있는 구조로 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운전자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경고등 또는 경고음이 계속 작동되어야 한다.

5) 시속 30킬로미터부터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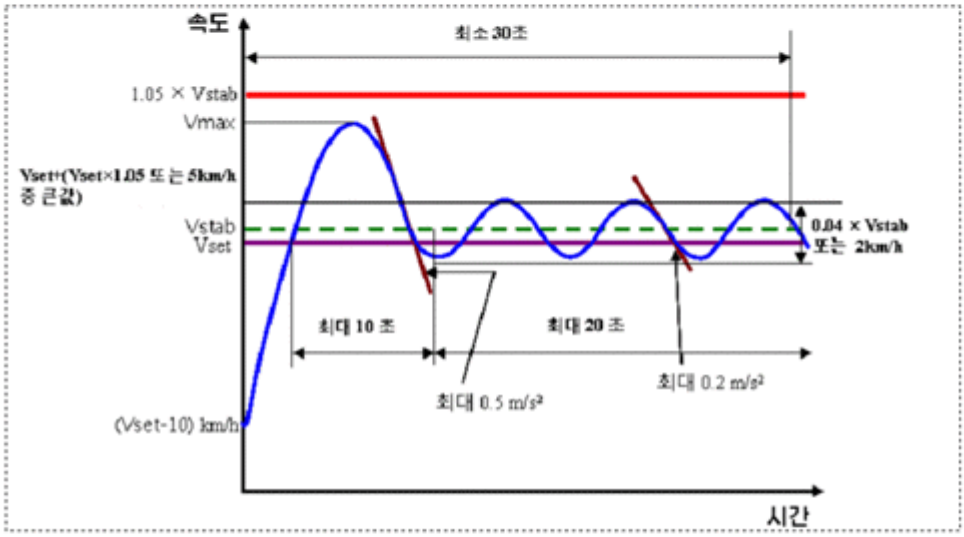
6) 조절제한속도의 최초 설정은 주행 중인 속도보다 높은 속도로 설정할 수 있을 것

2. 성능 기준

가. 고정형 최고속도제한장치

1) 가속기준

가) 자동차의 안정속도(Vstab)는 설정속도(Vset)에 설정속도(Vset)의 5퍼센트의 속도 또는 시속 5킬로미터 중 큰 값을 더한 속도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속도선도>

나) 자동차가 안정속도(Vstab)에 최초로 도달한 후에는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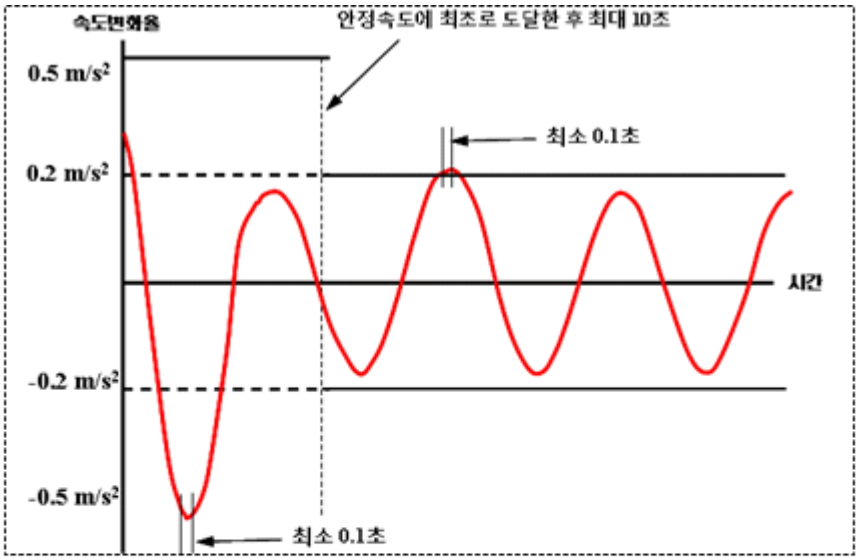
(1) 최고속도(Vmax)는 안정속도(Vstab)의 105퍼센트 이하일 것

(2) 0.1초 이상의 간격으로 측정 시에 속도변화율은 ±0.5㎪ 이하일 것

다) 자동차가 안정속도(Vstab)에 최초로 도달한 후 10초 이내에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

(1) 자동차속도의 변화량은 안정속도(Vstab)의 4퍼센트 또는 시속 2킬로미터의 속도 중 큰 값 이하일 것

(2) 0.1초 이상의 간격으로 측정 시에 속도변화율은 ±0.2㎪ 이하일 것



<속도변화율 선도>

라) 설정속도(Vset)를 초과하는 변속단에 대하여 각각 시험을 실시하여 가)부터 다)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정속기준

가) 자동차의 안정속도(Vstab)는 설정속도(Vset)에 설정속도(Vset)의 5퍼센트의 속도 또는 시속 5킬로미터 중 큰 값을 더한 속도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각 정속시험 시 얻어진 안정속도(Vsta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는 시속 3킬로미터의 속도 이하일 것

다) 설정속도(Vset)를 초과하는 변속단에 대하여 각각 시험을 실시하여 가) 및 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조절형 최고속도제한장치

1) 가속기준

가) 자동차의 안정속도(Vstab)는 설정된 최고속도(V_{adj})보다 시속 3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 자동차가 안정속도(Vstab)에 최초로 도달한 후에는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

(1) 최고속도(Vmax)는 안정속도(Vstab)의 105퍼센트 이하일 것

(2) 0.1초 이상의 간격으로 측정 시에 속도변화율은 ±0.5㎪ 이하일 것

다) 자동차가 안정속도(Vstab)에 최초로 도달한 후 10초 이내에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

(1) 자동차속도의 변화량은 시속 3킬로미터 이하일 것

(2) 0.1초 이상의 간격으로 측정 시에 속도변화율은 ±0.2% 이하일 것

라) 설정된 최고속도(V_{adj})를 초과하는 변속단에 대하여 각각 시험을 실시하여 가)부터 다)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경고발생 기준

자동차 속도가 설정된 최고속도(V_{adj})보다 시속 3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경고신호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운전자에게 알릴 것

※ 비고

1. 제5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에는 고정형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자동차에는 고정형 최고속도제한장치 또는 조절형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설정속도(Vset)"란 자동차의 속도가 안정된 상태로 운행되도록 제한속도를 목표로 제작사가 설정하는 자동차의 속도를 말한다.
3. "안정속도(Vstab)"란 설정속도를 지향하는 실제 평균주행속도로서 최대로 가속 후 속도가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한 자동차의 평균속도를 말한다.
4. "최고속도(Vmax)"란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작동상태에서 가속을 시작한 후 반응곡선의 첫 반주기에서 자동차가 도달한 가장 높은 속도를 말한다.
5. "설정된 제한속도(Vadj)"란 운전자가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자동차속도를 말한다.

2. 정속시험

가. 안정속도는 설정속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V ≦V), 안정속도와 설정속도의 차이는 설정속도의 5퍼센트 또는 시속 5킬로미터의 속도중 큰 값 이하이어야 한다.

나. 각 정속시험시 얻어진 안정속도값 사이의 편차는 시속 3킬로미터의 속도 이하이어야 한다.

다. 이론적으로 설정속도를 초과하는 변속위치에 대하여 각각 시험을 실시하여 가목 및 나목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별표 30의3] <개정 2010.11.10>

전자파 적합성 기준(제111조의2 관련)

1. 전자파 방사기준

가. 광대역 방사기준

구분		시험 주파수(㎒)		
		30 ~ 75	75 ~ 400	400 ~ 1000
자동차	10미터 기준치 (dBμV/m)	36	36+15.13log(f/75)	47
	3미터 기준치 (dBμV/m)	46	46+15.13log(f/75)	57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 단위부품		62-25.13log(f/30)	52+15.13log(f/75)	63

주) 1. 10미터 및 3미터의 기준치 중 하나를 적용하며, f는 시험 주파수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2. 위 기준은 자동차에 우선 적용하며, 자동차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전기·전자장치의 단위부품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나. 협대역 방사기준

구분		시험 주파수(㎒)		
		30 ~ 75	75 ~ 400	400 ~ 1000
자동차	10미터 기준치 (dBμV/m)	26	26+15.13log(f/75)	37
	3미터 기준치 (dBμV/m)	36	36+15.13log(f/75)	47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 단위부품		52-25.13log(f/30)	42+15.13log(f/75)	53

주) 자동차에 장착된 전기·전자장치의 발진주파수가 9㎑ 미만이거나, 76㎒~108㎒주파수 범위에서 라디오의 공중선 유기 전압이 20dBμV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전자파 내성기준

적용대상	시험 조건		기준
	주파수범위	전파의 세기(실효값)	
자동차	20~2,000 ㎒	24 V/m	○ 자동차의 직접 제어와 관련한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 운전자, 승객 또는 다른 운전자의 보호와 관련한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 운전자나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장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 자동차의 데이터 전송시스템 및 자동차의 법정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 단위부품	20~2,000 ㎒	가. 전자파방사: 30V/m 나. 150㎜스트립선로: 60V/m 다. 800㎜스트립선로: 15V/m 라. TEM cell: 75V/m 마. BCI(벌크전류인가): 60㎃	

주) 1.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 단위부품의 내성시험은 전파의 세기 란의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시험할 수 있다.

2. 자동차 시험의 경우, 주파수 범위의 90% 이상에 대한 전파의 세기는 24V/m 이며, 주파수 범위에서 최소 전파의 세기는 20V/m 이상이어야 한다.

3.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 단위부품 시험의 경우, 주파수 범위의 90% 이상에 대 한 전파의 세기는 표 항목의 세기와 같으며, 주파수 범위에서 최소 전파의 세기는 전자파방사는 25V/m, 150mm 스트립라인은 50V/m, 800mm 스트립라인은 12.5V/m, TEM 셀은 62.5V/m 및 벌크전류인가(BCI)는 50mA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30의4] <신설 2011.12.23>

브레이크호스 기준(제112조의2 관련)

1. 유압브레이크호스

가. 성능기준

1) 수축기준

유압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 각 단면의 내경(호스를 포함하지 않는 끝단부품은 제외한다)이 브레이크호스 공칭내경의 64퍼센트 이상일 것

2) 팽창기준

유압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 6,900kPa, 10,300kPa 및 20,000kPa의 압력에서 최대팽창이 아래 표에 규정된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유압브레이크호스 내경	팽창량 (cm^3/m)					
	6,900kPa		10,300kPa		20,000kPa	
	일반팽창호스	저팽창호스	일반팽창호스	저팽창호스	일반팽창호스	저팽창호스
3mm 이하	2.17	1.08	2.59	1.38	4.00	2.00
3mm초과 ~ 5mm이하	2.82	1.81	3.35	2.36	5.50	3.00
5mm초과	3.41	2.69	4.27	3.84	-	-

3) 파열강도기준

유압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 27,600kPa의 수압을 가했을 때 2분 이상 파열없이 견디고, 직경 3mm 이하인 호스에 대해서는 49,000kPa 이하, 직경 3mm 초과인 호스에 대해서는 34,500kPa 이하에서 파열되지 않을 것

4) 내휨성(whip)기준

유압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 35시간 연속 내휨성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파열되지 않을 것

5) 인장강도기준

유압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 저속 인장시험 시 1,446N, 고속 인장시험 시 1,646N의 인장력을 가한 경우 끝단부품으로부터 호스의 이탈이 없을 것

6) 침수 후 파열강도기준

유압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 70시간 동안 침수시킨 후 27,600kPa의 수압을 한 경우 2분 이상 파열 없이 견디고, 34,500kPa 이하에서 파열되지 않을 것

7) 침수 후 내휨성(whip)기준

유압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 70시간 동안 침수시킨 후 4)의 내휨성(whip)기준을 만족할 것

8) 침수 후 인장강도기준

유압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 70시간 동안 침수시킨 후 5) 인장강도기준을 만족할 것

9) 내저온성기준

유압브레이크호스는 70시간 동안 -48℃ ~ -45℃의 온도로 유지한 후 구부렸을 때 확대경 없이 육안 확인할 수 있는 균열이 없을 것

10) 제동액 적합성기준

유압브레이크호스조립품(무기물계 또는 석유계 제동액이 사용되는 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 제외한다)은 해당 자동차의 제동액을 채워 70시간동안 120℃의 온도로 유지한 후 아래 기준을 만족할 것

가) 유압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 각 단면의 내경(호스를 포함하지 않는 끝단부품은 제외한다)이 브레이크호스 공칭내경의 64퍼센트 이상일 것

나) 27,600kPa의 수압을 2분 이상 가했을 때 파열이 없어야 하며, 그 후 34,500kPa 이하에서 파열되지 않을 것

11) 내오존성기준

가) 유압브레이크호스는 40℃에서 70시간 동안 오존에 노출시킨 후 7-배율 확대경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균열이 없을 것

나) 48시간 동안 동적오존시험 수행 후 확대경 없이 육안 확인할 수 있는 균열이 없을 것

12) 고온충격기준

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 고온가압시험에서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146℃의 온도로 150회의 가압사이클에서 누설 없이 견딜 것

나) 27,600kPa의 내압시험에서 2분 이상 파열되지 않을 것

다) 34,500kPa 이하의 압력에서 파열되지 않을 것

13) 끝단부품 내부식성기준

유압브레이크호스 끝단부품(체결 또는 표기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보호피복이 제거된 경우는 제외한다)은 염수분무에 24시간 노출시킨 후 표면에 원

금속의 부식이 없을 것

주) 무기물계 또는 석유계 제동액이 사용되는 브레이크호스조립품: ISO 6120에 따라 제작된 브레이크호스조립품

나. 표기기준

1) 유압브레이크호스는 길이방향에 평행하고 분명하게 식별 가능한 폭 1.5mm 이상의 줄무늬를 호스 양쪽에 표기(이 표기는 2)의 표기사항이나 제작사가 표기하고자 하는 추가적인 문구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할 것. 다만, 유압브레이크호스가 자동차에 장착될 때 꼬임을 방지할 수 있는 끝단부품과 함께 조립품으로써 제작되어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유압브레이크호스(브레이크호스조립품의 일부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다음 사항을 최소 3mm 이상의 문자·숫자 또는 기호로 표기하고, 문구 사이의 간격은 153mm 이하로 표기할 것

가) 호스제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제작자 식별표식

나) 숫자로 표기된 제작 년·월·일 또는 년·월

다) 호스의 공칭내경

라) 일반팽창호스 또는 저팽창호스인 경우 각각 "HR" 또는 "HL" 표기

3) 유압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 브레이크호스조립품을 둘러싼 밴드(끝단부품에 의해 이탈이 방지될 경우에는 호스부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를 이용하여 최소 3mm 크기의 문자·숫자 또는 기호 등으로 브레이크호스조립품 제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제작사 식별표식을 할 것. 다만, 유압브레이크호스조립품의 1개 이상의 끝단부품에 최소 1.5mm 크기로 브레이크호스조립품 제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식별표식을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주) 1) 브레이크호스: 브레이크 계통에서 자동차 브레이크에 힘을 작동시키기 위해 유압 또는 공기압 등을 전달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유연한 도관을 말한다.

2) 끝단부품: 브레이크호스의 끝 부분에 브레이크호스의 연결을 목적으로 제작된 부품을 말한다.

3) 브레이크호스조립품: 브레이크 계통에 사용하기 위한 끝단부품을 갖춘 브레이크호스를 말한다.

4) 자동차 제작 시 장착되는 브레이크호스의 경우에는 해당 부품의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2. 공기브레이크호스

가. 성능기준

1) 수축기준

공기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 각 단면의 내경(호스를 포함하지 않는 끝단부품 제외한다)이 브레이크호스 공칭내경의 66퍼센트 이상일 것

2) 내고온성기준

공기브레이크호스는 공칭내경별 규정된 반경을 갖는 시험실린더에 구부린 상태로 100℃의 온도에서 70시간 동안 유지한 후 폈을 때 확대경 없이 육안 확인할 수 있는 내·외부의 균열, 탄 자국 기타 변형 등이 없을 것

3) 내저온성기준

공기브레이크호스의 내외부 표면은 공칭내경별 규정된 반경을 갖는 시험실린더에 구부린 상태로 -40℃에서 70시간 동안 유지한 후 폈을 때 확대경 없이 육안 확인할 수 있는 내·외부의 균열, 탄 자국 또는 기타 변형 등이 없을 것

4) 내유성기준

공기브레이크호스의 내부튜브 및 외피에서 채취한 시편은 100℃에서 70시간 동안 표준오일(IRM 903)에 담근 후 체적변화율이 100퍼센트 이하일 것

5) 내오존성기준

공기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 40℃에서 70시간 동안 오존에 노출시킨 후 공칭내경별 규정된 반경을 갖는 시험실린더에 구부렸을 때 7-배율 확대경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균열이 없을 것

6) 길이변화기준

공기브레이크호스는 1,380kPa 공기압에서 길이 수축이 7퍼센트 이하이고 팽창이 5퍼센트 이하일 것

7) 점착성기준

가) 공기브레이크호스(철선 보강된 호스 제외한다)는 인접층이 분리되기 전에 1.4N/mm의 인장력에 견딜 것

나) 철선 보강된 공기브레이크호스는 635mmHg의 진공에서 공칭내경별 규정된 반경을 갖는 시험실린더에 구부린 경우 시험구는 호스 전(全) 구간에서 자유롭게 굴러갈 수 있을 것

8) 굴곡강도 및 공기압누설기준

공기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 오리피스를 통해 공급되는 압력에 의해 2분 이내에 0kPa에서 970kPa까지 증가하는 내압을 견딜 것

9) 내부식성 및 파열강도기준

공기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 염수분무에 노출된 후 6,200kPa의 정수압에서 파열되지 않을 것

10) 인장강도기준

공기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 공칭내경이 6mm 이하인 경우에는 222N, 6mm 초과 및 12mm 이하인 경우에는 667N, 12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446N 인장력에 대해 끝단부품으로부터 호스의 이탈 없이 견딜 것. 다만, 프레임과 차축 사이 또는 피견인자동차와 견인자동차 사이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공기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 공칭내경이 6mm 이하인 경우에는 1,110N, 6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446N의 인장력에 대해 끝단부품으로부터 호스의 이탈 없이 견뎌야한다.

11) 침수 및 인장강도기준

공기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 70시간 동안 증류수 침수 후 10) 인장강도기준에 적합할 것

12) 내염화아연성기준

공기브레이크호스는 200시간 동안 염화아연 50퍼센트 수용액에 담근 후 외부피복에 7-배율 확대경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균열이 없을 것

13) 끝단부품 내부식성기준

공기브레이크호스 끝단부품(체결 또는 표기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보호피복이 제거된 경우는 제외한다)은 염수분무에 24시간 노출시킨 후 표면에 원금속의 부식이 없을 것

나. 표기기준

1) 공기브레이크호스(브레이크호스조립품의 일부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다음 사항을 최소 3mm 이상의 문자·숫자 또는 기호로 표기하고, 문구 사이의 간격은 153mm 이하로 표기할 것

가) 호스제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제작자 식별표식

나) 숫자로 표기된 제작 연월일 또는 제작 연월

다) 호스의 공칭내경

라) 형식의 지정은 아래 (1)부터 (3)까지에 적합하여야 하고, A 형식은 "A", AI 형식은 "AI", AII 형식은 "AII"로 표기할 것

(1) A 형식: 강화섬유 및 탄성중합체 외피

(2) AI 형식: 철선 또는 강화섬유 및 땋은 섬유 외피

(3) AII 형식: 철선 또는 강화섬유 및 땋은 섬유 또는 탄성중합체 외피

2) 공기브레이크호스 끝단부품(변형을 가하는 방식에 의해 호스에 체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중 최소한 1개는 다음 사항을 최소 1.5mm 높이의 문자·숫자 또는 기호로 표기할 것

가) 끝단부품 제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제작자 식별표식

나) 공기식 제동장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A" 표기를 하여야 하며, 재사용 가능한 조립품에 사용하기 위한 끝단부품의 경우 "AI"는 AI 형식, "AII"는 AII 형식의 호스와 함께 사용 되어야 한다.

다) 호스의 공칭내경

3) 끝단부품이 변형을 가하는 방식에 의해 호스에 체결되어 제작된 공기브레이크호스조립품은 브레이크호스조립품을 둘러싼 밴드(끝단부품에 의해 이탈이 방지될 경우에는 호스부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를 이용하여 최소 3mm 크기의 문자·숫자 또는 기호 등으로 브레이크호스조립품 제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제작자 식별표식을 할 것. 다만, 공기브레이크호스조립품의 1개 이상의 끝단부품에 최소 1.5mm의 크기로 브레이크호스조립품 제작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식별표식을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주) 자동차 제작 시 장착되는 브레이크호스의 경우에는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31] <개정 2013.3.23>

길이·너비 등에 대한 특례기준(제114조제1항 관련)

항 목	특례기준	대상차종
길 이	19미터 이내	가. 풀트레일러 연결자동차 나. 저상트레일러 연결자동차 다. 센터차축트레일러 연결자동차 라. 굴절버스
너 비	2.75미터 이내	가. 콘테이너운송용 풀카고트럭, 콘테이너운송용 풀카고트레일러 나. 저상트레일러 다. 보도용 자동차(TV중계차 등) 라. 환경측정용 자동차 마. 2층대형승합자동차
최대안전경사각도	30도	가. 콘크리트 운반전용의 자동차 나.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 이하인 화물 및 특수자동차 다. 삭제 <2010.3.29>
최소회전반경	15.5미터 이내	가. 보도용 자동차(TV중계차 등) 나. 특수구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의 제작특성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완충장치	설치 예외	가. 노면청소작업차 나. 특수구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의 제작특성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서리 및 안개 제거장치, 환기장치	설치 예외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

주) 길이 항목의 대상차종 중 풀트레일러 및 센터차축트레일러 연결자동차의 주행폭원은 차로중심선의 반경(Rc) 140미터를 적용한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값이 2.896미터보다 작은 값이어야 한다.

※ 계산식

$$B = \sqrt{\left(\sqrt{R_c^2-(a+U_f)^2}+\frac{b}{2}\right)^2+(a+U_f)^2}+\frac{b_2}{2}-\sqrt{R_c^2-(a+U_f)^2-a_2^2+a_s^2}$$

B : 자동차의 주행폭원
R_c : 차로중심선의 반경
a : 견인차의 축간거리
a_2 : 피견인차의 축간거리
a_s : 연결핀에서 견인차의 뒤축까지의 거리
U_f : 앞내민길이
b : 견인차의 폭
b_2 : 피견인차의 폭

[별표 32]

도로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의 표시

(제114조제3항관련)

(단위 : 밀리미터)



주 : 도색은 백색바탕에 흑색일 것

[별표 32의2] <신설 2008.1.14>

반사띠 및 특례적용 표시의 기준(제114조제10항 관련)

1. 반사띠

가. 반사성능(cd/lux·m²)

입사각	관측각(0.33도)		
	백색	황색	적색
5R	450	300	120
30R	200	130	60
40R	90	75	30
60R	16	10	-

나. 규격 및 형상

부착 형식	반사띠의 규격 및 형상 (반사띠 폭 : 50mm≤폭≤60mm)
형식 1	
형식 2	
형식 3	
형식 4	

다. 부착방법

1) 자동차의 형상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동차의 옆면에는 나목에서 정한 형식 1부터 형식 3 중 어느 하나, 뒷면에는 형식 1부터 형식 4 중 어느 하나의 반사띠를 연속하여 부착할 것

2) 반사띠의 부착범위는 대상 자동차의 길이 및 폭의 80퍼센트 이상으

로 할 것. 다만, 콘테이너운송용 풀카고트럭의 부착범위는 적재함의 길이 및 폭의 8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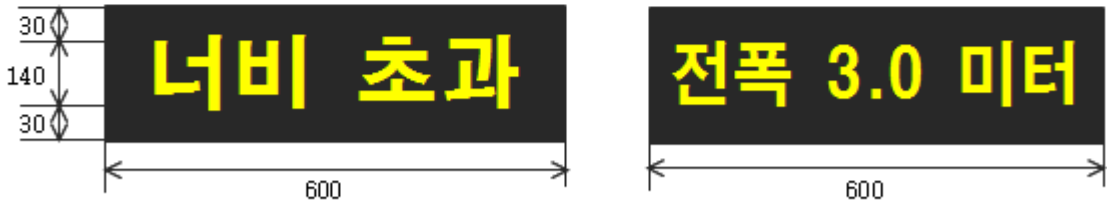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비연속적인 반사띠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반사띠간의 거리는 가장 짧은 반사띠 길이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반사띠의 폭은 50밀리미터 이상, 60밀리미터 이하로 하고, 지상에서 250밀리미터 이상, 2,100밀리미터 미만의 높이에 부착할 것

2. 특례적용의 표시

가. 표지의 형식

1) 너비 초과시(예시)



2) 길이 초과시(예시)



3) 너비 및 길이 초과시(예시)



나. 표시방법

1) 규격은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터로 하고, 문자는 가목의 예시를 참조하여 적절히 배치되도록 할 것

2) 바탕색은 검정색의 도료로, 문자는 황색의 반사지로 하며, 반사지의 반사성능은 황색 반사부의 반사띠와 같게 할 것

3) 자동차의 뒷면에 자동차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부착하되, 가목의 예시와 같이 좌측에는 "너비 초과" 우측에는 "전폭 3.0 미터" 등으로 표시할 것

4) 표시는 좌우가 동일한 높이로 할 것

[별표 33] <개정 2014.6.10>

제원의 허용차(제115조관련)

제원 / 종별	길이 (㎜)	너비 (㎜)	높이 (㎜)	윤거 (㎜)	축거 (㎜)	오우버행 (㎜)	객실 및 하대 (㎜)			차량중량(kg)
							길이	너비	높이	
경형 및 소형자동차	±40	±30	±50	±30	±30	±30	±30	±30	±30	±60
중형자동차 및 대형자동차	±50	±40	±60	±40	±30	±40	±50	±30	±30	중형자동차 : ±100 대형자동차 : ±3%

주

1. 제4조, 제6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49조, 제59조, 제60조 및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의 허용차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7의2 제11호의 순번 제3호에 따른 보조제동장치를 장착한 승합자동차의 구동축 축중의 경우에는 3% 이하의 범위에서 "+"의 허용차를 인정한다.
2. 자동차 등화장치의 부착위치 허용차는 제원중 길이·너비 및 높이의 허용차를 준용한다.
3.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제원 및 등화장치의 허용차는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허용차를 적용한다.

[별표 34] <신설 2010.3.29>

저속전기자동차 특례기준(제114조제11항 관련)

1. 제동장치는 별표 7의 제4호·제6호 및 제8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있다.

가.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기준(구동전동기 정지조건 포함)

제동초속도(㎞/h)	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
제 동 거 리(m)	0.1V+0.006V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	6.43 이상
측정 시 조작력(N)	500 이하
제동시 자동차 상태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3.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정지 시 차량중심선은 차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동 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 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 진동 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측정자동차상태	적차 및 경적차상태

주) 1) V: 제동초속도(㎞/h)

2) 평균최대감속도: 제동 시 감속의 크기가 최대로 일정하게 되어 안정되었을 때의 감속값을 말한다.

나. 유압계통 및 전달장치 고장 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

제동초속도(㎞/h)	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
제 동 거 리(m)	$0.1V+0.0158V^2$ 이하
평균최대 감속도(㎨)	2.44 이상
측정시 조작력(N)	500 이하
제동시 자동차상태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정지 시 차량중심선은 차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동 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 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 진동 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측정자동차상태	적차 및 경적차상태

주) 1) V: 제동초속도(㎞/h)

2) 평균최대감속도: 제동 시 감속의 크기가 최대로 일정하게 되어 안정되었을 때의 감속값을 말한다.

다. 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 및 회복제동능력 기준

구 분	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	주제동장치의 회복제동능력
제동 초속도 (km/h)	1차 및 2차: 당해자동차의 최고속도	
제 동 거 리 (m)(S)	·1차: $0.1V+\frac{Sc-0.1V}{0.6}$ 이하 ·2차: $0.1V+0.008V^2$이하	·1차: $0.1V+\frac{Sc-0.1V}{1.5} \le S \le 0.1V+\frac{Sc-0.1V}{0.7}$ 이하 ·2차: 1차와 동일함
평균최대감속도 (㎨)	·1차: 0.60dc 이상 ·2차: 4.82 이상	0.70dc 이상 ~ 1.50dc 미만
측정시 조작력 (N)	·1차: 제3호의 주제동장치의 적차상태 제동능력 중에서 가장 짧은 제동거리(m) 또는 가장 높은 평균최대감속도(㎨)로 기록되었을 때의 평균조작력(N) 이하로 작동시킬 것 ·2차: 500이하	·1차: 제3호의 주제동장치의 적차상태 제동능력 중에서 가장 짧은 제동거리(m)또는 가장 높은 평균최대감속도(㎨)로 기록되었을 때의 평균조작력(N) 이하로 작동시킬 것 ·2차: 1차와 동일함
제동시 자동차 상 태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정지 시 차량중심선은 차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동 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 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 진동 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측 정 자 동 차 상 태	적차상태	

주) 1) V: 제동초속도(km/h)
2) S: 제동거리 교정값(m)
3) Sc: 제3호의 주제동장치의 적차상태 제동능력 중에서 가장 짧은 제동거리 교정값(m)
4) dc: 제3호의 주제동장치의 적차상태 제동능력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최대 감속도(m/s^2)

2. 창닦이기장치 등은 제51조 및 제109조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있다.

가.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에는 시야확보를 위하여 최소한 자동식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나. 자동식창닦이기 기준

1) 최저작동주기는 매분 당 25회 이상일 것

2) 별표30의 제1호에서 정하는 "가"부분 지역의 90% 이상을 세척할 수 있을 것

3) 작동을 정지시킨 경우 자동적으로 최초의 위치로 복귀되는 구조일 것

4) 저온의 경우에도 정상 작동 할 것

다. 세정액분사장치 기준

1) 창닦이기를 최대속도로 10회 작동시키는 동안 별표30의 제1호에서 정하는 "가"부분 지역의 60% 이상을 세척할 수 있을 것

2) 세정액 분사노즐의 막힘에 의한 부하에도 각 연결부위 등이 정상 작동할 것

3) 저온 및 고온의 경우에도 정상 작동 할 것

3. 전조등은 제48조제3항 및 제106조의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할 수 있다.

가.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전구의 형식 및 전력기준에 있어서 별표5의5 및 별표5의10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제48조제3항에 적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나. 전조등의 광도 및 조도는 별표19, 별표19의7 및 별표19의8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제106조제1호에 적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4. 저속전기자동차의 뒤쪽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가. 표지형식



나. 표시방법

1) 표지는 가로 240밀리미터 이상, 세로 8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표지 내에는 가목의 형식과 같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속도제한표시와 글자를 적절히 배치하여 표시할 것

3) 바탕색은 노란색이나 녹색으로 하고, 글자는 바탕색이 노란색인 경우 검정색, 녹색인 경우 흰색으로 할 것

4) 최고속도제한표시의 직경은 65밀리미터 이상, "저속전기차"의 글자의 크기는 30밀리미터 이상, "이 차량의 최고속도는 60km/h입니다"의 글자의 크기는 1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표지는 해당 자동차가 주행 중 뒤쪽 자동차의 운전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적절한 높이의 위치(차실 내 운전자가 주행 중 후방시계

확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할 것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77호, 2015.6.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시행일 : 2015.12.23] 제1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6, 2013.8.6>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6. "책임공제(責任共濟)"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7.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나.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다.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포함한다)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8.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

나.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제30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지원하는 사업

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라.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제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

[시행일 : 2015.12.23] 제2조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시행일 : 2015.12.23] 제3조

제4조(「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시행일 : 2015.12.23] 제4조

제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5.12.23] 제5조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①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제5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는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 2015.12.23] 제5조의2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①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

만, 보험회사등은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인 경우와 자동차보유자가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보험회사등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3.23>

1.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치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면 「자동차관리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그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2.22>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영치 해제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시행일 : 2015.12.23] 제6조

제7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산출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9.2.6, 2013.3.23>

③ 삭제 <2009.2.6>

④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5.12.23] 제7조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시행일 : 2015.12.23] 제8조

제9조(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보험가입자등"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회사등에게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 : 2015.12.23] 제9조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자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 : 2015.12.23] 제10조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분담금 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의 보상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2.6>

[시행일 : 2015.12.23] 제11조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가입자등 또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2.6>

②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그 보험회사등에게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등은 30일 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6.22>

⑤ 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보험회사등이 보상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
3.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알린 지급 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의 경우
4.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일 : 2015.12.23] 제12조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험회사등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하 "전문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문심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제15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③ 삭제 <2015.6.22>

④ 제1항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청구, 심사, 이의제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2015.6.22>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 2015.12.23] 제12조의2

제13조(입원환자의 관리 등)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및 지급 한도를 통지한 보험회사등은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 : 2015.12.23] 제13조

제13조의2(교통사고환자의 퇴원·전원 지시) ①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환자에게 퇴원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와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를 통지한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그 사유와 일자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도록 지시한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로부터 진료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송부 등 진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 2015.12.23] 제13조의2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①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1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제12조의2에 따라 심사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은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2.2.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12.2.22>
④ 보험회사등은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2.2.22>
⑤ 보험회사등 또는 전문심사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진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2.22>

[시행일 : 2015.12.23] 제14조

제14조의2(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 및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의 범위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경우에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 2015.12.23] 제14조의2

제3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분쟁 조정

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등,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②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범위·청구절차 및 지급절차,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2.2.22, 2013.3.23>

[시행일 : 2015.12.23] 제15조

제16조(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회사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비요금(표준 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5.12.23] 제16조

제1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조정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조정에 대한 건의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되, 6명은 보험회사등의 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6명은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6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각 위촉한다.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의 자문위원 등 심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2.22, 2013.3.23>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5.12.23] 제17조

제18조(운영비용) 심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용은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시행일 : 2015.12.23] 제18조

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삭제 <2013.8.6>

③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은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또는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8.6>

④ 삭제 <2013.8.6>

⑤ 삭제 <2013.8.6>

⑥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8.6>

[시행일 : 2015.12.23] 제19조

제20조(심사·결정 절차 등) ① 심의회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심사 청구 사건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심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심사·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시행일 : 2015.12.23] 제20조

제21조(심사와 결정의 효력 등) ① 심의회는 제19조제1항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의회의 결정 내용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그 수락 의사를 표시한 날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당사자 간에 결정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사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의 결정 내용에 따라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5.6.22>

[시행일 : 2015.12.23] 제21조

제22조(심의회의 권한) 심의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회사등·의료기관·보험사업자단체 또는 의료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진단 또는 검안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 2015.12.23] 제22조

제23조(위법 사실의 통보 등) 심의회는 심사 청구 사건의 심사나 그 밖의 업무를 처리할 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5.12.23] 제23조

제23조의2(심의회 운영에 대한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운영 및 심사기준의 운용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 2015.12.23] 제23조의2

제4장 책임보험등 사업

제24조(계약의 체결 의무) ①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자동차보유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시행일 : 2015.12.23] 제24조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
2.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
3.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4.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5.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일 : 2015.12.23] 제25조

제26조(의무보험 계약의 승계) ①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 그 자동차의 양도일(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은 「상법」 제726조의4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그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의무보험의 보험료(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양도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양수인은 보험회사등에게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시행일 : 2015.12.23] 제26조

제27조(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보험사업ㆍ공제사업이나 그 밖의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5.12.23] 제27조

제28조(사전협의)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약관(책임보험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6.22]

[시행일 : 2015.12.23] 제28조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①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할 때 그 변경 내용이 보험가입자등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전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등에게 변경된 보험금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종전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계약된 종전의 보험금등을 변경된 보험금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
2. 그 밖에 보험금등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

[시행일 : 2015.12.23] 제29조

제5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개정 2013.8.6>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重症 後遺障礙人>)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2.2.22, 2013.3.23>

1. 경찰청장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④ 정부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의 청구에 따라 보상을 실시한다.<개정 2012.2.22>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기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2.22>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다.<개정 2012.2.22, 2013.3.23>

제30조의2(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또는 이와 관련한 시설 및 장비의 지원
2.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기기 및 장비 등의 개발·보급
3. 그 밖에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기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 2015.12.23] 제30조의2

제31조(후유장애인의 재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재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재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의료재활사업 및 그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직업재활사업(직업재활상담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활시설의 설치와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 및 재활사업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은 제37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재활시설의 용도로 건설되거나 조성되는 건축물, 토지, 그 밖의 시설물 등은 국가에 귀속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재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와 설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3.23>

[시행일 : 2015.12.23] 제31조

제32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요건을 갖춘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5.6.22>

1. 의료재활시설 및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사업: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고 재활 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한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2. 직업재활시설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나.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5.27,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로서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재활시설운영자"라 한다)는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고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5.27>

④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절차 및 그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5.12.23] 제32조

제33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인의 해산 등 사정의 변경으로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재활시설운영자가 지정될 때까지 그 기간 및 관리·운영조건을 정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에게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계속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재활시설운영자로 본다.<개정 2013.3.23>

1. 지정취소일부터 새로운 재활시설운영자를 정할 수 없는 경우
2. 계속하여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이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제2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한 경우에는 그 계속된 업무가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는 재활시설운영자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시행일 : 2015.12.23] 제33조

제34조(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① 재활시설의 설치 및 재활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재활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재활시설운영자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활시설과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5.12.23] 제34조

제35조(준용)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보상금 청구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로, "보험금등"은 "보상금"으로 본다. <개정 2009.2.6>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진료수가에 대한 심사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로 본다.

[시행일 : 2015.12.23] 제35조

제36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 ①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

는 보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정부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사유로 지원을 받으면 그 지원을 받는 범위에서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 : 2015.12.23] 제36조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야 할 자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등이 해당 납부 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징수하여 정부에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정부의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며, 그 금액과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3.8.6]

[시행일 : 2015.12.23] 제37조

제38조(분담금의 체납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기간에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분담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를 독촉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3.23>

[시행일 : 2015.12.23] 제38조

제39조(청구권 등의 대위) ① 정부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代位行使)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개정 2012.2.22>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9조의2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구상금 또는 미반환가불금 등의 채권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신설 2009.2.6>

1.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그 밖에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일 : 2015.12.23] 제39조

제39조의2(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결손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이하 "채권정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채권정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 2015.12.23] 제39조의2

제6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신설 2015.6.22>

제39조의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 2015.12.23] 제39조의3

제39조의4(업무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항의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2.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수립·추진 지원
3.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연구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 2015.12.23] 제39조의4

제39조의5(임원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원장 1명, 이사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원장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1항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둘 수 있다.

⑥ 이사회는 원장, 이사장, 이사로 구성하되, 그 수는 9명 이내로 한다.

⑦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 2015.12.23] 제39조의5

제39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아닌 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 2015.12.23] 제39조의6

제39조의7(재원)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검사 업무에 따른 소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검사 업무 이외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제1항에 따른 수입금
2. 제2항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④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 2015.12.23] 제39조의7

제39조의8(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 검사 및 질문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등으로 인한 검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 2015.12.23] 제39조의8

제39조의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 2015.12.23] 제39조의9

제39조의10(예산과 결산)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예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 2015.12.23] 제39조의10

제7장 보칙 <개정 2015.6.22>

제40조(압류 등의 금지)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시행일 : 2015.12.23] 제40조

제41조(시효) 제10조,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09.2.6>

[시행일 : 2015.12.23] 제41조

제42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등록ㆍ허가ㆍ검사ㆍ해제를 하거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2조, 제27조,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허가·검사의 신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또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영치(領置)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의무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2.22]

[시행일 : 2015.12.23] 제42조

제43조(검사·질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재활시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 또는 제4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행위에 한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3.8.6>

1. 이 법에 규정된 업무의 처리 상황에 관한 장부 등 서류의 검사
2.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는 행위
3. 관계인에 대한 질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처리 상황을 파악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나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재활시설운영자나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일 : 2015.12.23] 제43조

제43조의2(포상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자동차 또는 운전자를 목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신고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될 경우 1백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포상금은 같은 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됨으로써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 절약된 금액의 범위에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기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 2015.12.23] 제43조의2

제4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일 : 2015.12.23] 제44조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1.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
2.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를 보험회사등으로 보게 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위한 업무
3.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
5. 채권정리위원회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료의 조사、검증 등의 업무
6.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재활시설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 업무와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 관한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2.22,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및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3.8.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그가 지급할 보상금 또는 지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8.6>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09.2.6, 2013.8.6>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을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9.2.6, 2013.8.6>

⑨ 제8항에 따른 분담금의 지원 범위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9.2.6, 2013.8.6>

[시행일 : 2015.12.23] 제45조

제45조의2(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가입관리전산망에서 관리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정보제공 대상자, 제공한 정보의 내용, 정보를 요청한 자, 제공 목적을 기록한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 2015.12.23] 제45조의2

제45조의3(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과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 2015.12.23] 제45조의3

제8장 벌칙 <개정 2015.6.22>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누설로 피해를 받은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2.2.22, 2015.1.6>

1.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2.2.22, 2015.1.6>

1.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③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 2015.12.23] 제46조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5.12.23] 제47조

제48조(과태료) ① 삭제 <2013.8.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청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4. 제25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회사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5.27>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3의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의3.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보고요구·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제39조의6을 위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5.6.22>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부과·징수한다.<신설 2009.2.6, 2015.6.22>

[시행일 : 2015.12.23] 제48조

제49조 삭제 <2009.2.6>

[시행일 : 2015.12.23] 제49조

제9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개정 2015.6.22>

제50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46조제2항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한다)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뜻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
2.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51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 또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뜻한다.<개정 2012.2.2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법경찰관이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가입관리전산망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시행일 : 2015.12.23] 제50조

제51조(통고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자
2.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차종과 위반 정도에 따라 제46조제2항에 따른 벌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5.12.23] 제51조

제52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51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자는 그 납부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2.2.22>

[시행일 : 2015.12.23] 제52조

제53조(통고처분의 효과) 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2.22>

1.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제52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시행일 : 2015.12.23] 제53조

부칙 <제9065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9호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449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6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 중 자동차종합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제43조제1항제2호"를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9450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해자에게 지급한 가불금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보상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가불금에 대한 보상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회사등의 구상권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738호,2009.5.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69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관리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2>까지 생략

<6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제5호, 제12조의2제4항, 제15조제2항,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제6호, 제29조제1항 및 제4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28조,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의2제1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3조의2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0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2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21호,2013.8.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87호,2015.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77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호 정산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 간에 심의회의 결정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77호, 2015.6.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시행일 : 2015.12.23] 제1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6, 2013.8.6>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6. "책임공제(責任共濟)"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7.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나.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다.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포함한다)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8.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

나.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제30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지원하는 사업

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라.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제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

[시행일 : 2015.12.23] 제2조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시행일 : 2015.12.23] 제3조

제4조(「민법」의 적용)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시행일 : 2015.12.23] 제4조

제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5.12.23] 제5조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①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제5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는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 2015.12.23] 제5조의2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①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의무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

만, 보험회사등은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인 경우와 자동차보유자가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보험회사등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2.6>

②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3.23>

1.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치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면 「자동차관리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그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2.22>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영치 해제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시행일 : 2015.12.23] 제6조

제7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산출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9.2.6, 2013.3.23>

③ 삭제 <2009.2.6>

④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5.12.23] 제7조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시행일 : 2015.12.23] 제8조

제9조(의무보험의 가입증명서 발급 청구)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보험가입자등"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험회사등에게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 : 2015.12.23] 제9조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자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 : 2015.12.23] 제10조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분담금 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의 보상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9.2.6>

[시행일 : 2015.12.23] 제11조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가입자등 또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2.6>

②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그 보험회사등에게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등은 30일 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6.22>

⑤ 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보험회사등이 보상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
3.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알린 지급 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의 경우
4.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일 : 2015.12.23] 제12조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험회사등은 제12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하 "전문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문심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제15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③ 삭제 <2015.6.22>

④ 제1항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 경우 청구, 심사, 이의제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2015.6.22>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 2015.12.23] 제12조의2

제13조(입원환자의 관리 등)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및 지급 한도를 통지한 보험회사등은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 : 2015.12.23] 제13조

제13조의2(교통사고환자의 퇴원·전원 지시) ①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환자에게 퇴원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와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를 통지한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그 사유와 일자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도록 지시한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로부터 진료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송부 등 진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 2015.12.23] 제13조의2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①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1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② 제12조의2에 따라 심사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은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2.2.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12.2.22>
④ 보험회사등은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2.2.22>
⑤ 보험회사등 또는 전문심사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진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2.22>

[시행일 : 2015.12.23] 제14조

제14조의2(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 및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의 범위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경우에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 2015.12.23] 제14조의2

제3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분쟁 조정

제15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회사등,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②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범위·청구절차 및 지급절차,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2.2.22, 2013.3.23>

[시행일 : 2015.12.23] 제15조

제16조(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회사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비요금(표준 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5.12.23] 제16조

제1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조정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조정에 대한 건의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되, 6명은 보험회사등의 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6명은 의료사업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6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각 위촉한다.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의 자문위원 등 심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2.22, 2013.3.23>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5.12.23] 제17조

제18조(운영비용) 심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용은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시행일 : 2015.12.23] 제18조

제19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삭제 <2013.8.6>

③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은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또는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8.6>

④ 삭제 <2013.8.6>

⑤ 삭제 <2013.8.6>

⑥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3.8.6>

[시행일 : 2015.12.23] 제19조

제20조(심사·결정 절차 등) ① 심의회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으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심사 청구 사건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심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심사·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3.23>

[시행일 : 2015.12.23] 제20조

제21조(심사와 결정의 효력 등) ① 심의회는 제19조제1항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의회의 결정 내용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그 수락 의사를 표시한 날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당사자 간에 결정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사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의 결정 내용에 따라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5.6.22>

[시행일 : 2015.12.23] 제21조

제22조(심의회의 권한) 심의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회사등·의료기관·보험사업자단체 또는 의료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진단 또는 검안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시행일 : 2015.12.23] 제22조

제23조(위법 사실의 통보 등) 심의회는 심사 청구 사건의 심사나 그 밖의 업무를 처리할 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5.12.23] 제23조

제23조의2(심의회 운영에 대한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운영 및 심사기준의 운용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 2015.12.23] 제23조의2

제4장 책임보험등 사업

제24조(계약의 체결 의무) ①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자동차보유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시행일 : 2015.12.23] 제24조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
2.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
3.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4.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5.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일 : 2015.12.23] 제25조

제26조(의무보험 계약의 승계) ①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 그 자동차의 양도일(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은 「상법」 제726조의4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그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의무보험의 보험료(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승계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양도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양수인은 보험회사등에게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시행일 : 2015.12.23] 제26조

제27조(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보험사업ㆍ공제사업이나 그 밖의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5.12.23] 제27조

제28조(사전협의)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약관(책임보험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6.22]

[시행일 : 2015.12.23] 제28조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①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등의 보험금등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할 때 그 변경 내용이 보험가입자등에게 유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전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등에게 변경된 보험금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종전의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갱신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계약된 종전의 보험금등을 변경된 보험금등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항
2. 그 밖에 보험금등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이나 변경된 보험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시행일 : 2015.12.23] 제29조

제5장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개정 2013.8.6>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重症 後遺障礙人>)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2.2.22, 2013.3.23>

1. 경찰청장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④ 정부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의 청구에 따라 보상을 실시한다.<개정 2012.2.22>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기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2.22>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다.<개정 2012.2.22, 2013.3.23>

제30조의2(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또는 이와 관련한 시설 및 장비의 지원
2.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기기 및 장비 등의 개발·보급
3. 그 밖에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기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 2015.12.23] 제30조의2

제31조(후유장애인의 재활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재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재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의료재활사업 및 그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직업재활사업(직업재활상담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활시설의 설치와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 및 재활사업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은 제37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재활시설의 용도로 건설되거나 조성되는 건축물, 토지, 그 밖의 시설물 등은 국가에 귀속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재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와 설계 등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3.23>

[시행일 : 2015.12.23] 제31조

제32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요건을 갖춘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5.6.22>

1. 의료재활시설 및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사업: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고 재활 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한 자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2. 직업재활시설 및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나.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5.27,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로서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재활시설운영자"라 한다)는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고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5.27>

④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절차 및 그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5.12.23] 제32조

제33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인의 해산 등 사정의 변경으로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재활시설운영자가 지정될 때까지 그 기간 및 관리·운영조건을 정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에게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계속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재활시설운영자로 본다.<개정 2013.3.23>

1. 지정취소일부터 새로운 재활시설운영자를 정할 수 없는 경우
2. 계속하여 재활시설이나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이 필요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제2항에 따라 업무를 계속한 경우에는 그 계속된 업무가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는 재활시설운영자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시행일 : 2015.12.23] 제33조

제34조(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① 재활시설의 설치 및 재활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재활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재활시설운영자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활시설과 재활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5.12.23] 제34조

제35조(준용)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보상금 청구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로, "보험금등"은 "보상금"으로 본다. <개정 2009.2.6>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진료수가에 대한 심사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로 본다.

[시행일 : 2015.12.23] 제35조

제36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조정) ①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

는 보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정부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사유로 지원을 받으면 그 지원을 받는 범위에서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 : 2015.12.23] 제36조

제37조(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야 할 자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등이 해당 납부 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징수하여 정부에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정부의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며, 그 금액과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3.8.6]

[시행일 : 2015.12.23] 제37조

제38조(분담금의 체납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기간에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분담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를 독촉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3.23>

[시행일 : 2015.12.23] 제38조

제39조(청구권 등의 대위) ① 정부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代位行使)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개정 2012.2.22>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9조의2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구상금 또는 미반환가불금 등의 채권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신설 2009.2.6>

1.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그 밖에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일 : 2015.12.23] 제39조

제39조의2(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결손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이하 "채권정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채권정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 2015.12.23] 제39조의2

제6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신설 2015.6.22>

제39조의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 2015.12.23] 제39조의3

제39조의4(업무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항의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2.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수립·추진 지원
3.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연구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 2015.12.23] 제39조의4

제39조의5(임원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원장 1명, 이사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원장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1항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둘 수 있다.

⑥ 이사회는 원장, 이사장, 이사로 구성하되, 그 수는 9명 이내로 한다.

⑦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 2015.12.23] 제39조의5

제39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아닌 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 2015.12.23] 제39조의6

제39조의7(재원)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검사 업무에 따른 소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검사 업무 이외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제1항에 따른 수입금
2. 제2항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④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 2015.12.23] 제39조의7

제39조의8(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 검사 및 질문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등으로 인한 검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 2015.12.23] 제39조의8

제39조의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 2015.12.23] 제39조의9

제39조의10(예산과 결산)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예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 2015.12.23] 제39조의10

제7장 보칙 <개정 2015.6.22>

제40조(압류 등의 금지)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시행일 : 2015.12.23] 제40조

제41조(시효) 제10조,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09.2.6>

[시행일 : 2015.12.23] 제41조

제42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등록ㆍ허가ㆍ검사ㆍ해제를 하거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2조, 제27조,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허가·검사의 신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또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영치(領置)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해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의무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2.22]

[시행일 : 2015.12.23] 제42조

제43조(검사·질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재활시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 또는 제4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행위에 한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3.8.6>

1. 이 법에 규정된 업무의 처리 상황에 관한 장부 등 서류의 검사
2.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는 행위
3. 관계인에 대한 질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처리 상황을 파악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나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재활시설운영자나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일 : 2015.12.23] 제43조

제43조의2(포상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자동차 또는 운전자를 목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신고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될 경우 1백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포상금은 같은 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됨으로써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 절약된 금액의 범위에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기준、금액、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 2015.12.23] 제43조의2

제4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일 : 2015.12.23] 제44조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1.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
2.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를 보험회사등으로 보게 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하는 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위한 업무
3.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
5. 채권정리위원회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료의 조사、검증 등의 업무
6.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재활시설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 업무와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 관한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2.22,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및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3.8.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그가 지급할 보상금 또는 지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8.6>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09.2.6, 2013.8.6>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을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9.2.6, 2013.8.6>

⑨ 제8항에 따른 분담금의 지원 범위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9.2.6, 2013.8.6>

[시행일 : 2015.12.23] 제45조

제45조의2(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가입관리전산망에서 관리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정보제공 대상자, 제공한 정보의 내용, 정보를 요청한 자, 제공 목적을 기록한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 2015.12.23] 제45조의2

제45조의3(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과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일 : 2015.12.23] 제45조의3

제8장 벌칙 <개정 2015.6.22>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누설로 피해를 받은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2.2.22, 2015.1.6>

1.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2.2.22, 2015.1.6>

1.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③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일 : 2015.12.23] 제46조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5.12.23] 제47조

제48조(과태료) ① 삭제 <2013.8.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청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4. 제25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회사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5.27>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3의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의3.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보고요구·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제39조의6을 위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5.6.22>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부과·징수한다.<신설 2009.2.6, 2015.6.22>

[시행일 : 2015.12.23] 제48조

제49조 삭제 <2009.2.6>

[시행일 : 2015.12.23] 제49조

제9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개정 2015.6.22>

제50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46조제2항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한다)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뜻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
2. 죄를 범한 동기·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51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 또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뜻한다.<개정 2012.2.22>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법경찰관이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가입관리전산망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시행일 : 2015.12.23] 제50조

제51조(통고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자
2.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차종과 위반 정도에 따라 제46조제2항에 따른 벌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5.12.23] 제51조

제52조(범칙금의 납부) ① 제51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불복하는 자는 그 납부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2.2.22>

[시행일 : 2015.12.23] 제52조

제53조(통고처분의 효과) 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2.22>

1.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제52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시행일 : 2015.12.23] 제53조

부칙 <제9065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9호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449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6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 중 자동차종합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제43조제1항제2호"를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9450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해자에게 지급한 가불금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보상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가불금에 대한 보상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험회사등의 구상권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738호,2009.5.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69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관리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2>까지 생략

<6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제5호, 제12조의2제4항, 제15조제2항, 제24조제2항 전단, 제25조제6호, 제29조제1항 및 제4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20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제28조,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의2제1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3조의2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0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2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21호,2013.8.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87호,2015.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77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호 정산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 간에 심의회의 결정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4.2.7] [대통령령 제25149호, 2014.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5>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개정 2014.2.5>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개정 2012.8.22>

1.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③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고 1건당 1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

제4조(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말한다.

제5조(보험 등에의 가입의무가 없는 자동차)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2.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4.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3.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한다)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8.22]

제6조(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3.3.23>

1.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관리 및 개선
2. 의무보험 관련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보급 및 운영
3.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을 위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4. 그 밖에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개정 2009.12.31, 2012.8.22, 2013.3.23, 2014.12.30>

1.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정보를 말한다)

1의2.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1의3.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정보

2.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현황 및 변동 내용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명령의 현황

4.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6항 및 제37조제3항, 「지방세법」 제131조 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또는 보관 관련 정보

5.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의 현황 및 보상금 지급 현황

6.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의 수납·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분담금의 수납·관리·운용 내용

7.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내용

8.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처분의 현황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정보

제7조(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5.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6. 보험가입자(공제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

7. 청구금액과 그 산출 기초. 다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산출 기초를 적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항제7호에 따른 산출 기초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

③ 제1항에 따라 보험금등과 가불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하는 자는 그 지급청구서를 각각 제출하되, 그 중 하나의 청구서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등은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을 적절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제1호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보험회사등이 지정하는 자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회사등이 부담한다.

제8조(보험금등의 청구에 대한 안내 등) ① 보험회사등은 피해자에게 법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의 청구와 법 제11조에 따른 가불금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등은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삭제 <2014.12.30>

제10조(가불금액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1. 사망의 경우: 1억원
2. 부상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
3.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

②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보험회사등이 「민사집행법」 제24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집행권원(執行權原)을 가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하 "책임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초로 강제집행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아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2.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재산명시신청 각하결정(보험회사등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지 아니하여 받은 각하결정은 제외한다)이 있은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3.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재산조회를 한 결과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회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이 같은 법 제77조 및 「재산조회규칙」 제13조에 따라 재산조회 결과를 출력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③ 정부는 보험회사등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보상을 위한 해당 연도의 분담금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분담금 재원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등의 통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하는 통지는 서류, 팩스, 전산파일, 그 밖의 문서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통지 및 철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2.5>

[본조신설 2012.8.22]

제12조(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 ① 의료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8.22, 2014.2.5>

1.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
2. 외출 또는 외박의 사유
3. 의료기관이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한 기간, 외출·외박 및 귀원(歸院) 일시

②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에는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자나 그 보호자,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한 의료인(「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귀원을 확인한 의료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인이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다.

③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고,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보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의 표지에 필름촬영 책임자가 촬영 일시 및 그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교통사고환자 전원지시)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결과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아 생활근거지에 소재한 의료기관 또는 제2항에 따른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및 병원등을 제외한 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 「의료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 및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3. 상급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본조신설 2009.12.31]

제12조의3(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 ①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경찰관서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은 국가경찰공무원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으로 한다.

1. 교통사고 발생 일시, 장소 및 원인
2. 교통사고 유형 및 피해상황
3.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여부

② 보험회사등이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열람예정일 7일 전까지 열람청구서에 열람사유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의 청구를 받은 경찰관서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방법, 열람장소 및 열람범위 등을 정하여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2]

제13조(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에 걸리는 표준작업시간
2. 시간당 공임(工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를 할 때에 정비요금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조사·연구의 세부 범위, 조사·연구자의 선정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14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동차보험·의료 또는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2.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업무비용에 대한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의 분담금액, 분담방법,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삭제 <2014.2.5>

제16조(진료수가의 지급에 관한 이자율) ① 보험회사등이 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급기한을 넘겨 청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20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2.5>

② 삭제 <2014.2.5>

[제목개정 2014.2.5]

제16조의2(심의회에 대한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 결과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청구하려는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이의제기 결과에 대한 불복 사유 등을 적은 심사청구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청구에 대한 의견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17조(보험계약 체결의 거부)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이 정지되거나 금지된 자동차에 대한 청약이 있는 경우
3. 청약자가 청약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이 명백한 경우

제18조(구상의 사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등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제19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피해보상금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금액(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책임보험의 약관에서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보상의 절차 등) ①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과 제4항에서 같다)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5항과 제6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해자 및 가해자(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성명 및 주소
4.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5.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청구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장은 그 사고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피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및 가불금을 함께 청구할 때에는 그 지급청구서를 각각 제출하되, 그 중 하나의 청구서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한 후 보상금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⑥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청구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개정 2013.3.23>

⑦ 보험회사등이 법 제11조제5항 및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상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 또는 특수법인을 말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청구인의 명칭 및 주소
2.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고 발생의 일시·장소 및 개요
4.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
5.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6. 청구요건(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7. 청구금액 및 그 산출 기초

⑧ 제7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같은 항 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보상의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21조(지원대상자)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한다. 다만, 지원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의 순서로 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22조(지원의 기준 및 금액)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2.8.22>

1.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요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2. 유자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생활자금의 대출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다. 자립지원을 위하여 유자녀의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가 유자녀의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원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
3. 피부양가족: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을 위한 재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3.23>

제22조의2(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정보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2. 피해원인, 피해현황 및 피해정도에 관한 사항
3. 가해차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8.22]

제23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 및 법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3.3.23>

1. 제21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의 세부 기준
2.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생활자금의 대출 및 그 상환, 장학금의 지급 또는 자립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제2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금액
4. 제27조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6. 재원의 관리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7. 지원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23조의2(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위한 연구 및 개발
2. 자동차사고 피해예방과 피해보상에 관한 통계 및 자료의 수집·관리
3. 자동차사고 피해예방과 관련한 시범사업 및 선도사업의 시행·지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재원의 관리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2.5]

제24조(재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의료재활사업 관계자에 대한 교육
2. 의료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②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직업재활사업 관계자에 대한 교육
2. 직업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주거편의·상담·훈련 등 서비스의 소개

③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분담금 중 1천분의 66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3.3.23>

제25조(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① 삭제 <2009.9.3>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자동차사고후유장애인의 재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26조(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재활시설운영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 2010.5.4, 2011.1.24, 2013.3.23>

1. 정관
2.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등 계획서(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방안을 포함한다)
3.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내부 규정 1부
4. 의료재활시설운영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나.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른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
 다. 최근 3년간 진료과목별 진료실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활시설운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27조(재활시설운영자에 대한 감독 등) ① 재활시설운영자는 다음 연도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계획 및 예산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재활시설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현황(입소자의 현황을 포함한다)
2.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현황
3.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수입 및 지출현황
4.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잔액증명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운영자의 전 분기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사업실적 및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다음 분기의 재활시설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위원장은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3.23>

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후유장애인 재활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2.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소속 직원 중에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 1명
3.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8명 이내
 가. 경제·경영·법률·의료·교통·건축·장애인복지 또는 재활관련 분야의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교통·의료·건축 또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교통·의료·건축·장애인복지 분야의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마. 언론인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자
 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사. 그 밖에 경제·경영·법률·의료·교통·건축·장애인복지 또는 재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3.3.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8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7.4>

제2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4]

제29조(보상책임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같은 법 제42조제2호에 따른 장애급여만 해당한다)
2. 「군인연금법」(같은 법 제6조제13호·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및 공무상요양비만 해당한다)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 따른 단기급여와 같은 법 제42조제2호에 따른 장애급여만 해당한다)
4. 「전투경찰대설치법」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수당,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 및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만 해당한다)

6. 「근로기준법」
7. 「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분담금의 납부자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란 제5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의 보유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보유자와 자동차손해배상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보유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분담금액)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 및 제35조의2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책임보험료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이 남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담금을 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32조(분담금의 납부 등) ① 보험회사등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징수 명세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다른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손해배상 보장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3.3.23>

1. 분담금의 징수·관리 및 회계방법
2. 보상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사항
4. 보상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09.12.31>

⑤ 삭제 <2009.12.31>

⑥ 삭제 <2009.12.31>

⑦ 삭제 <2009.12.31>

제33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위한 협조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자의 검거 여부 및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정보 또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열람、제출 또는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3.23, 2014.12.30>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3조의2(채권의 결손처분) ①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구상금 또는 미반환가불금 등(이하 "구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상금등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이하 "채권정리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한 경우

② 정부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중지하거나 구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 경우 연도별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사고내용、지급금액, 채권정리위원회의 의결사유、의결일자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제33조의3(채권정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채권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채권정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지명받은 사람과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3.23>

1.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2.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이하 "분담금관리자"라 한다) 소속 임직원 중에서 분담금관리자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 1명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에서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자동차보험(이하 "자동차보험"이라 한다)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자동차보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 된 사람으로서 그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신체상·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09.12.31]

제33조의4(채권정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채권정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채권정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 또는 그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채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④ 채권정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⑤ 채권정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지명위원과 위촉위원이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정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제33조의5(채권정리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채권정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채권정리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3조의3제5항·제6항 및 제33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위원장"으로, "채권정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09.12.31]

제33조의6(채권정리위원회의 사무처리) ① 채권정리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12.31]

제33조의7(결손처분에 관한 심의 요청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채권정리위원회에 구상금등의 결손처분에 대한 심의 요청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의 보상업무 및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보장사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보상업무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이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라 한다)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사업자 및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12.31]

제33조의8(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란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를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는 신고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3.3.23>

1.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의 인적사항
2. 신고 또는 고발의 내용
3. 피해자의 인적사항
4. 피해자의 피해정도
5. 그 밖에 검거된 운전자의 인적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3.23>

1.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같은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피해자가 사망한 신고 또는 고발의 경우: 100만원

2. 피해자가 부상한 신고 또는 고발의 경우: 50만원부터 8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부상의 정도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3.23>

⑥ 제5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8.22]

제34조(자료 제출의 요청)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법 제6조제2항·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하는 업무의 처리 현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경유(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법 제12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업무 및 조정 업무 등의 처리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2.5>

제34조의2(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 등의 권한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질문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9.3]

제35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을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31, 2012.8.22, 2013.3.23>

1. 최근 3년간 재산상황 및 수입과 지출의 전망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별로 설치된 한 곳 이상의 상설 보상조직 및 그에 필요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하였으면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 작성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개정 2013.3.23>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애인, 유자녀, 피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제6조제2항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운영지침 작성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산출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개정 2009.12.31,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보험 관련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또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신설 2014.2.5>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3.3.23, 2014.2.5>

1. 업무의 처리상황
2. 분담금 또는 제3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상황
3. 제3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담금을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료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연도 업무계획 및 소요 경비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업무계획 및 소요 경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3.23, 2014.2.5>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업무실적 및 경비 지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014.2.5>

제35조의2(분담금의 지원범위 및 대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받은 분담금 중 1천분의 2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매년 12월 말까지 분담금관리자 및 보장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받은 분담금 중 그 분담금의 1천분의 1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매년 12월 말까지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정리위원회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검증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2.8.22,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받은 분담금 중 그 분담금의 1천분의 1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매년 12월 말까지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2.8.22,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받은 분담금 중 1천분의 264에서 1천분의 414까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그 분담금을 납부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8.22,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받은 분담금 중 제24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그 분담금을 납부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 및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8.22,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받은 분담금 중 그 분담금의 1천분의 2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매년 12월 말까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8.22, 2013.3.23>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받은 분담금 중 1천분의 2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매년 12월 말까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법 제30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8.22, 2013.3.23>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받은 분담금 중 1천분의 40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14.2.5>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받은 분담금의 감소로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 외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년도까지의 분담금 중 사용되지 아니하고 누적된 금액의 일부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8.22, 2013.3.23, 2014.2.5>

⑩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2, 2013.3.23, 2014.2.5>

1. 법 제7조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업무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사업에 관한 업무
4. 법 제30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에 관한 업무
5.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에 관한 업무
6. 법 제37조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관리·운용 및 정산에 관한 업무
7.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정리위원회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료의 조사·검증 등의 업무
8. 법 제43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09.12.31]

제35조의3(정보의 제공 내용 및 범위)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보장사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책임보험의 시기·종기 등 보장사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다만, 보장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2. 분담금관리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가입자의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책임보험의 시기·종기 등 분담금관리자가 분담금의 수납·관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본조신설 2009.12.31]

제35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11조제5항, 제30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미반환가불금의 보상, 반환청구권 대위행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에 따른 중증 후유장해인의 유자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유장애인의 재활 지원에 관한 사무

②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30조제1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및 분담금 징수·운용·관리,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행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정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질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4.12.30>

[본조신설 2012.8.22]

제35조의5(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책임보험금 등: 2014년 1월 1일
2. 제6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 등: 2014년 1월 1일
3. 제10조에 따른 가불금액 등: 2014년 1월 1일
4. 제12조에 따른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 2014년 1월 1일
5. 제25조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자의 요건: 2014년 1월 1일
6.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납부 등: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1.4.4]

제37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 6과 같다.

② 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38조(범칙자의 범위) ①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서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란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제38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현황 및 변동 내용에 관한 정보
2. 법 제8조 본문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본조신설 2012.8.22]

제39조(통고처분의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때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 범칙금액, 위반 내용, 적용 법규, 납부 장소, 납부 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적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8.2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부칙 <제21036호,2008.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3 비고란 제4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4. 부양의무자가 「행형법」 또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 중인 경우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또는 제14조(제2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②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6호의 관련근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③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21714호,2009.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63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별표 3의 제3호, 별표 4의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임명된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2> 까지 생략

<13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635호,201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4호나목 중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른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으로 한다.

부칙 <제22829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065호,2012.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보험금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이 영 시행 후 사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유자녀 등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의 개정규정(비고는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26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11조의2의 개정규정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 8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본다.

제8조(분담금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5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분의 분담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9호, 제13조제2항·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21조제1항 본문, 제22조제2항, 제22조의2제4호, 제2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

3항, 제28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제33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4제4항, 제33조의6제2항, 제33조의7 전단 및 후단, 제33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8항까지,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3제2호,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3 비고 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제31조제1항 및 제39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33조의3제2항제1호 및 제33조의6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72>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149호,201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의 지연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것으로서 이 영 시행 후에 보험회사등이 청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940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하려는 자 중 2016년 4월 1일 이후까지 유효한 보험 등에 가입하려는 자는

2016년 4월 1일부터 해당 보험 등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별표 1] <개정 2014.2.5>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해내용
1급	2천만원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텐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추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14. 화상·좌창·피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천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추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천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9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에 적용한다)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관술 또는 원거리 피관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9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5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 ~ 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500만원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24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240만원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160만원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60만원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80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80만원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80만원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 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내용
공통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관술, 유경 피관술, 원거리 피관술, 국소 피관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두부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상·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

		나. 4급 이하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 ~ 12점, 경도는 13 ~ 15점을 말한다.
		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
		사.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으로 본다.
		아. 반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
		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
흉·복부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척추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상·하지	공통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아. 관절 이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
		차.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염좌(12급)로 본다.
		카.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파.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너.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상지	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다. "근, 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라. 사지골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마.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바.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사.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아.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자.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
하지	가.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나. 천골 골절, 미골 골절은 골반골 골절로 본다.
	다.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
	마.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
	바.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
	사.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자.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차.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하거나 완전 파열에 준하는 파열에 적용한다.
	카.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1급	1억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9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8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7천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6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5천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4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3천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2천25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1천880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1천5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2급	1천25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

		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1천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630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痺)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별표 3] <개정 2013.3.23>

유자녀 등의 범위(제21조제2항 관련)

구분	범위
1. 중증 후유장애인	별표 2에 따른 1급 이상 4급 이하의 장애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인
2. 유자녀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경우에는 20세 이하인 자를 포함한다)
3. 피부양가족	피부양가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나.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비고

피부양가족의 범위란 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양의무자의 생활형편이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4. 부양의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 중인 경우
5.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를 한 경우
6.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별표 4] <개정 2012.8.22>

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금액(제22조제2항 관련)

지원 대상	지원 구분	기준금액(만원)
1. 중증 후유장애인	가. 재활보조금 지급	월 20
	나. 장학금 지급	분기 30
2. 유자녀	가.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	월 15
	나. 장학금 지급	분기 30
	다. 자립지원금 지급	월 6
3.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급	월 20

비고: 유자녀에 대한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은 유자녀가 30세가 되는 날부터 20년 이내에 유자녀의 선택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로 상환하도록 하되, 대출 및 상환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별표 5] <개정 2011.4.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나.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는 과태료 부과 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3항제1호	
1) 이륜자동차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6천원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6천원에 11일째부

경우		터 계산하여 1일마다 1천200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20만원을 넘지 못한다.
2) 비사업용 자동차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법 제48조제3항 제1호	1만원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1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4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60만원을 넘지 못한다.
3) 사업용 자동차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법 제48조제3항 제1호	3만원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8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 넘지 못한다.
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이륜자동차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법 제48조제3항 제1호	3천원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3천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매 1일당 6백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

		의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10만원을 넘지 못한다.
2) 비사업용 자동차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법 제48조제3항제1호	5천원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5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넘지 못한다.
3) 사업용 자동차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법 제48조제3항제1호	5천원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5천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30만원을 넘지 못한다.
다.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법 제48조제3항제1호	 3만원 3만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매 1일당 8천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100만원을 넘지

		못한다
라.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3항제2호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또는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각각 50만원
마.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3항제2호	30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자동차 1대당 3천원
바. 보험회사등이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1호	2천만원 한도에서 지급을 거부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청구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2호	2천만원 한도에서 청구 건별로 청구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아.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관리한 경우	법 제48조제3항제3호	200만원
자.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청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3항제3호의2	200만원
차. 보험회사등이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급 청구액을 삭감한 경우	법 제48조제1항	5천만원 한도에서 청구 건별로 삭감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카. 보험회사등이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법 제48조제2항제3호	2천만원 한도에서 거부한 계약의 건

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별로 해당 계약의 보험료(공제의 경우에는 공제분담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타. 보험회사등이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4호	2천만원 한도에서 해제 또는 해지한 계약의 건별로 해당 계약의 보험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보고요구·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8조제3항제3호의3	200만원		
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3항제4호	1회	2회	3회 이상
		90만원	120만원	150만원

[별표 6]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37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범칙행위	해당 법조문	범칙금액
1.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법 제50조 및 법 제51조	승합자동차 200 화물자동차 100 특수자동차 100 건설기계 100 승용자동차 100
2.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승합자동차 50 화물자동차 50 특수자동차 50 건설기계 50 승용자동차 40
3.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5.4.9] [국토교통부령 제00176호, 2015.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의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이하 "보험등 가입 의무"라 한다)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의2 각 호의 사유 및 그 운행중지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등록증 사본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의2의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사유에 해당할 것
2. 운행중지기간이 적절할 것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관할 때에는 자동차보유자의 성명·주소, 자동차의 종류·등록번호 및 보관일자·보관기관 등을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승인을 받은 자동차보유자가 그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승인을 취소하고, 자동차보유자에게 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9.4]

제2조(의무보험 종료 사실의 통지)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험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9.4>

1.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사실
3.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제3조(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등이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려야 하는 시기는 별표와 같다.

②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되, 가입관리전산망이 작동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9.4>

1. 자동차등록번호
2.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명하는데 필요한 항목

제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주소, 자동차의 종류·등록번호 및 영치 일시 등이 적힌 별지 제3호서식의 영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보유자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즉시 해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자동차를 등록한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5조(보험금등 산출 기초의 증명서류) 영 제7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치료비의 명세별로 단위, 단가, 수량 및 금액을 명시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한 치료비 청구명세서 및 치료비추정서를 말한다. 이 경우 치료비추정서에는 주치의의 치료에 관한 의견이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2.9.4, 2013.3.23>

제6조(가불금의 지급기한) 법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① 보험회사등이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해당 보험회사등에 청구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2.9.4]

제6조의3(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지급)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6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6조의2에 따라 청구받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이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6조의2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그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9.4]

제6조의4(이의제기 등) 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2.7>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개정 2014.2.7>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그 결과에 따라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산하여야 한다.<신설 2014.2.7>

[본조신설 2012.9.4]

[제목개정 2014.2.7]

제6조의5(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심사, 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9.4]

제6조의6(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관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외출·외박 기록표에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4.2.7]

제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5조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산정·지급하는 진료의 기준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산정방법
3. 삭제 <2014.2.7>
4.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방법
5.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산정·지급하는 「의료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추가비용에 관한 사항

제8조(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동차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과거 2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른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의 조치 의무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법 제5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제9조(의무보험 계약의 해제 가능 사유) 법 제25조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 신고를 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관한 계약에서 「상법」 제650조제1항·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구상금액) 법 제29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8>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 사고 1건당 300만원
2. 재물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의 경우 : 사고 1건당 100만원

제11조(분담금액) 영 제3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책임보험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08.11.13, 2013.3.23>

제12조(의무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 관할 관청(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가

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의무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9.4>

1. 해당 계약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파일이 생성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12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에 따른 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2014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구상금액: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13조(범칙자 적발 보고서의 작성)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또는 사법경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칙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범칙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

제14조(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를 한 경우에는 별책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9.4>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범칙금의 납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받은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9.4>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확인통지서를 받았으면 별책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에 징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9.4>

부칙 <제58호,2008.9.29>

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2008.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거나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기간이 종료되어 갱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6호,2012.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1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5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4>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1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원환자 외출 또는 외박의 기록·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원한 환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의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 규칙 시행 후에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의제기를 받아 이 규칙 시행 후에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리는 경우에는 제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6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구상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기간 또는 공제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구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통지 시기
1.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계약 체결 사실을 보험회사등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2일 이내. 다만,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무보험 계약의 해지 사실	계약 해지 사실을 보험회사등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2일 이내. 다만, 보험계약의 효력소멸일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무보험 계약의 미체결 사실	
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의무보험 계약이 끝난 경우	같은 달 20일까지
나.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의무보험 계약이 끝난 경우	같은 달 말일까지
다.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의무보험 계약이 끝난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2.9.4>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동차	소유자명	등록번호
	차 명	주행거리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기간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사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보험등 가입 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사유 및 운행중지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2.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의사항

1.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기간 중에는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2. 해외체류 등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등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사실관계 확인 또는 검토	→	기안 및 결재	→	결과 알림
신청인		시 · 도지사		시 · 도지사		시 · 도지사		

210mm×297mm[백상지 80g/㎡]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2.9.4>

제 호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자동차	소유자명		등록번호	
	차 명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일자	년 월 일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기간 (보험등 가입 의무 면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지사 직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9.4>

No.

영 치 증

성 명:

주 소: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 등록번호:

1. 위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합니다)을 자동차 의무보험 담당 공무원이 영치하였습니다.

2.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등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 영치증을 ○○시(군·구) ○○과(팀)에 제시하면 즉시 영치를 해제합니다.

· 영치 일시: 년 월 일 시 분

· 단속 공무원

소 속: ○○시(군·구) ○○과(팀) 성 명: (인)

(전화번호:)

○ ○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4.2.7>

외출·외박 기록표

(20 년 월)

순번	환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서명	외출·외박 사유	허락 기간	허락한 의료인 등의 서명	외출·외박 일시	귀원 일시	귀원을 확인한 의료인 등의 서명	비고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 ~ 월 일 시 분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9.4>

<table>
<tr><td colspan="2" rowspan="2">범칙자 적발 보고서</td><td>○ ○</td><td>○ 장</td><td>○ 장</td></tr>
<tr><td></td><td></td><td></td></tr>
<tr><td colspan="5">번 호 : 20-
수 신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경찰서장
제 목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행위 보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범칙자를 아래와 같이 적발하여 보고합니다.</td></tr>
<tr><td rowspan="3">범칙자</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등록번호</td><td></td><td>전 화 번 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범 칙 행 위</td><td>일 시/장 소</td><td colspan="3"></td></tr>
<tr><td>위 반 내 용
(붙임: 증명자료)</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시 · 군 · 구청 또는 경찰서
(특별)사법경찰관(리)(성명) (서명 또는 인)</td></tr>
</table>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책]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

①연월일	②범칙자		③통고서 번호	④범칙 금액	⑤납부 기한	⑥납부 일자	⑦검찰청 송치 일자
	성명	주소					

297㎜×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2.2] [환경부령 제00594호, 2015.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령 중 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령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규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 중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등

제3조(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항목이 중복되는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는 한번만 실시한다.

제4조(종합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는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증명서를 법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45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종합검사의 실시) ① 제4조에 따라 종합검사의 신청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종합검사를 할 때에는 제14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인력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를 갖춘 곳(이하 "종합검사시설"이라 한다)에서 제3조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동차가 종합검사대행자의 종합검사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종합검사시설이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합검사대행자는 자동차의 출장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를 할 때 제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판정을 받은 사항이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제3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적합 판정을 한 후 부적합한 사항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에 기록하고, 이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한다.

⑤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기준 적합 여부, 검사일 및 검사기관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를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종합검사 검사장면의 영상(映像) 관리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산장비"는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본다.

⑦ 그 밖에 검사 결과의 처리 등 종합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제6조(자동차기능 종합진단 등) ①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를 할 때 검사신청인에게 종합검사 결과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항목과 중요 부품에 대하여 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에 갈음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을 하려면 종합검사시설 중 다음 각 호의 기계·기구가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실시간으로 통신이 가능하고 그 측정 결과 등이 실시간으로 자동 입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이드슬립 측정기
2. 제동 시험기
3. 속도계 시험기
4. 전조등 시험기

5. 전자장치 진단기
6. 차대동력계(車臺動力計) 등 배출가스 검사장비
7. 검사장면 촬영용 카메라

제7조(재검사) ①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종합검사 실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과 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또는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를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종합검사기간 만료 후 10일까지
2. 제9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3조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재검사를 하고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를 받은 날에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검사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에 대해서는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종합검사의 대상과 검사 유효기간)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이하 "검사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과 종합검사기간 등) ① 검사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 신규등록일부터 계산
2. 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직전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3. 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4.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제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② 자동차 소유자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종합검사기간"이라 한다)은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제10조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③ 소유권 변동 또는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본거지 변경 등의 사유로 종합검사의 대상이 된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간 중에 있거나 정기검사의 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62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시·도지사는 종합검사의 대상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자동차, 유예기간 및 대상 지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에서 종합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또는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해당 서류
 가.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나.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다.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
 라. 행정처분서
 마.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이장을 포함한다)이 확인한 별지 제4호서식의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바.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3조의 폐차인수증명서(제1항제3호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한 결과 그 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 시·도지사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1.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2. 종합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그 신청 방법
3.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 법규

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주소, 자동차의 종류·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영치증에 기록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2조에 따른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판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면 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장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준 등

제14조(종합검사 시설 등의 기준)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종합검사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 등) 종합검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5.2.2>

1. 종합검사의 기준·방법 연구 및 자동차기능 종합진단 기술 개발 등
2. 종합검사 기술인력의 교육과 자격 관리
3. 종합검사 결과의 관리·분석

4.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및 운영
5. 종합검사 관련 정부 업무 지원
5의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6. 종합검사 출장검사장 운영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자동차정비업 등록증 사본
2. 제14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 규정(기술인력과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검사시설·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5. 삭제 <2015.2.2>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하고, 별표 2에 따른 종합검사의 시설·장비·인력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업체명, 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제17조(기술인력 관리) ①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증 사본 등 별표 2 제3호가목의 자격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18조에 따른 교육의 수료일 및 수료번호를 기록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후에 그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②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책임자가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술인력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회 15일, 연간 30일을 넘지 못한다.<개정 2015.2.2>

③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원이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확보기준보다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회 15일, 연간 30일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5.2.2>

제18조(기술인력의 교육) ①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2>

1. 신규교육: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때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신규교육 후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3. 임시교육: 자동차검사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교육

②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검사책임자 또는 종합검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 후 1년 6개월 이내에 종합검사책임자 또는 종합검사원으로 다시 선임된 경우 또는 종합검사책임자 또는 종합검사원으로 채용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교통안전공단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⑥ 그 밖에 기술인력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제19조(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해당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지정정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술인력을 해임하여야 한다.

제4장 종합검사 결과의 관리 등

제20조(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 등) ① 교통안전공단은 종합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하여금 종합검사의 검사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게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제21조(종합검사 결과자료 전산 관리)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의 종류, 사용연료, 제작연도, 장치 등의 구분기준에 따라 종합검사 결과와 자동차기능 종합진단 결과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45조의3제2항 및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관할 관청은 종합검사대행자·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별표 4의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하되, 그 처분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별지 제10호서식
2.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 별지 제11호서식

④ 관할 관청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의 출입문에 그 처분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할 관청이 이 규칙에 따라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분대장에 그 처분사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112호,2009.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종합검사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2009년 9월 30일까지 제14조에 따른 종합검사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한 종합검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제14조에 따른 검사시설을 갖추기 전까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이 규칙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설치된 배출가스 정밀검

사 전용진로에 법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검사 장비를 통합 설치하는 경우 검사진로의 피트의 길이는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확보한 기술인력이 별표 2 제3호나목의 기술인력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종합검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른 검사원 자격 중 제2호의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추어 자동차 검사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은 제14조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야의 종합검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5조(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고란에 따른 교육을 모두 이수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고란에 따른 교육 중 어느 하나만 이수한 사람은 2009년 9월 30일까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종합검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만 받은 사람: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야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고란에 따른 교육만 받은 사람: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야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고란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은 제18조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9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의2제1항의 시행일부터 2년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에 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를 별도로 받은 자동차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가 면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2항 중 "30일이내"를 "31일 이내"로 한다.

부칙 <제222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속도계 항목의 "34.8"을 "32로" 하고, 같은 항목 괄호 안의 "정15%"를 "정25%"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속도계 항목 괄호 안의 "34.8"을 "32"로 한다.

부칙 <제293호,2010.10.14>

이 규칙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제15조제7호,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9조제1항,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6>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594호,201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확보한 기술인력이 별표 2 제3호나목2)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술인력이 종합검사업무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은 종합검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제8조 관련)

검사 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비고

1. 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 중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의 검사는 1년마다 받는다.
2. 종합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비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비고란 제4호의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6. 차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계산한다.
7.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 표의 적용차령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적용차령이 도래한 자동차가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

아야 하는 날은 적용차령 도래일로 한다.

[별표 2] <개정 2015.2.2.>

종합검사의 시설·장비·인력기준(제14조 관련)

1. 종합검사 시설기준

구 분		설 치 기 준
검사진로	통합형 (길이×너비×높이)	20m×5m×4m 이상
	분리형 (길이×너비×높이)	13m×5m×4m 이상
	구 성	1) 자동차 진입과 진출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차대동력계 중심축과 피트 진출방향 끝 부분과의 간격은 6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검사진로의 바닥은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후 8m 이상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4) 눈·비 등에도 지장을 받지 아니하고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피 트 (길이×너비×높이)		8m×0.8m×1.5m 이상
진입·진출로		1) 검사진로 입구부터 10m 이상의 여유공간을 확보하되 진입·진출로를 별도로 갖추어야 하며, 대형자동차의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안전검사 분야 분리형 진로는 연결자동차의 진입·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비고

1. 통합형은 1개의 검사진로에 모든 검사기기를 배열하는 방식이며, 분리형은 자동차안전 분야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로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검사진로를 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2. 피트는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되어야 하며, 분리형인 경우는 중복해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진로는 1개 진로로 한정한다. 이 경우 분리형은 1개 진로로 본다.
4. 검사진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로 허가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5. 위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시설의 기준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

칙」 별표 16 및 별표 18을 준용한다.

2. 검사장비

가. 안전검사 분야: 종합검사대행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을 준용하고,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을 준용하되, 나목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와 중복되는 검사장비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장 비 및 시 설
1) 자동차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2) 부분유량채취방식 광투과식매연측정기 1대 이상
3) 교정용 표준가스(산소·일산화탄소·탄화수소·이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 1조 이상
4) 교정용 표준필터 1조(40%·60% 및 80%) 이상
5) 소형 차대동력계(차량 총중량 5.5톤 이하 자동차 부하검사용)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6) 대형 차대동력계(차량 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 부하검사용)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7) 엔진회전속도계 2조 이상(휘발유·가스·알코올 자동차용, 경유자동차용 각 1조 이상)
8) 검사장면 촬영용 카메라
9) 매연 포집시설
10) 엔진전자제어 진단기 1조 이상

비고

1. 검사장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총중량이 5.5톤 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 부하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려면 소형 차대동력계를, 총중량이 5.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하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려면 대형 차대동력계를 각각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검사장비의 구성 및 성능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검사장비는 관능 및 기능 검사장비와 배출가스 검사장비로 구성되고, 별도의 입·출력기를 구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나. 관능 및 기능 검사장비는 검사 결과의 입·출력과 자료의 검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배출가스 검사장비는 차대동력계·배출가스분석기·광투과식 매연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등이 하나의 체계로 구성되어야 하고, 배출가스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제97조에 따른 정밀검사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주제어장치에 설치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 수행되어야 한다.

라. 개별 측정기는 검사장비 주제어장치와 실시간으로 통신이 가능하여야 하고, 검사 방법별 검사 모드, 검사 결과의 입·출력, 검사 결과의 판정, 검사장비의 정도관리 등이 자동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 등이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 주전산기로 실시간 송신·저장되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 주전산기의 장애로 인하여 검사 결과 등의 실시간 전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된 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검사장비 주제어장치는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 주전산기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 검색, 검사 결과자료의 입·출력이 가능하되 배출가스 측정값의 임의 수정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제원 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동 입력 또는 수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4. 검사장면 촬영용 카메라는 해당 자동차의 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는지를 기록·전송하기 위한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 카메라는 배출가스 검사 수행과 동시에 작동되어 자동차 뒷부분 등록번호판과 검사장면이 2장 이상 촬영되어야 한다.

나. 촬영된 화면은 검사 종료 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 주전산기로 전송·저장되어야 한다.

5. 매연 포집시설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할 때 매연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기관에서 직접 포집하여 정화 후 배출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매연 포집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매연 농도 40% 이하이어야 한다. 매연 농도는 부분유량채취방식의 광투과식 매연 측정기로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6.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검사장비는 소형 차대동력계 1조와 대형 차대동력계 1조로 한정한다.

7. 부하검사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관능 및 기능 검사 전에 정지가동상태에서 무부하 급가속의 방법으로 소음기의 매연을 제거하려는 경우 사전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무부하 급가속을 하는 사유와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부하) 등을 설명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연 포집장치를 이용하여 매연을 포집하여야 한다.

3. 기술인력

가. 구분 및 자격·직무

구 분	자 격	직 무
종합검사 책임자	종합검사원 자격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배출가스검사의 기술인력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종합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1)부터 3)까지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 되는 사람	종합검사 업무의 총괄
종합검사원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제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1) 정밀검사의 실시 및 적합 여부 판정 2) 검사 시설 및 장비 관리

비고: 종합검사 기술인력은 제18조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확보기준

1) 종합검사책임자: 검사소당 1명 이상

2) 종합검사원(종합검사책임자를 포함한다)

가) 종합검사대행자

검사진로당 연간 검사대수	검사진로당 종합검사원 수
7천대 미만	3명 이상
7천대 이상 1만 5천대 미만	4명 이상
1만 5천대 이상 2만 5천대 미만	5명 이상
2만 5천대 이상	6명 이상

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검사소당 월간 검사대수	검사소당 종합검사원 수
300대 이하	2명 이상
300대 초과 800대 이하	3명 이상
800대 초과 1천500대 이하	4명 이상
1천500대 초과	5명 이상

[별표 3]

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 교육기준(제18조제2항 관련)

1. 신규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20시간 이상	가. 자동차검사 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나. 자동차관리법령 및 대기환경보전법령 다. 소음진동규제법령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자동차공학		자동차 검사 및 정비 관련 신기술
자동차 검사기기	5시간 이상	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자동차 검사실무	10시간 이상	검사실습 및 행정관리 요령

2. 정기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자동차공학	8시간 이상	가. 자동차검사 기술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나. 자동차 관련 법령 다. 검사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라. 자동차 검사 및 정비 관련 신기술
자동차 검사기기	2시간 이상	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자동차 검사실무	4시간 이상	검사실습 및 행정관리요령

3. 임시교육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개정법령	4시간 이상	법령 개정 등으로 필요한 교육

비고: 임시교육과 자동차 검사 및 정비 관련 신기술은 온라인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같은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을 한다.
 가.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또는 명령의 기준이 지정취소 또는 해임인 경우에는 지정취소 또는 해임명령을 한다.
 나.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하되, 둘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관할 관청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업무의 정지기간 또는 직무의 정지기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4. 관할 관청은 종합검사대행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일부 사업장에서만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해당 위반 사업장의 업무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5. 관할 관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그 업무 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자동차의 종합검사 업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나. 그 밖에 관할 관청이 자동차의 종합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 따른 기준과 다르게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관할 관청은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처분기준의 범위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Ⅱ.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관계 법령	처 분 내 용	
		종합검사대행자·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기술인력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법 제45조의3 제1	지정취소	

로 지정을 받은 경우	항 및 제24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직무정지 90일 3차: 해임
다. 자산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제45조의3 제1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라.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	지정취소	해임
마.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해임
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사용 기계·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9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30일 3차: 직무정지 90일
사. 법 제43조제2항 또는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6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30일 3차: 직무정지 60일
아. 법 제43조제3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20일 3차: 업무정지 3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20일 3차: 직무정지 30일
자. 법 제43조제6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60일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30일 3차: 직무정지 60일
차. 법 제45조제1항 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1차: 직무정지30일 2차: 해임
카. 법 제45조제2항이나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지정취소	
타. 법 제45조제3항이나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법 제46조제2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업무정지 90일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직무정지 60일 3차: 직무정지 90일
파. 법 제45조제7항(제45조의2제3항	법 제45조의3제1	1차: 업무정지 30일	

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항 및 제24조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지정취소	
하.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거.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업무정지 90일	
너.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4조	지정취소	
더.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업무정지 90일	
러.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4조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업무정지 90일	
머. 법 제45조의3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24조	지정취소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2.18>

접수번호: (자동차소유자용)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① 자동차등록번호		② 성명(상호)		③ 생년월일	
④ 차명		⑤ 차종(용도)		⑥ 제작연식	
⑦ 연료종류		⑧ 누적 주행거리		⑨ 최초등록일	

검 사 결 과

⑩ 종합판정		관능·기능검사		안전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⑪ 검사 유효기간	~			⑫ 재검사기간	~		

⑬ 세부 검사내용

1부(관능 및 기능검사)

<부적합 내용>

<시정권고 내용>

2부(기계·기구검사)

검사항목	기준값			측정값	판정
⑭ 사이드슬립	1m 주행에 5mm 이내				
⑮ 배출가스	휘발유·가스	일산화탄소(CO):	%		
		탄화수소(HC):	ppm		
		질소산화물(NOx):	ppm		
		공기과잉률(λ):			
	경유	매연:	%		
		최대출력:	ps		
		엔진회전수:	rpm		
	※ 측정값이 기준값의 80% 이상 배출되는 자동차는 빠른 시일 내에 정비·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⑯제동력				측정값
앞축	전	앞축무게(kg)의 50% 이상		%(측정값: kg)
	후	앞축무게(kg)의 50% 이상		%(측정값: kg)
뒤축	전	뒤축무게(kg)의 20% 이상		%(측정값: kg)
	중	뒤축무게(kg)의 20% 이상		%(측정값: kg)
	후	뒤축무게(kg)의 20% 이상		%(측정값: kg)
전체브레이크		전체무게(kg)의 50% 이상		%(측정값: kg)
주차브레이크		전체무게(kg)의 20% 이상		%(측정값: kg)
좌·우 차이(편차)	앞축 전	앞축무게(kg)의 8% 이하		%(: kg)
	앞축 후	앞축무게(kg)의 8% 이하		%(: kg)
	뒤축 전	뒤축무게(kg)의 8% 이하		%(: kg)
	뒤축 중	뒤축무게(kg)의 8% 이하		%(: kg)
	뒤축 후	뒤축무게(kg)의 8% 이하		%(: kg)

⑰ 전조등	광도	12,000(15,000) ~ 12,500cd	
	광축	좌: 상10/하30/좌15/우30cm 이내	

(검사원 참고용)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자동차등록번호					접수번호						
차 대 번 호			원동기형식			차명					
최초등록일		유효기간 만료일			유효기간	~					
소 유 자			주 소								
제작연도		차 종		용 도		연 료					
제원관리번호				주행거리		1부	1 회				
차체	길이(㎜)		윤 거 (㎜)		변속기(단) 전		재검사				
	너비(㎜)		앞축(kg) 전		변속기(단) 후		2부	1회			
	높이(㎜)		앞축(kg) 중		승차정원(명)			재검사			
실내 (하대)	길이(㎜)		뒤축(kg) 중		적 재 량 (kg)		1차 검사	검사일[] 적합·부적합·시정권고			
	너비(㎜)		뒤축(kg) 후		차량중량(kg)						
	높이(㎜)		배기량(cc)		정격출력(ps)		2차 검사	검사일[] 적합·부적합·시정권고			

동 일 성 및 안 전 검 사 분 야

1부 검사항목		결과	1부 검사항목		결과	1부 검사항목		결과	1부 검사항목		결과
성 동 일	차대번호표기			핸들유격		연료장치	가스용기		물품적재장치	적재함 규격	
	원동기형식		제동장치	설치상태			밀폐상태			탱크용량	
원동기	설치상태			ABS			연료도관			부식·변형·손상	
	정속·가속			누유·누설			충전밸브			안전잠금장치	
	전기장치			페달상태			용기설치위치		창유리	앞면 창유리	
	윤활장치			호스·파이프			밸브설치위치			그 밖의 창유리	
	냉각장치			유·공압장치		전기장치	점화장치		배기장치	열림방향	
	각종센서			배력장치			시동장치			배기관	
	연료공급			마스터·휠실린더			충전장치			배기가스 누출	
	조속기봉인			유량경고			손상등설치상태			촉매장치	
동력전달	클러치			펌프·구동벨트			전기배선			훼손·부식	
	변속기			제동 챔버·캠			축전지		등화장치	전조등	
	추진축			주차제동장치		차체 및 차대	차체 및 차대			방향지시등	
	종감속장치		완충장치	설치상태			적재량등 표기			번호등	
조향장치	타이어			스프링			측면보호대			제동등	
	흙받이			각종 암			후부안전판			후미등	
	차축			쇼크업소버			번호등 위치			안개등	
	휠			앵커·핀·부쉬			어린이 운송용			비상등	
조종장치	가속복귀			스프링마운트			내압용기			그 밖의 등화	
	변속위치			유체공급도관		연결 및 견인장치			시야확보	창닦이	
	페달유격			토션-바		승차장치	승객좌석			후사경	
조향장치	접촉·변형			스트러트-바			머리지지대			세정액 분사	
	파손·손상		연료	주입구설치위치			안전띠		소 화 설 비		
	작동상태			탱크-캡			승강구·발판		내 압 용 기		
	유량·누유			연료누출			통로		기 타		

기 기 검 사 및 배 출 가 스 정 밀 검 사 분 야

	사이드슬립	배출가스	제동력	전조등	속도계	소음	
2부						경적	
						배기	

부적합 내역		시정권고 내역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2.18> (제1쪽)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



검사일자: 년 월 일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명		차 명	
차 대 번 호		원동기형식		최초등록일	
다음 종합검사일		재검사기간		주행거리	km

※ 다음 검사는 위의 검사일 기준 전·후 31일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진단항목				판전진단기준(검사기준)	진단결과	진단의견
조향계통		앞바퀴 정렬		옆 방향 미끄러짐양 (1m 주행에 5mm 이내)		
		조향계통 설치상태 등		변형·느슨함·누유여부 파워스티어링 오일양		
주행계통		차축·타이어·휠		외관의 손상·변형·돌출 여부 타이어 상태		
		변속기 추진축 등		변속기 오일 오염도 추진축·등속조인트(손상·변형) 클러치 유격상태		
		뒷바퀴 정렬(옆 방향 미끄러짐)				
제동계통 (브레이크시스템)		제동력	앞축 전	앞축무게(kg)의 50%이상	%(측정값: kg)	
			앞축 후	앞축무게(kg)의 50%이상		
			뒤축 선	뒤축무게(kg)의 20%이상	%(측정값: kg)	
			뒤축 중	뒤축무게(kg)의 20%이상		
			뒤축 후	뒤축무게(kg)의 20%이상		
			선제브레이크	선제무게(kg)의 50%이상	%(측정값: kg)	
			수자브레이크	선제무게(kg)의 20%이상	%(측정값: kg)	
			좌·우 차이(편차) 앞축	전 앞축무게(kg)의 8%이하	%(: kg)	
				후 앞축무게(kg)의 8%이하	%(: kg)	
			좌·우 차이(편차) 뒤축	전 뒤축무게(kg)의 8%이하	%(: kg)	
				중 뒤축무게(kg)의 8%이하	%(: kg)	
				후 뒤축무게(kg)의 8%이하	%(: kg)	
		제동계통 설치상태 등		견고한 설치·손상·오일누출 배력장치의 작동 상태		
				디스크·패드 상태		
등화장치		전조등	밝기 좌/우	12,000(15,000) ~ 112,500cd	좌측밝기: cd 우측밝기: cd	
			비추는 방향 좌	상10/하30/좌15/우30cm이내	상 cm, 하 cm 좌 cm, 우 cm	
			비추는 방향 우	상10/하30/좌30/우30cm이내	상 cm, 하 cm 좌 cm, 우 cm	
		그 밖의 등화		설치위치, 등광색 등		
배출가스		휘발유 LPG		검사방법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공기과잉률(λ)		
		경유		검사 방법		
				매연		
				최대출력		
				엔진회전수		
		배기,소음 발산방지장치		배기관·소음기·촉매장치의 손상, 변형 등이 없을 것		
계기계통		속도계		40km/h일 때(32~44.4km/h)		
		계기장치		운행기록계·최고속제한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제2쪽)

진단항목	고장코드
자기진단 센서 점검	
	진단의견

검사항목		결과 및 의견	
관능(육안)점검	엔진오일 오염도 / 벨트상태 원동기 이상음 / 시동장치 / 방열기		
	동일성 / 차대 및 차체 / 물품적재장치		
	(승차 / 조종 / 완충 / 방화)장치		
	경음기 / (연결 및 견인 / 전기)장치		
	연료장치 / 내압용기 / 시야확보 / 창유리		
	기타장치		

서비스 제공	
종합 진단결과	

검사기관명 검사책임자: (서명/ 인)

※ 본 진단서는 고객님의 차량 관리를 위한 진단결과입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서					처리기간 5일이내
소유자	성 명(상호)				
	주 소	(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 명		
	검사 유효기간	~			
신청 내용	연장·유예 기간	~			
	연장·유예 사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합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검사의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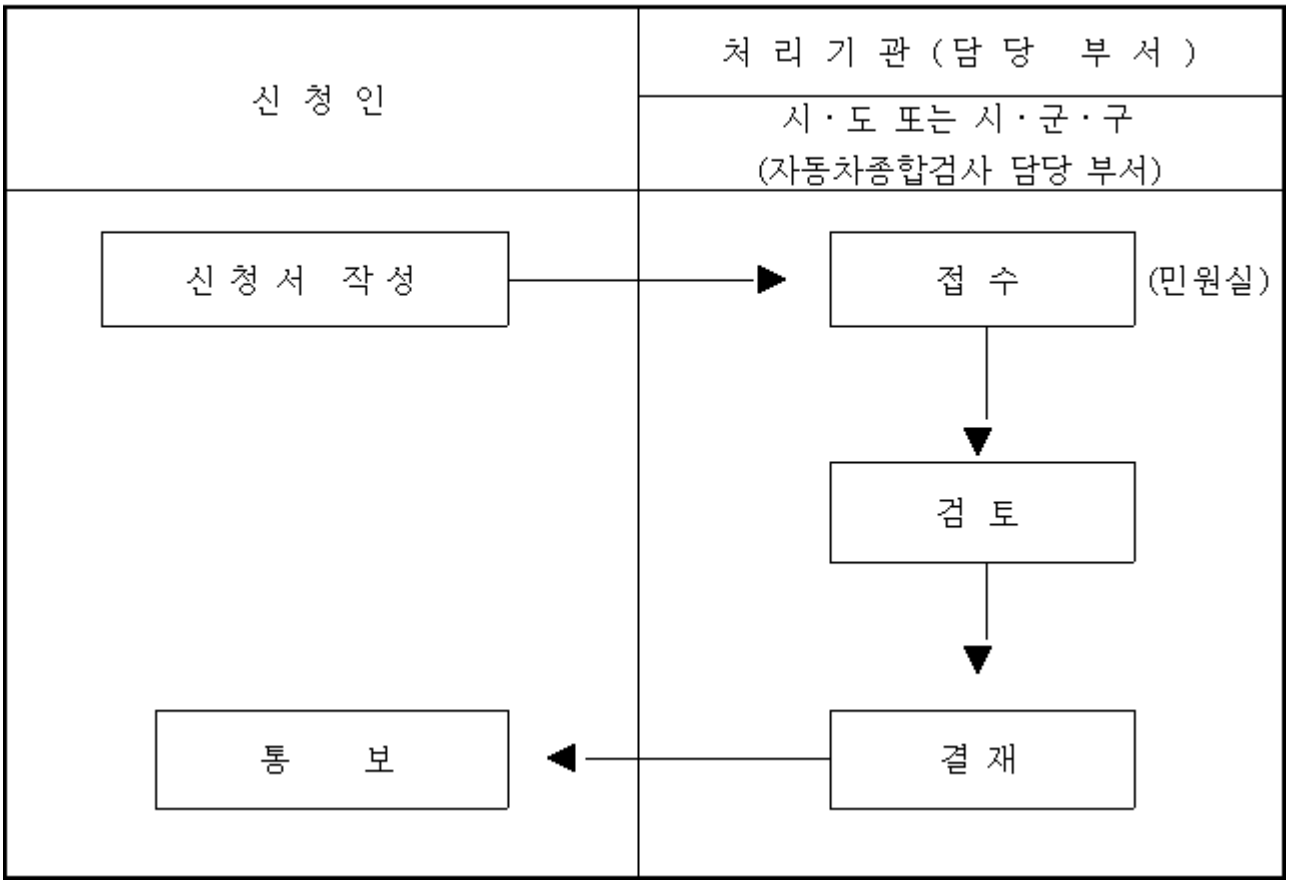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연장 또는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4호서식]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소유자	① 성 명(상호)		②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자동차	⑦ 등 록 번 호		⑧ 차 대 번 호	
	⑨ 차명 및 형식		⑩ 차종 및 용도	
⑪ 체 류 지(주 소)		(전화번호:)		
⑫ 체 류 사 유				
⑬ 체 류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⑭ 확 인 서 용 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또는 검사 유예용(시·도지사 제출용)		

위의 자동차가 이 섬(도)에 체류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자동차 소유자 성명(상호) (서명 또는 인)

(대표자)

발급번호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리장) (인)

(전화번호:)

※ 구비서류

1. 체류 사유 및 체류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등록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허가서

소유자	성명(상호)			
	주 소	(전화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 명	
	검사 유효기간	~		
연장 내용	연장(유예) 신청기간	~		
	연장(유예) 사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합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및 검사의 유예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 지 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귀하()

제 목 종합검사명령

귀하의 자동차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나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였으나 계속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오니 아래 ⑨란의 명령 이행기간 내에 가까운 자동차검사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서 종합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 유 자	① 성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자 동 차	④ 등 록 번 호		⑤ 차 대 번 호	
	⑥ 차 명		⑦ 차 종	
	⑧ 종합검사기간	부터		까지
⑨ 명 령 이 행 기 간		부터		까지

※ 유의사항

1. 만약, 이 명령서를 받고도 명령 이행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명령서를 받기 전에 종합검사를 받았거나 전출·이전·말소 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도에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팩스() /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영 치 증

○ 성 명:

○ 주 소:

○ 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의 등록번호:

1. 위 자동차는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2.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 종합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 영치증을 시(군·구) 과(팀)에 제시하면 즉시 영치를 해제합니다.

3.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제8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영 치 일 시: 년 월 일 시 분

○ 단속 공무원

소 속: 시(군·구) 과(팀) 성 명: (인)

(전화번호:)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2.2.> (앞 쪽)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업체명		등록(허가)일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대지 면적	㎡	종업원 수	명	
검사 업무 개시 희망일					
자동차 정비 업종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제1항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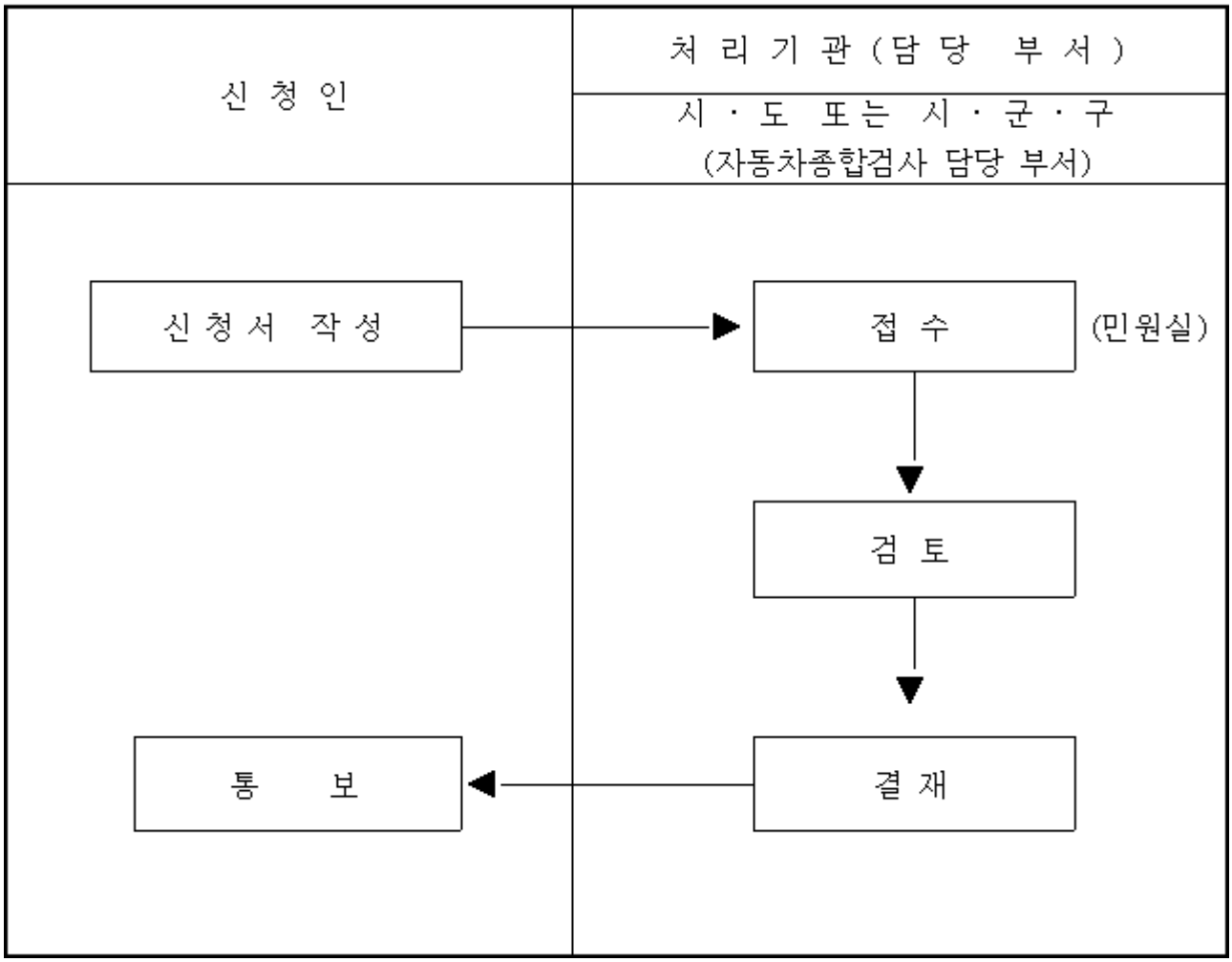
※ 구비서류

1. 자동차정비업 등록증 사본 1부
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검사업무 규정(기술인력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4. 검사 시설·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1부
5. 삭제 <2015.2.2.>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9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① 상 호		② 성 명 (대표자)	
③ 주 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⑤ 검사 업무 범위			

위 자동차정비업자를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제1항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3.23>

자동차종합검사 [□ 대행자 / □ 지정정비사업자] [□ 지정취소 통지서 / □ 업무정지명령서]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위 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동차종합검사 [□ 대행자 / □ 지정정비사업자]의

[□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 업무의 정지를 명합니다.]

1. 처분 사유:

2. 처분 내용:

3. 업무정지 처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근거 법령: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인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는 이 통지서(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3.3.23.>

☐ 해임
☐ 직무정지] 명령서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대상자:

위 사람은 다음 사유로 해임(직무정지)을 명합니다.

1. 사유:

2. 처리기간(직무정지기간): 년 월 일

3. 근거 법령: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는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처 분 대 장

① 업체명				② 대표자 성명	
③ 처분 연월일	④ 위반 내용	⑤ 처분 내용	⑥ 기록자 인	⑦ 비고	

268㎜×190㎜(인쇄용지(특급) 80g/㎡)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 2015.7.21] [법률 제13037호, 2015.1.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3, 2010.7.23>

1. "전기·전자제품"이란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부분품·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부분품·부속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폐전기·폐전자제품"이란 전기·전자제품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된 것을 말한다.
4. "폐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폐차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6. "재활용"이란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7. "에너지회수"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에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전기·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확대하고, 회수 체계 개선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전기·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가 적정하게 재활용

되거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3.7.16>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전기·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제조·수입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수입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재활용기술의 개발
2.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
3. 유해물질의 사용 억제
4.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거나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수입
5. 원재료 및 제품 등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폐기물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
6. 제조·수입업자가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회수 체계 구축

②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에 적극 노력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처리업자"라 한다)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조·수입업자,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및 처리업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6]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전기·전자제품이나 자동차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협력의 증진)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유해물질의 분석결과나 재활용가능률의 평가결과 등에 관한 사항의 국가간 상호인정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8조 삭제 <2010.2.4>

제2장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제9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함유기준 등) ①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유통되는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라 한다)는 제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이 높은 중금속·난연제(難燃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하 "유해물질"이라 한다)의 함유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유해물질의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대체물질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연구·개발이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②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해물질의 분석방법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재질·구조 개선지침 등) ①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구조에 관한 사항 등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구조개선에 관한 지침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사용, 재질의 단순화, 재질정보의 표시, 분리·해체의 용이성 제고 등의 재질·구조 개선활동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달성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④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활용가능률의 평가방법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①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하는 자(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자"라 한다)와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폐가스류처리업자"라 한다)가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구성재질이나 재활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이하 "재활용정보"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핵심기술정보의 유출 등 영업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에 가입하여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그 재활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0.7.23, 2013.3.23, 2013.7.16>

②재활용사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환경을 보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제품의 재질·구조 등에 대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환경부장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2013.7.16>

③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안을 받은 때에는 제품의 안전성 등 특성과 경제성이나 국내기술수준 등에 따른 타당성 검토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안을 채택한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그에 따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2.4, 2013.3.23>

제13조(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제3항이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권고에 따른 이행 여부 등의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4조(재질·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①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재질·구조를 개선하려는 경우 재질·구조의 개선으로 인하여 그 제품의 사용자가 다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과 내구성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및 그 제품의 재활용사업자,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그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재사용하는 제품의 유해물질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7.16>

제3장 폐전기·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제1절 폐전기·폐전자제품

제15조(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자신이 출고한 제품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하거나 제21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회수 및 인계·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인계·재활용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3.7.16]

제16조(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전자제품의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이하 "장기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5년마다 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 1인당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1.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전기·전자제품 출고량
2. 폐전기·폐전자제품 예상발생량
3. 폐전기·폐전자제품의 분리수거량[「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4.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실적과 재활용시설 규모
5. 그 밖에 분리수거 여건과 재활용기술 개발의 상황 등 재활용 여건

②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여건이 변화되어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전기·전자제품 출고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가치가 높거나 재활용이 특별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품별 연간 출고량 중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을 정하여 매년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16]

제16조의2(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방법이 유사한 전기·전자제품군별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16]

제16조의3(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하여 분리·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16]

제16조의4(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①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속한 제품군 내의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스스로 회수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

하여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기준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전자제품 회수의무량(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0>

1. 전기·전자제품의 판매량
2.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3.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총 매입량
4. 그 밖에 분리수거량, 분리수거 체계 등 회수 여건

③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내에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른 수집소를 지정하고 이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無償)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16]

제1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각각 공제조합에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또는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1.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2.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회수의무이행계획서

②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4.5, 2013.7.16>

[제목개정 2011.4.5]

제18조(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①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5조에 따른 회수·인계·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7.16>

②제1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기준과 그 납부시기·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3.7.16>
④ 삭제 <2013.7.16>
⑤ 삭제 <2013.7.16>
⑥ 삭제 <2013.7.16>
[제목개정 2013.7.16]

제18조의2(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6조의4에 따른 회수 및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회수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폐기물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라 한다)을 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에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는 데 드는 비용의 기준과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납부 시기·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제18조의3(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그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에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각각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체납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납된 자의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 관계 전문기관에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16]

제19조(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1.4.5, 2013.7.16>

1.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활용·회수를 위한 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회수 또는 감량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3.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회수·재활용·처리의 지원
4.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비축
5.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6.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비용 지급

[제목개정 2011.4.5]

제20조(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한 물질을 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체계를 구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기술적 또는 부과금 감경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0]

제20조의2 삭제 <2013.7.16>

제20조의3 삭제 <2013.7.16>

제21조(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1.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제15조에 따른 회수·인계·재활용의무
2.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제16조의4에 따른 회수 및 인계의무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목개정 2013.7.16]

제2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①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015.1.20>

1. 법인의 정관(목적·사업범위·조합원 및 분담금,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또는 회수 및 인계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참여 약정서
4. 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5.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의 경우만 해당된다)
6.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7.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제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자가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6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5.1.20>

④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으로 인가를 받은 자가 정관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0>

제22조의2(시정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및 검사 결과 공제조합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0]

제22조의3(인가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공제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0]

제23조(분담금 등) ①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의 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1.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기준
2.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에 드는 비용의 기준

②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절차 등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제조합이 회수·인계·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경우 재활용 방법 및 기준,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의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인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제3항 및 제1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7.16>

제24조(「민법」의 준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폐자동차

제25조(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한 자동차로서 폐차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비율(이하 "재활용비율"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7.16>

1.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자동차폐차업자"라 한다)
3.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파쇄재활용업자"라 한다)
4.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쇄잔재물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라 한다)
5. 폐가스류처리업자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재활용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재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폐차업자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자동차폐차업자는 폐자동차를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재활용하고 남은 폐자동차의 잔여 부분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자동차와 관련 없는 다른 폐기물이 섞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파쇄재활용업자는 제2호 전단에 따라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금속류 등을 최대한 회수하고 남은 파쇄잔재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파쇄잔재물은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파쇄잔재물 중 금속류를 최대한 회수하는 등 재활용하거나 파쇄잔재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여야 한다.

5. 폐가스류처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기후·생태계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이 포함된 가스(이하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이라 한다)를 재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처리 등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에 드는 비용과 폐자동차의 파쇄잔재물(수입되는 폐자동차에서 발생되는 파쇄잔재물은 제외한다)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이라 한다)이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가격(이하 "폐자동차의 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자동차폐차업자·파쇄재활용업자 및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폐차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제3항 본문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회수한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회수한 자동차에 대하여 재활용비율을 지켜야 한다.

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등의 분리·보관 등) ①자동차폐차업자는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②파쇄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부수어 금속류를 회수한 후 발생하는 파쇄잔재물을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의 충당) 자동차폐차업자·파쇄재활용업자·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폐자동차의 가격이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초과하는 때에는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공제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폐차업자는 파쇄재활용업자·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폐자동차를 처리·재활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폐차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29조(사업자단체의 설립) ①제25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재활용비율의 달성을 위한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사업자단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①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법인의 설립목적·사업범위 및 법인의 정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로 인가를 받은 자가 정관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①자동차폐차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기별 재활용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3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폐자동차를 재사용·재활용한 양
2. 파쇄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인계한 양
3.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양

②파쇄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기별 재활용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자동차를 재활용한 양
2.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한 양

③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파쇄잔재물의 분기별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폐가스류처리업자는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분기별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로부터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한 때에는 분기별 재활용·처리와 에너지 회수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실적 등의 제출은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재활용업의 등록 등

제32조(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①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자동차의 잔여부분 등의 재활용에 관한 영업(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제2항의 업종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폐자동차재활용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쇄재활용업 : 자동차폐차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재활용하는 영업

2. 파쇄잔재물재활용업 : 파쇄재활용업자로부터 인계받은 파쇄잔재물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하는 영업
3. 삭제 <2013.7.16>

제32조의2(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①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처리에 관한 영업(이하 "폐가스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16]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16>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등록의 취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4조(등록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등) ①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3.7.16>

②「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개정 2010.3.31>

③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하여 제34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영업정지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까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나 합병을 하는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7.16>

④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7.16>

[제목개정 2013.7.16]

제5장 보칙

제36조(장부의 기록·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자료를 전송한 경우에는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7.16>

1.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자
3.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4. 공제조합
5. 자동차폐차업자 및 폐자동차재활용업자

5의2. 폐가스류처리업자

6.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7. 제39조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는 자

제37조(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9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 한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에 한한다)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8조(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등의 의무이행과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②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2.6>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의 관리표 작성·제출의무)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한 자는 환경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인계·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그 인계·인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전송한 경우에는 관리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0조(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련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1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3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5.1.20]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환경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공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제6장 벌칙

제43조(벌칙) 제37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7.23]

제45조(과태료) ①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유통시킨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7.16>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활용가능률을 지키지 아니하고 제품을 유통시킨 자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상회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활용비율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6조를 위반하여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한 자

5의2.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가스류처리업을 한 자

6.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7.16>

1.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 사용제한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재활용가능률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유통시킨 자(제1항이나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보관 및 처리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파쇄잔재물을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4.5, 2013.7.16>

1.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1.4.5, 2013.7.16>

1.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이나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자
2. 제13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소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활용결과보고서나 재활용·에너지회수·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36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37조를 위반하여 보고·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39조를 위반하여 관리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4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7.23]

부칙 <제8405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 중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해당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행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은 이 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 본다.

제4조 (폐자동차재활용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로서 폐자동차재활용업에 해당되는 영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2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나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과 제31조제1항제2호중 "재활용지정사업자,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를 각각 "재활용지정사업자"로 한다.

제36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②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③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과 가산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의 용도에 한하여"를 "제7호의 용도에, 같은 조 제13호의2의 재활용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제7호의2의 용도에 한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용도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한한다)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7> 까지 생략

<51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13조, 제3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제39조 본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전단, 제42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433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등"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931호,2010.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10032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0033호,201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1>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0389호,2010.7.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제12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나"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으로 한다.

부칙 <제10390호,2010.7.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49호,2011.4.5>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93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19>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7>까지 생략

<50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3조, 제3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제39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 전단, 제42조제1항·제2항 및 제4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0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13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또는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이를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신고를 한 자로서 폐가스류처리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내에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6호 중 "재활용부과금"을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으로 한다.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1호 중 "재활용부과금·가산금"을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제18조의3에 따른 가산금"으로 한다.

부칙 <제13037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7.21] [대통령령 제26400호, 2015.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1.12.30>

제3조 삭제 <2011.12.30>

제4조 삭제 <2011.12.30>

제5조 삭제 <2011.12.30>

제6조 삭제 <2011.12.30>

제7조 삭제 <2011.12.30>

제8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이란 별표 1을 말한다. 다만,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30>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승차정원이 9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경형과 소형으로 한정한다)

[제목개정 2013.12.30]

제9조(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란 별표 1의2를 말한다. <개정 2013.12.30>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연차별 재활용가능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09년 12월 31일 이전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8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5 이하만 인정한다.

2. 2010년 1월 1일 이후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10 이하만 인정한다.

제11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방법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라 한다) 또는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에 게시
2.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운영·관리하는 홈페이지에 게시. 이 경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 공표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자와 자동차 제조업자는 출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전기·전자제품 수입업자와 자동차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 이하 "수입신고일"이라 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제12조(재활용사업자)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7, 2013.12.30>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3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재활용지정사업자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
5.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제13조(재활용정보의 제공) 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이하 "자동차폐차업자"라 한다)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②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사업자, 자동차폐차업자나 폐자동차재활용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활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0>

1.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재활용정보가 저장된 전자매체

③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출고일 또는 수입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1.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재활용정보를 게시
2.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운영·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재활용정보를 게시. 이 경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재활용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출시연도, 모델명, 분해 또는 해체의 절차
2. 합성고분자화합물의 구성재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는 25그램 이상의 합성수지부품, 자동차의 경우에는 100그램 이상의 합성수지부품과 200그램 이상의 합성고무부품에 재질명을 표기하여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상제품 내 제거되어야 할 유해물질의 포함위치 및 제거방법
3.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알고 있는 부품의 효율적 처리 및 재활용방법

제14조(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이란 별표 3을 말한다. 다만,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3.12.30]

제14조의2(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4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전자제품의 매출액: 10억원 이상
2.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수입액: 3억원 이상

[본조신설 2013.12.30]

제15조(재활용목표량의 산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량(이하 "장기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0]

제15조의2(재활용의무량의 산출기준)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인구수 × 의무이행 전년도 모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총 출고량(수입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의무이행 전년도 해당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군별 출고량 비율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의 총량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하여 별표 3의3에 따라 제품군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5.7.13>

③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전기·전자제품별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13>

④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에 관한 자료(제2항에 따라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하는 경우 제품군별 가중치 및 총 가중치적용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7.13>

[본조신설 2013.12.30]

제15조의3(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이란 별표 3을 말한다. 다만,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15조의4(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4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1.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전자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출자한 사업장
2.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전기·전자제품 전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

[본조신설 2013.12.30]

제15조의5(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 ①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이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의무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5.7.13>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인구수 ×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반영계수(환경부장관이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역할관계, 시장점유율 및 판매량과 매입량 차이 등을 고려하여 0.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계수를 말한다) × 의무이행 전년도 모든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총 매입량 중 의무이행 전년도 해당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제품군별 매입량 비율

②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기·전자제품별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매입량 및 인구수에 관한 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7.13>

[본조신설 2013.12.30]

제16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와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이나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의 해당 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부터,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의 해당 연도 최초 매입일부터 각각 1개월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12.30>

[제목개정 2011.12.30]

제1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받으면 그 계획의 승인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교부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12.30>

②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2013.12.30>

③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승인을 받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2013.12.30>

[제목개정 2011.12.30]

제18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제17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② 환경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승인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와 법 제39조에 따라 제출된 관리표를 검토하여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을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와 그 증명자료를 검토하여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을 인정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12.30>

[전문개정 2011.12.30]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기준비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기준비용(이하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5의 제품군별 재활용에 드는 단위비용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제19조의2(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①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에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 재활용한 양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재활용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③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부과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0.29, 2013.12.30>

④ 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7월 20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개정 2012.10.29>

⑤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11.3.29>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신설 2011.3.29>

[제20조에서 이동 <2013.12.30>]

제20조(회수부과금의 기준비용)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하 "회수부과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에 드는 기준비용(이하 "회수부과금 기준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5의 제품군별 회수에 드는 단위비용에 환경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회수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회수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제2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9조의2로 이동 <2013.12.30>]

제20조의2(회수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① 회수부과금은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수량에 회수부과금 기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은 회수의무량을 초과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그 초과 회수한 양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회수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회수부과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부과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④ 제3항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7월 20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개정 2013.12.30>

⑤ 제3항에 따라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제21조의5에서 이동 <2013.12.30>]

제21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등 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5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각각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이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2011.12.30, 2013.12.30>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12.24, 2013.12.30>

[제목개정 2013.12.30]

제21조의2 삭제 <2013.12.30>

제21조의3 삭제 <2013.12.30>

제21조의4

[종전 제21조의4는 제20조로 이동 <2013.12.30>]

제21조의5

[종전 제21조의5는 제20조의2로 이동 <2013.12.30>]

제21조의6 삭제 <2013.12.30>

제22조(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 조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공제조합 또는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출고량·매입량·판매량,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15.7.13>

1.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별 출고량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별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8조에 따라 받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의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이 실제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조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 해당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이나 차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 및 차액의 산정은 제19조의2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개정 2011.12.30, 2013.12.30>

[제목개정 2011.12.30, 2013.12.30]

제23조(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8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5 이하만 인정한다.
2. 2015년 1월 1일 이후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10 이하만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당 중량기준은 폐차할 때 차량 실중량으로 산정한다.

제24조(폐자동차의 가격 및 처리·재활용비용 산정)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가격 및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은 중고부품의 회수, 중고부품을 회수한 후 남은 고철 등으로부터 생기는 이익과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파쇄잔재물, 액상폐기물의 처리비용 및 폐자동차를 모으는 데에 드는 비용 등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와 제25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산정할 수 있다.

제25조(자동차 제조·수입업자의 무상회수 등) ①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가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이어야 한다.

1. 엔진, 변속기, 차체, 차대, 촉매장치, 차바퀴(타이어는 제외한다)가 없는 자동차
2. 자동차 내에 차량의 운행이나 유지관리와 관계없는 폐기물을 고의로 포함시킨 자동차

②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요청한 자에게 무상으로 회수하는 장소 및 방법을 즉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무상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또는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2.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또는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로 구성된 법인
3.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제26조(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이란 별표 7과 같다.

제27조(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법 제27조제3항에서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종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염화불화탄소(CFC)
2.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
3. 수소불화탄소(HFC)
4. 육불화황(SF6)
5. 과불화탄소(PFC)
6. 그 밖에 지구온난화지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제28조(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목적, 사업 범위, 법인의 정관
2.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및 그 밖에 폐자동차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자 등의 참여 약정서

3. 사업자단체의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예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자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제출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폐차업자가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폐자동차를 재사용·재활용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파쇄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인계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파쇄재활용업자가 재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폐자동차를 재활용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파쇄잔재물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가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파쇄잔재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처리와 에너지 회수실적을 제출(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계약 등을 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1.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시설·장비 명세서
3. 시설설치 명세서 및 재활용·처리공정도
4. 수집·운반·재활용·처리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5. 재활용시설 운전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12.30>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청서를 검토하여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2013.12.30>

[제목개정 2013.12.30]

제31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변경등록) 법 제32조제1항 후단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12.30>

1. 대표자 또는 소재지의 변경
2.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후 변경되는 처리용량의 누계를 말한다)
3. 주요 시설의 변경(시설의 변경으로 처리·재활용방법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3.12.30]

제32조(재활용실적 등의 기록·보존) ① 법 제36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13.12.30>

1.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 다음 각 목의 장부
 가.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관리대장
 나.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

다. 재질·구조개선평가대장

1의2.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다음 각 목의 장부

가. 회수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매입·판매 관리대장

나. 회수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회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

2.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대장(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대장 사본)

3.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재활용사업자 :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4. 공제조합 :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회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대장 사본)

5. 자동차폐차업자 : 폐자동차 인수·재활용관리대장

6. 파쇄재활용업자 : 폐자동차 파쇄·재활용관리대장

7.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 파쇄잔재물 인수·재활용관리대장

8. 폐가스류처리업자 :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인수·처리 관리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매체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제33조(보고와 검사 등) 법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3.12.30, 2015.7.13>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의 준수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에 관한 지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3.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의 제공

4의2. 법 제15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의 이행 및 그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부담

5.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5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 기준의 준수

5의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

6. 법 제17조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7. 법 제18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부과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

8. 삭제 <2013.12.30>
8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부과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
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의 준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활용비율 달성을 위한 이행사항
10. 법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11. 법 제27조에 따른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등의 분리·보관 등의 준수
12. 법 제28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적정하게 충당하였는지 여부
13. 법 제31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보고서
14. 법 제36조에 따른 장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14의2.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가 적정하게 작성·제출되었는지 여부
14의3. 제14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전기·전자제품 매출액 또는 수입액
15.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전기·전자제품 출고량
15의2. 제15조의4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전자제품 매출액
15의3.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
15의4.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의 적정 여부
16. 제24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 및 폐자동차의 가격

제34조(운영관리 정보)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3.12.30>
1.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의 제공
3. 법 제17조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4. 법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출·부과와 징수실적 관리
4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산출·부과와 징수실적 관리
5. 법 제31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의 보고
6. 법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6의2. 법 제32조의2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7.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의 작성·제출
8.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별 연간 출고량
8의2. 제15조의4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전자제품 매출액
8의3.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
9. 그 밖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09.12.24, 2011.3.29, 2011.12.30, 2013.12.30, 2015.7.13>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 개선에 관한 지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 확인
3.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의 사실 여부 확인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제공 여부의 확인

4의2. 법 제15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의 이행 및 그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부담 여부 확인

5.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재활용방법 및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6.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체납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7.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강제 징수

7의2. 삭제 <2013.12.30>

7의3. 삭제 <2013.12.30>

8. 법 제25조에 따른 재활용비율의 준수 여부 확인
9. 법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10.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등의 분리·보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파쇄잔재물의 분리·배출 준수 여부 확인
11. 법 제28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재활용비용을 적정하게 충당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12.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보고서의 접수
13. 법 제32조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13의2. 법 제32조의2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14.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의 접수

14의2. 제14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15.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별 출고량의 접수·확인

15의2. 제15조의4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15의3.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전자제품별 매입량 및 판매량의 접수·확인

16.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
17. 제17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승인 및 제출자료의 접수·확인
18.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등의 접수·확인

19. 제19조의2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납부고지 및 이의신청
19의2. 삭제 <2013.12.30>
19의3. 삭제 <2013.12.30>
19의4. 제20조의2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산정, 부과, 납부고지 및 이의신청
20.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조사·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

제36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회계기관) ① 공단의 이사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임명하고,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1.12.30>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과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4>

[제목개정 2011.12.30]

제3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의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독촉 및 강제징수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5.7.13]

[종전 제36조의2는 제36조의3으로 이동 <2015.7.13>]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제출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36조의2에서 이동 <2015.7.13>]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0.1.7]

부칙 <제20480호,2007.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전기·전자제품으로서 설계·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으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이나 기호를 부여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기인증한 자동차 중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되는 자동차 : 2008년 7월 1일
2.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출시(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시험하기 위하여 출시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이 경우 제조·수입업자는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출시하였음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되어 2008년 7월 1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시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 2011년 1월 1일

제3조 (재활용의무율의 산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고시된 재활용의무율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정·고시된 재활용의무율로 본다.

제4조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재활용부과금(전기·전자제품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전기·전자제품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680호,2008.2.29>(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 <제21904호,2009.12.24>(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공사"를 각각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공사의 사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공사"를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의 사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19>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983호,20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제22769호,2011.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63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적용에 관한 한시적 특례)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한 별정통신사업자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동전화단말기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별정통신사업자로 한정한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제239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16>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155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046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의 준수 여부 공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전에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

한다.

제3조(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의 산정·고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7조,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의 산정·고시, 그 재활용의무량·회수의무량의 산출 및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의 산정·고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의 산정·고시는 2014년 1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6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은 2014년 2월 28일까지 할 수 있다.

제5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일 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재활용·회수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의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재활용·회수 부과금의 산정·부과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400호,2015.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도별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의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5제1항·제3항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의 연도별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의 산출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활용실적·회수실적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2015년도의 전기·전자제품군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을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신설 2013.12.30>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제8조제1항 본문 관련)

1. 텔레비전
2. 냉장고
3. 세탁기(가정용으로 한정한다)
4. 에어컨디셔너
5.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6.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 대상으로 한정한다)
7.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 대상으로 한정한다)
8.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 대상으로 한정한다)
9. 전기정수기(냉·온수기를 포함한다)
10. 전기오븐
11. 전자레인지
12. 음식물처리기
13.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를 포함한다)
14. 전기비데
15. 공기청정기
16. 전기히터
17. 오디오(휴대용은 제외한다)
18. 전기밥솥
19. 연수기
20. 가습기
21. 전기다리미
22. 선풍기(환풍기는 제외한다)
23. 믹서(mixer)[주서(juicer)를 포함한다]
24. 청소기
25. 비디오 플레이어[브이시아르(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한다]
26.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

[별표 1의2] <개정 2013.12.30>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전기·전자제품

종류	함유기준
1. 납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미만
2. 수은	
3. 육가크롬	
4.. 폴리브롬화비페닐	
5.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6. 카드뮴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미만

2. 자동차

종류	함유기준
1. 납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 미만
2. 수은	
3. 육가크롬	
4. 카드뮴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01% 미만

비 고: 동일물질이란 나사를 풀거나 절단·압착·파쇄·연마 등 기계적인 방법으로 분리되지 아니하는 플라스틱, 세라믹, 유리, 금속, 합금, 종이, 합성수지 및 이러한 물질을 코팅한 것과 같은 단일 형태의 물질을 뜻한다.

[별표 2] <개정 2013.12.30>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예외(제9조제2항 관련)

1. 전기·전자제품
 가. 납
 1) 유리 내의 납
 가) 음극선관 유리 내의 납
 나) 형광튜브 유리 내의 중량기준 0.2%를 초과하지 않는 납
 2) 합금 성분으로서의 납
 가) 기계가공 목적의 강(steel)에 함유된 중량기준 0.35%를 초과하지 않는 납
 나) 아연도금강(galvanized steel)에 함유된 중량기준 0.35%를 초과하지 않는 납
 다) 알루미늄에 함유된 중량기준 0.4%를 초과하지 않는 납
 라) 동합금(銅合金)에 함유된 중량기준 4%를 초과하지 않는 납
 3) 고온에서 녹는 땜납[solders: 중량기준 85% 이상의 납이 함유된 것으로 주성분이 납인 합금(lead-based alloys)]에 함유된 납
 4) 서버, 기억장치(storage), 기억장치배열시스템(storage array systems), 전자통신을 위한 통신망 관리 및 전환·신호·전송(switching·signalling·transmission)을 위한 통신망 인프라장치(network infrastructure equipment)의 땜납에 함유된 납
 5) 전자 세라믹 부분에 함유된 납
 가) 커패시터(capacitors) 내 비유전체(非誘電體) 세라믹 또는 유리 부분에 납이 함유된 전기·전자부품[예: 압전(壓電) 전자 장치(piezoelectronic devices), 유리 또는 세라믹 매트릭스 콤파운드]
 나) 정격전압 AC 125V 또는 DC 250V 이상의 커패시터 내 유전체 세라믹 부분에 함유된 납
 다) 정격전압 AC 125V 또는 DC 250V 미만의 커패시터 내 유전체 세라믹 부분에 함유된 납: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예비부품(spare parts)에 적용
 라)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s)나 독립된 반도체(discrete

semiconductors)의 일부인 커패시터용으로 유전체 세라믹 물질로 이루어진 티탄산 지르콘산 연(PZT: Lead zirconate titanate)에 함유된 납: 2016년 7월 21일까지 적용

6) 시-프레스(c-press) 컴플라이언트 핀 커넥터 시스템(compliant pin connector system) 등에 사용되는 납

가) 시-프레스 컴플라이언트 핀 커넥터 시스템에 사용되는 납: 2010년 9월 24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예비부품에 적용

나) 시-프레시 컴플라이언트 핀 커넥터 시스템 외의 시스템에 사용되는 납: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예비부품에 적용

7) 열전도 모듈 시-링(c-ring)의 코팅제로서의 납: 2010년 9월 24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예비부품에 적용

8) 광학유리 및 필터유리에 사용되는 납

가) 광학적 적용을 위하여 사용된 백(白)유리 내의 납

나) 필터유리와 반사기준으로 사용된 유리 내의 납

9)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핀과 패키지를 연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2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되는 땜납(중량기준 80% 이상 85% 미만의 납이 함유된 것으로 주성분이 납인 합금)에 함유된 납: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예비부품에 적용

10) 통합회로 초소형 반도체 소자(플립 칩 패키지) 내 반도체 다이(semiconductor die)와 반송자(carrier)의 전기적 연결을 완성하도록 하는 땜납에 함유된 납

11) 전문 복사기술 장비에 사용되는 고강도 방전(HID: High Intensity Discharge) 램프 내의 발광체로 쓰이는 납 할로겐화물

12) 비에스피[BSP($BaSi_2O_5$: Pb)]와 같은 인광체가 포함된 선탠램프로 사용되는 방전램프를 채우는 형광 파우더 내의 활성제로 사용되는 납(중량기준 1% 이하)

13) 붕규산염과 소다석회 유리의 에나멜 코팅용 인쇄잉크에 사용되는 납

14) 0.65㎜ 이하인 연결자(connectors)를 제외한 미세 피치(pitch) 부품 마감재에 함유된 납: 2010년 9월 24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예비부품에 적용

15) 원반형 및 평면형 배열(array) 세라믹 적층 커패시터의 구멍을 통하

여 기계를 납땜(soldering)하기 위한 땜납 내의 납

16) 봉합 프릿(seal frit), 프릿 링(frit ring)과 같은 구조적 요소에 사용되는 에스이디(SED: surface conduction electron emitter displays) 산화납

17) 난방, 환기, 공조 및 냉각(HVACR: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적용을 위한 냉매 포함 압축기(refrigerant-containing compressors)에 대한 베어링 셸(bearing shells)과 부시류(bushes)에 포함된 납

18) 크리스털유리에 포함된 납

19) 무수은 평판형광램프[mercury free flat fluorescent lamps, (예: LCD 패널, 설계 또는 산업용 조명에 사용되는 램프)의 납땜 재질 내의 납

20) 아르곤과 크립톤 레이저 튜브의 유리 판막 조립(window assemblies)에 사용되는 봉합 프릿 내의 산화납

21) 전기변압기(power transformers) 내 지름 100㎛ 이하의 얇은 구리선의 납땜을 위한 땜납 내의 납

22) 도성합금(陶性合金)을 기반으로 한 트리머 퍼텐쇼미터(cermet-based trimmer potentiometer) 내의 납

23) 아연붕산염 유리체를 기본으로 한 고전압 다이오드(high voltage diodes)의 평판층 내의 납

나. 수은

1)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단일덮개가 씌워진(콤팩트형) 형광램프 내의 수은(버너 1개당)

가) 일반전구용 30W 미만: 2.5㎎

나) 일반전구용 30W 이상 50W 미만: 3.5㎎

다) 일반전구용 50W 이상 150W 미만: 5㎎

라) 일반전구용 150W 이상: 15㎎

마) 일반전구용 원형 또는 정사각형 형태의 튜브 지름 17㎜ 이하: 7㎎

바) 특수용도용: 5㎎

2) 다음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목적의 직선 형광램프 내의 수은

가)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이중덮개가 씌워진 일반용 직선 형광램프 내의 수은(램프 1개당)

(1) 평균수명의 3파장 인광체(Tri-band phosphor) 및 튜브 지름 9㎜ 미만(예: T2): 4㎎

(2) 평균수명의 3파장 인광체 및 튜브 지름 9㎜ 이상 17㎜ 이하(예: T5): 3㎎

(3) 평균수명의 3파장 인광체 및 튜브 지름 17㎜ 초과 28㎜ 이하(예: T8): 3.5㎎

(4) 평균수명의 3파장 인광체 및 튜브 지름 28㎜ 초과(예: T12): 3.5㎎

(5) 긴 수명(25,000시간 이상)의 3파장 인광체: 5㎎

나)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형의 형광램프 내의 수은(램프 1개당)

(1) 비-직선형 할로포스페이트(halophosphate) 램프(모든 지름): 15㎎(2016년 4월 12일까지 적용)

(2) 튜브 지름 17㎜ 초과인 비-직선형 3파장 인광체 램프(예: T9): 15㎎

(3) 그 밖의 유형의 일반용 또는 특수용 램프(예: 유도전구): 15㎎

3)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특수용 냉음극형 형광램프와 외부전극형 형광램프(CCFL, EEFL 등) 내의 수은

가) 짧은 길이(500㎜ 이하): 3.5㎎

나) 중간 길이(500㎜ 초과 1,500㎜ 이하): 5㎎

다) 긴 길이(1,500㎜ 초과): 13㎎

4)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램프에 함유된 수은

가) 저압방전램프 내의 수은(램프 1개당): 15㎎

나) 일반용으로서 연색성 지수(colour rendering index) Ra가 60 초과인 고압나트륨(증기) 램프[High Pressure Sodium(vapour) lamps] 내의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수은(버너 1개당)

(1) $P \leq 155$ W: 30㎎

(2) $155 \text{ W} < P \leq 405$ W: 40㎎

(3) $P > 405$ W: 40㎎

다) 그 밖의 일반용 고압나트륨(증기) 램프[High Pressure Sodium(vapour) lamps] 내의 아래 조건을 초과하지 않는 수은(버너 1개당)

(1) P ≤ 155 W: 25㎎

(2) 155 W < P ≤ 405 W: 30㎎

(3) P > 405 W: 40㎎

라) 고압수은(증기) 램프[High Pressure Mercury(vapour) lamps: HPMV] 내의 수은: 2015년 4월 12일까지 적용

마) 금속할라이드램프(Metal Halide lamps: MH) 내의 수은

바)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특수용 방전램프 내의 수은

다. 육가크롬

냉각액(cooling solution)의 중량기준 0.7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흡수식 냉각기 내의 탄소강 냉각시스템의 부식방지제로서의 육가크롬

라. 카드뮴

1) 전기접촉용 및 도금용 도료의 카드뮴과 그 화합물

가) One shot pellet 타입의 열 차단용으로 사용되는 카드뮴과 그 화합물: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예비부품에 적용

나) 전기적 접촉용으로 사용되는 카드뮴과 그 화합물

2) 필터유리와 반사기준으로 사용된 유리 내의 카드뮴

3) 붕규산염과 소다석회 유리의 에나멜 코팅용 인쇄잉크에 사용되는 카드뮴

4) 100dB(A) 이상 음압 레벨의 고출력 확성기(loudspeakers)에 사용된 변환기(transducers) 내 보이스 코일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전기전도체 전기·기계적 납땜을 위한 땜납에 함유된 카드뮴 합금

5) 산화베릴륨이 결합된 알루미늄에 사용된 두꺼운 필름 페이스트 내의 카드뮴과 산화카드뮴

6) 고체상 조명(solid state illumination) 또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색 변환 II-VI LED(<10㎍ Cd/mm2 light-emitting area 미만) 내의 카드뮴: 2014년 6월 30일까지 적용

마. 이동전화단말기의 전지

바.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제조되어 온 전기·전자제품(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것에 한정한다)을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

사.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제조되어 온 전기·전자제품(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것에 한정한다)을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이지만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출시된 전기·전자제품의 수리에 사용되는 부분품·부속품

아. 의료용 전기·전자제품 중 컴퓨터, 프린터 및 냉장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자.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질 및 부품

2. 자동차

가. 납

1) 합금 성분으로서의 납

가) 가공 목적의 철과 아연도금 철

(1) 기계가공 목적의 강(steel)에 함유된 중량기준 0.35%를 초과하지 않는 납

(2) 회분식(回分式) 용융아연도금 강(batch hot dip galvanized steel)에 함유된 중량기준 0.35%를 초과하지 않는 납

(3) 연속 아연도금강판(continuously galvanized steel sheet)에 함유된 중량기준 0.35%를 초과하지 않는 납: 2016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되는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에만 적용

나) 알루미늄에 함유된 중량기준 0.4%를 초과하지 않는 납

다) 엔진, 트랜스미션, 공조 컴프레서(air conditioning compressors) 내의 베어링 셀에 함유된 납: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에 적용

라) 구리합금에 함유된 중량기준 4%를 초과하지 않는 납

2) 부품 내의 납과 납 혼합물

가) 축전지(batteries)

나) 진동감쇄장치(vibration dampers): 2016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되는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에 적용

다) 파워트레인용 고무류(elastomers)의 접착제에 함유된 중량기준 0.5%를 초과하지 않는 납: 2009년 7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에 적용

라) 전자회로기판에 전기 또는 전자부품을 접합하는 땜납 내의 납과 전해질 알루미늄 커패시터(electrolyte aluminium capacitors)가 아닌 부품, 부품 핀 및 전자회로기판에 적용하는 마감재 내에 함유된 납: 2016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되는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에 적용

마) 전기회로기판 또는 유리에 적용하는 납땜이 아닌 다른 전기적 용도로 사용되는 땜납 내의 납: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에 적용

바) 전해질 알루미늄 커패시터의 터미널 마감재에 함유된 납: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에 적용

사) 대량의 기류센서(mass airflow sensors)의 유리 납땜에 사용되는 납: 2015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되는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에 적용

아) 고 용융점 타입 땜납(중량기준 85% 이상의 납이 함유된 것으로 주성분이 납인 합금) 내의 납

자) 컴플라이언트 핀 커넥터 시스템 내의 납

차) 통합회로 플립 칩 패키지 내의 반도체 다이와 반송자의 전기적 연결을 완성하도록 하는 땜납 내의 납

카) 전력 반도체 어셈블리에서 히트 스프레더(heat spreader)를 히트 싱크(heat sink)와 접합시키기 위한 땜납 내의 납[실리콘 칩의 투시 면적이 $1cm^2$ 이상, 명목 전류밀도가 단위 실리콘 칩 면적(mm^2)당 1A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타) 합판유리의 납땜이 아닌 경우로서 유리의 전기유약용 납땜(electrical glazing applications)에 사용된 땜납 내의 납: 2016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되는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에 적용

파) 합판유리의 납땜에 사용된 땜납 내의 납

하) 다음의 부분에 납이 함유된 전기·전자제품. 다만, 전구용 유리나 점화플러그용 유약 또는 거)부터 더)까지의 유전체 세라믹 부분에 함유된 납은 제외한다.

(1) 유리 또는 세라믹

(2) 유리 또는 세라믹 매트릭스 콤파운드(glass or ceramic matrix compound)

(3) 유리-세라믹 재료

(4) 유리-세라믹 매트릭스 콤파운드(glass-ceramic matrix compound)

거) 집적회로나 독립된 반도체의 일부인 커패시터용으로 유전체 세라믹 물질로 이루어진 티탄산 지르콘산 연(PZT: Lead zirconate titanate)에 함유된 납

너) 정격전압 AC 125V 또는 DC 250V 미만의 커패시터 내 유전체 세라믹 부분에 함유된 납: 2016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되는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에 적용

더) 초음파탐지시스템(ultrasonic sonar systems) 내 센서의 온도편차를 보정하는 커패시터의 유전체 세라믹 재료에 함유된 납

러) 배기열 회수를 통한 CO_2 저감 목적의 자동차용 열전(熱電) 재료에 함유된 납: 2019년 1월 1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되는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에 적용

나. 수은

1) 전조등에 사용되는 방전램프: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에 적용

2) 계기판 표시장치에 사용되는 형광튜브: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에 적용

다. 육가크롬

냉각액의 중량기준 0.7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냉각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캠핑용 차량의 흡수식 냉각기 내의 탄소강 냉각시스템의 부식방지제로서의 육가크롬(환경, 보건 및 소비자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

라. 카드뮴

전기자동차용 축전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에 적용

마.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것에 한정한다)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

바.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것에 한정한다)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이지만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 출시된 자동차의 수리에 사용되는 부분품·부속품

사. 가목 및 라목 중 적용기한이 설정된 부분품·부속품의 경우 적용기한까지 출시된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부속품

아.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된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나목의 부분품·부속품

자.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질 및 부품

[별표 3] <개정 2013.12.30>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등(제14조 본문 및 제15조의3 분문 관련)

제품군	대상 제품
1. 대형기기	가. 텔레비전 나. 냉장고 다. 세탁기(가정용으로 한정한다) 라. 에어컨디셔너 마. 자동판매기
2. 통신·사무기기	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나.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 대상으로 한정한다) 다.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 대상으로 한정한다) 라.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구조개선 대상으로 한정한다)
3. 중형기기	가. 전기정수기(냉·온수기를 포함한다) 나. 전기오븐 다. 전자레인지 라. 음식물처리기 마.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를 포함한다)
4. 소형기기	가. 전기비데 나. 공기청정기 다. 전기히터 라. 오디오(휴대용은 제외한다) 마. 전기밥솥 바. 연수기 사. 가습기 아. 전기다리미 자. 선풍기(환풍기는 제외한다) 차. 믹서(주서를 포함한다) 카. 청소기

	타. 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아르(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한다]
5. 이동전화단말기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

※ 비고: 대상 제품의 범위

1. 텔레비전: 브라운관(CRT) 텔레비전, 리퀴드 크리스털 디스플레이(LCD) 텔레비전,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텔레비전 등 그 화면표시장치와 관계없이 영상제공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2. 냉장고: 김치냉장고·화장품냉장고 등 그 용도와 관계없이 냉장 또는 냉동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3. 세탁기: 건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세탁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4. 에어컨디셔너: 벽걸이형·스탠드형 등 그 구조나 공기정화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실내 냉방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5. 자동판매기: 일정 액수의 돈을 직접 투입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6. 개인용 컴퓨터: 노트북형·데스크탑형 등 그 구조와 관계없이 논리적 연산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7. 프린터: 잉크젯·레이저 등 그 방식이나 복사·팩시밀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프린터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8. 복사기: 컬러식·디아조식 등 그 방식이나 프린터·팩시밀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복사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9. 팩시밀리: 프린터·복사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정지영상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여 통신채널을 통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10. 전기정수기: 냉온수기·이온수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물을 깨끗하게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11. 전기오븐: 밀폐기구 내의 가열된 공기와 벽의 방사열 등을 이용하여 식품을 가열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12. 전자레인지: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식품을 가열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13. 음식물처리기: 건조식·분쇄식·냉동식 등 그 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음식물쓰레기의 보관·처리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14. 식기건조기: 소독·살균·건조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식기를 자동으로 세척 또는 건조하는 기능을 지니고 것
15. 전기비데: 욕실·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위생기구로서 냉온수 분사를 통하여 항문 등을 세정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16. 공기청정기: 정화 방식과 가습·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공기 중 세균이나 분진 등을 여과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17. 전기히터: 열원 및 가열방식 등과 관계없이 실내 난방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18. 오디오: 전축·라디오 등 음향재생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19. 전기밥솥: 전기 저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밥을 조리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20. 연수기: 경수에 들어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양이온을 제거하여 연수를 만드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21. 가습기: 기화식·가열식 등 그 방식이나 공기청정·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공기 중에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22. 전기다리미: 열과 압력을 가하여 옷·섬유의 구겨진 주름살을 펴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23. 선풍기: 전동기를 이용하여 바람을 일으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24. 믹서: 종류나 용도와 관계없이 재료를 갈거나 이겨서 가루 또는 즙을 내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25. 청소기: 전력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청소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26. 비디오플레이어: 전기 녹화장치로서 자기테이프 및 디지털저장장치에 텔레비전 등의 영상을 기록하고 재생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27. 이동전화단말기: 무선기지국을 이용하여 일반 전화 가입자나 다른 이동통신 전화 가입자와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별표 3의2] <신설 2013.12.30>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1차 연도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은 전기·전자제품의 출고량·수입량·판매량, 제품의 내구연수,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예상발생량·분리수거량·재사용량, 분리수거 체계, 회수실적 및 재활용실적, 재활용시설 규모, 재활용기술의 개발 상황 등 회수 및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하 "회수 및 재활용 요인"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2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전년도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장기 재활용목표량 − 전년도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장기 재활용목표량 반영계수] × (1 + 조정계수)

 ※ 비고

 1) "장기 재활용목표량 반영계수"란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에 반영하는 정도를 말하며, 다음 표와 같다.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	1/4	1/3	1/2	1

 2) "조정계수"란 회수 및 재활용 요인을 고려하여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조정하는 정도를 말하며, −0.05부터 +0.05까지로 한다.
3. 환경부장관은 경제 상황의 변동, 천재지변 등 회수 및 재활용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해당 연도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을 줄일 수 있다.

[별표 3의3] <신설 2015.7.13.>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산출(제15조의2제2항 관련)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인구수 × 의무이행 전년도 모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총 가중치적용 출고량 중 의무이행 전년도 해당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군별 가중치적용 출고량 비율

※ 비고

1. 제품군별 가중치는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품군별로 0.5 이상 1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2. 제품군별 가중치적용 출고량은 제품군별 출고량에 제품군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별표 4] <개정 2015.7.13.>

전기·전자제품군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의 인정기준(제18조제2항 관련)

1. 별표 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군 내에서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은 제품별로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인정한다.
2. 별표 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군 내에서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하거나 회수한 경우 그 제품군의 초과된 재활용량 또는 회수량은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제품군의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실적의 인정 범위는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제품군의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정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동전화단말기는 그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하거나 회수한 경우에도 다른 제품군의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4.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 또는 회수체계 구축 관련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등을 통하여 재활용하거나 회수한 수량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표 5] <개정 2013.12.30>

전기·전자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1. 2016년 이후의 전기·전자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은 다음과 같다.

제품군	재활용 단위비용	회수 단위비용
가. 대형기기	kg당 274원	kg당 102원
나. 통신·사무기기	kg당 433원	kg당 108원
다. 중형기기	kg당 424원	kg당 107원
라. 소형기기	kg당 580원	kg당 111원
마. 이동전화단말기	kg당 2,717원	kg당 2,162원

2. 2014년 및 제2015년의 전기·전자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은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소수점 이하 버림)한 금액으로 한다.

가. 2014년: 제1호에 따른 금액 × 0.8

나. 2015년: 제1호에 따른 금액 × 0.9

[별표 6] <개정 2011.12.30>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의5제1항 관련)

구분	5% 이하	5% 초과 15% 이하	15% 초과 30% 이하	30% 초과
재활용 의무량 미이행 가산금액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 ×15/100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 ×20/100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 ×25/100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 ×30/100
회수 의무량 미이행 가산금액	회수부과금 기준비용×회수 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수량 ×15/100	회수부과금 기준비용×회수 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수량 ×20/100	회수부과금 기준비용×회수 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수량 ×25/100	회수부과금 기준비용×회수 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수량 ×30/100

[별표 6의2] 삭제 <2013.12.30>

[별표 7] <개정 2013.12.30>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제26조 관련)

1. 자동차폐차업자

가. 폐자동차의 해체, 부품의 회수, 회수한 부품의 수리·세척 및 보관은 지붕과 벽으로 차단된 실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油類)의 누출 등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축전지 및 액화 가스탱크는 제거하여야 한다.

다. 잠재적 폭발 가능 부품(에어백 등)은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야 한다.

라. 연료, 오일류, 부동액(냉각수 포함) 등 액상물질 및 그 폐기물은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마.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은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바. 촉매장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사. 타이어, 연료통 및 범퍼 등 대형 합성수지제품은 제거하여야 한다.

아.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은 최대한 회수하여 재사용하여야 한다.

자. 폐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액상물질은 제거·회수하여야 하며, 빗물 등으로 인하여 토양에 스며들지 않도록 실내에 보관하고 작업장 바닥은 포장하여야 한다.

차. 액상폐기물 등 그 밖의 폐기물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2. 파쇄재활용업자

가. 폐자동차는 파쇄하여 철, 비철금속류와 파쇄잔재물을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파쇄잔재물은 재활용과 에너지회수를 위하여 폐자동차와 관련이 없는 다른 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파쇄잔재물은 재활용 용도와 에너지회수 용도로 구분하여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라. 분리된 파쇄잔재물은 빗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침출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작업장 바닥이 포장되고 파쇄잔재물이 바람에 흩날리지 않는 보관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마. 액상폐기물 등 그 밖의 폐기물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3.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가. 파쇄잔재물은 단위 중량기준으로 전력·증기·가스·금속·고형연료제품 등의 에너지회수 및 철·비철금속 등의 재활용을 하는 경우 그 에너지회수율 및 재활용률(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이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파쇄잔재물 재활용률 = (회수물질 + 회수에너지)/(투입물질 + 투입에너지)

※ 비고

1) 회수에너지는 전력, 증기, 가스, 고형연료제품 등이 있으며, 총 회수에너지의 저위 발열량을 환산지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2) 환산지수는 "파쇄잔재물의 저위 발열량/[1 - 파쇄잔재물의 회분(灰分)]"으로 산정한다.

3) 회수물질은 슬래그, 금속, 플라스틱 재활용제품 등이 있으며, 회수중량 그대로 산정한다.

4) 투입에너지는 파쇄잔재물과 그 밖의 투입에너지의 총 저위 발열량을 환산지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5) 투입물질은 파쇄잔재물의 불연분 등이 있으며 투입중량 그대로 산정한다.

6) 파쇄잔재물을 에너지회수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가) 파쇄잔재물 중 폐플라스틱류만을 선별하여 열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제품의 사용시설 및 준수사항 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다.

나) 파쇄잔재물 열회수 후 발생하는 재 등은 환경적으로 무해한 형태로 안정화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나. 액상폐기물 등 그 밖의 폐기물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4. 폐가스류처리업자

가. 자동차폐차업자로부터 충전용 용기에 보관된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인수할 때에는 회수용기의 상태, 회수중량 및 누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누출 시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이 들어있는 충전용 용기는 항상 40℃ 이하로

유지하면서 보관 시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회수, 운반, 보관, 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자동차폐차업자로부터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이 충전된 충전용 용기를 인수한 후에 자동차폐차업자에게 용기를 다시 제공할 때에는 용기 내에 잔류물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소각 또는 산화·분해 등의 반응을 이용하여 분해율(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이 99.9% 이상이 되도록 처분하여야 한다.

분해율 =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투입량 -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배출량)/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투입량] × 100

※ 비고

가)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투입량은 처분을 위하여 시설에 투입한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중량을 말한다.

나)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배출량은 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중량(배출가스 중의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농도와 건조 배출가스 유량으로부터 산출)을 말한다.

2)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재생냉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KS I 3004 품질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재활용 후 발생하는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잔여분은 처분시설에서 파괴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액상폐기물 등 그 밖의 폐기물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별표 8] <개정 2013.12.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로 이 법의 의무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물질	법 제45조제1항	3,000	3,000	3,000

의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나.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활용가능률을 지키지 않고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법 제45조제2항제1호	2,000	2,000	2,000
다.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 사용제한을 확인하지 않거나 재활용가능률을 평가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법 제45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5조제3항제1호	1,000	1,000	1,000
라.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이나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경우	법 제45조제5항제1호			
1) 고의로 공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경우		50	80	100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표하지 않은 경우		30	50	80
3) 그 밖의 경우		20	30	50
마.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3항제2호	1,000	1,000	1,000
바.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5항제2호			
1)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	80	100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	50	80
3) 그 밖의 경우		20	30	50
사. 법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보관 및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3항제2호의2	300	500	1,000
아.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인계의무를 이행하	법 제45조제4항제1호	100	200	300

지 않은 경우				
자. 법 제16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소를 지정하지 않거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5항 제3호			
1) 수집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50	80	100
2)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		30	50	80
차. 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4항 제2호	100	200	300
카. 법 제17조(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5항 제4호			
1)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80	100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	50	80
3) 그 밖의 경우		20	30	50
타.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상회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2호	2,000	2,000	2,000
파.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활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3호	2,000	2,000	2,000
하.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4호	500	1,000	2,000
거.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3항 제3호	300	500	1,000
너.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파쇄잔재물을 분리·배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3항 제4호	300	500	1,000

더.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활용결과보고서나 재활용·에너지회수·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5항 제5호			
1)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80	100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	50	80
3) 그 밖의 경우		20	30	50
러.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한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5호	500	1,000	2,000
머. 법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폐가스류처리업을 한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5호의2	500	1,000	2,000
버.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5조제2항 제6호	500	1,000	2,000
서.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4항 제3호			
1)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80	150	200
3) 그 밖의 경우		50	80	100
어.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45조제5항 제6호			
1)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50	80	100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	50	80
저.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보고·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5항 제7호			
1) 고의로 보고·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80	100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제출하지		30	50	80

않은 경우				
3) 그 밖의 경우		20	30	50
처.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관리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5조제5항 제8호			
1) 고의로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우		50	80	100
2) 정당한 사유 없이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우		30	50	80
3) 그 밖의 경우		20	30	5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7.21] [환경부령 제00607호, 2015.7.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회수 기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회수효율(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60퍼센트 이상일 것
2. 회수열을 모두 열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제3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①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전기·전자제품의 출고량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5.7.20>

1. 삭제 <2013.12.31>
2. 결산보고서 등 전기·전자제품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
3. 전기·전자제품의 중량산출 기초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3.12.31> [제목개정 2013.12.31]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3.12.31>]

제5조(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재활용할 때 따라야 할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31>

[제목개정 2013.12.3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3.12.31>]

제5조의2(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5.7.20]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5.7.20>]

제5조의3(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① 영 제15조의5제2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전년도 전기·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회수의무 대상 제품 매입·판매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1. 결산보고서 등 매출액과 전기·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회수 대상 전기·전자제품별 매입 및 판매 산출 기초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본조신설 2012.1.3]

[제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4로 이동 <2015.7.20>]

제5조의4(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사용 방법) 법 제16조의4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수리·수선 또는 세척 등의 가공을 거쳐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등 원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12.31]

[제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4는 제5조의5로 이동 <2015.7.20>]

제5조의5(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3, 2013.12.31>

[제5조의4에서 이동 <2015.7.20>]

제6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① 영 제16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5.7.20>

1.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1부

2.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운반계획서 1부
3. 영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4. 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사본 1부
5.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수탁자가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인계받는 주요 지점 또는 사업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② 영 제16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와 공제조합이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1.3, 2013.12.31, 2015.7.20>

1.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인계계획서 1부
2. 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사본 1부
3.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제목개정 2012.1.3]

제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 승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며, 회수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3>

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2.1.3, 2013.12.31>

1. 재활용 또는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2.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방법
3. 재활용사업자

[제목개정 2012.1.3]

제8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5.7.20>

1. 제5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1부
2.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회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 1부
3. 회수·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4.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②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이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1.3, 2013.12.31, 2015.7.20>

1.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회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 1부
2. 회수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실적 증명서류
3.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부

[제목개정 2012.1.3]

제9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영 제19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31>

[제목개정 2013.12.31]

제10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19조의2제3항 후단 및 제20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2회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영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영 제20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은 1회분은 해당 연도 7월 20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20일까지로 한다.<개정 2013.12.31>

③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8조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본조신설 2012.11.1]

[제목개정 2013.12.31]

제11조(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 부과금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7.20]

제11조의2

[제11조의2는 제5조의2로 이동 <2013.12.31>]

제11조의3 삭제 <2013.12.31>

제1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2조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1.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2.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합원수와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3.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4. 다른 공제조합과 명칭이 구별되는지 여부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2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7.20>

1. 정관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내용(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제조합에만 해당한다)

제12조의2(인가의 취소) 법 제22조의3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7.20]

제13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절차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인가하여야 한다.

1.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
2.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직과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3.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4. 다른 재활용단체 등과의 명칭이 구별되는지 여부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⑤ 법 제30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내용(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체만 해당한다)

제14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등) 자동차폐차업자 등이 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제출할 재활용결과보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폐차업자의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 별지 제14호서식
2. 파쇄재활용업자의 재활용결과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3.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 : 별지 제16호서식
4. 폐가스류처리업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 : 별지 제17호서식

제15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2조 또는 제32조의2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신청서에 영 제3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② 공단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그 내용(재활용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내용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3, 2013.12.31>

[제목개정 2013.12.31]

제16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32조제1항 전단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3.12.31]

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행정처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량은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의 승계신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1.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원본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별로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목개정 2013.12.31]

제19조(재활용실적 등의 기록·보존) 영 제32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의 제조·수입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3, 2013.12.31>

1.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서식

1의2. 회수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매입·판매관리대장 : 별지 제22호의2서식

2. 회수·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3호서식
3. 재질·구조개선평가대장 : 별지 제24호서식
4. 폐자동차 인수·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5호서식
5. 폐자동차 파쇄·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6호서식
6. 파쇄잔재물 인수·재활용관리대장 : 별지 제27호서식
7.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인수·처리관리대장 : 별지 제28호서식

제20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출고량 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2.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2014년 1월 1일
3. 제6조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4. 제16조 및 별표 3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19조에 따른 재활용실적 등의 기록·보존 서식: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4.30]

부칙 <제268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로 본다.

제3조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구비서류란의 앞 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뒤 쪽 처리기관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442호,2012.1.3>

이 규칙은 201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호,201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50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534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청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호,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07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감경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5.7.20.>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제5조 관련)

제품군	재활용의 방법	재활용의 기준	
		공통 기준	제품군별 기준
1. 대형기기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가능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폐전기·폐전자제품 인쇄회로기판(PCBs)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등 안전하게 재활용하여야 한다.	가. 냉장고, 에어컨디셔너 및 자동판매기는 염화불화탄소(CFC) 등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안전하게 따로 회수하여 분리·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대당 중량기준으로 텔레비전[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LCD)텔레비전 및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텔레비전은 제외한다]은 65퍼센트 이상, 냉장고 및 자동판매기는 70퍼센트 이상, 세탁기 및 에어컨디셔너는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2. 통신·사무기기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대당 중량기준으로 개인용 컴퓨터는 65퍼센트 이상, 프린터, 복사기 및 팩시밀리는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3. 중형기기			가. 전기정수기는 염화불화탄소 등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안전하게 따로 회수하여 분리·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대당 중량기준으로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4. 소형기기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대당 중량기준으로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이동전화단말기			가. 이동전화단말기의 전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7호의 전지류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대당 중량기준으로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1의2] <신설 2015.7.20.>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 기준(제5조의2 관련)

1. 회수·분리 기준

가. 냉장고, 에어컨디셔너, 자동판매기 및 전기정수기 등의 회수 동관에 회수구를 접합할 경우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종류를 확인하여 같은 회수 용기에 서로 다른 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은 회수구의 압력 값이 음압 이하가 되도록 흡인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다. 회수 후에는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회수 용기의 밀봉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종류별 회수량을 재활용 일자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2. 보관 기준

가.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보관 용기는 충전 완료된 용기, 충전 중인 용기, 빈 용기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충전 완료된 용기 및 충전 중인 용기는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명 및 보관 장소를 표시하여 물질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보관 장소는 보관 용기의 하중을 견딜 수 있으며,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바닥이 포장되어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한다. 이 경우 충분한 면적을 가진 두 방향 이상의 개구부가 설치되어 환기가 양호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보관 장소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보관 장소에는 온도계를 설치하여 보관 온도를 항상 40℃ 이하로 유지하되,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처리 기준

가.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운반할 경우에는 용기가 전도 등에 의한 충격을 받거나 밸브가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5.7.20.>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제5조의5 관련)

1. 같은 종류의 제품의 범위는 영 별표 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별로 각각 구분한다.
2. 제품의 연식, 크기, 용량, 가격, 구조, 용도 등과 상관없이 제1호에 따른 구분에 따른다.
3.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 또는 국외에서 수입된 제품이거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달라도 제1호에 따른 구분에 따른다.
4. 폐기물이 된 제품이 파손된 경우, 제품의 주요부품 등이 없는 경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도 제1호에 따른 구분에 따른다.

[별표 2의2] <신설 2015.7.20.>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

(제11조제1항 관련)

1. 지원 대상 사업자: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재활용체계 및 회수체계 구축에 기여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부과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가. 법 제15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한 물질을 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자
 나. 법 제15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
 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
 라. 법 제21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2.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감경 기준

감경 대상자	감경금액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해당 재활용한 물질을 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20% 이내(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나. 제1호나목부터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비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무상으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한 경우	[해당 회수체계의 구축·운영에 지출한 비용 - (해당 회수체계의 제품군별 회수실적 × 제품군별 재활용 단위비용)]의 100% 이내(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다. 제1호나목부터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수거함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해당 회수체계 구축에 지출한 비용의 50% 이내(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라. 제1호나목부터 라목의	해당 시설 지원 등에 지출한 비용의 100% 이내(해당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업체에 냉매 회수 시설 등을 신규로 지원하는 경우	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마. 제1호나목부터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용역 또는 재활용·회수체계 구축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용역 수행에 지출한 비용의 50% 이내(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한다)

※ 비고

1. 폐전기·폐전자제품 수거 활성화, 재활용 원료 사용 및 재활용촉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2. 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을 감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 여부 및 구체적인 감경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3. 감경 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에서 감경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다.

[별표 3] <개정 2013.12.31>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제16조 관련)

구 분		시 설 명	확보기준
1. 폐자동차 재활용업	가. 파쇄재활용업	1) 투입시설 2) 파쇄시설(25센티미터 이하로 파쇄할 수 있는 시설) 3) 이송시설 4) 선별시설(철금속과 비철금속을 선별할 수 있는 시설) 5) 보관시설 6) 계량시설(50톤 이상 계량할 수 있는 시설)	각 1식 이상
	나. 파쇄잔재물재활용업	1) 필수시설 가) 투입시설 나) 이송시설 다) 선별시설 라) 보관시설 마) 계량시설	각 1식 이상
		2) 선택시설 가) 에너지회수시설(제2조에 따른 에너지회수기준을 지킬 수 있는 시설) 나)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에 맞게 제조할 수 있는 시설) 다) 유류 제조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2)나)에 따른 정제연료유의 기준에 맞게 제조할 수 있는 시설) 라) 그 밖에 신기술의 개발 등으로 파쇄잔재물을 재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1식 이상
2. 폐가스류처리업		1) 필수시설 가) 이송·투입시설 나) 보관시설	각 1식 이상

	다) 계량시설 라) 수집·운반차량(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폐가스류처리업자는 자동차폐차업자의 시설에 폐가스류 회수기 및 회수용기를 설치하여 폐가스류가 적정하게 회수·보관·운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선택시설 가) 처분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나) 재활용시설[영 별표 7 제4호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한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및 순도검사설비(한국산업규격 KS I 3004의 시험방법에 따라 회수용기에 담긴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의 종류 및 품질을 분석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1식 이상

[별표 4] <개정 2013.12.31>

행정처분의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을 하려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34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다.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라.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마.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5호	등록취소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7.4>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여부 확인·평가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1쪽)

공표자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제품정보	①제품의 종류	제품명(규격)
	②세부모델명(번호)	최초출시일
	제품의 중량	③제조·수입업자

당사는 위 []전기·전자제품이 / []자동차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확인·평가한 결과

[]준 수
[]미준수

하였음을 공표합니다.

년 월 일

공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① 제품의 종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②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모델명(번호), 자동차의 경우 제원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확인·평가서 작성	→	공표	→	조사
제조·수입업자		제조·수입업자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210㎜×297㎜[백상지 80g/㎡]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준수 여부 확인·평가서

(제2쪽)

공표자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제품정보	① 차량의 종류	차량명
	② 세부모델명(번호)	최초출시일
	제품의 중량	③ 제조·수입업자

재활용가능률 및 에너지회수가능률 기준	재활용가능률	%
	에너지회수가능률	%

당사는 위 자동차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확인·평가한 결과 ([]준수, []미준수)하였음을 공표합니다.

년 월 일

공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①제품의 종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품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②제원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③해당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확인·평가서 작성	→	공표	→	조사
제조·수입업자		제조·수입업자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210㎜×297㎜[백상지 80g/㎡]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7.20.>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 실적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자료 제출내용	①제품군	②출고량(수입량)		③연간 전기·전자제품 총 매출액	비고
		출고(수입)대수	출고(수입)량(kg)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출고·수입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구비서류	1. 결산보고서 등 전기·전자제품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2. 전기·전자제품의 중량산출 기초자료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출고·수입 실적서 작성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 접 수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확인·조사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작성요령

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② 개별 품목별 출고대수와 출고된 제품별 실제 총 중량을 제품군으로 합산하여 적습니다.

③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연간 총 매출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5.7.20.>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매입·판매 실적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자료 제출내용	①제품군	②판매량(매입량)				③연간 전기·전자제품 총 매출액
		판매대수	판매량(kg)	매입대수	매입량(kg)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매입·판매 실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구비서류	1. 결산보고서 등 매출액과 전기·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회수대상 전기·전자제품별 매입 및 판매 산출 기초자료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매입·판매 실적서 작성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 접 수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 확인·조사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작성요령

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② 개별 품목별 판매/매입대수와 판매/매입된 제품별 실제 총 중량을 제품군으로 합산하여 적습니다.

③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연간 총 매출액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7.20.>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개월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의무대상 제품		회수·인계 및 재활용계획							
				위탁비용 지원계획					
				회 수		인 계		재활용	
①제품군	②제품명	③회수 및 인계 방법	④재활용 방법 및 기준	⑤수탁자	⑥지원 단가(원)	⑤수탁자	⑥지원 단가(원)	⑤수탁자	⑥지원 단가(원)
⑦회수·인계·재활용 의무이행 확인 방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합니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1부 2.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운반·인계계획서 1부 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4. 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사본 1부 5.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작성요령

①②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 및 품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③ 직접 회수, 공제조합 가입 등으로 구분하여 적고, 공제조합이 회수를 위탁하는 경우는 위탁이라고 적습니다.
④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중 해당하는 방법을 적습니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활용 방법을 적습니다).
⑤ 회수·인계 또는 재활용 수탁업체명과 소재지를 각각 적습니다.
⑥ 회수·인계 또는 재활용 수탁자에게 회수·인계 또는 재활용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지급할 단위(kg)당 지원 단가를 적습니다.
⑦ 회수·인계 또는 재활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서면 또는 EcoAS 시스템 등)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적정여부 확인)	→	결 재	→	승인 통보
제출인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제출인

210㎜×297㎜[백상지 80g/㎡]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5.7.20.>

회수의무이행계획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개월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의무대상 제품		회수 및 인계계획					
				위탁비용			
				회 수		인 계	
①제품군	②제품명	③회수방법	④인계방법	⑤수탁자	⑥지원 단가(원)	⑤수탁자	⑥지원 단가(원)

⑦회수·인계 의무이행 확인 방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인계계획서 1부 2. 회수위탁계약서(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사본 1부 3.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없 음

작성요령

①②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 및 품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③ 직접 회수, 공제조합 가입, 위탁 등으로 구분하여 적고, 공제조합이 회수를 위탁하는 경우는 위탁이라고 적습니다.
④ ③에 직접 회수로 작성한 경우, 수집소까지 인계하는 방법(자사 물류 차량 이용, 제조사 물류 차량 이용 등)을 적습니다.
*위탁비용란: 공제조합이 회수를 위탁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⑤ 회수 또는 인계 수탁업체명과 소재지를 각각 적습니다.
⑥ 회수 또는 인계 수탁자에게 회수 또는 인계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지급할 단위(kg)당 지원 단가를 적습니다.
⑦ 회수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서면 또는 EcoAS 시스템 등)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적정여부 확인)	→	결재	→	승인 통보
제출인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제출인

210㎜×297㎜[백상지 80g/㎡]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12.31>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개월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의무대상 제품		회수·인계 및 재활용계획							
①제품군	②제품명	③회수 및 인계방법	④재활용 방법 및 기준	위탁비용 지원계획					
				회 수		인 계		재활용	
				⑤수탁자	⑥지원 단가(원)	⑤수탁자	⑥지원 단가(원)	⑤수탁자	⑥지원 단가(원)
⑦회수·인계·재활용 의무이행 확인 방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인

210㎜×297㎜[백상지 80g/㎡]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13.12.31>

회수의무이행계획승인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개월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의무대상 제품		회수 및 인계계획					
				위탁비용 지원계획			
				회 수		인 계	
①제품군	②제품명	③회수방법	④인계방법	⑤수탁자	⑥지원 단가(원)	⑤수탁자	⑥지원 단가(원)
⑦회수·인계 의무이행 확인 방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회수의무이행계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7.20.>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의무량 산출 기준	①재활용의무량		②재활용량	

	③제품군	④출고량 (kg)	⑤총 출고량 중 자사 제품군의 출고량 비율(%)	⑥제품군별 재활용 의무량(kg)	⑦재활용 실적 (kg)	⑧회수 및 인계방법	⑨재활용 방법 및 기준
재활용 의무 이행 결과							

	제품군	수탁자	회 수		인 계		재활용	
			위탁량(kg)	금액(천원)	위탁량(kg)	금액(천원)	위탁량(kg)	금액(천원)
⑩비용 지급내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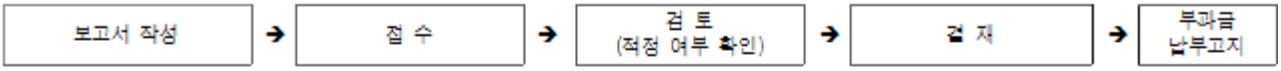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구비서류	1.「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1부 2.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회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 1부 3. 회수·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재활용 실적 증명서류 4.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



작성요령

① 해당 연도의 재활용의무량을 적습니다.

② 재활용한 총 실적을 적습니다.

③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④ 제품군(③)별 출고량(품목별로 출고된 총 실중량을 제품군으로 합산)을 적습니다.

⑤ 전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이행 전년도 총 출고량 중 자신이 출고한 전년도 제품군별 출고량 비율을 적습니다.

⑥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kg)을 적습니다.

⑦ 제품군별 재활용량(kg)을 적습니다.

⑧ 직접 회수하여 인계하는 경우는 '자가 회수'로, 공제조합이 회수를 위탁한 경우는 '위탁 회수'로 적습니다.

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중 해당하는 방법과 기준을 적습니다.

⑩ 회수·인계 또는 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위탁에 따른 비용 지급내용을 적되,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별도 첨부 가능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5.7.20.>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의무량 산출 기준	①회수의무량		②회수량	

회수의무 이행결과	③제품군	④매입량 (kg)	⑤총 매입량 중 자사 제품군의 매입량 비율(%)	⑥제품군별 회수의무량 (kg)	⑦회수실적 (kg)	⑧회수방법

⑨비용 지급내용	제품군	수탁자	회 수		인 계	
			위탁량(kg)	금액(천원)	위탁량(kg)	금액(천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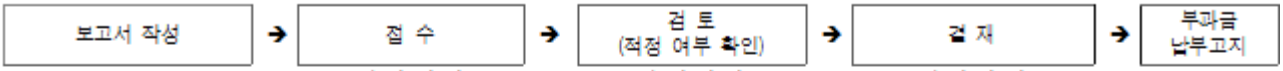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회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 1부 2.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종류 및 회수량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수탁자의 폐전기·폐전자제품 회수 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탁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되, 배출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처리절차



작성요령

① 해당 연도의 회수의무량을 적습니다.

② 회수한 총 실적을 적습니다.

③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④ 제품군(③)별 매입량(품목별로 매입된 총 실중량을 제품군으로 합산)을 적습니다.

⑤ 전체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의무이행 전년도 총 매입량 중 자신이 매입한 전년도 제품군별 매입량 비율을 적습니다.

⑥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제품군별 회수의무량(kg)을 적습니다.

⑦ 제품군별 회수량(kg)을 적습니다.

⑧ 폐제품을 자사가 직접 회수한 경우는 '자가 회수'로, 제조사 물류센터가 회수한 경우는 '대행 회수'로, 공제조합이 회수를 위탁한 경우는 '위탁 회수'로 적습니다.

⑨ 공제조합이 회수를 위탁한 경우 위탁처리 비용이 지급된 내용을 적되,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별도 첨부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13.12.31>

분할납부신청서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분할납부 신청사항	총 부과금액		

	회별	납부일	납부금액	비고
분할납부금액	제1회	7월 20일		
	제2회	11월 20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후단 또는 제20조의2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 재활용부과금 □ 회수부과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분할납부 고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12.31>

(제1쪽)

산출근거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회수부과금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자	업체명(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원
		납기내 금액	원

납기후 납부기한	1차	년 월 일		원
			납기후 금액	원
	2차	년 월 일		원
			납기후 금액	원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직인

170mm× 105mm(전산용지)

(제2쪽)

산출근거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회수부과금 고지서 겸 영수증(납입자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자	업체명(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원
		납기내 금액	원

납기후 납부기한	1차	년 월 일		원
			납기후 금액	원
	2차	년 월 일		원
			납기후 금액	원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은행 우체국 수납인

170mm× 105mm(전산용지)

(제3쪽)

삽출근거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회수부과금 영수증필통지서(세입징수관 사후결의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자	업체명(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원
		납기내 금액	원

납기후 납부기한	1차	년 월 일		원
			납기후 금액	원
	2차	년 월 일		원
			납기후 금액	원

세입징수관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수납인

170mm× 105mm(전산용지)

(제4쪽)

삽출근거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회수부과금 납부서(한국은행용)

납부번호				
회계연도		회계	징수관 계좌	소관
납부자	업체명(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원
			원
			원
		납기내 금액	원

납기후 납부기한	1차	년 월 일		원
			납기후 금액	원
	2차	년 월 일		원
			납기후 금액	원

한국은행장 귀하
위 금액을 수납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수납인

170mm× 105mm(전산용지)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2.1.3>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7.20.>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일반 현황	대상품목	조합원 수	분담금(원/kg)
	재활용의무총량	조합의 재활용 의무량	재활용의무량 점유율(%)
	회수의무총량	조합의 회수의무량	회수의무량 점유율(%)
	자산(백만원)	부채(백만원)	자본(백만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목적·사업범위·조합원 및 분담금,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참여 약정서 4. 조합원별 재활용의무량 5. 자체 재활용시설의 명세(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6.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인가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환경부)		처 리 기 관 (환경부)		처 리 기 관 (환경부)		

210mm×297mm[백상지 80g/㎡]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7.4>

제 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

1. 조합명		
2. 소재지		
3.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4. 사업내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제10호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

인가번호	조합명칭	사무소의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인 가 연월일	기능 및 목적	비고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7.4>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일반현황

회원	제 조 / 수 입 업 자 수		/	폐 차 업 자 수		개소
	파 쇄 재 활 용 업 자 수 (용 량)		개소 (톤/일)	폐가스류처리업자수 (용 량)		개소 (톤/일)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수 (용 량)		개소 (톤/일)			
재무의 건전성	자 산 (백만원)		부 채 (백만원)		자 본 (백만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설립목적, 사업 범위, 법인의 정관 1부 2.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및 그 밖에 폐자동차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자 등의 참여 약정서 3. 사업자단체의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인가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환경부)		처 리 기 관 (환경부)		처 리 기 관 (환경부)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7.4>

제 호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증

1. 단체명 :

2. 소재지 :

3. 대표자 :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4. 사업내용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가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150g/㎡)]

[별지 제13호서식]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대장

인가번호	단 체 명	사무소의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인 가 연월일	기능 및 목적	비고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3.23>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자동차폐차업자용)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재사용 및 재활용결과

(단위 :kg, 대)

차종	입 고 량 (kg, 대수)	재 활 용 결 과				폐가스류 회수·공급		④원료 판매	
		계	① 재사용량	② 재활용량	③재활용 방법 및 기준	업체명	중량	업체명	중량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폐자동차를 재사용·재활용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파쇄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인계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작성요령

① 재사용량은 폐자동차를 해체 후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을 판매(수출을 포함합니다)한 양을 기재(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 첨부)합니다.
② 폐윤활유, 타이어, 배터리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적정업체에 인계한 양,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재활용한 양, 파쇄재활용업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강업체에 공급한 양 등 파쇄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한 양을 제외한 양을 기재합니다.
③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한 재활용방법과 기준 가운데 해당하는 방법 및 기준을 기재합니다.
④ 파쇄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한 양을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적정 여부 확인)	→	결 재	→	환경부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210㎜×297㎜[백상지 80g/㎡]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7.4>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파쇄재활용업자용)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재사용 및 인계결과

(단위 :kg)

인수 중량	재 활 용 결 과		파쇄잔재물 인계			최종잔재물 처리
	①재활용량	②재활용방법 및 기준	업체명	중량	방법	중량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7.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구비서류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폐자동차를 재사용·재활용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파쇄잔재물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작성요령

① 폐자동차를 파쇄하여 재질별로 선별한 물질을 수요자에게 공급한 양 또는 자체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재활용한 양을 기재(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 첨부)합니다.

②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한 재활용방법과 기준 가운데 해당하는 방법 및 기준 가운데 해당하는 방법 및 기준을 기재합니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2.7.4>

파쇄잔재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용)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파쇄잔재물 재활용결과

(단위 :kg)

인수 증량	재 활 용 결 과		최종잔재물 처리		비 고
	①재활용방법 및 기준	재활용량	방법	증량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파쇄잔재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구비서류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파쇄잔재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작성요령

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한 재활용방법과 기준 가운데 해당하는 방법 및 기준을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적정 여부 확인)	→	결재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210㎜×297㎜[백상지 80g/㎡]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2.7.4>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재활용과 처리실적(폐가스류처리업자용)

※ EcoAS(www.ecoas.or.kr)에서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재활용·처리결과

(단위 :kg)

인수 증량	제 품 처 리		비 고
	①방법	증량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구비서류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작성요령

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에서 정한 재활용방법과 기준 가운데 해당하는 방법 및 기준 가운데 해당하는 방법 및 기준을 기재합니다.

② 처리시설의 종류(「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제3호 가운데 해당하는 시설)를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적정 여부 확인)	→	결재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210mm×297mm[백상지 80g/㎡]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3.12.31>

[] 폐자동차재활용업 [] 등 록 신청서
[] 폐가스류처리업 [] 변경등록
[] 변 경 신고서

신청인 (신고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신고)업종	[] 파쇄재활용업 [] 파쇄잔재물재활용업 [] 폐가스류처리업

시설·장비 설치내용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소 재 지	재활용 방법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등록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시설·장비 명세서 3. 시설설치 명세서 및 재활용·처리공정도 4. 수집·운반·재활용·처리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5. 재활용시설 운전계획서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등록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적정 여부 확인)	→	실태조사	→	결 재	→	적합여부 통보 (변경신고 처리)
신청인(신고인)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신청인(신고인)

210㎜×297㎜[백상지 80g/㎡]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12.31>

(앞쪽)

[] 폐자동차재활용업 [] 파쇄재활용업 [] 파쇄잔재물재활용업 []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시설·장비				
영업대상폐기물				
재활용 방법				
처리공정				
등록조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파쇄재활용업·파쇄잔재물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인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변경사항>

연월일	내 용	확 인

<행정처분 사항>

일련번호	연월일	위 반 내 용	연월일	처 분 내 용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12.31>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대장

등록 번호	사업장 명 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등 록 연월일	처리대상 폐 기 물	재활용 방법 및 용량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사항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3.12.31>

[] 폐자동차재활용업자 [] 파쇄재활용업자 []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 폐가스류처리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신고인	①상 호(명칭)			④전화번호
	②주 소(사무실)			⑤법인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⑥사업자등록번호
승계 내용	⑦상 호(명칭)			⑩전화번호
	⑧주 소(사무실)			⑪법인등록번호
	⑨대표자 성명			⑫사업자등록번호
	승계 대상	구 분	[] 파쇄재활용업 [] 파쇄잔재물재활용업 [] 폐가스류처리업	
		⑬ 업 종		
		⑭ 등 록 일		
		⑮ 등록번호		
승계사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위승계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원본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별로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작성요령

1. ①부터 ⑥까지는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⑦부터 ⑮까지는 지위승계 이전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적정 여부 확인)	→	결 재
신고인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처 리 기 관 (한국환경공단)

210㎜×297㎜[백상지 80g/㎡]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12.31>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관리대장

제품군:

(단위: 대, kg)

제품명	모델명	연월일	제조량 또는 수입량		출 고 량		재 고 량		비 고	결 재	
			대	중량 (Kg)	대	중량 (kg)	대	중량 (kg)			

작성요령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 및 품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관리대상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마다 기록해야 하며, 제조하는 경우에는 월말에 합계를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13.12.31>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매입·판매관리대장

제품군:　　(단위: 대, kg)

제품명	모델명	연월일	매입량		판매량		재고량		비 고	결 재	
			대	중량 (Kg)	대	중량 (kg)	대	중량 (kg)			

작성요령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 및 품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관리대상 제품을 매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입 또는 판매할 때마다 합계를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12.31>

회수·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 관리표 작성 시 EcoAS(www.ecoa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군:　　(단위: 대, kg)

품목명	세부품목명	연월일	①회수내용		②인계내용		③처리내용					④보관량(kg)
			업체명	회수량(kg)	업체명	인계량(kg)	ⓐ재활용		ⓑ그 밖의 사항			
							방법 및 기준	재활용량(kg)	업체명	처리방법	처리량(kg)	

작성요령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제품군 및 품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① 회수·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회수한 업체명과 회수량을 적습니다.

② 회수한 제품을 인계한 업체명과 인계량을 적습니다.

③ 재활용 등 처리 내용을 적습니다(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적지 않습니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중 해당하는 방법과 기준을 적습니다.

ⓑ 선별 후 발생한 쓰레기나 미처리 제품 등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 업체명, 처리방법(소각, 매립, 재활용 등), 처리량 등을 적되, 재활용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중 해당하는 방법과 기준을 적습니다.

④ ①의 회수량에서 ②의 인계량 또는 ③의 처리량을 제외한 양을 적습니다(판매업자의 경우 ①에서 ②를 제외, 재활용의 무생산자의 경우 ①에서 ③을 제외한 양).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재질구조개선평가대장				
대 상 제 품				
평 가 자				
평가일 및 장소				
평 가 내 용				
내 용 / 평가사항	개선대상	평가내용	평가결과	향후개선 사항
구조개선사항				
재질개선사항				
특 기 사 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1. 평가대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제조를 위한 설계단계에서 시행·기록합니다.
2. 대상제품에 명칭과 고유모델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3. 평가자는 설계담당부서에 종사하는 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합니다.
4. 개선대상은 개선되어질 부품종류별 또는 재질종류별로 기재합니다.
5. 평가내용은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6. 평가결과는 평가 후 제품생산 시 적용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7. 향후 개선사항에는 기술부족 또는 설비미비 등의 사유로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기재합니다.
8. 구조 및 재질개선사항은 환경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구조개선에 관한 내용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개정 2014.12.29.>

(제1쪽)

폐자동차 인수·재활용관리대장

작성일: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당월 인수: 대	당월 해체: 대	전월 이월: 대	총 재고: 대		

구 분	당월 해체결과			전월 이월	① 당월 재활용 (판매·인계)		② 당월 재사용 (판매·인계)		③ 당월 폐기 처리		④ 재고
	회수량	미회수량	회수비율	수량	수량	중량 (kg)	수량	중량 (kg)	수량	중량 (kg)	수량
연료	kg	kg	%	-	-	-	-	-	-	-	-
에어컨냉매	kg	kg	%	-	-	-	-	-	-	-	-
액상폐기물	kg	kg	%	-	-	-	-	-	-	-	-
부동액	kg	kg	%	-	-	-	-	-	-	-	-
연료통	개	개	%	개	개	kg	개	kg	개	kg	개
액화가스탱크	개	개	%	개	개	kg	개	kg	개	kg	개
에어백	개	-	-	개	개	kg	개	kg	개	kg	개
배터리	개	개	%	개	개	kg	개	kg	개	kg	-
타이어	개	개	%	개	개	kg	개	kg	개	kg	개
촉매	개	개	%	개	개	kg	개	kg	개	kg	개
범퍼	개	개	%	개	개	kg	개	kg	개	kg	개
⑤기타 재사용 부품 등	-	-	-	-	개	kg	개	kg	개	kg	-
상고철 (제강사 납품용)	-	-	-	-	-	kg	-	kg	-	kg	-

※ 작성요령

① 폐기물재활용업자 등에게 "재활용 용도"로 판매하거나 인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② 폐기물재활용업자 또는 개인 등에게 "재사용 용도"로 판매하거나 인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③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 처리"를 위하여 인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④ 당월 해체결과 회수량과 전원 이월 수량을 합산한 수량에서 당월 재활용량, 당월 재사용량 및 당월 폐기 처리량을 차감한 수량을 기재합니다.

⑤ 기타 재사용부품 등: 압축·파쇄·절단·용융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부속품(원형 재사용부품), 합성수지류(내·외장재, 내장 부속품 등), 유리, 고무(웨더스트립 등), 시트폼

210㎜×297㎜[백상지 80g/㎡]

(제2쪽)

폐자동차 인수·재활용관리대장

해체일 :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차량번호		제조자		차종/모델/연식	/ /

구분	해체수량(또는 회수중량)	① 해체여부	② 미해체시 사유
연료	kg		
에어컨냉매	kg		
액상폐기물	kg		
부동액	kg		
연료통	개		
액화가스탱크	개		
에어백	개		
배터리	개		
타이어	개		
촉매	개		
범퍼	개		

※ 작성요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를 해체(폐차) 작업한 결과를 매일 기재합니다.

① 해체여부는 다음의 코드로 기재합니다.

A: 전량 해체, B: 일부 해체, C: 전량 미해체

② 일부 해체 또는 전량 미해체일 경우 사유는 다음의 코드로 기재하며, 미해체시 사유가 "D"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합니다.

A: 해당 부품의 부재, B: 부품의 심각한 파손, C: 체결 부위 손상, D: 기타 사유

210㎜×297㎜[백상지 80g/㎡]

(제3쪽)

폐자동차 인수·재활용관리대장

작성일: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연번	인수자	부품명	수량	중량(kg)	목적 구분	비고

※ 작성요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분리품을 재활용한 내용을 매일 기재 합니다.

① 인수자에는 부품 및 물질을 인수한 사업장명을 기재합니다(단, 재사용 부품 및 물질을 개인이 인수한 경우 개인으로 기재).

② 목적 구분에는 재활용(내수 판매), 재활용(수출 판매), 재사용(내수 판매), 재사용(수출 판매), 폐기 처리로 기재합니다(수출의 경우는 비고란에 수출신고서의 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판매재활용관리표 입력대상 부품 및 물질: 연료통, 액화가스탱크, 에어백, 배터리, 타이어, 촉매, 범퍼, 기타 재사용부품 등, 상고철(제강사 납품용)

※ 배터리: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을 확인받은 업자의 경우 재사용 실적에 한해 입력

※ 기타 재사용부품 등: 압축·파쇄·절단·용융 등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부속품(원형 재사용부품), 합성수지류(내·외장재, 내장 부속품 등), 유리, 고무(웨더스트립 등), 시트폼

※ 반품의 경우 반품 업체명(또는 개인)과 함께 수량 및 중량에 마이너스(-) 값을 기재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6호서식]

폐자동차 파쇄·재활용관리대장

(단위 : kg)

연월일	①인수내용		처리내용				④파쇄잔재물			⑤공급내용		
	업체명	인수량	②파쇄		③금속류회수		분리선별		최종파쇄잔재물량	업체명	품목	중량
			투입량	방법 및 기준	중량	방법 및 기준	분리선별량	방법 및 기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①인수내용은 압축폐차를 인계한 자동차폐차업자명 및 인수량을 기재합니다.

②폐자동차 파쇄기 투입중량 및 파쇄의 방법을 기재합니다.

③파쇄재활용업자의 재활용실적이 집계될 수 있도록 파쇄물 중 금속류 등을 회수한 물량을 기재하며, 출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④파쇄물 중 금속회수 후 남은 파쇄잔재물의 분리선별량을 기재하고, 최종 잔재물은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토사 등을 기재하며, 출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⑤금속류, 파쇄잔재물의 분리선별품 및 최종 파쇄잔재물을 공급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파쇄잔재물 인수·재활용관리대장

(단위 : kg)

연월일	① 인수내용		처리내용								⑤ 소각회분 발생량	⑥공급내용			
			② 투입	③ 재활용		④ 금속회수		그 밖의 재활용 제품		최종 잔재물					
	업체명	인수량	중량	방법 및 기준	중량	품목	중량	품목	중량	중량	중량	품목	수량	방법	업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①인수내용은 파쇄잔재물을 인계한 파쇄재활용업자명 및 인수량을 기재합니다.

②투입량은 재활용, 금속회수, 그 밖에 재활용제품 및 최종잔재물 중량의 합을 기재하되, 처리 또는 재활용방법별로 기재합니다.

③파쇄잔재물 중 열회수 또는 물질재활용양 및 재활용방법을 기재합니다.

④파쇄잔재물 중 금속회수한 양을 기재합니다.

⑤파쇄잔재물을 열이용하고 남은 소각회분의 양을 기재합니다.

⑥소각회분의 공급내용 및 금속회수 후 판매량 등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28호서식]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인수·처리관리대장

물질명 : (단위 : kg)

연월일	①인수내용			②처리 또는 재활용내용			③보관량
	업체명	인수량		처리 또는 재활용 방법	처리내용		
		용기수	중량		용기수	중량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작성요령

①폐가스류를 인계한 자동차폐차업자명, 인수량을 기재합니다.

②「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및 양을 기재합니다.

③①의 인수량에서 ②의 방법으로 처리한 양을 제외한 수량을 기재합니다.

자동차관계 법령

제 작 자 : 박기우
메일주소 : kipp2003@naver.com
제작일자 : 2015.8.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